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기획조정실, 무역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2022. 1.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기획조정실 · 무역위원회 · 국가기술표준원

2022 · 1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기획조정실	1
I. 세 입	3
<일반회계>	
(1) 토지대여료	7
(2) 건물대여료	10
(3) 기타재산이자수입	13
(4) 과징금	16
(5) 기타경상이전수입	18
II. 세 출	21
<일반회계>	
(1)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7131-501)	24
(2)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7132-303)	39
(3)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7133-301)	60
(4)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7142-317)	68
2. 무역위원회	81
<일반회계>	
(1) 무역구제지원사업(1233-301)	84

3. 국가기술표준원 97

<일반회계>

(1) 신기술제품인증(3731-301)	102
(2) 국제표준활동지원(3731-302)	124
(3)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3731-303)	145
(4)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3731-304)	185
(5)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3731-305)	201
(6)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3731-306)	246
(7)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3731-307)	275
(8)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3731-308)	291
(9) 국가표준활성화(3731-309)	311
(10)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3731-312)	338
(11)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R&D)(3731-318)	361
(12) 신산업단체표준화촉진(3731-319)	372
(13)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3731-320)	382
(14) 스마트계량측정 기술기반조성(3731-323)	389
(15) 지능형 스마트랩 구축(3731-327)	402
(16)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3732-303)	409
(17) 안전제도기반조성(3732-304)	425
(18) 제품사고조사및수입제품안전관리(3732-306)	443
(19)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3732-307)	456
(20) 어린이제품 안전성 평가역량 강화사업 (3732-308)	468
(21) 제품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3732-310)	477
(22)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3736-301)	485
(23)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3736-302)	523
(24)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3736-304)	535
(25)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7134-301)	557

기획조정실

세 입

수입예산 총괄표(기획조정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
총 계	138,076	209,234	209,234	210,041	210,041	807	0.4
51 관유물대여료	18,629	22,100	22,100	22,858	22,858	758	4.5
토지대여료 (51-511)	15,712	16,722	16,722	17,480	17,480	758	4.5
건물대여료 (51-512)	2,917	5,378	5,378	5,378	5,378	-	-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4,257	20,891	20,891	20,891	20,891	-	-
기타재산수입 (54-545)	14,257	20,891	20,891	-	-	순감	-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	-	20,891	20,891	순증	-
56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754	1,851	1,851	1,851	1,851	-	-
과태료 (56-563)	252	600	600	600	600	-	-
징계부과금 (56-564)	-	-	-	-	-	-	-
과징금 (56-565)	502	1,251	1,251	1,251	1,251	-	-
57 변상금및위약금	0.5	-	-	-	-	-	-
변상금 (57-571)	0.1	-	-	-	-	-	-
위약금 (57-572)	0.4	-	-	-	-	-	-
58 가산금	6	18	18	18	18	-	-
가산금 (58-581)	6	18	18	18	18	-	-

구 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
59 기타경상이전 수입	101,217	163,595	163,595	163,595	163,595	-	-
기타경상 이전수입 (59-596)	101,217	163,595	163,595	163,595	163,595	-	-
69 잡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6	45	45	21	21	△ 24	△ 53.3
기타잡수입 (69-691)	8	45	45	21	21	△ 24	△ 53.3
기타영업외잡 수익 (69-697)	8	-	-	-	-	-	-
69 잡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855	734	734	807	807	73	9.9
기타잡수입 (69-691)	855	734	734	807	807	73	9.9
72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2,341	-	-	-	-	-	-
토지매각대 (72-721)	2,341	-	-	-	-	-	-

(1) 토지대여료

51 - 51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토지대여료	15,712	16,722	16,722	17,480	17,480	758	4.5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제1항

-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 ⑦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 및 매각)
 -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하여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권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게 임대한 토지 임대료

다. 2022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1예산	16,72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지역 : 예상임대면적 × 예상단가 - 6,939,355.15m² × 1154.2원 = 8,009백만원 ○ 자유무역지역 : 예상임대면적 × 예상단가 = 8,713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 618,069.26m² × 7,355원 = 4,546백만원

		- 군산자유무역지역 : $887,884\text{m}^2 \times 1,224\text{원} = 1,087\text{백만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 $875,289.2\text{m}^2 \times 1,008\text{원} = 864\text{백만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 $101,502\text{m}^2 \times 965\text{원} = 98\text{백만원}$ - 울춘자유무역지역 : $191,452.9\text{m}^2 \times 1,320\text{원} = 253\text{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 $414,017.7\text{m}^2 \times 891\text{원} = 369\text{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 $488,937\text{m}^2 \times 3,060\text{원} = 1,496\text{백만원}$
2022예산	17,480,000	▪ 외국인투자지역 : $6,939,355.15\text{m}^2 \times 1,330.5\text{원} = 9,233\text{백만원}$ ▪ 자유무역지역 : $\text{예상입대면적} \times \text{예상단가} = 8,247\text{백만원}$ - 마산 : $618,069.26\text{m}^2 \times 7,355\text{원} = 4,546\text{백만원}$ - 군산 : $916,782\text{m}^2 \times 1,147\text{원} = 1,051\text{백만원}$ - 대불 : $936,862.5\text{m}^2 \times 922\text{원} = 864\text{백만원}$ - 동해 : $114,604\text{m}^2 \times 942\text{원} = 108\text{백만원}$ - 울춘 : $218,145.2\text{m}^2 \times 1,104\text{원} = 241\text{백만원}$ - 김제 : $427,400\text{m}^2 \times 760\text{원} = 325\text{백만원}$ - 울산 : $488,937\text{m}^2 \times 2,274\text{원} = 1,112\text{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18	13,483	13,483	13,483	18,092	17,221	127.7	95.2	871	
'19	13,742	13,742	13,742	15,050	13,820	101	92	1,230	
'20	17,148	17,148	17,148	17,294	15,712	91.6	90.9	1,581	
'21	16,722	16,722	16,722	5,198	2,988	17.9	57.5	2,210	
'22(안)	17,480	17,480	-	-	-	-	-	-	-

※ '21년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1. 7월말 기준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범식		이혜정
		044-203-5080		044-203-5086

(2) 건물대여료

51 - 512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건물대여료	2,917	5,378	5,378	5,378	5,378	-	-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 및 매각)

-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하여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물류창고 및 청사·업무지원동 임대료

다. 2022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1예산	5,37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지역) 예상임대면적 × 예상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산자유무역지역 : $156,186.7\text{m}^2 \times 16,704\text{원} = 2,609\text{백만원}$ - 군산자유무역지역 : $71,507\text{m}^2 \times 11,327\text{원} = 810\text{백만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 $60,563.5\text{m}^2 \times 11,987\text{원} = 726\text{백만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 $34,862\text{m}^2 \times 9,122\text{원} = 318\text{백만원}$ - 울춘자유무역지역 : $12,359.12\text{m}^2 \times 13,836\text{원} = 171\text{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 $25,884\text{m}^2 \times 9,774\text{원} = 253\text{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 $38,664\text{m}^2 \times 12,699\text{원} = 491\text{백만원}$
2022예산	5,37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지역) 예상임대면적 × 예상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산 : $185,031.85\text{m}^2 \times 14,538\text{원} = 2,690\text{백만원}$ - 군산 : $73,717\text{m}^2 \times 11,056\text{원} = 815\text{백만원}$ - 대불 : $60,998.45\text{m}^2 \times 11,902\text{원} = 726\text{백만원}$ - 동해 : $34,862\text{m}^2 \times 9,122\text{원} = 318\text{백만원}$ - 울춘 : $12,359.12\text{m}^2 \times 13,836\text{원} = 171\text{백만원}$ - 김제 : $25,926\text{m}^2 \times 9,990\text{원} = 259\text{백만원}$ - 울산 : $36,680\text{m}^2 \times 10,877\text{원} = 399\text{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18	3,807	3,807	3,807	4,025	3,356	88.2	83.4	669	
'19	3,147	3,147	3,147	3,908	3,381	107	86.5	527	
'20	4,562	4,562	4,562	3,286	2,917	63.9	88.8	369	
'21	5,378	5,378	5,378	2,073	1,349	25.1	65.1	724	
'22(안)	5,378	5,378	-	-	-	-	-	-	-

※ '21년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1. 7월말 기준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범식		이혜정
		044-203-5080		044-203-5086

(3)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이자 수입	14,257	20,891	20,891	20,891	20,891	-	-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세입 개요

- 출연금, 민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다. 2022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1예산	20,891,000	<div>○ 최근 6개년 기타재산수입 결산액 산출 평균</div> <div>(단위: 백만원, %)</div> <table><tr><td>연도</td><td>2014</td><td>2015</td><td>2016</td><td>2017</td><td>2018</td><td>2019</td></tr><tr><td>결산액</td><td>39,325</td><td>23,518</td><td>19,249</td><td>11,631</td><td>14,574</td><td>17,050</td></tr></table> <div>○ $(39,325+23,518+19,249+11,631+14,574+17,050)/6 = 20,891$</div>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결산액	39,325	23,518	19,249	11,631	14,574	17,050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결산액	39,325	23,518	19,249	11,631	14,574	17,050																
2022예산	20,891,000	<div>▪ 최근 3개년 연도별 사업비(보조금, 출연금) 총액 및 이자수입액</div> <div>(단위: 백만원, %)</div> <table><tr><td>연도별</td><td>2018</td><td>2019</td><td>2020</td><td>2021</td></tr><tr><td>사업비</td><td>2,798,353</td><td>3,449,139</td><td>3,613,227</td><td>3,662,135*</td></tr><tr><td>이자수입액</td><td>14,574</td><td>17,050</td><td>14,257</td><td>-</td></tr><tr><td>이자수입률</td><td>0.52%</td><td>0.49%</td><td>0.39%</td><td>-</td></tr></table> <div>* '21년도 추경액(6,999백만원) 포함</div> <div>▪ '21년 사업비 총액 × 예상 이자수입율(최근 3개년 이자수입율 가중평균 × 예상증감율)* = 3,662,135백만원 × 0.0057= 20,891백만원</div> <div>* $\{(0.52\% \times 0.2) + (0.49\% \times 0.3) + (0.39\% \times 0.5)\} \times 1.28$</div>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사업비	2,798,353	3,449,139	3,613,227	3,662,135*	이자수입액	14,574	17,050	14,257	-	이자수입률	0.52%	0.49%	0.39%	-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사업비	2,798,353	3,449,139	3,613,227	3,662,135*																		
이자수입액	14,574	17,050	14,257	-																		
이자수입률	0.52%	0.49%	0.39%	-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18	38,593	38,593	38,593	14,588	14,574	37.8	99.9	14	
'19	16,779	16,779	16,779	17,134	17,050	101.6	99.5	84	
'20	38,593	38,593	38,593	14,680	14,257	36.9	97.1	423	
'21	20,891	20,891	20,891	3,124	2,632	12.6	84.3	492	
'22(안)	20,891	20,891	-	-	-	-	-	-	-

※ '21년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1. 7월말 기준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이자율 변동추이를 고려한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2017년도 결산)
 - 연도별 특이요소를 제외하는 등 세입추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예산안 편성 시 이자율 변동 추이를 반영할 것
- 2) 감사원 지적
- 3) 기타 언론 및 민원
-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19년도부터 최근 이자율 추이에 따른 3개년 이자수입 실적을 반영하여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범식		이혜정
		044-203-5080		044-203-5086

(4) 과징금
56 - 565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과징금	502	1,251	1,251	1,251	1,251	-	-

가. 법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한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과징금)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다. 2022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1예산	1,251,000	○ '15~'18년 수납액 가중평균 × 수납액 증가율 = 695백만원 × 1.8 = 1,251백만원
2022예산	1,251,000	▪ '18~'20년 수납액 산술평균 × 수납액 증가율 = 663백만원 × 1.887 = 1,251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18	1,251	1,251	1,251	7,722	1,062	84.9	13.8	6,659	
'19	455	455	455	7,946	426	93.6	5.6	7,519	
'20	1,251	1,251	1,251	7,942	502	40.1	6.3	7,441	
'21	1,251	1,251	1,251	7,462	291	23.2	3.9	7,171	
'22(안)	1,251	1,251	-	-	-	-	-	-	-

※ '21년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1. 7월말 기준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범식		이혜정
		044-203-5080		044-203-5086

(5)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 수입	101,217	163,595	163,595	163,595	163,595	-	-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세입 개요

○ 출연금, 민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기타 반납금, 연체료 등

다. 2022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1예 산	163,595,000	○ 연도별 사업비(보조금, 출연금) 총액 및 반환률 (백만원, %)																								
		<table><tr><th>연도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r><tr><td>사업비</td><td>2,937,985</td><td>2,579,906</td><td>2,798,353</td><td>3,449,139</td><td>3,613,227</td></tr><tr><td>반환액</td><td>127,708</td><td>142,263</td><td>127,522</td><td>104,666</td><td>-</td></tr><tr><td>반환률</td><td>5.17%</td><td>4.84%</td><td>4.55%</td><td>3.74%</td><td>-</td></tr></table>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비	2,937,985	2,579,906	2,798,353	3,449,139	3,613,227	반환액	127,708	142,263	127,522	104,666	-	반환률	5.17%	4.84%	4.55%	3.74%	-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비	2,937,985	2,579,906	2,798,353	3,449,139	3,613,227																			
		반환액	127,708	142,263	127,522	104,666	-																			
반환률	5.17%	4.84%	4.55%	3.74%	-																					
* 총사업비에 추경금액(266,070백만원)이 포함된 금액																										
○ '20년 사업비 총액 × 예상반환율(최근 4개년 반환율 평균) = 3,613,227백만원 x 0.04527 = 163,595백만원																										
2022예 산	163,595,000	▪ 연도별 사업비(보조금, 출연금) 총액 및 반환률 (백만원, %)																								
		<table><tr><th>연도별</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r><tr><td>사업비</td><td>2,579,906</td><td>2,798,353</td><td>3,449,139</td><td>3,613,227</td><td>3,662,135*</td></tr><tr><td>반환액**</td><td>142,263</td><td>127,522</td><td>104,666</td><td>106,575</td><td>-</td></tr><tr><td>반환률</td><td>5.51%</td><td>4.56%</td><td>3.03%</td><td>2.95%</td><td>-</td></tr></table>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비	2,579,906	2,798,353	3,449,139	3,613,227	3,662,135*	반환액**	142,263	127,522	104,666	106,575	-	반환률	5.51%	4.56%	3.03%	2.95%	-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비	2,579,906	2,798,353	3,449,139	3,613,227	3,662,135*																			
		반환액**	142,263	127,522	104,666	106,575	-																			
반환률	5.51%	4.56%	3.03%	2.95%	-																					
* '21년도 추경액(6,999백만원) 포함																										
** '18년 순기조정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 수입증가액(215억원) 제외, '20년 연말징수분 납기미도래에 따른 일시적 미수납액(52억원) 가산																										
▪ '21년 사업비 총액 × 예상 반환율(최근 4개년 반환율 산술평균 × 예상증감율)* = 3,662,135백만원 × 0.04467= 163,595백만원																										
* {(5.51%+4.56%+3.03%+2.95%)/4} × 1.113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18	137,062	137,062	137,062	150,207	149,070	108.8	99.2	1,137	
'19	124,919	124,919	124,919	105,655	104,666	83.7	99	989	
'20	154,190	154,190	154,190	107,800	101,217	65.6	93.9	6,583	
'21	163,595	163,595	163,595	82,024	78,712	47.5	96.0	3,312	
'22(안)	163,595	163,595	-	-	-	-	-	-	-

※ '21년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1. 7월말 기준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김범식		이혜정
		044-203-5080		044-203-5086

세 출

세출예산 총괄표(기획조정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
총 계	7,324	7,759	7,759	7,543	7,543	-216	
<일반회계>	7,324	7,759	7,759	7,543	7,543	-216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 시스템구축(정보화) (7131-501)	3,554	3,220	3,220	3,265	3,265	45	1.4
행정능률향상및능력개발 (7132-303)	697	965	965	847	847	-118	△12.2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7133-301)	1,304	1,865	1,865	1,146	1,146	-719	△38.6
사이버안전센터구축 운영(정보화) (7142-317)	1,769	1,709	1,709	2,285	2,285	576	33.7

사 업 명
(1)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7131-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501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관리담당관	신 우 찬	정민구	김나영
		044-203-5550	044-203-5552	044-203-5558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산업통상자원행정 정보시스템구축	3,554	3,220	3,220	3,265	3,265	45	1.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 산액		예 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554	3,554	3,551	-	3	3,220	3,220	3,220	3,175	-	45	3,265
· 정보시스템고도화	1,380	1,380	1,378	-	2	810	810	810	810	-	-	886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255	1,255	1,255	-	-	1,380	1,380	1,380	1,340	-	40	1,380
· 정보보호체계구축	919	919	918	-	1	790	790	790	785	-	5	799
· 자유무역지역 통합 홈페이지 구축	-	-	-	-	-	240	240	240	240	-	-	-
·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200
○ 비목별 분류(합계)	3,554	3,554	3,551	-	3	3,220	3,220	3,220	3,175	-	45	3,265
· 관리용역비(210-01)	1,323	1,323	1,323	-	-	1,425	1,425	1,425	1,380	-	45	1,425
· 사업추진비(240-01)	8	8	8	-	-	7	7	7	7	-	-	7
· 일반연구비(260-01)	840	840	838	-	2	484	484	484	484	-	-	689
· 자산취득비(430-01)	1,383	1,383	1,382	-	1	1,304	1,304	1,304	1,304	-	-	1,14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554	3,554	3,551	-	3	3,220	3,220	3,220	3,175	-	45	3,265
· 정보시스템고도화	1,380	1,380	1,378	-	2	810	810	810	810	-	-	886
- 사업추진비(240-01)	8	8	8	-	-	7	7	7	7	-	-	7
- 일반연구비(260-01)	840	840	838	-	2	244	244	244	244	-	-	489
- 자산취득비(430-01)	532	532	532	-	-	559	559	559	559	-	-	390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255	1,255	1,255	-	-	1,380	1,380	1,380	1,340	-	40	1,380
- 관리용역비(210-01)	1,255	1,255	1,255	-	-	1,380	1,380	1,380	1,340	-	40	1,380
· 정보보호체계구축	919	919	918	-	1	790	790	790	785	-	5	799
- 관리용역비(210-01)	68	68	68	-	-	45	45	45	40	-	5	45
- 자산취득비(430-01)	851	851	850	-	1	745	745	745	745	-	-	754

· 자유무역지역 통합 홈페이지 구축	-	-	-	-	-	240	240	240	240	-	-	-
- 일반연구비(260-01)	-	-	-	-	-	240	240	240	240	-	-	-
·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200
-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보시스템고도화)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시급성 등에 따른 단계별 기능 고도화를 통해 행정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 및 효율성 제고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통해 정책업무의 안정적 수행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 (정보보호체계구축) 보안장비 도입·유지관리, 보안정책 최적화를 통해 고도화·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산업부 중장기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중기(2023~2027) 정보화 Master Plan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5조의2, 제30조, 제52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9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② 추진경위

- 'e-산자부 선언('00)
- 산자부 중장기정보화추진전략 수립('01)
- 산업자원 지식행정체제 확대 중장기정보화추진계획 수립('03)
- 산업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05)

- 산업자원 데이터웨어하우스 정보전략계획 수립('06)
- 산업자원부 정보기술아키텍처적용 기본계획 수립('07)
- 지식경제부 정보화전략 수립('08)
-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12)
-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17)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1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및 부내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2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정보시스템 고도화 : ('22)886백만원

①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 879백만원(구축비(추가))

가. 업무지원시스템 연계 기능 개발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 245백만원(구축비(추가))

- (필요성) 업무포털, 메신저, 업무연락시스템, 모티디스크, 홈페이지 등 업무지원시스템 연계를 통한 신규 기능 개발로 업무효율성 증대 필요
- (추진내용) 메신저, 업무연락시스템(내·외), 모티디스크 등의 연계를 통해 국가 위기 경보 등 비상시 신속한 협업 공간 구축 및 협업체계 고도화
-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협업 기능 개발, 일상 업무 자료 보안 강화를 위한 로그인 관리 체계 구축, 협업메인시스템의 데이터 공유체계 고도화, 협업 데이터 취합·편집시스템 고도화 등 추진

· 시스템 고도화: 245백만원(구축비(추가), 260-01/일반연구비)

(단위 : 원)

총 기능점수	기능 점수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257.9	553,114	1.28	0.94	1.05	1.06	1.06	202,490,590
합 계 ((개발원가+이윤(개발원가 10%)) × 1.1(부가가치세))							245,013,614

나. 성과관리 시스템 : 142백만원(구축비(추가))

- (필요성) '16년 개발된 노후 시스템으로 그간 변화된 성과관리제도를 지원하지는 데 한계가 있고, 일부 업무처리를 수동으로 진행하는 등 불편 가중
 - 아울러, 현재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중인 성과관리 및 근평관리를 동 시스템에서 운영하여, 데이터의 분석·비교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해달라는 요구 증대
- (추진내용) 그간 변화된 성과관리제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동설정 부분을 자동화**하여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서면평가와의 점수 및 내용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 아울러, **e사람의 근무평정관리 연계**를 통해 성과 및 근평 자료 병행 제공
- **시스템 개발: 142백만원(구축비(추가), 260-01/일반연구비)**

(단위 : 원)

총 기능점수	기능 점수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173	553,114	1.28	0.88	0.95	1.06	1.06	117,355,370
합 계 ((개발원가+이윤(개발원가 10%)) × 1.1(부가가치세))							142,000,000

다. 백본스위치 및 TPS실 스위치 교체: 300백만원(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 (필요성) 운영 중인 백본 스위치의 단종(EoL:End of Life)으로 인한 기술 지원종료에 따른 장애 시 대처 불가, 통신단절 현상(Ping Loss) 개선, 네트워크 속도 개선
 - * 장비도입 시기(백본스위치 '12년, 증간스위치 '13년 도입)
 - *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용연수(네트워크 스위치 : 6년) 경과된 전산장비 교체
- (추진내용) 노후 장비(2차 증간 스위치) 170개 중 55개 우선 교체 추진

(단위 : 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백본 (N9K-C9508)	3	71,700,000	215,100,000	업무망,인터넷망 이중화 구성	1차 ('21년)
백본스위치모듈 (N9K-X9464PX)	12	19,788,000	237,456,000	백본스위치1대 당(4개 탑재)	
증간스위치 (C3650-24D)	55	5,529,000	300,000,000	TPS실당 5대 소요11 개소(5대*11개소)	2차 ('22년)
증간스위치 (C3650-24D)	115	5,529,000	641,364,000	TPS실당 5대 소요23 개소(5대*23개소)	3~4차 ('23~24년)
광모듈 (SFP-10G-SR)	340	860,000	292,400,000	증간스위치(2개) 170 대*2개	
합 계			1,686,320,000		

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기반 구축 : 115백만원(구축비(추가))

- (필요성) 데이터의 수집·입력·비교 등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기계가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비용·시간을 대폭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 혁신 추진(정부혁신 실행계획 포함)

→ 단순 반복업무의 비중을 줄여 구성원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

- (추진내용)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모듈화된 로봇 엔진을 도입하고, 업무혁신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개발

* (예시) ① 통상 관련 지역별(미국, 중남미, EU, 영국, 독일, 프랑스) 및 국내 뉴스 스크랩 프로그램 개발, ② 일일 산업지표 및 경제지표 획득 및 홈페이지 자동 게시 프로그램

• 로봇엔진 구매: 60백만원(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단위 : 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RPA	3SET	20,000,000	60,000,000
합 계			60,000,000

• Pilot Project (4개): 55백만원(구축비(추가), 260-01/일반연구비)

(단위: 원)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업무분석가	IT기획자	IT컨설턴트
투입인력		1	1	2.15
노임단가		11,123,789	8,124,332	9,589,296
인건비		11,123,789	8,124,332	20,616,986
제경비	직접인건비×15%	1,668,568	1,218,650	3,092,548
기술료	(인건비+제경비)×10%	1,279,236	934,298	2,370,953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1,407,159	1,027,728	2,608,049
합 계		55,472,297		

마. 주요 업무시스템(메신저) 서버 이중화: 30백만원(구축비(추가))

- (필요성) 메신저는 업무 활용도가 높고 단일 서버로 구성되어 장애 발생 시 일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대응 방안이 필요
- (추진내용) 메신저 서버를 Active-StandBy 형태로 이중화 구성

• 서버장비 구매: 30백만원(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단위 : 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R2308WFTZSR	1	30,200,000	30,200,000
합 계			30,200,000

바.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 고도화: 47백만원 (구축비(추가), 260-01/일반연구비)

- (필요성) 세계 각국의 경기회복,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주요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WACS: Warning And Control System)의 경보산출 기준 마련,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등 서비스고도화를 통해 기업과 정부에서 원자재 가격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 강화 필요
- (추진내용)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추가 반영한 정량적 경보 산출 로직 개발 및 대응관련 정성적 판단 기준 마련을 통한 경보산출 고도화

(단위 : 원)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투입인력		0.5	0.6	1.2
노임단가		10,101,018	7,856,348	6,210,256
인건비		5,050,509	4,713,809	7,452,307
제 경비	직접인건비x1.1	5,555,560	5,185,189	8,197,538
기술료	(인건비+제 경비)x20%	2,121,214	1,979,800	3,129,969
부가세	(인건비+제 경비+기술료)x10%	1,272,728	1,187,880	1,877,981
합계		47,724,484		

② 정보화 협의체 운영: 7.2백만원(240-01/업무추진비)

- (필요성) 산업부 본부 외 16개 소속기관 및 41개 공공기관 등 전자정부 서비스 주체가 다양하고 산업·무역·에너지 등 경제관련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빅데이터 수집, 발굴, 품질관리 등을 위한 산·학·민·관 협의체 운영 필요
- (추진내용)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간의 시스템 통합관리 및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화 협의체 구성·운영
 - * 산업부 정보시스템(16개 소속기관 포함) 및 41개 공공기관 시스템 통합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0.3백만원x20회), 산업부 및 산하공공기관 정보화책임관 간담회(0.6백만원x2회)

②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 ('22)1,380백만원

① H/W 유지보수: 153백만원(유지보수, 210-15/관리용역비)

- * 행정정보시스템(20종): 152백만원, 디지털도서관(1종): 1백만원

(단위 : 원)

구분	HW		
	도입가	요율	유지보수 비용 (백만원 미만 절사)
2등급	720,576,000	7.3%	52,602,000
3등급	1,505,456,000	6.7%	100,866,000
합계	2,226,032,000		153,468,000

②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8백만원(유지보수, 210-15/관리용역비)

(단위 : 원)

구분	충간스위치(160대)		
	도입가	요율	유지보수 비용 (백만원 미만 절사)
합계	105,600,000	7.3%	7,708,800

③ 상용 S/W 유지보수: 255백만원(유지보수, 210-15/관리용역비)

* 행정정보시스템(20종): 237백만원, 디지털도서관(1종): 1백만원,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1종): 2백만원, 광업정보시스템(1종): 15백만원

(단위 : 원)

구분	HW		
	도입가	요율	유지보수 비용 (백만원 미만 절사)
2등급	2,311,159,000	10.8%	249,605,000
3등급	61,000,000	9.3%	5,673,000
합계	2,372,159,000		255,278,000

④ 개발 S/W 유지보수: 773백만원(유지보수, 210-15/관리용역비)

* 행정정보시스템(20종): 554백만원, 디지털도서관(1종): 16백만원,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1종): 22백만원, 광업정보시스템(1종): 148백만원, 무역구제업무시스템(1종): 18백만원, 수입동향시스템(1종) : 15백만원

(단위: 원)

구분	HW		
	구축비	요율	유지보수 비용 (백만원 미만 절사)
합계	7,730,000,000	10%	773,000,000

⑤ 위탁운영비 : 121백만원(위탁운영, 210-15/관리용역비)

가. 정보화사업(시스템) 운영지원: 64백만원

- 사업·품질관리 및 의사결정, 정보시스템 및 통합정보 보호시스템 운영지원, RPA SW 지원 등(기술자 1인)

* 산업부 대표 홈페이지, 16개 소속기관 홈페이지 및 각종 실물경제 지원시스템 등에 대한 업무지원·민원대응 소요가 많아 전문 인력(1명) 상주 필요

(단위: 원)

업무 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IT지원 기술자
투입인력		12
노임단가		3,840,221
인건비		46,082,652
제경비	직접인건비×15%	6,912,398
기술료	(인건비+제경비)×10%	5,299,505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5,829,456
합 계		64,124,011

※ SW기술자 평균임금(2020년 적용)

나. 광업정보시스템 위탁운영: 57백만원

- 사용자 업무지원, 민원대응 등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기술자 1인)

* 광업정보시스템은 118개 기관에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17년 온라인 민원발급건 수가 58,511건에 달하는 등 업무지원·민원대응 소요가 많아 전문 인력 상주 필요

⑥ 기타 운영비 (1종): 70백만원(기타 운영지원, 210-15/관리용역비)

-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WACS) 데이터 및 분석 자료 구매: 70백만원

* 국제 원자재 시장의 산업 관련 주요 16개 품목별 원자재 지수 데이터 및 분석 자료를 전문 분석기관을 통하여 제공받음

③ 정보보호체계구축 : ('22) 799백만원

① 정보보호 프로그램 구입: 288백만원(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 (필요성) 바이러스 감염 위협대응 및 운영체제 최신패치 등 보안기능 유지,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지능화·고도화 추세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추진내용) 부내 PC 및 정보시스템 서버 보호용 보안프로그램 구매

* 사용자 및 서버용 내·외부망 보안 프로그램 연간 라이선스 유지

(단위: 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백신	2,000	29,096	58,192,000
내PC지키미	2,000	23,570	47,140,000
패치관리시스템(PMS)	2,000	28,484	58,968,000
윈도우 10 (보안 업데이트)	500	247,500	123,750,000
합 계			288,050,000

(단위: 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백신	2,000	29,096	58,192,000
내PC지키미	2,000	23,570	47,140,000
패치관리시스템(PMS)	2,000	28,484	58,968,000
윈도우 10 (보안 업데이트)	500	247,500	123,750,000
합 계			288,050,000

② 정보보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00백만원 (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 (필요성) 보안나라시스템(비밀문서 유통 시스템) 등 주요 정보보호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 필요

(단위: 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웹방화벽	1	60,592,900	60,592,900
SSL 가시성 솔루션	1	85,800,000	85,800,000
보안통합관리 솔루션	1	53,900,000	53,900,000
문서암호화	1	42,786,700	42,786,700
리눅스 백신	30	592,900	17,787,000
보안사각 검출 시스템	1	44,000,000	44,000,000
취약점 통합 관리	1	26,000,000	26,000,000
L4스위치	1	48,000,000	48,000,000
DB암호화	1	21,428,000	21,428,000
합 계			400,294,600

③ 정보보안 수준강화: 45백만원(기타 운영지원, 210-15/관리용역비)

- (필요성) 지능화·고도화되는 해킹시도 및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 웹사이트 점검 및 부내 전 직원 맞춤형 보안교육 실시 필요
 - (공공 웹사이트 점검)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173식) 보안강화를 위해 비 표준 기술 제거, 유해 게시물 등록 차단, UI/UX 최적화 등 주기적 점검 진행
 - (보안교육) 부내 초직원 보안의식 개선을 위한 보안교육 주기적 실시, 맞춤형 교육(교재 및 영상 제작), 해킹침해 실전훈련 등 실시
- (추진내용) 공공웹사이트 점검, 맞춤형 정보보안 교육 실시

(단위: 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공공 웹사이트 점검	1식	40,000,000	40,000,000
전직원 보안의식 활성화 교육 (소속기관 포함)	10회	500,000	5,000,000
합 계			45,000,000

④ 메신저 웹도우 백업: 36백만원 (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 (필요성) 메신저 시스템의 사용자 데이터 이관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백업 서버의 데이터에 대해 일반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보안 대책 마련
- (추진내용) 데이터 백업 삭제 에이전트, 백업 스케줄러, 암호화 모듈 및 백업 서버 구매
- 서버장비 구매: 36백만원(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단위: 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R2308WFTZSR	1	9,000,000	9,000,000
백업/삭제 에이전트	1	14,000,000	14,000,000
백업 스케줄러	1	6,000,000	6,000,000
암호화 모듈	1	7,000,000	7,000,000
합 계			36,000,000

⑤ 광업정보시스템 정보보호체계 개선 : 30백만원(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 (필요성) 광업권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 업무망-인터넷간 보안취약점* 해소 및 개인정보 암호화**를 통해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 대응 필요
- * 민원발급시스템(인터넷망)과 광업정보 DB(업무망)가 연결되어 국정원 망분리 원칙 위배
- ** 인터넷망 DB서버 구축 시, 회원 개인정보(비밀번호)에 대한 일방향 암호화 필요
- (추진내용) 인터넷망 광업정보 DB서버 구매, 인터넷망 DB 개인정보 암호화 S/W 구매
- DB서버 구매 : 17백만원(구축비(추가),430-01/자산취득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체대상

(단위: 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DB서버(시스템S/W 포함)	1	17,000,000	17,000,000
합 계			17,000,000

- 개인정보 암호화 S/W 구매 : 13백만원(구축비(추가), 430-01/자산취득비)

(단위: 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보안S/W(DB암호화)	1	13,000,000	13,000,000
합 계			13,000,000

④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 ('22) 200백만원

- (필요성)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라 산업부 정보화 마스터플랜 및 통합 정보 시스템구축 계획 5년마다 의무 수립 필요 ('17년 수립후 5년 경과)

①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200백만원(ISP, 260-01/일반연구비)

(단위: 원)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IT기획자	IT 컨설턴트	업무 분석가	SW 아키텍트	데이터 아키텍트
투입인력	3.3	3.3	3.0	3.0	3.0
노임단가	8,124,332	9,589,296	11,123,879	8,814,805	9,134,617
인건비	26,404,079	31,165,212	33,371,637	26,444,415	27,403,851
인건비 합계	144,789,194				
제경비	직접인건비×15%		21,718,379		
기술료	(인건비+제경비)×10%		16,650,757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18,315,833		
백단위 이하 절사			-1,474,163		
합 계			200,000,00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단위:점)	목표	83	85	86	86	86.8	과거 3년간의 실적 (예상 실적 포함)을 비탕으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리커트 7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실적 = 환산점수 합계/응답자수)	업무포털 설문조사 시스템으로 부내직 원(약 30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실적	84.5	85.06	86.04	-	-			
	달성도	101.8	100	100	-	-			
행정정보시스템 이용률 (단위:%)	목표	50.92	52.00	53	54	54	과거 3년간의 실적 (예상 실적 포함)을 비탕으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sum \text{년간 업무포털이용자수} \div \text{총인원}) \times 100 = \text{시스템활용율}$	접속로그 분석
	실적	51.26	52.47	53.15	-	-			
	달성도	100.6	100.9	100.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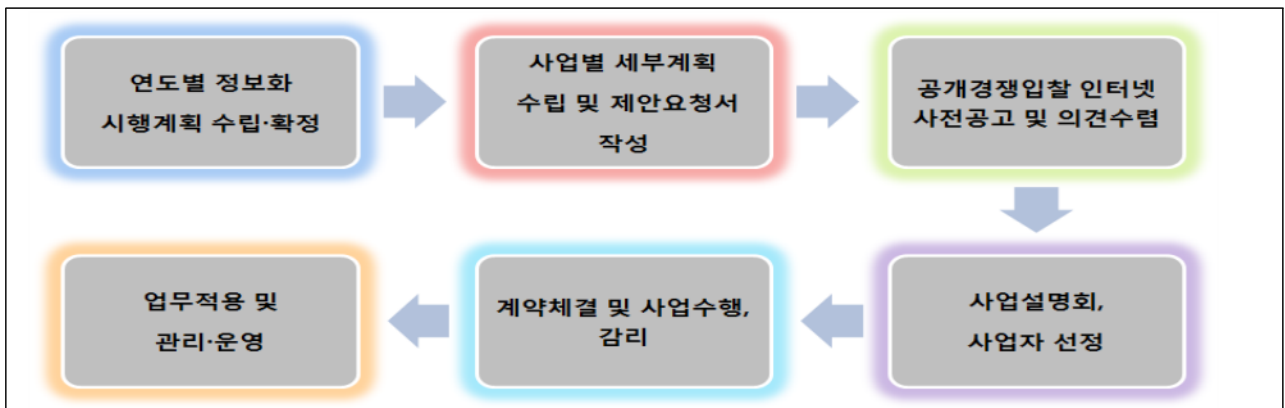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부내 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
- 정보보호체계 보안환경 등 인프라 강화로 사이버 침해사고 시 효과적인 대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3,554	3,492	3,378	3,321	3,288	
'21~'25		3,220	3,864	4,637	4,869	5,11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정책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고도화
- 홈페이지 등 안정적 운영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고객만족도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평가시기	회계/기금	평가등급	비고
2018년도	일반	보통	
2019년도	일반	보통	
2020년도	일반	보통	

12) 부처 건의사항

- 산업부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정책업무 지원, 대국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기 운용한 정보시스템의 단계별 고도화 필요
- 나날이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안 대응체계 강화 필요 (방화벽 등 노후 H/W 교체 및 보안시스템 개선)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2,646	2,646	69	-	-	-	2,715	2,690	101.7	99.1	-	25
2019	2,855	2,855	-	-	-	-	2,855	2,812	98.5	98.5	-	43
2020	3,554	3,554	-	-	-	-	3,554	3,551	99.9	99.9	-	3
2021	3,220	3,220	-	-	-	-	3,220	3,175	98.6	98.6	-	45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 불용(25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사업 등 낙찰차액
2019	- 불용(43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사업 등 낙찰차액
2020	- 불용(3백만원) : 집행잔액
2021	- 불용(45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사업 등 낙찰차액

사 업 명
(2)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71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일반회계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3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김현철	김다은	박수민
		044-203-5530	044-203-5537	044-203-556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697	965	965	1315	847	-118	-12.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637	766.95	697 [697]	27.8	42.2	965	965	992.8	873.9	116.3	2.6	847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115	115	80.8 [80.8]	7.8	26.4	122	122	129.8	102.5	27.2	0.1	97.4
· 규제개혁 및 갈등 관리지원	96	96	94.8 [94.8]	-	1.2	117	117	117	114.5	-	2.5	94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40	40	40 [40]	-	-	40	40	40	40	-	-	50
· 정책지원 연구	386	515.95	481.4 [481.4]	20	14.6	386	386	406	401.6	4.4	-	486
· 자체평가 및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	-	-	-	-	230	230	230	145.3	84.7	-	91.6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	-	-	-	-	70	70	70	70	-	-	28
○ 비목별 분류(합계)	637	766.95	697 [697]	27.8	42.2	965	965	992.8	873.9	116.3	2.6	847
· 일반수용비(210-01)	68.6	68.6	67.4 [67.4]	-	1.2	160.8	160.8	160.8	160.7	-	0.1	79.466
· 임차료(210-07)	4	4	-	-	4	4	4	4	4	-	-	-
· 일반용역비(210-14)	86	86	78.2 [78.2]	7.8	-	86	86	93.8	66.6	27.2	-	105
· 국내여비(220-01)	4	4	-	-	4	4	4	4	4	-	-	-
· 국외여비(220-02)	14	14	-	-	14	14	14	14	14	-	-	-
· 사업추진비(240-01)	9.4	9.4	4.9 [4.9]	-	4.5	9.4	9.4	9.4	9.4	-	-	4.934
· 일반연구비(260-01)	440	569.95	535.4 [535.4]	20	14.6	670	670	690	598.4	89.1	2.5	641.6
· 포상금(310-03)	11	11	11 [11]	-	-	16.8	16.8	16.8	16.8	-	-	1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37	766.95	697 [697]	27.8	42.2	965	965	992.8	876.2	116.3	0.3	847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115	115	81 [81]	7.8	26.4	122	122	129.8	102.5	27.2	0.1	97.4
-일반수용비(210-01)	28	28	27	-	-	32.8	32.8	32.8	32.7	-	0.1	29.466

-일반용역비(210-14)	46	46	[27] 38 [38]	7.8	-	46	46	46	18.8	27.2	-	24
-임차료(210-07)	4	4	0	-	4	4	4	4	4	-	-	-
-국내여비(220-01)	4	4	0	-	4	4	4	4	4	-	-	-
-국외여비(220-02)	14	14	0	-	14	14	14	14	14	-	-	-
-사업추진비(240-01)	9	9	5 [5]	-	4.5	7.4	7.4	7.4	7.4	-	-	4.934
-포상금(310-03)	11	11	11 [11]	-	-	13.8	13.8	13.8	13.7	-	-	16
· 규제개혁 및 갈등 관리지원	96	96	96 [96]	-	1.2	117	117	117	114.5	-	2.5	94
-일반수용비(210-01)	41	41	41 [41]	-	-	61	61	61	61	-	-	40
-사업추진비(240-01)	1	1	0	-	1.2	2	2	2	2	-	-	-
-일반연구비(260-01)	54	54	54 [54]	-	-	54	54	54	51.5	-	2.5	54
· 공공데이터 이용활 성화	40	40	40 [40]	-	-	40	40	40	40	-	-	50
-일반용역비(210-14)	40	40	40 [40]	-	-	40	40	40	40	-	-	40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10
· 정책지원 연구	386	515.95	481 [481]	20	14.6	386	386	406	401.6	4.4	-	486
-일반연구비(260-01)	386	515.95	481 [481]	20	14.6	386	386	406	401.6	4.4	-	486
· 자체평가 및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	-	-	-	-	230	230	230	145.3	84.7	-	91.6
-일반연구비(260-01)	-	-	-	-	-	230	230	230	145.3	84.7	-	91.6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	-	-	-	-	70	70	70	70	-	-	28
-일반수용비(210-01)	-	-	-	-	-	-	67	67	67	-	-	10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15
-포상금(310-03)	-	-	-	-	-	-	3	3	3	-	-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부내 조직문화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변화관리 활동 지원을 통해 조직 생산성 제고 및 직원역량 강화 도모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규제비용·편익분석, 자체규제개혁위원회 및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등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기반 마련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다량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민관 협의회 운영 등을 수행 및 공공데이터 표준체계 마련 및 품질 강화 실시,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의사결정 활용을 위한 데이터분석 실시,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로 데이터행정 기반 구축 및 산업부 데이터 기반행정 중장기계획 수립
- (정책지원 연구) 재정, 정책홍보, 조직관리 등 정책 지원 분야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
- (부내 및 기타공공기관 평가업무 지원) 평가단 구성 및 평가기준 마련 등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부내 자체평가 업무수행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부내 직원 및 국민대상 각종 지원 제도 기반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변화관리능력개발(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무회의 의결사항
 -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직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정책수립, 집행 등에서 제반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04. 9. 14 국무회의 시 교육 훈련예산의 확충을 결정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 (규제개혁)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하여 신설·강화규제 도입 시 규제심사 및 기존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혁신'은 기업인과의 신년 간담회 대통령 말씀 중 주요내용으로 포함

<행정규제기본법상 관련 조항>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 영향 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 후 정비하여야 한다.

<'19년 기업인과의 대화 내용>

·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
(‘19년 기업인과의 대화 중)

- (갈등관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부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중 관련 조항>

제11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판단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 (국무총리) 말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부는 공공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①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②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 및 지원 할 수 있음

< 공공데이터 관련 대통령 및 국무총리 말씀 >

▶('VIP 말씀)

① “개인정보 외의 공공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함.”(‘18.1.16)

② 독도·동해 표기오류 엄중경고(‘19.9.16)

▶(국무총리 말씀)

① “공공데이터의 공개 확대, 정확도 제고, 표준화 필요”(‘18.2.21),

②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 필요”(‘18.2.26),

③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18.3.12)

④ 웹사이트 일제점검 지시(‘19.9.27)

○ 이에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 웹사이트 및 홍보콘텐츠 관리 개선방안(‘19.11.22)을 마련하고, 소관부처의 자체 수행방안 마련 요구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통한 행정혁신 추진

-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법」(‘20.12월) 시행 및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1년~’23년) 확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제12조

※ 지원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제12조

- ▶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영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기술적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설치할 수 있음

- (자체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33조

※ 지원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②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대통령 말씀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 지원근거 : 「적극행정 운영 규정」

- ▶ 제8조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제11조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둔다
- ▶ 제14조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 ▶ 제18조 ②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대통령 말씀(수석·보좌관 회의, 국무회의)

< 적극행정 관련 대통령 말씀 >

- ❖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려면 현장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 "모든 부처가 장관 책임 아래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면책하며 나아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주시기 바람"(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20.2.10)
- ❖ "유례없는 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함. 비상한 대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함"(대통령, 국무회의, '20.3.17)

② 추진경위

○ **변화관리능력개발(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중소·중견기업, 지방경제, 서민 등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기업도우미로서 산업부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직원 능력개발 사업으로 반영('05년)
- 행안부 정부혁신종합 추진계획('18.03.), 인사혁신처 근무혁신 종합대책('18.01)에 따라 산업부 내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변화관리 사업 시행 중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 **(규제개혁)**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98.3.1)되면서 규제 신설·강화시 자체규제 심사가 법령 제·개정 절차상 필수 절차로 정착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일) 이후 '규제개혁신문고'가 설치되었으며, '16년부터 '규제비용총량제' 시행 → 산업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개혁 교육 등 실시
- **(갈등관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07.2.12)에 따라 산업부 갈등관리 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 → 밀양송전선로 건설 등 대규모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갈등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에 산업부는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및 갈등관리심의 등을 추진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13년부터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17년말 기준 736건)

- 한국인 인체치수, 전주번호, 유류정보, 해외시장 및 전시회정보 등을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개발* 등을 견인
* 유류정보를 활용하여 78명의 일자리 창출 및 32건의 서비스 개발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 시행('20.12)에 따라 공공기관 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혁신 업무 추진 실시

○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 (기타공공기관) '13.12월「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이후, 기타공공기관의 경영 개선을 위해 주무부처에서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14.3.20)하여 **매년 경영평가 실시**
- (자체평가) '01.5.1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본격 실시 → '01.9.24(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정하여 매년 자체평가 실시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 정부는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발표('19.3.14.)
- 그 후속조치로 적극행정의 체계적 제도화를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6.)
- 이와 함께, '19년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실행('19.07.) 및 '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20.05.)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3) '22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1)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2021) 122 → (2022요구) 97.4 백만원, -20.2%

- (요구) '21년 정부업무평가 특정요소 중 정부혁신부문 실행계획 수립*에 따른 평가대응 요구 및 직원역량 향상 강화를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분위기 확산 등을 감안.

- * 행안부 주관 2021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21.3월)

- (산출)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혁신교육: **46.4백만원**

- 자기계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4백만원

- * 똑똑똑 MoTie 아카데미 24백만원 = 2.4백만원×10회

-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 : 22.4백만원

- * 정책역량 증진을 위한 자율적 학습조직 운영 11.4백만원 = 0.57백만원×20회

- *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관련 간담회, 워크숍 등 지원 9백만원 = 0.9백만원×10회

- *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지원 2백만원 = 0.2백만원×10회

- 협업행정을 위한 소통촉진 프로그램: **38백만원**

- 부내·외 크로스미팅 및 직급별 협의체 운영 : 3백만원

- * 크로스미팅·직급별 협의체 0.1백만원 x 30팀 = 3백만원

- 공공기관 · 업종별 협단체 회의 및 정책자문위 운영 등 : 9백만원

- * 회의운영 및 준비(다과) 등 : 0.45백만원 × 20회

- 정책현장 방문프로그램 지원 : 26백만원

- * 실·국별 정책현장 방문 지원 : 2.6백만원 × 10팀

-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 **13백만원**

- 분기별·올해의 우수부서 : 11백만원

- * 포상금: 10백만원 = 분기별 우수부서 (2백만원)× 4회 + 올해의 우수부서(3백만원)

- 올해의 산업통상자원인 : 2백만원

- * 포상금 : 1백만원 = 0.5백만원 x 2회

- * 상패제작 : 1백만원 = 0.5백만원 x 2명

(2)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지원 : (2021) 117 → (2022요구) 94백만원, -24.5%

- (요구)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및 강화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횟수 증가('21년 총 14회 개최), 산업부 전체 법령정비 추진에 따라 분야별 연구용역 추진 필요(세부 분야별 정비 추진 예정 및 연구용역 실시) 등을 감안

- (산출)

○ 자체규제개혁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35백만원**

■ 규제개혁위원회 : 32백만원

* (회의) 12명×10회×0.25백만원 = 30백만원

* (안건 인쇄 및 회의준비 등) 0.2백만원×10회 = 2백만원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3백만원

* (대면회의) 10명×2회×0.125백만원 = 2.5백만원

* (안건 인쇄 및 회의준비 등) 0.25백만원×2회 = 0.5백만원

○ 규제개혁 교육 및 갈등관리 교육 : **1백만원**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법안 전체교육 : 1백만원

* 강사료 0.5백만원 x 2회 = 1백만원

○ 규제개혁, 정부성과 등 대표사례 홍보물 제작 : **4백만원**

* 상하반기 2회× 2백만원 = 4백만원

○ 규제개혁 및 창의혁신 연구용역 : **54백만원**

■ 신설·강화 및 폐지·완화 규제 비용, 편익분석 : 27백만원

* 15건× 건당 1.8백만원 = 27백만원

■ 규제개혁 및 창의혁신 방안 연구 : 27백만원

* 규제 및 갈등관리 방안 연구 2개 분야 x 13.5백만원 = 27백만원

(3)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 (2021) 40 → (2022요구) 50백만원, +12.5%

- (요구) 산업 및 에너지 등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다량의 데이터 이용활성화 촉진 확산을 위해 경진대회 등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 (산출)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50백만원**

■ 공공데이터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세미나 : 20백만원

* 협의회 구성·운영 12백만원 + 임차료, 인쇄비 등 8백만원 = 20백만원

■ 공공데이터 활용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20백만원

* 공모전 홈페이지 운영, 홍보, 시상식 개최 등 20백만원

■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체계 기반 마련 연구 : 10백만원

(5) 정책지원 연구 : (2021) 386 → (2022요구) 486백만원, +25.9%

- (요구) 재정·조직관리, 국민인식 제고, 대내외 정책 홍보지원 등 정책분야 역량강화 및 행안부 '21년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평가 부문 수립에 따른 세부 평가지표 별 대응 마련필요

- (산출)

○ 정책홍보,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태진단 등 운영관련 용역비 : **486백만원**

* 정책홍보, 재정사업평가, 실태진단 등 운영 관련 용역 10건 × 약 48.6백만원 = 486백만원

(6)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 (2021) 230 → (2022요구) 91.6백만원, -60.1%

- (요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검증된 전문가 평가단 구성 및 구체적 평가기준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

- (산출)

○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 **91.6백만원**

* 자체평가 용역 45.8백만원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용역 45.8백만원 = 91.6백만원

(7)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 (2021) 70 → (2022요구) 28백만원, -60%

- (요구) 현 정부 출범이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부내 직원 및 국민대상 각종 지원제도 기반을 구축할 필요
- (산출)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및 적극행정 대국민 홍보 : **15백만원**
 -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 준비 및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 지원 용역 = 15백만원
 - 적극행정 면책관련 소송비 지원 : **10백만원**
 - * 적극행정 징계절차 지원 5백만원(1백만원x5회) + 소송지원 5백만원(2.5백만원x2회) = 10백만원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 **3백만원**
 - *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25만원x3명x4회 = 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변화관리 마일리지 획득자 수 (단위: 명)	목표	850	-	-	-	-	기재부 지침에 따라 '22년 성과관리 대상 제외	변 화 마 일 리 지 획득한 직원 수	변화관리시스템상 에서 마일리지 현황 조회
	실적	851	-	-	-	-			
	달성도	100%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700명
2019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1010명
2020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310명
2021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500명(~'21.8월)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750	965	965	965	970	
'21~'25		965	1315	1320	1330	134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최근 지적사항 반드시 업데이트
- 지적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 보고서명·감사명 등 출처 기재

* 지적사항 말미에 괄호()로 기관명 및 출처 표시

1) 국회(예정처) 지적

- 변화관리 능력개발 사업의 국내여비 예산 조정 필요(2018)
- 연례적인 국외여비 조정 집행을 개선할 필요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국외여비로 조정하지 않고 국내여비를 국내교육훈련에만 집행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정책대상자와의 소통 및 현장중심의 업무수행을 중요시하는 업무분위기의 형성과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조직구성원의 역량강화 도모
-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심사 강화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및 품질제고 사례 발굴,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혁신성장 기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부내 및 기타공공기관 평가업무 지원 : 객관적인 평가기반 구축, 평가 신뢰도 제고
- 적극행정문화 정착화 및 관련 지원 활성화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대응 및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 극복 도움

12)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254	-	254	11	±21.5	-	265	172.5	67.9	65	77	15.5
2019	750	-	750	77	±20	-	827	692.4	92.3	83.7	129.9	8.54
2020	637	-	637	129.9	-	-	767	697	109.4	90.9	27.8	42.2
2021	965	-	965	27.8	18	-	992.8	255.8	26.5	25.8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2019										
2020										
2021.12월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 : 77백만원,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과 연구용역 완성도 증진을 위해 이월 - 조정 : 15백만원, 변화관리 강연 위탁용역 추진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조정 - 조정 : 6.5백만원, 국내 및 국외연수 차량 임차료 지원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임차료로 조정 - 불용 : 15.5백만원, 용역 규모 축소 시행과 국내여비 예산 절감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 20백만원, 정책현장방문 프로그램 용역지원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조정 - 전용 : 3.9백만원, 국내 및 국외연수 차량 임차료 지원을 위해 타 사업 임차료 전용
2020	- 해당없음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 18백만원, 적극행정 운영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조정 - 조정 : 112백만원,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등으로 기존사업 추진 어려움 및 효과적인 행정능력 사업 집행을 위해, 일반수용비의 일반용역비로 조정 - 전용 : 18백만원,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등으로 기존사업 추진 어려움 및 효과적인 행정능력 사업 집행을 위해, 국내·외여비의 일반용역비로 자체전용(국가재정법 46조3항, 47조3항의거) - 불용 : 2.5백만원, 규제개혁 및 창의혁신 방안연구 추진 간,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한 불용

☐ 2021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1.2.1.)	행정능력향상 및능력개발 (7132-303)	210-01	18	행정능력향상 및능력개발 (7132-303)	210-14	적극행정 운영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반응역비로 조정
조정 (‘21.11.9.)	행정능력향상 및능력개발 (7132-303)	210-01	112	행정능력향상 및능력개발 (7132-303)	210-14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등으로 기존사업 추진 어려움 및 효과적인 행정능력 사업 집행을 위해, 일반수용비의 일반용역비로 조정
전용 (‘21.11.4.)	행정능력향상 및능력개발 (7132-303)	220-01 220-02	18	행정능력향상 및능력개발 (7132-303)	210-14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등으로 기존사업 추진 어려움 및 효과적인 행정능력 사업 집행을 위해, 국내·외여비의 일반용역비로 조정

☐ 2021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예비비 배정 사유(날짜)
				사유(‘21.2.9.)
합 계				

라. 기타 추가자료

1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자체평가 용역지원

□ 현황

- 매년 산업정책과 정책연구용역예산(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을 지원받아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자체평가 용역 수행

< '17년 ~ '19년 평가 용역예산 현황 >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용역

'17년 : 약 0.9억원 / '18년 : 약 1.09억원 / '19년 : 1억원 / '20년 1억원

▶ 자체평가 수행 용역

'17년 : 약 1.27억원 / '18년 : 약 1.23억원 / '19년 : 1.3억원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및 평가기준 마련 등을 목표로 하는 위탁 용역임을 고려, 집행 효율성을 위해 소관 예산*으로 이관 필요

* 산업정책과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 예산에서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일반연구비(260-01) 예산으로 이관

□ 지원 필요성

①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1.1억원)

- '13.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이후, 기타공공기관의 경영 개선을 위해 주무부처에서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 지원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 ▶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영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기술적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설치할 수 있음

② 자체평가 수행 용역(1.2억원)

- 우리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평가 운영의 객관성·신뢰도 제고 필요

- 자체평가위원회 정책모니터링 및 정책토론회, 정책만족도 조사 등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운영

※ 지원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②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현황) 현 정권 출범이후, 급변하는 행정환경 대응 및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 극복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방안 실시 중*('19.3~)

* 관계기관 합동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발표('19.3~) → '19년 산업부 적극행정 실시 계획 수립('19.7.) → '20년 산업부 적극행정 실시계획 수립(~'20.5.)

< 적극행정 관련 대통령·국무총리 말씀 >

- ❖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함. 각 부처 장관들께서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람('19.2.12. 국무회의, 대통령)
- ❖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더 중요, 각 장관은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마련·시행하고,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해 적극 행정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할 것('19.7.30. 국무회의, 국무총리)

- (문제점)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각종 실행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지원예산은 반영이 미비한 편

* '19년 적극행정 예산 : 0원 → '20년 적극행정 예산 :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예산 내 용역 예산 등을 활용하여 실시 중이나 제한적(약 40백만원)

□ 지원 필요성

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및 적극행정 대국민 홍보

※ 지원근거 : 「적극행정 운영 규정」

- ▶ 제8조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제11조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둔다
- ▶ 제14조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 ▶ 제18조 ②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원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 ▶ 제7조 ① :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 제13조 : 위원회 회의 또는 관련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안전검토수당, 회의참석수당 등),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지원근거 :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152(20.5.4.))」
-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활성화) 격월 개최 원칙으로 강화, 위원정수 확대(15명 이내→30명 이내)
- ※ 지원근거 : 「2020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요청(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1721(20.4.20.))」
- ▶ 적극행정 추진 공감대 확산 및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관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구성
 - ▶ 구성 및 운영 : 일반국민 등 8인, 격월 단위 대면/서면 회의개최
 - ▶ 역할 : 국민의 여론 및 개선 아이디어 제시, 국민체감 우수사례 발굴·심사 및 적극행정 홍보활동 참여, 국민체감도 설문 응답 등
 - ▶ 필요예산 : 모니터링단 활동 수당·경비(8*150,000*6=720만원) 등

② 적극행정 면책관련 소송비 지원

- 우리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평가 운영의 객관성·신뢰도 제고 필요

3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및 데이터 활용

◇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체계 기반 마련 및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적극 추진을 위해 2.2억원 반영 필요

□ 현 상황

- 산업부·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추진을 위해 비즈니스 아이디어 모델 발굴(공모전) 및 민관협의회 운영 중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 시행(20.12)에 따라 공공기관 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업무를 추진 중 이나, 수행인력 및 예산은 미반영

□ 예산반영 필요성

-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체계 기반 마련
 -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활용을 위한 데이터분석 수요 파악 및 데이터분석, 데이터기반행정 시범사례 창출 등 추진
 -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로 데이터행정 기반 구축

- 부내 구성원의 데이터역량 진단, 문제점 분석, 데이터활용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 산업부 데이터기반행정 중장기계획 수립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적극 추진

- 산업부 공공데이터 표준체계 마련(에너지발전사 등 분과별 표준 등)
- 개방된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한 오류 정비, 품질 향상
- 공공데이터 활용 데이터분석 경진대회 개최 등
- 산업부·산하기관 데이터 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 소요예산('22년, 220백만원)

구 분	예산액(백만원)	
	당초	요구
공공데이터이용활성화 프로그램 지원(공모전 운영 및 민관협의회)	40	80
- 공공데이터 표준체계 마련 및 품질 강화	0	8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통한 행정혁신 추진	0	60

참 고

산업부 및 산하기관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건수

*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내 산업부 소관 개방 실적(목록기준) 집계(21.4.8일 기준)

구분	기관명	'20년		'21년		
		개방실적	(누계)	개방계획 (기본계획)	추가개방계획 (시행계획)	실적 (예상치)
0	산업통상자원부	232	302	0	0	302
1	한국전력공사	76	160	0	1	161
2	한국석유공사	34	40	0	0	40
3	한국가스공사	164	176	20	40	236
4	한국지역난방공사	62	82	0	0	82
5	한국수력원자력(주)	102	143	0	20	163
6	한국남동발전(주)	108	117	54	0	171
7	한국남부발전(주)	90	136	0	0	136
8	한국동서발전(주)	48	74	0	2	76
9	한국서부발전(주)	13	63	2	2	67
10	한국중부발전(주)	20	39	1	1	41
11	한국광물자원공사	3	23	0	0	23
12	대한석탄공사	17	54	0	1	55
13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주)	16	16	1	5	22
14	한전KDN(주)	37	42	0	3	45
15	한전KPS(주)	8	28	10	7	45
16	(주)한국가스기술공사	30	31	0	3	34
17	한국산업단지공단	1	4	0	0	4
18	한국디자인진흥원	3	14	1	0	15
19	한국세라믹기술원	44	58	0	0	58
20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24	30	0	0	30
2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1	20	0	6	26
2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	39	0	71	110
23	한국전기안전공사	6	94	0	6	100
24	한국가스안전공사	64	72	3	6	81
25	한국에너지공단	37	55	0	24	79
26	한국광해관리공단	34	50	2	2	54
27	한국전력거래소	63	113	49	0	162
2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5	23	0	3	26
29	한국석유관리원	15	18	20	1	39
30	한국무역보험공사	49	64	0	8	72
3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	10	0	2	12
32	한전원자력연료(주)	2	31	0	0	31
33	(주)강원랜드	6	9	1	3	13
35	전라물자관리원	0	4	0	1	5
3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6	28	0	0	28
3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	4	0	1	5
38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0	0	0	0	0
39	한국전력경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0	0	0	0	0
40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0	0	0	0	0
합계		1,442	2,266	164	219	2,649

사 업 명
(3)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71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운영지원과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301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본부정책수립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재무팀	김범식 팀장	-	정재경
		044-203-5080	-	044-203-508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1,304	1,865	1,865	2,202	1,146	△719	△38.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7월말)						2022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304	1,317	1,144	21	153	1,865	1,865	1,886		-	-	1,146
· 무기계약직 보수 등	32	32	28	-	4	34	34	34		-	-	36
· 업무보고 준비 및 시책홍보	583	583	555	21	7	1,108	1,108	1,215.4		-	-	551
· 차량·통신·사찰지원 등	126	126	96	-	30	126.6	126.6	126.6		-	-	107
· 해외파견자 임차지원 등	295	295	280	-	15	330	330	243		-	-	280
· 연구용역	72	85	83	-	2	71	71	71		-	-	71
· 정책지원 우수부서 포상 등	24	24	12	-	12	24	24	24		-	-	12
· 업무협의 여비	160	160	77	-	83	160	160	160		-	-	77
· 산업 통상자원 정책 지원 간담회	12	12	12	-	-	12	12	12		-	-	12
○ 비목별 분류(합계)	1,304	1,317	1,144	21	153	1,865	1,865	1,886		-	-	1,146
· 상용임금(110-03)	27	27	25	-	2	28.5	28.5	28.5		-	-	29.5
· 일반수용비(210-01)	307.6	307.6	305	-	2	607.5	607.5	695		-	-	308
· 임차료(210-07)	353	353	338	-	15	388	388	301		-	-	338
· 유류비(210-08)	44	44	19	-	25	44	44	44		-	-	3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3.9	23.9	19	-	5	24	24	24		-	-	19
· 복리후생비(210-12)	0.4	0.4	-	-	0.4	0.4	0.4	0.4		-	-	0.4
· 국내여비(220-01)	114	114	77	-	37	114	114	154		-	-	77
· 국외업무여비(220-02)	46	46	-	-	46	46	46	6		-	-	0
· 사업추진비(240-01)	12	12	12	-	-	12	12	12		-	-	12
· 일반연구비(260-01)	347	360	332	21	7	571	571	591.4		-	-	314
· 포상금등(310-03)	24	24	12	-	12	24	24	24		-	-	12
· 고용부담금(320-09)	5.1	5.1	3	-	2	5.1	5.1	5.1		-	-	6.1
· 공사비(420-03)	0.6	0.6	-	-	0.6	0.6	0.6	0.6		-	-	0.1

	2020					2021("21.7월말)						2022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04	1,317	1,144	21	153	1,865	1,865	1,886	1,886	-	-	1,146
· 무기계약직 보수등	32	32	28	-	4	34	34	34	34	-	-	36
-상용임금(110-01)	27	27	25	-	2	28.5	28.5	28.5	28.5	-	-	29.5
-복리후생비(210-12)	0.4	0.4	-	-	0.4	0.4	0.4	0.4	0.4	-	-	0.4
-고용부담금(320-09)	5.1	5.1	3	-	2	5.1	5.1	5.1	5.1	-	-	6.1
· 업무보고 준비 및 시책홍보	583	583	555	21	7	1,108	1,108	1215.4	1215.4	-	-	551
-일반수용비(210-01)	308	308	306	-	2	607	607	695	695	-	-	308
-일반연구비(260-01)	275	275	249	21	5	500	500	520.4	520.4	-	-	243
· 차량·통신·시설지원 등	126	126	96	-	30	126.6	126.6	126.6	126.6	-	-	107
-임차료(210-07)	58	58	58	-	-	58	58	58	58	-	-	58
-유류비(210-08)	44	44	19	-	25	44	44	44	44	-	-	30
- 시설 장 비 유 지 비 (210-09)	24	24	19	-	5	24	24	24	24	-	-	19
-공사비(420-03)	0.6	0.6	-	-	0.6	0.6	0.6	0.6	0.6	-	-	0.1
· 해외파견자 임차지원 등	295	295	280	-	15	330	330	243	243	-	-	280
-임차료(210-07)	295	295	280	-	15	330	330	243	243	-	-	280
· 연구용역	72	85	83	-	2	71	71	71	71	-	-	71
-일반연구비(260-01)	72	85	83	-	2	71	71	71	71	-	-	71
· 정책지원 우수부서 포상 등	24	24	12	-	12	24	24	24	24	-	-	12
- 포상금등(310-03)	24	24	12	-	12	24	24	24	24	-	-	12
· 업무협의 여비	160	160	77	-	83	160	160	160	160	-	-	77
-국내여비(220-01)	114	114	77	-	37	114	114	154	154	-	-	77
-국외여비(220-02)	46	46	-	-	46	46	46	6	6	-	-	-
· 산업 통상 자원 정 책 지원 간담회	12	12	12	-	-	12	12	12	12	-	-	12
-사업추진비(240-01)	12	12	12	-	-	12	12	12	12	-	-	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통상자원정책의 원활한 수립과 추진을 위해 각 실국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 특히, 타 부처에 비해 매우 부족한 기본경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확대가 불가피
-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등을 위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도 필요
- 아울러, 세종시 이전 등에 따른 서울 출장 등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발전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등
- 대외무역법 제1조, 제4조, 제7조, 제8조 등
- 에너지법 제1조, 제4조, 제12조, 제16조 등

② 추진경위

- 10~12회계연도 19억원 예산규모 편성
- '13회계연도-전년 대비 1억원 삭감, '14회계연도-전년 대비 2.3억원 삭감되는 등 2회계연도 동안 총 3.3억원 삭감되어 정책추진 활동 지원 애로
- '15, '16, '17회계연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18회계연도에 일반수용비 1.2억원 등 총 1.6억원 삭감되어 재정 지원 애로
- '19, '20년도 13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동 예산규모로는 각 실국의 정책추진 활동의 적극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
- '21년도 주요 정책 홍보 강화 등을 위해 18억원 규모 편성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2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무기계약직 보수 등 36백만원

: ('21) 34백만원 → ('22요구) 34백만원

- (산출) (상용임금 110-03) 무기계약직 상용임금 1명 × 12개월 × 2.458백만원 = 29.5백만원
(복리후생비 210-12) 복리후생비 1명 × 0.4백만원 = 0.4백만원
(고용부담금 320-09) 퇴직금 1명 × 6.1백만원 = 6.1백만원

② 연두 업무보고, 정부업무평가, 주요시책 홍보 등 : 551백만원

: ('21) 1,108백만원 → ('22요구) 551백만원, 557백만원 감액

- (산출) (일반수용비 210-01) 연두업무보고 등 5건 × 49.4백만원 = 247백만원
(일반수용비 210-01) 부처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 등 3건 × 7백만원 = 21백만원
(일반수용비 210-01) 주요시책 홍보 등 자료인쇄 2건 × 19.5백만원 = 40백만원
(일반연구비 260-01) 디지털콘텐츠 홍보 1건 × 243백만원 = 243백만원

③ 차량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 지원 등 107백만원

: ('21) 126백만원 → ('22요구) 107백만원, 19백만원 감액

- (산출) (임차료 210-07) 장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차량임차 3대 × 18백만원 = 54백만원
(임차료 210-07) 부내 행사차량 임차 8회 × 0.5 = 4백만원
(유류비 210-08) 관용차량 유류지원 30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차량유지보수 8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10-09) 통신시설유지보수비 11백만원
(공사비 420-03) TF조직 등 사무실 공사 0.1백만원

④ 해외파견자 임차지원 등 280백만원

: ('21) 330백만원 → ('22요구) 280백만원, 50백만원 감액

- (산출) (임차료 210-07) 국제기구 파견관 주택임차 지원 280백만원

⑤ 연구용역비 71백만원

: ('21) 71백만원 → ('22요구) 71백만원

- (산출) (일반연구비 260-01) 산업통상자원부 기록물 관련 용역 2건 × 35.5백만원 = 71백만원

⑥ 정책지원 우수부서 포상 등 12백만원

: ('21) 24백만원 → ('22요구) 12백만원, 12백만원 감액

- (산출) (포상금등 310-03) 우수부서 포상 10회 × 1.2백만원 = 12백만원

⑦ 부처간 또는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실무협의를 위한 여비 및 업추비 : 89백만원

: ('21) 172백만원 → ('22요구) 89백만원, 83백만원 감액

- (산출) (국내여비 220-01) 국내여비 × 12개월 = 77백만원
(사업추진비 240-01)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간담회 개최를 위한 업추비 10회 × 1.2백만원 = 1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 전화친절도 조사, 비전자문서 관련 연구 등 용역 수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2019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메세지 제작, 재무결산 용역 수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2020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메세지 제작, 규제사무 정비방안 용역수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2021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메세지 제작 등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홍보 및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정책지원 강화
- 해외파견관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 활동 및 외국정부와 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주요업무	수행 주체
추진방향 설정	전반적인 연간 추진방향 설정	각 실국
▼		
추진계획 수립	당해연도 연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각 실국
▼		
사업 수행	계획에 따라서 각 건별로 사업 수행	각 실국
▼		
소요 예산 요청	각 건별로 예산지출 요청	각 실국
▼		
예산 지출	각 개별 건별로 예산 지출	재무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1,304	1,304	1,304	1,304	1,304	
'21~'25		1,865	1,865	1,865	1,86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홍보 및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정책지원 강화 계속 추진
- 해외파견관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 활동 및 외국정부와 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산업통상자원정책의 원활한 수립과 추진을 위해 각 실국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특히, 타 부처에 비해 부족한 기본경비 상황과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홍보 강화 등을 위한 재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1,414	-	1,414	136	-	24	1,574	1,343	94.9	85.3	192	39
2019	1,308	-	1,308	192	△19	-	1,481	1,415	108.1	95.5	13	52
2020	1,304	-	1,304	13	-	-	1,317	1,144	87.7	86.8	21	153
2021	1,865	-	1,865	21	-	-	1,886	745	39	39	-	-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공사비 소요 반영 : - 추경 편성 사유 :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연구용역비 이월 및 집행잔액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본부기본경비 국내여비 부족에 따른 전용 - 예비비 배정 사유 : 없음 : - 추경 편성 사유 :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연구용역비 이월 및 집행잔액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연구용역비 이월 및 집행잔액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없음

☐ 2021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4)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7142-3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1	기획조정실		110	116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42	317
명칭	산업통상자원행정지원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보호담당관	류동희		김진영
		044-203-5590		044-203-559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1,769	1,709	1,709	2,285	2,285	576	33.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789	1,789	1,769	-	20	1,709	1,709	1,709	1,685	-	24	2,285
·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	1,159	1,159	1,144	-	15	1,240	1,240	1,240	1,218	-	22	1,240
·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630	630	625	-	5	469	469	469	467	-	2	1,045
○ 비목별 분류(합계)	1,789	1,789	1,769	-	20	1,709	1,709	1,709	1,685	-	24	2,285
· 일반수용비(210-01)	10	10	9	-	1	10	10	10	10	-	0	10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380	380	380	-	0	400	400	400	382	-	18	400
· 관리용역비(210-15)	769	769	755	-	14	830	830	830	826	-	4	830
· 자산취득비(430-01)	630	630	625	-	5	469	469	469	467	-	2	1,0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 o 에너지·무역·산업 등 실물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산하기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o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안관제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
 -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 대응, 취약점분석을 위한 최신 보안솔루션을 발굴·구축하여 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근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

- o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제1항 : 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 o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2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o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조(훈령 제154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무역 등 산업통상자원 분야 사이버공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MOTIE-CSC(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Cyber Security Center), 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경위)

- '06.5월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의장 : 국가정보원장) 의결

* 기존의 국방, 금융, 행정, 통신, 안보분야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핵심분야(에너지,

교통, 교육, 보건, 외교)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분야별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결정

- '07.7월 산업자원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립 계획수립
- '07.12월 산업자원 사이버보안센터 운영규칙 제정(훈령 제128호)
- '08.8월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 및 센터 개소(28개 기관)
 - '10.1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14개 기관)
 - '11.1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7개 기관)
 - '18.9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3개 기관)
 - '18.10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1개 기관)
- '10.1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58호)
- '12.2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91호)
- '13.6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미래부 이관(ETRI, 한국생산기술연구원, NIPA)
- '14.12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59호)
- '16.8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102호)
- '19.6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154호)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수혜자 :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52개) 및 주요기반시설 안전확보에 따른 전국민 생활안정 보장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2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①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 : 1,240백만)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HW/SW) 14종 416식에 대한 유지·보수

 - ▶ 시스템 유지보수 830백만(12개월 x 69.17백만)
 - ▶ 전용회선 임차 400백만 (53개 회원기관 x 7.55백만)
 - ▶ 유지보수 소모품비 10백만 (유지보수시 발생하는 물품 구매)

② (사이버안전센터 고도화 : 1,045백만) '08년도 사이버안전센터 개소 후 초기단계에 집중 구축된 설비의 현저한 성능저하, 부품조달 어려움, EOS만료 등 보안에 취약

하고 장애발생시 대응이 어려운 노후화 장비 교체 및 AI기반 관제 시스템 신규서
버 구입

- ▶ 노후장비교체 : 680백만
 - DDA패턴 업데이트 서버 14백만
 - 대용량이벤트 수집서버 11백만
 - 로그수집연동 서버 29백만
 - 메일시스템 28백만
 - 악성메일 모의훈련 DB 서버 14백만
 - 보안 탐지 규칙 연계 서버 14백만
 - 인터넷망 스토리지·SAN스위치 60백만
 - 시각동기화시스템 10백만
 - PC, 인터넷망 관리 콘솔 55백만
 - 방화벽 등 보안장비 445백만

- ▶ AI기반 신규 관제시스템 도입 : 365백만
 - 위협데이터 수집서버 30백만
 - 학습데이터 전처리 서버 80백만
 - AI 모델학습 및 예측 서버(2) 220백만
 - AI 관리시스템 웹서버 35백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보안관계 정탐율 (단위: %)	목표	98.0	98.1	98.2	98.3		최근 3개년 추이 대비 목표치 상향 설정	(사이버공격 정탐건수/ 총사이버공격 탐지통보건수) *100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시스템 (SCMS)
	실적	98.1	98.15	98.23	-	-			
	달성도	100	100	100	-	-			
관계시스 안정가동율 (단위: %)	목표	99.3	99.4	99.5	99.5		최근 3개년중 실현 가능한 목표치로 설정(정보시스템은 내외부적 환경요인에 의한 장애발생으로 100% 가동율은 불가 99.5%의 가동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	(가동계 획 시 간 - 관계서비스 중단 시간) /가동계획시간*100	관계시스템 장애복구 보고서 및 월별 서비스수준협약(S LA) 보고서
	실적	99.4	99.58	99.57	-	-			
	달성도	100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격 탐지건수 : 2,586건 ○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분석·평가 컨설팅(11개 기관, 48개 시설) ○ 정보보호교육(12개 과정, 16회, 314명 수료) ○ 정보보안최고관리자(CISO)과정 운영 ○ 인터넷망·업무망 모의해킹(25개 기관) ○ 웹취약점 상시점검 (27개 기관) ○ 신재생에너지 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 수립 및 현장실사(6개 기관) ○ 센터 10주년 기념식(비전선포식) 및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 ○ 악성 이메일 모의훈련 실시(산업통상자원부 등 공공기관 21회) ○ 2018 을지연습 사이버공격 대응훈련(27개 기관)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격 탐지건수 : 2,488건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분석·평가 컨설팅(11개 기관, 49개 시설)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안수준 진단 현장점검(7개 기관, 7개 시설) ○ 회원기관 정보보호 교육(12개 과정, 16회, 403명 수료) ○ 정보보안최고관리자(CISO) 과정 운영 : 19개 기관 22명 선발 ○ 침해사고대응 국제협의체(FIRST) 가입 및 활동 ○ 회원기관 대상 인터넷망·업무망 모의해킹(24개 기관) ○ 산업부 및 41개 공공기관 악성 이메일 모의훈련 실시(산업부12회, 공공기관 6회) ○ 제7회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개최(11.20~21, 17개 기관 31개팀 참가) ○ 2019 을지연습 사이버공격 대응훈련(27개 기관)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격 탐지건수 : 2,088건 ○ VPN 전용 관제시스템 자체 개발 및 시범운영('20.8~12) ○ 정보보호교육(5개 과정, 18회, 288명 수료) ○ 정보보안최고관리자(CISO)과정 운영 : 19개 기관 22명 선발 ○ 회원기관 대상 인터넷망·업무망 모의해킹(17개 기관) ○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악성 이메일 모의훈련 실시(산업부12회, 공공기관 6회) ○ 제8회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온라인 개최(11.17~18, 16개 기관 27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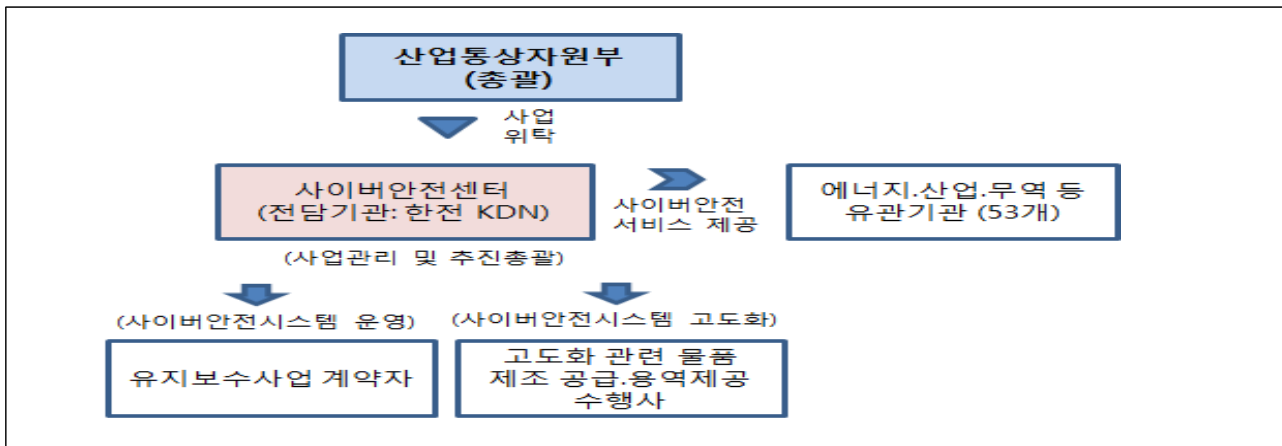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 '21년 美송유관 랜섬웨어 감염, 국내 방산업체·연구기관 VPN 해킹 등 더욱 지능화 되는 사이버공격에 적극 대응
- 사이버안전센터에서는 에너지·산업·무역 등 산업부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 수행
- 365일 24시간 보안관제 및 사이버공격 사전 탐지
-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확산 방지 및 긴급복구
- 취약점분석평가, 모의해킹 등을 통한 산업부 유관기관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
- 정보보안 전문교육, 인력 양성 등 정보보안 대응기반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1,789	1,700	1,649	1,617	1,601	
'21~'25		1,709	2,600	1,930	1,83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14년 한수원 원전자료 유출을 계기로 에너지를 비롯한 산업부 산하기관의 정보보안 체제를 강화하였으나, 날로 지능화·고도화 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 '14년 개인정보 유출대란 및 원전자료 유출사고, '17년 전 세계 랜섬웨어(wannacry 등) 확산 및 변종 출현, '18년 가상화폐 채굴관련 악성코드 감염, '21년 美 송유관 랜섬웨어 해킹 사고 등 새로운 사이버위협이 등장 및 피해 지속 발생
 - 특히,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동화된 사이버공격 등 대량화·고도화 되는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AI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진화하는 해킹기법에 신속·정확하게 방어해 나갈 계획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565	565	-	-	-	-	565	0	0	0	559	6
2019	1,694	1,694	-	559	-	-	2,253	2,168	128	96.2	-	85
2020	1,789	1,789	-	-	-	-	1,789	1,769	98.9	98.9	-	20
2021	1,709	1,709	-	-	-	-	1,709	1,685	98.6	98.6	-	2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 불용 사유 :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차액 발생(6백만원)
2019	- 불용사유 : (고도화사업)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3백만원) (유지보수사업) 낙찰차액 및 업체 인력 배치 문제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유지보수 1개월 분 불용(82백만원)
2020	- 불용사유 :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 차액(20백만원)
2021	- 불용사유 : (전용회선비) 약정만료 후 무상사용에 따른 미사용액 발생(18백만원) (유지보수사업) 낙찰차액(4백만원) (고도화사업) 낙찰차액(2백만원)

☐ 2021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1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참고1)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현황
- (참고2)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 현황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현황

- (설립목적) 고도화 되는 전자적 침해(해킹, 악성코드 등)에 대비,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근거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운영

< 센터 주요연혁 >

- ('06. 5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설립의결(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
- ('07.12월)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정(산업부 훈령, 한전KDN을 전담기관 지정)
- ('08. 7월) 사이버안전센터 개소(회원기관 28개기관)

- (조직) 사무국(정보보호담당관실), 전담기관(한전KDN), 52개 회원기관



- (주요업무) ①사이버 침해 대비 선제적 예방 활동(24시간 관제*, 모의해킹, 해킹메일 훈련 등), ②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③보안교육·역량강화 지원 등

* 현재 산업부, 공공기관 및 민간 회원사(12개)의 인터넷망과 주요 공공기관(37개)의 업무망 관제 중

참고2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 현황

□ 회원기관 : 52개 (공공 40, 민간 12개/ 에너지 30, 무역 4, 산업·기술 15, 기타 3개)

분야	구분		기관명(가입년도, 소재지)
에너지 (30)	공공 (28)	공기업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리기관 (11)	한국전력공사('08, 나주), 한국수력원자력('08, 경주) 전력거래소('08, 나주), 남동발전('08, 진주) 중부발전('08, 보령), 서부발전('08, 태안) 남부발전('08, 부산), 동서발전('08, 울산) 한국전력기술('08, 김천), 가스공사('08, 대구) 지역난방공사('08, 성남)
		준정부 非관리 (13)	한전KDN('08, 나주), 한전KPS('08, 나주) 가스기술공사('08, 대전), 석유공사('08, 울산) 석탄공사('08, 원주), 광물자원공사('08, 원주) 전기안전공사('08, 완주), 가스안전공사('08, 음성) 석유관리원('08, 성남), 에너지공단('08, 울산) 광해관리공단('08, 원주), 원자력환경공단('11, 경주) 에너지기술평가원('09, 서울)
		기타 공공기관(4)	한전원자력연료('08, 대전), 에너지정보문화재단('08, 서울) 에너지재단('18, 서울), 한전MCS('21, 나주)
	민간 (2)	특수법인(1)	전기공사협회('08, 서울)
		일반법인(1)	지역난방기술('08, 성남)
	무역 (4)	공공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9, 서울), 무역보험공사('09, 서울) 전략물자관리원('09, 서울)
산업 · 기술 (15)	공공 (7)	준정부기관(2)	무역협회('09, 서울)
		기타 공공기관(1)	산업기술진흥원('09, 서울), 산업기술평가관리원('09, 대구) 산업단지공단('09, 대구), 디자인진흥원('09, 성남)
	민간 (8)	기타 공공기관(3)	산업기술시험원('09, 진주), 세라믹기술원('09, 진주) 로봇산업진흥원('16, 대구)
		특수법인(7)	생산성본부('09, 서울), 표준협회('09, 서울) 전자기술연구원('11, 성남), 광기술원('11, 광주) 섬유개발연구원('11, 대구), 다이텍연구원('11, 대구), 자동차연구원('12, 천안)
		일반법인(1)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18, 서울)
기타 (3)	공공 (2)	공기업(1)	강원랜드('12, 정선)
		기타 공공기관(1)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18, 울산)
	민간 (1)	일반법인(1)	한일병원('18, 서울)

※ 음영표시() : 자체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기관(14개, 공공 13+민간 1)

무역위원회

세출예산 총괄표(무역조사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
총 계	1,334.6	1,633	1,633	1,715	1,715	82	5.0
<일반회계>	1,334.6	1,633	1,633	1,715	1,715	82	5.0
무역구제지원사업 (1233-301)	1,334.6	1,633	1,633	1,715	1,715	82	5.0

사 업 명
(1) 무역구제지원사업 (12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	110	113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무역및투자유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1
명칭	무역구제	무역구제지원	무역구제지원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	정해권	백숙자	-
		044-203-5850	044-203-5848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무역구제지원사업	1,334.6	1,633	1,633	1,715	1,715	82	5.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						2022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657	1,657	1,334.6 (1,334.6)	-	322.4	1,633	1,633	1,633	1,476.2 (1,476.2)	-	156.8	1,715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강화	483	483	443.7	-	39.3	548	548	548	504.1 (504.1)	-	43.9	548
· 무역구제 진흥	249	249	248	-	1	249	249	249	248.9 (248.9)	-	0.1	281
· 산업경쟁력조사 및 무역구제제도연구	535	535	528.7	-	6.3	450	450	450	443.9 (443.9)	-	6.1	500
· 전 세계 무역구제 기관간 협력	390	390	114.2	-	275.8	386	386	386	279.3 (279.3)	-	106.7	386
○ 비목별 분류(합계)	1,657	1,657	1334.6	-	322.4	1,633	1,633	1,633	1,476.2 (1,476.2)	-	156.8	1,715
· 일반수용비(210-01)	743.4	743.4	741.9	-	1.5	838	838	838	780.8 (780.8)	-	57.2	876.4
· 일반용역비(210-14)	240	240	-	-	240	216	216	216	208.2 (208.2)	-	7.8	216
· 국내여비(220-01)	27	27	27	-	-	27	27	27	25.2 (25.2)	-	1.8	25.7
· 국외여비(220-02)	100.3	100.3	26.3	-	74	90.7	90.7	90.7	7.1 (7.1)	-	83.6	86.2
· 사업추진비(240-01)	11.3	11.3	10.7	-	0.6	11.3	11.3	11.3	10.9 (10.9)	-	0.4	10.7
· 일반연구비(260-01)	535	535	528.7	-	6.3	450	450	450	443.9 (443.9)	-	6.1	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 덤핑,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와 수입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조사·구제하고, 해외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등 기업구제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국제 무역질서를 확립

☐ 사업내용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 국내산업 보호, 공정한 국제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덤핑,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와 국내 산업피해를 조사·심의·판정하기 위한 국내외 현지조사 활동비,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등) 자문료, 무역위원회 운영 등 지원
- **(무역구제진흥)** 중소기업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촉진 및 무역구제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해 무역구제 학술세미나, 대학(원)생 대상 논문발표대회/경연대회 개최, 무역구제지 발간(계간지), 조사제도 홍보, 무역구제 조사·상담 등 지원
- **(산업경쟁력조사 및 무역구제제도 연구)** 중소기업 반덤핑 신청 지원, 산업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조사신청 이전단계에서 수입급증 품목 모니터링, 수입영향이 큰 업종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조사, 무역구제 제도/현안 연구, 산업피해 조사·조치 품목 경제분석 등 지원
- **(세계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무역구제 관련 정보교류,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 국가의 수입규제 대응 등을 위해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개최, 對韓 수입규제 주요국과 무역구제 협력채널 구축·강화, WTO 무역구제 규범위원회 등 무역구제 분야 협상 참여 등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덤핑방지관세 부과(WTO 반덤핑협정, 관세법 제51조~제56조)
- 상계관세 부과(WTO 보조금·상계조치협정, 관세법 제57조~제62조)
- 불공정불공정무역행위 조사(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제14조의3, 대외무역법 제33조~제38조)

- 세이프가드(WTO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5조~제20조의2)
- FTA 세이프가드(양자FTA, 불공정무역조사법 제22조의3~제22조의4)
-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조사(불공정무역조사법 제25조의2~제25조의3)
- 산업경쟁력 영향 조사(불공정무역조사법 제25조)
- 무역구제분야 국제협력(불공정무역조사법 제22조의6)

② 추진경위

- '87년 무역위원회 설립(근거 : 대외무역법)
 - * 가방 및 핸드백 원산지 위반·상표권 침해 조사 (1987.7.31. 최초 사건)
- '89~'99년 무역구제 세미나 매년 개최(「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행사로 발전)
- '93년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권한을 재무부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
- '95년 반덤핑 및 보조금 제도 운용을 무역위원회로 일원화(덤핑·보조금 조사업무 관세청에서 이관)
- '99년 한·중 무역구제기관간 MOU 체결
- '00년 제1회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 및 제1회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개최
- '01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제정, 제1회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 '01년 무역구제 소식지 '무역구제' 창간
- '02년 산업경쟁력조사* 최초 실시(예산 3억원, 자동차변속기 등 4개 과제)
 - * 미국 ITC의 개별산업 경쟁력조사 및 무역정책연구(美 관세법332조) 벤치마킹
- '03 제1회 한·EU 무역구제협의회 개최
- '05년 제1회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개최
- '06년 무역구제포털시스템 구축
- '07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개소(시계, 의류, 시계 등 3개 업종단체)
- '14~'15년 무역위원회-WTO 협력 양해각서 체결(「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WTO 후원)
 - 제1회 한·미 무역구제기관간 기술협의회 개최
- '14년 무역위-관세청 업무협력 MOU 체결
- '18년 한-인도 무역구제협력 MOU 체결 및 제1차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
- '19년 무역위-경찰청 간 업무협력 MOU 체결, 무역구제 수입동향시스템 구축
- '20년 관세법령,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고시 등 법령 정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2~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수혜자 : 국내 기업, 대학, 유관 협회 및 단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2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덤핑, 지적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제도홍보·산업경쟁력조사·국제협력 등 무역구제제도 활용기반 조성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21) 1,633백만원 → ('22) 1,715백만원, 82백만원 증액

○ 산출내역

①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

: ('21) 548백만원 → ('22요구) 548백만원, 전년 동

- (요구) 무역구제 조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국내외 현지조사 활동비,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등) 자문료, 소송비용, 무역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조사활동(현지조사, 전문가 자문료, 소송대리인 비용 등) 358백만원

무역위원회 운영 100백만원

위원회 안건 인쇄비 81백만원

② 무역구제진흥

: ('21) 249백만원 → ('22요구) 281백만원, 32백만원 증액

- (요구) 국내기업의 제도 활용도 및 일반/학생 대상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12.8% 증액된 예산 요구

- (산출) 무역구제 학술세미나(연 2회) 26백만원

대학(원)생 논문대회/경연대회 개최 71백만원

무역구제지 발간(계간지) 50백만원

조사제도 홍보 102백만원

무역구제 조사·상담 지원 32백만원

③ 산업경쟁력 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

: ('21) 450백만원 → ('22요구) 500백만원, 50백만원 증액

- (요구) 품목별 산업경쟁력 조사, 무역구제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및 수입동향시스템을 활용한 산업영향조사 등을 위해 전년대비 11.1% 증액된 예산 요구

- (산출) 산업경쟁력조사·제도현안 연구 330백만원

수입동향시스템 활용 연구 100백만원

산업피해 조사·조치품목 경제분석 70백만원

④ 전 세계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 ('21) 386백만원 → ('22요구) 386백만원, 전년 동

- (요구)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등 개최, 양자·다자간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 등 참여를 위해 전년대비 동등한 예산 요구

- (산출)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216백만원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170백만원

○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33,000	<p>○ 일반수용비(210-01) : 838,000천원</p> <p>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경쟁력 강화(469,7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활동(현지조사, 자문감정, 소송비용 등) : 18,000천원×17건(조사)=306,000천원 · 무역위원회 운영 : 4,300천원×20회=86,000천원 · 안전 인쇄비 등 : 2,000천원×2.2권×18회=79,200천원 <p>나. 무역구제진흥(249,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세미나 : 13,000천원×2회(하계-동계)=26,000천원 · 논문발표대회·경연대회 : 71,000천원 · 무역구제지 발간(계간지) : 12,500천원×4회=50,000천원 · 홍보 : 25,000천원×4=100,000천원 <p>다.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국제협력 업무협의 등 (12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회의자료 번역 및 제작 : 1,200천원×15회=18,000천원 · 소모품 구입 등 운영경비 : 5,000천원×15회=75,000천원 · 동시통역비(한-영) : 900천원×2명×5일×15회=27,000천원 <p>○ 일반용역비(210-14) : 216,000천원</p> <p>가.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216,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사 용역 : 216,000,000원×1회=216,000천원 <p>○ 국내여비(220-01) : 27,000천원</p> <p>가. 무역구제조사, 무역위원회 참석 75,800원×20명×15회 =21,982천원</p> <p>나. 국제협력 업무협의 및 회의 등 참석 75,800원×6명×11회 =5,002천원</p> <p>○ 국외업무여비(220-02) : 90,700천원</p> <p>가. 덤핑 해외 현지조사(49,318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5급) : 1,612,200원×2명×4.5회=14,508천원 · 일비 : \$30×15일×2명×4.5회=4,815천원(\$4,050) · 숙박비 : \$137×14일×2명×4.5회 =20,524천원(\$17,262) · 식비 : \$59×15일×2명×4.5회=9,470천원(\$7,965) <p>나. WTO 등 회의 참석(8,916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유럽 기준, 5급) : 3,171,500원×2명×1회=6,343천원 · 일비 : \$30×6일×2명×1회=428천원(\$360) · 숙박비 : \$137×4일×2명×1회=1,303천원(\$1,096) · 식비 : \$59×6일×2명×1회=842천원(\$708) <p>다. 무역구제협력회의 등 회의 참석(30,434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유럽 기준, 5급) : 1,612,000원×3명×3.5회=16,926천원 · 일비 : \$30×6일×3명×3.5회=2,247천원(\$1,890) · 숙박비 : \$137×4일×3명×3.5회=6,841천원(\$5,754) · 식비 : \$59×6일×3명×3.5회=3,794천원(\$3,717) <p>○ 사업추진비(240-01) : 11,300천원</p> <p>가. 무역구제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등(2,1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만찬비 등 : 30천원×10명×7회=2,100천원 <p>나. 무역위원회 운영 등(4,32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만찬비 등 : 30천원×12명×12회=4,320천원 	1,715,000	<p>○ 일반수용비(210-01) : 876,450천원</p> <p>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경쟁력 강화(467,55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활동(현지조사, 자문감정, 소송비용 등) : 18,060천원×16.5건(조사)=298,650천원 · 무역위원회 운영 : 4,485천원×20회=89,700천원 · 안전 인쇄비 등 : 2.2권×2,000천원×18회=79,200천원 <p>나. 무역구제진흥(281,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세미나 : 13,000천원×2회(하계-동계)=26,000천원 · 논문발표대회·경연대회 : 71,000천원 · 무역구제지 발간(계간지) : 12,500천원×4회=50,000천원 · 홍보 : 25,500천원×4건=102,000천원 · 무역구제 조사·상담 : 3,200천원×10건=32,000천원 <p>다.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국제협력 업무협의 등 (12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회의자료 번역 및 제작 : 1,200천원×15회=18,000천원 · 소모품 구입 등 운영경비 : 5,000천원×15회=75,000천원 · 동시통역비(한-영) : 900천원×2명×5일×15회=27,000천원 <p>○ 일반용역비(210-14) : 216,000천원</p> <p>가.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216,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사 용역 : 216,000,000원×1회=216,000천원 <p>○ 국내여비(220-01) : 25,650천원</p> <p>가. 무역구제조사, 무역위원회 참석 75,800원×20명×15회 =22,740천원</p> <p>나. 국제협력 업무협의 및 회의 등 참석 : 75,800원×6명×8회 =3,638천원</p> <p>○ 국외업무여비(220-02) : 86,165천원</p> <p>가. 덤핑 해외 현지조사(47,591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5급) : 1,612,200원×2명×4.5회=14,508천원 · 일비 : \$30×15일×2명×4.5회=4,576천원(\$4,050) · 숙박비 : \$137×14일×2명×4.5회 =19,506천원(\$17,262) · 식비 : \$59×15일×2명×4.5회=9,000천원(\$7,965) <p>나. WTO 등 회의 참석(8,788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유럽 기준, 5급) : 3,171,500원×2명×1회=6,343천원 · 일비 : \$30×6일×2명×1회=406천원(\$360) · 숙박비 : \$137×4일×2명×1회=1,238천원(\$1,096) · 식비 : \$59×6일×2명×1회=800천원(\$708) <p>다. 무역구제협력회의 등 회의 참석(26,097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유럽 기준, 5급) : 1,612,000원×3명×3회=14,508천원 · 일비 : \$30×6일×3명×3회=1,830천원(\$1,620) · 숙박비 : \$137×4일×3명×3회=5,573천원(\$4,932) · 식비 : \$59×6일×3명×3회=3,600천원(\$3,186) <p>○ 사업추진비(240-01) : 10,735천원</p> <p>가. 무역구제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등(2,25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만찬비 등 : 30천원×10명×7.5회=2,250천원 <p>나. 무역위원회 운영 등(4,275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만찬비 등 : 30천원×15명×9.5회=4,275천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다. 무역구제 협력회의 등 (5,200천원) · 오/만찬비 50천원×20명×4회=4,000천원 · 기념품 구입 등 30천원×20명×2회=1,2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50,000천원 가.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330,400천원) · 연구용역 : 41,000천원×8개 과제=328,000천원 나. 수입동향시스템 활용 연구(120,000천원) · 산업영향조사 : 120,000천원×1개=120,000천원		다. 무역구제 협력회의 등 (3,600천원) · 오/만찬비 50천원×20명×3회=3,000천원 · 기념품 구입 등 30천원×20명×2회=1,2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500,000천원 가.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330,000천원) · 연구용역 : 41,250천원×8개 과제=330,000천원 나. 수입동향시스템 활용 연구(100,000천원) · 산업영향조사 : 100,000천원×1개=100,000천원 다. 산업피해 조사·조치품목 경제분석(70,000천원) · 품목 경제분석 : 14,000천원×5개=7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업경쟁력조사 사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목표	72	72.2	72.5	72.8	73.0	최근 3년간의 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설정	업체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72.1	72.3	72.9	-	-			
	달성도	100.1	100.1	100.5	-	-			
홈페이지 무역구제 DB 만족도 (단위:%)	목표	75.4	75.7	76.0	76.2	76.3	최근 3년간의 실적 평균치를 고려하여 설정	홈페이지 이용자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75.5	75.8	76.0	-	-			
	달성도	100.1	100.1	100.0	-	-			
무역구제 지원건수 (단위: 건)	목표	46	47	48	49	50	최근 3년간의 무역구제 지원건수 평균을 목표치로 설정	반덤핑 및 불공정무역행위 현지조사, 상담 등 업체 지원 건수	출장내역 및 지원보고서 등
	실적	46	47	48	-	-			
	달성도	100.0	100.0	10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 무역구제조사 · 반덤핑 : 조사개시 6건, 최종판정 및 덤핑판세부과 6건 · 불공정무역행위(지재권침해 등) : 조사개시 8건, 판정 및 시정조치(수출입중지 등) 11건
	- 무역구제진흥(홍보 등) · 무역구제 세미나(11월), 대학생 논문대회(11월), 경연대회(12월), 심포지엄(11월) · 무역구제지 발간(4회), 지역별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세관 실무자 대상 설명회 등 총 30회 제도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 8개 정책과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개최(7월) : WTO, 미국, 중국 등 20개국 참석 · 양자·다자협력 : 한-베 무역구제협력회의(3월, 9월),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9월), 한-중 무역구제 이행위 및 무역구제협력회의(11월), 한-EU 무역구제협력회의(12월) , WTO 무역구제 규범협상 참석(4월, 10월), RCEP 무역구제협상 참석(4월)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덤핑 : 조사개시 6건, 최종판정·덤핑관세부과 7건 · 불공정무역행위(지재권침해 등) : 조사개시 7건, 판정 및 시정조치(수출입중지 등) 10건 - 무역구제진흥(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 세미나(하계 5월, 동계 11월), 대학생 논문대회(11월), 경연대회(11월), 심포지엄(12월) · 무역구제지 발간(4회), “중소기업뉴스” 제도 이용기업 사례 소개(4회), 지면광고(2회) 등 · 지역간담회(3회), 업종별 간담회(3회) 개최, 설명회(15회) 등 총 26회 홍보 - 연구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 14개 정책과제 추진 · 수입동향 사전 분석·대응 기능 강화를 위한 「수입동향 분석시스템」 구축(7~12월) -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개최(7월) : 미국, 중국, 인도, EU 등 13개국 330여명 참석, 13개국 무역구제 기관과 양자면담, 기관장간담회, 조사관 기술협의회 등 개최 · 양자·다자협력 : WTO, EU 무역구제기관장 면담(2월, 11월), 한-EU 무역구제협력회의(5월),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6월, 9월),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8월), 한-중 무역구제 이행위 및 무역구제협력회의(9월), 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회(12월), WTO 규범정례회의(4월, 11월), RCEP 무역구제분과 협상 참여(5월, 6월)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덤핑 : 조사개시 5건, 최종판정·덤핑관세부과 7건 · 불공정무역행위(지재권침해 등) : 조사개시 4건, 판정 및 시정조치(수출입중지 등) 8건 · 법적기반 강화 :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12월),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6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고시/예규 개정(20.11.20. 시행) - 무역구제진흥(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 세미나(하계 7월, 동계 11월), 대학생 논문대회(11월), UCC공모전(11월), 심포지엄(12월) · 무역구제지 발간(4회), 무역구제 홍보영상 및 사례집(e-북) 제작·배포, 협단체/전문가 간담회·15개 신고센터 방문·조치기업 현장방문 등 21회 홍보 - 연구용역 ·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 10개 정책과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동향시스템 기능보완 및 무역구제 정보시스템 운영 개선(9~12월) - 국제협력 · 고위급회의 : 위원장 미 ITC 위원장 및 위원 면담(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다자협력 :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10월), 한-베 무역구제협력회의(11월), 한-EU 무역구제협력회의(11월)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덤핑(21.11월말) : 조사개시 6건, 최종판정·덤핑관세부과 5건 ·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21.11월말) : 조사개시 5건, 판정 및 시정조치(수출입중지 등) 3건 · 법적기반 강화(제도개선) : 반덤핑·상계관세 운영규정(고시) 개정방안 연구용역(21.5~10월),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진흥(홍보 등) · 무역구제 정책세미나(6.24), 무역구제 세미나(하계 7.16.(금), 동계 11.5.), 대학생 논문대회(11.5.), 모의무역위원회(10.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심포지엄(12월) · 무역구제지 발간(4/6/9/12월), '무역구제 뉴스레터' 제작·배포(5/7/8/10/11월), 무역구제 홍보 시리즈 영상 제작(3편) 및 유튜브 홍보(6~10월), 업계·전문가 대상 간담회 다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 총 11개 과제 선정 및 용역추진(330백만원) · 수입동향시스템 활용 연구 2개 과제 선정 및 용역 추진(12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 ·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개최(11.14.(일)~16(화)) : WTO, 호주, 일본, 필리핀, 인도, EAEU, EU, 브라질, 캐나다, 미국 11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참석 · 양자·다자협력 : 한-베 무역구제협력회의(12월) 개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 등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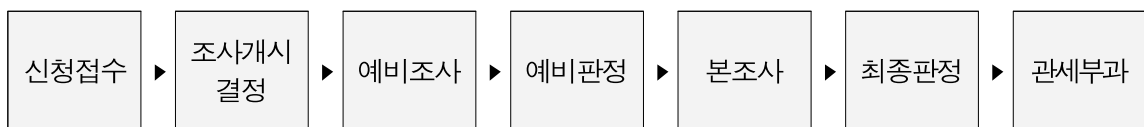
- 덤핑수입, 지적권 침해 등 해외기업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신속·공정한 조사 및 실효적인 무역구제조치로 산업피해의 구제 및 국내산업 보호
- 지역 중소기업 설명회, 업종별 간담회, 논문·경연대회, 심포지엄, 학술세미나 개최 등 무역구제 홍보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촉진 및 저변 확대
- WTO,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을 초청하는 및 미국, 중국, EU 등 해외 주요국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회의,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 수입규제 애로 대응 및 자유·공정무역 확산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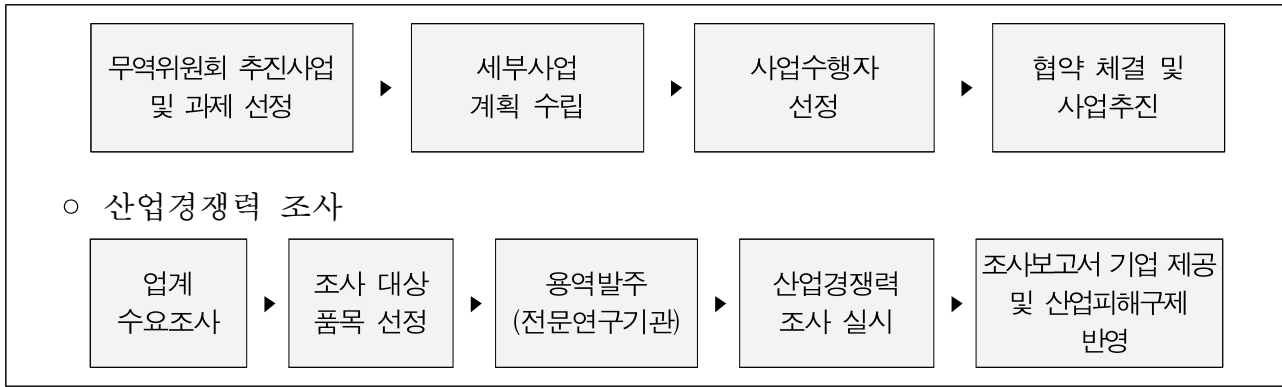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무역구제 절차



* 덤핑, 상계관세 위주로 작성

○ 무역구제진흥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1,657	1,633	1,527	1,496	1,481	
'21~'25		1,633	1,715	1,766	1,802	1,83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무역구제 조치의 실효성 강화)** 반덤핑조사 등 무역구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개시 및 잠정조치 활성화로 무역구제 조치의 실효성 강화
- **(중소기업 제도이용 활성화)** 중소기업의 1,314무역구제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무역구제 관련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무역구제 활용 컨설팅 지원 등 추진
- **(산업피해 예방 선순환 체계 구축)** 수입 급증 및 산업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무역구제 신청검토를 위한 '산업·시장동향 조사' 추진 등을 통해 수입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산업피해를 예방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국제협력)** 외국 무역구제기관과 양자·다자 협력 확대로 국제무역규범 주도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수입규제 대응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2020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

12) 부처 전의사항

□ 주요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물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 육성 등으로 자국산업 우선정책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 무역구제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국내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 구제할 수 있는 WTO 체제가 인정하는 유일한 구제수단
** 전세계 무역구제 조사개시 : ('17) 298건 → ('18) 273건 → ('19) 280건 → ('20) 427건
○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저조 (세계 2위의 피소국인 반면, 세계 12위의 제소국)
* 對韓 해외 수입규제(무역협회) : ('15) 166 → ('17) 187 → ('19) 210 → ('20) 228
** '95~'20 반덤핑 피소국(건수) : ①중국(1,478건), ② 한국(471건) , ③대만(326건), ④미국(312건)
*** '95~'20 반덤핑 제소국(건수) : ①인도(1,071건), ②미국(817), ③EU(533).....⑫ 한국(155건)
□ 글로벌 무역환경에 변화에 따른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
○ 특히, 전문 인력과 정보·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무역구제제도 활용 촉진을 위한 조사·상담 지원, 홍보 등 강화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1,314	1,314	1,314	-	-	-	1,314	1,303	99.2	99.2	-	11
2019	1,734	1,734	1,734	-	-	-	1,734	1,731	99.8	99.8	-	3
2020	1,657	1,657	1,657	-	-	-	1,657	1,334.6	80.5	80.5	-	322.4
2021	1,633	1,633	1,633	-	-	-	1,633	1,476.2	90.4	90.4	-	156.8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 불용 11백만원 : 예산 집행잔액
2019	- 불용 3백만원 : 예산 집행잔액
2020	- 불용 322백만원 :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행사 및 국외출장(해외 현지조사 및 국제협력) 취소에 따른 행사비와 국외여비 등 집행잔액
2021	- 불용 156백만원 :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행사, 국외출장(해외 현지조사 및 국제협력) 축소 및 취소에 따른 행사비, 국외여비 등 집행잔액

국가기술표준원

세출예산 총괄표(국가기술표준원)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
총 계		121,007	121,007	140,579	140,779	19,772	
<일반회계>		121,007	121,007	140,579	140,779	19,772	
신기술제품인증 (3731-301)	2,612	3,010.0	3,010.0	3,320.0	3,320.0	310.0	10.3
국제표준활동지원 (3731-302)	887	2,050.0	2,050.0	2,497.0	2,497.0	447.0	21.8
개도국표준체계보급 지원(ODA) (3731-303)	1,559	1,453.0	1,453.0	2,143.0	2,143.0	690.0	47.5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3731-304)	1,658.5	1,832.0	1,832.0	1,832.0	1,832.0	0.0	-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R&D) (3731-305)	58,464	62,235.0	62,235.0	69,995.0	69,995.0	7,760.0	12.5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3731-306)	2,946	4,134.0	4,134.0	2,009.0	2,009.0	-2,125.0	△51.4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3731-307)	1,023	922.0	922.0	1,052.0	1,052.0	130.0	14.1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3731-308)	1,085	1,400.0	1,400.0	1,386.0	1,386.0	-14.0	△1.0
국가표준활성화 (3731-309)	6,229	6,042.0	6,042.0	7,135.0	7,135.0	1,093.0	18.1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3731-312)	-	-	-	5,595.0	5,595.0	5,595.0	순증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R&D) (3731-318)	4,267	6,348.0	6,348.0	6,513.0	6,513.0	165.0	2.6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
신산업단체표준화촉진 (3731-319)	-	817.0	817.0	735.0	735.0	-82.0	△10.0
융복합 신기술 제품안전 기술지원 사업(R&D) (3731-320)	-	5,826.0	5,826.0	6,690.0	6,690.0	864.0	14.8
스마트계량측정기술 기반조성사업(R&D) (3731-323)	-	2,961.0	2,961.0	2,890.0	2,890.0	-71.0	△2.4
지능형스마트랩구축 (3731-327)	-	-	-	-	200.0	200.0	순증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3732-303)	6,870	7,171.0	7,171.0	7,091.0	7,091.0	-80.0	△1.1
안전제도기반조성 (3732-304)	1,753	1,579.0	1,579.0	1,549.0	1,549.0	-30.0	△1.9
제품사고조사및수입 제품안전관리 (3732-306)	813	862.0	862.0	1,244.0	1,244.0	382.0	44.3
어린이제품안전관리 생태계조성 (3732-307)	990	1,070.0	1,070.0	1,070.0	1,070.0	0.0	-
어린이제품 안전성 평가역량 강화사업 (3732-308)	-	-	-	1,150.0	1,150.0	1,150.0	순증
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3732-310)	-	-	-	860.0	860.0	860.0	순증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3736-301)	4,792	6,970.0	6,970.0	7,474.0	7,474.0	504.0	7.2
기술규제개혁선진화 체계구축 (3736-302)	1,122	1,127.0	1,127.0	1,148.0	1,148.0	21.0	1.9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 체계구축(정보화) (3736-304)	956	895.0	895.0	2,850.0	2,850.0	1,955.0	218.4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7134-301)	1,644	1,592.0	1,592.0	1,628.0	1,628.0	36.0	2.3
기술표준정책 (7134-302)	717	711.0	711.0	723.0	723.0	12.0	1.7

사 업 명
(1) 신기술제품인증(37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1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신기술제품인증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	신재혁	-	배소현
		043-870-5500	-	043-870-550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신기술제품인증	2,612	3,010	3,010	3,320	3,320	310	10.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614	2,614	2612 [2,604]	-	2	3,010	3,010	3,010	3,008 [3,008]	-	2	3,320
· 신기술인증 등 지원	2,082	2,082	2080 [2,072]	-	2	2,394	2,394	2,351	2,349 [2,349]	-	2	2,604
·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302	302	302 [302]	-	-	302	302	302	302 [302]	-	-	402
·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30	30	30 [30]	-	-	30	30	73	73 [73]	-	-	30
· 융합신제품적합성 인증 지원	200	200	200 [200]	-	-	284	284	284	284 [284]	-	-	284
○ 비목별 분류(합계)	2,614	2,614	2,612 [2,604]	-	2	3,010	3,010	3,010	3,008 [3,008]	-	2	3,320
· 일반수용비(210-01)	34.1	34.1	34.1	-	-	84.29	84.29	41.29	41.29 [41.29]	-	-	84.38
· 시험연구비(210-13)	30	30	30	-	-	30	30	73	73 [73]	-	-	30
· 사업추진비(240-01)	1.9	1.9	1.9	-	-	1.71	1.71	1.71	1.71 [1.71]	-	-	1.62
· 일반연구비(260-01)	25	25	23	-	2	25	25	25	23 [23]	-	2	25
· 민간경상보조(320-01)	2,523	2,523	2,523 [2515]	-	-	2,869	2,869	2,869	2,869 [2,869]	-	-	3,17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614	2,614	2,612 [2,604]	-	2	3,010	3,010	3,010	3,008 [3,008]	-	2	3,320
· 신기술인증 등 지원	2,082	2,082	2,080 [2,072]	-	2	2,394	2,394	2,351	2,349 [2,349]	-	2	2,604
-민간경상보조(320-01)	2021	2021	2021 [2,013]	-	-	2,283	2,283	2,283	2,283 [2,283]	-	-	2,493
-사업추진비(240-01)	1.9	1.9	1.9	-	-	1.71	1.71	1.71	1.71 [1.71]	-	-	1.62
-일반연구비(260-01)	25	25	23	-	2	25	25	25	23 [23]	-	2	25

-일반수용비(210-01)	34.1	34.1	34.1	-	-	84.29	84.29	41.29	41.29	-	-	84.38
·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302	302	302	-	-	302	302	302	302	-	-	402
-민간경상보조(320-01)	302	302	302	-	-	302	302	302	302	-	-	402
·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30	30	30	-	-	30	30	73	73	-	-	30
-시험연구비(210-13)	30	30	30	-	-	30	30	73	73	-	-	30
·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지원	200	200	200	-	-	284	284	284	284	-	-	284
-민간경상보조(320-01)	200	200	200	-	-	284	284	284	284	-	-	2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기술인증 등 지원) 국내 개발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재활용제품(GR)의 평가·인증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유도 및 인증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
-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신제품(NEP)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 설명회, 구매상담회, 판매 실적 조사 등을 통한 인증제품 판로개척 추진
-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신기술, 신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의 인증 취득 당시의 품질 유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부적합한 인증 차단 및 소비자 보호
-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지원) 융합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Fast-Track(6개월 이내)으로 적합성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적시 시장출시 지원

2) 사업개요

① 법령상 근거

○ 신제품(NEP)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 신기술(NET)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재활용 제품의 규격·품질 기준)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 산업융합촉진법 제3장(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② 추진경위

- '95. 5.10 : 제15회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기계류·부품·소재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를 시행토록 결정
- '04.11.25 : 각부처의 유사기술 및 제품인증에 대한 정부인증제도 통폐합(5개 부처, 7개 신기술 인증 업무를 신기술·신제품 인증으로 통합 정비)
- '06.10.30 : NEP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화(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 '07.10.29 : 공공구매제도 주관부처를 산자부에서 기술표준원으로 변경
- '08. 2.29 : 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던 IT분야 신제품(NEP)인증 업무 및 과기부의 신기술(NET)인증 업무를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 '11.10.6 :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제도 도입
- '16.2.17 :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신속 시장 진입지원체계로서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 구축 등 보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전 산업분야 인증업체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신기술인증 등 지원	보조	(사)한국 산업기술 진흥협회	1,606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5, 제57조
		한국산업 기술평가 관리원	258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7조
		(사)자원 순환산업 인증원	629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보조	(사)한국 신제품인 증협회	402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신제품(NEP) 인증및구매촉진등에관한운영요령 제37조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지원	보조	국가산업 융합지원 센터	284	100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19조의2

3) '22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신기술인증 등 지원 : ('21) 2,394 → ('22) 2,604백만원

- (요구) NEP, NET, GR 인증 평가위탁에 따른 인증평가비용 및 제도 운영 예산으로,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지속적 지원 필요

- (산출)

- 신제품(NEP), 신기술(NET),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320-01, 민간경상보조) : 1,990백만원
* ('21) 1,034건 × 3.85백만원 × 0.5 → 1,034건 × 3.85백만원 × 0.5
- NET·NEP 100대 신산업 전략품목 발굴·지원 (320-01, 민간경상보조) : 293백만원
* ('21) 품목발굴(조사·분석) 100백만원, 상시인증 50건 × 3.85백만원
→ ('22) 품목발굴(조사·분석) 100백만원, 상시인증 50건 × 3.85백만원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기준 개발 (320-01, 민간경상보조) : 210백만원
* ('22) 10건 × 21백만원
- 인증제도 효율화를 위한 조사·분석 (240-01, 사업추진비) : 1.62백만원
* ('21) 10명 × 19천원 × 9회 → ('22) 10명 × 18천원 × 9회
- 연구용역비 (260-01, 일반연구비) : 25백만원
* ('21) 학술연구용역 1건 × 25백만원 → ('22) 학술연구용역 1건 × 25백만원
- 법률자문 등 일반수용비 (210-01, 일반수용비) : 84.38백만원
* ('21) 84.29백만원 → ('22) 84.38백만원

(2)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 ('21) 302 → ('22) 402백만원

- (요구) 인증 신제품(NEP)의 판로지원과 공공기관 의무구매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산출)

- 의무구매 실적 및 인증기업 판매 실적 조사 (320-01, 민간경상보조) : 68백만원
* ('21) 1회 × 68백만원 → ('22) 1회 × 68백만원
- 공공구매 워크숍, 현장방문 상담회 등 (320-01, 민간경상보조) : 334백만원
* ('21) 24회 × 9.75백만원 → ('22) 35회 × 9.55백만원

(3)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 ('21) 30 → ('22) 30백만원

- (요구) 인증제품의 품질 유지 여부 확인(시판품조사)을 통한 부적합한 인증 차단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21) 15품목 × 2백만원 → ('22) 15품목 × 2백만원 (210-13, 시험연구비)

(4)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지원 : ('21) 284 → ('22) 284백만원

- (요구)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 제도운영 및 인증조사·분석 (320-01, 민간경상보조) : 264백만원

* ('21) 인증평가 16건×3백만원, 조사·분석 8건×27백만원

→ ('22) 인증평가 16건×3백만원, 조사·분석 8건×27백만원

■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홍보 (320-01, 민간경상보조) : 20백만원

* ('21) 1건 × 20백만원 → ('22) 1건 × 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공구매품목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목표	70.5	71.0	71.5	71.7	71.8	'12년도 성과지표 설정 후 장기간 큰 점 폭으로 상승 한 점 만족도는 일정 수준 이상 증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공기관(450개 기관) 구매담당자 를 대상으로 공공 구매 만족도 평균 점수	외부 전문 기관의 만족도 설문 조사
	실적	70.4	71.4	71.5	-	-			
	달성도	99.9	100.6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 신제품(NEP) 인증(신청 374건/인증 39건) - 신기술(NET) 인증(신청 465건/인증 54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99건/인증 77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 워크숍 1회, 설명회 5회, 구매상담회 3회, 현장방문 상담회 15회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 '18년 사후관리 대상 건 완료(GR : 76건) ④ 융합신제품적합성 인증 지원 - 애로지원건수 53건, 인증건수 5건
2019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 신제품(NEP) 인증(신청 395건/인증 46건) - 신기술(NET) 인증(신청 425건/인증 57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103건/인증 67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 워크숍 1회, 설명회 5회, 구매상담회 3회, 현장방문 상담회 22회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 '19년 사후관리 대상 건 완료(NEP: 39건, GR : 79건) ④ 융합신제품적합성 인증 지원 - 애로지원건수 69건, 인증건수 12건
2020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 신제품(NEP) 인증(신청 362건/인증 50건) - 신기술(NET) 인증(신청 499건/인증 86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98건/인증 100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 워크숍 1회, 설명회 6회, 구매상담회 3회, 현장방문 상담회 19회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 '20년 사후관리 대상 건 완료(NEP: 35건, GR : 78건) ④ 융합신제품적합성 인증 지원 - 애로지원건수 61건, 인증건수 7건
2021	신기술인증 등 평가지원, 인증제품 판로확대 및 사후관리 진행 중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중소기업 성장 기여) 2020년 한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인증신제품(NEP)의 구매 총액은 2,435억원, 한 개 제품 당 평균 구매액은 18.6억원으로 중소기업 신제품의 초기 판로개척에 기여하고 있음

<최근 3년 NEP 의무구매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18년	'19년	증감률	'20년	증감률
NEP제품 구매액	2,098	2,570	22.5	2,435	△5.3
품목당 구매액	16.7	21.1	26.3	18.6	△11.8

-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이 ①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취득을 위해, ② 인증 취득 후 생산·관리를 위해 기술 및 행정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

<신기술, 신제품 인증의 일자리 창출 효과>

(고용실시기업(%) / 고용규모(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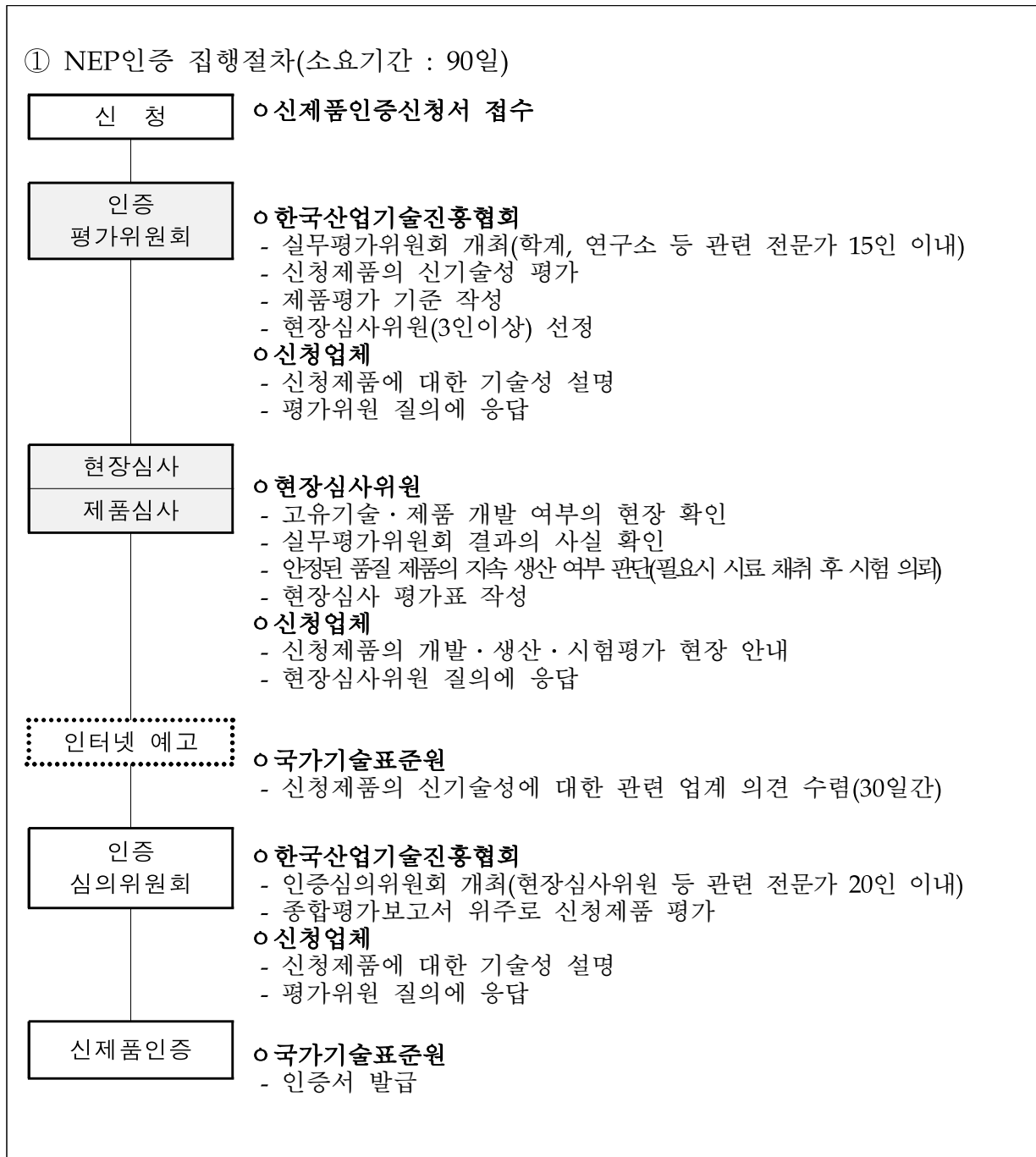
구 분	① 인증 취득 전 [인증 취득을 위한 고용]	② 인증 취득 후 [생산·관리를 위한 고용]
신기술(NET) 인증	48.8% / 4.0명	52.4% / 4.3명
신제품(NEP) 인증	60.6% / 2.9명	48.5% / 2.6명

※ 조사 대상/기간 : 신기술·신제품 인증 취득 중소기업 175개사 / '18.8.~'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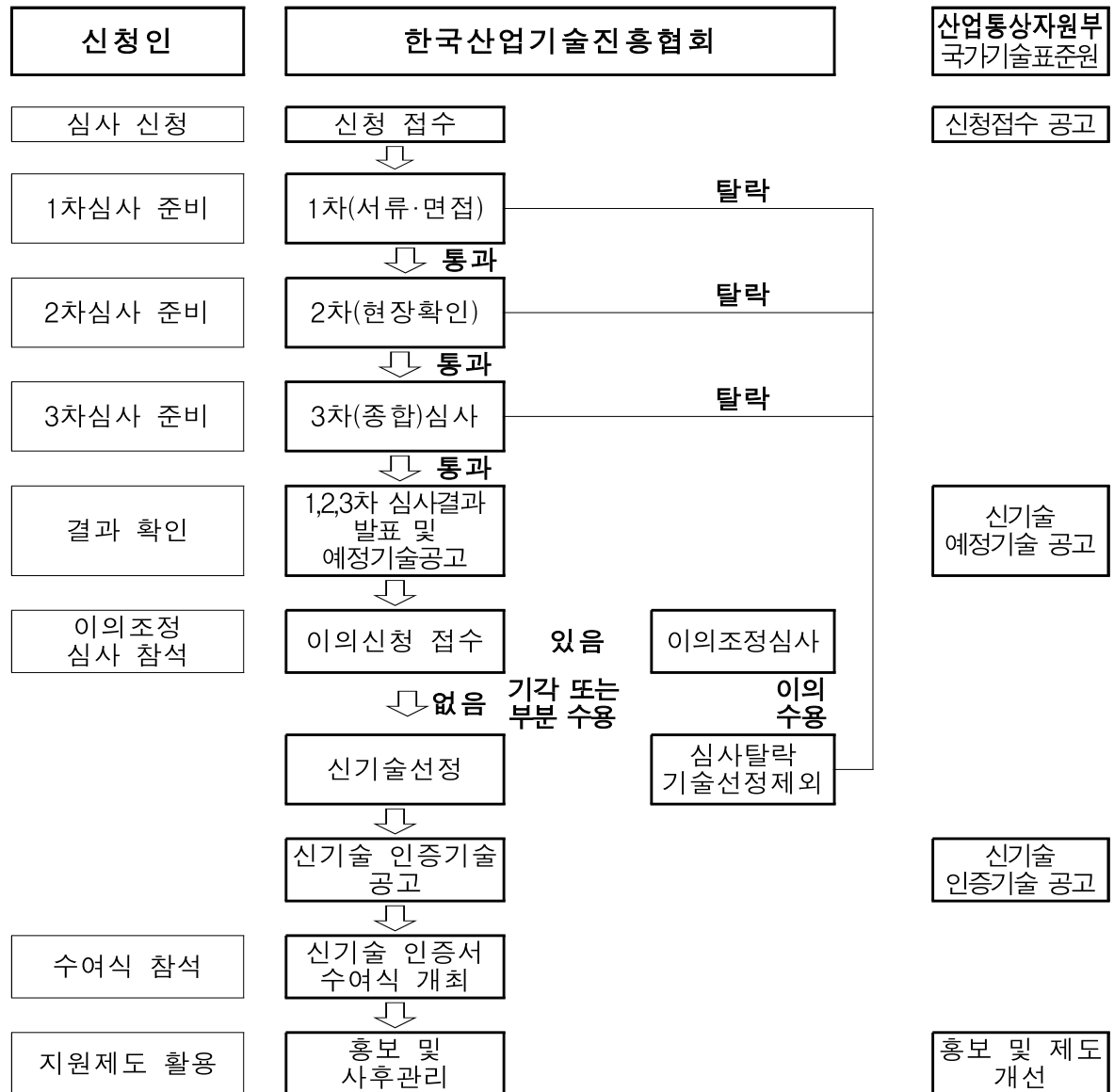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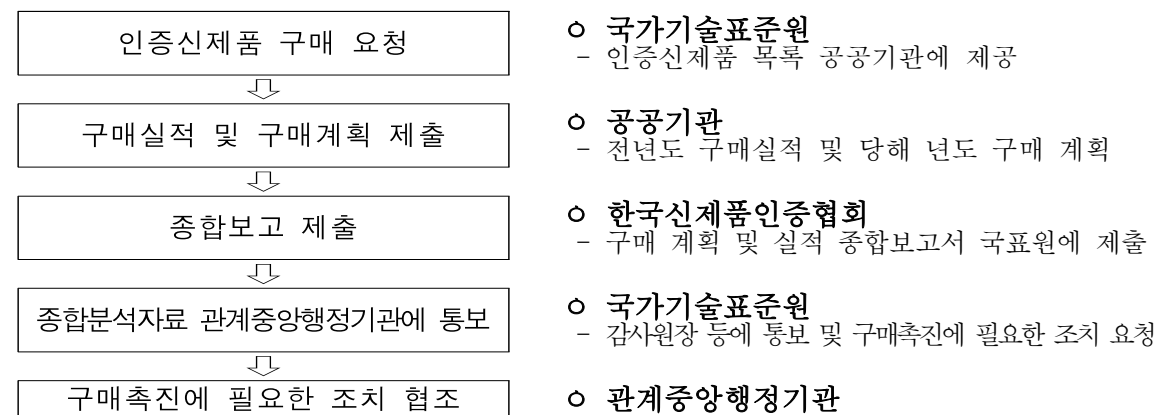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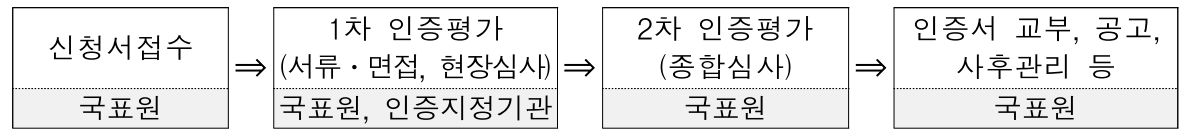
② NET인증 집행절차(소요기간 : 1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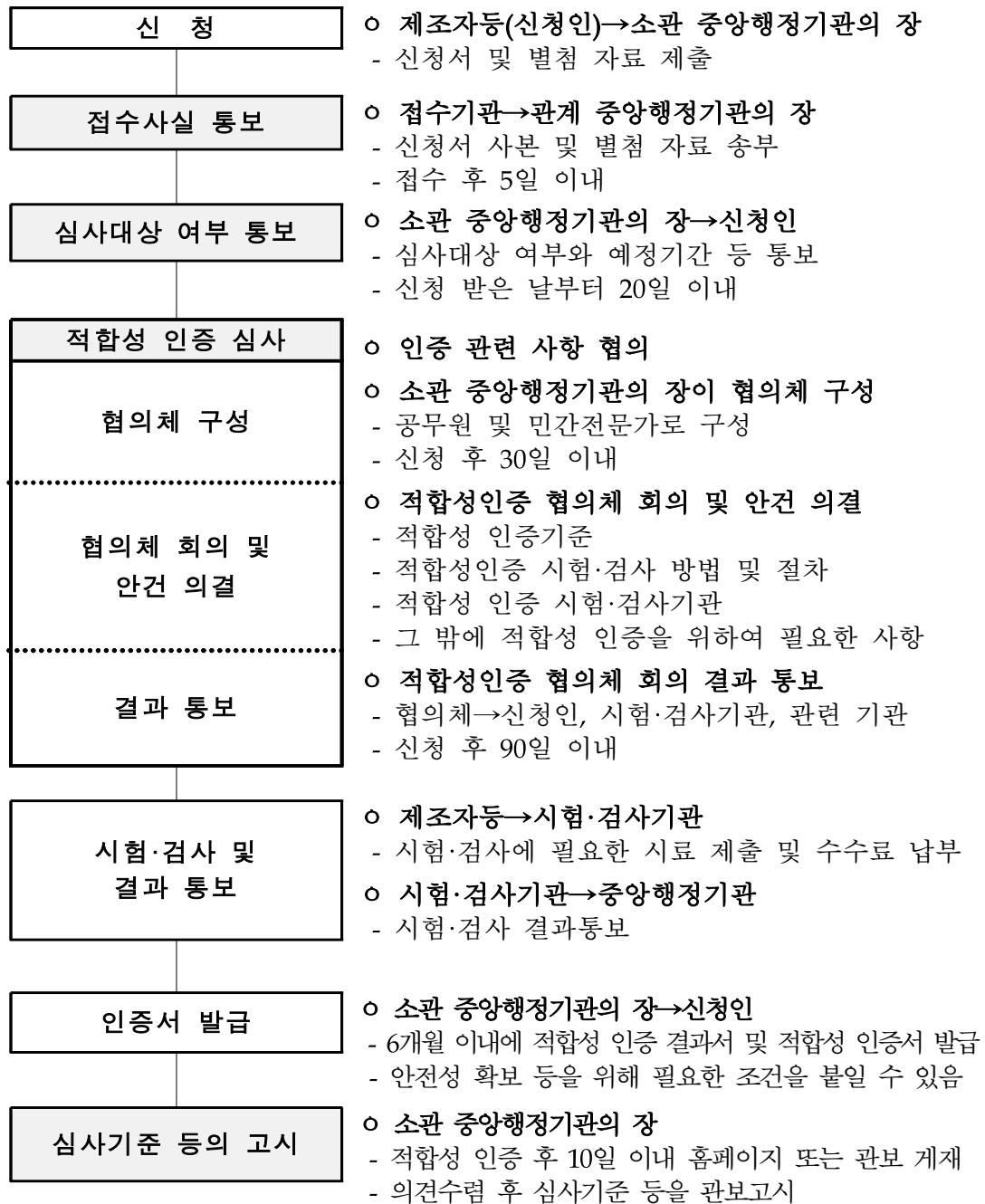
③ 인증제품 판로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8조



④ GR인증 집행절차 (소요기간 : 90일)



⑤ 융합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집행절차 (소요기간 : 6개월)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나인 경우에 대한 절차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2,614	3,010	3,000	3,000	3,000	
'21~'25		3,010	3,161	3,319	3,485	3,65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 산중위 결산 검토보고서 ('18년 결산)

- (지적) NET 인증 심사수수료 내역을 보조금 정산 보고서에 포함할 것
- (조치) NET 보조금 정산 보고서에 수수료 수입 및 사용 내역을 포함하여 정산 조치 완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NET, NEP, GR,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통한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활성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 신시장 개척, 고용 창출 등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마련 도모
 - 신산업 분야의 NET·NEP 인증품목을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신산업 분야 육성
 - 우수 제품 인증을 통해 인증 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의 구매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
 -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인증애로 발굴 통로 다각화 및 적합성 인증제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인증 관련 애로지원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재정사업 자율평가('20회계연도)

- 보통, 69.2점(단위사업명: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2) 보조사업 연장평가('21년)

- 사업방식변경, 79.3점
- 신기술제품 20% 의무구매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동 사업의 예산 대부분이 인증소요 비용인 만큼, 심사절차 개선 등을 통해 소요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동 사업의 특징점이 혁신조달이라는 점을 감안 공공 구매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2,066	2,066	2,066	-	-	-	2,066	2,066	100	100	-	-
2019	2,227	2,227	2,227	-	-	-	2,227	2,225	99.9	99.9	-	2
2020	2,614	2,614	2,614	-	-	-	2,614	2,612	99.9	99.9	-	2
2021	3,010	3,010	3,010	-	43	-	3,010	3,008	99.9	99.9	-	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1,947	1,947	1,947	1,947	-	1,947	1,947	-	-	100
2019	2,136	2,136	2,136	2,136	-	2,136	2,136	-	-	100
2020	2,523	2,523	2,523	2,523	-	2,523	2,515	-	8	99.7
2021.12월	2,869	2,869	2,869	2,869	-	2,869	2,869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 이·전용 및 불용 없음
2019	- 불용 : 2백만원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2020	- 불용 : 2백만원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2021	- 불용 : 2백만원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 세목변경 : 일반수용비(210-01) 43백만원을 시험연구비(210-13)로 세목변경

☐ 2021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1.11.1.)	신기술제품인증 (3731-301)	210-01	43	신기술제품인증 (3731-301)	210-13	인증제품 사후관리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세목변경

☐ 2021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관련 근거 법률

□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 ① 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2.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의 양성
 3. ~ 5. (생략)
 6. 그 밖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으로 확인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확인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 ① 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2. ~ 5. (생략)
 6. 그 밖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2. (생략)
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산업기술혁신·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4. ~6.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 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생략)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산업융합 촉진법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사본을 즉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심사의 대상 여부와 심사에 걸리는 예정 기간 등을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한 제조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통지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통지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①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적용할 수 있는 기준·규격·요건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2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거쳐 지체 없이 적합성 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2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제도 개요



신기술(NET) 인증

- ☐ 신기술인증은 기술인증이며, 국내 최초 개발(대체) 기술로써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 요건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8조의2 등

< 연간 신청 및 인증 추이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건수	511	79	441	83	465	54	425	57	499	86

- ☐ 인증유효기간 : 3년(3년 이내 기간으로 1회 연장 가능)
- ☐ 지원내용
 - 신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 제품 중 10% 이상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등



신제품(NEP) 인증

- ☐ 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으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5 및 제19조 등

< 연간 신청 및 인증 추이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건수	252	47	295	41	374	39	395	46	362	50

- ☐ 인증유효기간 : 3년(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 지원내용
 - 인증신제품에 대해 중소기업 제품 중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20% 이상 의무구매 지원 등

참고 3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제도

□ 제도개요

- 폐자원을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인증 제도로 재활용 산업 발전 및 재활용 제품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예) 재생신문용지 : 폐지 40%이상 사용, 재활용 나무판제품 : 폐목재 50%이상 사용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의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산업기술혁신·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재활용촉진법」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
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목 적

- (녹색·신성장 동력 선도)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부하 저감을 통해 녹색·신성장 동력을 견인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통해 순환 경제 구축
- (기술혁신 활동 극대화) 자원 재활용 기술혁신을 통한 천연자원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실현하여 국부유출 방지에 기여

□ 인증현황

- 현재 GR 대상 17분야 337품목*, 품질인증기준 252품목 고시

* 폐요업(54종), 폐유리(11종), 폐목재(21종), 폐플라스틱(97종), 폐고무(26종), 폐식용유(8종), 폐산·폐알칼리(8종), 폐유기용제(3종), 폐수처리오니(2종), 폐유(3종), 유기성폐기물(15종), 식물성잔재물(3종), 수산물가공잔재물(4종), 폐전지(2종), 폐섬유(12종), 폐금속(36종), 폐지(32종)

- 향후 다량 배출이 예상되는 新산업 수요분야(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탄소사용량 저감을 위한 재생원료(철 스크랩, 폐플라스틱 등) 활용 등 인증대상 발굴·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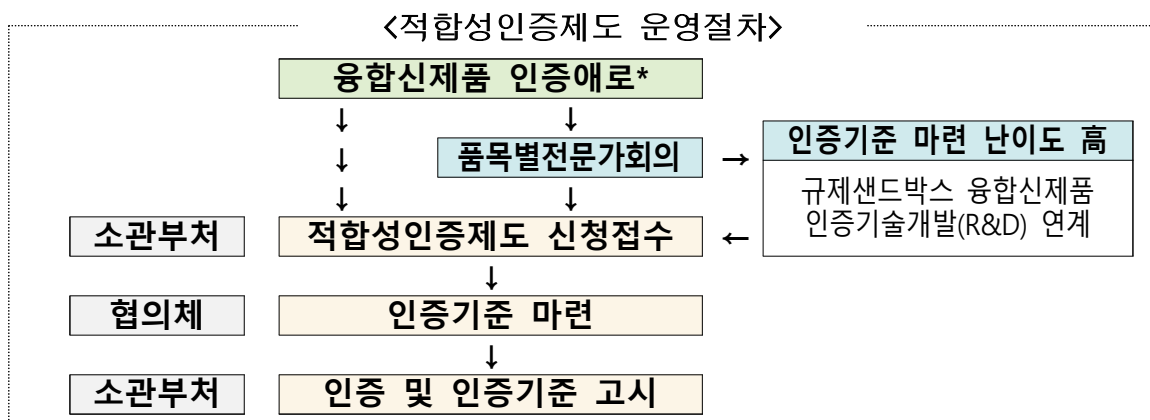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

□ 제도소개

- (개요) 융합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Fast-Track(6개월 이내)으로 적합성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특징) ① 모든 부처가 활용할 수 있는 쏠부처 제도, ② 전문가협의체가 신속히(90일 이내) 인증기준 마련, ③ 목표했던 기존 인증과 동일 효력

☐ 제도운영

- (절차) 소관부처는 신청접수, 전문가협의체 구성, 인증, 인증기준 별도 고시 실시 → 전문가협의체는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신속 마련
- (운영) 인증 접수 방법에 따라, ① 적합성인증제도 즉시 접수 건과 ② 품목별 전문가회의를 통한 적합성인증제도 연계 건으로 구분



* 발굴된 애로 257건('14년~'20년) 중 진행 중인 20건을 제외한 237건 애로 해소 → 이 중 31건은 적합성인증 취득, 206건은 타인증 연계·유권해석 등을 통한 애로 해소

☐ 향후추진

- (적합성 인증) 최근 3년간 제도 인증 건수 증가율 145% →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인증기준 개발 예산 확보 추진
 - * 인증건수(건) : ('14) 1 → ('15) 1 → ('16) 3 → ('17) 2 → ('18) 5 → ('19) 12 → ('20) 7
 - ** 코로나19로 인한 인증평가(공장·제품심사) 지연으로 '20년 인증 건수 감소
- (애로해소)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에 따른 융합신제품 인증으로 발굴 증가 예상 → 인증조사·분석 예산 확보 추진
 - * 애로지원건수(건) : ('16) 25 → ('17) 21 → ('18) 53 → ('19) 69 → ('20) 62

사 업 명
(2) 국제표준활동지원(37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2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제표준활동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국제표준협력과	이용현	이행무	
		043-870-5350	043-870-5354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국제표준활동지원	887	2,050	2,050	2,497	2,497	447	21.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915 (1,835)	1,835	887 (729)	-	948	2,050 (2,050)	2,050	2,050	957 (903)	-	1,093	2,497
· 국제표준화회의개최	515	515	274	-	241	640	640	640	352	-	288	638
· 국제표준화회의참가	400 (320)	320	22	-	298	410	410	410	23	-	387	202
· 사실상표준포럼지원	-	-	-	-	-	-	-	-	-	-	-	447
· 국제표준화선도 정책연구	100	100	91	-	9	100	100	100	82	-	18	100
· 국제의장·간사활동	900	900	500 (342)	-	400	900	900	900	500 (446)	-	400	1,110
○ 비목별 분류(합계)	1,935 (1,835)	1,835	887 (729)	-	948	2,050 (2,050)	2,050	2,050	957 (903)	-	1,093	2,497
· 일반수용비(210-01)	100	100	69	-	31	126	126	126	93	-	33	126
· 임차료(210-07)	357	357	147	-	210	462	462	462	207	-	255	462
· 국외업무여비(220-02)	400 (320)	320	22	-	298	410	410	410	23	-	387	202
· 사업추진비(240-01)	53	53	53	-	0	47	47	47	47	-	0	45
·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91	-	9	100	100	100	82	-	18	547
· 민간경상보조(320-01)	900	900	500 (342)	-	400	900	900	900	500 (446)	-	400	1,110
· 자산취득비(430-01)	5	5	5	-	0	5	5	5	5	-	0	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915 (1,835)	1,835	887 (729)	-	948	2,050 (2,050)	2,050	2,050	957 (842)	-	1,093	2,497
· 국제표준화회의개최	515	515	274	-	241	640	640	640	352	-	288	638
-일반수용비(210-01)	100	100	69	-	31	126	126	126	93	-	33	126
- 임차료(210-07)	357	357	147	-	210	462	462	462	207	-	255	462
- 사업추진비(240-01)	53	53	53	-	0	47	47	47	47	-	0	45
- 자산취득비(430-01)	5	5	5	-	0	5	5	5	5	-	0	5
· 국제표준화회의참가	400 (320)	320	22	-	298	410	410	410	23	-	387	202
-국외업무여비(220-02)	400 (320)	320	22	-	298	410	410	410	23	-	387	202
· 사실상표준포럼지원	-	-	-	-	-	-	-	-	-	-	-	447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447
· 국제표준화선도 정책연구	100	100	91	-	9	100	100	100	82	-	18	100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91	-	9	100	100	100	82	-	18	100
· 국제의장·간사활동	900	900	500 (342)	-	400	900	900	900	500 (446)	-	400	1,110
-민간경상보조(320-01)	900	900	500 (342)	-	400	900	900	900	500 (446)	-	400	1,1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우리기술 및 제품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무역기술장벽(TBT) 해소, K-방역모델,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등의 표준 선점 주도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대응과 산하 기술위원회(TC/SC/WG) 회의 참가 지원 및 시장 주도 품목의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실상 표준활동 지원
- (국제표준화회의의 국내 개최 지원) 우리기술의 국제표준안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와 협력 확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회원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ISO/IEC 기술위원회 총회 등 국제회의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지원
- (국제표준화회의의 참가 지원) ISO, IEC 기술위원회 등 국제회의(포럼, 세미나 등) 참가를 통한 국제표준 제안, 기술위원회 임원 수임 및 양자/다자간 표준화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대표단의 국제표준화회의의 등 참가 활동 지원
- (사실상표준포럼 지원) 기술의 빠른 패러다임 전환 및 시장 주도 품목이 급변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ASTM, IEEE, SAE 등 사실상 표준화 기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도적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사실상 표준포럼 지원
-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국제표준화기구 정책 대응, 4차 산업혁명 등 핵심 분야의 국제표준화 전략방안 도출 등 국제표준 및 국제표준화 협력 조사 연구
- (국제의장·간사활동지원)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기술위원회 국제임원(국제의장, 간사, 컨비너 등) 수임자 및 민간전문가에 대한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으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영향력 제고 및 표준외교 역량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 WTO/TBT 협정

- WTO TBT 2.6조, 5.5조 WTO 회원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 WTO TBT 11.1조, 11.6조 WTO 회원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② 추진경위

- '95년 WTO 출범에 따라,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세계시장 진출과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할 필요성 증대
- '02년부터 국내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정책위원회, 기술위원회 등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
- ISO·IEC의 국제표준화는 회원국간 합의와 투표(1국 1투표권)로 진행되며, 기술위원회(TC), 분과위원회(SC), 작업반(WG) 회의 각국 전문가가 참여와 논의를 거치는 장기간(3~5년)이 소요되어 국제표준의 제안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 협력도 중요
- 현 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 산업경쟁력 증가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 * (국정과제 34-6)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국제표준·인증혁신
- '19.4월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과 '19.6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을 마련하여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 DNA, Big3 등 핵심분야에서 '23년까지 국제표준 300종 제안, 의장단 60명 확대
- '20.6월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20~'23년까지 18종을 국제표준 제안 추진
- '21.2월 우리산업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 신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별 저탄소 기술, 시험평가 등에서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표준화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제임원·간사 활동지원	보조	한국 표준협회	1,110백만원	100	산업표준화법 제31조 등

3) '22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지원

: ('21) 640백만원 → ('22요구) 638백만원, △0.003%

- (요구)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 수소경제, DNA, Big3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및 「탄소중립 표준화」** 등을 위한 ISO, IEC 기술위원회 회의 등 국제회의(포럼, 세미나 등 포함) 개최 등을 감안, '21년과 동일 예산 요구

* '20.4.26 비상경제중대본에서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 발표

** '19.6.20 국정현안점검회의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전략 발표(국제표준 제안 300여종, 의장단 60명 진출 추진(~23년)

***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 킥오프」 추진('21.2.22.)

- (산출) 회의장 임차비 : 22회 × 약 21백만원(1회 평균 임차비용) = 462백만원

* 사업유지 : ('21년) 회의수 22회 → ('22요구) 회의수 22회

통역비, 자료인쇄 등 : 22회×약 3.5백만원= 77백만원

* 사업유지 : ('21년) 회의수 22회 → ('22요구) 회의수 22회

주요국 표준 기관(ASTM, ASME, DIN) 자료구입 등 : 49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지원장비(노트북 등) 구축 : 5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개최시 업무협력비 : 45백만원

②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 ('21) 410백만원 → ('22요구) 202백만원, △50.7%

- (요구)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 수소경제, DNA, Big3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및 「탄소중립 표준화」 등을 위한 ISO, IEC 기술위원회 등 국제회의(포럼, 세미나 등 포함) 참가 및 양/다자간 전략적 국제표준화 협력 등을 감안 및 '21년 보조금 연장평가 결과에 의거 '21년 대비 △48.8% 요구

- (산출)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 58명×약 3.5백만원(1회 출장여비) = 202백만원

* 사업 변경 : ('21년) 117명 → ('22요구) 58명

기재부 보조금(국제의장·간사지원) 연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외업무(국제표준화회의 참가) 410백만원 중 200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국제의장·간사)로 변경

③ 사실상표준포럼 지원(신설)

: ('21) - → ('22요구) +447백만원(신설)

- (요구)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여 기술패러다임의 전환이 빠르고, 시장 주도품목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선도적 표준화 역할 수행에 필요하기에 22년 내역사업 신설(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반도체, 미래차 등 분야에서는 국제표준보다 민간 표준(사실상 표준)을 우선 개발하여 시장 지배)

- (산출) 4개포럼 × 약 111.7백만원 = 447백만원

④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 ('21) 100백만원 → ('22요구) 100백만원, +0.0%

- (요구)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기 대응을 위해 쟁점 분야의 국제표준화 전략과 국제표준화 협력 방안 마련 등을 감안, '20년과 동일 예산 요구

- (산출)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 3건 × 약 33.3백만원 = 100백만원

⑤ 국제의장·간사활동지원

: ('21) 900백만원 → ('22요구) 1,110백만원, +23.3%

- (요구)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 수소경제, DNA, Big3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및 「탄소중립 표준화」 등을 위한 기술위원회별 국제임원, 민간전문가의 활동 중요성, '21년 보조금 연장평가 결과에 의거 '21년 대비 +29.1% 요구

- (산출) 국제의장·간사·컨비너 출장지원 : 196명×약 4.2백만원×100% = 823백만원

* 사업유지: ('21년) 국제임원 196명 → ('22요구) 국제임원 196명

민간전문가 출장지원 : 60명×약 3.6백만원×100% =216백만원

* 사업이관으로 신설: ('21년) 민간전문가 57명 → ('22요구) 민간전문가 60명

전문간사 인건비 : 2명×2.5백만원×12월×100% = 60백만원

의장간사협의회 및 워크숍 운영 : 1회×9백만원×100% = 9백만원

기재부 보조금(국제의장·간사지원) 연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외업무(국제표준화회의 참가) 410백만원 중 200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국제의장·간사)로 변경 반영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50,000	○ 일반수용비(210-01) : 125,660천원 가. 통역비, 자료인쇄 등(77,000천원) · 22회×3,500천원= 77,000천원 나. 주요국 표준 기관(ASTM, ASME, DIN) 자 료구입 등(45,000천원) · 9개 기관×5,000천원=45,000천원 다. 조정재원(3,660천원)	2,497,000	○ 일반수용비(210-01) : 125,660천원 가. 통역비, 자료인쇄 등(77,000천원) · 22회×3,500천원= 77,000천원 나. 주요국 표준 기관(ASTM, ASME, DIN) 자 료구입 등(45,000천원) · 9개 기관×5,000천원=45,000천원 다. 조정재원(3,660천원)
	○ 임차료(210-07) : 462,000천원 가.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462,000천원) ·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21,000천원×22회=462,000천원		○ 임차료(210-07) : 462,000천원 가.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462,000천원) ·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21,000천원×22회=462,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10,000천원 가. 국제표준화회의 참가(311,500천원) · 89명×3,500천원=311,500천원 나.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표준협력(98,000천원) · 28명×3,500천원=98,000천원 다. 조정재원 (5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02,367천원 가.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표준협력(203,000천원) · 58명×3,500천원=203,000천원 나. 조정재원 (△633천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p>○ 사업추진비(240-01) : 47,340천원</p> <p>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관계자와 간담회(16,000천원)</p> <p>나. 국제표준화 참가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16,000천원)</p> <p>다. 국제표준화회의 국내개최 관련 간담회 개최(15,000천원)</p> <p>라. 조정재원(340천원)</p> <p>○ 일반연구비(260-01) : 100,000천원</p> <p>가.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99,900천원)</p> <p>· 3건 × 33,300천원 = 99,900천원</p> <p>나. 조정재원(100천원)</p> <p>○ 민간경상보조(320-01) : 900,000천원</p> <p>가. 국제의장.간사.컨비너 출장지원(823,200천원)</p> <p>· 196명×약 4,200천원 = 823,200천원</p> <p>나. 전문간사 인건비(60,000천원)</p> <p>· 2명×2,500천원×12월 = 60,000천원</p> <p>다. 의장간사협의회 및 워크숍 운영(18,000천원)</p> <p>· 2회×9,000천원 = 18,000천원</p> <p>다. 조정재원(△1,200천원)</p> <p>○ 자산취득비(430-01) : 5,000천원</p> <p>가. 국제표준화회의 지원장비 구축(50,000천원)</p> <p>· 구축 용역 : 5,000,000원*1회=50,000천원</p>		<p>○ 사업추진비(240-01) : 44,973천원</p> <p>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관계자와 간담회(13,000천원)</p> <p>나. 국제표준화 참가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17,000천원)</p> <p>다. 국제표준화회의 국내개최 관련 간담회 개최(15,000천원)</p> <p>라. 조정재원(△27천원)</p> <p>○ 일반연구비(260-01) : 547,000천원</p> <p>가. 사실상표준포럼 지원(446,800천원)</p> <p>· 4개 포럼 × 111,700천원 = 446,800천원</p> <p>나.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99,900천원)</p> <p>· 3건 × 33,300천원 = 99,900천원</p> <p>다. 조정재원(300천원)</p> <p>○ 민간경상보조(320-01) : 1,110,000천원</p> <p>가. 국제의장.간사.컨비너 출장지원(823,200천원)</p> <p>· 196명×약 4,200천원 = 823,200천원</p> <p>나. 민간전문가 출장지원(216,000천원)</p> <p>· 60명×약 3,600천원 = 216,000천원</p> <p>다. 전문간사 인건비(60,000천원)</p> <p>· 2명×2,500천원×12월 = 60,000천원</p> <p>라. 의장간사협의회 및 워크숍 운영(9,000천원)</p> <p>· 1회×9,000천원 = 9,000천원</p> <p>다. 조정재원(1,800천원)</p> <p>○ 자산취득비(430-01) : 5,000천원</p> <p>가. 국제표준화회의 지원장비 구축(50,000천원)</p> <p>· 구축 용역 : 5,000,000원*1회=50,000천원</p>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건수 (단위: 건)	목표	120	128	105	131	128	예산 증감분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목표설정	당해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건수	국표원 내부 통 계자료 및 국제 표준화기구 홈 페이지 자료
	실적	126	145	6	-	-			
	달성도	105.0	113.3	5.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81개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4.2%(558개), IEC 69.6%(142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15,615건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78개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5.0%(565개), IEC 68.6%(142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12,183건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79개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3.6%(556개), IEC 68.9%(151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10,884건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78개('21.12월 초)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1.4%(573개), IEC 73.6%(156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9,801건('21.12월 초)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탄소중립 표준화」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민간 주도의 국제표준화 활동 확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에서 국가위상 강화

* 우리나라 ISO 회원평가순위 8위, IEC 국제표준 제안 2위 및 간사 수입 순위 8위('20.12월 기준)

- ISO·IEC 기술위원회 임원(의장, 간사, 컨비너 등) 진출과 신기술 분야 국제표준 제안 확대로 표준강국을 향한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역량 증대

* 총 237명 : 국제의장 20명, 간사 28명, 컨비너 189명 ('20.12월 기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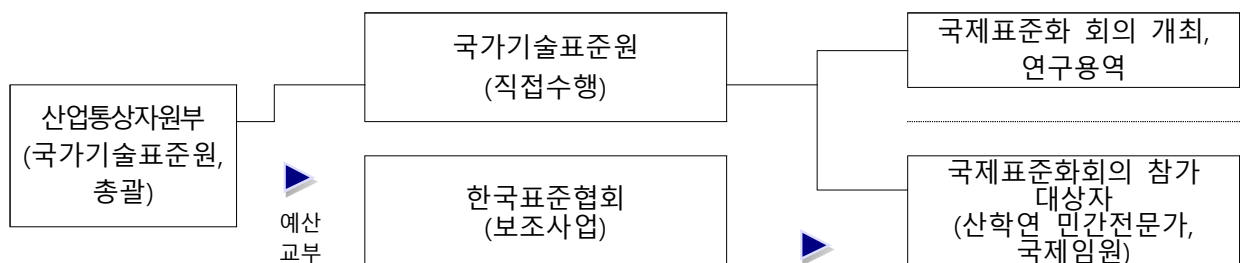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국가기술표준원 직접수행】

- ① 국가기술표준원내 표준담당과를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 수요조사(전년 11월)
- ②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계획 확정 및 각과 통보(12월)
- ③ 연중 사업시행 및 사업수행결과 분석 및 평가 (1월-12월)

【보조금 수행】

- ① 보조금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1월)
- ② 사업계획 심의확정(1월)
- ③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연중)
- ④ 사업집행결과 정산 및 분석·평가 (12월-익년 1월)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1,840	2,050	1,950	1,940	1,910	
'21~'25		2,050	2,150	2,260	2,370	2,49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없음
- 3) 자체평가
 - 재정사업 자율평가 : '21년 “보통” ('19년 우수, 20년 우수)
 - 보조사업운용평가 : '21년도 연장평가(3년 단위) “사업방식변경”
 - 국가기술표준원의 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민간전문가 지원 2억)을 표준협회로 이관하는 것 검토 필요
 - * 국외업무(국제표준화회의 참가) 410백만원 중 200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국제의장·간사)로 변경)
 - 본 보조사업이 없다면, 한국 기업 기술의 국제표준화 통로/네트워크가 중단되어 국제표준화를 선제적으로 주도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술의 시장지배와 시장진입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2년 예산 편성시 국외업무(국제표준화회의 참가) 410백만원 중 200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국제의장·간사)로 편성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우리나라는 '15년 「ISO 서울총회」, '18년 「IEC 부산총회」, 20년 「한-미, 한-독 표준포럼」의 성공적 개최 및 19년, 20년 ISO 이사국 선임, 20년 IEC 이사국 재선임을 계기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표준화 역량을 인정받고 있음
- K-방역모델, 4차 산업혁명 핵심 및 탄소중립 표준화 분야에서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중소·대기업)들이 공적표준화기구(ISO, IEC 등)에서 국제표준화 무대에 전면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이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에서 국내 전문가 활동은 물론 임원 진출 확대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주도를 위한 신규 국제표준 제안 확대 추진
 -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우리나라 임원 수('17년 190명 → '18년 208명 → '19년 216 → '20 237명)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 4강국 및 표준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향후 ISO 및 IEC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우리의 국제표준화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
 - * 現 ISO/IEC 상임이사국(6개국) :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세계 각국은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
 - 미국 내 표준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국제표준제정기구를 통한 기술정책 및 표준 협력을 요청하는 ①법안 제출*(21.3.)과 중국 기술패권을 목표로 하는 ②중국 표준 2035 개발** 중
 - * 바이든 인수위원회 상무부 기관검토팀(Agency review team)에도 표준 전문가인 미국표준원(ANSI) 부회장 참여
 - ** 국제표준 부합화, 부합화 우선 대상 선정 및 개발, 기업 및 전문가의 국제표준활동 참여 독려, 주요국가와의 상호 인증 강화 등을 포함
- 우리나라도 최근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모델,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및 탄소 중립 표준화 분야에서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진행 중임
 - * 우리나라 ISO 회원평가순위 8위, IEC 국제표준 제안 2위 및 간사 수입 순위 10위 차지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확대가 필요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4,458		4,458	-	-	-	4,458	4,448	99.8	99.8	-	10
2019	2,105		2,105	-	-	-	2,105	2,093	99.4	99.4	-	12
2020	1,915	△80	1,835	-	-	-	1,835	887	48.3	48.3	-	948
2021	2,050		2,050	-	-	-	2,050	957	46.7	46.7	-	1,09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3,590	3,590	3,590	3,590	-	3,590	3,590	-	-	100
2019	900	900	900	900	-	900	900	-	-	100
2020	900	900	500	500	-	500	342	-	-	38.0
2021.12월	900	900	500	500	-	500	446	-	-	49.6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액 10백만원(집행잔액)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4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계약에 의한 차액(4백만원) 등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액 12백만원(집행잔액)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1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계약 차액(9백만원), 자산취득비(430-01목) 잔액(2백만원) 등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액 948백만원(집행잔액)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일반수용비(210-01) 31백만원, 임차료(210-07) 210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220-02) 298백만원, (국제의장간사지원) 민간경상보조(320-01) 400백만원, (정책연구) 일반연구비(260-01) 계약 차액 9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국제표준화회의가 '20. 2월부터 연기 및 3월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코로나 확산방지 정책에 따른 국내개최 국제표준화 회의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액 1,093백만원(집행잔액)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일반수용비(210-01) 33백만원, 임차비(210-07) 255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220-02) 387백만원, (국제의장간사지원) 민간경상보조(320-01) 400백만원, (정책연구) 일반연구비(260-01) 계약 차액 18백만원. ※ 코로나19(오미크론 포함) 팬데믹으로 '20년에 이어 '21년에도 지속되어 국제표준화 대면 회의가 취소(미대면 진행)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코로나 확산방지 정책에 따른 국내개최 국제표준화 회의도 취소 및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 2021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1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붙임 1>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

<붙임 2>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표준화 추진 현황

<붙임 3> 우리나라 국제표준화 현 주소 ('20년 말 기준)

<붙임 4> 국제표준화활동지원 사업개요 및 그간의 성과

<붙임 5>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조직 현황

<붙임 6> 사실상 표준화 동향

- ◆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우수성이 전 세계의 모범사례로 평가됨에 따라,**
 - 대응과정에서 검사진단기법 등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하여 국제표준으로 제안

□ 추진경과

- K-방역모델인 ①검사·확진 → ②역학·추적 → ③격리·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절차와 기법을 국제표준 추진 발표(4.26 비상경제중대본)
- 민·관합동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20.5월)
 -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식약처, 특허청, 대한감염학회, 진단키트·장비업체 등
-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로드맵) 발표'(6.11 비상경제중대본)

□ 국제표준 제정 현황

- 'K-방역 3T(Test-Trace-Treat)' 분야 18종을 '22년까지 순차적으로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

- (제정 완료 : 1종) 유전자 증폭기반 감염병 진단기법 검사실 운영기준 국제표준 제정('20.12월)
- (제안 단계 : 7종) 즉시 표준화가 가능한 품목부터 순차적으로 제안
 - CD 단계(2종) : ①드라이브 스루, ②워크 스루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 WD 단계(5종) : ③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④모바일 자가진단 앱(App) 요구사항, ⑤이동형 음압 컨테이너 선별진료소, ⑥특별 출입국 절차 운영 지침, ⑦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지침
- (제안 준비단계 : 10종)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자가진단·문진 결과와 전자의무기록(EMR) 연동 방법 등 표준안 개발 진행 중(~'21년 3분기)

※ 국제표준 제정절차 : 신규작업표준안(NP) → 작업초안(WD) → 위원회안(CD) → 국제표준안(DIS) → 최종국제표준안(FDIS) → 국제표준(IS) 제정

-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 세계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

□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협의회 킥오프(21.2.22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착수)

○ (추진배경) 우리산업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 신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별 저탄소 기술, 시험평가 등에서 국제표준화 선점 필요

○ (구성) 총괄위원회* 및 4개 분과위원회(①에너지전환, ②신유망저탄소산업, ③저탄소전환핵심산업, ④표준화기반강화)

* 공동위원장(두산중공업 대표, 국표원장) 등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 총괄위원회 위원 15명)

○ (내용) 탄소중립 표준화동향과 필요성을 공유 및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방안 논의

* 산업별 저탄소 기술의 구현방법, 시험평가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 기술 개발의 가이드 역할

※ [참고 1] 탄소중립 표준화전략 협의회 분야

에너지 전환 표준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표준화	저탄소전환 핵심산업 표준화	탄소중립 표준화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 풍력, 태양광 ○ (화력) 전환 및 효율화 ○ (저장) 에너지저장장치 ○ (전송) 분산형 전력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연료) 액체 기체 등 ○ (수소) 그린수소, 연료전지 ○ (탄소활용) CCUS ○ (전자) 고성능 이차전지 ○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 전기차, 친환경선박 ○ (건물) BEMS, 단열재 ○ (제조) 스마트제조, 혁신소재 ○ (기기) 가전, 스마트미터 ○ (순환경제) 재제조, 물질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치업(기업육성) ○ 녹색금융, 탄소발자국 ○ 국제표준협력 ○ 인증·실증체계 구축 ○ 표준특허창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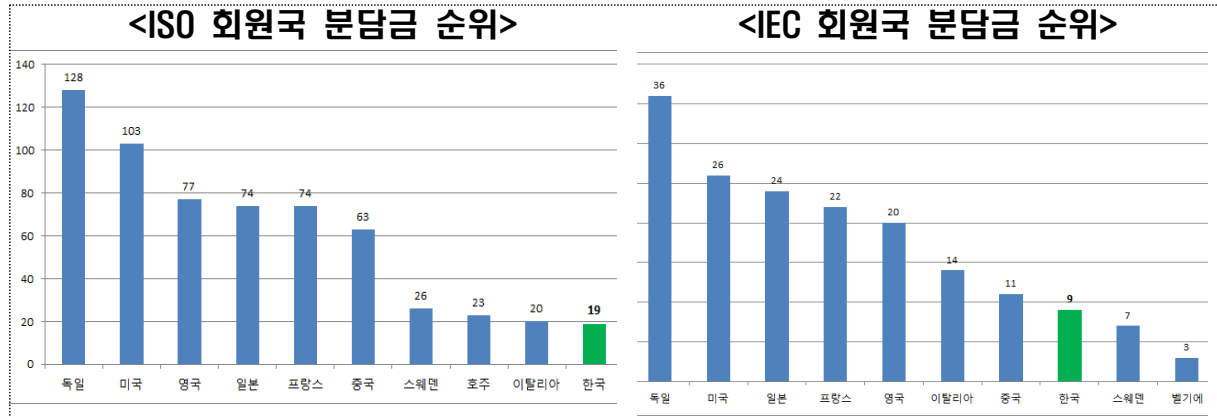
※ [참고 2] 주요표준화 분야 및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IEC) 기술위원회(TC)

구분	에너지 전환 표준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표준화	에너지 주체별 저탄소 표준화	탄소중립 표준화 기반강화
표준분야 (관련 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력(IEC/TC5) ○ 풍력(IEC/TC88) ○ 태양광(ISO/TC82) ○ 태양열(ISO/TC180, IEC/TC117) ○ 에너지저장장치(IEC/TC120) ○ 전력망(IEC/TC57, IEC/TC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가스(ISO/TC255) ○ 액체바이오연료(ISO/TC28) ○ 수소기술(ISO/TC197) ○ 연료전지(IEC/TC105) ○ 고성능 이차전지(IEC/TC21, IEC/TC3) ○ 저전력반도체(IEC/TC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차(ISO/TC22, TC24) ○ 수소·전기차(ISO/TC22) ○ 친환경선박(ISO/TC8) ○ BEMS(ISO/TC301) ○ 혁신소재(IEC/TC113, TC229, TC 61, TC206) ○ 스마트제조(IEC/TC65) ○ 스마트계량(IEC/TC13) ○ 가정용전기기기(IEC/TC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발자국(ISO/TC207) ○ 녹색금융(ISO/TC207) ○ 국제표준협력(미국, 독일 등) ○ 제품·서비스 실증·인증 ○ 매치업(기업육성) ○ 표준특허창출 지원 ○ 표준교육·홍보

붙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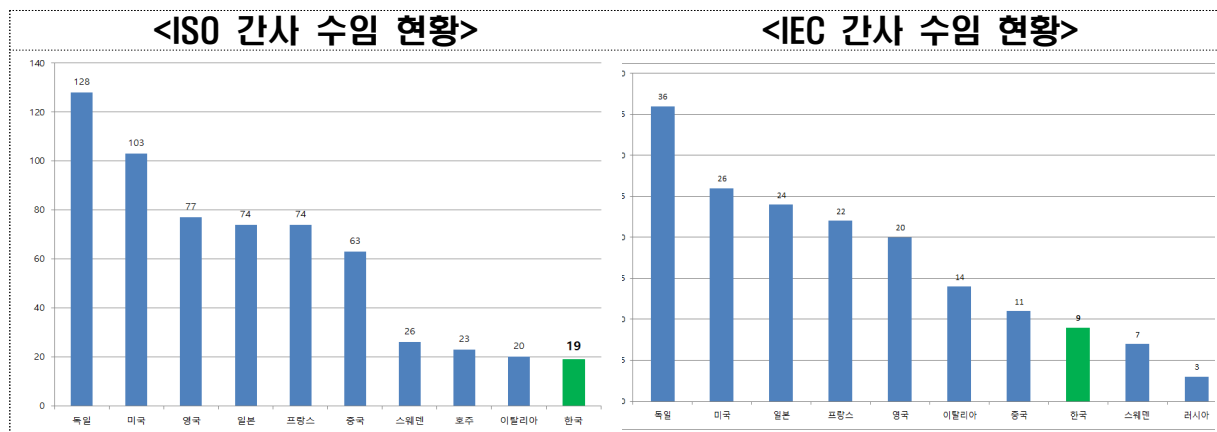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제표준화 현 주소(20년 말 기준)

- (국가 순위) 우리나라는 양대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 평가에서 **ISO 10위, IEC 8위** ('20년 기준,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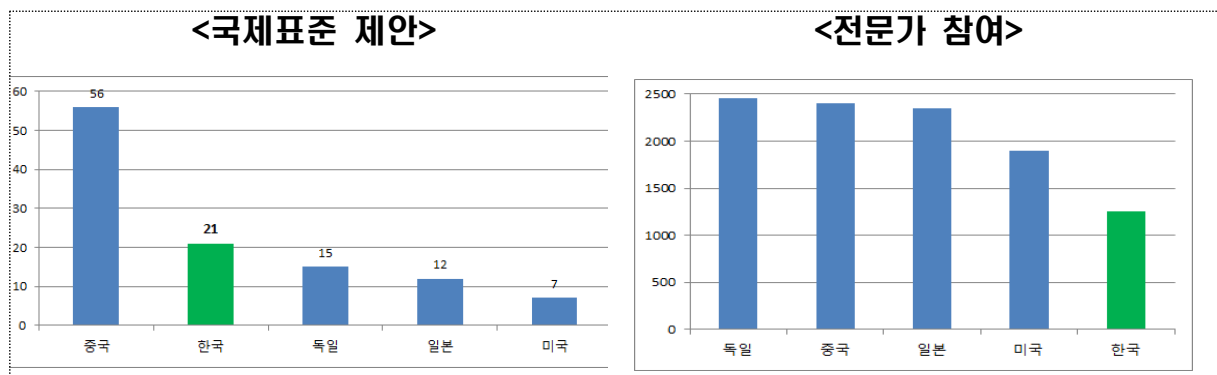


* <평가기준> (ISO) 분담금(60%)+간사수입(20%)+정회원률(20%) = 최종평가지수
(IEC) 인구, 국민총소득(GNI), 전력소비량으로 산출 = 분담금

- (간사국 수입) 실질적 국제표준화 활동 지표인 우리나라 국제 간사국 수입은 **ISO 10위, IEC 8위** ('20년 기준)



- (IEC 표준 제안 및 전문가 활동 참여) 최근 1년간('19.7~'20.6) NP(신규표준)제안 국가 **2위, 전문가 참여 5위**



붙임 4

국제표준활동지원 사업개요 및 그간의 성과

- (사업경위 및 목적) WTO 체제 출범('95) 이후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02년 동 지원사업 추진

* WTO TBT 제2.5조에 따라 회원국은 국제표준을 자국의 기술규정의 기초로 사용

- K-방역모델을 비롯한 수소경제, AI,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국제 표준화 대응을 통해 우리 산업의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 이를 통해 우리 기술과 제품의 수출경쟁력 기반확보, 산업의 혁신 성장 기반 조성,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영향력 확대
- (예산 현황)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제안 및 대응, 임원수입 활동 및 국제표준화 협력 등을 위한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
 - '20년 예산 1,835백만원 ⇒ '21년 예산반영액 2,050백만원(전년비 11.7%)

구 분 (백만원)	'19년	'20년	'21년	'22년 (요구액)
□ 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	2,105	1,835 (△12.8)	2,050 (11.7)	2,112 (3.0)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지원	705	515	640	640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지원	400	320	410	210
· 국제 의장·간사 활동 지원	900	900	900	1,162
· 국제표준화선도 정책연구	100	100	100	100

- (그간의 성과) 양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세계 10위, IEC 세계 8위 달성
 - ISO·IEC 산하 기술위원회(TC/SC) 959개 중 718개(74.9%)에 정회원 가입
 - 임원수입 현황 ('19년말 누계) : 237명 (국제의장 20명, 간사 28명, 컨비너 189명)
 - 국제표준제안 ('20년말 누계) : 1,073건 * '20년 79건(ISO 60건, IEC 19건)
 - ISO·IEC 등록 국내 전문가 : 6,900여명 (ISO 4,900여명, IEC 2,000여명)

붙임 5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조직 현황

기구별 현황

기구명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전기통신연합)
설립연도	1947	1906	1865
담당분야	전기전자(IEC), 전파통신(ITU)을 제외한 모든 기술 분야	전기전자 기술 분야	전파통신 기술 분야
지위	비정부간 국제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정부간 국제기구
회원국	165개국 (정회원 122, 통신회원 39, 구독회원 4)	173개국 (정회원 62, 준회원 27, 개도국회원 84)	193개 회원국 (약 900개 민간회원, 학계전문가 20,000여명)
표준 수	23,574종	10,992종	6,981종
위원회 수	TC: 254개 SC: 501개 WG: 2,832개	TC: 110개 SC: 101개 WG: 1565개	ITU-R, SG: 6개 ITU-T, SG: 11개 ITU-D, SG: 2개

국제표준화 필요성



세계시장 선점

무역 및 수출의존도가 높은 (GDP 대비 무역비율 104.2%)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을 통해 세계 시장 선점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무역기술장벽 대응

WTO/TBT 협정 제2조4항에 따라 수출 대상국은 국제표준을 자국 기술규정으로 채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기술의 표준 선점 실패 시 수출경쟁력 저하 불가피



환경규제 대응

우리나라 무역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은 각종 환경규제를 시행하여 우리 산업에 큰 부담, 따라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이러한 규제에 적기 대응하는 표준개발 필요

ISO/IEC 표준개발위원회 구조 및 의장·간사·컨비너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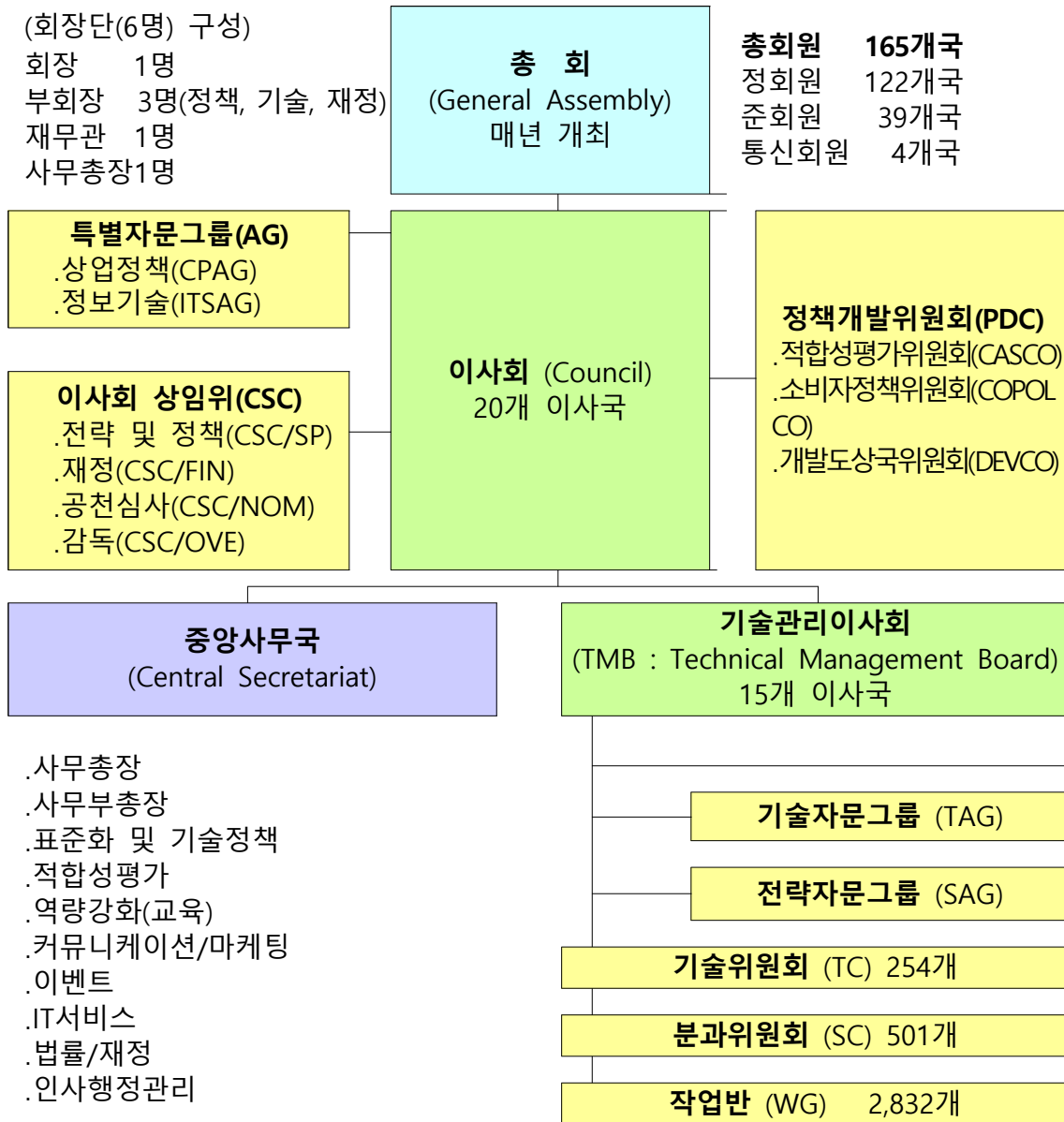
STRUCTURE

ISO/IEC는 기술 분야별로 TC를 설립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TC는 기술 분야를 세분화하여, 다수의 SC를 둘 수 있으며 표준안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기술 분야를 더욱 세분화 하여, 다수의 WG 운영 가능

OFFICERS

의장은 위원회 운영과 표준개발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며, 간사는 위원회 내 개발하는 모든 표준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책임. 컨비너는 WG의 장으로서, 국제표준제안 및 개발을 주도하고 참여

□ ISO 조직도



CASCO	Committee on Conformity Assessment	(적합성평가위원회)
COPOLCO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소비자정책위원회)
DEVCO	Committee on Developing Country Matters	(개발도상국위원회)
REMCO	Committee on Reference Materials	(표준물질위원회)
TAG	Technical Advisory Group	(기술자문그룹)
SAG	Strategical Advisory Group	(전략자문그룹)

- ★ 국제표준화기구 : 23개국 155명(10개 파트 26개 팀 정직원 155명)
- 사무국
 - 표준화 기술정책(7)
 - 적합성평가/소비자(3)
 - 개도국(1)
 - 교육/연구(1)
 - 재정/서비스(4)
 - 판매/통신/정보(4)
 - 전략계획/운영(1)
 - 인사(1)
 - 정보기술/전자서비스(1)

□ IEC 조직도



□ 사실상 표준화 동향

-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반도체, 미래차 등 분야*에서는 국제표준보다 민간 표준(사실상 표준)을 우선 개발하여 시장 지배

* SAE(미래차), ASTM(첨단소재), 3GPP(통신), SEMI (반도체), IEEE(전자) 등

< 사실상 표준화 주요 분야 >

- ▶ (SAE : ) 자율차 레벨표준(J3016) 등을 개발 → ISO PAS 22736으로 수용
- ▶ (ASTM : ) ISO와 공동으로 3D프린팅 표준(ISO/ASTM 52900) 등을 개발
- ▶ (3GPP : ) ITU에서 정한 비전에 따라 5G·IMT 등의 국제표준을 개발

< 미국 사실상 표준화 정책 >

- ▶ 미국 사실상 표준화 활동은 정부에서 지원, 민간 주도 표준화
- 국가기술이전법(NTTAA)을 통해 정부가 민간 표준개발 활동에 참여하고, 국가표준 개발보다 민간표준을 인용·활용토록 권고

구분	ASTM (재료시험협회)	ASME (기계기술자협회)	NFPA (화재방재협회)	SAE (자동차기술자협회)	UL (보험연구소)	IEEE (전기전자기술자협회)
표준수	12,000종	600종	300종	10,000종	1,500종	1,300종

□ 사실상 표준 협력 강화

-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이 시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중심의 사실상 표준화에 대한 대응 필요
- 산업계 중심의 사실상 표준화 활동 대응을 위해 산업 분야별 포럼 구성 및 운영 활성화 필요

- ▶ ASTM, IEEE, SEMI 등 주요 표준화기구 대응(산업계 중심 포럼 운영 등)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사 업 명
(3)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37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3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협력과	박재형	유수열	이종민
		043-870-5560	043-870-5568	043-870-556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확정(B)	(B-A)	(B-A)/A
개도국표준체계 보급지원(ODA)	1,559	1,453	1,453	2,143	2,143	690	47.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559	1,559	1559 [1,559]	-	-	1,453	1,453	1,453	690 [690]	763	-	2,143
· 미얀마 섬유분야 국제 공인 시험센터 구축 지원	809	809	809 (809)	-	-	505	505	505	-	505	-	385
· 미얀마 국제공인 건설 재료 시험센터 설립	-	-	-	-	-	258	258	258	-	258	-	376
·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 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 험소 설립 지원	-	-	-	-	-	-	-	-	-	-	-	570
· 표준체계전수협력	550	550	550 [550]	-	-	570	570	570	570 [570]	-	-	612
· 협력타당성조사	200	200	200 [200]	-	-	120	120	120	120 [120]	-	-	200
○ 비목별 분류(합계)	1,559	1,559	1,559 [1,559]	-	-	1,453	1,453	1,453	690 [690]	-	-	2,143
· 민간경상보조(320-01)	1,559	1,559	1,559 [1,559]	-	-	1,453	1,453	1,453	690 [690]	-	-	2,1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 지원)

- 동 내역사업은 국내 섬유기업이 다수 진출한 미얀마를 대상으로 미얀마의 섬유산업 발전과 현지 섬유기업의 시험·인증 애로해소를 위해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 지원

o (미얀마 국제공인 건설재료 시험센터 설립)

- 동 내역사업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건축물 붕괴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미얀마를 대상으로 국제공인 건설재료 시험센터 및 품질관리제도 구축함으로써 현지 건설 안전 확보와 함께 현지 진출 국내기업의 애로해소 지원

o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 동 내역사업은 국가 차원의 에어컨 에너지효율등급제도 구축을 통한 제도 활성화 및 내수시장 안정화 촉진을 원하는 우즈베크를 대상으로 에어컨 국제공인시험소 및 에너지 효율 등급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우즈베크 에너지효율등급제도의 활성화 및 우리 기업의 우즈베크 중앙아시아 시장진출 및 수출 증대 지원

o (표준체계 전수협력)

- 동 내역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자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표준, 인증제도, 법정계량 등의 표준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최근 급증하는 개도국의 기술규제를 완화 또는 사전대응 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음

o (협력타당성조사)

- 동 내역사업은 국내산업의 개도국 진출 수요와 수원국의 수요를 함께 만족시키는 무상원조사업의 발굴과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기획 및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 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촉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② 추진경위

- WTO 출범 이후,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활동 강화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02년부터 추진된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비정기적으로 개도국과 협력 사업을 진행
- 하지만 최근 개도국은 국가필수인프라의 표준인증체계의 부재로 불량제품 유통 등으로 인한 자국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무역활성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표준 체계 확립을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해외사업 확대 추진
 - * 우리 기업들도 개도국이 표준화, 적합성평가 등의 표준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시장 진입·확대에 어려움 직면
- 또한, 동 사업은 2010년 12월 21일 발표한 ODA 선진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2011~201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공익사업으로, '11년 기획재정부에서 심의·승인되었고, 기재부의 요구의 따라 2012년부터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의 내역사업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추진
 - * OECD 개발원조위원회 신규 공여국이자,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 수입국으로써, 개도국에 한국의 선진화된 표준체계를 보급하는 공적원조사업
- 2017년부터 국정과제 34번(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의 세부사업으로 포함되어 추진중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2~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표준협회,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신규내역사업 공모)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정부기관, 우리 수출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시험센 터구축지원	보조	한국의류시험연구원	385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미얀마 국제공인 건설재료 시험센터 설립	보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376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우즈베키스탄 에너지효율인증 인프라구축	보조	수행기관 공모	57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표준체계 전수협력	보조	수행기관 공모	612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협력 타당성조사	보조	수행기관 공모	20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3) '22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 지원 : 385백만원

- 국내 섬유기업이 다수 진출한 미얀마에 현지 섬유산업 발전 및 섬유기업의 시험·인증 애로해소를 위해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3차년도)
 - * 국제공인시험능력구축(역량강화) : ('21요구) 108백만원 → ('22요구) 175백만원
 - * 기술지원사무소 운영 : ('21요구) 87.4백만원 → ('22요구) 90백만원
 - * 사업운영비 : ('21요구) 133.6백만원 → ('22요구) 120백만원

○ 미얀마 국제공인 건설재료 시험센터 설립 : 376백만원

- 급속한 도시화로 건축물 붕괴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미얀마에 건설재료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센터 및 관련 제도 구축(1차년도)
 - * 국제공인시험능력구축 및 기술지원사무소 운영 : ('21요구) 144백만원 → ('22요구) 140백만원
 - * 시험기자재 구축 : ('22요구) 100백만원
 - * 사업운영비 : ('21요구) 114백만원 → ('22요구) 136백만원

-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 시험소 설립 지원(신규) : 570백만원
 - 우즈벡 내 한국 제품 선호도 급증에 따라 현지 기업 시험인증 애로 해소를 위해 국제공인시험소 구축
 - * 국제공인시험능력구축 : ('22요구) 49.4백만원
 - * 시험기자재 구축 : ('22요구) 400백만원
 - * 역량강화 : ('22요구) 121백만원

○ 표준체계 전수협력 : 612백만원

내내역사업	'21년 예산 (백만원)	'22년 예산 (백만원)	산출내역(백만원)
키르기스스탄의 섬유분야 시험·검사 및 제품안전제도 선진화 지원	184	112	제품안전제도 구축(35) + 시장조사 시뮬레이션(15) + 시험역량강화(30) + 사업운영비(32)
에티오피아 섬유·가죽분야 표준·적합성평가 선진화 지원	185	150	국제공인시험능력 구축(55) + 제품안전제도 전수(41) + 사업운영비(54)
인도네시아 법정계량 역량강화 지원	130	150	양국제도 조사 및 자료 개발(50) + 법정계량 역량강화(60) + 사업운영비(40)
베트남 태양광제품 시험인증시스템 구축지원	-	200	시험인증시스템 컨설팅(140) + 사업운영비(60)

○ 협력타당성 조사 : 200백만원

- 개도국의 협력 수요와 국내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 측면을 함께 고려한 사업 기획과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 * 신규 프로젝트 설계 및 타당성조사 : 200백만원 (현지조사 및 상세설계)
 - * 3건 × 40백만원(2021년) → 2건 × 100백만원(2022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7~'21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1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상대국 표준체계 제도도입 준비 및 완료 (단위: 건)	목표	7	7	7	7	7	전년도 확정된 사업 수행연도 ODA시행 계획에 따른 협력 사업 수를 감안하 여 산출	ODA 협력국의 표준 제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제도 도입 건수	해당국 기관자료
	실적	7	7	8		-			
	달성도	100	100	114	-	-			
성과평가 종합점수 (단위: 점)	목표	-	11	11	11	11	종합점수가 '성공적' 등급으로 평가되는 11점을 기준	해당연도 성과분석 진행한 국가의 종합점수 평균	성과분석 및 수원국 만족도조사 보고서 등 「ODA 평가등급제 시행지침」 기준
	실적	-	11	14.2	-	-			
	달성도	-	100	129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얀마-건설) 건설재료 표준 및 제도 수립을 위한 공동로드맵 구성(단기 1건, 중장기 1건), 미얀마 맞춤형 표준 제정 지원(기술자문회의 7회, 미얀마표준 제정을 위한 건설부 회의 4회, KS 제품표준 8종 및 인용표준 39종 현지화 지원), 표준 및 제도 전수를 위한 초청교육 실시) ▶ (키르기스스탄-섬유) 시험검사 및 제품안전제도 전수를 위한 현지 세미나 개최(표준계량센터, 경제부, 기업인 등 36명 참석, '18.6.27) ▶ (베트남) 베트남과의 협력사업 증진 및 향후 우리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국표원-표준계량품질총국 간 MOU 갱신 및 '18년 Action Plan 합의('18.5.23, 표준계량품질총국 원장 등 4명), 계량기 정기검사제도 구축 지원을 위한 초청교육('18.6.13-6.19, STAMEQ 및 VMI 공무원 5명 참석) ▶ (에티오피아-섬유) 한국의 표준화·시험인증 및 계량측정 분야 전수를 위한 표준원 공무원 초청교육('18.3.3-3.8, 9명 참석) ▶ (페루)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관리제도 협력을 위한 국내 제도와의 차이점 등 분석, 페루 시험·인증기관 방문 및 한국의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소개 ▶ 주요 협력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 사업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해 '동남아 지역 표준·협력포럼' 개최('18. 10. 23, 국내 프로젝트 참여기관 및 전문가 및 협력대상 5개국 40여명 참석)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오스) 라오스의 제품안전제도와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개발을 위하여 공동연구 2회 실시(한국, 5.28-6.4 / 라오스, 6.29-7.6) ▶ (미얀마-섬유) 미얀마 공업부 직원 대상 이화학 시험 및 섬유 완제품 검사 등 섬유분야 실무교육 1회 실시(미얀마, 4.1-4.5, 11명) ▶ (미얀마-건설자재) 레미콘 공장인증 제도 전수 및 기초 전자재 국제표준화 교육 1회 실시(미얀마, 6.24-6.29, 50여명) ▶ (페루)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관리제도 협력을 위해 제품별 에너지효율 및 소음에 대한 규격 등 전문가교육 2회 실시(페루, 4.4-4.11 / 8.12-8.16) ▶ (베트남-LED) 베트남 시험기관 대상 LED제품 신규 규제에 따른 유해물질 시험 및 분석 방법 교육 1회 실시(베트남, 6.16-6.18)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 지원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인시험능력 구축) 공동시험소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품질경영매뉴얼 및 지침서 개발 - (시험장비 지원) 주요 유해물질 분석장비(3종), 전처리장비(10종) 등 총 5분야 28종 81세트 구축 - (섬유기술센터 운영) 미얀마 섬유·의류분야 현지기업 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 (표준체계 전수협력) 4개국 대상 협력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 한국의 비대면 교육 및 관련 표준화 경험 공유, 국제표준문서 작성법 교육, 냉장고 에너지효율 시험규격에 따른 시험방법 교육 - (키르기스스탄) 한국,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들의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영 상황을 비교 소개, EAEU의 공통 기술규정에 따른 섬유제품 시험방법 교육 - (에티오피아) 국제기준(ISO)에 따른 섬유, 가죽제품의 시험방법 교육 - (미얀마) 미얀마 섬유표준 도입 지원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기반한 국가표준 활용사례 및 표준 제정 배경 등 교육, 제품안전 정책홍보 등 제품안전 관리의 필요성 인식 제고 교육

	▶(협력타당성조사)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등 4개국과 신규협력사업 기획 및 타당성조사 추진
2021	▶(표준체계 전수협력) 4개국 대상 협력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르기스스탄) 한국의 제품안전정보시스템(정보센터 DB 구축 절차, 정보센터 활용방법 등) - (에티오피아) 섬유류의 기능성 및 견뢰도 평가법, 섬유 혼용률 시험방법, 신발 및 가죽제품의 물성 평가법 등 섬유·가죽 시험법에 대한 교육 콘텐츠 개발, 시험결과 비교를 통한 원격 교육 실시 - (미얀마) 미얀마 섬유분야 국가표준 제정 지원을 위해 표준해설집 제작, 섬유 제품 표시기준 및 안전기준 제정 지원 등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섬유제품 유통물질 규제 필요성 인식 제고 교육 - (인도네시아) 법정계량분야 업무에 기초 이론인 ①계측기 교정 관련 교육, ② 정량표시상품 제도 및 검사 실습교육, ③한국의 법정계량제도의 이해에 대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법정계량제도 기초 교육 ▶(협력타당성조사) 과테말라, 페루, 인도네시아 등 3개국과 신규협력사업 기획 및 타당성조사 추진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 ▶ 미얀마 섬유 국제공인 시험센터 기대효과
 - 현지 한국 섬유기업의 시험인증 관련 업무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
 - * 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수입하고 있는 섬유류 비중이 44%
 - * 시험성적서 인증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
 - 한국 시험인증기관의 미얀마 진출
 - * 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 섬유 및 의류 시험인증시장 규모 735.4억원
- ▶ 미얀마 건설재료 국제공인 시험센터 및 국가표준 구축 기대효과
 - 국가표준 부재로 다양한 외국표준이 혼재되어 사용되며(특히 일본표준이 선점), 이는 국내기업의 시장 진출에 걸림돌 → 미얀마 국가표준 구축을 통해 걸림돌 제거
 - * 미얀마 건설시장: ('15년) 4조원에서 연간 10%대의 성장세 유지, ('25년) 17조원 전망
- ▶ 한국 표준체계의 확산을 통한 사전 기술규제 대응 및 수출시장 확대 기대
 - 동남아, 중남미 등 표준 및 기술규제 공무원대상 초청교육과정 운영
 - *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표준·시험인증·계량 체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우리나라의 인증마크를 별도 시험인증 절차 없이 개도국이 수용하도록 추진
- ▶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아국의 거버넌스 강화
 - 협력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국제표준 제안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제의장, 간사, 컨비너 진출확대 등을 통해, 표준강국으로 도약을 추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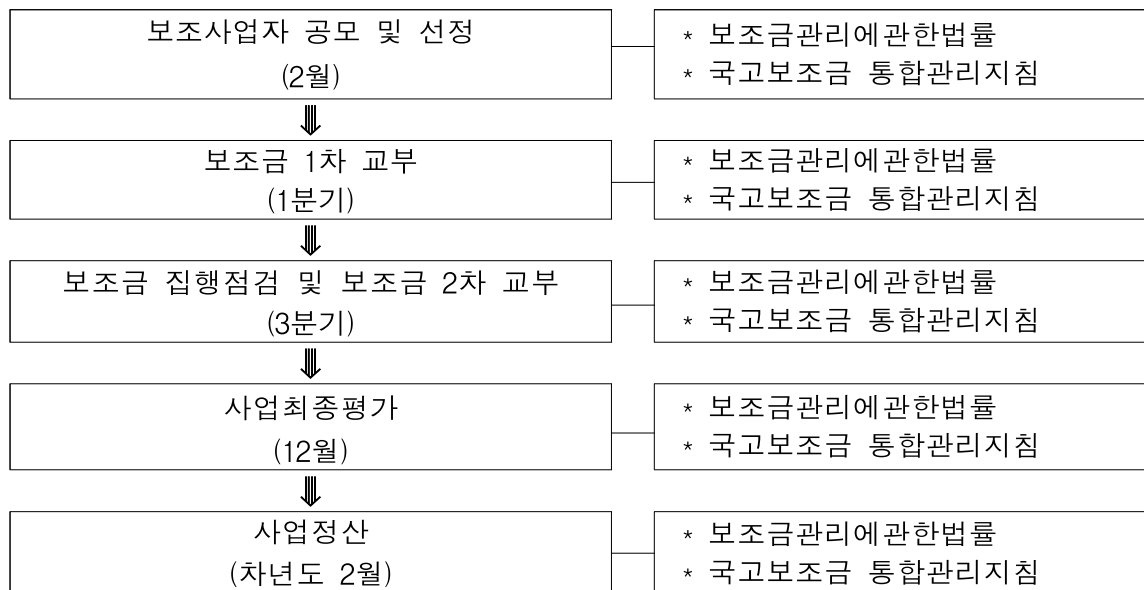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동 사업의 국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책 방향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ISO 이사국, ISO/TMB* 이사국, IEC 이사국, IEC/SMB* 이사국에 진출 추진

* ISO/TMB(Technical Management Board), IEC/SMB(Standard Management Board) :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기술위원회 신설, 폐지, 통합 및 기술위원회 의장국·간사국 수임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22년 내역사업별 보조금 흐름도

- 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 지원



- 미얀마 국제공인 건설재료 시험센터 설립(공모)



- 표준체계 보급지원(공모)
- 협력타당성 조사(공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19~'23	1,559	1,453	1,453	1,453	1,453	
'20~'24		1,453	2,740	2,180	2,055	2,05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 한국형 제도 전수를 통해 개도국에 만들어지는 시험검사시장에 국내 시험기관이 진출하기 위해 공동시험소, 시험검사 대행, 성적서 인정 등을 추진
 - * 개도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수출시 외국에 의존하던 시험검사업무를 현지에서 실시하여 비용·시간을 절감, 가격경쟁력 확보 가능
- ▶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표준·인증체계를 전수하는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
 - * 협력 타당성조사, 표준체계 전수협력, 인프라구축 등 체계적인 개도국 표준·인증 지원
 - (1단계) 우리의 표준·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지원 가능한 개도국 협력사업 조사
 - (2단계) 전문가방문을 통해 국가표준화능력 제고를 위한 기본적 컨설팅 제공
 - (3단계) 공동연구,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한 제도도입 지원 및 시험인프라 구축지원
- ▶ 동 사업에서는 초청교육, 공동연구를 통한 제도컨설팅 등 표준·인증체계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 시험인증산업 진출을 위한 시험소 설립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제고
 - 특히 ODA 중점협력국 및 전략적 신흥시장국을 대상으로 긴밀한 협력 사업 발굴 확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0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결과 : (사업방식 변경) 현행 성과지표의 개선, 보조사업자 관리 효율화 측면에서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 대책 : 1) '22년 시험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지표 개발 마련 중
2) 표준체계 전수협력 내역사업의 추진체계 효율화를 위해 전담기관 공모
- 재정사업 자율평가
 - 결과 : 보통, 69.2점(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 ODA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제품안전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은 결과적으로 보편적 사회가치 구현에 기여

12) 부처 건의사항

- 국가필수 인프라인 국가표준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활동(초청교육, 방문컨설팅, 시험센터 구축 등)은 개도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 개도국으로부터 교육·협력사업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
 - 또한, 동 사업의 초청교육 등을 활용하여 개도국과 무역기술장벽(TBT)관련 대응시, 지렛대로 활용이 가능
- 동 사업은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개도국과의 협력확대를 위한 국가적 기술외교 업무
 - 특히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1국 1투표권 제도'로 인해, 우리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반영하기 위해선 최대 우호국 확보가 관건
 - 이러한 개도국과의 표준체계 구축지원은 일회성 수익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국제협력 사업임
- ODA 중점협력대상 개도국 24개국을 포함하여 우리 전략시장 수출국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전개하여,
 - 한국의 선진화된 표준화제도, 관련기술 및 인프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임
- 또한, 동 사업은 아세아, 중남미 등의 신흥시장에서 급증하는 무역기술장벽을 사전에 제거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데 기여
- 한국의 新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의 FTA,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정책 이행에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A)									
2018	1,275	-	1,275	-	-	-	1,275	1,275	100	100	-	-
2019	1,020	-	1,020	-	-	-	1,020	1,020	100	100	-	-
2020	1,559	-	1,559	-	-	-	1,559	1,559	100	100	-	-
2021	1,453	-	1,453	-	-	-	1,453	690	47.5	47.5	763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1,275	1,275	1,275	1,275	-	1,275	1,275	-	-	100
2019	1,020	1,020	1,020	1,020	-	1,020	1,020	-	-	100
2020	1,559	1,559	1,559	1,559	-	1,559	1,559	-	-	100
2021.12월	1,453	1,453	690	690	-	690	690	763	-	47.5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

2018	- 이월 사유(집행부진사유) 내역사업인 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시험센터 구축지원(505백만원)과 미얀마 국제공인 건설재료 시험센터 설립(258백만원) 등 2개 사업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21.2) 발생으로 정부의 대외정책에 따라 사업 중단(보류)
------	---

라. 기타 추가자료

- 관계 법령
- 내역사업 설명자료(인프라구축, 표준체계 전수협력, 협력타당성조사)
-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사업(ODA) 추진실적(2012~)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1. 우즈베키스탄 에어컨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지원 (신규)

- (규모) 2,804백만원(1차년 570백만원) · (시기) '22년 ~ '24년 · (사업지역)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 (주요내용) ① 에어컨(공기조화설비) 관련 국가표준 및 에너지효율등급제도 컨설팅
② 에어컨(공기조화설비) 국제공인시험소 구축 및 자격획득(ISO/IEC 17025)
③ 한국형 시험소 운영법 기술이전 및 역량강화

* 시험소 건물은 우즈베크측 제공

□ 추진배경

- (배경) 한국 전자제품의 對우즈벡 수출량은 '19년 약 70억 달러로, 매해 3% 이상 증가하며, 특히 에어컨 제품은 '19년 110만 달러로 '16년 이후 4년 간 약 5배 성장함

- 최근 우즈벡 내 한국 제품 선호도 급증에 따라, 한국 기업의 우즈벡 시장 진출을 보다 확대할 수 있으나, ① 에어컨 성능시험에 대하여 러시아 표준 인용 ② 현지 국제공인시험소 부재로 인하여,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러시아 표준은 과거 평가 방식으로 계절 영향이 없는 표준효율(EER), 국제 표준은 계절성능지수(SPF)를 채택

- (필요성) 한국형 에어컨 품질관리 시스템 전수를 통한 우즈벡 에너지효율등급제도의 활성화 및 우리 기업의 우즈벡·중앙아시아 시장진출 및 수출 증대 지원 필요

※ 우즈벡 진출 국내기업의 애로사항 조사 결과, 러시아 표준 기반의 시험성적서 발급에 따른 소요비용/시간 증가에 대한 어려움, 우즈벡 국가표준 등의 정책/제도 관련 전문가 소통채널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세부산출내역

- (국가표준 및 에너지효율등급제도 컨설팅) '22년 요구 187백만원 * (총 소요예산 302백만원)
 - 에어컨 관련 국제표준 도입 컨설팅
 - 에어컨 에너지효율등급제도 개정 컨설팅
- (시험소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22년 요구 254백만원 * (총 소요예산 29백만원)
 - 에어컨 시험소 실시설계 및 기초 인프라 시공 컨설팅
 - 시험소 경영 및 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 (시험장비 및 시스템 구축) '22년 요구 400백만원 * (총 소요예산 2178백만원)
 - 에어컨 시험 장비 조달(발주, 제작, 국제운송, 통관 등)
 - 시험 장비 검수, 설치, 교정, 시운전(커미셔닝)
 - 시험소 운영시스템 구축(시험 의뢰→성적서 발급 전과정)
- (국제공인시험소 자격획득 컨설팅) '22년 요구 53백만원 * (총 소요예산 21백만원)
 - 국제공인시험소 컨설팅(ISO/IEC 17025)
 - 국제공인시험소 평가 및 자격획득 컨설팅
-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22년 요구 121백만원 * (총 소요예산 546.4백만원)
 - 관리자(시험소 임직원 및 관련 공무원) 초청연수 (7일/5명)
 - 실무자(시험 담당자 및 기술/품질책임자) 초청연수 (14일/5명)
 - 시험소 운영 기술이전을 위한 현지 현장 교육(28일/5명)
 - 국내 전문가 파견(에어컨 기술 국제공인시험소 컨설팅 표준/제도 장비조달 등)

< 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22년 요구	검 토	비고
총계		570		
국가표준 및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 컨설팅	소계	18.7		
	- (사업 인건비) 1명 (책임) 54,000천원(15%)×1명	8.1		
	- (통번역비) 1,100천원 x 4회	4.4		-한↔우즈벡어 (러시아어)
	- 회의비	2.7		
	- 기타운영비	3.5		

시험소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소계	25.4		
	- (사업 인건비) 2 명 (책임) 54,000천원(15%)×1명 (주임) 33,000천원(20%)×1명	14.7		
	- (국내여비) 50천원 x 7명 x 10회	3.5		
	- 워크샵 개최비 1회	2.5		
	- 전문가 활용비	2.4		-자문 및 강사료
	- 인쇄비	2.3		
시험장비 및 시스템 구축	소계	400		
	- (재료비) 시험기자재 업체 선정	400		-업체입찰 및 계약금
국제공인시험소 자격획득 컨설팅	소계	5.3		
	- (통번역비) 1,100천원 x 3회	3.3		-영↔우즈베크어 (러시아어)
	- (문헌구입비) 2,000천원	2		-관련 국제 표준 구매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소계	121		
	- (사업 인건비) 5명 (수석) 80,000천원(10%)×1명 (선임) 40,000천원(10%)×1명 (선임) 40,000천원(16%)×1명 (주임) 33,000천원(20%)×1명 (원급) 36,000천원(100%)×1명	61		
	- (항공) (2,000천원×5명) x 3회	30		-현지조사
	- (숙박비) (\$130×5명×6일) x 3회	13		-공동합의체 구성
	- (일비) (\$50×5명×7일) x 3회	6		-기술파견
	- (식비) (\$90×5명×7일) x 3회	11		

□ 총사업비 : 2,804백만원 ('22~'24) / 2,610백만원(우즈베크 측) ('22~'23)

○ 한국 원조

투입요소	세부내역
국가표준 및 에너지효율 등급제도 컨설팅	■ 소요 예산 : 30.2백만 원 * '22년 : 18.7백만 원 ■ 에어컨 관련 국제표준 도입 컨설팅 ■ 에어컨 에너지효율등급제도 개정 컨설팅
시험소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 소요 예산 : 29백만 원 * '22년 : 25.4백만 원 ■ 에어컨 시험소 실시설계 및 기초 인프라 시공 컨설팅 ■ 시험소 경영 및 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시험장비 및 시스템 구축	■ 소요 예산 : 2,178백만 원 * '22년 : 400백만 원 ■ 에어컨 시험 장비 조달(발주, 제작, 국제운송, 통관 등) ■ 시험 장비 검수, 설치, 교정, 시운전(커미셔닝) ■ 시험소 운영 시스템 구축(시험 의뢰→성적서 발급 전과정)

국제공인시험소 자격획득 컨설팅	■ 소요 예산 : 21백만 원 * '22년 : 5.3백만 원 ■ 국제공인시험소 컨설팅(ISO/IEC 17025) ■ 국제공인시험소 평가 및 자격획득 컨설팅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 소요 예산 : 546.4백만 원 * '22년 : 121백만 원 ■ 관리자(시험소 임직원 및 관련 공무원 등) 초청연수 (7일/5명) ■ 실무자(시험 담당자 및 기술/품질책임자) 초청연수 (14일/5명) ■ 시험소 운영 기술이전(현장 교육, 28일/5명) ■ 국내 전문가 파견(에어컨 기술, 국제공인시험소 컨설팅, 표준/제도, 장비조달 등)

○ 우즈베크 투자

투입요소	세부내역
(건물 제공)	■ 소요예산 : 2,610백만 원 ■ 시험 및 사무동 건축면적 625m ² (약 190평), (위치: Tashkent region, Piskent district, NFY Lolaarik, the territory of the Auto-polygon, 111404) ■ 기초 인프라 : 전력, 수도, 통신 등

2. 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시험센터구축 지원 [계속]

- (규모) 1,700백만원 · (시기) '20년 ~ '22년 · (사업지역) 미얀마 양곤지역
- (주요내용) ① 섬유분야 시험장비 지원
 ② 국제공인 시험능력 구축(시스템 전산화, 품질문서 컨설팅, 인력양성)
 ③ 시험센터 내 기술지원 사무소 운영
- * 시험센터 건물은 미얀마측 제공(기존 ODA사업 기간 중 미얀마측에서 건물 완공)

□ 추진배경

- (배경) 미국의 미얀마 경제제재 전면 해제와 EU 및 미국의 GSP (일반특혜관세) 적용에 따라 미얀마가 섬유제품의 새로운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 중
- * 미얀마 진출 섬유산업 기업 수가 3년간 약 2.5배 증가 : ('15년) 132개 → ('18년) 328개

- (필요성) 미얀마로의 우리기업 투자 증가*에 따른, 현지 진출 기업 지원 및 개도국의 미흡한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미얀마 섬유 시험인증 시장 선점

* 우리의 미얀마 섬유산업 투자금액(전체 미얀마 투자 대비 비중) : ('16년) 14백만\$(3.7%) → ('18년) 28백만\$(13.1%)

□ 사업계획

- (1차년도-20년)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서 갖추어야할 기초 시스템 구축 및 섬유 기술지원 사무소 운영을 위한 기반 조사
 - (시스템 구축) 시험 실무능력 및 인증 시스템 교육, 품질문서 개발, 시스템의 전산화, 시험장비의 검교정
 - (기술지원 사무소) 산업현장에서 품질관련 애로사항 파악
- (2차년도-21년) 국제공인 인정 요건 구비를 위한 시험장비 구축 등 시험 역량 강화 및 섬유 기술지원 사무소 운영 프로그램 개발
 - (시험역량 강화) 장비 구축을 통한 시험 및 분석 프로세스 수립, 자격 교육 실시, 비교 숙련도 시험 실시
 - (기술지원 사무소)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지기업 컨설팅을 통한 품질관리 지원
- (3차년도-22년) 국제공인 시험기관 지정 및 기술지원 사무소 운영
 - (국제공인 지정) 내부심사 및 보완,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
 - (기술지원 사무소)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 시설 구축

□ 기대성과

- (수원국) 미얀마의 국가 전략산업 중 유일한 제조업인 섬유분야에 국제규격에 대응 가능한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으로 수출 경쟁력 향상

* 미얀마 10대 수출 품목 중 의류·섬유(2위)를 제외한 품목은 가스, 광물, 쌀 등 비제조 분야

- (한국) ① 글로벌 시험기관에 대항한 한국형 시험·인증 시스템의 미얀마 소비재 시험인증 시장 선점

* 우리 시험인증기관이 해외 진출하는 최초 사례 (해외 현지사무소 제외)

** 2017년 미얀마 섬유 분야 시험인증시장 규모는 1,400만\$이며, 미얀마 섬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향후 시험인증시장도 지속 확대 전망

*** 글로벌 시험인증 시장은 165조원('16년) 규모의 거대 시장

② 현지 진출한 국내 섬유기업 대상으로 원활한 시험, 검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검사 시료배송을 위한 비용 및 시간 절감

- 현지의 섬유 시험인증기관 부재로,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시험 인증을 받기 위해 타국의 기관에 방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현지 시험인증기관 설립을 통해 우리 기업의 관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타국 시험인증기관에 지불하던 비용의 수익화 가능

* 시험 1건 당 평균 운송 비용/시간: 4만원/48시간, 연간 시험건수 3,595건

□ 사업 확대 방안

- (품목 확대) 미얀마 소비시장 규모 증가*에 따라, 구축된 국제 공인시험 능력을 활용, 섬유제품 이외의 소비재 품목에 대한 시험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미얀마 국민의 안전 및 보전에 기여

* 미얀마는 5,300만 명 규모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1인당 구매력 기준(Purchasing Power Parity) 소득 1만 달러를 초과할 전망

□ 세부산출내역 ('22년 요구액 385백만원)

- (국제공인시험능력 구축) '22년 요구액 175백만원

- 현지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30백만원)

* 시험기관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시스템구축

- 품질문서 개발(20백만원)

* 공동시험소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품질문서 개발

- 초청 연수(30백만원) * 전문인력에 대한 초청교육

- 비교숙련도 실시(15백만원) * 해외 숙련도 프로그램 참가 및 실적 확보

- 현지 시스템 전산화(30백만원) * 시험인증 제도 전산화 추진

- 장비 검교정(20백만원) * 국제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장비의 검교정

- 자격 교육(30백만원)

* 국제인증을 위해 필수인 ISO/IEC 17025 자격 교육 지원

○ (기술지원사무소 운영) '22년 요구액 90백만원

-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50백만원)

* 기술지원사무소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현지 품질관리 교육 실시(20백만원) * 섬유기업 품질관리 프로세스 구축

- 현지 산업현황 조사(20백만원) * 미얀마 섬유산업 현황 조사

○ (사업 운영비) '22년 요구액 120백만원

* 사업 인력 인건비(114백만원), 수원국 만족도 조사(3백만원),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2.0백만원), 기타 업무수행비(1백만)

단위 : 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22요구	검 토	비 고
총계		385		
□ 국제공인시험 능력 구축		175		
- 현지 품질시스템 지원 (30)	- (항공료) 1,000천원 x 6명 x 2회	12.0		
	- (일비) \$30×6명×5일×환율1,200 x 2회	2.2		
	- (식비) \$55×6명×5일×환율1,200 x 2회	4		
	- (숙박비) \$110×6명×4일×환율1,200 x 2회	6.4		
	- (교통비) 입출국차량 지원 및 임차	0.7		
	- (통역비) \$250×4×4회×환율1,200	4.7		
- 비교숙련도 참가 (15)	- (비교숙련도 참가) 1,500천원 x 10회	15		
- 초청연수 (30)	- (항공료) 1,000천원×10명	10		
	- (교통비) 입출국차량 지원 및 임차	9		
	- (숙박비) 100천원×5일×10명	5		
	- (식비) 40천원×6일×10명	2.4		
	- (통역비) 300천원×12일 미얀마어 통역	3.6		
- 품질문서 개발 (20)	-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품질문서 개발 외부 컨설팅	15.0		
	- (인쇄비) 500천원 x 2회	1		
	- (품질문서 번역) 40천원 x 10장 x 10종	4.0		
- 현지 시스템 전산화(30)	- (연구개발비) 현지 전산시스템 구축 연구 개발	30		

- 장비 검·교정 (20.0)	- (4,000천원×5대) 장비 검·교정	20.0		
- 자격 교육 (30)	- (항공료) 700천원*5명*2회	7		
	- (식대) 40천원*5일*5명*2회	2		
	- (숙박) 100천원*5일*5명*2회	10		
	- (통역) \$100*1200환율*5일	6		
	- (자격인정 교육비) 500천원*5명*2회	5		
□ 기술지원사무소 운영		90		
- 품질 관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50)	- (인쇄비) 1000천원*5종*3회	15		
	- (외부 전문가) 400천원*5명*5회	10		
	- (교육교재 번역)50천원*100장*3종	15		
	- (간행물 등 구입비)2,000천원*5종	10		
- 현지 품질 관리 교육(20)	- (항공료) 800천원*5명*1회	4		
	- (일비) \$50*1,200환율*5명*3회	0.9		
	- (식대) 40천원*5일*5명*2회	2		
	- (숙박) 100천원*5일*5명*2회	5		
	- (교통) \$50*1,200환율*5명*3회	0.9		
	- (강의료)500천원*6명*1회	3		
	- (교육진행) 500천원*5회 등	4.2		
- 현지 산업현황 조사(20)	- 외부 업체 위탁을 통한 조사	20		
□ 사업 운영비		120		
- 인건비(115)	- (책임자1인) 105,000천원x0.25x12개월x1명	27.2		
	- (분야별 담당 전문가 3인) (평균 123,750천원x0.1x12개월x2명) + (75,000천원x0.25x12개월x1명)	43.5		
	- (연구원 2인) (2,045천원x0.5x12월x1명) + (2,200천원x0.5x12개월x1명)	25		
	- (인건비) 현지 사무소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18.3		
- 수원국 만족도 조사(3)	- 사업평가 중 수원국만족도 조사를 위한 외부 용역	3		
- 외부 회계 감사 수수료(2)	- 외부 감사 위탁업체 수수료율에 따름	2.0		
- 기타 운영비(1)	- 특근 매식비, 공공요금, 사무용품 구입비 등	1		

3. 미얀마 국제공인 건설재료 시험센터 설립 (계속)

- (규모) 4,400백만원(2차년 376백만원) · (시기) '21년 ~ '25년 · (사업지역) 미얀마 양곤지역
- (주요내용) ① 품질관리 시스템(건설재료 표준, 시험인증 제도, 기술사무소) 구축
② 건설재료 시험기자재 구축 지원
③ 국제공인 시험센터 설립 추진(운영시스템 개발, 관련 인력 양성 등)
④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
- * 시험센터 건물은 미얀마측 제공(기존 ODA사업 기간 중 **미얀마측에서 건물 완공**)

□ 추진 배경

- (배경) 미얀마는 구조물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는 품질관리 시스템(전문인력, 시험기자재, 표준 및 제도) 부재에 기인함
- * '17.06 양곤 20명 주택붕괴 '18.04 Myaungnya 교량붕괴 '18.08 Swar 지역 댐 붕괴 4만명 이재민 발생 '19.10, 양곤시 90여개 건물 기초침하 발생 등 매년 구조물 붕괴로 인명피해 발생 중(출처: 미얀마 타임즈)



<최근 미얀마 건물 및 현수교 붕괴('18.01~04), 출처:미얀마 타임즈>

- (필요성) 한국이 겪어왔던 각종 건설 관련 사건/사고(와우이파트 붕괴 사고(1970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년) 등)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향후 미얀마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미얀마 자국민 주거/교통 안전을 위한 건설재료 품질관리 시스템 확보 필요

□ 사업계획

- (1~2차년도) 건설재료 표준 및 제도 수립 지원, 품질관리 전문인력 교육, 시험기자재 선정
- (공동합의체 구성 및 운영) 한-미얀마 공동합의체 구성,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합의체 역할 세부사항 수립, 현지 착수조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 (표준 및 제도 수립) 건설재료 품질관리 코드 수립 지원, 건설재료 표준 개발 지원

- (시험기자재 구축) 시험장비/설비 리스트 및 사양 확정
- (전문인력 교육) 관리급 및 실무급 레벨 초청 및 현지교육
- (기업지원사무소) 현지 기업지원 데스크 설치
- (2~3차년도) 시험기자재 구축, 건설자재 품질관리 제도 개발과 품질 관리 전문인력 교육
 - (공동합의체 운영) 시험인증 제도 제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시험기자재 구축) 시험기자재 입찰·제작·검수·설치
 - (국제공인시험기관) 국제공인 시험기관 지정 준비
 - (표준 및 제도 수립) 건설재료 품질관리 코드 수립 지원, 건설재료 표준 개발 지원
 - (전문인력 교육) 관리급 및 실무급 레벨 초청 및 현지교육
 - (기업지원사무소) 현지 기업지원 데스크 운영
- (3~4차년도) 시험센터 국제공인 추진 및 표준 제도개발 지원, 전문인력 교육
 - (공동합의체 운영) 시험인증 제도 제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시험기자재 구축 및 운영) 시험기자재 설치 완료 및 운영
 - (국제공인시험기관) 국제공인 시험기관 지정 추진
 - (표준·제도 개발) 건설재료 품질관리 코드 수립 지원, 건설재료 표준 제정 지원
 - (전문인력 교육) 관리급 및 실무급 레벨 초청 및 현지교육
 - (기업지원사무소) 현지 기업지원 데스크 운영
- (5차년도)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 및 시험센터 PILOT 운영
 - (공동합의체 운영) 시험인증 제도 제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제공인시험기관) 국제공인 시험기관 지정
 - (연구원 시범운영) 건설재료 품질관리 운영
 - (표준·제도 개발) 건설재료 품질관리 코드 수립 지원, 건설재료 표준 제정 지원
 - (전문인력 교육) 관리급 및 실무급 레벨 초청 및 현지교육
 - (기업지원사무소) 현지 기업지원 데스크 운영

□ 기대성과

- (수원국) 건설자재 표준 및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저가·저 품질 건설자재의 무분별한 공사현장 투입을 방지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하고 자국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

- (한국) ①한국과 미얀마의 건설분야 Code Share를 통해 TBT를 해소하고, 경쟁국의 저가·저품질 건설자재의 미얀마 진입을 방지하여 품질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의 미얀마 건설시장 진출 확대 기여
 - '25년 미얀마 건설시장 규모는 총 17조원으로 예상되며, 건설시장의 5% 점유시 8,500억원 가량 수주 가능
 - 이를 통해 '25년 이후 10년간 18조 9,12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1,885명의 신규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②국산 시험기자재 도입을 계기로 한국산 시험평가 장비의 ASEAN 지역 진출 촉진 및 건설분야 ASEAN 시험인증 시장 진출 확대 계기

□ 세부산출내역

- (연구원 운영인력 양성 / 국가표준 및 제도 개발 / 사업운영 및 시험운영 SW 이식, 기술지원사무소 운영) '22년 요구 140백만원(총소요예산 835백만원)
 - 사업수행기관 현지 착수 조사 및 기술파견(총 4회)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현지 교육과 초청 프로그램 및 관련 교재 개발 및 인력양성
 - 전자재 국가표준/제도 개발
 - * 공동합의체 운영을 통한 미얀마의 건설자재 표준 개발·제정, 건설자 재 품질관리 제도 및 품질관리 운영시스템 개발 지원
 - *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 준비
 - 시험운영 SW 개발
 - * 시험 및 품질관리 전산 운영을 위한 운영시스템 개발
 - 현지/초청/온라인 프로그램 운용
 - * 시험센터 관리자/실무자급 수원기관 참여인력 양성 교육
- (시험기자재 구축) '22년 요구 100백만원(총소요예산 2,600백만원)
 - 시험기자재 입찰 및 업체선정
 - * 현지 시험센터 건물 내 시험기자재 구축 업체 선정

○ (사업 운영비) '22년 요구 136백만원(총소요예산 965백만원)

* 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 및 기관공동운영지원비

○ (2차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22년 요구	검 토	비고
총계		376		
□ 국제공인 시험 역량 강화표 준/제도 개발 포함 및 기술 사무소 운영		140		
	- (항공) 1,650천원×8명×1회	20		-기술파견 -공동합의체 운영
	- (숙박비) (\$130×4명)×4일×환율1,100 x 1회			
	- (일비) (\$50×4명)×5일×환율1,100 x 1회			
	- (식비) (\$90×4명)×5일×환율1,100 x 1회			
	- (초청비) 초청자(10명) 교육 운용	16		-표준/제도 교육
	- (임차료) 차량, 회의실 임대료 등	10		
	- (교육훈련비) (330천원(1급)×2명)×13일	10		
	- (통번역비) 1,100천원 x 9회	10		-미얀마어
	- (사무용품구입비) 1,100천원 x 3회	3		
	- (인쇄비) 108원×99장×8종×46부	4		-각종 교재/문서
	- (전문가 수당) 275천원 x 25회	7		-표준/제도 개발 자문
	- (용역비) 현지 기업 컨설팅 용역	20		기술사무소 운영비
	- (용역비) 국제공인기관 지정 용역	30		
	- (회의비) 30천원 x 5명 x 33회	5		-각종 회의
	- (국내여비) 50천원 x 8명 x 12회	5		
□ 시험기자재 구축		100		
	- (재료비) 시험기자재 공급업체 입찰 서류 마련 및 업체 선정	100		-업체선정
□ 사업운영비		136		
	- (사업 인건비) 19명 (수석) 10,000천원×12개월×6명 (선임) 6,000천원×12개월×8명 (원급) 4,000천원×12개월×4명 (신규) 2,300천원×12개월×1명	100		-교육프로그 램 개발 -운영시스템 개발
	- (간접비) 수행기관 공통지원경비	36		

□ 총사업비 : 4,400백만원 ('21~'24) / 640백만원(미얀마 측)

○ 한국 원조

투입요소	세부내역
(전문인력 양성 및 국가표준 /제도 개발 /시험운영 SW 이식 /기술지원사무소 운영)	<p>■ 소요예산 : 835백만원 * 22년 : 14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파견을 통해 건설분야에 대한 미얀마 시험, 검사, 인증 관련 전문가 양성 ■ 현지 시험·검사 및 행정처리 인력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시험·검사 정책관련 공무원 및 실무 담당 공무원 초청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규 기술교육 시행 ■ 품질 표시 및 품질 검사 기술 규정 전수 ■ 시험검사소 운영을 위해 필요한 표준 및 기술기준 제·개정 추진 ■ 시험검사소 운영 시스템 마련(절차서, 품질문서, 성적서, 접수증 등 개발) ■ 시험 및 품질관리 전산 운영을 위한 SW 이식 ■ 기술지원사무소 운영
(시험기자재 및 관련 설비 구축)	<p>■ 소요예산 : 2,600백만원 * 22년 : 1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 외 수원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시험기자재(UTM, 물성시험기, 화학분석장비 등) 구축 ■ 시험실 시험기자재 관련 건물설비(품후드/전기/배관 등) 구축
(건설재료 시험센터 운영)	<p>■ 소요예산 : 965백만원 * 22년 : 136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 미얀마 건설부 내 구성한 품질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한 기술위원회 운영·지원

○ 미얀마 투자

투입요소	세부내역
(건물 신축)	<p>■ 소요예산 : 750백만짜트 (640백만 원, 1,000 Kyat = 840원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동 1층, 사무동 2층 규모 (위치: 양곤)

4. 표준체계 전수협력 (계속)

- (규모) 612 백만원 · (시기) 계속/신규 · (사업지역) 베트남,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에티오피아
- (주요내용) ① 개도국 주요산업(섬유/계량 등)의 기반이 되는 표준·시험인증·계량 관련 제도 구축 지원
 - ② 구축되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시험방법 교육 등 인력양성
- * 수원국측은 현지교육 시 장소 제공 및 행정 지원

□ 추진배경

- 개도국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측 선제적 대응 및 우리기업 수출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개도국과 전략적 협력 필요
 - * '19년 WTO/TBT 기술규제 통보문 총 3,300여건 중 80%를 개도국에서 발행
 - ** 아세안 교역액(억\$): ('16년)1,188 → ('17년)1,490 → ('18년)1,598 → ('20)1,439

□ 주요 지원내용

- (제도 컨설팅) 수원국의 표준·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법령 또는 기술 기준 제·개정(안) 개발 지원
- (시험역량 강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시험절차서 개발 지원 및 시험장비 운용 등 역량강화 지원

무상원조시행계획 사업	총사업 기간	신규/ 계속	'22년 예산 (백만원)	유 형
베트남 태양광제품 시험인증시스템 구축지원	'22-'24	신규	200	개발 컨설팅
키르기스스탄 섬유분야 시험·검사 및 제품안전제도 선진화 지원	'18-'22	계속	112	
에티오피아섬유·가죽 분야 표준·적합성평가 선진화 지원	'19-'23	계속	150	
인도네시아 법정계량 역량강화 지원	'21-'23	계속	150	연수사업

□ 지원성과

- (수원국) 계량제도 부실로 인한 상거래 질서 혼란 및 제품안전관리 제도 부실로 인한 자국민 안전 피해 등을 방지

협력국가	협력분야	협력기간	지원 성과
베트남	법정계량	‘15~’19	·정량표시상품제도 제정 및 품목 확대 → 포장상품의 신뢰성 향상으로 수출경쟁력 제고
미얀마	건설자재	‘17~’19	·건자재 표준 및 레미콘심사제도 개발 지원 → 자국민의 건설안전 확보
캄보디아	주유기	’18~’19	·주유기조작방지 제도 구축 지원 → 유류 상거래 질서 확립
페루	전기전자	‘16~’19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정 지원 → 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발생 예방
라오스	법정계량 제품안전	‘15~’19	·정량표시상품제도 근거 규정(고시)개정완료 → 포장상품의 신뢰성 향상으로 수출경쟁력 제고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근거 규정(고시)개정완료 → 불량 전기용품 및 수입품으로부터 국민 보호

- (한국) 무역기술장벽(TBT)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여 기업에 전파 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개도국에서 수용으로 국내 수출 기업에 시험·인증 지원 효과 발생

협력국가	협력분야	시기	지원 성과
베트남	이차전지	‘18	·한국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으로, 국내 수출기업이 제품시험을 위해 해당국가로 시료를 배송할 필요가 없어짐으로 운송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 절감
	LED제품	‘19	
브라질	전기전자	‘14	
콜롬비아	전기전자 (에너지효율)	’18	·한국의 표준·인증제도를 개도국에 이식하여 국내 수출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페루	전기전자 (에너지효율)	’18	

- (한국)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해외 진출(최초)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으로 발전 기반 마련

협력국가	협력분야	시기	지원 성과
미얀마	섬유	’17~’19	·국내 시험인증기관 진출 지원(공동시험소)

□ '22년 예산 세부산출내역

○ (신규)베트남 태양광제품 시험인증시스템 구축 지원 (200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22년 요구	검 토	비고
총계		200		
□ 시험인증 시스템 구축 지원 컨설팅	합계	140		
	베트남 현지교육	35		
	- (항공) 1,650천원×3명×3회	35.0		-표준/인증제도 전수
	- (숙박비) (\$130×3명)×5일×환율1,100 x 3회			
	- (일비) (\$50×3명)×5일×환율1,100 x 3회			
	- (식비) (\$90×3명)×5일×환율1,100 x 3회			
	- (현지 공동활동비) 6,785천원 x 1회			
	대한민국 초청교육	35		
	- (초청비) 초청자(10명) 교육 운용	30.0		-국제공인시험소 획득 컨설팅
	- (임차료) 차량, 회의실 임대료 등	5.0		
	현지 컨설팅 용역비	30		
	- (용역비) 현지 컨설팅 용역비/전문가 활용비	30.0		
	기타 행정 및 재료비	40		
	- (통번역비) 1,000천원(1일) x 10회	10.0		-베트남어
	- (사무용품구입비) 500천원 x 2회	1.0		
	- (인쇄비) 1,000천원 x 5회	5.0		-교재/문서
	- (국내 전문가 수당) 600천원(2일) x 10회	6.0		-표준/제도 개발 자문
	- (회의비) 100천원 x 20회	2.0		-각종 회의
	- (국내여비) 100천원 x 20회	2.0		
	- (교육자료 개발비) 14,000천원 x 1회	14.0		
□ 사업운영비	합계	60		
	- (인건비) 6명, 55.48백만원 (책임) 6,491,758원/월×20%(참여율)×12개월×1명 (선임) 4,977,794원/월×20%(참여율)×12개월×1명 (주임) 3,327,486원/월×20%(참여율)×12개월×2명 (보조원) 2,495,700원/월×20%(참여율)×12개월×2명 - (예비비, 간접비 등) 4.52백만원	60.0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시스템 개발

○ (계속)키르기스스탄 섬유분야 시험·검사 및 제품안전제도 선진화 (112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21요구	비고
총계		112	
☐ 제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23.3	
	- (항공료) 1,500천원×7명	10.5	
	- (교통비) 입출국차량 지원 및 임차210천원× 1회(왕복)	0.2	
	- (숙박비) 100천원×4일×7명	2.8	
- 초청연수(19.8)	- (식비) 40천원×4일×7명	1.1	
	- (통역비) 500\$×1200환율 ×5일	3.0	
	- (세미나 강사 초빙) 1,000천원×1명	1.0	
	- (교재 인쇄비) 20천원× 10부	0.2	
	-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000천원	1.0	
- 홍보물 제작(3.5)	- (홍보물 제작/인쇄) 3,500천원	3.5	
☐ 현지 시장조사 시뮬레이션		16.4	
	- (항공료) 1,500천원 × 4명	6.0	
	- (교통비) \$180×환율1,200×6일	1.3	
- 현지 출장 (14.4)	- (숙박비) \$110×환율1,200 ×4명×5박	2.6	
	- (일비) \$30×환율1,200×7일×4명	1.0	
	- (식비) \$55×환율1,200×5일×4명	1.3	
	- (통역비) \$150×환율1,200×6일×2명	2.2	
- 재료비 (2.0)	- (시료구입) \$55×환율1,200×5종×각6개	2.0	
☐ 섬유제품 시험 분석 능력 구축 지원		28.7	
	- (항공료) 1,500천원×6명	9.0	
	- (교통비) 입출국차량 지원 및 임차210천원× 1회(왕복)	0.2	
- 초청연수 (15.6)	- (숙박비) 100천원×4일×6명	2.4	
	- (식비) 40천원×4일×6명	1.0	
	- (통역비) 500\$×1,200환율 ×5일	3.0	
	- (항공료) 1,500천원 × 4명	6.0	
	- (교통비) \$180×5일×환율1,200	1.1	
- 현지 출장 (13.1)	- (숙박비) \$110×환율1,200 ×4명×4박	2.1	
	- (일비) \$30×환율1,200×6일×4명	0.9	
	- (식비) \$55×환율1,200×6일×4명	1.6	
	- (통역비) \$150×환율1,200×4일×2명	1.4	
☐ 사업 운영비		43.6	
	- (책임자1인) 9,333천원×12×11.5/100(참여율)	12.9	
- 인건비 (26.3)	- (연구원2인) (6,250천원×12개월×11.6/100)+ (3,375천원×12개월×11.6/100)	13.4	
- 기타업무수행비 (6.3)	공공요금 및 제세, 사무용품, 회의비	6.3	
- 수원국 만족도 조사(11.0)	11,000 천원	11.0	

○ (계속)에티오피아 섬유·가죽 분야 표준·적합성평가 선진화 (150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21요구	비고
총계		150.0	
☐ 국제공인시험 능력 구축			
- 현지 실무교육	- (항공료) 1,500천원 x 8명	12.0	
	- (숙박비) \$130×8명×6일×환율1,200	2.0	
	- (일비) \$35×8명×6일×환율1,200	2.0	
	- (식비) \$55×8명×6일×환율1,200	3.2	
	- (통역비) \$300×6×2명×환율1,200	4.3	
- 초청연수	- (항공료) 1,500천원×1명	1.5	
	- (교통비) 입출국차량 지원 및 임차	2.0	
	- (숙박비) 100천원×60일×1명	6.0	
	- (식비) 50천원×60일×1명	3.0	
	- (통역비) 1,000천원×2일 통역	2.0	
- 품질문서 개발	- (전문가 활용비)1,000천원×5명	5.0	
- 교재 제작	- (인쇄비) 500천원 × 6건	3.0	
- 재료비	- (실습교육용 재료비) 300천원 × 30건	9.0	
☐ 세미나 개최			
- 해외 세미나 개최	- 해외 세미나 개최	30.0	
☐ 제품안전관리 제도 전수			
-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자료 수집비) 1,000천원×5종	5.0	
- 사무용품구입비	- (사무용품 구입비) 300천원×20회	6.0	
☐ 사업 운영비			
- 인건비	- (책임자1인) 102,000천원x8x9개월x1명	9.1	
	- (연구원5인) (110,000천원x11x9개월x1명) + (78,000천원x11x9개월x1명) + (70,000천원x11x9 개월x1명) + 66,000천원x5x9개월x1명) + (42,000천원x5x9개월x1명)	26.4	
- 기타업무수행비	공공요금 및 제세, 사무용품, 회의비	7.5	
- 수원국 만족도 조사	11,000 천원	11.0	

○ (계속)인도네시아 법정계량 역량강화 지원 (150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21요구	비고
총계		150.0	
☐ 법정계량 역량 강화		106.7	
- 전문가 파견 조사	- (항공료) 1,200천원 x 3명	3.6	
	- (숙박비) \$130×3명×6일×환율1,200	2.8	
	- (일비) \$35×3명×6일×환율1,200	0.8	
	- (식비) \$55×3명×6일×환율1,200	1.2	
	- (통역비) \$400×6일×1명×환율1,200	2.9	
- 현지 교육	- (항공료) 1,200천원 x 3명	3.6	
	- (숙박비) \$130×3명×6일×환율1,200	2.8	
	- (일비) \$35×3명×6일×환율1,200	0.8	
	- (식비) \$55×3명×6일×환율1,200	1.2	
	- (통역비) \$300×6일×1명×환율1,200	2.9	
- 초청연수 (공무원)	- (항공료) 1,500천원×6명	9	
	- (교통비) 입출국차량 지원 및 임차	2.0	
	- (숙박비) 100천원×10일×6명	6.0	
	- (식비) 50천원×12일×6명	3.6	
	- (통역비) 500천원×10일 통역	5	
- 초청연수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 (항공료) 1,500천원×6명	9	
	- (교통비) 입출국차량 지원 및 임차	2.0	
	- (숙박비) 100천원×10일×6명	6.0	
	- (식비) 50천원×12일×6명	3.6	
	- (통역비) 500천원×10일 통역	5	
- 이해관계자 홍보 자료, 교재 제작	- (행사 개최비 등 예비비)	16.5	
	- (전문가 활용비)1,000천원×5명 - (인쇄비) 1,500천원 × 6건	14	
- 자료조사	- (한-인니 법정계량 제도 비교 조사) 1,000천원	1.0	
	- (번역) 1,000천원	1.0	
	- (인쇄비) 20천원×20부	0.4	
☐ 사업 운영비		43.3	
- 인건비	- (책임자1인) 9,333천원×12×11.5/100(참여율)	12.9	
	- (연구원2인) (6,250천원×12개월×11.6/100)+ (3,375천원×12개월×11.6/100)	13.4	
- 기타업무수행비	공공요금 및 제세, 사무용품, 회의비	6	
- 수원국 만족도 조사	11,000 천원	11	

5. 협력타당성조사

- (규모) 200만원 · (시기) 계속 · (사업지역) 인도네시아, 베트남
- (주요내용) ① 인도네시아 한국형 건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전수 타당성조사
 ② 베트남 기후변화 대응역량강화를 위한 표준 및 기술전수 타당성조사
 ③ 효과적인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상세 사업 설계
- * 수원국측은 현지조사 시 장소 제공 및 행정 지원

□ 추진배경

- (인도네시아) 인니 에너지저감 및 탄소저감 정책 및 스마트시티 확대 계획 대비 에너지효율 건물설계 기준 및 표준 등 매우 미흡 (전문 인력, 표준, 기준, 제도, 인프라 부재)
- (베트남) 개도국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발생

□ 주요내용

- 인니 에너지효율 건물설계기준 보급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 (주거용 건물 에너지관리 현황 조사)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사용 강도에 대한 현장 조사, 건물설계 규정/코드/표준 분석 보고서, 초청/현지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및 타당성분석
- 베트남 유해물질 관리 표준화 역량강화지원 사전타당성조사
 - (협력방안 도출) 베트남 제도 및 표준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ODA 종류 및 협력방안 도출
 - (타당성조사 결과 공유) 타당성조사 결과 공유를 통한 협력추진 의사 재확인 및 협력범위 확정

□ 추진계획

구분		세부사업	2022			
			1/4	2/4	3/4	4/4
양국 간 협력추진방안 협의						
관련 체계 및 제도 현황 조사	- 양국간 근거 법령, 관련 표준 등 비교분석					
	- 하드웨어 인프라 수요 및 니즈 분석					
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PCP 개발 등)						
타당성조사 결과 공유 및 협력범위 협의를 위한 세미나						

참고3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ODA)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예산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예산 (백만원)	890	900	900	890	1,115	1,200	1,275	1,020	1,559	1,453

□ 지원국가 : 4대륙 16개국

* 중남미(5개국), 아시아(7개국), 중앙아시아(2개국), 아프리카(2개국)

□ 고시개정,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초청연수 등 주요실적

- 고시제정 및 개정 : 3건(라오스, 베트남 등)
-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MOU체결 : 4건(페루, 브라질, 에콰도르, 콜롬비아)
- ISCP 초청연수, 협력포럼 등 개최 실적 : 101회* 1,523명
 - * 초청연수 47회 234명, 지역표준화 협력 프로그램 및 지역포럼 14회, 231명 / 표준교육 공동 워크숍 및 국제세미나 등 40회, 1,058명
- 제도 개선, 기술기준 개정안 개발 및 제안 등 : 34건

대륙	국가	년도	주요 내용	수행기관
중남미 (5개국)	페루 (전기 등)	2013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2명	KTL
		2014	안전관리대상 6개 전기용품군* 안전기준 개발 * 전선 및 코드류, 전기기기류 등	
		2019	적합성평가 및 표준화 역량강화 지원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2명	KTR
		2020	한-페루 현지 시험인증기관(Lenor Peru) 협력 * (MOU) Certification service agreement between LENOR PERU S.A.C. and KTR (에너지효율 관련 국내 시험성적서 인정)	
	브라질 (전기 등)	2014	한-브 기술협력센터 개소(~2020) * (MOU) Agreement between KTR and NCC Certification Brazil on TESTING and CERTIFICATIONS (의료기기 등 안전 관련 국내 시험성적서 인정)	KTR
	파라과이 (전기)	2015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제시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3명	KTC
		2016	파라과이 전기용품 기초시험설비(테스트베드) 구축	
		2017	전기설비 시험업무를 위한 시험절차서 마련 *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요령 마련	

대륙	국가	년도	주요 내용	수행기관
	콜롬비아 (전기)	2018	한-콜롬비아 공동시험소 구축 * (MOU) Agreement between NYCE Colombia and KTR (냉장고, 세탁기 등 안전 및 에너지효율 관련 국내시험성적서 인정) ※ 표준협력 공무원 등 초청교육 1회 4명	KTR
	에콰도르 (전기)	2020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 라벨링 제도에 대한 표준체계 보급지원 타당성조사 완료 (MOU) Certification service agreement between LENOR ECUADOR and KTR (냉장고, 세탁기 등 에너지효율 관련 국내시험성적서 인정)	KTR
아시아 (7개국)	베트남 (계량, 태양광, 섬유, 건설)	2012	한-베 국장급 협의회 및 액션플랜을 통한 협력 기반 마련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2회 13명	KSA KAST O
		2013	계량법 및 하위법령 개선방안 마련 * 계량법 구성분석을 통한 하위법령체계 수립 지원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1회 8명	
		2014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부 고시 제정 완료* * V마크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상품목 선정 및 표시요건 규정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1회 8명	
		2018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적용품목 및 기준 단위 확대를 위한 STAMEQ* 고시 개정(안) 마련 * 과기부 산하, 베트남 국가표준화기구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3회 12명	KSA
		2018	식생매트 단체표준 제정안 마련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1회 7명	KCL
		2019	LED 제품 신규 규제 대응방안 마련 ※ 표준협력 공무원등 초청연수 1회 4명	KTR
		2019	섬유분야 시험·인증 및 제품안전제도 선진화지원 ※ 표준협력 공무원등 초청연수 2회 6명	KATRI
		2020	베트남 태양광 시험인증제도 구축 타당성조사 완료	KCL
	몽골 (건설)	2012	몽골 국가표준원 역량강화 지원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1회 9명	KCL
		2013	몽골 적합성체계 분석 및 타당성조사 실시 ※ 표준협력 공무원 등 초청연수 1회 5명	
		2014	건설표준 제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3회 13명	
			건설분야 국가표준(MNS) 10종 제정안 마련	

대륙	국가	년도	주요 내용	수행기관
		2015	몽골 시험인증서비스 산업진출 타당성조사 실시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2회 10명	
		2016	몽골 신재생에너지 기술센터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1회 13명	
	캄보디아 (계량, 석유)	2015	법정계량 및 제품안전제도 개선방안 도출 * 법정계량 및 제품안전제도 개선방안 제언보고서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7명	KTC
		2016	석유분야 품질표시 심층협력과제 도출 ※ 표준협력 시험기관 초청연수 1회 3명	KATR I
		2017	검정업무 운영요령 및 기술기준 초안 마련	KTC
		2018	계량기 기술기준 개선방안* 제언 * 우리나라 및 국제 기준과의 비교·분석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5명	
		2018	주유기 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안) 제언	
		2018	주유기 조작방지를 위한 주유기 및 관제시스템 현지시험실 설치	
		2019	LPG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제언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6명	KATRI
		2018	석유제품 품질관리 표시 기술규정 제정(안) 마련	
		2019	석유제품 품질관리제도 선진화 지원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3명	KTL
		2019	농기계 계량측정제도 선진화 지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 표준협력 공무원 등 초청교육 1회 4명	
	라오스 (계량)	2015	법정계량 및 제품안전제도 현황 조사 및 타당성조사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2회 10명	KTC
		2018	법정계량 및 제품안전제도 개선방안 도출 * 법정계량제도 개선방안 제언보고서(영문) * 제품안전제도 개선방안 제언보고서(영문)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3명	KSA
		2019	제품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부 고시 개정(안)개발 정량표시상품안전제도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부 고시 개정(안)개발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2회 6명	

대륙	국가	년도	주요 내용	수행기관
		2020	제품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부 고시 개정 * 고시명 : 전기전자제품안전관리 고시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부 고시 개정 * 고시명 : 포장상품관리 고시	
	미얀마 (섬유, 건설)	2016	시험·검사제도 선진화 마스터플랜 수립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2회 10명	KATRI
			수출검사법(안) 마련	
			섬유제품 품질검사 기술규정(안) 마련 * Quality Inspection	
		2017	섬유제품 품질표시 기술규정(안) 마련 * Quality labelling	
			섬유분야 표준 제정을 위한 WG 구성 완료	
		2018	섬유분야 기술규정(안) 마련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2회 11명	
		2019	섬유제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 및 제도 구축 지원	
		2020	섬유·의류 분야 국가표준 우선 제정 목록 마련 및 제안	
			섬유제품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제안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발방안* 제안 * 적용품목:어린이용품, 대상연령, 안전요건 등 * 섬유공동시험소 법인설립 완료 ('20. 12. 31)	
		2017	기초 건설재료 시험인증체계 선진화 로드맵 수립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3명	KCL
			건설분야 국가표준안 47종 제정안 마련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8명	
			레미콘 공장심사 매뉴얼 마련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3명	
	방글라 데시	2016	표준인증협력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1회 4명	KSA
	인도네시아 (선박)	2020	선박건조기술 표준화 지원 타당성조사 완료	KOMS A

대륙	국가	년도	주요 내용	수행기관																																																
중앙 아시아 (2개국)	키르기스 스탄 (섬유)	2015	표준인증협력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 표준협력 공무원 등 초청연수 1회 5명	KATRI																																																
		2017	섬유분야 시험·검사 및 제품안전제도 선진화 마스터 플랜제품안전 운용요령(안) 전달 등 ※ 표준협력 공무원 등 초청연수 1회 8명																																																	
		2018	경공업제품 시험법 및 제품안전제도(리콜) 실무 세미나 안전성조사매뉴얼(안) 마련																																																	
		2019	국제표준화 활동 및 유해물질 시험법 교육 세미나																																																	
		2020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작성 및 전달 * 의류인증 및 기업현황 조사, 현지 유통 제품의 유해물질 시험 기술규정에 따른 제품적합성평가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기술규정 관련 시험법 교육 (혼용률 정성, 정량분석)																																																	
	우즈베키 스탄 (에너지)	2020	에어컨 에너지효율 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지원 타당성조사 완료	KCL																																																
아프 리카 (2개국)	ARSO	2013	아프리카 지역표준 97종 제·개정(안) 마련 <table><tr><th>분야</th><th>작업대상</th><th>페이지</th><th>개정</th><th>재검토</th><th>기타</th></tr><tr><td>기본.일반</td><td>64</td><td>13</td><td>43</td><td>4</td><td>-</td></tr><tr><td>건설</td><td>48</td><td>6</td><td>13</td><td>12</td><td>17종 불필요</td></tr><tr><td>기계</td><td>26</td><td></td><td>23</td><td>3</td><td>-</td></tr><tr><td>화학</td><td>22</td><td>-</td><td>18</td><td>-</td><td>3종 제외</td></tr><tr><td>전기전자</td><td>0</td><td></td><td></td><td></td><td></td></tr><tr><td>환경</td><td>0</td><td></td><td></td><td></td><td></td></tr><tr><td>에너지</td><td>0</td><td></td><td></td><td></td><td></td></tr></table> * KATS-ARSO Action Plan 갱신(2017)	분야	작업대상	페이지	개정	재검토	기타	기본.일반	64	13	43	4	-	건설	48	6	13	12	17종 불필요	기계	26		23	3	-	화학	22	-	18	-	3종 제외	전기전자	0					환경	0					에너지	0					KSA
			분야	작업대상	페이지	개정	재검토	기타																																												
	기본.일반	64	13	43	4	-																																														
	건설	48	6	13	12	17종 불필요																																														
	기계	26		23	3	-																																														
	화학	22	-	18	-	3종 제외																																														
전기전자	0																																																			
환경	0																																																			
에너지	0																																																			
우간다 (표준)	2018	표준인증협력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2명	KSA																																																	
	에티오피아 (섬유)	2018	섬유 가죽 품질관련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 부합화 지원,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컨설팅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9명	FITI																																																
		2019	ECAE, 수출시험 필수시험항목 제안 * 필수 시험항목 교재 매뉴얼 개발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5명																																																	
		2020	섬유 등 제품안전제도 도입방안 제안 * 제품안전제도 설명자료(범용 인포그래픽) 제작																																																	

참고3-1

지역표준화 협력 프로그램 및 공동워크숍 등 실적

□ 지역표준화 협력 프로그램 : 11회 114명

년도	참석자	
	지역	국가
2012	중남미	12명 아르헨티나 1명, 볼리비아 2명, 브라질2명, 칠레 2명, 콜롬비아 1명, 페루 4명
2012	아프리카	12명 ARSO 사무총장 1명,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1명, 가나 1명, 나미비아 2명, 말라위 1명, 나이지리아 5명, 탄자니아 1명
2013	중동표준화기구 (GSO)	14명 GSO 사무국 3명, 사우디 아라비아 2명, 예멘 4명, 카타르 3명, 아랍에미리트 1명, 쿠웨이트 1명
2013	중동표준화기구 (GSO)	17명 GSO 사무국 1명, GCC 1명, 바레인 1명, 쿠웨이트 3명, 오만 2명, 카타르 2명, 예멘 6명, 아랍에미리트 1명
2013	중동표준화기구 (GSO)	13명 GSO 사무국 1명, 바레인 2명, 쿠웨이트 1명, 오만 2명, 사우디 아라비아 4명, 아랍에미리트 1명, 예멘 2명
2014	중동표준화기구 (GSO)	12명 바레인 1명, 오만 2명, 카타르 1명, 사우디 아라비아 3명, 아랍에미리트 1명, 예멘 2명, 쿠웨이트 2명
2014	중남미	10명 에콰도르 2명, 콜롬비아 1명, 페루 7명
2014	중앙아시아	6명 아제르바이잔 2명, 우즈베키스탄 2명, 투르크메니스탄 2명
2016	아프리카	6명 에티오피아(2명), 케냐(2명), 우간다(2명)
2017	동남아시아	6명 방글라데시 2명, 라오스 2명, 베트남 2명
2017	아프리카	6명 카메룬 2명, 잠비아 2명, 르완다 1명, 가나 1명

□ ISO-KATS 표준교육 등 공동 워크숍 : 5회 207명

년도	참석자	
	개최지	국가
2012	인도네시아	21개국 50여명
2013	브라질	26개국 40여명
2013	남아프리카공화국	20개국 40여명
2014	세르비아	유라시아 16개국 37명
2019	캄보디아 (ACCSQ WG2 총회 연계)	ASEAN 10개 회원국 등 40명

□ ISCP 지역포럼 : 3회 117명

년도	참석자	
	개최지	국가
2016	캄보디아	30명 베트남 2명, 미얀마 2명, 라오스 2명, 캄보디아 15명, 국내 정부·주관기관 및 수행기관 9명
2017	베트남	40명 캄보디아 2명, 라오스 3명, 미얀마 3명, 방글라데시 3명, 베트남 13명, 국내 정부·수행기관 및 주관기관 16명
2018	한국 (부산, IEC 총회 연계)	47명 캄보디아 7명, 라오스 4명, 미얀마 6명, 인도네시아 4명, 베트남 2명, 이라크 1명, 국내 정부·주관기관 및 수행기관 23명

□ ISCP 국제 세미나 : 2회 98명

년도	참석자	
	개최지	국가
2018	한국 (부산, IEC 총회 연계)	47명 캄보디아 7명, 라오스 4명, 미얀마 6명, 인도네시아 4명, 베트남 2명, 페루 1명, 국내 정부·주관기관 및 수행기관 23명
2019	인도네시아	51명 미얀마 2명, 라오스 2명, 캄보디아 2명, 베트남 3명, 인도네시아 32명, 국내 정부·전문가 및 주관기관 10명

사 업 명
(4)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37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4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바이오화학 서비스표준과	최정식	지민호 연구사	이상하 연구사
		043-870-5390	043-870-5394	043-870-539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인인체치수 조사보급	1,658.5	1,832	-	1,832	1,832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산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039	2,039	1,658.5 (1,658.5)	355.5	25	1,832	1,832	2,187.5	2,160.9 (2,160.9)	-	26.6	1,832
· 인체치수측정사업	1,234	1,234	874.4 (874.4)	355.5	4.1	1,047	1,047	1402.5	1,397.4 (1,397.4)	-	5.1	872
· 인체정보보급사업	300	300	294.9 (294.9)	-	5.1	300	300	300	295 (295)	-	5	360
· 휴먼빅데이터구축	505	505	489.2 (489.2)	-	15.8	485	485	485	468.5 (468.5)	-	16.5	600
○ 비목별 분류(합계)	2,039	2,039	1,658.5 (1,658.5)	355.5	25	1,832	1,832	2,187.5	2,160.9 (2,158.5)	-	26.6	1,832
· 시험연구비(210-13)	46.2	46.2	42.1 (42.1)	-	4.1	46.5	46.5	46.5	43.6 (43.6)	-	2.9	46.73
· 업무추진비(240-01)	2.8	2.8	2.8 (2.8)	-	-	2.5	2.5	2.5	2.5 (2.5)	-	-	2.27
· 일반연구비(260-01)	1,650	1,650	1278.7 (1,278.7)	355.5	15.8	1,463	1,463	1,818.5	1,804.7 (1,804.7)	-	13.8	1,403
· 민간위탁사업(320-02)	300	300	294.9 (294.9)	-	5.1	300	300	300	295 (295)	-	5	360
· 자산취득비(430-01)	40	40	40 (40)	-	-	20	20	20	15.1 (15.1)	-	4.9	2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039	2,039	1,658.5 (1,658.5)	355.5	25	1,832	1,832	2,187.5	2,160.9 (2,160.9)	-	26.6	1,832
· 인체치수측정사업	1,234	1,234	874.4 (874.4)	355.5	4.1	1,047	1,047	1402.5	1,397.4 (1,397.4)	-	5.1	872
-시험연구비(210-13)	46.2	46.2	42.1 (42.1)	-	4.1	46.5	46.5	46.5	43.6 (43.6)	-	2.9	46.7
-업무추진비(240-01)	2.8	2.8	2.8 (2.8)	-	-	2.5	2.5	2.5	2.5 (2.5)	-	-	2.3
-일반연구비(260-01)	1,185	1,185	829.5 (829.5)	355.5	-	998	998	1353.5	1,351.3 (1,351.3)	-	2.2	823
· 인체정보보급사업	300	300	294.9 (294.9)	-	5.1	300	300	300	295 (295)	-	5	360
-민간위탁사업(320-02)	300	300	294.9 (294.9)	-	5.1	300	300	300	295 (295)	-	5	360
· 휴먼빅데이터구축	505	505	489.2 (489.2)	-	15.8	485	485	485	468.5 (468.5)	-	16.5	600
-일반연구비(260-01)	465	465	449.2 (449.2)	-	15.8	465	465	465	453.4 (453.4)	-	11.6	580
-자산취득비(430-01)	40	40	40 (40)	-	-	20	20	20	15.1 (15.1)	-	4.9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체치수측정사업, 인체정보보급사업) 인체적합성이 우수한 제품과 생활에 필요한 인체치수, 인체형상, 인체활동 범위, 인지적 데이터 등을 조사하여 관련 산업계에 보급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21세기 편안하고 쾌적한 대한민국을 위해 제품 기능 및 품질수준의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국제표준 제안 및 인체 정보가 반영된 KS 표준의 제정, 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과 인간공학적 제품설계를 위한 활용 및 기술 개발 지원
- (휴먼빅데이터구축) 3차원 스캐너로 생성되는 개인의 디지털 인체정보를 통해 새로운 휴먼 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글로벌시장 선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참조표준"이라 함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로서 물리화학적 상수, 공인된 물성값, 공인된 과학기술적 통계등을 말한다.

-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①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표준 참고자료를 제정·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기관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 체계의 확립
2.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
3. 참조표준 및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체계의 확립
4.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표준원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산업표준화법

-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 확인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통계법

-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0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통계법시행령

-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법 제9조제1항 본문과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추진경위

- '79년부터 : 의류치수 규격 마련을 위해서 '79년 처음으로 국민체위조사를 실시한 이후 5~7년 주기로 4차례 측정 사업 수행
- '00년 이후 :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급격한 체형변화로 최신의 인체치수 정보조사 필요성 제기 및 3차원 인체형상, 동적치수 정보 등 다양한 인체치수 정보에 대한 산업계 요구 증가
- '03~'04년 : 전국 남녀(0~70세이상) 2만여명에 대한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및 인체형상 측정 사업 실시 및 DB 구축
- '05~'09년 : ① 한국인 인체정보 보급 확대를 위한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sizekorea.go.kr) 및 인체표준정보실 개설 ② 통계청으로부터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 ③ 장애인 인체치수 등 다양한 분야로 측정사업 확대
- '10~'14년 :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조사 사업을 통해 유아부터 노인의 계층별 3D 인체형상 측정과 표준인체형상을 개발하여 보급
- '15~'19년 :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조사 사업 및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동적범위를 측정하여 보급하였고, 인체치수 정보의 산업계 보급 확대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14종)을 개발·보급
 - * 안경, 스마트글라스, 머리범용, 학생용책걸상, 장애인 보조기기, 몸통범용, 안마 의자, 기능성베개, 손범용, 욕실공간, 퍼스널모빌리티, 다리범용, 핸디형청소기, 캠핑용품
 - * 3차원 인체정보를 활용한 휴먼 빅데이터 구축 국회 전시회 및 포럼('18.10.29, 국회의원 등 약 500명 참석) 개최
 - *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20년~)을 대비하여 측정 프로토콜을 설계
- '20년~ :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 제1차 조사('20.6월~'21.2월)를 20세~44세 남녀 3,299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45세~69세 남녀 3,381명에 대한 제2차 조사('21.5월~'21.12월)를 진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3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의류, 가구, IT서비스, 자동차,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인체관련제품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2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방향 및 지원필요성

- **(개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체치수조사를 통해 고품질 3D인체정보 수집 및 산학연 참조표준 제공
 - 의류, 신발, 가구, 자동차, 헬스케어 등 관련 산업에 인체정보 제공으로 인간 친화적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연계
-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개인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 과정에서 생성되는 3D 인체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관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휴먼 빅데이터 구축 필요
 - 3D 스캐너로 생성되는 디지털 인체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산업 창출
- **(정책부합성)**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데이터 자원으로써, 사이즈코리아가 지난 40여년간 축적해온 한국인 인체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 제고 필요
 -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산업계의 인체데이터 활용도가 증대됨*에 따라, 지난 40년 동안의 수동적 사업추진체계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인 데이터 수집과 보급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예산편성이 요구됨.
 - * AS IS : 제품·서비스 설계 기여 → TO BE : 데이터 신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기반으로 활용 (예. 원격진료, 가상피팅 등 패션, 의료 분야 개인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 메타버스 등 온라인 신산업)

□ 세부 요구내용

- 인체치수측정사업 : (2021) 1,047백만원 → (2022) 872백만원, △16.7%
 - **(요구)** 통계청의 정기통계품질진단 지적사항 중 모집단 관리개선 필요 이행을 위한 추가계층 데이터 확보 (초고령층 인구 대상)
 - * 20년~21년 동안 시행된 제8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에서는 20세~69세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 되었으며 기타 연령대에 대한 추가 조사사업을 22년부터 시행예정
 - **(산출)** 인건비 480백만원 (20명×8개월×3). 측정경비 314백만원 (측정장비이용·유지·관리 256, 교육·재료비 58 등). 피측정자사래비 78백만원 (975명×8만원).

○ 인체정보보급사업 : (2021) 300백만원 → (2022) 360백만원, +20.0%

- (요구) 한국인 인체정보를 사이즈코리아센터 및 사이즈코리아 포털* 등을 통해 보급하여 산업계 지원. '21년에 센터를 기업밀집지역으로 이전(성남 분당구→서울 강남구)하여 향후 적극적인 홍보 등을 위해 '21년 대비 +20.0% 증액

* 중소·스타트업 기업 인체치수 컨설팅 지원, 사이즈코리아 홍보·교육·세미나, 해외 인체정보조사 및 정보교환, 인체측정 및 데이터 가공 제공, 측정장비 무상대여, 체험존 운영

- (산출) 운영인력 등 인건비 180백만원(5명×9개월×4백만원). 운영경비 180백만원(포탈및전산장비 유지관리비 104, 컨설팅·회의비 76 등).

○ 휴먼빅데이터구축사업 : (2021) 485백만원 → (2022) 600백만원, +23.7%

- (요구) 개인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 과정에서 생성되는 3D 인체정보를 빅데이터화 하기 위한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21년대비 +23.7% 증액

- (산출) 개발인건비 336백만원(12명×7개월×4). 개발경비 264백만원(시제품 및 서비스모듈개발 172, 홍보·회의비 등 92).

○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32 백만원	○ 인체치수측정사업 : 1,047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46.5백만원 - 업무추진비(240-01) : 2.5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998백만원 · [인건비] 480 (20명×8개월×3) · [측정경비] 311 (측정장비이용·유지·관리 253, 교육·재료비 등 58) · [피측정자사례비] 256 (3,200명×8만원)	1,832 백만원	○ 인체치수측정사업 : 872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46.7백만원 - 업무추진비(240-01) : 2.3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823백만원 · [인건비] 480 (20명×8개월×3) · [측정경비] 314 (측정장비이용·유지·관리 256, 교육·재료비 등 58) · [피측정자사례비] 78 (975명×8만원)
	○ 인체정보보급사업 : 300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300백만원 · [인건비] 96 (3명×8개월×4) · [운영경비] 204 (포탈및전산장비유지관리비 등 128, 컨설팅·회의비 등 76)		○ 인체정보보급사업 : 360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360백만원 · [인건비] 160 (5명×8개월×4) · [운영경비] 200 (포탈및전산장비 유지관리비 114, 컨설팅·회의비 등 86).
	○ 휴먼빅데이터구축사업 : 485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465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20백만원 · [인건비] 308 (11명×7개월×4) · [개발경비] 177 (시제품 및 서비스모듈개발 75, 홍보·회의비 등 102)		○ 휴먼빅데이터구축사업 : 600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58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20백만원 · [인건비] 336 (12명×7개월×4) · [개발경비] 264 (시제품 및 서비스모듈개발 172, 홍보·회의비 등 92).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한국인인체정보 보급 건수 (단위: 건)	목표	5,700	8,500	8,600	8,600	8,600	과거실적 및 증가추세 감안	Σ(보고서 다운로드수+ 인체정보 가공요청 건수)	국가기술표준원 내부통계 및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
	실적	8,411	6,826	8,391	6,728	-			
	달성도	147%	80%	97.6%	78.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령사회(2026년) 대비 고령자 인체근력 80개 항목 측정(406명) · 책자형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보급(손, 퍼스널모빌리티, 욕실공간) · 디지털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보급(11종-안경, 스마트글라스, 머리범용, 학생용책걸상, 장애인 보조기기, 몸통범용, 안마의자, 기능성베개, 손범용, 욕실공간, 퍼스널모빌리티) · 3차원 인체정보를 활용한 휴먼 빅데이터 구축 전시회 및 포럼개최 (국회의원회관, '18.10.29~30, 국회 정성호·박정·김태년 의원 등 관람객 약500명 참석)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중심 시각 제품설계를 위해 '한국인 시각기능 측정 조사' 개발·보급 · 2020년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주기 5년 도래에 따라 전국민 체형조사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완료(2010년 6차조사 → 2015년 7차조사 → 2020년 8차 조사) · 인체정보 책자형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핸디형청소기, 캠핑용품, 다리대상 제품) · 실시간 개인 인체정보측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구축을 위해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진 및 시범전시 운영(가발, 안경, 장갑 등, '19.11.29) · 대학병원 검진센터를 활용한 휴먼 빅데이터 구축 시연(분당서울대병원)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을 '19년 개발한 프로토콜에 따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1차년도, 20~44세) 3,299명 남자1,469명+여자1,830명 ·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 內 누적된 인체치수 DB 활용 유도를 위한 기업-전문가의 1:1 매칭 및 맞춤형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컨설팅 대상기업 공모로 진행(18개 기업 신청, 16개 기업 지원) · 휴먼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 신발, 가발 및 공군 신병 인체데이터 수집을 위한 SW 구축 · 인체치수사업 컨설팅 교수를 거점으로 관련 학과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통해 인체치수 인식확산 및 활성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인간공학과 70명), 계명대(의용학과 197명) 등 7개 대학 504명 교육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을 '19년 개발한 프로토콜에 따라 조사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2차년도, 45~69세) 3,381명 남자1,539명+여자1,842명 · 인체치수 측정항목 표준안 기반 데이터 저장 체계 설계 및 구축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작(2개*), 자세(5개 항목** 22개분류), 치수(10개), 부위(5항목** 39개분류), 기준점/축/면(5개 항목** 150개분류), 측정방법(3개*) 등 분류형태(6개)에 따라 도출된 측정항목(310개)과 코드(537개)에 따른 인체치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이즈코리아와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통합 모델 구축을 위한 사이트 안정화 및 개선모델 개발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과 사이즈코리아 포털 간 표준화된 통합 연계 활용을 위한 SW표준화 적용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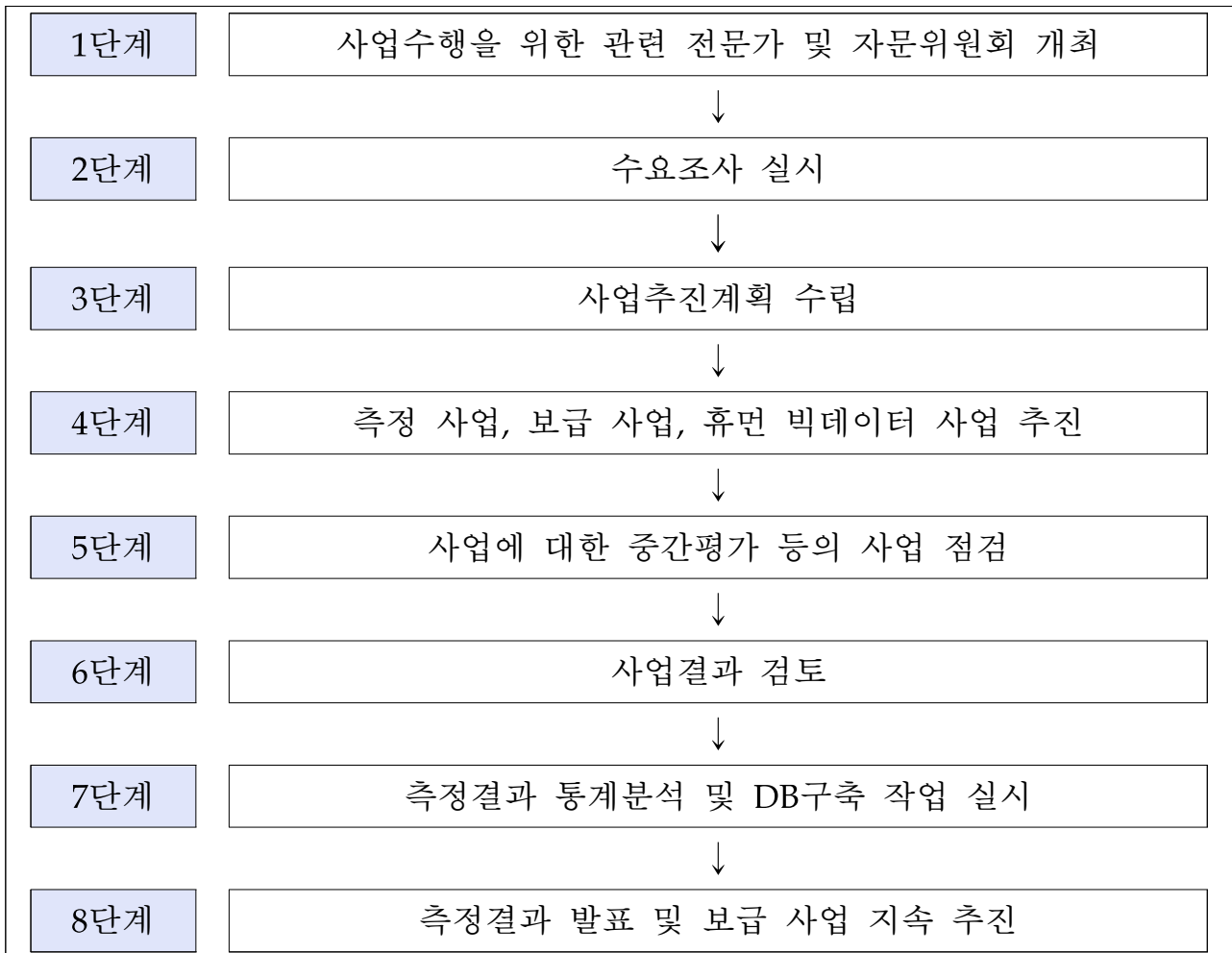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제품 설계에 필요한 인체치수정보 및 3차원 인체형상정보, 동적측정정보 등 종합적인 인체표준정보 DB 구축 및 주기적인 인체정보 업데이트 정보 제공
- 한국인 인체측정정보를 KS표준 제·개정에 이용하여 제품설계 등에 활용
-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매년 한국인인체관련 정보 보급 추진을 통하여 산업계가 인체 친화적 제품 생산 및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의류, 가구, 스마트폰, 자동차, 헬스케어, 유통산업 등 인체치수가 활용되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인체친화적 제품생산과 서비스 제공
- 3D스캐너로 생성되는 개인의 각종 디지털 인체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산업 창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2,039	2,344	2,344	2,344	2,344	
'21~'25		1,832	1,832	2,300	2,600	3,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측정사업

- 국제 기준에 상응하는 고품질의 한국인 최신 인체치수 및 산업계 인체형상정보 활용도 향상을 위한 기업 맞춤형 데이터제공 기반 구축
-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대한 측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사업 성장 도모
- 국가표준 및 산업규격의 설정을 위한 과학적 자료의 제공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미국, EU 등의 인체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산업계에 보급함으로써 수출 제품의 경쟁력 강화
- 2020년 5년 주기 제8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사업을 2개년에 걸쳐 대규모 조사(6,400여명, 측정항목 307개)*하여 최신 인체정보를 산·학·연에 보급
* 2010(6차 조사) → 2015(7차 조사) → 2020(8차 조사)

□ 보급사업

- 인체치수정보 보급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산업체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체정보 보급 및 활용기술 개발지원 활성화 추진
- Size-Korea DB 개선, 지속적인 기초 통계자료 제공으로 효율적인 DB 관리·운영 및 웹기반 User Interface 시스템을 개발
- 누구나 인체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DB 구축 및 관련 웹사이트 정비
- 측정된 인체정보를 이용하여 연령별 대표 체형, 특이 체형 정보 제공 및 관련된 규격에 최신 정보의 지속적 반영
- 미국, 유럽 등의 해외 인체치수정보를 확보·보급함으로써 현지인 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 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
- 산업군별 응용 통계 및 3차원 모형 제공 서비스 추진으로 연령, 성별에 따른 표준 인체 부위별 분석자료 및 3차원 모형 제공
- 산·학·연·관(軍 포함)의 인체표준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개인 인체정보를 3차원 디지털 데이터화하여 각종 산업에서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휴먼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 휴먼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는 온·오프라인에서 맞춤 제품, 건강, 최적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등 인간 삶의 질 향상
- 3D스캐너로 생성된 디지털인체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신산업 창출 및 육성
- 초기 휴먼 빅데이터 사업은 민간에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국방부, 교육부 등 공공부문에서 추진 후, 민간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 조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휴먼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889	-	889	-	-	-	889	873	98.2	98.2	-	16
2019	1,544	-	1,544	-	-	-	1,544	1,504	97.4	97.4	-	40
2020	2,039	-	2,039	-	-	-	2,039	1,658.5	81.3	81.3	355.5	-
2021	1,832	-	1,832	355.5	-	-	2,187.5	2,160.9	117.9	98.7	-	26.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 불용: 조달 차액 및 집행잔액
2019	- 불용: 조달 차액 및 집행잔액
2020	- 이월: 코로나19로 인하여 1일 측정 인원의 제약이 발생하여 (동일 공간 내 잔류인원에 의한 규제)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못하고 지연되었고, 이로인하여 용역사업의 최종금 (사업비의 30%)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2021년 02월 사업이 종료되어 집행 완료함. - 불용: 조달 차액 및 집행잔액
2021	- 불용: 조달 차액 및 집행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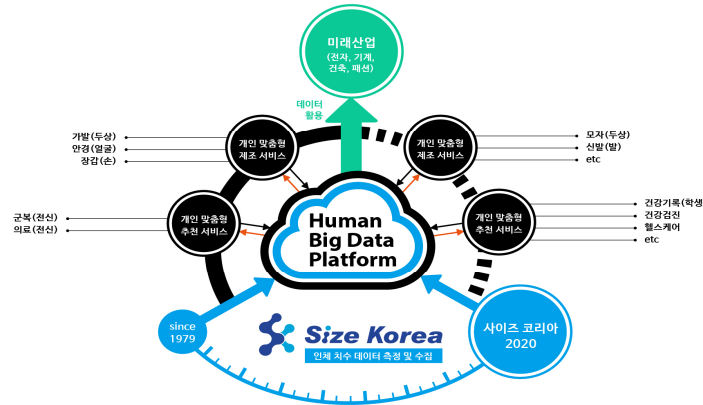
☐ 2021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 없음

☐ 2021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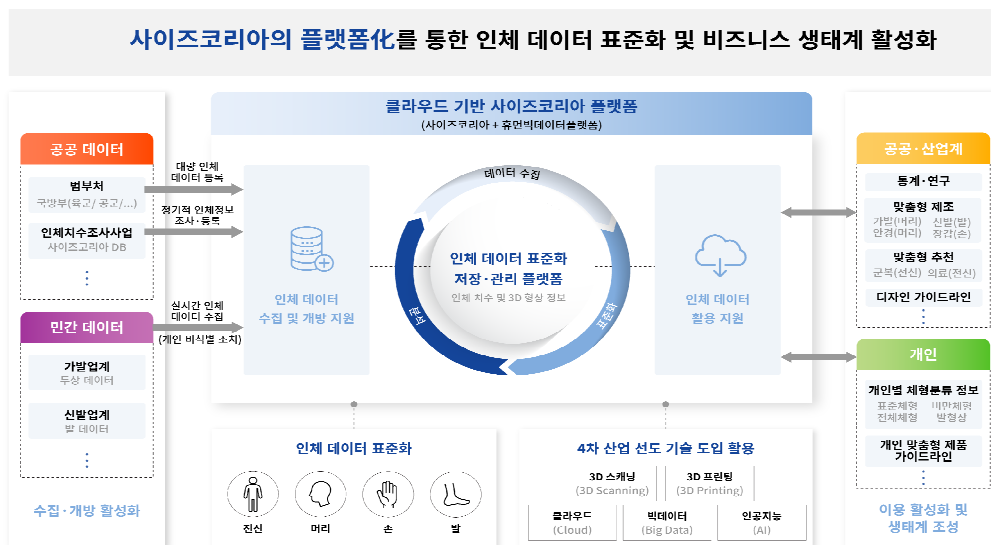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관련 도면 또는 사진

① 휴먼빅데이터 생태계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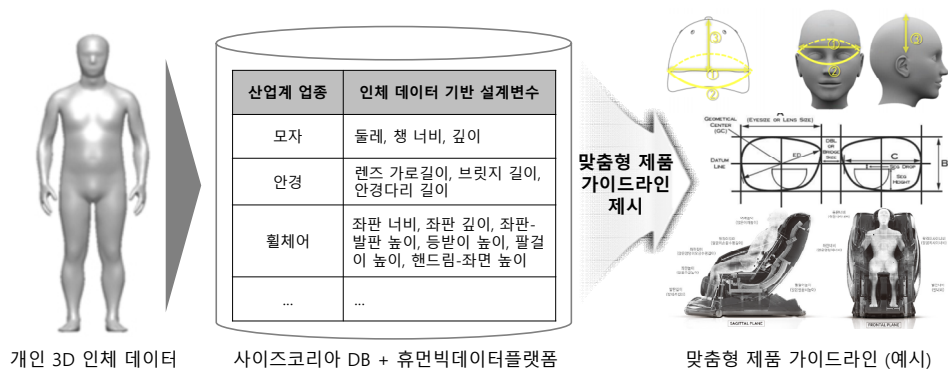


② 사이즈코리아와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통합 모델 구축



③ 맞춤형 제품설계를 위한 세부 활용 개념

① 개인 3D 인체 형상 데이터 업로드 → ② 사이즈코리아 데이터 비교 분석 → ③ 개인별 세분화된 체형위치 확인 (예) 10단계, 20단계 등 → ④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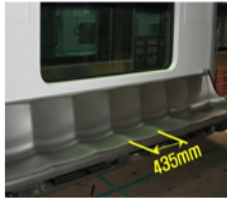


참고 2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 한국인 인체치수 정보 활용사례

○ 대중교통 좌석 개선(서울교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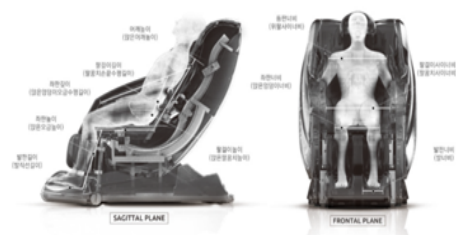
○ 재난 구급용 장비 개선 (국민안전처)



○ 신발 디자인(K2)



○ 안마의자 개선 사례 (휴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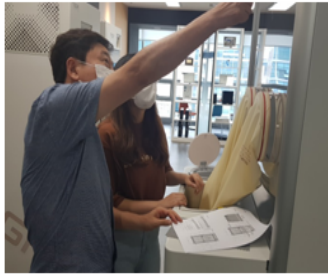
○ 안경디자인(다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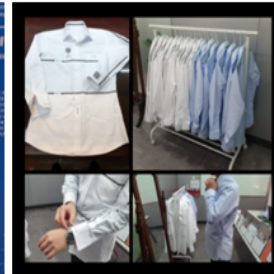
○ 인체치수반영 의자



○ 검체채취부스 적용 사례(지티사이언)



○ 인체치수활용 의류(FRJ, 홈앤쇼핑)



○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현황

사업연도	표본수	연령층	측정항목
제1차 (1979)	16,000명	0-50세	117개
제2차 (1986)	21,000명	6-51세	80개
제3차 (1992)	9,000명	6-50세	84개
제4차 (1997)	13,000명	0-70세	120개
제5차 (2003)	14,200명	0-70세	125개
제6차 (2010)	14,016명	7-69세	139개
제7차 (2015)	6,413명	16-69세	133개
제8차 (2020~2021)	6,680명	20-69세	직접측정: 137개 3D측정: 292개

참고 3

외국 또는 민간 사례

국가/민간	사례내용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CAESAR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사업명 : Civilian American and European Surface Anthropometry Resource project(CAESAR) ○ 조사기간 / 조사지역 / 2D·3D 피측정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998.4.~2000.9. / Ames(IA), Atlanta(GA), Ottawa(Ontario, 캐나다) 등 12개 도시 / 2,375명 - (네덜란드) 1999.8.~2000.9. / Soesterberg 1개 도시 / 1,255명 - (이탈리아) 2001.2.~2001.9. / Genova 1개 도시 / 796명 ○ 결과물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ESAR 결과물의 독점판매권은 Shape Analysis Ltd에 있음 - '미국 측정치 및 3차원 영상' 또는 '네덜란드+이탈리아 측정치 및 3차원 영상'에 대한 구입비용은 각각 10,000USD이며, 3차원 형상을 제외한 인체측정치만 구매하는 경우에는 '미국 측정치' 또는 '네덜란드+이탈리아 측정치'가 각각 3,500USD임 - SAE(미국 자동차공학회) 사이트(http://books.sae.org/rr-017cd/)에서 보고서 제공
독일 (SizeGERMA 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사업명 : SizeGERMANY - Die deutsche Reihenmessung ○ 조사기간 / 조사지역 / 3D 피측정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7.1.~2008.10.31. / 독일 전역(North Germany, South Germany, New Federal) / 12,331명 ○ 결과물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GERMANY에서 결과물 관리(iSize 포탈에서 제공) - 인체측정치 전체 자료 구매를 위해서는 15,600€가 소요되며, 3차원 형상 열람을 위해서는 3,200€가 추가 소요 - 보고서(SizeGERMANY, Human Solutions, Hohenstein Institute)는 라이선스 계약 후 허가를 받아 열람할 수 있음
일본 (Size-JP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사업명 : 人間特性基盤整備事業(인간특성기반정비사업, Size-JPN2004-06) ○ 조사기간 / 조사지역 / 2D·3D 피측정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10.~2006.10. / 도쿄, 오사카, 고베, 모리구치 / 6,707명 ○ 결과물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생활공학연구센터(HQL) 웹사이트에서 결과물 관리 및 판매(https://www.hql.jp/database/size2004-purchase/) - 전체 자료를 묶은 세트는 판매하지 않으며, 측정 항목별 및 분석 항목별로 개당 가격이 책정됨(2D : 200~20,000엔, 3D : 10,000~60,000엔) - 외국인에게는 결과물을 판매하지 않으며, 외국 기관과의 결과물 교환은 가능

<p>중국 (중국 미성년 인체측정사업, 중국 성인인체치수 에 대한 예비조사, 제2차 중국 성인인체치수 조사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사업명 : 중국 미성년 인체측정사업, 중국 성인인체치수에 대한 예비조사, 제2차 중국 성인인체치수 조사항목 ○ 조사기간 / 조사지역 / 2D·3D 피측정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미성년 인체측정사업) 2006년~2007년 / 중국 전역(동북화북지역, 중서부지역, 장강중류지역, 장강하류지역, 광둥·광서·북건지역, 운남·귀주·사천구역) / 19,829명 - (중국 성인인체치수에 대한 예비조사) 2009년 / 시안, 톈진, 상하이, 북경 / 3,100명 - (제2차 중국 성인인체치수 조사항목) 2014.12.1.~2018.1.30. / 중국 전역(동북화북지역, 중서부지역, 장강중류지역, 장강하류지역, 광둥·광서·북건지역, 운남·귀주·사천구역) / 약 24,000명 ○ 결과물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수행기관인 China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ization에서 결과물을 관리 - '중국미성년인체측정사업'의 결과는 GB/T 26158-2010(Human dimensions of Chinese minors)에 공개 - '제2차 중국 성인인체치수 조사항목'은 성인 치수와 관련된 5~8개 중국국가 표준을 개정할 예정
--	--

사 업 명						
(5)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37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5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	오광해	김영국 연구관	
		043-870-5340	043-870-534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58,464	62,235	62,235	76,742	69,995	7,760	12.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산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58,464	58,464	58,464 [58,464]	-	-	62,235	62,235	62,235	62,235 [62,235]	-	-	69,995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33,462	33,462	33,462 [33,462]	-	-	37,383	37,383	37,383	37,383 [37,383]	-	-	40,333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3,626	3,626	3,626 [3,626]	-	-	6,752	6,752	6,752	6,752 [6,752]	-	-	7,502
· 상용표준물질개발· 보급	10,800	10,800	10,800 [10,800]	-	-	13,600	13,600	13,600	13,600 [13,600]	-	-	13,600
· 산업데이터표준화 및인증지원	-	-	- [-]	-	-	2,500	2,500	2,500	2,500 [2,500]	-	-	2,973
· R&D사업화표준연계	-	-	- [-]	-	-	-	-	-	- [-]	-	-	5,587
· 소비자제품안전기술 기반조성	4,621	4,621	4,621 [4,621]	-	-	-	-	-	- [-]	-	-	-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1,500	1,500	1,500 [1,500]	-	-	-	-	-	- [-]	-	-	-
· 화학물질안전관리 기반확충	735	735	735 [735]	-	-	-	-	-	- [-]	-	-	-
·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1,660	1,660	1,660 [1,660]	-	-	-	-	-	- [-]	-	-	-
· 기획평가관리비	2,060	2,060	2,060 [2,060]	-	-	2,000	2,000	2,000	2,000 [2,000]	-	-	-
○ 비목별 분류(합계)	58,464	58,464	58,464 [58,464]	-	-	62,235	62,235	62,235	62,235 [62,235]	-	-	69,995
· 장비시스템 구축비 (360-04)	1,820	1,820	1,820 [1,820]	-	-	-	-	-	-	-	-	-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56,644	56,644	56,644 [56,644]	-	-	62,235	62,235	62,235	62,235 [62,235]	-	-	69,99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8,464	58,464	58,464 [58,464]	-	-	62,235	62,235	62,235	62,235 [62,235]	-	-	69,995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33,462	33,462	33,462 [33,462]	-	-	37,383	37,383	37,383	37,383 [37,383]	-	-	40,333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33,462	33,462	33,462 [33,462]	-	-	37,383	37,383	37,383	37,383 [37,383]	-	-	40,333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3,626	3,626	3,626 [3,626]	-	-	6,752	6,752	6,752	6,752 [6,752]	-	-	7,502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3,626	3,626	3,626 [3,626]	-	-	6,752	6,752	6,752	6,752 [6,752]	-	-	7,502
· 상용표준물 질개발·보급	10,800	10,800	10,800 [10,800]	-	-	13,600	13,600	13,600	13,600 [13,600]	-	-	13,600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10,800	10,800	10,800 [10,800]	-	-	13,600	13,600	13,600	13,600 [13,600]	-	-	13,600
· 산업데이터표준화 및인증지원	-	-	- [-]	-	-	2,500	2,500	2,500	2,500 [2,500]	-	-	2,973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	-	- [-]	-	-	2,500	2,500	2,500	2,500 [2,500]	-	-	2,973
· R&D사업화표준연계	-	-	- [-]	-	-	-	-	-	- [-]	-	-	5,587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	-	- [-]	-	-	-	-	-	- [-]	-	-	5,587
· 소비자제품안전기술 기반조성	4,621	4,621	4,621 [4,621]	-	-	-	-	-	- [-]	-	-	-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4,621	4,621	4,621 [4,621]	-	-	-	-	-	- [-]	-	-	-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1,500	1,500	1,500 [1,500]	-	-	-	-	-	- [-]	-	-	-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1,500	1,500	1,500 [1,500]	-	-	-	-	-	- [-]	-	-	-
· 화학물질안전관리 기반확충	735	735	735 [735]	-	-	-	-	-	- [-]	-	-	-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575	575	575 [575]	-	-	-	-	-	- [-]	-	-	-
- 장비시스템 구축비 (360-04)	160	160	160 [160]	-	-	-	-	-	- [-]	-	-	-
·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1,660	1,660	1,660 [1,660]	-	-	-	-	-	- [-]	-	-	-
- 장비시스템 구축비 (360-04)	1,660	1,660	1,660 [1,660]	-	-	-	-	-	- [-]	-	-	-
· 기획평가관리비	2,060	2,060	2,060 [2,060]	-	-	2,000	2,000	2,000	2,000 [2,000]	-	-	-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2,060	2,060	2,060 [2,060]	-	-	2,000	2,000	2,000	2,000 [2,000]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우리기술의 신뢰성제고 및 글로벌시장선점을 위해 국제표준(ISO/IEC) 개발·제안 및 인력양성, 전략수립, 협의체운영 등 표준화기반조성 추진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신 데이터산업 창출 및 기술개발 비용·기간 단축을 위해 의료·헬스케어 데이터, 환경정보 등 참조표준데이터의 개발·보급 추진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개발시 품질·정확도 확인 및 개발소재의 측정방법·측정장비 교정 등을 위한 '표준물질' 개발·보급 추진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데이터 간 결합·교환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고, 데이터 대상 상호운용성 수준진단·인증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의 개발 촉진
- (R&D사업화표준연계) 정부 R&D 기획시 표준선행기술조사(표준동향조사 등) 및 표준 전략연구, R&D 표준성과관리·유통 전담기관의 R&D-표준성과관리 활동 지원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안전취약 위해제품과 융복합제품의 안전기준 연구와 신종위해물질 등 위해성 평가 및 시험검사방법 개선연구 등을 통한 안전한 사회 실현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IT융복합 기술활용을 통한 계량·측정기기 성능향상 및 불법 조작 방지로 4차산업, 에너지 신산업 대응과 국민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국민 안전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따라 산업혁신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기반 확충 및 화학사고 예방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국제상호인정협정(ILAC-MRA) 유지, 국제기준에 의한 시험역량 확보 등을 통한 무역상 기술장벽(TBT) 극복 및 원천기술에 대한 수출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2항(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96년 :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 수립
- '99년 : 국가표준기본법(제27조) 제정으로 표준개발 지원근거 마련
- '00년 : 30억원 예산지원으로 표준화기술개발사업 시작
- '07년 : '표준화기술개발사업'과 '표준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합
- '09년11월 :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수립
- '09년 5월 : 녹색성장위원회(지경부) '녹색기술 표준화 전략' 발표
- '10년 6월 : 지식경제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으로 통합
- '15년 5월 :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분리
- '19년 6월 :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발표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2항(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99년 :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참조표준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규정
- '06년 : 「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참조표준개발계획 반영·개발 추진
- '06년 8월 :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 '06년 8월 : 「국가참조표준센터」 설립 및 참조표준 평가·보급
- '11년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신규 지원

- '15년 5월 :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분리
- '20년 : 36개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운영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2항(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09.4월 : 국가표준기본법에서 표준물질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규정
- '09.6월 : 제42회 국제표준물질위원회(ISO/REMCO) 총회 개최
- '19.8월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 '20.2월 : 신규과제 지원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 산업표준화법 제30조(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② 추진경위

- '19.1월 : 424개 데이터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기업 동향조사(2018)'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업 기획
- '19.3월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에 반영
- '20.8월 :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성장전략(경제중대본)에 반영
- '20.11월 : 비대면 경제 활성화방안(경제중대본)에 반영
- '21.4월 : 신규과제 지원(자율차, 스마트제조 등)

○ R&D사업화표준연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공통운영요령 제18조(과제기획)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연구개발성과),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 연구성과평가법 제2조(정의)

② 추진경위

- '19.3월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R&D 단계별 표준연계체계 구축 등 반영
- '19.6월 :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R&D 전주기 표준연계 등 반영
- '19.12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등 산업부 R&D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R&D 과제기획시 표준화 동향조사 의무화
- '20.6월 :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을 통해 표준을 특허, 논문과 같이 R&D 주요 과학 기술적 성과로 명시
- '21.1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표준을 연구개발성으로 지정 하고, 연구개발 성과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역할 정의
- '21.1월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과기부 제2020-107호)
 - *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및 제18조(제품안전 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전기용품 및 생활제품 안전관리법 제38조(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② 추진경위

- '08.3월 :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장관보고)
- '08.12월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09.4월 : 지원대상과제 선정 및 사업비지원
- '10.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공포
- '11.2월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 '11.3월 : 제1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4.2월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7.6월 : '18년 일몰에 따른 신규사업 재기획
- '17.11월 : 제3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① 법령상 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계량산업의 육성 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② 추진경위

- '12.2월 : '법정계량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추진
- '15.1월 : 계량법 전부개정을 통한 '계량산업 육성' 지원근거 마련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제5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 '17.6월 : '18년 일몰에 따른 신규사업 재기획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① 법령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4조)
- 화학물질관리법(제36조, 제41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

② 추진경위

- '11.4월 :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 공식보고
- '12.9월 : 구미 불산사고 등 화학안전사고 다수 발생

- '12.12월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총리실) 발표
- '13.5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13.6월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 공포
- '13.7월 :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부처합동) 발표
- '14.4월 ~ '18.3월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 기반구축사업 수행(1~4차년도)
- '17.6월 : '18년 일몰에 따른 신규사업 재기획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8조(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확립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② 추진경위

- '00.9월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02.3월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3.4월 : 「MRA사업」 1차년도 추진
- '04.4월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7.2월 : 「시험분석서비스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제3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07.11월 : 「시험분석장비 인프라 확충 방안수립」 제24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10.9월 :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제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
- '12.3월 : 「FTA시대 국가 R&D전략」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결
- '14.1월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7년 ~ '24년(일몰관리혁신)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및 관련 산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표준 기술력향상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시험인증 기관 등	40,333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국가참조 표준데이터 개발·보급	출연	국가참조 표준데이터 센터	7,502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동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상용표준물질 개발·보급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표준물질 생산기관 등	13,600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동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시험인증 기관 등	2,973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동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R&D사업화 표준연계	출연	한국표준 협회,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5,587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동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소비자제품 안전기술 기반조성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시험인증 기관 등	-	70% 이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동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차세대계량 기술개발	출연	기업, 연구소, 업종별 단체, 시험인증 기관 등	-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동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화학물질안전 관리기반확충	출연	한국생산 기술연구 원	-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동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국제상호인정 시험평가능력 기반구축	출연	시험인증 기관 및 연구소 등	-	75% 이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동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3) '22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21) 37,383백만원 → ('22요구) 40,333백만원, 2,950백만원 증액

- (요구) 4차 산업 핵심기술, 소부장, K-방역모델, 탄소중립, 서비스 등에 대한 국제표준(ISO/IEC) 개발 및 기반조성을 위해 40,333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과제 : $170\text{개} \times 189.9\text{백만원} = 32,280\text{백만원}$
신규과제 : $7\text{개} \times 400\text{백만원} \times 9/12\text{개월} + 50\text{개} \times 120\text{백만원} \times 9/12\text{개월} + 1\text{개} \times 1,500\text{백만원} \times 12/12\text{개월} = 8,053\text{백만원}$

○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383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37,383백만원 가. 계속과제 (24,408백만원) • $155\text{개} \times 157.5\text{백만원} = 24,408\text{백만원}$ 나. 신규과제 (12,975백만원) • $1\text{개} \times 1,500\text{백만원} \times 12/12\text{개월} + 2\text{개} \times 1,000\text{백만원} \times 9/12\text{개월} + 13\text{개} \times 400\text{백만원} \times 9/12\text{개월} + 65\text{개} \times 120\text{백만원} \times 9/12\text{개월} = 12,975\text{백만원}$	37,633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40,333백만원 가. 계속과제 (32,280백만원) • $170\text{개} \times 189.9\text{백만원} = 32,280\text{백만원}$ 나. 신규과제 (8,053백만원) • $7\text{개} \times 400\text{백만원} \times 9/12\text{개월} + 50\text{개} \times 120\text{백만원} \times 9/12\text{개월} + 1\text{개} \times 1,500\text{백만원} \times 12/12\text{개월} = 8,053\text{백만원}$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21) 6,752백만원 → ('22요구) 7,502백만원, 750백만원 증액

- (요구) 참조표준의 지속적 개발·보급을 위한 기존 데이터센터 운영 및 활용 지원, 참조표준 기반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위해 7,502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과제 : $13\text{개} \times 577.1\text{백만원} = 7,502\text{백만원}$

○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752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6,752백만원 가. 신규과제 (6,752백만원) • $1\text{개} \times 4,152\text{백만원} \times 12/12\text{개월} + 1\text{개} \times 600\text{백만원} \times 12/12\text{개월} + 8\text{개} \times 250\text{백만원} \times 12/12\text{개월} = 6,752\text{백만원}$	7,502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7,502백만원 가. 계속과제 (7,502백만원) • $13\text{개} \times 577.1\text{백만원} = 7,502\text{백만원}$

③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 ('21) 13,600백만원 → ('22요구) 13,600백만원

- (요구) 표준물질 개발, 표준물질 산업생태계 조성, 표준물질 적합성검증 기술지원 등을 위해 13,600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과제 : $12\text{개} \times 291.7\text{백만원} = 3,500\text{백만원}$
신규과제 : $1\text{개} \times 800\text{백만원} \times 12/12\text{개월} + 1\text{개} \times 300\text{백만원} \times 12/12\text{개월} + 40\text{개} \times 300\text{백만원} \times 9/12\text{개월} = 10,100\text{백만원}$

○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600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13,600백만원 가. 계속과제 (12,000백만원) • 40개×300백만x12/12개월 = 12,000백만원 나. 신규과제 (1,600백만원) • 1개×300백만x12/12개월 + 1개×800백만 x12/12개월 + 1개×500백만x12/12개월 = 1,600백만원	13,600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13,600백만원 가. 계속과제 (3,500백만원) • 12개×291.7백만원 = 3,500백만원 나. 신규과제 (10,100백만원) • 1개×800백만원x12/12개월 + 1개×300백만원 x12/12개월 + 40개×300백만원x9/12개월 = 10,100백만원= 10,100백만원

④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 ('21) 2,500백만원 → ('22요구) 2,973백만원, 473백만원 증액

- (요구) 산업분야별(자율주행차, 스마트제조 등) 데이터 간 결합·교환을 위한 국가표준 개발, 상호운용성 실증 및 활용 확대를 위해 2,973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과제 : 3개×883백만원 = 2,500백만원
신규과제 : 1개×631백만원×9/12개월 = 473백만원

○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00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2,500백만원 가. 신규과제 (2,500백만원) • 1개×800백만x9/12개월 + 1개×2,530백만 x9/12개월 = 2,500백만원	2,973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2,973백만원 가. 계속과제 (2,500백만원) • 3개×833백만원 = 2,500백만원 나. 신규과제 (473백만원) • 1개×631백만원×9/12개월 = 473백만원

⑤ R&D사업화표준연계

: ('22요구) 5,587백만원, '22년 신규

- (요구) 정부 R&D 기획시 표준선행기술조사(표준동향조사 등) 및 표준전략연구, R&D 표준성과관리·유통 전담기관(KRISS, KSA)의 활동 지원을 위해 5,587백만원 요구
- (산출) 신규과제 : 1개×2,500백만원×12/12개월 + 2개×1,543.5백만원×12/12개월 = 5,587백만원

○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해당없음	5,587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5,587백만원 가. 신규과제 (5,587백만원) • 1개×2,500백만원×12/12개월 + 2개×1,543.5 백만원×12/12개월 = 5,58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표준 제안건수 (단위: 건)	목표	46	47	48	50	51	최근 5개년도 성과 평균인 50개를 '21 년도 성과목표로 설 정하고 차년도부 터 지속적으로 상 향하는 방향으로 목표치를 수정함	지원과제로 국제 표준화기구(공적, 사실상)에 제안한 국제표준안 건수의 합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안 제안 여부 확인
	실적	53	52	50	-	-			
	달성도	115.2	110.6	104.2	-	-			
신규 국제표준(안) 채택건수 (단위: 건)	목표	30	31	34	35	36	국제표준안 제안 건수 대비 국제표 준화기구 신규 국 제표준안 채택을 70% 수준으로 설정 하여 목표치 산출	국제표준화기구 (공적, 사실상) 신규 국제표준안 채택 건수의 합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추진 승인 여부 확인
	실적	47	36	39	-	-			
	달성도	156.7	116.2	114.7	-	-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참조표준 DB 접속건수 증가율 (단위: %)	목표	17	16	33	32	31	최근 3개년 성과를 고려하여 30%를 '20년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차년 도부터 우하향 하는 방향으로 목표치 산출	(금년도 접속건수 - 지난 3년간 평균 접속건수) / 지난 3년 평균접속건수 × 100	국 가 참 조 표 준 센터 홈페이지 (www.srd.re.kr)
	실적	33.1	31.8	33.1	-	-			
	달성도	194.7	198.8	100.3	-	-			
참조표준 DB 활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목표	78	80	82	83	84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질적 지표로, '20년 다소 만족 수준(82점)에서 최종 목표인 만족 (85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설정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국 가 참 조 표 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전수조사 (www.srd.re.kr)
	실적	78.3	80.1	82.1	-	-			
	달성도	100.4	100.1	100.1	-	-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상용표준물질 보급 (단위: %)	목표	-	-	신규	80	82	ISO 17034 인정에 대한 경험이 없는 기관이 한국인정 기구(KOLAS) 인정 획득의 난 이도를 고려하여 80% 수준으로 성과목표설정 후 매년 2%씩 상향	표준물질 보급수 /지원 표준물 질의 수 x 100	한 국 인 정 기 구 인정서 취득 여부 확인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상호운용 데이터 표준제정 (단위: 종)	목표	-	-		신규	2	시험 사업분야별 1개의 상호운용 관련 데이터 표준 제정	매년 초 국가연 구개발사업 성과조 사를 통한 표준 개발수	NTIS(국가과학 기술지식정보서 비스)
	실적	-	-	-	-	-			
	달성도	-	-	-	-	-			

○ R&D사업화표준연계 : 해당 없음('22년 신규사업)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소비자제품 안전기준(안) 개발 건수 (단위: 건)	목표	5	7	9	-	-	-	소비자제품 안전 기준(안) 개발 건수	동 사업으로 지 원한 과제에 대 한 전수조사 (소비자제품 안 전기준(안) 개발 문서)
	실적	5	12	-	-	-			
	달성도	100	171.4	-	-	-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차세대계량기술 형식승인(안) 신청율 (단위: %)	목표	30	33	37	-	-	-	(형식승인 신청건수 /기술개발 종료과 제수)×100	동 사업으로 지 원한 과제에 대 한 전수조사 (형식승인(안) 신 청서)
	실적	30	40	-	-	-			
	달성도	100	121.2	-	-	-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국제인증(GLP) 획득율 (단위: %)	목표	100	100	100	-	-	-	(당해연도 GLP인 증 획득수 /전년 도 GLP 인증 대 상 기반구축 시험 항목수) * 100	동 사업으로 지 원한 과제에 대 한 전수조사 (GLP 인증서)
	실적	100	100	-	-	-			
	달성도	100	100	-	-	-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시험능력 향상도 (단위 : %)	목표	92	94	96	-	-	-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험측정항목, 국제 시험능력, KOLAS 성적서 발행건수를 종합적으로 평가	사업수행 시험 연구기관 보고 서
	실적	94.9	-	-	-	-			
	달성도	103.1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자율주행차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자동차-ITS-ICT 융합 표준화 기반 조성 등 108개 ○ 신규과제 :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국제표준 개발 등 66개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실감형 디스플레이 표준화 기반 조성 등 143개 ○ 신규과제 : 전도성 섬유 기반 웨어러블 압력 스트레인 네트워크 센서 국제표준 개발 등 55개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한독 표준협력 기반 조성 등 157개 ○ 신규과제 : 통신 기반 실시간 대응 수소충전 프로토콜 실증 및 국제표준 개발 등 65개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한독 표준협력 기반 조성 등 157개 ○ 신규과제 : 통신 기반 실시간 대응 수소충전 프로토콜 실증 및 국제표준 개발 등 65개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3개 신규지정 및 31개 데이터센터 측정능력/품질시스템 향상을 지원하여 참조데이터 전문생산기관으로 육성 ○ 활용패키지 개발·보급(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에너지손실 데이터북, 플라즈마 공정별 가스데이터 패키지 개발 등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3개 신규지정 및 34개 데이터센터 측정능력/품질시스템 향상을 지원하여 참조데이터 전문생산기관으로 육성 ○ 활용패키지 개발·보급(1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 건강지수, 한국인 관절가동범위, 대한민국 중력가속도 등 개발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3개 신규지정 및 36개 데이터센터 측정능력/품질시스템 향상을 지원하여 참조데이터 전문생산기관으로 육성 ○ 활용패키지 개발·보급(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즈마 밀도 모니터링 분광 시스템, 발열자 선별용 적외선 열화상기기 등 개발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표준데이터센터 3개 신규지정 및 36개 데이터센터 측정능력/품질시스템 향상을 지원하여 참조데이터 전문생산기관으로 육성 ○ 활용패키지 개발·보급(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즈마 밀도 모니터링 분광 시스템, 발열자 선별용 적외선 열화상기기 등 개발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2020	○ 신규과제 : 나노급 질화물 반도체 박막 두께 측정용 상용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 등 30개
2021	○ 신규과제 : 나노급 질화물 반도체 박막 두께 측정용 상용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 등 30개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자율적 위해인자 확인관리를 위한 어린이제품위해성 평가툴 개발 등 기반조성 과제 지원 : 15건 ○ 유아동용 완구류의 안전기준 및 유해물질 분석방법 개발 등 기술개발 과제 지원 : 12건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제품 위험수준 평가방법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 기반조성 과제 지원 : 11건 ○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이차전지의 안전기준(안) 개발 등 기술개발 과제 지원 : 12건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수준 평가방법을 활용한 전기용품의 사고원인 분석체계 개발 : 10건 ○ 완구의 안전기준 개정(안) 개발 등 기술개발 과제 지원 : 19건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2018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충전기 계량관리를 위한 중량식검사기반 구축 등 차세대계량기술개발 과제 지원 : 11건
2019	○ 수소충전기 검교정 성능향상을 위한 질량계측 기반의 계량측정장치 기술개발 등 차세대계량기술개발 과제 지원 : 10건
2020	○ IoT 기반 통신 모듈 칩셋형 실측식 스마트 수도미터 개발 등 기술개발 과제 지원 : 11건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2018	○ 화평법 GLP 시험·평가 인증지원 및 화학물질 전주기 관리 시스템 보급, 활용을 위한 기반확충 등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 확충 과제 지원 : 1건
2019	○ 화평법 GLP 시험·평가 인증지원 및 화학물질 전주기 관리 시스템 보급, 활용을 위한 기반확충 등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 확충 과제 지원 : 1건
2020	○ 화평법 GLP 시험·평가 인증지원 및 화학물질 전주기 관리 시스템 보급, 활용을 위한 기반확충 등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 확충 과제 지원 : 1건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탄소중립, 융복합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표준화를 통해 국제표준을 선점하여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 간사 등 임원수임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및 국제표준분야에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국가공인 참조표준데이터를 개발·보급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의 R&D 중복연구 및 개발에 따른 경제적 손실방지를 통한 국가 R&D 효율성 증대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신뢰성 있는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제품·기술개발 및 공정 혁신에 기여
- 참조표준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기반 신산업 창출 기대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 상용표준물질 개발을 통한 국내산업의 측정 정밀도를 유지·향상을 국제동등성 확보
- 다양한 상용표준물질 개발을 통해 해외표준물질 수입 의존도 감소
- 산업계의 니즈 파악을 통한 중장기적 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 체계 수립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표준물질 활용 기대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 기업의 데이터 활용성 제고에 따른 신제품·서비스 창출 가속화로 기업매출 증가 및 데이터 관련 산업 발전

○ R&D사업화표준연계

- R&D 표준성과의 수집·검증·유통을 통해 체계적인 표준 성과관리 및 표준의 대국민 보급·확산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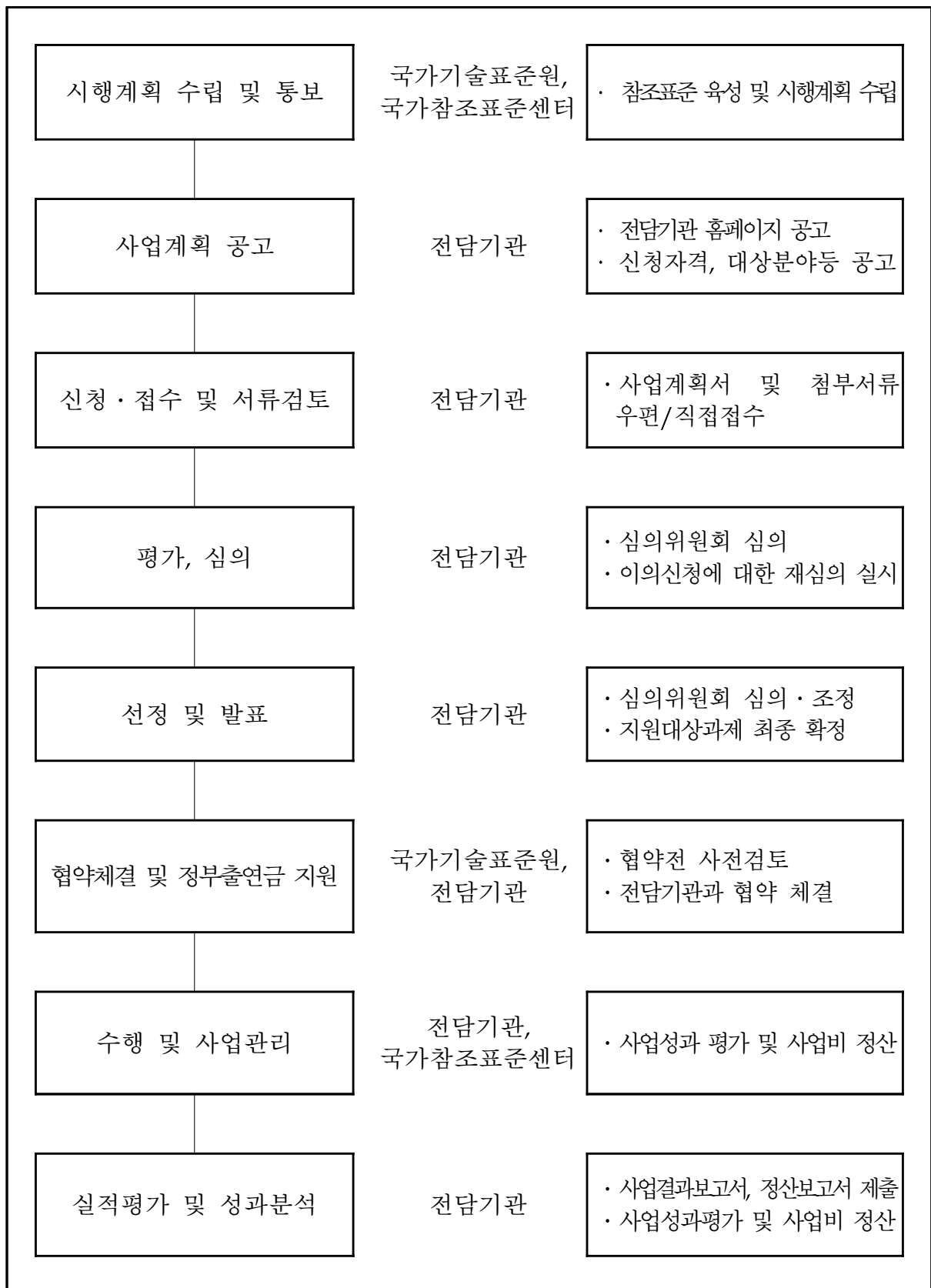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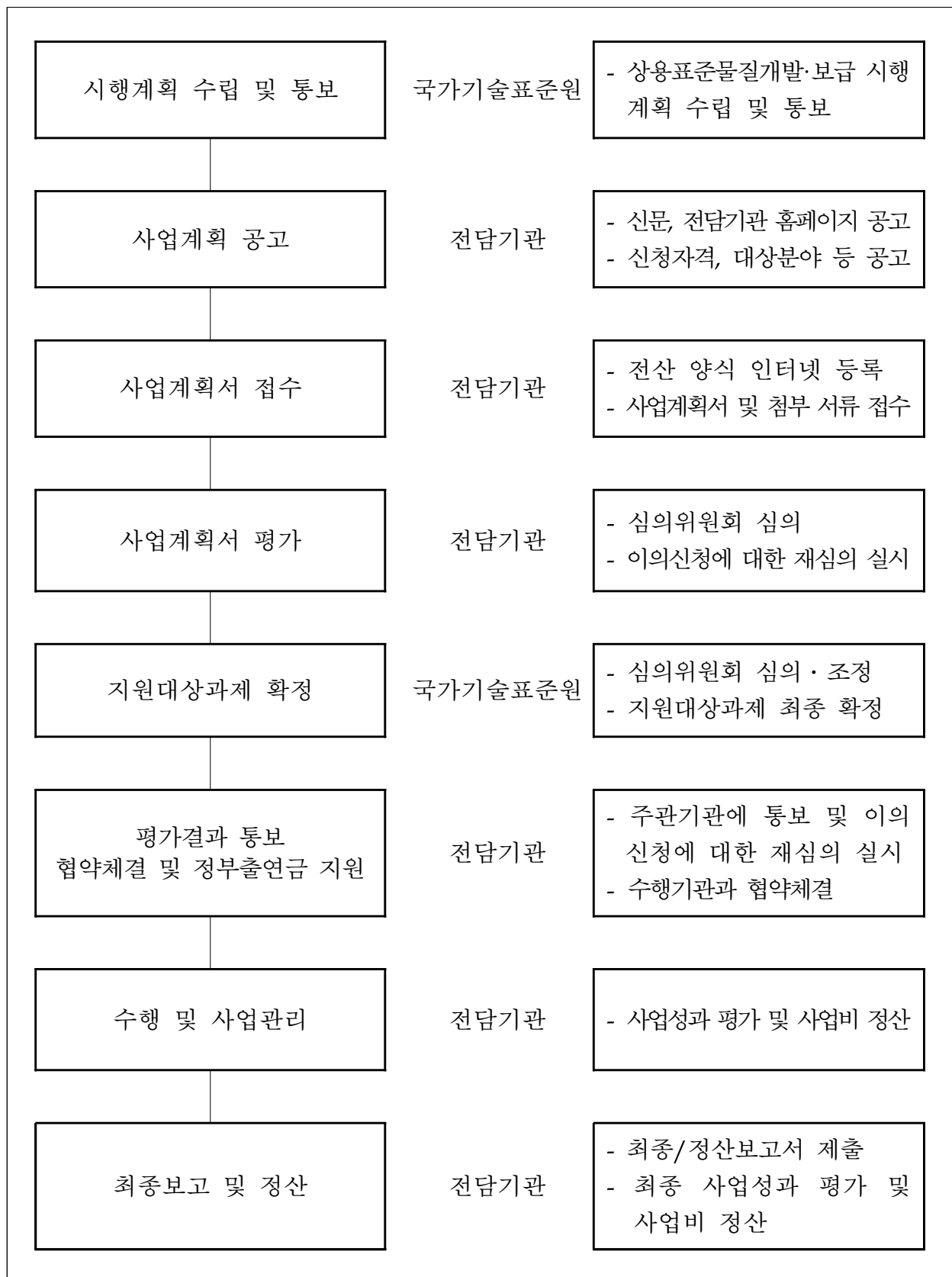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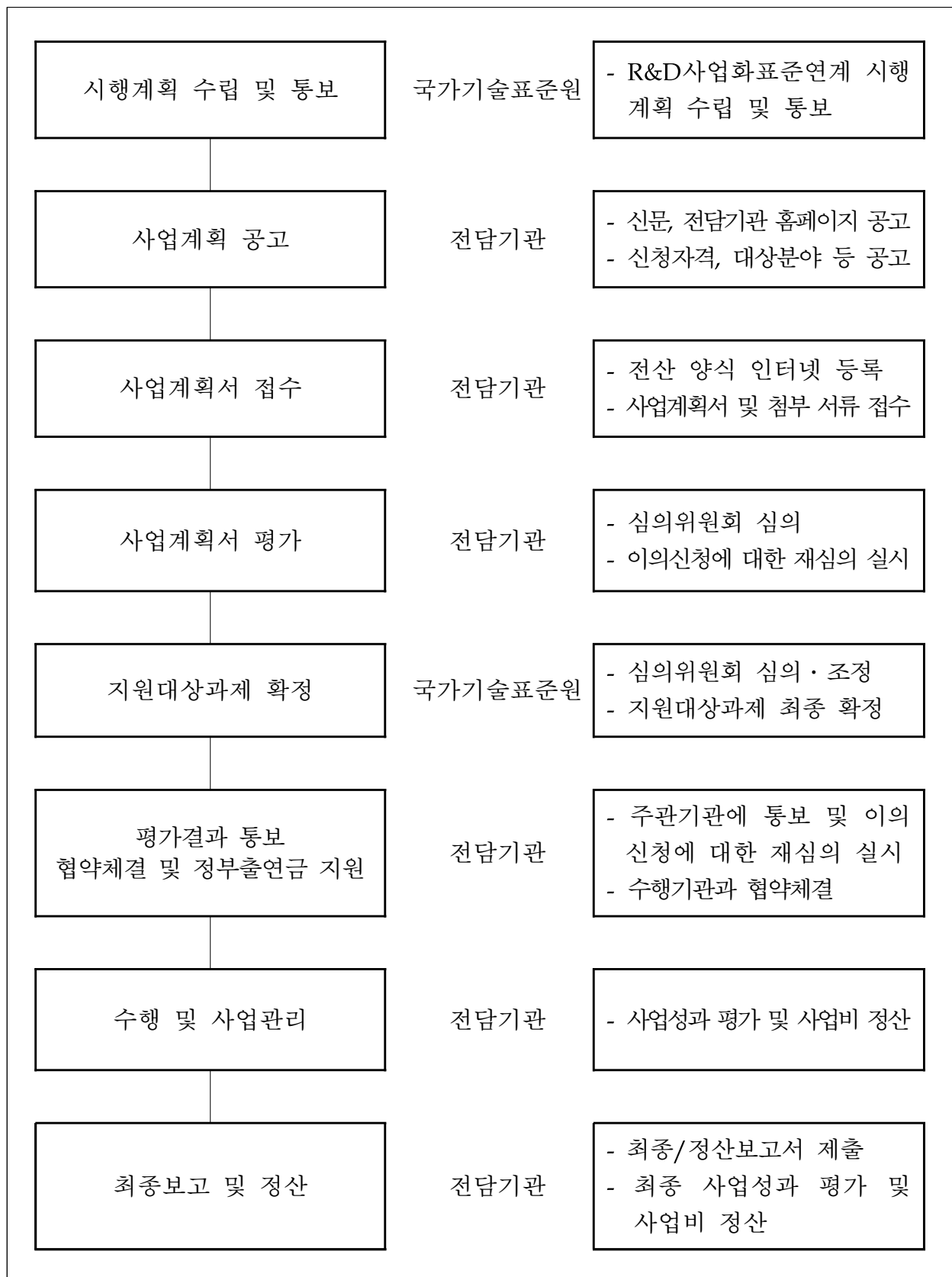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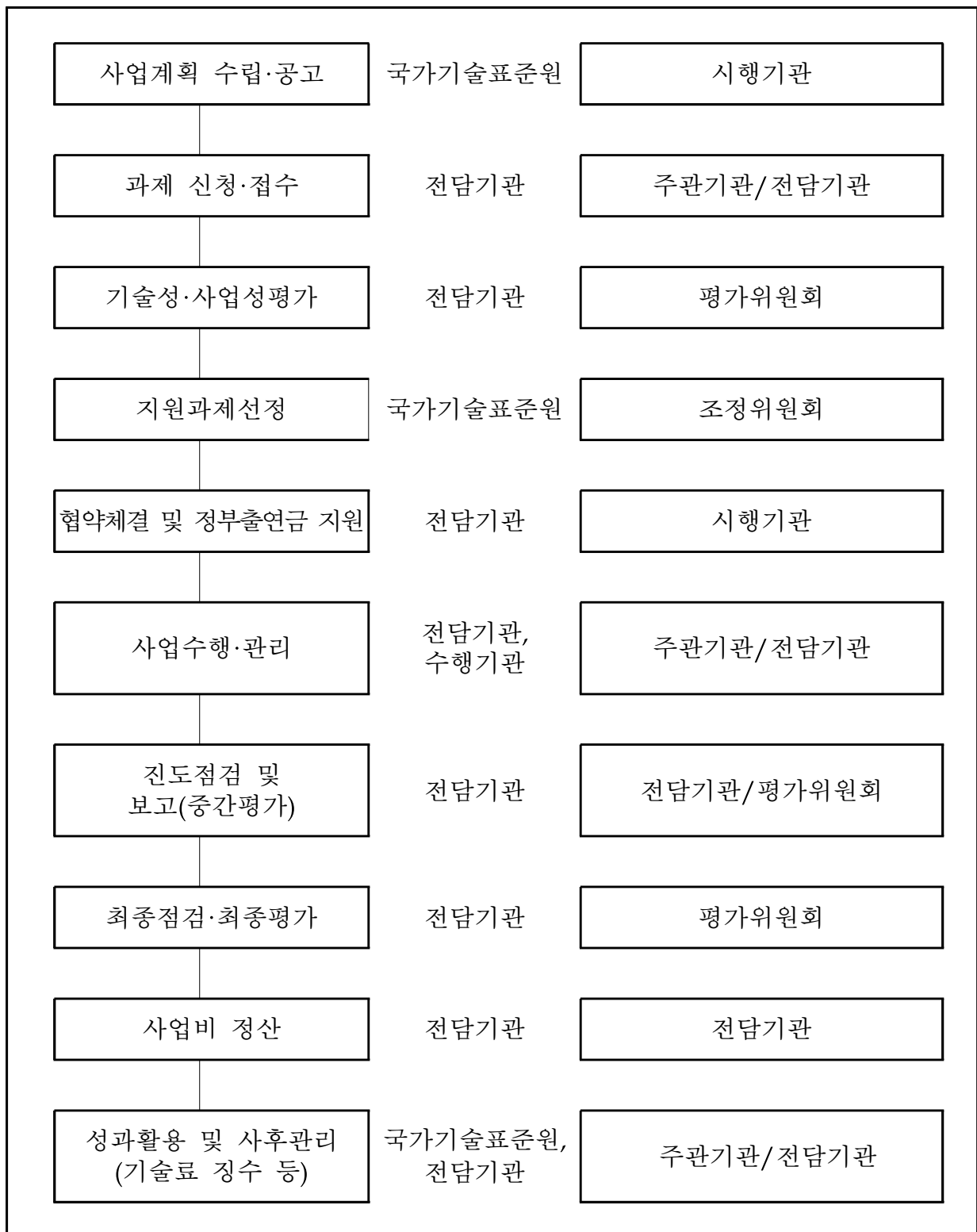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 R&D사업화표준연계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56,664	62,235	67,050	76,293	95,459	
'21~'25		62,235	70,942	90,692	110,075	118,96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산중위 '20년 결산보고서) 지적

○ 지적사항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차세대계량기술개발,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 구축사업이 '20년 단년도로 신규지원한 과제는 '20년 4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 까지 수행되어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함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사업으로 수행한 7개 과제 중 6개 과제는 과제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이 체결되지 않음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추후 단년도 과제 추진시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 하도록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노력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 향후추진 방향

- FTA 체계 하에서 국가간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 국가의 표준·기술 규정에 국제표준 수용이 확대됨에 따라 전략적 도구로서의 미래유망산업분야의 표준 발굴
- 우리 기술 선도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및 표준화기반조성 추진
 -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중소·중견 기업의 보유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확대로 국제적 강소기업 육성

○ 세부추진 계획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에 따른 4차산업혁명 분야, K-방역 모델, 탄소중립, 서비스 등 분야 전략적 국제표준화 추진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향후추진 방향

-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 데이터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운영하여 신뢰성 있는 국가참조표준데이터 제정 및 보급

○ 세부추진 계획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의 필수 기반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 추진

③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 향후추진 방향

- 국외 의존도가 높은 표준물질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국내 산업계 보급 및 해외수출을 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물질등록센터에 등록

○ 세부추진 계획

- 국가측정대표기관 및 표준물질생산기관간의 상호 협력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에서부터 평가 및 소급성 확보

④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

○ 향후추진 방향

- 데이터 간 결합·교환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고, 데이터 대상 상호운용성 수준진단 및 인증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의 개발을 촉진

○ 세부추진 계획

-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및 디지털 시험소 운영(수준진단·인증) 분야를 '21년 3대 시범분야*(미래차, 에너지, 바이오·헬스)로 시작하여 확대할 예정

* 4차산업 기술 및 데이터 관련 기존 KS 간 분석을 통해 표준화의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군 선정

⑤ R&D사업화표준연계

○ 향후추진 방향

- R&D 사업화 지원을 위해 과제 기획시 표준선행기술조사·전략연구, R&D 표준 성과에 대한 전담 관리·유통 등 R&D 전주기 표준연계 지원

○ 세부추진 계획

- R&D-표준 연계과제를 통해 표준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표기력사업으로 후속 지원하고 성과전담기관을 통해 표준성과를 관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상위평가 결과('18) : 우수

12) 부처 건의사항

- WTO/TBT 협정에 따라,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추가적인 기술기준 제정을 금지하고 국제표준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 개척에 국제표준이 필수 요소로 작용
 - 국제표준에 반영되지 못한 제품·기술은 시장 지배력을 상실하여 퇴출될 확률이 매우 높아, 신산업 제품·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하여 선제적 대응 필요
 -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센서, 빅데이터 처리 등 수많은 요소가 필요하고, 표준은 데이터 형식, 공유방식 등의 인터페이스 룰을 제공하여 데이터 활용 촉진을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요소임
 - 최근 탄소중립, 서비스 등 신수요 분야 국제표준개발 및 국제표준화 대응 협의체 운영 등 기반조성을 위해 적극지원 필요
- 표준화 추진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예산 확보,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 표준은 즉각적 이익을 계량화 할 수 없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미래 투자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49,278	-	49,278	-	-	-	49,278	49,278	100	100	-	-
2019	47,879	-	47,879	-	-	-	47,879	47,879	100	100	-	-
2020	56,664	1,800	58,464	-	-	-	58,464	58,464	100	100	-	-
2021	62,235	-	62,235	-	-	-	62,235	62,235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49,278	49,278	49,278	49,278	-	49,278	49,278	-	-	100
2019	47,879	47,879	47,879	47,879	-	47,879	47,879	-	-	100
2020	56,664	58,464	58,464	58,464	-	58,464	58,464	-	-	100
2021. 12월기준	62,235	62,235	62,235	62,235	-	62,235	62,235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 해당없음
2019	- 해당없음
2020	-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18억 증액 (국가표준기술력향상 30억 증액,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12억 감액)
2021	- 해당없음

☐ 2021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1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참고자료 별도 첨부

1.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07 ~ '24)

□ 사업개요

사업기간	'07 ~ '24(일몰관리혁신)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김영국 연구관(☎ 043-870-5346)		

□ 사업내용

-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ISO/IEC) 개발 및 국제표준 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인력양성,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기반조성 추진

□ 사업 필요성

- 국내 유일의 산업 전 분야 국제표준(ISO/IEC) 개발을 위한 범부처 지원 사업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제표준 제안의 60% 이상 차지
- * WTO/TBT 협정에 따라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추가적인 기술기준 제정을 금지하고 가급적 국제표준을 사용토록 하고 있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사업추진 필요

< 표준화 사례 >

- 우리나라 청소환경 및 제품특성을 반영한 가정용 청소로봇 성능 측정방법이 국제표준화가 되어 국내기업(삼성, LG, 유진로봇 등) 세계시장 점유율은 '09년 9.8% → '15년 18.6%로 증가
-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 제공, 선진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융복합 기술의 상호운용성 도구로써 국제표준 중요성 증대
- 자율차·반도체·AI 등 4차 산업 융복합 기술('23년 300종), K-방역모델, 소·부·장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필요
- *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6),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경제중대본, '20.6), 소부장 2.0 전략('20.7)
- 탄소중립(탄소배출량 측정방법, 저탄소기술 시험방법), 서비스(유통, 공공 안전) 등 新수요 분야 국제표준 개발 필요
-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과기장관회의, '21.3),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경제중대본, '21.4)

□ 사업성과

- 국제표준 선점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영향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시장 수출 경쟁력 확보

- 국제표준 선점 대표사례

- **(표준특허)** 헤드폰을 통한 3D 음향 재생기술(국제특허)이 UHDTV 방송 표준인 'MPEG-H 3D 오디오 코덱(ISO/IEC JTC1 23008-3)'으로 채택

* 로알티가 기대, 60억 투자유치 성공

- **(수출확대)** 우리나라 청소환경 및 제품특성을 반영한 '가정용 청소로봇 성능 측정방법'의 국제표준화(IEC 62929)로 수출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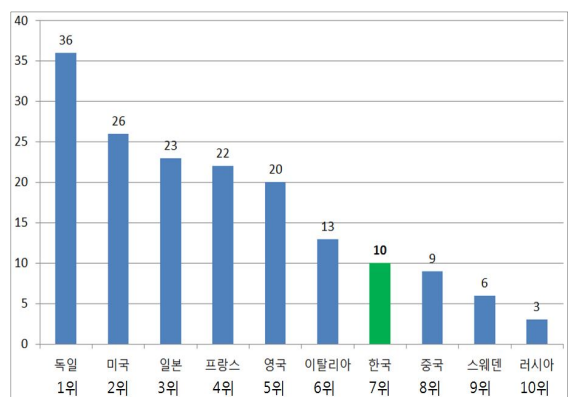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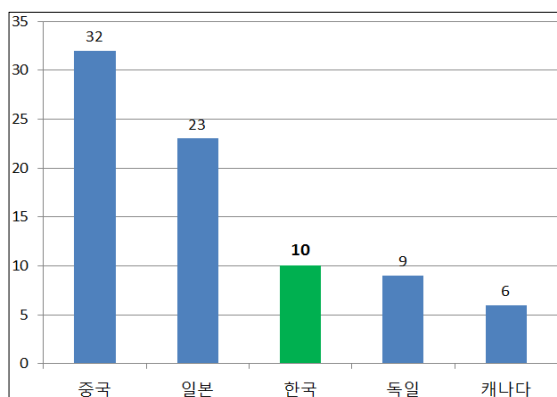
* (로봇청소기 세계시장 점유율) '11년 : 14%(0.8억불) → '15년 : 19%(2.2억불)

- **(산업주도)** 건축용 창호 등의 태양열 투과율 시험방법(ISO 19467) 국제표준화로 일사조절장치 의무화에 따른 시험장비 보급 등 산업주도

* 연간 170억원 경제적 효과('16~'25)

- 국제표준화기구 영향력 확대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 제안 순위 3위, 간사수입 순위 7위('18)



- 신성장동력 및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분야 국제표준화 주도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IEC TC 신설 및 간사국 수입('17년)
- ISO 내 팬데믹 대응 WG 신설 및 컨비너 수입('20년)
-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을 위한 유전자 증폭방식 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ISO 17822) 제정('20.12.2)

- 주요 국제표준 제정 우수사례

분야	표준명 (표준번호/발간연도)	주요 표준내용	제안기관 (제안자)
반도체	이식형·패치형 헬스케어용 반도체 센서의 표준화 연구개발 (IEC 60747-18-1 / 2019)	바이오·의료분야에서 현미경을 대체하여 렌즈없이 세포·혈구 등의 계수가 가능한 반도체 센서의 평가 방식에 대한 표준	(주)솔 (이종묵 대표)
보일러	열펌프 보일러·성능시험평가 (ISO 19967-1~2 / 2019)	기존의 보일러 시장을 대체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공기열원 열펌프 보일러의 성능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최준영 수석연구원)
인쇄 전자	인쇄 박막 트랜지스터의 채널 특성 측정 방법 (IEC 62899-503 / 2020)	전자제품 제조시 필수적인 부품이면서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쇄 박막트랜지스터(인쇄 TFT)의 성능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	한국플렉시블일렉 트로닉스산업협회 (정안정 사무국장)
	절연 기판상에 인쇄된 전도성 레이어의 기계적 굽힘 시험법 (IEC 62899-202-5 / 2018)	폴더블 스마트폰, 롤러블 TV 등에 적용되는 기초 소재·부품의 기계적 안정성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	안동대학교 (김병준 교수)
IoT	수중센서네트워크 - 개요 및 요구사항 (ISO/IEC 30140-1 / 2018)	국방, 수중플랜트, 항만 등의 분야에 활용 가능한 한국 주도의 세계최초 수중 IoT 및 통신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한 표준	국민대학교 (박수현 교수)
	미디어중심의 사물인터넷 - API 연구 및 통신 / 미디어 데이터포맷과 API (ISO/IEC 23093-2~3 / 2019)	웨어러블 기기(스마트글래스)를 활용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사물인터넷 기기간 인터페이스 표준	(주)인시그널 (천승문 소장)
보청기	보청기 적합관리 (ISO 21388 / 2020)	보청기 관련 시설, 장비, 교육, 윤리지침부터 사후관리 에 이르는 적합관리(서비스 기준) 방법과 절차에 대한 표준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이정학 교수)
선박	전기 히트 트레이싱 핸드레일 성능 절차 (ISO 22419 / 2019)	선박의 해양사고방지 및 안전보장을 위한 빙해선박용 결빙방지 핸드레일의 발열 성능 측정 관련 표준	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 (오수연 선임연구원)
철도	철도차량 재활용 및 회수 가능율 산정방법 (ISO 21106 / 2019)	철도차량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재활용 부품 산업 창출을 위한 재활용 및 회수 가능율 산정 방법 표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철규 책임연구원)
한방	무연뜸 기구의 일반요구사항 (ISO 21366 / 2019)	주요 한방 치료법인 뜸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무연뜸의 성능과 안전성 보장 관련 시험평가 기준에 대한 표준	원광대학교 (권오상 교수)
베어링	무윤활 스러스트 에어포일 베어링 성능평가 (ISO 22423 / 2019)	산업용 압축기, 항공기,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등의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무윤활 에어포일 베어링의 성능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충현 선임연구원)
체외 진단	체외진단 시험시스템·미생물 병원체의 검출과 동정을 위한 핵산 증폭 기반 검사-시험기관 품질관리 실행 지침 (ISO 17822 / 2020)	감염병 진단의 소요기간 단축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한 분자유전학적 검사방법 및 절차에 대한 포괄적 기준 관련 표준	바이오메듀스 (박애자 대표)

2.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 · 보급('11 ~ '24)

□ 사업개요

사업기간	'11 ~ '24(일물관리혁신)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표준과학연구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전종윤 연구관(☎ 043-870-5341)		

□ 사업내용

- **(참조표준 개발)** 산업 · 연구 · 공공 영역에서 활용가치가 높고, 사업화 연계가 가능한 **고품질 표준데이터(참조표준)**를 개발
 - * 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 또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참조표준 데이터센터를 지정하여 표준데이터 개발**(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 **(참조표준 활용)** 既 개발된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新제품 · 서비스 등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

< 참조표준 개발 및 활용 사례 >

- (주)제이엘케이인스펙션은 한국인 뇌 MR 영상'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뇌경색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여 지난해 4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19년에는 코스닥 상장
- KAIST는 '자동차 고속 인장 물성' 참조표준을 개발하여 차량 충돌 시험 시뮬레이션에 활용하여 6천만원 정도의 차량충돌 시험비용을 회당 30만원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옴

□ 사업 필요성

- 바이오,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정확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고품질 표준데이터를 개발 필요**
 - *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빅데이터 획득을 위한 장치 구축 등 기반마련에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과 전문인력이 필요
 -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정책 이행을 위해 **소재,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유망분야 신규 데이터센터 발굴 및 활용화사업 지속지원 필요**
 - * 데이터센터 지정 목표 : (~'21년) 50호 → ('22년) 70호 → ('23년) 100호

참고

참조표준 데이터센터 현황

No.	소속기관	분야	데이터센터	지정	폐지
1	국가핵융합연구소	물리	플라즈마물성	'06. 12.	
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재료	금속소재 역학특성	'06. 12.	
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재료	열물성	'06. 12.	11.12.
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보건·의료	심뇌혈관	'06. 12.	21.02.
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과학	유전체 생명정보	'06. 12.	17.01.
6	고려대학교	화학공정	유기화합물 열역학물성	'07. 12.	
7	한국원자력연구원	에너지·자원	핵연료재료	'08. 12.	
8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재료	철강소재 미세조직	'08. 12.	
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보건·의료	인체치수	'08. 12.	
10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보건·의료	순환계혈역학	'08. 12.	16.01.
11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항공천문해양	천문역법	'09. 01.	21.02.
12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기타	화강석	'09. 01.	12.04.
1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물리	식각공정물성	'09. 12.	17.01.
1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계	중력가속도	'09. 12.	
15	한양대학교	재료	섬유고분자재료 역학물성	09. 12.	15.01.
16	한국원자력연구원	에너지·자원	원자력 구조재료 역학물성	'09. 12.	
17	강원대학교	자원	비금속산업광물	'09. 12.	11.07.
18	계룡연구재단	생명과학	표준계놈	'10. 12.	
1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10. 12.	
20	KAIST	재료	고속물성	'10. 12.	
21	동국대학교병원	보건·의료	한국인 뇌MR 영상	'10. 12.	
22	서울대학교	보건·의료	한국인 뇌파	'11. 12.	
23	충남대학교병원	보건·의료	한국인관절가동범위	'12. 12.	
24	서울대학교병원	보건·의료	한국인표준유발전위	'12. 12.	18.02.
25	한국인삼공사	농림·수산	한국 인삼 사포닌	'14. 01.	21.02.
26	한국수자원공사	환경	수질	'14. 01.	
27	중앙대학교병원	보건·의료	한국인체성분	'14. 01.	
28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	한국인 건강지수	'15. 01.	
29	경희의료원	보건·의료	혈류	'15. 01.	
3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항공	항공우주복합소재	'15. 01.	17.01.
31	서울대학교병원	보건·의료	한국인 표준신경전도	'16. 01.	
32	일산병원	보건·의료	한국인 체열	'16. 01.	
33	연세대학교 의료원	보건·의료	영상기반 한국인 심장구조	'16. 11.	
34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재료	전자에너지손실	'16. 11.	

3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환경	환경방사능	'16. 11.	
36	연세의료원	보건·의료	한국인 호흡기능	'18. 02.	
37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오창)	에너지·자원	건축구성재 단열성능	'18. 02.	21.02.
38	한국세라믹기술원	재료	융복합 세라믹소재	'18. 02.	
3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환경	한국전과정(발자국)	'18. 02.	20.01.
4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기·전자	전자파 물질상수	'18. 02.	
4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건·의료	한국인 인체동작분석	'19. 01.	
42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보건·의료	한국인 청각	'19. 01.	
4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재료	화학증착소재물성	'19. 01.	
44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보건·의료	한국인 내분비 호르몬	'20. 01.	
45	한국수자원공사	환경	수문	'20. 01.	
46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림·수산	채소 생육	'20. 01.	
47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수산	국가식품성분	'21. 02.	
48	경희의료원	보건·의료	맥진	'21. 08.	
49	대구보건대학교	보건·의료	한국인 균형능력	'21. 08.	
50	다이텍연구원	재료	섬유소재	'21. 08.	
5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재료	금속소재	후보	
5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재료	나노소재	후보	
53	한밭대학교	보건·의료	미각	후보	
54	연세의료원	보건·의료	뇌심부	후보	
55	석유관리원	환경	석유관리	후보	
56	지역난방공사	환경	열지도	후보	
57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수산	형질	후보	
58	한의학연구원	보건·의료	약재 성분	후보	
59	한의학연구원	보건·의료	생체신호	후보	
60	충남대학교	농림·수산	식물 생체신호	후보	
61	KIST	재료	천연물 물성	후보	
62	재활의학연구센터	보건·의료	장애진단	후보	
63	서울대	재료	복합소재 물성	후보	
64	재료연구원	재료	금속소재은행	후보	
6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	LCI	후보	
66	국민대	보건·의료	한국인 체력	후보	
67	국립환경과학원	환경	환경 감시	후보	

○ 고품질 데이터를 통한 기존 산업 고도화 및 新 데이터산업 창출

— <참조표준데이터 활용 사업화 사례> —

- ① ‘플라즈마 물성’ 참조표준 기술이전(‘11)으로 (주)경원테크는 해외 제품에 의존해 온 반도체 공정해석 핵심기술의 국산화에 성공(‘13)
 - * 경원테크, 두뇌역량우수기업 선정(‘16, 산업부)
 - * ‘K-Speed’ 개발, 누적 매출액 12억원(‘16)
- ② ‘한국인 뇌 MR 영상’ 참조표준 기술이전(‘17), 참조표준 기반 뇌혈관질환 진단 및 예측용 의료기기 개발(‘18)
 - * JLK 인스펙션, 인공지능 뇌경색 분석 솔루션 등 유럽 CE의료기기 인증 7건(‘19)
 - * JLK 인스펙션, AI 뇌 노화 측정 솔루션 등 4건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19)
 - * JLK 인스펙션, 5개 벤처캐피탈로부터 200억 투자유치 및 기술특례 상장예비심사통과 및 코스닥 상장(‘19)
- ③ ‘한국인 뇌파’ 참조표준 기술이전으로 (주)아이메디신은 뇌파 자동분석 솔루션 플랫폼 iSyncBrain[®] 개발(‘18)
 - 뇌파 참조표준을 이용한 경도인지장애(치매 前 단계) 확률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허가(‘18)
 - * 치매예방 뇌파분석 솔루션 임상 성공(‘19.10)
- ④ ‘기상데이터’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신재생에너지 종합평가 솔루션’ 개발(‘19)
 - * 기상데이터 참조표준을 사용가능한 형태로 가공해주는 웹변환 서비스 개발(‘20년 운영 예정)하여 사업화 추진
- ⑤ ‘천문학’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주)라스테크는 태양광 추적 제어기 및 관제시스템 개발(‘19)
 - 태양광 발전효율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으로 태양광 추적제어
 - * 경기도 화성 먹우 태양광 발전소, 발전용량 2MW급 적용 약 10% 효율 향상
 - * 남양호, 새만금 등 발전소에 기술연계 2.5억원이상 매출 예정(‘20)

3.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 ~ '24(일몰관리혁신)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기업/대학/연구소/표준물질생산기관 등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전종윤 연구관(☎ 043-870-5341)		

□ 사업내용(지원내용)

- (상용표준물질 개발) 시제품 제작, 균질성·안전성평가 등을 통한 인증평가를 실시하여 상용표준물질을 개발

* 표준물질 : 개발된 소재를 분석(성분 등) 하는 '분석기기 및 분석방법'의 교정 및 개발된 소재의 완성도를 평가·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기준물질

- (상용표준물질 활용·보급) 개발된 상용표준물질의 활용·보급이 가능하도록 평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표준물질등록센터 등록 등

□ 추진사업

- 소재·부품·장비 개발 등에 필요한 표준물질 개발을 위해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대상으로 사업지원

< 전략적 개발대상 표준물질 예시 >

분류	No	표준물질	용도
화학 조성	1	불화수소 등 표준가스	반도체 공정
	2	고순도 실리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3	이산화티타늄	적층세라믹콘덴서 유도체 소재
	4	미세파티클	클린룸 미세먼지 측정 장비
	5	니켈합금강	항공우주·디스플레이 첨단 소재
물리적 특성	6	티탄산바륨	적층세라믹 콘덴서 전·자기 특성
	7	박막측정	반도체 웨이퍼 소재
	8	열확산도	반도체 패키징 방열 소재
공학적 특성	9	충격	철강 소재 물성측정 장비
	10	지르코니아	첨단세라믹산업용 희토류 소재

* 정책적 개발 품목 선정기준 :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상, 첨단기술 등

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 관련(1, 2, 4, 5, 7, 8)

② 철강·군수산업 관련(9)

③ 첨단세라믹 관련(3, 6, 10)

- 해외의존도 해소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30품목 표준물질 개발

< 30품목 표준물질 개발 대상 선정기준 >

- ①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대응 관련 표준물질
- ② 해외의존도 해소를 위한 표준물질 국산화 추진
- ③ 미래기술선점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표준물질
- ④ 소재·부품개발기업, 적합성평가기관 등의 수요가 큰 표준물질

○ 표준물질 산업 생태계 조성

- (연계사업 발굴) 수요기관과 생산기관 매칭, 표준물질 시장분성 정보제공
- (활용지원 사업) 시험능력평가 프로그램 개발, 표준물질 보급 및 활용 컨설팅

○ 표준물질 적합성 검증 지원

- (표준물질 개발기술 컨설팅) 최신기술 세미나 및 교육, 기술이전
- (소급성확보) 국제 소급체계 유지 및 보급, COMAR 등 표준물질 국제기구 활동

4.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21신규)

□ 사업개요

사업기간	'21 ~ '24(종료)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이동진 연구사(☎ 043-870-5342)		

□ 사업내용

- 데이터 간 결합·교환에 필요한 KS 표준을 개발하고, 데이터 대상 상호 운용성 수준진단 및 데이터를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의 개발을 촉진

□ 추진사업

- 데이터의 결합·교환을 통해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표준제정 및 상호운용성 실증 등을 위해 기업·연구기관·협회 등을 대상으로 사업지원
 - (표준제정) 상호운용성 확보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기존 KS 분석, 보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 대상 선정 및 표준 개발
 - * 원활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시스템 별로 상이한 데이터 형식, 공통요구사항 등을 데이터 관련 이해관계자(산·학·연·관)와 합의
 - (상호운용성 실증) 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 또는 제품·서비스의 상호운용성 수준을 진단하여 기업 활동 지원
 - * 기업이 활용할 데이터 또는 출시할 제품·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표준을 기반으로 출시 전 단계에서 확인하여 상용화 가능성 제고 및 출시시기 단축

<데이터표준 및 실증 추진>

자율주행차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표준) 위도, 경도, 고도 등 위치데이터, 브레이크압력, 가속도 등 차량데이터, 교차로, 신호정보 등의 교통데이터 표현형식(format) 표준화 ○ (상호운용성 실증) 실증단지·센터 간 데이터 연계방안 및 지역 간 호환성 확보전략 수립, 자율주행차 데이터 호환성 실증
스마트제조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표준) 스마트팩토리 내 센서 간, 센서-솔루션 간, 솔루션 간(MES ↔ERP↔PLM↔SCM), 밸류체인 간 데이터 교환 KS 개발 ○ (상호운용성 실증) 스마트 제조 관련 산업현장 기반 실증 방안 수립, 솔루션 간 상호운용성 교차검증

- (성과관리)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실증체계 확산 및 보급

< 중장기 로드맵 개발 및 성과확산 >

- ① 표준·실증체계 중장기 운영방안 마련
 - 산업분야별 표준·실증체계 중장기 운영 로드맵 개발
 - 해외 표준-실증연계 현황분석 및 도입방안, 타 사업과의 협력방안
- ② 산업데이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마련
 - 산업·기술별 생성되는 데이터의 Silo化화 방지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한 방안 개발
- ③ 데이터 관련 기존 KS 분석 및 정비
 - 산업·기술·용도·속성별 분류 및 현황분석, 유사·중복 데이터 표준 정비 방안 마련
- ④ 분야별 표준·실증 결과 저장·확산을 위한 플랫폼(홈페이지) 구축

5. R&D사업화표준연계('22신규)

□ 사업개요

사업기간	'22 ~ '26(종료)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김영국 연구관(☎ 043-870-5346)		

□ 사업내용(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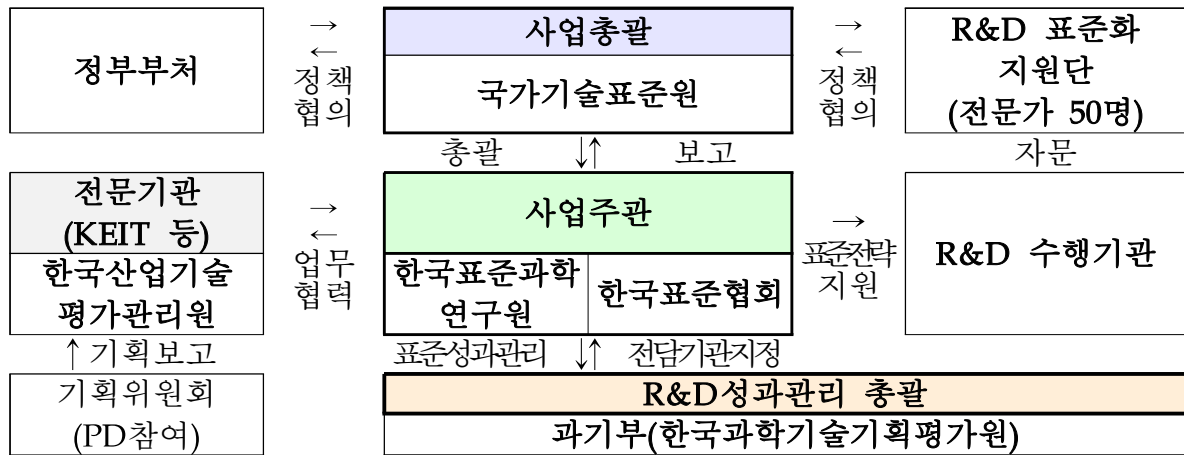
- R&D 사업화 지원을 위해 과제 기획·평가시 표준선행기술조사·전략연구, R&D 표준성과에 대한 전담 관리·유통 등 R&D 전주기 표준연계 지원
- (표준화전략연구) 분야별 표준개발 현황 등 표준선행기술조사 및 표준 전략연구, 전문가 교육, R&D-표준연계 가이드 개발
- (표준성과관리) 표준성과 수집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표준성과 유효성 검증 등 표준성과전담기관(KSA, KRISS) 지원

□ 사업의 시급성

- R&D 개발시 국가·국제표준(ISO/IEC/KS 4만여종)을 활용하고 표준화가 필요한 R&D를 조기에 발굴하여 표준선행기술조사 필요
- 과제별로 비 전문가가 표준선행기술조사 수행시 조사의 일관성이 없고 품질저하로 실질적인 R&D 방향수립에 한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 시행('21.1)에 따라 표준성과 등록 및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 운영을 위해 예산지원 시급
- 미 지원시 ISO/IEC, 산업표준, 참조표준 등 산업부 소관 표준성과의 등록 및 관리·유통 전담기관(KSA, KRISS) 운영 불가

□ 사업추진방법

○ 사업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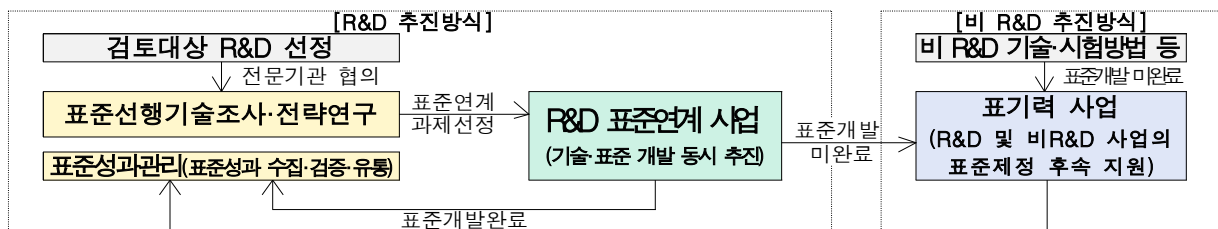


○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 ◆ (총괄기관) 정부부처 업무 협의 및 사업 총괄 관리
- ◆ (주관기관) 표준협회는 표준동향조사·표준전략수립 지원 및 표준성과관리(ISO/IEC, KS)를 수행하며 표준과학연구원은 표준성과관리(참조표준) 업무만 수행
- ◆ (수행기관) 표준동향조사 및 표준전략을 바탕으로 기술·표준 개발 동시 추진
- ◆ (전문기관) 사업기획·평가 등 추진
- ◆ (과기부) R&D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성과관리 총괄

○ 추진방식

- R&D 전문기관(산기평, 예기평) 등과 협의를 통해 탄소중립 등 대규모 R&D가 추진중이고 사회적 이슈가 큰 분야를 선정
- 표준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고 표준연계가 필요한 R&D 과제에 대해서는 표준전략연구를 통해 표준화 방안을 지원
- R&D-표준 연계과제를 통해 표준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표기력사업으로 후속 지원하고 성과전담기관을 통해 표준성과를 관리



사 업 명						
(6)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37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1	국가기술표준원	0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 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6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100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적합성평가과	남 하 욱 043-870-5490	조 춘 강 043-870-5498	김 선 규 043-870-5474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국제적합성평가 기반구축	2,946	4,134	4,134	2,009	2,009	△ 2,125	△ 51.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088	3,088	2,946 [2,946.43]	-	142	4,134	4,134	4,134	4,021 [4,021]	-	113	2,009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62	762	729 [728.954]	-	33	762	762	762	762 [762]	-	-	804
· 적합성평가체계 국제동등성 유지	792	792	689 [689.326]	-	103	884.4	884.4	884.4	771.4 [771.4]	-	113	905
· 국가인정체계 운영 지원*	397	397	397 [397]	-	-	585	585	585	585 [585]	-	-	300
· 시험 인증 서비스 산업화지원	1,137	1,137	1,131 [1,131.16]	-	6	1,902.6	1,902.6	1,902.6	1,902.6 [1,902.6]	-	-	-
○ 비목별 분류(합계)	3,088	3,088	2,946 [2,946.43]	-	142	4,134	4,134	4,134	4021 [4,021]	-	113	2,009
· 일반수용비(210-01)	326.9	326.9	289 [289.01]	-	38	327	327	327	327 [327]	-	-	347.5
· 임차료(210-07)	42	42	6 [6.215]	-	36	42	42	42	0 [0]	-	42	47
· 재료비(210-11)	14	14	14 [14]	-	-	14	14	14	14 [14]	-	-	14
· 국내여비(220-01)	8	8	8 [7.964]	-	-	7.6	7.6	7.6	7.6 [7.6]	-	-	7
· 국외여비(220-02)	79	79	48 [48]	-	31	71	71	71	0 [0]	-	71	66
· 사업추진비(240-01)	14.1	14.1	14.1 [14.091]	-	-	12.5	12.5	12.5	12.5 [12.5]	-	-	12.5
· 일반연구비(260-01)	1,091	1,091	1,054 [1,054.15]	-	37	1,193	1,193	1,193	1,193 [1,193]	-	-	1,215
· 민간경상보조(320-01)	397	397	397 [397]	-	-	585	585	585	585 [585]	-	-	300
· 사업출연금(350-02)	1,116	1,116	1,116 [1,116]	-	-	1,787	1,787	1,787	1,787 [1,787]	-	-	-
· 연구개발 기획평가 관리비(360-06)	-	-	-	-	-	95	95	95	95 [95]	-	-	-

* 내역사업명 변경: (기존) 국제시험인증제도기반구축 → (변경) 국가인정체계 운영 지원

- (사유) 기존 내역사업 '국제시험인증제도기반구축'은 내내역사업 '①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및 '②국가인정체계운영지원'으로 구분되었으나, ①번 내내역사업은 타 세부사업으로 분리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내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시험, 인증 등 성적서의 국제 통용성 확보를 통한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인정기구(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와 국제기구(ILAC, IAF)와의 상호인정협정(MRA) 유지, 숙련도시험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을 추진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내 공인기관(시험, 교정 및 메디컬시험 기관)의 업무 수행도를 국제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내 공인기관의 성적서가 국제적으로 상호인정되도록 주기적인 시험측정능력을 확인하는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 * 숙련도시험: 시험기관 간 비교로 시험기관 참가자의 시험측정능력을 비교·평가하는 것
 - (적합성평가체계 국제동등성 유지) 주요 수출대상국과의 시험 성적서 상호 인정을 위해 국제상호인정협정(MRA) 지위를 확보·유지하기 위한 기반 구축
 -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각국의 인정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 이를 위해 국제기구로부터 2년 주기로 동등성평가를 수검
 - (국가인정체계 운영 지원*) 공인시험·인증제도의 공신력 확보와 한국인정기구의 공인기관(시험, 교정 등) 인정·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기관 민간보조
 - * 내역사업명 변경: (기존) 국제시험인증제도기반구축 → (변경) 국가인정체계 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국가표준기본법>

-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시험·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9. 그 밖에 체제 인증 등 신규 인증제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① 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촉진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0 표준시리즈)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① 정부는 국내 인정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 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公正慣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①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초정밀 측정, 시험, 검사,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 그 밖에 적합성평가 개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인정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공인기관의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공인기관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인기관 인정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
- ③ 인정기구는 법률과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④ 그 밖에 인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인정기구의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 ①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설비, 기술 요건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 제3항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한 자를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 신청절차, 인정요건,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은 제7조 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관계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제협력)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적합성평가기관 등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기술 교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제도의 동향 및 적합성평가 수요조사
2.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비한 적합성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
3. 적합성평가에 관한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4. 적합성평가에 관한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5.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물질, 시험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계획
2.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고도화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자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92. 12월 :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설립
- '98. 6월 : APLAC-MRA 체결(시험 분야)
- '00. 8월 : APLAC-MRA 체결(교정 분야)
- '00. 11월 : ILAC-MRA 체결(시험 분야)
- '01. 2월 : 제품인증기관 인정기구(KAS) 운영체계 도입
- '01. 2월 : PAC 정회원 가입(제품인증 분야)
- '01. 5월 : ILAC-MRA 체결(교정 분야)
- '02. 3월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2. 9월 : IAF 정회원 가입(제품인증 분야)
- '04. 4월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4. 5월 : 권역별 종합교정기관 육성대책 수립(장관 보고)
- '04. 10월 : APL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분야)
- '07. 4월 : 한국인정기구(KOLAS)로 개칭
- '07. 10월 : PAC-MLA(IAF-MLA) 체결(제품인증 분야)
- '08. 10월 : APL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분야)
- '10. 7월 : PAC-MLA 갱신평가 수검(제품인증 분야)
- '12. 5월 : 국가단일인정체계 구축방안 마련
- '12. 6월 : APL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분야)
- '14. 8월 : PAC-MLA 갱신평가 수검(제품인증 분야)
- '16. 6월 : APL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분야) 및 MRA 확대(메디컬 분야)
- '18. 5월 : PAC-MLA 갱신평가 수검(제품인증 분야)
- '18. 9월 : KOLAS 공인기관 전환(ISO/IEC 17025:2017) 계획 수립 및 시행('19. 4월)
- '20. 4월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1. 4월)
- '21. 3월 : APL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및 메디컬 분야)
- '21. 5월 : KOLAS 공인기관 전환 완료
- '22. 8월 : ILAC/IAF-MRA 갱신평가 수검(KOLAS/KAS 통합) 예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직접수행), 한국계량측정협회(민간경상보조)
- 사업 수혜자 : KOLAS(시험, 교정, 검사, 메디컬, 숙련도) 공인기관, KAS(제품인증) 제품인증기관, 소비자, 정부, 공공기관, 연구소, 성적서를 활용·수출하는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제시험 인증제도 기반구축	민간 보조	한국계량 측정협회	300 백만원	100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② 정부는 품질경영 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율 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 를 활용할 수 있다.

3) '22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804백만원

(‘21) 762백만원 → (‘22요구) 804백만원, 42백만원 증액, +5.5%

- (요구) 국내 공인기관 성적서의 국제상호인정을 위해 공인기관은 3년에 1회 분야별 숙련
도시험에 참여해야하나, 전체 분야(226개) 대비 프로그램 개설율(74건, 32.7%)이 저조하
여 지속적인 프로그램 확대 필요, 기존 개발 프로그램 수(25개) 보다 2개 프로그램 추가

- (산출) 일반수용비(210-01) : 숙련도시험 기술위원회 수당 28백만원
= 10명 × 0.143백만원 × 20회

재료비(210-11) : 표준물질 구입 14백만원 = 2.8백만원 × 5건

국내여비(220-01) : 숙련도시험 평가여비 7백만원 = 0.2백만원 × 35회

일반연구비(260-01) : 숙련도시험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755백만원
= 28백만원 × 27건

○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62 백만원	<p>○ 일반수용비(210-01) : 28백만원</p> <p>- 숙련도시험 기술위원회 수당 28백만원 : 10명 × 0.143백만원 × 20회</p> <p>○ 재료비(210-11) : 14백만원</p> <p>- 표준물질 구입 14백만원 : 2.8백만원 × 5건</p> <p>○ 국내여비(220-01) : 7백만원</p> <p>- 숙련도시험 평가여비 7백만원 : 0.2백만원 × 35회</p> <p>○ 일반연구비(260-01) : 713백만원</p> <p>- 숙련도시험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713백만원 : 28.5백만원 × 25건</p>	804 백만원	<p>○ 일반수용비(210-01) : 28백만원</p> <p>- 숙련도시험 기술위원회 수당 28백만원 : 10명 × 0.143백만원 × 20회</p> <p>○ 재료비(210-11) : 14백만원</p> <p>- 표준물질 구입 14백만원 : 2.8백만원 × 5건</p> <p>○ 국내여비(220-01) : 7백만원</p> <p>- 숙련도시험 평가여비 7백만원 : 0.2백만원 × 35회</p> <p>○ 일반연구비(260-01) : 755백만원</p> <p>- 숙련도시험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755백만원 : 28백만원 × 27건</p>

② 적합성평가체계 국제동등성 유지 : 905백만원

(‘21) 884백만원 → (‘22요구) 905백만원, 21백만원 증액, +2.3%

- (요구) 국제 상호인정협정(MRA) 지위 유지를 위한 2년 주기 국제동등성평가(‘22. 8월 예정) 대응시 소요되는 국제평가반 출장비(30백만원), 평가장소 임차료(20백만원), 동시 통역비(40백만원), KOLAS 인정문서 영문번역 등의 운영비(100백만원) 증액 및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회의 감소(△35백만원), 법률자문 위원회 감소(△20백만원), 연구용역 감소(△100백만원) 등으로 비용 절감
- (산출) 일반수용비(210-01) : 인정위원회 수당 150백만원 = 10명 × 0.15백만원 × 100회
 법률자문 및 위원회 개최 129.5백만원 = 129.5백만원 × 1회
 국제동등성평가 통역비 40백만원 = 5명 × 1.33백만원 × 6일
 국제동등성평가 운영비 100백만원 = 1.28백만원 × 78건
 임차료(210-07) : 국제동등성평가 수검장 임차 20백만원 = 20백만원 × 1건
 세계인정의 날 및 평가사 워크숍 개최장 임차 27백만원
 = 5.4백만원 × 5회
 국외여비(220-02) : 국제동등성평가 수검 평가반 여비 30백만원 = 5명 × 6백만원
 국제회의 참석 36백만원 = 3명 × 3백만원 × 4회
 사업추진비(240-01) : 국내 시험인증사업 발전방안 협의 12.5백만원
 = 0.025백만원 × 10개 기관 × 5분야 × 10회
 일반연구비(260-01) : 국제동등성 유지 및 국제기구 개편에 따른 운영기준 정비 360백만원
 = 30백만원 × 12과제

○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84.4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98.9백만원 - 인정위원회 수당 150백만원 : 10명 × 0.15백만원 × 100회 - 법률자문 및 위원회 개최 148.9백만원 : 148.9백만원 × 1회 ○ 임차료(210-07) : 42백만원 - 세계인정의 날 및 평가사 워크숍 개최장 임차 42백만원 = 6백만원 × 7회 ○ 국외여비(220-02) : 71백만원 - 국제회의 참석 71백만원 : 3명 × 2.95백만원 × 8회 ○ 사업추진비(240-01) : 12.5백만원 - 국내 시험인증사업 발전방안 협의 12.5백만원 : 0.025백만원 × 10개 기관 × 5분야 × 10회 ○ 일반연구비(260-01) : 460백만원 - 국제동등성 유지 및 국제기구 개편에 따른 운영기준 정비 360백만원 = 28.75백만원 × 16과제	905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319.5백만원 - 인정위원회 수당 150백만원 : 10명 × 0.15백만원 × 100회 - 법률자문 및 위원회 개최 29.5백만원 : 29.5백만원 × 1회 - 국제동등성평가 통역비 40백만원 : 5명 × 1.33백만원 × 6일 - 국제동등성평가 운영비 100백만원 : 1.28백만원 × 78건 ○ 임차료(210-07) : 47백만원 - 국제동등성평가 수검장 임차 20백만원 : 20백만원 × 1건 - 세계인정의 날 및 평가사 워크숍 개최장 임차 27백만원 = 5.4백만원 × 5회 ○ 국외여비(220-02) : 66백만원 - 국제동등성평가 수검 평가반 여비 30백만원 : 5명 × 6백만원 - 국제회의 참석 36백만원 : 3명 × 3백만원 × 4회 ○ 사업추진비(240-01) : 12.5백만원 - 국내 시험인증사업 발전방안 협의 12.5백만원 : 0.025백만원 × 10개 기관 × 5분야 × 10회 ○ 일반연구비(260-01) : 460백만원 - 국제동등성 유지 및 국제기구 개편에 따른 운영기준 정비 460백만원 = 28.75백만원 × 16과제

③ 국가인정체계 운영 지원 : 300백만원

(‘21) 585백만원 → (‘22요구) 300백만원, 285백만원 감액, △48.7%

- (요구) 최근 5년간 국내 공인기관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5.4%*이며, 공인시험·인증제도의 신뢰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예산을 ‘21년 대비 15백만원 증액(+5.2%)** 및 기존 내역사업이었던 ISO 부실인증 신고센터 운영이 신규 세부사업(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으로 분리(△300백만원)됨으로써 285백만원 감액

* (‘15년) 797개 → (‘16년) 813개 → (‘17년) 868개 → (‘18년) 908개 → (‘19년) 939개 → (‘20년) 984개

** (‘21년) 285백만원 → (‘22년 요구) 300백만원

- (산출) 민간경상보조(320-01) :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300백만원 = 300백만원 × 1건

○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85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585백만원 -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285백만원 : 285백만원 × 1건 - ISO 부실인증 신고센터 운영 300백만원 : 300백만원 × 1건	300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300백만원 -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300백만원 : 300백만원 × 1건 - ISO 부실인증 신고센터 운영 000백만원 : 신규사업으로 분리

④ 시험인증 서비스 산업화 지원 : 000백만원

(‘21) 1,902.6백만원 → (‘22요구) 000백만원, 1,902.6백만원 감액, △100%

- (요구) 신규 세부사업(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으로 분리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숙련도 프로그램 평균 이용 기업수 (단위: 개)	목표	40	40	40	40	40	·사업비 증감과 숙련도 프로그램 최근 3년간 개발건 고려하여 산출	·당해연도 총 숙련도 프로그램 참여기관수 /총 숙련도프로그램 운영건수	·국 가 기 술 표 준 원 내부 통계 및 학술 연구용역 수행 결과 보고서
	실적	43	47	48	-	-			
	달성도	107	118	120	-	-			
숙련도 프로그램 합격률 (단위: %)	목표	78	79	79	79	80	·사업비 증감과 숙련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들의 합격률 감안	·(숙련도프로그램의 합격기관수/숙련도 프로그램 참여 기 관수)×100	·숙련도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및 KCLAS 시스템 자료
	실적	87	80	80	-	-			
	달성도	111	101	10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 의약품 중 보존제(벤조산) 함량 시험 등 25건 •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 메디컬분야(간염진단 등) 숙련도 시험 등 63건 운영 • KAS 운영의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절차, 기준개발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S 운영요령 문서 5종 개정('18.2월, 12월) - 2018년 PAC-MLA 동등성평가 수검완료('18.5월) • 국제기구(ILAC)의 자격기준 강화에 따른 국내 공인시험·교정기관(800여개) 시스템 개편 준비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 : 단열재의 열전도율 숙련도시험 등 25건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시험, 교정, 메디컬 등 분야별 숙련도시험 등 51건 운영 • 新국제기준에 따른 공인기관 운영체계 전환을 위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4회) • KOLAS/KAS 운영의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절차, 기준개발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LAS) 2020년 APLAC-MRA 동등성평가 대응을 위한 KOLAS 품질문서 정비 및 영문화 등 - (KAS) 2018년 PAC-MLA 동등성평가 수검 및 시정조치를 위한 제도정비 등 • 국제기구(ILAC)의 자격기준 강화에 따른 국내 공인시험·교정기관(800여개) 시스템 개편 추진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 슬라임의 유해화학물질 분석 시험 분야 숙련도시험 등 24건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위해우려제품 중 MIT/CMIT 분석 등 시험, 교정, 메디컬 등 분야별 숙련도시험 등 65건 운영 • KOLAS/KAS 운영의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절차, 기준개발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LAC-MRA, PAC-MLA 동등성평가 대응 및 시정조치를 위한 KOLAS/KAS 품질문서 정비 및 영문화 등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 건축 자재의 불연성 시험 분야 숙련도시험 등 26건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배터리팩 내부저항 및 방전성능 분석 등 시험, 교정, 메디컬 등 분야별 숙련도시험 등 68건 운영 • 新국제기준에 따른 국내 KOLAS 공인기관(시험·교정) 운영체계 전환 완료 • 2020년 APLAC-MRA 동등성평가 수검 대응 완료 및 시정조치 완료 • 2022년 APLAC/PAC-MRA 동등성평가 수검을 위한 KOLAS/KAS 통합 추진 • 신규 MRA 스킵 (숙련도시험, 표준물질생산기관, Global G.A.P) 확대 추진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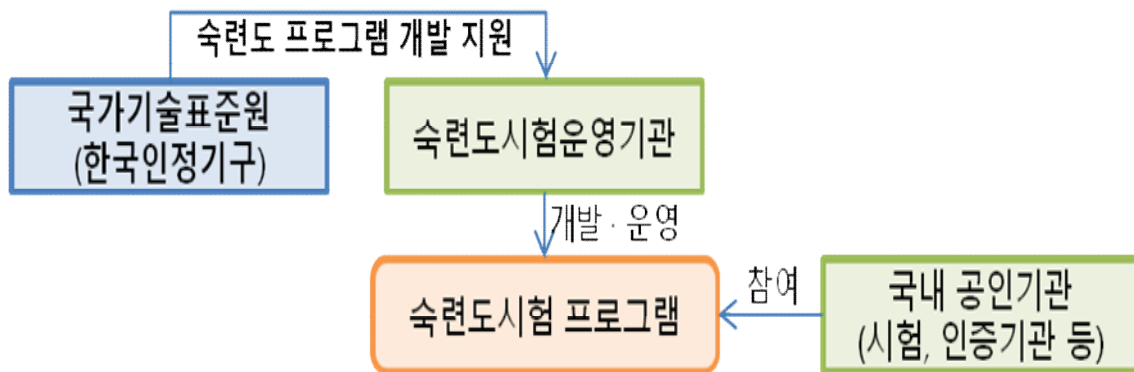
- 국가인정체계 전환 및 한국인정기구의 국제동등성평가 수검 완료로 국제 상호 인정협정(MRA) 효력 유지
 - 국제기구(ILAC)의 新 자격기준에 따른 한국인정기구의 국제동등성평가 수검('21.3월) 및 국내 공인기관의 운영체계 전환('21.5월)이 완료되어 국제 상호인정협정(MRA) 지위 효력 유지
 - * '21.5월까지 新 국제기준 적용이 미완료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는 해외에서 통용 되지 않아, 국내기업 제품의 해외인증 취득 및 수출에 애로 발생, 국내 전환대상 공인기관(812개)은 모두 전환이 완료되어 시험성적서의 국제통용성 유지
- 국제기구 인정분야(ILAC-MRA)에 숙련도시험이 추가('19.10월)됨으로써, 메디컬,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新수요 분야의 국내 공인기관의 시험능력 제고
- 국내 공인기관의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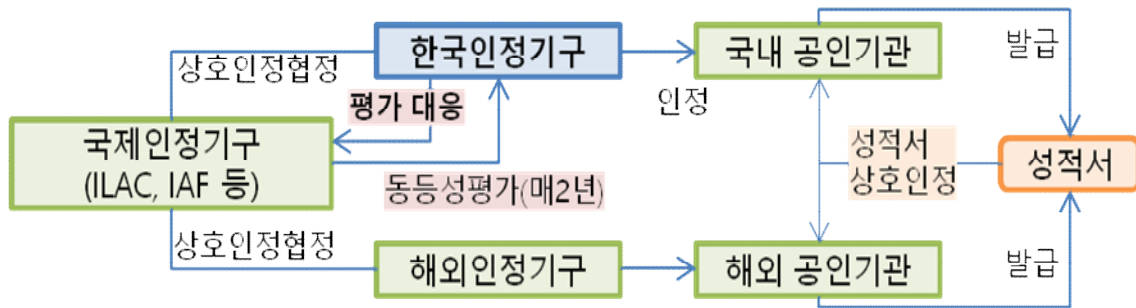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①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직접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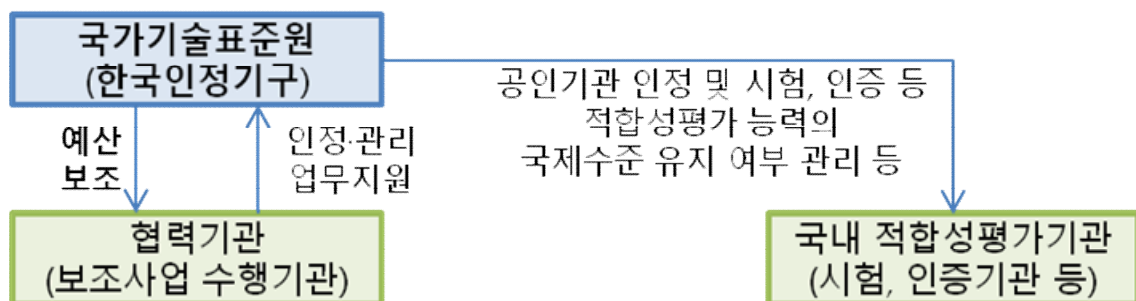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조사/분석	산업부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 교정 등 적합성평가 능력, 평가 분야 국내외 규정, 표준 등 기술문서, 숙련도시험 수요 등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
↓		
② 기본계획 수립	산업부	시험평가용 숙련도 시료 개발 및 보급체계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		
③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기관 선정	산업부	숙련도시험(시험능력 비교평가) 프로그램 개발기관 선정 및 개발
↓		
④ 숙련도시험운영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및 참여기관	개발시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비교 숙련도시험 실시(국내·외)
↓		
⑤ 후속조치	참여기관	시험능력 비교평가에 대한 결과보고, 분석 및 시정조치를 통한 적합성평가능력 제고

② 적합성평가체계 국제동등성 유지(직접수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MRA 체결	산업부 및 국제기구	교정, 시험 등 적합성평가 분야에 대한 상호 인정협정 체결 * MRA 체결국은 성적서 등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기준 준수/유지 필요
② 국제평가 수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정기구로서 인정체계 국제수준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2년마다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국제동등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이 없는 경우 MRA 유지

③ 국가인정체계 운영 지원(민간경상보조)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공고	산업부	국가인정체계 운영 지원 보조사업 공고
② 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산업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금 지급
③ 인정체계 운영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	인정업무 및 평가사 등록 업무 지원 - (기관 관리지원) 현장평가 후보군 구성, 평가 일정 조율, 인정위원회 심의자료 검토, 인정서 발송 등 - (평가사 관리 지원) 심의 대상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자격검토 및 등록증 발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3,088	4,134	2,846	2,789	2,761	
'21~'25		4,134	2,009	2,063	2,243	2,22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①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②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③ 자체평가 : 해당없음
- ④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⑤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제기구(ILAC)의 상호인정협정(MRA) 분야에 숙련도시험이 추가됨에 따라, 영국, 독일 등 13개국(135개의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이 MRA 체결
 - 향후, 한국인정기구(KOLAS)의 숙련도시험분야의 MRA 체결을 위해 국내 운영 프로그램 확대 및 정교화 필요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21.4.8.)됨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의 부실 성적서 방지 등 국내 공인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특별사후관리 운영
 - 최근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KOLAS 공인기관의 성적서에 대한 확인 요청이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인정기구의 단일화 결의(ILAC/IAF, '19.10.29.)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의 KOLAS/KAS 통합 추진 및 '22년 국제동등성평가지 통합 시스템에 대한 평가 예정('22.8월)
- 시험·검사, 제품인증 등 국가인정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인증제도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험·인증분야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
- 新분야에 대한 국제 상호인정협정(MRA) 스킴 확대와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lobal G.A.P, 생물자원은행(Biobanking) 등 스킴 도입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① '19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최종의견 및 점수) 우수(84.6)
- (결과 요약)
 - 외부지적에 대한 충실한조치 및 집행률 제고 노력 인정
 - 성과목표의 적극성 인정
 - 세계표준화기구 수상 실적이 인정되어 사업목표에 대응하는 성과를 거둠

② '20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69.2)
- (결과 요약)
 -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국제동등성평가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 대응 인정
 - 전체사업에 대한 상반기 집행률 미흡
 - 예산절감 노력 필요

③ '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최종의견 및 점수) 우수(82.2)
- (결과 요약)
 - 국가 내 유일한 인정기구로서 사업 지원 필요성 인정
 - 보조사업의 사업방식 변경(세부사업화)을 통한 추진 필요

12) 부처 건의사항

- 한국인정기구는 직접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해왔으나, 개정된 국제기준*에 따라 숙련도 프로그램을 직접운영 방식(일반연구비, 260-01)에서 전문기관 출연방식(사업출연금, 350-02)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비목 변경 필요(참고3 참조)

* ISO/IEC 17011(인정기구의 요구사항) 4.4.11항, 인정기구는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경영시스템인증, 자격인증, 숙련도시험 제공 등)를 제공하거나 제안하여서는 안된다.

** ISO/IEC 17011은 적합성평가체계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을 위해 인정기구가 지켜야 할 국제기준이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협정이 결렬될 수 있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2,309	2,309	2,309	-	-	-	2,309	2,302.4	99.7	99.7	-	6.6
2019	2,551	2,551	2,551	-	-	-	2,551	2,537.9	99.5	99.5	-	13.1
2020	3,088	3,088	3,088	-	-	-	3,088	2,897.4	93.8	93.8	49	141.6
2021	4,134	4,134	4,134	49	-	-	4,183	4,070	98.5	97.3	-	11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790	790	790	790	-	790	790	-	-	100
2019	1,068	1,068	1,068	1,068	-	1,068	1,068	-	-	100
2020	1,513	1,513	1,513	1,513	-	1,513	1,513	-	-	100
2021.12월	2,372	2,372	2,372	2,372	-	2,372	2,372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 (불용) 집행잔액 6.6백만원(업무용역 수행후 정산에 따른 불용)
2019	- (불용) 집행잔액 13.1백만원(업무용역 수행후 정산에 따른 불용)
2020	- (불용) 집행잔액 141.6백만원(업무용역 정산잔액 및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동등성평가가 원 격평가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비용(평가반 국외출장비, 임차료 등) 절감 - (이월) 다음연도 49백만원 이월(코로나 19로 인한 국제동등성평가 연기('20.6월 → '21.3월) 로 통역비(40백만원) 및 운영비(9백만원) 이월(집행 완료, '21.4월))
2021	- (불용) 집행잔액 113백만원(코로나 19로 인해 국제회의의 비대면 원격화로 국외여비 절감 및 밀집도 최소화 지침에 따른 선입평가사 워크숍 미개최)

☐ 2021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1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인정제도」 개요

1. 국내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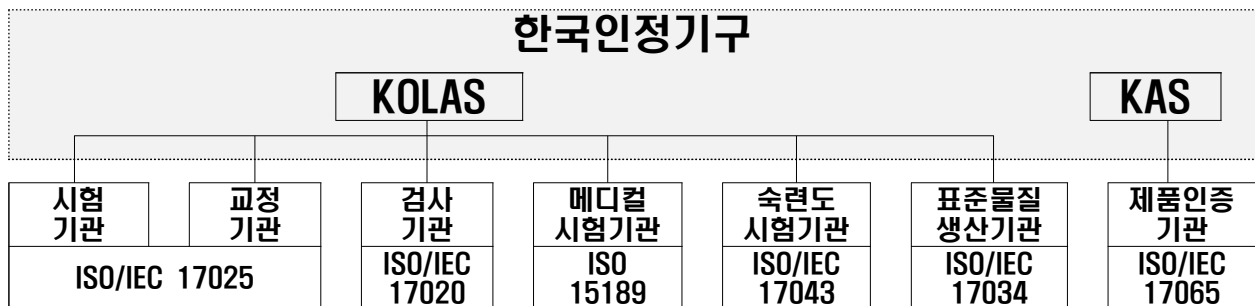
□ 한국인정기구

- KOLAS와 KAS로 구분되며 KOLAS는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숙련도시험운영, 메디컬시험 분야를, KAS 제품인증기관 인정업무 수행

*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한국제품인증인정기구(Korea Accreditation System, KAS)

- KOLAS 및 KAS는 각각 '92년, '01년 설립되어 1,050개 공인기관('21. 11월 기준)을 관리하며 ILAC/IAF 내 한국 대표기관으로 활동

* 국제인정기구(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LAC)
국제인정포럼(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I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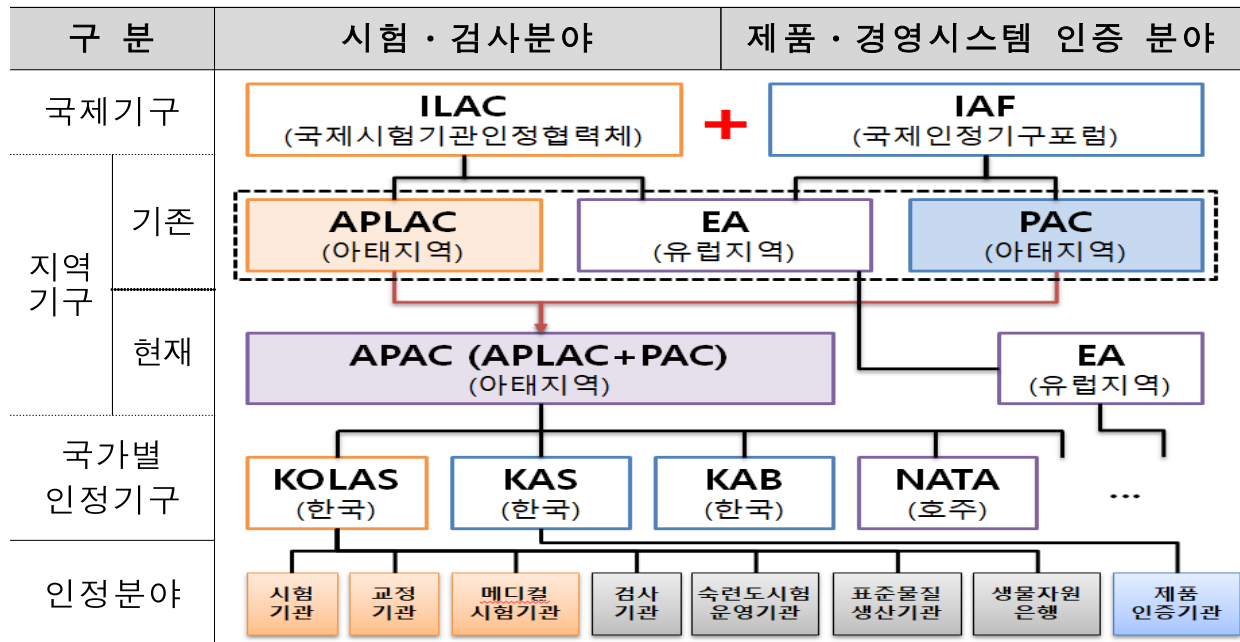


□ 한국인정지원센터(Korea Accreditation Board, KAB)

-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자격인증 등 분야 IAF MRA 체결 인정기구로써, 전문 경영체제별 유관 국제기구 및 단체와 국제적 협력 지원

구분	KOLAS	KAS	KAB
인정마크			
설립년도	'92.12월	'01.7월	'95.9월
인정대상	교정, 시험, 검사, 표준물질, 숙련도시험, 메디컬시험 등 6개 분야	제품인증 1개 분야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 자격인증 등 2개 분야
수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지원센터
인정수	1,026개 기관	24개 기관	QMS : 65개 / EMS : 54개
국제/지역기구	ILAC / APAC	IAF / APAC	

2. 국제 적합성평가 체제



- (ILAC 설립 목적) 세계 인정기구들의 국제협력체로,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타국에서 추가·중복 시험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회원국간(다자간) 상호인정협정(MRA)제도 운영
- (ILAC-MRA 가입현황) 106개국 103개 인정기구('21.11월 기준)
- (ILAC-MRA 자격유지) 해당지역기구(APAC)로부터 4년주기 동등성평가를 통해 인정기구 자격요건(ISO/IEC 17011) 적격성여부 확인
 - * 한국인정기구는 '21.9월 APAC 이사회로부터 동등성평가 최종 통과 완료
- (ILAC-MRA 효과) 동일한 국제표준 채택을 통한 상호인정 활동으로, 인정기구의 자격 및 인정업무 일치화
 - MRA 협정에 서명한 인정기구는 타 인정기구에 의해 인정받은 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를 인정해야 함
 - 공인기관 성적서 상호인정으로 기업의 중복시험, 시간 및 비용을 감소시켜 국제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제거

붙임 對 브라질 가전 수출규제 대응 KOLAS 지원 사례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기업(삼성, LG 등)의 냉장고를 브라질로 수출시 현지 시험소에서 안전 및 에너지효율 관련 시험을 통과해야만 수출 가능
 - * 브라질 국립계량품질기술원(INMETRO) 규정에 따라 브라질 현지 시험소에서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INMETRO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 수입허가
- 해외소재 시험기관의 경우, INMETRO의 현장평가 통과후 브라질 시험소와 MOU 체결한 기관만 해외에서 시험 대행 가능
 - ILAC MRA에 기반한 공인성적서 발행이 가능한 기관만 가능
 - * KOLAS(시험)는 ILAC MRA 협정 체결을 통해 ILAC 가입국에서 성적서 호환 가능

□ 추진경과 (국내 KOLAS 공인기관인 KTC 사례)

'16. 8.	KOLAS 공인 시험기관 자격 획득 * 냉장고의 안전(IEC 62552) 및 에너지효율(IEC 60335-2-24) 분야
'17. 1.	INMETRO/LABELO(현지 시험기관) 현장평가 수검
'17. 7.	브라질 현지 시험소(LABELO)와의 MOU 체결
'17. 11.	국내에서 브라질 수출을 위한 냉장고 안전/에너지효율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

□ 파급효과

- KOLAS 지원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은 국내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수출 가능 → 수출준비 비용 및 시간부담 경감, 기술유출방지
 - * 수출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발급 비용 및 소요시간 (KTC 추산)

구분	브라질 현지 기관	국내기관(KTL 등)
시험성적서 비용	약 300만원 / 모델 + 샘플 운송비(500만 이상) 별도	약 450만원 / 모델
소요 시간	약 9개월	약 8주

※ 냉장고 수출액 [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단위: 천불)

구분	'18	'19	'20
냉장고·냉동고 (HS 8418)	8,411	11,815	14,601

참고 2

「국제 적합성평가 체제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19년도

-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 성적서의 신뢰성 확보가 절실
- ◆ 혁신성장을 보증하는 새로운 서비스산업으로 탈바꿈
- ◆ 시험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 기반 조성

신뢰성 체계 구축

1 4차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신뢰성 시책 추진

- ① 시험인증 신뢰성 종합 감시망 조성
- ② 블록체인기술 기반 온라인 시험성적서 발급 시스템 구축
- ③ 新 국제기준에 따른 공인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

2 전문성 강화 및 대형화를 빠르고 과감히 추진

- ④ 공정성 관리를 위한 KOLAS 평가사 및 사무국 역량강화
- ⑤ 신수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험·인증기관 전문성 강화
- ⑥ 시험인증시장의 경쟁제한적 규제완화

3 신뢰성 시책의 실효성 확보 장치 마련

- ⑦ KOLAS 담당 인원조직 대폭 확대
- ⑧ 적합성 평가관리법 제정

시험인증 신뢰성 제고 → 국민안전, 혁신성장지원, 일자리 창출



□ 新 국제기준에 따른 공인기관관리체계 개편

○ (추진배경) 국제기구(ILAC)가 자격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800여개 공인기관의 시스템 개편 필요

- '21. 6월부터* 개편 미완료 기관 성적서가 외국에서 통용될 수 없어 우리 기업 수출 시 통관, 해외인증 취득 애로** 발생 우려

* 코로나 19로 확산으로 인해 당초 '20.6월에서 '21.5월로 전환기한 연장

** 9,000억('19년) 수준의 공인기관의 시험을 외국 공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기에 시험비용과 소요시간 증가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저하

○ (주요경과) 국내 800여개 공인기관 성적서의 국제 통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체계적 전환 이행 추진

- 국가 전환계획 수립('18.9월) → 전환 로드투어 설명회('19.2월) → 공인기관 전환평가 시행('19.4월) → 비대면 전환평가 규정 마련('20.9월)

- 개편추진단(민·관 합동) 운영으로 공인기관 준비 지원 및 전환 가이드와 애로 자문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19.2월~)

- 한국인정기구(국표원)는 국제기구(ILAC)의 개편 평가 수점('20.9월)

□ 공평성 관리를 위한 KOLAS 평가사 및 사무국 역량강화

○ (추진배경) 공인시험기관의 공평성 관리 및 국제기구의 전환평가를 대비하여 인정평가를 전담하는 평가사 및 사무국 역량 강화

○ (주요내용)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공평성(Impartiality) 관리를 위한 평가사 관리 체계 개선 및 사무국 역량 확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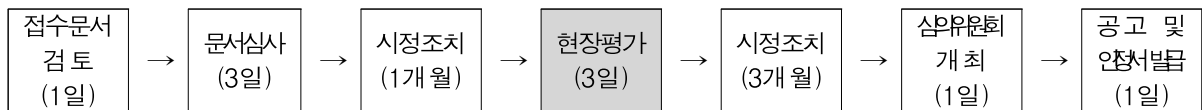
- 국제수준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현장 평가능력과 자질 검증 후 승급 등 평가사 자격 기준 강화하고, 모니터링 기준 및 처분절차 구체화로 평가사 質 관리

< KOLAS 평가사 자격요건 >

	평가사보	기술평가사	선임평가사
등록요건	· 양성교육 및 불확도 교육 이수	· 평가사보 등록 후, 5회 이상 현장평가(10일↑)	· 기술평가사 등록 후, 10회 이상 현장평가(30일↑)
등록·승급심사	인정위원회 서면 심의		인정위원회 면접 심의
개선	모의평가보고를 통해 평가능력 확인·검증		예비선임평가사과정, 블라인드 면접심사 등 신설

□ KOLAS 담당 인원조직 대폭 확대

- (추진배경) 국가공인기관('21년 현재 1,000여개)은 급증하고 있으나, 공인기관 인정기구(KOLAS)의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
 - '10년도 대비 공인기관은 50% 증가하였으나, 담당자는 10% 증가함
 - * ('10년) 공인기관 605개, 담당자 10명 → ('21.11월) 공인기관 1,009개, 담당자 11명
 - 1인당 담당기관이 과중하여, 현장평가 불참 등 관리부실 우려
 - * 우리나라 1인당 담당기관 95개(영국 17개, 호주 23개, 중국 34개)
- (주요내용) 단기적으로는 현재 조직 인력 및 조직 보강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조직 설립 검토
 - 공인기관 평가업무에 평균 9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인기관 관리 인력을 20명(1인당 50개 기관 담당)으로 증원 추진
 - * 행정업무를 제외한 순수 평가업무는 평균 9일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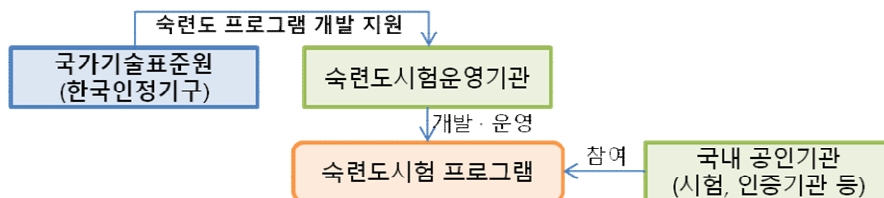
- 한국인정기구를 국내(또는 국표원내) 별도 센터(과1, 팀1)로 개편
 - * (팀 1) 공인기관 평가전담,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 등
 - ** (과 1) 관리규정 제·개정, 평가사 양성, 국제협력 등 업무 추진
- 중장기적으로 KAB, KOLAS, KAS 등 인정업무를 통합 담당하는 독립된 공공 기관 설립 추진 검토(200명수준)
 - * 인정평가업무 중 인정위원회 등 정책적 사항을 제외한 업무 위탁 추진

참고 3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비목 변경 필요성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 개요

- (‘숙련도시험’ 개념) 시험기관 간 비교를 통하여 미리 확립된 시험 방법 등 기준에 대한 참가자의 수행도를 평가하는 적합성평가 활동
- (사업내용)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목: 일반연구비)
- (추진체계) 인정기구(국표원)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기획·지원



□ 문제점

- 국제기준*에 따르면 인정기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적합성평가 활동 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안할 수 없도록 규정('18년 개정)

* ISO/IEC 17011(인정기구 요구사항) 4.4.11항: “인정기구는 적합성평가활동, 자문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안하여서는 안된다”

⇒ 숙련도 프로그램 개발은 적합성평가활동에 해당, 인정기구 수행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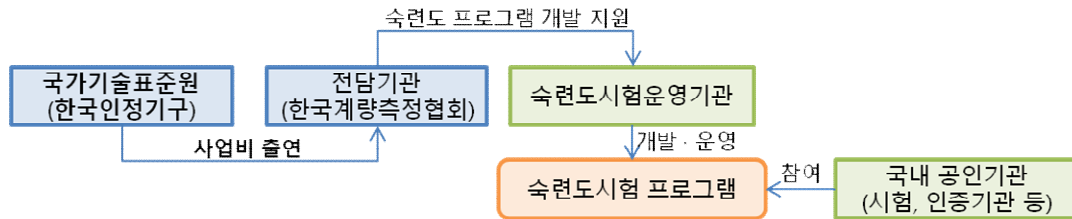
* 국제기준 미충족시 시험인증 등 성적서 국제상호인정협정 유지가 어려운 실정

□ 개선방안

- 현행 일반연구비(260-01)를 통한 국표원(한국인정기구) 직접운영 방식에서, 사업출연금(350-02)을 통한 전문기관 운영방식으로 전환

* (출연근거)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제1항제9호(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제1항제1호(측정의 정밀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연구 등)

○ 추진체계(안)



□ 요청사항

○ ① '22년 예산 전용 및 ② '23년 예산(안) 비목 변경 반영

내역사업 세부내용	예산 (백만원)	비목	
		현재	변경(요청)
숙련도시험 기술위원회 수당	28	210-01	350-01
표준물질(시험재료) 구입비	14	210-11	
숙련도시험 평가 관련 여비	7	220-01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755.5	260-01	
합계	804.5	-	-

※ 관련규정

□ 「KS Q ISO/IEC 17011:2017」 4.4항(공평성 요구사항)

4.4.1 인정은 **공평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4.4.2 인정기구는 인정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 인정기구를 포함하여 인정기구가 보다 큰 조직의 일부인 경우, 인정기구는 인정이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4.4.11 인정기구 및 동일 법인의 일부가 다음과 같이 공평성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제안하여서는 안 된다.

- a) 인정에 포함된 적합성평가활동, 여기에는 시험, 교정, 검사, 경영시스템인증, 자격인증, 제품인증, 프로세스인증 및 서비스인증, **숙련도시험 제공**, 표준물질 생산, 유효성확인 및 검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 자문

4.4.12 인정기구가 자문을 제공하거나 **4.4.11 a)**에 언급된 적합성평가활동을 수행하는 기관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인정기구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서로 다른 최고경영진
- b) 인정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서로 다른 인원
- c) 명확하게 서로 다른 기관의 명칭, 로고 및 심벌
- d) 모든 인정활동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

□ 「국가표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출연 근거)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시험·검사기관 인정
- 4. 교정기관의 인정
-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9. 그 밖에 체제 인증 등 신규 인증제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측정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조사·연구, 자료 발간,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교정방법과 교정절차의 개선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
3. 국가교정기관의 지정 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및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측정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참고 4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개요

□ 숙련도시험(PT, Proficiency Testing)

- (정의) 시험기관간 비교를 통하여 미리 확립된 기준에 대한 참가자의 수행도를 평가하는 것
 - 국제기준에 따라 공인기관은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3년에 1회 이상 (메디컬 분야는 1년에 2회) 숙련도시험에 참가/합격 필요
 - 부적합 시 원인파악 및 시정조치를 통해 해당기관의 시험분석 및 측정 능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회로 활용
- (운영현황) 12개*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지정, 169개 기술분야 운영 중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계량측정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주)한국첨단시험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절차(현행)



□ 숙련도시험의 효과

- KOLAS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시험·교정성적서가 협정국가에서 동시에 통용이 가능한 국제상호인정 지위 유지를 위한 필수조건 만족

참고 5

「한국인정기구 주요 통계」

□ KOLAS/KAS 공인기관 인정추이 및 현황 ('21.11월 기준)

구분	시험	교정	검사	표준 물질	메디컬	숙련도	제품 인증	계
2011년	403	193	46	9	0	0	15	666
2012년	416	189	49	11	0	0	16	681
2013년	460	192	52	11	0	7	17	739
2014년	468	201	50	13	2	7	20	761
2015년	487	209	55	13	5	8	20	797
2016년	496	212	58	12	6	9	20	813
2017년	532	226	61	13	8	9	19	868
2018년	564	231	62	13	8	11	19	908
2019년	576	243	67	12	9	12	20	939
2020년	606	254	68	13	9	12	22	984
2021년 11월	650	263	76	13	12	12	24	1,050

□ 평가사 인정현황 ('21.11월 기준)

구분	시험	교정	검사	표준 물질	메디컬	숙련도	제품 인증	계 (중복제외)
선임평가사	112	68	35	4	5	9	14	247
평가사	310	196	53	10	7	9	27	612
평가사보	212	87	54	20	20	27	19	439
기술전문가	15	4	3	8	25	2	0	57
계	649	355	145	42	57	47	60	1,355 (1,117)

□ 최근 4년간 KOLAS 공인성적서 발급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시험	134,827	175,937	187,059	203,116
교정	1,887,006	2,051,654	2,169,536	2,309,249
검사	40,062	56,270	71,681	67,381
메디컬	29,404	59,927	60	510,212
표준물질	6,494	6,017	5,686	6,005
계	2,097,793	2,349,805	2,434,022	3,095,963

사 업 명						
(7)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373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7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	신재혁	-	배소현
		043-870-5500	-	043-870-550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인증제도혁신 기반구축	1,023	922	922	1,052	1,052	130	14.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024	1,024	1,023 [1,023]	-	1	922	922	922	921 [921]	-	1	1,052
· 1381인증표준정보센 터 운영·개선	957	957	957 [957]	-	-	884.7	884.7	884.7	884.7 [884.7]	-	-	1015.45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40	47	47 [47]	-	-	17.3	17.3	17.3	17.3 [17.3]	-	-	16.55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20	20	19 [19]	-	1	20	20	20	19 [19]	-	1	20
· 인증산업발전 포럼	7	0	0 [0]	-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1,024	1,024	1,023 [1,023]	-	1	922	922	922	921 [921]	-	1	1,052
· 일반수용비(210-01)	120	125	125 [125]	-	-	70.7	70.7	70.7	70.7 [70.7]	-	-	71.45
· 임차료(210-07)	5	0	0	-	-	-	-	-	-	-	-	-
· 국내여비(220-01)	4	7	7 [7]	-	-	3.8	3.8	3.8	3.8 [3.8]	-	-	3.8
· 국외업무여비(220-02)	3	0	0	-	-	-	-	-	-	-	-	-
· 사업추진비(240-01)	15	15	15 [15]	-	-	13.5	13.5	13.5	13.5 [13.5]	-	-	12.75
· 일반연구비(260-01)	20	20	19 [19]	-	1	20	20	20	19 [19]	-	1	20
· 민간경상보조(320-01)	857	857	857 [857]	-	-	814	814	814	814 [814]	-	-	94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24	1,024	1,023 [1,023]	-	1	922	922	922	921 [921]	-	1	1,052
· 1381인증표준정보센 터 운영·개선	957	957	957 [957]	-	-	884.7	884.7	884.7	884.7 [884.7]	-	-	1,015.45

-일반수용비(210-01)	100	100	100 [100]	-	-	70.7	70.7	70.7	70.7 [70.7]	-	-	71.45
-민간경상보조(320-01)	857	857	857 [857]	-	-	814	814	814	814 [814]	-	-	944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40	47	47 [47]	-	-	17.3	17.3	17.3	17.3 [17.3]	-	-	16.55
-일반수용비(210-01)	18	25	25 [25]	-	-	-	-	-	-	-	-	-
-국내여비(220-01)	4	7	7 [7]	-	-	3.8	3.8	3.8	3.8 [3.8]	-	-	3.8
-국외업무여비(220-02)	3	0	0	-	-	-	-	-	-	-	-	-
-사업추진비(240-01)	15	15	15 [15]	-	-	13.5	13.5	13.5	13.5 [13.5]	-	-	12.75
· 인증제도개선을 위 한 조사·연구	20	20	19 [19]	-	1	20	20	20	19 [19]	-	1	20
-일반연구비(260-01)	20	20	19 [19]	-	1	20	20	20	19 [19]	-	1	20
· 인증산업발전 포럼	7	0	0	-	-	-	-	-	-	-	-	-
-일반수용비(210-01)	2	0	0	-	-	-	-	-	-	-	-	-
-임차료(210-07)	5	0	0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국내기업이 제품 출시 또는 수출 시 필요한 제품별, 국가별 인증 정보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개선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법정의무 인증을 KC마크로 수렴하고 KC마크를 국내 대표인증 브랜드로 육성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KC마크의 소비자 인지도,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만족도·인지도 등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성과 분석 및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6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② 추진경위

- '04.10. 국정감사 : 인증제도 난립에 따른 통합 필요성 제기
- '05.5.~'06.5. : 「인증제도 혁신 T/F팀」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 * 12차에 걸친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개최 (산업자원부)
 - * 국내 인증업체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500여 기업)

< 「국가표준·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주요내용 >

- ① 부처별 인증업무를 종합·조정할 총괄관리 체계 구축
- ② 국가통합인증마크 및 모듈방식 인증제도 검토
- ③ 인증기관의 시설·인력 강화 및 인증정보 네트워크 구축
- ④ 국제적 인정기구 육성 및 인증기준의 국제부합화, 규격간 통일화

- '09.4.1. : 「국가표준기본법」 개정공포(KC마크 도입 등 규정)
- '09.7.1. : 산업부 소관 9개 의무인증제도에 KC마크 도입
- '10.6.30. :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고시
 - * 복수의무인증제품에 대한 시험성적 상호인정 및 일괄신청제 도입
- '11.1.1. : 산업부 등 5개부처 13개 법정 의무인증제도에 KC마크 전면시행
- '13.8.7. : “수출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 활성화 계획” 장관님 보고시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구축을 지시
 - * 1380 FTA 콜센터과 같은 138Y 계열의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구축을 지시
- '13.10.28. :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추진 계획” 장관님 보고 시 4자리 특수번호 및 운영기관을 확정

<추진방안 확정결과>

- 운영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특수번호 : 1381

* 산업부 무역실, 중기청,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시험연구원 등 협업 확인

- '14.1.27. : “인증표준정보제공콜센터” 운영기본계획을 수립

- 사용번호 : 1381 • 서비스시간 : 8:00~19:00, 주5일
- 관리주체 : 국가기술표준원(“인증·표준 정보제공 콜센터”설치)
- 운영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조 직 : 12명 [국표원 1명(총괄), KTR(운영실무,상담) 11명]
- 제공정보 :
 - 인증 : 350여개의 해외인증(110여개국) 및 300여개 국내인증
 - 표준 : 43천여종 국가표준 & 국제표준(ISO, IEC, ITU 등)

- ‘14.3.19. : KATS - KTR “1381” 인증표준정보제공콜센터 운영협약 체결
- ‘14.3.20. : VIP지시 ‘정부 콜센터 홍보 강화’ 지시
- ‘14.3.26. : “1381” 인증표준콜센터 개통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1381인증표 준정보센터 운영·개선	보조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944	100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위탁운영)

3) '22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 ('21) 884.7 → ('22) 1,015.45백만원

- (요구) 다양하고 복잡한 인증·표준 환경에 대응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상담 전문성 강화
- (산출)
 - 인건비 보조 (320-01, 민간경상보조) : 720백만원
 - * ('21) 17명 × (3.33백만원 × 12개월) → ('22) 18명 × (3.33백만원 × 12개월)
 - 대면상담 전문가 수당 (320-01, 민간경상보조) : 35백만원
 - * ('21) 140회 × 0.25백만원 → ('22) 140회 × 0.25백만원
 - 유지보수, 관리비 등 (320-01, 민간경상보조) : 102백만원
 - * ('21) 12개월 × 7.83백만원 → ('22) 12개월 × 8.5백만원
 - 시스템 개선 (320-01, 민간경상보조) : 78백만원
 - * ('22) 1식 × 78백만원
 - 상담원 재교육 (320-01, 민간경상보조) : 9백만원
 - * ('21) 5회 × 1백만원 → ('22) 9회 × 1백만원
 - 1381 이용 유도 및 활성화 (210-01, 일반수용비) : 71.45백만원
 - * ('21) 5회 × 14.14백만원 → ('22) 5회 × 14.29백만원 = 71.45백만원

(2)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21) 17.3 → ('22) 16.55백만원

- (요구)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범부처 확산을 위해 협의체 운영 및 실태조사 예산 요구
- (산출)
 - 인증제도 실태조사 (220-01, 국내여비) : 3.8백만원
 - * ('21) 2명 * 0.1백만원 * 19회 → ('22) 2명 * 0.1백만원 * 19회
 - 인증제도 혁신 관련 회의 (범부처 실무자 협의 등) (240-01, 사업추진비) : 12.75백만원
 - * ('21) 25명 * 0.03백만원 * 18회 → ('22) 25명 * 0.03백만원 * 17회

(3)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21) 20 → ('22) 20백만원

- (요구) 사업 효과 개선을 위한 사업성과 분석과 차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 (산출) ('21) 1개과제 x 20백만원 → ('22) 1개과제 x 20백만원 (260-01, 일반연구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381인증표준정보 센터 상담건 (단위: 건)	목표	62,896	66,040	68,021	64,120	67,146	실적 추이를 감안 하여 목표치 산출	1381 인증표준정보 센터 온·오프라인 상담 건수 합계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통계
	실적	57,268	60,241	87,130	-	-			
	달성도	91%	91%	128%*	-	-			

* '20년도는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용품 등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여 목표치 대비 큰폭으로 초과 달성하였으나 '21년부터 특이소요 해소에 따라 상담 건수가 평년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① '국가인증제도 포럼' 개최를 통해 자원순환제품에 대한 국가인증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인증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발전 방안 검토 - 자원순환업체 및 시험인증기관 관계자 등 107명 참석 ② 1381 인증·표준 콜센터 상담서비스 확대 및 질적 서비스 개선 -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전화서비스와 인터넷 정보 검색 및 상담 서비스 개통('18.11.) - 전문가 대면상담서비스 개시 및 전문가 상담 홍보('18.3.)
2019	① '국가인증제도 포럼' 개최를 통해 공공구매 및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에 대한 제도 이해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검토 - 자원순환업체 및 시험인증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 참석 ② 1381 인증·표준 콜센터 상담서비스 확대 및 질적 서비스 개선 - 반응형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으로 서비스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19.6.) - 전문가 대면상담서비스 활성화(('18) 33건 → ('19) 232건)
2020	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KC마크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추진 - 라디오, 지하철, 포털사이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승강기 광고 등 ②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상담서비스 확대 및 질적 서비스 개선 - 콜시스템과 1381 홈페이지 연동 및 통합으로 시스템 안정성 제고 - 전문가 대면(심층)상담 서비스 분야 확대 등 중소기업 애로 해소 강화 (전화·인터넷·심층 상담 87,130건, 온라인정보제공(페이지뷰) 301,267건) - 1381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실시
2021	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② 비대면 화상 상담 시스템 도입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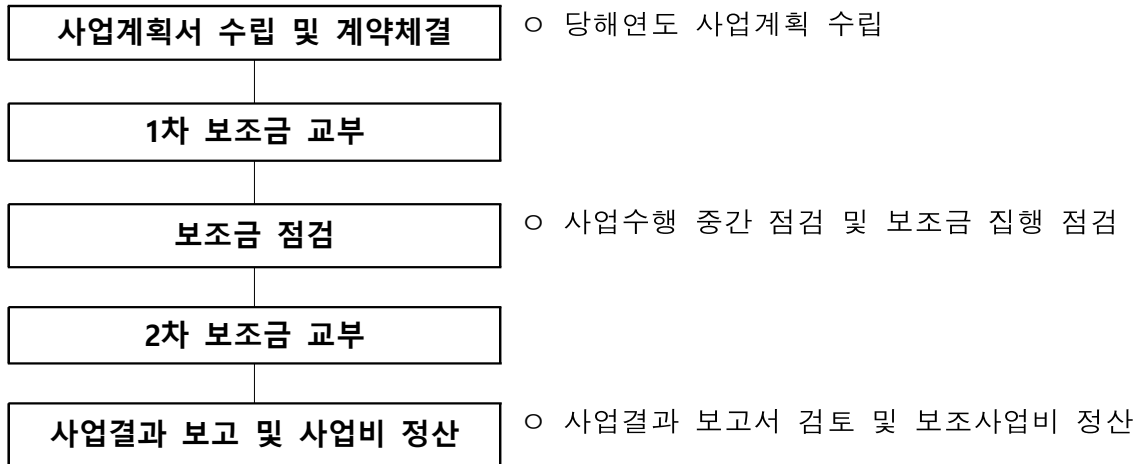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 및 개선을 통해 인증·표준 관련 정보취득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국내 시장출시에 필요한 국내 인증 관련 정보와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인증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
 - * '20년도 실적은 상담(전화·인터넷·전문가) 87,130건, 온라인 정보제공(페이지뷰) 301,267건으로, 특히, '17년 전안법, '20년 코로나19 사태 등 인증 관련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상담이 폭증하여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가 인증표준 정보의 길잡이로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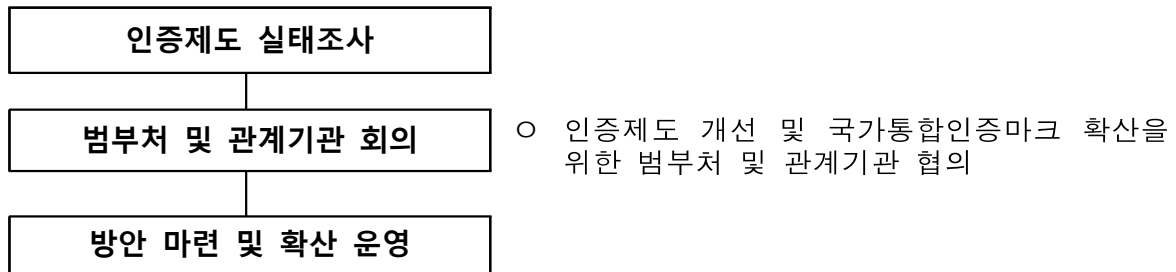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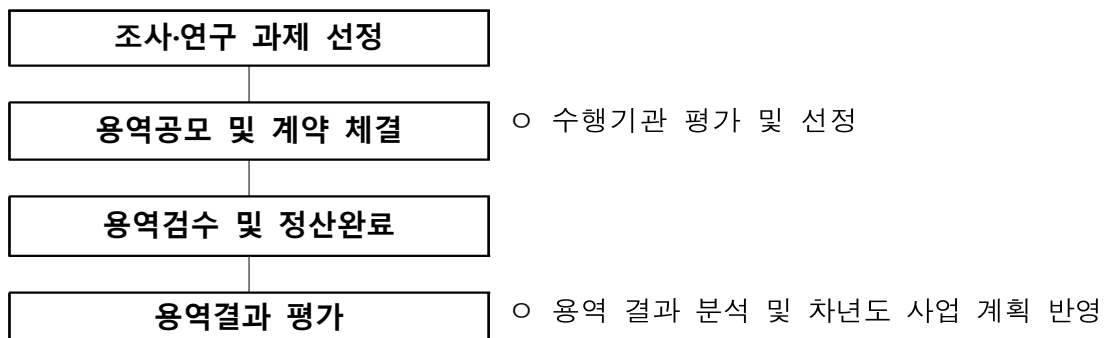
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②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③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1,024	922	944	925	915	
'21~'25		922	1,014	1,116	1,227	1,35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국내 시장출시 및 해외수출 관련한 인증표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의 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對기업 인지도 제고
 -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채팅 상담, 화상 상담 등 도입
 - 해외 및 국내 인증·표준 분야의 문의에 대해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 제공
 - 인증 관련 복잡한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에게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심층 상담
 - 지속적인 홍보로 기업의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이용 유도 활성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재정사업 자율평가('20회계연도)
 - 보통, 69.2점(단위사업명: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 2) 보조사업 연장평가('21년)
 - 지원방식을 다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화상담 비중이 높은 편임
 - 수요자 측면의 성과측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며, 시대 변화에 맞게 정보전달 방법을 다원화·고도화할 필요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1,100	1,100	1,100	-	±7	-	1,100	1,100	100	100	-	-
2019	1,045	1,045	1,045	-	±7.5	-	1,045	1,045	100	100	-	-
2020	1,024	1,024	1,024	-	±8	-	1,024	1,023	99.9	99.9	-	1
2021	922	922	922	-	-	-	922	921	99.9	99.9	-	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880	880	880	880	-	880	880	-	-	100
2019	857	857	857	857	-	857	857	-	-	100
2020	857	857	857	857	-	857	857	-	-	100
2021.12월	814	814	814	814		814	814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 전용 : KC마크 인지도 조사 수행을 위해 일반연구비 부족분을 일반수용비에서 전용
2019	- 전용 : KC마크 인지도 조사 수행을 위해 일반연구비 부족분을 일반수용비에서 전용
2020	- 불용 : 1백만원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 세목변경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총 8백만원 세목간 조정 국외여비→국내여비(3백만원), 임차료→일반수용비(5백만원)
2021	- 불용 : 1백만원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 2021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1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관련 근거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에 대한 인증·검정·등록·인정·심사·검사·신고·형식승인 등(이하 “인증 등”이라 한다)의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제품에 대한 인증 등을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인증 등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제품인증제도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등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조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위탁운영)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담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그 운영을 법인, 기관 또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업체의 인력·재정·운영실적 및 상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참고 2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 정보센터 구축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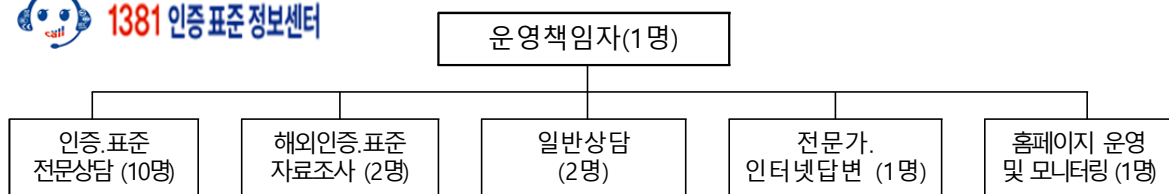
- 인증·표준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는 종합 지원 창구로, 제품 출시 또는 수출시 필요한 국가별·품목별 맞춤형 통합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원활한 시장 진출 지원

* (국외) TBT 통보 건수 지속 증가 : ('11년) 1,466건 → ('20년) 3,352건

** (국내) 총 400여개 인증제도 운영(법정의무 81개, 법정임의 106개, 지자체 81개, 민간 131개)

□ 관리체계

- (운영조직)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리총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운영 실무 및 상담업무 수행(운영책임자 포함 총 17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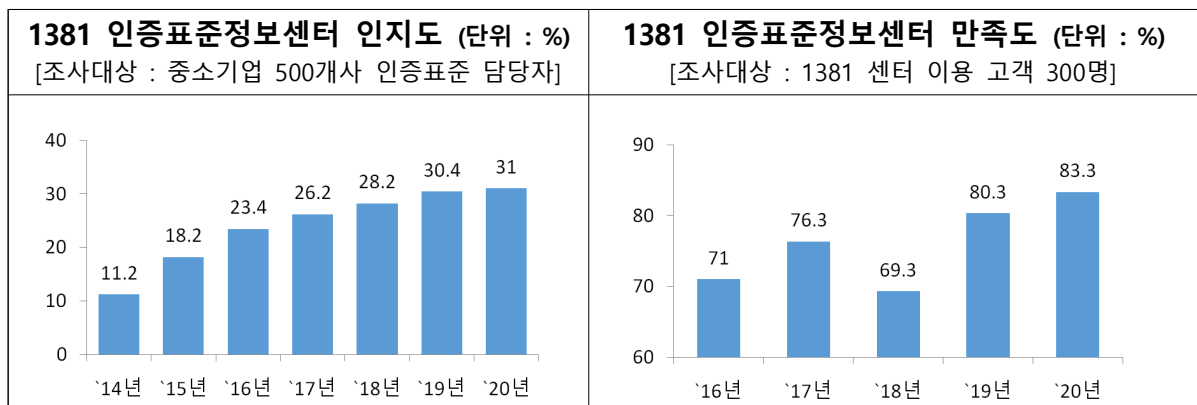
- (서비스 고도화)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온라인 정보제공 등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문가 대면상담으로 심층 상담 서비스 제공

□ 추진성과

- '20년 상담 87,130건(350건/일), 온라인 페이지뷰 385,921건

* 누적건수('14.3.~): 전화상담(390,279), 인터넷상담(4,042), 전문가상담(603), 해외인증자료제공(3,818)

- 인지도 및 만족도



참고 3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상담 사례

□ 수출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증 취득 및 판로 개척

- (기업개요) G사는 싱가포르 「교량용 신축 이음장치」 수출을 계획
- (기업애로) 싱가포르 수입업체에서 FPC 인증을 요구하여 정보를 얻기 위해 센터에 문의
- (지원사항) 싱가포르의 FPC 인증은 Factory Product Control 즉, 공장생산 관리 인증으로 싱가포르의 건축 관리 정부부처인 BCA에서 승인한 인증기관을 통해서만 인증 신청이 가능함과 절차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안내함
- (지원성과) 안내받은 정보를 토대로 BCA에서 승인한 인증기관을 통해 현재 FPC 인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출 판로 개척 중

□ 1381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정보로 수출을 위한 인증 취득

- (기업개요) R사는 베트남으로 「전기순간온수기」 수출을 검토
- (기업애로) 수출 시 베트남 CR 인증 관련 규제 정보를 얻기 위해 센터에 문의
- (지원사항) 베트남으로 AC 전원을 사용하는 순간온수기 수출시 전기안전관련 CR 마크 및 전자파(EMC) 시험인증이 모두 대상이며, 2020년 1월 1일 부터 새로운 에너지효율 라벨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시험 인증 관련 지원이 가능한 기관 등의 정보와 함께 베트남의 제품 라벨링 규정을 안내
- (지원성과)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수출을 위한 인증 취득을 진행 중

□ 1381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정보로 인증 획득 후 국내 판매

- (기업개요) 열과 진동으로 복부에 착용하여 생리통을 완화시키는 용도의 「전기 마사지기」 제품을 수입하는 S사
- (기업애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시 필요한 인증절차 및 요구사항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정보센터에 전문가 상담을 신청
- (지원사항)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전자파적합등록 대상으로 인증 절차에 대한 상세 설명, KC 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기관의 신청서류, 샘플 준비사항 및 표시사항 방법 등 수입 시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함
- (지원성과)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KC 인증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하여 인증을 취득하고, 국내 판매를 시작

참고 4

국가통합인증마크(KC) 도입 현황

※ 각 부처별 다양한 인증마크 사용으로 인한 국민 혼란 방지 및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의무인증을 국가적으로 통합하여 '09.7.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를 도입,
현재 8개 부처 20여개 법정의무인증제도가 KC마크를 사용

순번	소관부처	인증제도명	근거법률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계량에 관한 법률
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 안전관리(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어린이보호포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관리(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5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6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용품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7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9	국토교통부	내압용기 장착검사	자동차관리법
10	국토교통부	내화구조 인정	건축법
11	국토교통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건축법
12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측정기기 및 자재·약제 검정	해양환경관리법
13	환경부	정수기 품질검사	먹는물관리법
14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인증	수도법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	전파법
16	행정안전부(소방청)	소방용품형식승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행정안전부(소방청)	방염성능검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인증	승강기안전관리법
19	고용노동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20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21	국방부(방위사업청)	섬유피복류 군수품 KC마크 적용	방위사업법
22	환경부(기상청)	기상측기형식승인	기상관측 표준화법
23	환경부(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사 업 명						
(8)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3731-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8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계량측정제도과	임완빈	백순란	-
		043-870-5510	043-870-5516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법정계량선진화 기반구축	1,085	1,400	1,400	1,386	1,386	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103	1,103	1,084.6 [1,084.6]	-	18.4	1,400	-	1,400	1342.28 [1342.28]	-	57.72	1,386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616.6	616.6	598.3 [598.3]	-	18.3	626.65	-	626.65	600.68 [600.68]	-	25.97	612.65
·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116	115.8	115.8 [115.8]	-	-	122	-	122	119.12 [119.12]	-	2.88	122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125	124.2	124.2 [124.2]	-	-	245	-	245	220.41 [220.41]	-	24.59	245
·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245.4	246.4	246.3 [246.3]	-	0.1	406.35	-	406.35	402.07 [402.07]	-	4.28	406.35
○ 비목별 분류(합계)	1,103	1,103	1,084.6 [1,084.6]	-	18.4	1,400	-	1,400	1342.28 [1342.28]	-	57.72	1,386
· 일반수용비(210-01)	17.4	13.5	13.5 [13.5]	-	-	27.1	-	27.1	27.1 [27.1]	-	-	27.1
· 임차료(210-07)	-	-	-	-	-	7.51	-	7.51	0 [0]	-	7.51	7.51
· 시험연구비(210-13)	213	217.9	217.8 [217.8]	-	0.1	375	-	375	373.99 [373.99]	-	1.01	375
· 일반용역비(210-14)	80	79.8	79.8 [79.8]	-	-	80	-	80	77.12 [77.12]	-	2.88	80
· 관리용역비(210-15)	80	79.2	79.2 [79.2]	-	-	200	-	200	175.41 [175.41]	-	24.59	200
· 국내여비(220-01)	15	15	15 [15]	-	-	14.25	-	14.25	10.98 [10.98]	-	3.27	14.25
· 국외업무여비(220-02)	19	19	4.3 [4.3]	-	14.7	17.1	-	17.1	0 [0]	-	17.1	17.1
· 사업추진비(240-01)	5.6	5.6	5.6 [5.6]	-	-	5.04	-	5.04	5.04 [5.04]	-	-	5.04
· 일반연구비(260-01)	90	90	86.4 [86.4]	-	3.6	120	-	120	118.64 [118.64]	-	1.36	120
· 민간경상보조(320-01)	583	583	583 [583]	-	-	554	-	554	554 [554]	-	-	54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03	1,103	1,084.6 [1,084.6]	-	18.4	1,400	-	1,400	1342.28 [1342.28]	-	57.72	1,386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616.6	616.6	598.3 [598.3]	-	18.3	626.65	-	626.65	600.68 [600.68]	-	25.97	612.65
-임차료(210-07)	-	-	-	-	-	7.51	-	7.51	0 [0]	-	7.51	7.51
-국외업무여비(220-02)	19	19	4.3 [4.3]	-	14.7	17.1	-	17.1	0 [0]	-	17.1	17.1
-사업추진비(240-01)	5.6	5.6	5.6 [5.6]	-	-	5.04	-	5.04	5.04 [5.04]	-	-	5.04
-일반연구비(260-01)	90	90	86.4 [86.4]	-	3.6	120	-	120	119.12 [119.12]	-	2.88	120
-민간경상보조(320-01)	502	502	502 [502]	-	-	477	-	477	477 [477]	-	-	463
·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116	115.8	115.8 [115.8]	-	-	122	-	122	119.12 [119.12]	-	2.88	122
-일반수용비(210-01)	-	-	-	-	-	10	-	10	10 [10]	-	-	10
-일반용역비(210-14)	80	79.8	79.8 [79.8]	-	-	80	-	80	77.12 [77.12]	-	2.88	80
-민간경상보조(320-01)	36	36	36 [36]	-	-	32	-	32	32 [32]	-	-	32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125	124.2	124.2 [124.2]	-	-	245	-	245	220.41 [220.41]	-	24.59	245
-관리용역비(210-15)	80	79.2	79.2 [79.2]	-	-	200	-	200	175.41 [175.41]	-	24.59	200
-민간경상보조(320-01)	45	45	45 [45]	-	-	45	-	45	45 [45]	-	-	45
·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245.4	246.4	246.3 [246.3]	-	0.1	406.35	-	406.35	402.07 [402.07]	-	4.28	406.35
-일반수용비(210-01)	17.4	13.5	13.5 [13.5]	-	-	17.1	-	17.1	17.1 [17.1]	-	-	17.1
-시험연구비(210-13)	213	217.9	217.8 [217.8]	-	0.1	375	-	375	373.99 [373.99]	-	1.01	375
-국내여비(220-01)	15	15	15 [15]	-	-	14.25	-	14.25	10.98 [10.98]	-	3.27	14.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계량기 기술기준·지침 개발,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제도/소비자감시원 운영, 국제법정계량기구(OIML)과 국제협력 등을 통한 법정계량제도 관리
-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평(坪)', '돈' 등 非법정단위 근절 및 'm2', 'g' 등의 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 및 대중 매체 모니터링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계량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계량기 관련 정보(시험·검사·단속 등)의 통합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법정관리 계량기(13종)에 대한 사후관리(시판품 조사 및 사용 중 오차검사)과 정량표시상품(27종)에 대한 시장감독(내용량 및 단위 표시 조사)를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 6, 14, 41, 54, 57, 60, 61, 65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형식승인) ①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계량관리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지식이 있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및 「소비자기본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소비자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계량 산업 정책, 제도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2. 계량 산업 관련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3. 계량 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4. 계량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5. 제60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 개발에 관한 사업
 7. 형식승인 및 검정 평가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량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0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수출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량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기업의 신기술 계량기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65조(한국계량측정협회)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계량 산업의 발전 및 측정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지도, 조사, 통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계량·측정 산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
 3. 계량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업
 5. 계량·측정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 단체와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6. 계량기 사후관리 및 비법정단위 사용 단속 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
 7.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8. 그 밖에 계량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계량에 관한 법률』은 국제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여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1961년)
 - * 면적의 단위에 대하여 평(坪)단위는 1983년부터 사용을 금지
 -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05)에 따라 법정단위 정착을 추진
 - '07년 7월부터 “평”, “돈”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사전 홍보 부족 및 부정적 여론 등으로 인해, 홍보·제도(경고) 위주로 추진
 - '10.6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게 「과태료 부과」를 병행 추진
 - “계량제도 선진화 종합계획” 수립(장관/'12.16) : '12년부터 현장 중심의 홍보·제도와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불법제품 단속을 실시하고 우리나라 법정계량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정계량선진화 추진
 -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추진 및 시행('15.1.1)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 ~
- 사업규모 : '19년까지 기투입액(88.672억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계량기 사용 전국민 및 관련 기업, 유관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년 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선진 법정계량체 계 확립	보조	한국계량 측정협회	463	100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65조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보조	한국계량 측정협회	32	100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65조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보조	한국계량 측정협회	45	100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65조

3) '22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1,386
①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612.65
	▪ 정책·기술기준·표준·지침 개발	120
	- 연구 및 조사 용역 (일반연구비)	4건x30백만('21) →4건x30백만('22)
	▪ 지자체 계량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	104
	- 교재 제작, 강사료, 임차료, 워크숍 개최 등 (민간경상보조)	260명x0.4백만('21) →260명x0.4백만('22)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제도 운영	90
	- 신고센터 운영비, 조사단 활동비 및 신고포상금 등 (민간경상보조)	37.5건x2.4백만('21) →37.5건x2.4백만('22)
	▪ 소비자감시원 운영	269
	- 감시원 수당, 교육,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	161.7명x1.75백만('21) →153.7명x1.75백만('22)
	▪ 국제법정계량기구 대응 및 국제협력	29.65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아시아태평양법정계량기구포럼 (APLMF) 등 국제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	17.1 5.4회x3.17백만('21) →5.4회x3.17백만('22)
	- 일본, 중국 등 양자 협력 회의 개최 (임차료)	7.51 1회x7.51백만('21) →1회x7.51백만('22)
	- 국제기구 대응 등 간담회 개최 (사업추진비)	5.04 3.36회x0.15백만x10명('21) →3.36회x0.15백만x10명('22)
②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122
	▪ '평(坪)', '돈' 등 非법정단위 근절 및 'm ² ', 'g' 등의 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	90
	-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배포, SNS소통채널운영 및 공 모전 개최 등 (일반용역비)	6종x15백만('21) →6종x15백만('22)
	▪ 대중매체 법정단위 사용 모니터링 및 사용 촉진	32
	- 언론사 광고 비법정단위 사용 모니터링 및 계도 (민간경상보조)	30 20개사x1.5백만('21) →20개사x1.5백만('22)
	- 언론사·소비자 등 협·단체 법정단위 확산 현장협의체 운영 (민간경상보조)	2 1회x0.15백만x13명('21) →1회x0.15백만x13명('22)
③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245
	▪ 계량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DB구축	200

(관리용역비)	1식x200백만('21) →1식x200백만('22)
▪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민간경상보조)	45 9,000건x5천원('21) →9,000건x5천원('22)
④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406.35
▪ 형식승인계량기 시판품조사	279
- 시료구입 및 시험수수료 (시험연구비)	279 31종x3백만x3개('21) →31종x3백만x3개('22)
▪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 사업자 사후관리	1.1
- 전문가 수당 (일반수용비)	0.6 2명x0.15백만x1개기관x1일('21) →2명x0.15백만x1개기관x1일('22)
- 출장비 (국내여비)	0.5 2명x0.125백만x1개기관x1일('21) →2명x0.125백만x1개기관x1일('22)
▪ 사용중인 검정계량기 오차검사	30.25
- 전문가 수당 (일반수용비)	16.5 4개 권역x0.15백만x3명x9.17일('21) →4개 권역x0.15백만x3명x9.17일('22)
- 출장비 (국내여비)	13.75 4개 권역x0.125백만x3명x9.17일('21) →4개 권역x0.125백만x3명x9.17일('22)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96
- 시료구입 및 시험수수료 (시험연구비)	96 1,600품목x5천원x3개+1,600품목x45천원('21) →1,600품목x5천원x3개+1,600품목x45천원('22)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계량정보시스템 일평균 이용자수(명)	목표	4,527	5,722	5,894	7,072	7,093	'21년목표(7,072건) 대비 3% 증가로 설정	계량정보시스템의 주요 메뉴의 일평균 이용건수	계량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metrology.kr)
	실적	5,722	6,924	7,624	-	-			
	달성도	126%	121%	129%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 전기자동차 충전기관 관련 제도 제·개정 추진(3건), 법정계량기 기술기준 개정(4건) 등 ☐ 법정단위 제도·홍보관련 • SNS 광고 39회(페이스북 23건, GDN 16건), 오프라인 광고 6건(버스 1건, 포스터 2건 등) • 홍보를 위한 포스터, UCC 공모전 개최 2건, 참여 이벤트 4건 ☐ 사후관리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접수/처리 : 50/55건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전력량계 40건) • 정량표시상품 소비자피해 예방 위한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27종 500품목) • 계량기 실태조사(오차검사)실시 (전국 LPG미터 245건) ☐ 기타 • 국제계량기술회의 및 대외협력회의 참여(4회)
2019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명산출을 위한 가속수명시험 방법 및 기준개발 등 4과제 수행 ☐ 법정단위 제도·홍보관련 • SNS 페이스북 광고 42회 • 홍보를 위한 포스터, UCC 공모전 2회 개최, SNS 이벤트 2건 ☐ 사후관리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접수/처리 : 78/74건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 : 가스미터, 적산열량계, 수도미터 등 3개 품목 27개 모델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27종 503개 제품) • 불법·불량 계량기 단속 (저울 등 573대) ☐ 기타 • 제54차 CIML 회의 등 국제회의 참석(3회)

2020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 스마트미터 제도화 실행방안 수립 등 연구용역 3과제 수행 중('20.3~11월) ☐ 법정단위 제도·홍보관련 • sns홍보 : 11건(공모전 안내, 카드뉴스 등) • 오프라인 광고 :2건(바른단위 ucc, 어린이 포스터) ☐ 사후관리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접수/처리 : 43/41건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 : 온수미터, 가스미터 등 등 4개 품목 24개 모델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538개 제품) 중 ☐ 기타 • 제42차 한일법정계량협력위원회 회의 참석('20.2월)
2021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 스마트전력량계 프로토콜 권고안 개발 등 연구용역 3과제 수행 중('21.4~11월) ☐ 법정단위 제도·홍보관련 • sns홍보 : 27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 사후관리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접수/처리 : 50/50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 : 전력량계, 적산열량계 등 등 4개 품목 36개 모델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599개 제품) 중 ☐ 기타 • 한일 계량분야 협력회의(KASTO-JMIF) 개최('21.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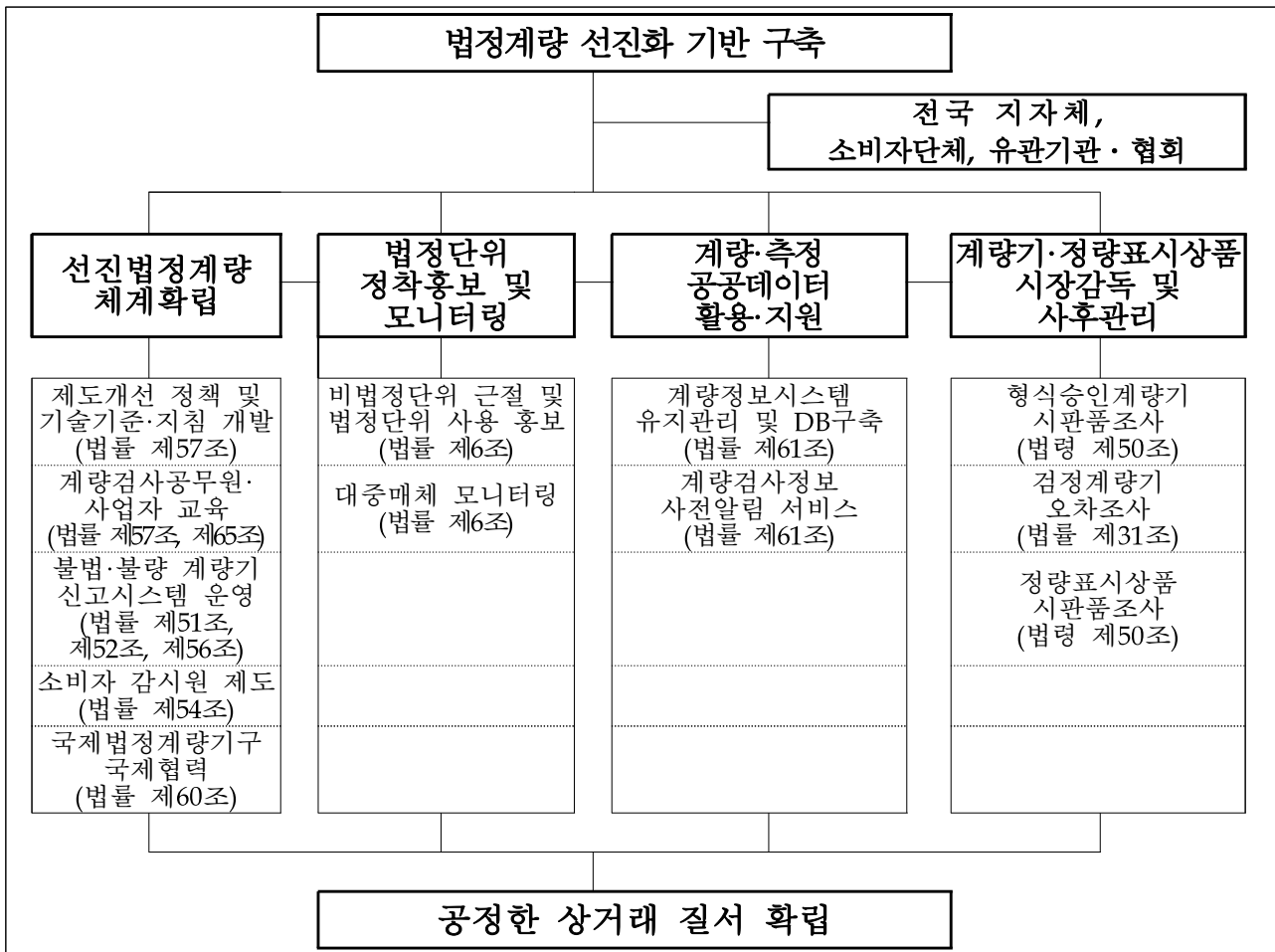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법정계량의 선진화 기반마련
- 국제무역, 상거래 및 측정의 기본인 법정계량에 대한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법정계량제도의 선진화 기반 마련
- 법정단위 사용 정착률 향상을 통한 상거래질서 확립
- 법정단위의 지속적인 홍보·제도화 언론·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률 향상을 통해 상거래 질서 확립과 국제교역 촉진
- * '(법정단위 사용률) : ('13)→85.7%('15)→85.6%('17)→ 87.3%('19)→ 87.2%('20)
- 불법·불량계량기의 유통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 하여 소비자의 손실방지 및 소비자 권익보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1,103	1,400	1,016	996	986	
'21~'25		1,400	1,470	1,470	1,470	1,47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18년 결산) 지적

- (지적) 법정단위 정착 모니터링·홍보 사업은 일반용역비(210-14) 비목을 통해 수행해야 함(일반수용비로 행사 용역 집행)
- (조치) '20예산에 일반용역비(210-14) 비목 신설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법정계량제도 운영

- 전세계 나라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값을 결정하는 체계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법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16년 계량기 산업 실태조사 결과, 법정계량기를 사용한 거래규모는약 700조원으로 추정되며, 모든 경제활동의 바탕이 되는 기반산업으로 지속적인 사업 운영 필요
 - * 비자동 저울 534.5조, 주유기 53.3조, 전력량계 55.6조, 가스미터 15.7조, LPG미터 4.7조 등

□ 계량체계의 디지털 전환 대응

- (추진내용) 계량법제도의 관리 범위 확대* 검토, 다양한 장치들간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 상호운용성 표준·지침 마련 및 국제기준 대응 등 추진
 - (관리 범위 검토) (현재) 계량기기의 계량데이터 생성시 오차(정확도) 관리 → (향후) 계량데이터 생성부터 교류·활용까지 데이터신뢰성(유효성) 관리
 - (국제시장 창출 기반 마련) 스마트미터링분야의 국제기준 대응 및 주요국간의 협력을 추진하여,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 여건 마련

□ 불법·불량 계량기 사후관리 대응체계 강화

- 시판품 조사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판품 조사 부적합 계량기의 철저한 재조사 및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현장조사단 운영을 확대

□ 비법정단위사용 거래관행 변화를 위해 국가주도의 국민 인식전환을 지속 추진

- (추진내용) 정책 인지도 확대하고, 고의성일 경우만 단속을 추진했던 '인치', '파운드' 등 국제적인 비법정단위에 대해서도 사용금지 홍보 및 단속 정책을 추진

□ 계량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 (추진내용) 클라우드 컴퓨팅기술*을 활용하여 240여개 시도공무원, 2,400여개 계량사업자 및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구조전환

* HW·SW 구매·유지 비용 절감, 데이터 입력·관리·활용의 용이성과 높은 데이터 접근성 등으로 향상된 업무효율이 가능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보조사업 연장평가 ('21.5)

- (평가결과) : 68점, 보조사업 목적이 계량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해 일반 국민의 피해방지라는 차원에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지적사항) △사업방식변경: 내역사업 통합 (소비자감시원의 온라인 모니터링사업(13백만원, '20년 기준)을 대중매체의 모니터링사업과 통합, △일정수준 감축: 사업자교육 자부담 전환(1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자교육 제외)

12) 부처 건의사항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 조사 등을 통한 시장 사후관리 확대·강화 필요
- (필요성①) 계량기 법정관리(형식승인·검정)는 他인증제도 대비 사전 규제완화*로 인해 사후관리를 통한 계량기 품질(계량오차) 확인이 필요

* 제24차('11.1.19) “5 %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에 따라 계량기 형식승인 유효기간(10년)을 폐지('11.4.6, 계량법 시행령 개정·시행) 등

<KC안전인증과 계량기 형식승인 제도 비교>.

구분	KC안전인증	계량기 형식승인
제품시험	안전성 시험	계량오차
공장심사	○	×
정기사후관리	○	×

- (필요성②) 계량기 시판품 조사는 年1,000여건의 형식승인 품목 中 3%미만으로 조사(약 30%의 불합격율)*되어 조사범위 확대 필요

* ('18)가스미터(10종/40%), ('19)수도미터(18종/22%), ('20)온수미터(11종/36%)

- (필요성③) 최근 불법 계량기신고센터의 신고·처리 건수가 증가*추세이며, 저울 중량 조작사건의 경찰수사('20.5)** 등이 발생

* 신고센터 신고·처리 : ('18)50건/55건 → ('19)78건/74건 → ('20)80건/80건

** 이노템 전자저울(IP-300)의 고의조작에 대해 충북경찰청이 압수수색('20.05.22)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1,229	-	1,229		±13		1,229	1,221	99.3	99.3		8
2019	1,185	-	1,185		±6		1,185	1,174	99.1	99.1		11
2020	1,103	-	1,103		±4.8		1,103	1,085	98.3	98.3		18
2021	1,400	-	1,400				1,400	1342	95.9	95.9		5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659	659	659	659	-	659	659	-	-	100
2019	633	633	633	633	-	633	633	-	-	100
2020	583	583	583	583		583	583			100
2021.12월	554	554	554	554		554	554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 이·전용 등 사유 : 시험연구비 부족으로 동일사업 운영비(210)내에서 13백만원 세목조정 (일반수용비 → 시험연구비) - 불용 사유 :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8백만원)
2019	- 이·전용 등 사유 : 시험연구비(요소수미터 실태조사) 부족으로 동일사업 운영비(210)내에서 6백만원 세목조정(일반수용비→시험연구비) - 불용 사유 :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10백만원)
2020	- 이·전용 등 사유 : 시험연구비 부족으로 동일사업 운영비(210)내에서 4.8백만원 세목조정 (일반수용비, 관리용역비 등 → 시험연구비) - 불용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취소 및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18백만원)
2021	- 불용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및 행사 취소(27.9백만원)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27.5백만원)

☐ 2021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1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1) 기재부 제출 설명자료
- (2) 부처 내 사업 계획서(별첨)

참고 1

『계량에 관한 법률』 요약

- 계량은 경제활동의 근간으로써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모든 나라에서 법제화하고 있음



< 계량에 관한 법률 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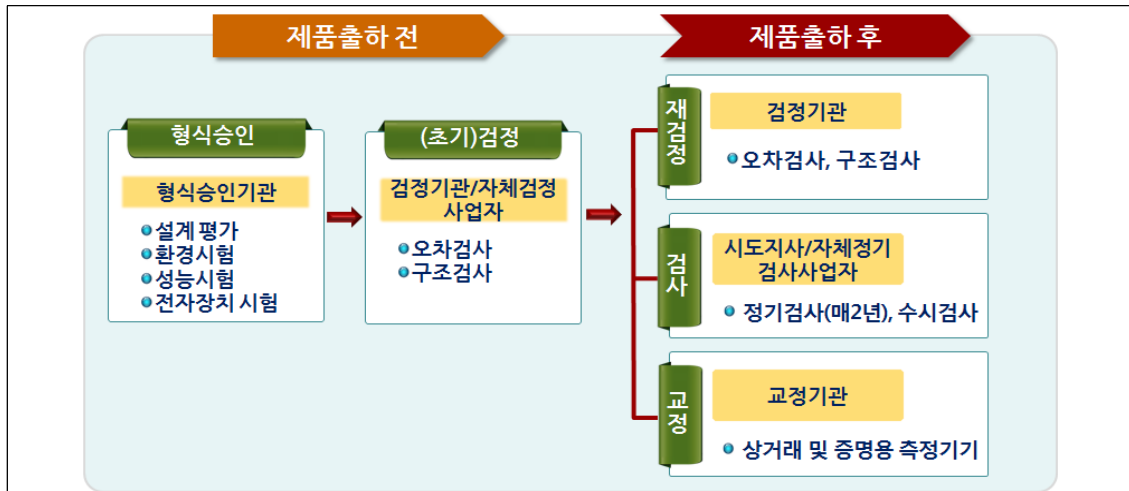
- ① (법정단위) 상거래 기본수단으로 7개 기본단위* 등의 법정단위를 규정하고, 상거래 및 증명에서 비법정단위 사용을 금지

* m(길이), kg(질량), s(시간), K(온도), mol(물질량), A(전류), cd(광도)

- ② (법정계량기)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값의 오차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법으로 정하여, 사전관리(형식승인·검정) 및 사후관리(재검정·정기검사) 의무화

<법정계량기 13종>





< 법정계량기 관리 체계 >

③ (정량표시상품) 포장 개봉없이 실제량 확인이 어려운 상품을 법으로 정하여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

* 곡류, 과자류, 육류, 유제품, 음료 및 주류, 위생용품, 생활용품 등 27종



참고 2

계량정보시스템 현황

- (배경) 전국 지자체 및 시험기관 등 이해관계자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계량기 시험·검사·단속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계량업무 처리의 체계화

* 2개의 형식승인, 1개의 검정기관,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등에서 계량 관련 정보가 전자·비전자문서 형태로 연간 약 900만건 이상 발생

Before	Af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체계화 계량업무처리 · 이해관계자들간의 정보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체계화 및 계량기의 생애주기 관리체계* 마련 · 이해관계자들간 정보 공유

* “최초시험(형식승인) → 검정 → 정기검사(재검정) → 폐기”에 대한 추적·관리가 가능



< 계량정보시스템 개념도 >

- (법정계량기 관리) 계량정보시스템(www.metrology.kr)을 통해 승인 및 검정·재검정 등 시험 진행상황과 최종승인 여부 등 계량기 이력정보의 관리 및 공유

* 시스템의 하루 평균 이용건수: '18(5,722건)→'19(6,924)→'20(7,624건)

- (수입계량기 관리) 법률로 규정된 수입계량기 형식승인·검정 여부가 통관 단계에서 관리되도록 계량정보시스템과 전자통관시스템(관세청)을 연계
- (사전알람) 계량기 사용자에게 재검정·정기검사 일정 알림을 제공

참고 3

법정계량관련 국제 대응 현황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Métrologie Légale)

- (설립목적) 계량기의 국제적 통일로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해, 1955년 24개국이 참가한 프랑스 파리에서 OIML 협약 체결
 - ※ OIML 협약: Convention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 회원국 현황('17년 기준)
 - 정회원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62개국, 준회원국은 필리핀, 이란, 북한, 우크라이나 등 66개국
 - 우리나라는 법정계량제도의 국제적 통일을 위해 1978년 가입
- (주요활동) 회원국 간 법정계량제도의 통일을 위한 법·제도·기술관련 국제기준 제정 및 국제상호인정제도 운영
 - 상거래, 안전, 보건 및 환경 분야에서 소비자 등 일반국민의 보호를 위한 법정계량제도 규제 및 개발도상국의 법정계량기관을 지원 등

□ 아·태 법정계량 포럼(APLMF, Asia-Pacific Legal Metrology Forum)

- (설립목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국가의 정부 간 회의로, 회원국 간 법정계량제도의 국제적 조화로 기술장벽 해소 및 국제교역 촉진을 위해 1994년 설립
- 회원국 현황('17년 기준)
 - 정회원국: 20개국(한국, 호주,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북한,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 준회원국: 6개국(부르나이,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라오스)
- (주요활동) 아·태 지역 내의 법정계량기관들 사이의 상호 신뢰 유지 및 개발 / 법정계량분야에서 무역에 대한 기술 및 행정 장벽 제거 등

□ 한·일 계량협력위원회

- (배 경) 1975년 양국의 계량측정분야 상호 기술협력을 위해 「한·일 계량계측표준협력위원회」를 구축, 이후 2016년 법정계량중심의 「한·일 법정계량협력위원회」로 전환하여 개최
 - (추진경위) 한·일과학기술장관회담에서 위원회 설립 합의('75.8월) / (韓) 공진청 국립공업시험원—(日)공업기술원 계량연구소간 회의('76~'00) / (韓)산업부 기술표준원—(日)계량표준종합센터간 회의('01~현재)
 - (주요활동) 상설 대화기구로 계량협력위원회를 구축하여, 계량 및 기술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 계량 기술 및 법규 등 양국 관심사항 논의
- * 개최방식 : 매년 하반기 짝수년은 우리나라 홀수년은 일본에서 개최

□ 한·중 계량협력위원회

- (배 경)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역할 확대, 양국 간 계량기 교역 증대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등 법정계량분야의 협력 채널 필요에 따라, 2016년 한중법정계량협력 양해각서 체결
 - (추진경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간 한·중 계량협력 양해각서 체결하고, 제1회 한중 법정계량협력위원회 회의 개최('16.3월) / (韓)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中)시장관리감독총국(SAMR)간 회의('18~현재)
 - (주요활동) 계량 및 기술 정보교환 및 R&D 공동 수행, 국제 및 지역별 기구에서의 상호협력 등을 도모
- * 개최방식 : 매년 상반기 홀수년은 우리나라 짝수년은 중국에서 개최

사 업 명						
(9) 국가표준활성화(3731-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1	표준정책국	-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9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국가표준활성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	오광해	전중윤 연구관	조준기 연구사
		043-870-5340	043-870-5341	043-870-534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표준활성화	6,229	6,042	6,042	7,135	7,135	1,093	18.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6,229	6,229	6,124 [3,047]	-	105	6,042	6,042	6,042	5,981 [3,456]	-	61	7,135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1,015	1,147	1,131	-	16	1,117	1,117	1,117	1,103	-	14	1,114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2,952	2,952	2,952 [2,952]	-	-	3,036	3,036	3,036	3,036 [3,036]	-	-	3,865
· 표준화 실태조사	95	95	95 [95]	-	-	70	70	70	70 [70]	-	-	70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713	603	545	-	58	713	713	713	713	-	-	980
·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29	29	28	-	1	-	-	-	-	-	-	-
· 청소년국제표준올림픽	67	60	60	-	-	-	-	-	-	-	-	-
· 표준화 교육	133	118	118	-	-	-	-	-	-	-	-	-
· 국가표준화확산체계조성	285	285	262	-	23	356	356	356	313	-	43	356
·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940	940	933	-	7	750	750	750	746 [350]	-	4	750
○ 비목별 분류(합계)	6,229	6,229	6,124 [3,047]	-	105	6,042	6,042	6,042	5,981 [3,456]	-	61	7,135
· 일반수용비(210-01)	126	88	83	-	5	88	88	88	87	-	1	88
· 시험연구비(210-13)	1,061	1,061	1,003	-	58	1,061	1,061	1,061	1,061	-	-	1,328
· 일반용역비(210-14)	191	207	206	-	1	356	356	356	313	-	43	356
· 국내여비(220-01)	15	22	22	-	-	14	14	20	20	-	-	13
· 국외업무여비(220-02)	7	-	-	-	-	6	6	-	-	-	-	6
· 사업추진비(240-01)	35	35	35	-	-	31	31	31	31	-	-	29
· 일반연구비(260-01)	1,070	1,092	1,074	-	18	1,030	1,030	1,030	1,013	-	17	1,030
· 민간경상보조(320-01)	420	420	420	-	-	350	350	350	350 [350]	-	-	35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257	257	234	-	23	-	-	-	-	-	-	-
· 사업출연금(350-02)	3,047	3,047	3,047 [3,047]	-	-	3,106	3,106	3,106	3,106 [3,106]	-	-	3,935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1,015	1,147	1,131	-	16	1,117	1,117	1,117	1,103	-	14	1,114
-일반수용비(210-01)	40	40	35	-	5	88	88	88	87	-	1	88
-시험연구비(210-13)	348	458	458	-	-	348	348	348	348	-	-	348
-국내여비(220-01)	15	22	22	-	-	14	14	20	20	-	-	13
-국외업무여비(220-02)	7	0	0	-	-	6	6	-	-	-	-	6
-사업추진비(240-01)	35	35	35	-	-	31	31	31	31	-	-	29
-일반연구비(260-01)	570	592	581	-	11	630	630	630	617	-	13	630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2,952	2,952	2,952	-	-	3,036	3,036	3,036	3,036	-	-	3,865
-사업출연금(350-02)	2,952	2,952	2,952	-	-	3,036	3,036	3,036	3,036	-	-	3,865
· 표준화 실태조사	95	95	95	-	-	70	70	70	70	-	-	70
-사업출연금(350-02)	95	95	95	-	-	70	70	70	70	-	-	70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713	603	545	-	58	713	713	713	713	-	-	980
-시험연구비(210-13)	713	603	545	-	58	713	713	713	713	-	-	980
·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29	29	28	-	1	-	-	-	-	-	-	-
-일반용역비(210-14)	29	29	28	-	1	-	-	-	-	-	-	-
· 청소년제품인증사업	67	60	60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67	60	60	-	-	-	-	-	-	-	-	-
· 표준화 교육	133	118	118	-	-	-	-	-	-	-	-	-
-일반수용비(210-01)	38	0	0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95	118	118	-	-	-	-	-	-	-	-	-
· 국가표준화혁신생태계조성	285	285	262	-	23	356	356	356	313	-	43	356
-일반수용비(210-01)	28	28	28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	-	-	-	-	356	356	356	313	-	43	356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57	257	234	-	23	-	-	-	-	-	-	-
·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차리 플랫폼 구축	940	940	933	-	7	750	750	750	746	-	-	750
-일반수용비(210-01)	20	20	20	-	-	-	-	-	-	-	-	-
-일반연구비(260-01)	500	500	493	-	7	400	400	400	396	-	4	400
- 민간경상보조 (320-01)	420	420	420	-	-	350	350	350	350	-	-	3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가 간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표준 수준의 국가표준 개발·정비 및 국가차원의 표준 전략 마련
 - 기술혁신·시장변화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민간주도형 국가표준화체계 운영을 위한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 운영
 - 국제무역 규범에 대응하는 글로벌 표준인력을 양성하고,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를 위한 표준화 활동 유공자 포상, 초중고 교육, 청소년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 등 운영
 - 중소·중견기업의 인증 취득 부담(시간·비용 등)을 완화하여 신제품의 시장진출을 지원
- ①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표준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표준화 정책 개발, 전략분야 표준화 로드맵 등 표준 정책 연구(학술연구용역), 국가표준(KS) 검토·심의 등을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 ②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국가표준의 개발·정비 등의 표준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 및 운영(표준안 개발)
 - ③ **(표준화 실태조사)** 「산업표준화법」 개정(시행 '15.7월)에 따라 정부는 매년 의무적으로 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 표준화 전략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 실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조사사업
 - ④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따라 KS인증 제품에 대해 매년 불시 점검을 실시, 불량 KS인증 제품의 시중 유통 근절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
 - ⑤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세계 표준의 날」을 기념하여 표준화 활동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개인·단체 포상을 통한 노고 치하 및 대국민 표준 인식 제고
 - ⑥ **(청소년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국내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준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표준에 대한 인식제고 도모
 - ⑦ **(표준화 교육)** 국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생활 속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미래 국제표준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시범학교, 방문교육, 교사연수)
 - ⑧ **(국가표준화혁신생태계조성*)** 4차 산업혁명 관련 표준 선도국 및 국제기구와의 표준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표준포럼 및 국내정책패널 운영을 통한 표준 선점 기반마련
- * '21년 예산안에서 ⑤(표준의 날), ⑥(올림피아드), ⑦(교육)이 ⑧(생태계조성)으로 흡수·통합
- ⑨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한 제품에 목적이 다른 다수 법정인증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및 창구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127조 제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1조(적합성평가 체제의 구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산업표준화법
 -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5조의2(출연금), 제6조(산업표준의 제정등의 신청·협의), 제15조(제품의 인증), 제20조(시판품조사 등),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제30조의2(실태조사), 제31조(보조금)
- WTO/TBT협정 제2조 제4항(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기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0.1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06.5.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07.5. 산업표준화법 개정(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민간의 표준 참여확대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12.7.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VIP보고)
- 2016.4.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17.12. 『유망 신산업(12대 분야) 표준화 로드맵』 수립
- 2018.9.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III)”의 개선과제 발표
 - * 기업애로 해소 : 기술·제품에 대한 인증부담 완화(LED 조명 제품 관련 원스톱 창구 마련 및 유사·동일시험항목의 절차 비용 면제 추진
- 2019.3.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수립
 - : 2023년까지 10대 신산업 분야 고유표준 300종 개발 목표
- 2019.4.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경제관계장관회의) 수립
- 2019.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수립
 - : 「300-60 프로젝트」 - 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 국제표준 300종 개발,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60명 배출 목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0~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산·학·연 및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출연	한국표준 협회	3,865	100	산업표준화법 5조3항, 산업표준화법 5조 의2,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
표준화 실태조사	출연	한국표준 협회	70	100	산업표준화법 30조의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조의2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보조	한국표준 협회	350	100	산업표준화법 제31조

3) '22년도 예산 산출 근거

방향 및 지원필요성

- 국가기술표준원의 임무인 KS(한국산업표준)체계 운영을 위한 유일한 국가예산
 - 기술·사회적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KS 개발·정비를 통해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증액을 추진할 예정
 - 특히,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 상의 '4차 산업혁명 10대 분야 KS 300종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사업의 지속적 증액 필요
 - * 수소경제표준화전략, 서비스표준화전략, 탄소중립표준화 전략 등 기수립 정부정책 이행 필요
- 4차 산업혁명, ESG, 글로벌 통상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세계 시장 선점, 국민안전 담보 등에서 표준 역할이 더욱 부각
 - 국가대표 기술기준인 국가표준* 관련 ▲신제품·서비스의 표준 제정, ▲2만 여종 국가표준의 주기적 정비, ▲표준의 효과적인 활용·확산, ▲고품질 KS인증제품 유통 등이 필요하나, 현 60억 예산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
 - * 쏘분야 20,917종,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5년 마다 의무적 검토를 통해 ▲제정, ▲개정, ▲확인, ▲폐지 절차를 진행 (전문위·심의위 384개운영)

세부 내용(확정액 반영)

(1)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 (2021) 1,117 → (2022조정) 1,114백만원, △0.3%

- 학술연구용역을 통한 국가표준화체계 운영 개선을 위한 법령·제도 연구, 기술적·사회적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핵심·선도 산업 분야 표준화 전략 수립 등
- 표준안 심의, 부처별 표준 중복성 검토 등을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 (반영) 국내여비(△1백) 및 사업추진비(△2백) 일부 조정
- (산출)
 - * 일반수용비(인쇄비, 발표수당, 회의비, 설명회 개최 등) : 1식x88백만원 = 88백만원
 - * 시험연구비(기술·전문위원회 수당) : 204회x14만원x12명 = 348백만원
 - * 국내여비 : 186회 × 7만원 = 13백만원
 - * 국외업무여비 : 2회 × 3백만원 = 6백만원
 - * 사업추진비 : 1식x29백만원 = 29백만원
 - * 일반연구비(학술연구용역) : 20과제 × 31.5백만원 = 630백만원

(2)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2021) 3,036 → (2022조정) 3,865백만원, +27.3%

- 산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신속히 발굴·반영하기 위해 국가표준 개발·관리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민간주도형 국가표준화생태계 운영('07~)
- (반영)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등 정책이행(5년 300종 제정)을 위한 표준제정 확대, 표준개발협력기관에 미지정 표준 이양 등을 감안 '21년 대비 +27.3% 반영
* 표준제정 300종(5년), '19(38종) · '20(48종) · '21(48종) · '22(83종) · '23(83종)
- (산출)
→ ('22년) 3,865백만원 = 고유표준 개발(60종 x 20백만원)
+ 국제표준 부합화 (250종 x 1백만원)
+ 국가표준 정비(확인·개정·폐지 2,600종 x 0.75백만원)
+ 기관별 TC/SC 대응(335백만원 = 67개 기관 x 5백만원)
+ 대표기관 운영비(130백만원)

(3) 표준화 실태조사 : (2021) 70 → (2022조정) 70백만원, 전년동

- 「산업표준화법」개정(시행 '15.7월)에 따라 정부는 매년 의무적으로 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표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
- 산업분야별 국내 기업의 표준화 및 인증제품의 활용 실태 등을 조사
- (반영) 전년도와 동일 내역 반영
- (산출) 1,000개 업체 x 7만원 = 70백만원

(4)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2021) 713 → (2022조정) 980백만원, +37.4%

- 불량 KS제품 시중유통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KS인증제품 중 품질취약 품목을 중점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표시제거, 판매정지 등 행정조치 수행(제품구매/현장채취 → 공인시험기관 의뢰 → 행정조치)
- (반영) 언론·국회지적 등 시판품조사 수요가 급증하여 불법·불량 KS인증제품의 조사 필요성 확대, '21년 대비 +37.4% 반영
- (산출) 전체13,628개 업체 중,
('22) 5% (680개 업체) x 1회 x 1.44백만원 = 980백만원

(5) 국가표준화혁신생태계조성 : (2021) 356 → (2022조정) 356백만원, 전년동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국제표준포럼 및 국내정책패널 구성·운영
- 세계표준의날 행사, 민간주도형 국가표준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 및 유공 포상
- 국내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준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 경진대회인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표준에 대한 인식제고
- 국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생활 속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미래 국제·국가표준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 (반영) 전년도와 동일 내역 반영
- (산출) 356백만원 = 국제표준포럼·국내정책패널 개최(1식 × 100백만원)
 - +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 개최(행사대행 용역 1건 × 29백만원)
 - + 청소년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최 (행사대행 용역 1건 × 80백만원)
 - + 표준화 교육(147백만원 = 표준교육 시범학교, 찾아가는 표준교육, 교사연수·교재개발 등)

(6)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구축 : (2021) 750 → (2022조정) 750백만원, 전년동

- 하나의 제품에 목적이 다른 다양한 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의 불편함과 부담(시간·비용 등)을 완화하여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
- 기업불만도 및 인증수요가 높은 산업분야에서 50개 품목을 5년간 발굴하고, 원스톱처리 창구를 통한 지원 추진
- (반영) 전년도와 동일 내역 반영
- (산출)
 - (‘22) 750백만원 = 조사·분석 및 처리방안 마련(일반연구비, 400백만원
 - = 신규품목 2개 × 50백만원
 - + 기존 품목 유지보수 20개 × 1.5백만원
 - + 창구운영(민간경상보조, 210백만원 = 20개 품목 × 10.5백만원
 - + 원스톱처리 프로세스 구축(민간경상보조, 140백만원 = 1식 × 14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신산업·신수요 분야의 국가표준 개발율(단위: %)	목표	75	75	75	75	75	국제표준화 동향 및 산업환경 변화 에 따른 표준화 우 선순위, 예산 등을 감안하여 신산업· 신수요 분야의 국 가표준 개발을 목 표치 설정	신산업·신수요 분야 국가표준 개발수 /Σ국가표준 개발수 *100	국가기술표준원 내부 통계자료,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
	실적	75	76	77	75 (잠정)	-			
	달성도	100	101	103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정·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18.6월말 KS 20,39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개정 고시(810종) : 제정 195종, 개정 354종, 확인 216종, 폐지 45종 ○ 민간 중심의 상향식 표준화 체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개발협력기관 62개 기관 지정(KS 20,396종 중 15,301종(75%) 관리 이양) ○ 불량 KS인증제품에 대한 시장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재산 및 신체 위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KS인증제품의 품질 확보 및 소비자 민원 등에 따른 품질취약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확대 추진 (조사건수 287건, 표시정지/판매정지 50건, 인증취소 5건, 개선명령 17건) ○ 표준올림픽피아드 국제대회 실시('18.8.8~10, 용인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의 예선을 거치고 우리나라의 본선에 참여하도록 안내 (국내·외 10개국 중·고등학생 48팀(140명) 및 지도교사, 심사위원 등 총 200명 참석) - 향후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대회로 도약 준비 ○ 스마트시티 아시아지역 포럼 개최('18.6.20.~21,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의 표준화 공조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의 장 마련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지역 9개국 180여명 참석) - 동 포럼을 계기로, 향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에 공동대응 및 지역표준을 통한 아시아 교역활성화를 위한 지역 표준화기구 설립 유도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정·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19.12월말 기준 KS 20,73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364종, 개정 1,356종, 확인 2,590종, 폐지 137종 ○ 민간 중심의 상향식 표준화 체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개발협력기관 63개 기관 지정 : KS 20,734종 중 15,518종(75%) 관리 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 KS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재산 및 신체 위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KS인증제품의 품질 확보 및 소비자 민원 등에 따른 품질취약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확대 추진 (조사건수 382건, 표시/판매정지 37건, 인증취소 29건, 개선명령 13건) ○ 제14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최('19.7.23.~25,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의 예선을 거치고 우리나라의 본선에 참여하도록 안내 (국내·외 10개국 중·고등학생 48팀(143명) 및 지도교사, 심사위원 등 총 200명 참석) - IEC 사무총장상에 이어, ISO 사무총장상이 추가됨 ○ 스마트시티 아시아지역 표준포럼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표준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부·국토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표준정책 패널 운영위·분과위 구성·운영을 통해 기업적용가이드 발간 등 표준정책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시티 아시아지역 표준포럼 개최 (11월, 9개국 150여명) ▶ 수소경제 국제 표준포럼 개최 (6월, 6개국 200여명) ▶ 바이오 빅데이터 표준포럼 개최 (6월, 11월, 국내외 200여명) ▶ 인공지능산업 표준포럼 개최 (12월, 국내외 100여명) ▶ 스마트헬스 표준포럼 개최 (6월, 12월, 국내 60여명)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20년 12월 말 기준 KS 20,017종 유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310종 개정 1,325종, 확인 2,068종, 폐지 127종 등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개 기관 지정, KS 중 약 75%(약 15,000여종) 관리 이양 ○ '20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표준·인증 관련 대국민 인지도 조사(1,000명) - 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 KS표준·인증 활용 실태조사(1,000개)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20년 총 48개품목 40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 : 레미콘 206개 업체, PVC/PE관 4개품목 17건 조사 - 일반관리 : LED조명, 단열재, 차단기 등 43개 품목 180건 조사 ○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사업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시나리오 개발(6개 품목, 세부 62개 제품) 및 원스톱처리 온라인 플랫폼 ISP 도출 - 기업상담·홍보(상담: 39건, 홍보: 약 344건), 통합 인증진행(완료7건, 진행중 4건, 기타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후원 ISO, IEC, NIS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예선 및 본선 개최 - 중국, 인도네시아, 케냐, 싱가포르, 한국 등 5개국 중·고등학생 및 지도교사 등 총 300명 참여 ○ 초·중·고 표준화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교육 시범학교 운영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0개교) - 찾아가는 표준교육 진행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46개교, 고등학교 23개교 / 15,904명) - 교원 및 관리자 직무연수(6회 / 118명)
--	--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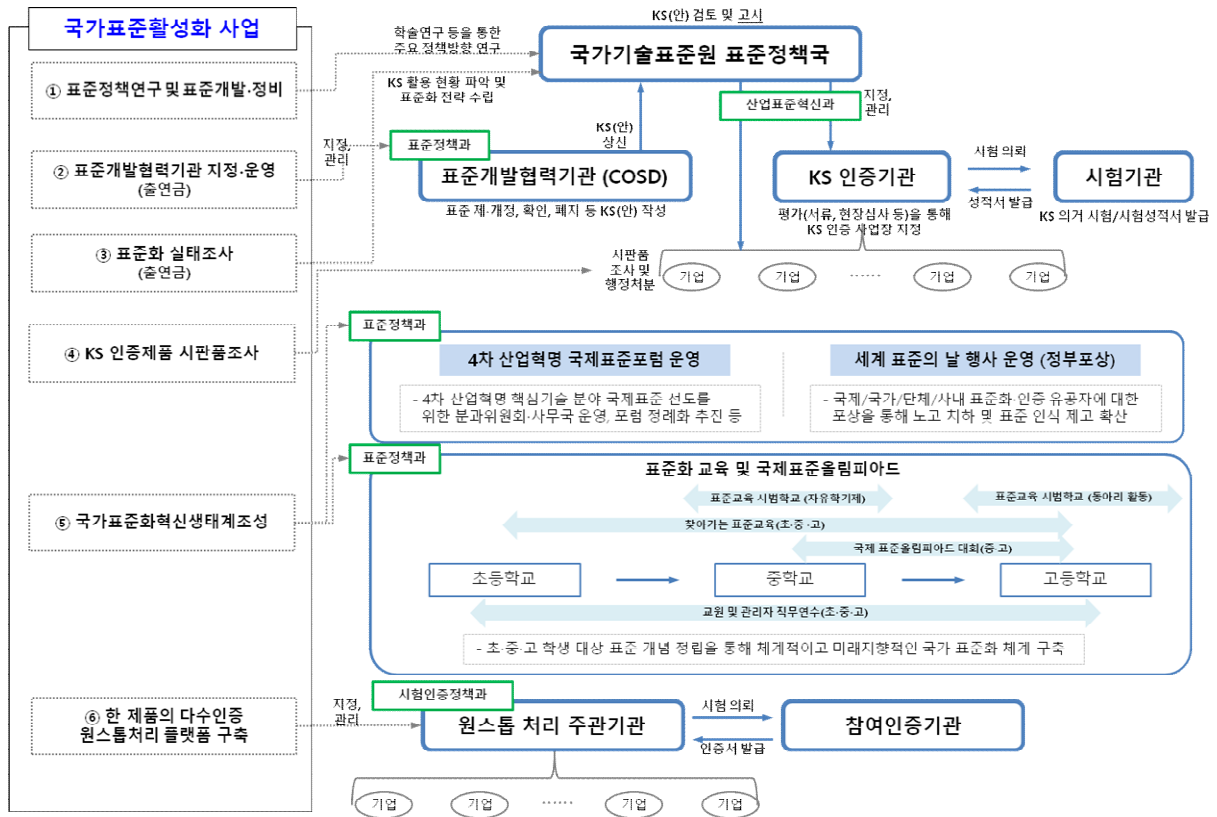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제정, 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산업경쟁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327종, 개정·확인·폐지 3,000종 등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민간 표준화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7개 기관 지정, KS 중 관리이양 75% 이상 ○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표준·인증 활용 실태조사(1,000개)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20년 총 48개품목 40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판품조사 대상 업체 전체 대비 5%(680여개 업체)로 증가 ○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시나리오 개발(신규 2개 품목 포함 총 4개 제품군) - 20개 품목에 대한 원스톱처리 지원센터 구축·운영(상담창구 전국 11개, 제품별 전문창구 6개) 및 원스톱처리 모의시뮬레이션 온라인 서비스 제공 - 기업상담·홍보(상담: 300건, 홍보 약 1,000건), 통합인증진행(40건) ○ 국제표준올림피아드(후원 ISO, IEC, NIS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비대면 또는 혼합 방식 개최 결정 - 해외 참여 독려, 표준선진국(독일 등) 포함 10개국 이상 참여하는 행사로 정착 ○ 초·중·고 표준화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교육 시범학교 운영 확대(중·고등학교 25개교 이상) - 찾아가는 표준교육 운영 확대(초·중·고등학교 120개교 이상) - 교원 및 관리자 직무연수 확대
------	---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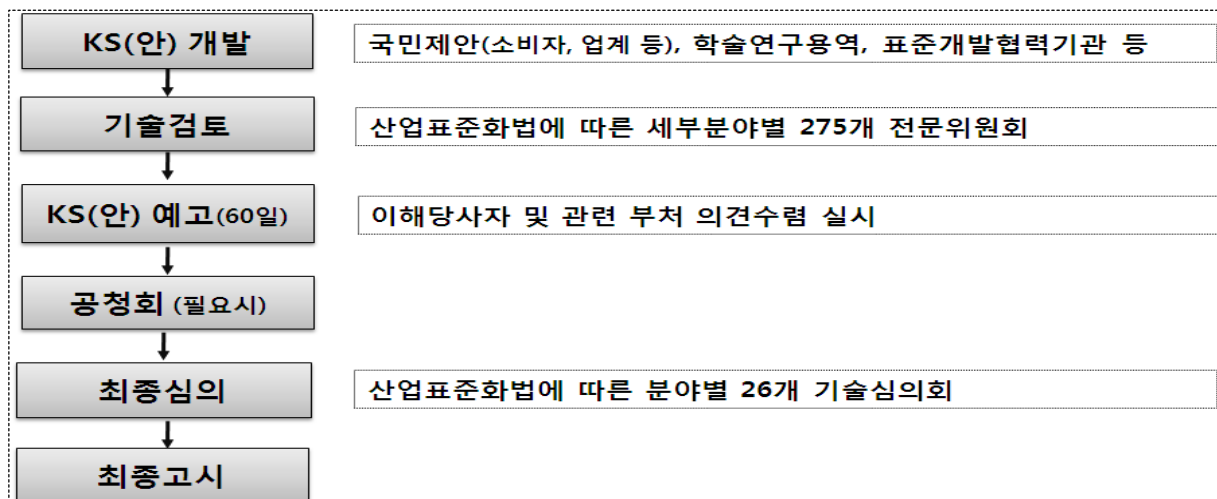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수행체계 (세부사업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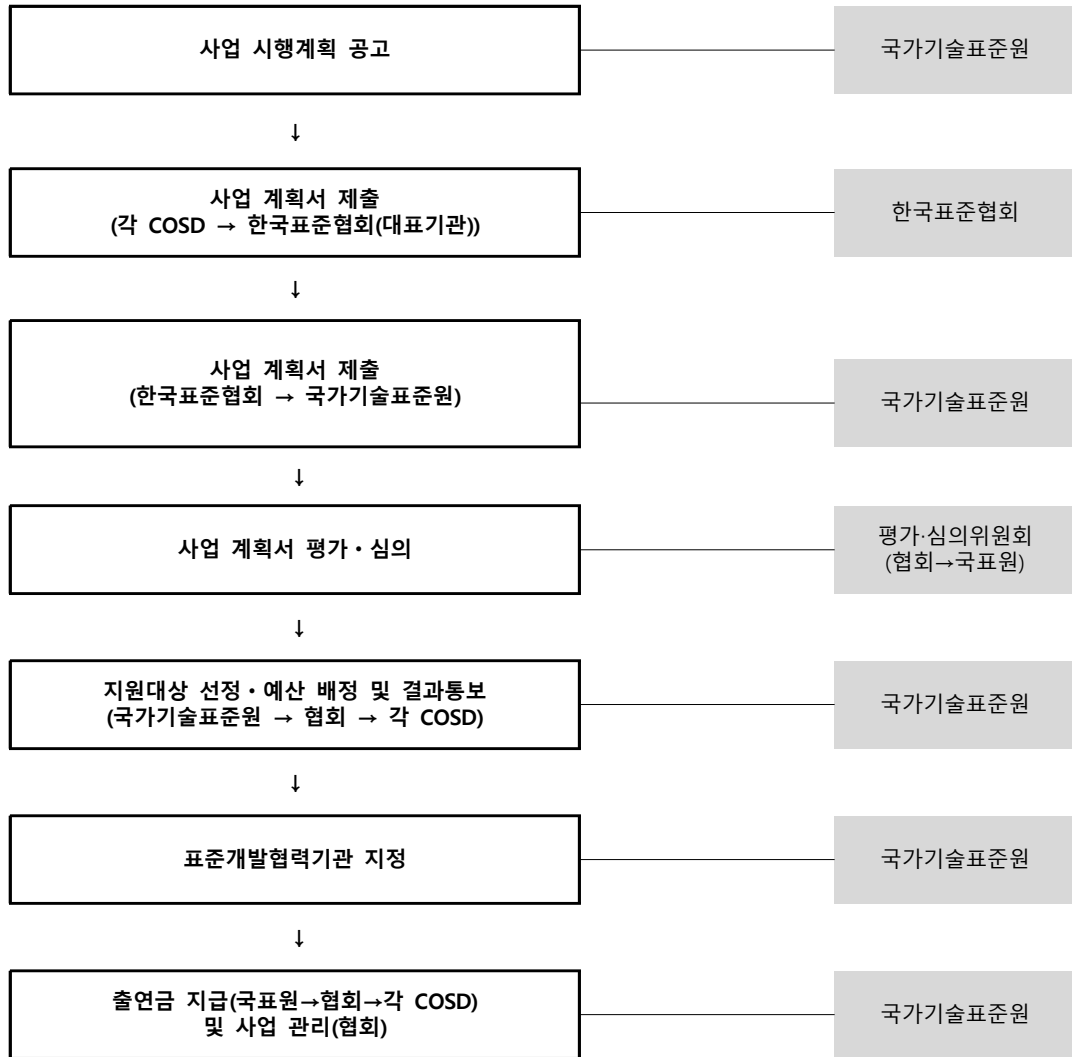


■ 내역사업별 사업수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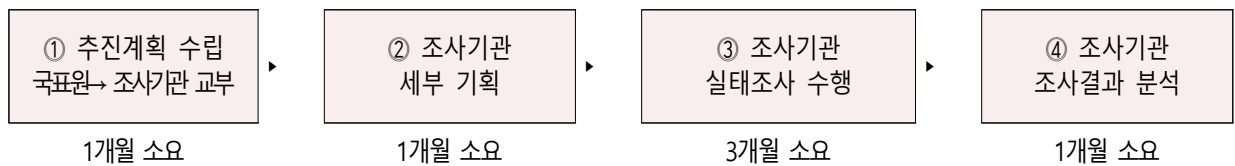
<국가표준 제·개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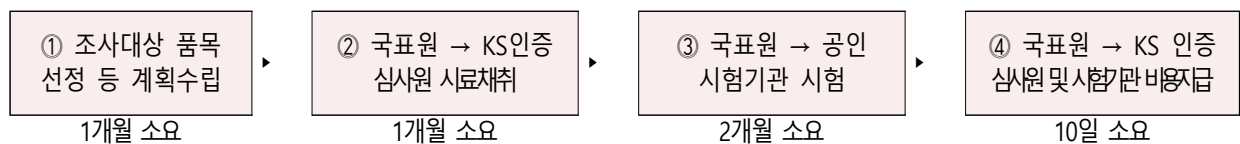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추진체계>



<표준화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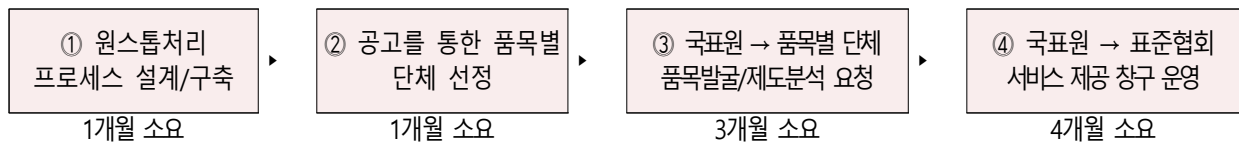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국가표준화혁신생태계조성(일반용역) >

표준의 날 기념식	공고 및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포상자 선정 ▶ 기념식 기획 ▶ 기념식 개최
청소년국제 표준올림피아드	과제 개발 ▶ 국내외 홍보 ▶ 예선대회 개최 ▶ 본선대회 개최 ▶ 결과 시상
표준화 교육	연구학교 신청·지정 ▶ 교사 연수 ▶ 연구학교 운영 ▶ 평가 실시 ▶ 운영보고회
국제표준포럼	용역공고 및 접수 ▶ 수행기관 선정 ▶ 포럼 수요 발굴 ▶ 포럼 개최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체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6,229	6,540	7,732	8,157	8,257	
'21~'25		6,042	6,887	7,268	7,565	7,80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적) 사업의 목적에 맞는 표준화 교육 직무연수 운영 필요('18년 산중위 결산 검토)
(조치) 교원대상 직무연수 및 기능함양 교육의 취지에 맞도록 콘텐츠 보강 및 다수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적) LED조명 제품 등의 다양한 인증으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원스톱 처리창구 구축·운영에 신규예산 반영 필요('19년 예산편성 산중위, 예결위)
(조치) '20년 예산 내역사업(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9.4억원)으로 반영 완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충실한 조치를 이행하고, 예산 불용 최소화 등 집행률 제고 노력을 인정함('2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 적극적인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한 노력이 확인됨, 추진 사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사업성과 제고에 기여('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국회 지적사항 내용에 기재하였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본 사업 관련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및 그 내용에 따라 표준 개발,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하겠음

관련 국가계획	상정 회의	본 사업 관련 내용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9.3월)	· 4차 산업혁명 관련 10대 표준화 분야 국가표준 300종 개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경제관계 장관회의('19.4월)	· 연료전지, 공급시설 분야 '21년까지 국가표준 18종 제정, KS인증품목 30건 지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19.6월)	· 신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국가표준개발 및 기업제공, 인증품목 지정·관리
「비대면경제 표준화 전략」	비대면경제 표준 오픈 포럼 출범('20.9월)	· 비대면 경제 분야 핵심표준 50종 개발 및 실증·인증체계 구축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21.3월)	· 4-1-2 : 표준인증체계 선제적 구축 → 탄소중립 표준화전략 수립예정('21년말)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21.4월)	· '25년까지 100대 핵심 서비스표준 개발 (▲유망서비스, ▲생활서비스, ▲사회안전서비스)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자체평가 결과

-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충실한 조치를 이행하고, 예산 불용 최소화 등 집행을 제고 노력을 인정함('2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 적극적인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한 노력이 확인됨, 추진 사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사업성과 제고에 기여('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12) 부처 건의사항

- 국가기술표준원의 임무인 KS(한국산업표준)체계 운영을 위한 유일한 국가예산으로 기술·사회적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KS 개발·정비를 통해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증액이 필요함
- 국가대표 기술기준인 국가표준* 관련 ▲신제품·서비스의 표준 제정, ▲2만 여종 국가표준의 주기적 정비, ▲표준의 효과적인 활용·확산, ▲고품질 KS인증제품 유통 등이 필요하나, 현 60억 예산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
 - * 소분야 20,917종,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5년 마다 의무적 검토를 통해 ▲제정, ▲개정, ▲확인, ▲폐지 절차를 진행 (전문위·심의위 384개운영)
- 특히,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 상의 '4차 산업혁명 10대 분야 KS 300종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사업의 지속적 증액 필요
 - * 수소경제표준화전략, 서비스표준화전략, 탄소중립표준화전략 등 기수립 정부정책 이행 필요하며,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이행만을 고려해도 '22년 최소 83종 표준제정이 필요함
- 또한 4차 산업혁명, ESG, 글로벌 통상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세계 시장 선점, 국민안전 담보 등에서 표준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4,058	-	4,058	-	-	-	4,058	4,031	99.3	99.3	-	27
2019	4,054	-	4,054	-	±25	-	4,054	4,028	99.4	99.4	-	26
2020	6,229	-	6,229	-	±45	-	6,229	6,124	98.3	98.3	-	105
2021	6,042	-	6,042	-	-	-	6,042	5,981	98.9	98.9	-	6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1,897	1,897	1,897	1,897	-	1,897	1,897	-	-	100
2019	1,694	1,694	1,694	1,694	-	1,694	1,694	-	-	100
2020	3,467	3,467	3,467	3,467	-	3,467	3,467	-	-	100
2021.12월	3,456	3,456	3,456	3,456	-	3,456	3,456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27백만원
2019	- 세목조정 : 표준화 교육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수용비 40백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전용 국내여비 부족액 충당을 위해 국외여비 3백만원을 국내여비로 전용 용역 낙찰차액(표준의날 1백만원, 올림 6백만원, 교육 11백만원)의 불용 최소화를 위해 일반수용비로 전용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26백만원
2020	- 세목조정 : 표준화 교육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수용비 38백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전용 국내여비 부족액 충당을 위해 국외여비 7백만원을 국내여비로 전용 용역 낙찰차액(올림피아드 7백만원, 교육 15백만원)의 불용 발생 최소화를 위해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사업 일반연구비로 전용 코로나 확산에 따른 시판품조사 불용 최소화를 위해 110백만원을 표준개발 심의수당으로 전용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105백만원
2021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61백만원

☐ 2021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1.11.08.)	국가표준활성화 (3731-309)	220-02	6	국가표준활성화 (3731-309)	220-01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출장에 비해 국내출장수요 증가,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조정

☐ 2021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기재부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 및 설명자료 첨부(필수 제출)

: 본 자료 본문에 내용을 입력하였으며 아래 [(3)기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 항목에 설명자료를 첨부함

(2) 부처 내 사업 계획 첨부(필수 제출)

: 본 자료 본문에 내용을 입력하였으며 아래 [(3)기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 항목에 설명자료를 첨부함

(3) 기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

□ 사업 개요

- (개요) 헌법에 명시*된 국가표준제도 확립을 위한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제도 운영·혁신 관련 업무 추진예산**

* (헌법 제127조 제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국정과제 34-6)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표준·인증 혁신」 연관

□ 증액 필요성

-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생산한다 해도, 성능과 안전성을 담보해주는 ‘표준’이 없다면 수요처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판매 불가
→ (해결책) 민간의 표준화 수요를 실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파악, 기술·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의 활성화를 통한 KS 표준 개발 및 제·개정이 절실

□ 관련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산업표준화법 및 최근 발표 전략

관련 국가계획	상정 회의	본 사업 관련 내용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9.3.)	· 4차 산업혁명 관련 10대 표준화 분야 국가 표준 300종 개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경제관계장관회의(‘19.4.)	· 연료전지, 공급시설 분야 ‘21년까지 국가표준 18종 제정, KS인증품목 30건 지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6.)	· 신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국가표준 개발 및 기업제공, 인증품목 지정·관리

- (국정과제* 연관성)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분야 우리나라 기술·제품의 판매 및 수출이 가능하려면, 성능과 안전성을 담보해주는 도구인 ‘인증’과, 그 기준인 ‘표준’이 필수

* [34-6]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표준·인증 혁신’

- (예시) 수소산업 관련 표준화 미비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
 - 국내 A 업체가 실내운용 지게차용 배터리를 연료전지로 대체하여 납품하려 하였으나, 관련업체(수요처, 보험사 등)에서 안전담보를 위해 KS 인증을 요구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상태
 - 지게차 등 건설기계용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한 선도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준(표준) 미비로 판매가 지연
- 기술발전·시장변화 속도에 적기 대응하고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국가표준화체계 운영이 필요
 - KS 개발 및 제·개정, 시판품 조사를 통한 인증제품 품질 유지, 신산업 분야 국가·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및 협력 강화,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 등 국가표준화체계 운영 관련 유일 예산

□ 수요자 중심의 신산업 분야 표준 개발 필요성 증가

-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산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적시 반영하고, 20,000 여종에 달하는 국가표준(KS)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전문성을 활용한 내용 검토 등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이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산업기술의 발전 및 국제표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COSD 예산 증액 및 산업분야별 추가 지정이 필요

□ 주요국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유사제도 사례

- 표준 선진국의 경우 표준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국가표준의 개발·관리 업무를 분담해 운영. 대체적으로 미국·유럽 등이 민간중심, 한·중·일 등 아시아 국가는 정부중심으로 운영해옴

국가	특징	주요 내용
	민간 주도의 상향식 표준개발 체계	미국표준원(ANSI)은 자신 협단체 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등록할 수 있는 공인 표준개발기관(Accredited SDO, 280여개)을 지정하고, 이 기관들을 통해 국가표준 제정 등록활동이 전개
	정부주도와 민간참여의 병렬형 표준개발 체계	경제산업성 산업표준위원회(JISC)는 특정표준화기관(CSB; Competent Standardization Body) 제도를 도입하였고, '18년 일본 국가표준 제정의 민간 주도 및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 CSB 지정절차와 동일하게 인정된 산업 표준단체 250여개가 국가표준 개발 작업에 참여 (국가표준 개발의 90% 주도)

- 국가표준 개발협력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표준화 상근조직 보유, 담당분야의 전문성 보유,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조정 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운영

□ 주요국 표준화 교육 현황

- (ISO) 표준교육 우수대학 시상, 개도국 대상 표준교육 지역워크숍 개최
 - 한국(KATS)-ISO 표준교육 공동 워크숍 매년 개최
- (미국) NIST 보조금을 받은 대학을 중심으로 표준의 인식제고 중심으로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확산 추세
 - NIST 보조금을 통해 대학 정규커리큘럼에 표준화 내용을 반영하여 표준 인식 제고를 추진중이며, 해당 보조금은 '12년 15만불에서 '15년 492만불로 점진적 예산 확대
 - 조지워싱턴대학(환경에너지), 펜실베니아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지타운대학(커뮤니케이션), 스티븐스공과대학(과학기술) 등 20여개 대학이 참여
-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실생활과 사회에서 표준의 중요성 관련 강의 주관
 - (초) 일상생활의 표준사례, 표준의 기능, 그림문자를 사용한 의사소통
 - (중) 표준 및 표준화의 개요, 표준화 및 비표준화 사례, 미래의 표준화
 - (고) 표준개요, 일본의 표준, 표준화 및 국제표준의 중요성, 각국의 활동
- (중국) 질량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집중적인 표준 관련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으로서 표준화와 품질관리 분야에 학부 및 석사 과정을 제공
 - 질량대학은 표준공학 학사-석·박사-단과대학 등을 통해 '84년부터 집중적으로 표준 인력을 양성하여 2,100명 졸업생 중 80%가 표준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

- (스위스) 제네바대학은 '표준정책 석사과정'(표준·규제·지속가능)을 운영
 - 제네바 대학과 ISO는 '12년 MOU를 체결하고 표준 및 지속가능성 공동 석사과정 도입
- (영국) 초.중.고등학교 표준화 교육을 교과과정으로 운영
 - 교육부에서는 7-11세(Primary), 11-14세/14-19세(Secondary)구분하여 표준화교육 실시

사 업 명						
(10)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3731-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12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시험인증정책과	박형민	김종윤 연구관	김효중 연구사
		043-870-5480	043-870-5487	043-870-548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시험인증산업 경쟁력및신뢰성제고	-	-	-	5,595	5,595	5,595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5,595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	-	-	-	-	-	-	-	-	-	-	300
·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	-	-	-	-	-	-	-	-	-	-	1,250
· 시험인증산업 현황파악 및 기초인력 양성	-	-	-	-	-	-	-	-	-	-	-	320
·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	-	-	-	-	-	-	-	-	-	-	3,725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5,595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	-	-	-	-	-	300
· 사업출연금(350-02)	-	-	-	-	-	-	-	-	-	-	-	5,245
· 연구개발기획평가 관리비(360-06)	-	-	-	-	-	-	-	-	-	-	-	5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5,595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	-	-	-	-	-	-	-	-	-	-	300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	-	-	-	-	-	300
·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	-	-	-	-	-	-	-	-	-	-	1,250
-사업출연금(350-02)	-	-	-	-	-	-	-	-	-	-	-	1,250
· 시험인증산업 현황파악 및 기초인력 양성	-	-	-	-	-	-	-	-	-	-	-	320
-사업출연금(350-02)	-	-	-	-	-	-	-	-	-	-	-	320
·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	-	-	-	-	-	-	-	-	-	-	3,725
-사업출연금(350-02)	-	-	-	-	-	-	-	-	-	-	-	3,675
-연구개발기획평가 관리비(360-06)	-	-	-	-	-	-	-	-	-	-	-	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제품·서비스의 안전기준, 성능 미달 사례와 같이 부정·부실 성적서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및 적합성평가*의 신뢰 저하를 방지하고자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운영

* 적합성평가 : 제품·서비스·공정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시험, 검사, 인증 등의 활동

-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시험·인증서비스* 제공(공인성적서발행)을 통해 신뢰성·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의 조기산업화 및 시장창출을 지원하기 위함

* 객관적인 제3자가 표준 혹은 안전기준에 기반한 시험·인증 평가 결과를 제공

- (시험인증산업 현황파악 및 기초인력 양성) 시험인증 분야 기초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및 시장규모, 국내외동향 등 현황 파악을 통해 시험인증산업 역량 강화를 위함

-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생활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반면에 국내 항바이러스 생활용품 인증은 부재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제품 성능·안전성 인증체계를 수립하여 국민 안전 확보 및 수출기업 지원을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부정행위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가 발행·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사용 등 신고의 접수·상담
2.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에 성적서 관련 자료 요구
4. 성적서 관련 사업장 조사
5. 그 밖에 부정행위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적합성평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적합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의 장 또는 적합성평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문인력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 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적합성평가 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의 개발과 운영
3.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4. 그 밖에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제도의 동향 및 적합성평가 수요조사
2.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비한 적합성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
3. 적합성평가에 관한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4. 적합성평가에 관한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5.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물질, 시험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계획
2.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고도화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 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정 및 보급
 2. 제품인증체계 구축
 3. 시험·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7. ~ 8. (생략)
 9. 그 밖에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 ① 정부는 국내 인정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 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公正慣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8. (생략)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이하 생략)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략)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 6. (생략)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4년 이전 : 국내기업들이 BSI(영국표준협회), 로이드 선급협회 등 외국계 인증기관으로부터 ISO 9000인증 획득
- '94년 이후 :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개정, 법적 근거 마련 및 구축. 공업진흥청에서 ISO 9000인증 업무 수행
- '97.05. : ISO 9000인증 관련 업무 위탁(한국인정원, KAB)
- '00.09. :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01.01. : ISO 9000인증 관련 업무 완전 이양(한국인정원)
 - * 인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도 권한만 법에 존치
- '02.03.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3.04. : 「MRA사업」 1차년도 추진
- '03.12. : 신성장 산업의 국제표준화 5개년 계획 수립(장관 보고)
- '04.02. : “차세대성장동력 관련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시장 선점” 산자부 업무보고
- '04.04.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4.05. : 권역별 종합교정기관 육성대책 수립(장관 보고)
- '04.06. : 계량측정분야 고도화 추진전략 수립(장관 보고)
- '05.07. : 국가측정표준의 고도화 추진전략 수립(장관 보고)
- '05.12. : 제2차 국가표준 기본계획 수립(장관 보고)
- '05.12.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인증기관의 “인증현황보고” 제도 도입('06.12월 시행)

- '07.02. : 「시험분석서비스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제3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07.11. : 「시험분석장비 인프라 확충 방안수립」 제24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07.12. : ISO 9001/14001 인증제도 관리업무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 '09.12. :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제정 고시
- '10.04. : 국민권익위원회, ISO 인증제도 투명성·공정성 제고 권고
- '10.09. :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제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
- '12.03. : 「FTA시대 국가 R&D전략」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결
- '12.05. : 국가단일인정체제 구축방안 보고(장관 보고)
- '12.07. :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 제도 선진화 방안」 보고(VIP 보고)
- '13.08. : 서비스산업 발전(국정과제 14)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13.7.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세부과제로 시험 인증 서비스산업화 추진
- '14.01.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14.04. : '2015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선정
- '14.12. : '14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2개 과제 지원
 * ① 자동차/철도 기능안전성 시험평가 및 기업지원 서비스
 ② 무선충전 시험인증 서비스 등
- '15.03. : '2015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전략로드맵' 발표
- '15.07. : '15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2개 과제 지원
 * ① 스마트 에코 빌딩 구현을 위한 건축용 고성능 단열재 시험인증 서비스
 ② 철도부품 중소기업의 신뢰성 지원 서비스 등
- '16.02. : '2016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전략로드맵' 발표
- '16. : '16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2개 과제 지원
 * ① 웨어러블 스마트 밴드의 성능 및 안전성 시험인증서비스
 ② 전자상거래(O2O)기반 포장화물의 안전운송 시험인증서비스 등
- '17. : '17년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전략로드맵' 발표
- '17. : '17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2개 과제 지원
 * ① 산업기반시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준 수립 및 기업 컨설팅
 ② 가상현실 디바이스의 인체 유해성 및 성능 평가 서비스 등
- '18. : '18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3개 과제 지원
 * ① 모바일 무선충전 제품의 효율 시험인증 서비스 체계구축
 ②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험인증 서비스 유망분야 발굴 및 정보제공
 ③ 실내 유입 초미세먼지 차단망 성능평가방법 개발 및 성능시험평가 등

- '19. : '19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3개 과제 지원
 - * ① 석면 안정화제 성능 표준 마련 및 시험인증 서비스 지원
 - ② 해상안전통신기기 융복합시험인증
 - ③ 직류 전압 500v이하 직류 전류 1 600A 이하의 대전력을 위한 전력량계 시험방법 개발 등
- '20.04.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
- '20.05.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관련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지원 검토
- '20. : '20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6개 과제 지원
 - * ① 무선 전기진공청소기 성능 시험평가 서비스 개발
 - ② 소형무인동력비행장치의 배터리 수명시험 서비스 및 선정 가이드라인 개발
 - ③ 실내·외 조명 제품의 시험실 수준 빔공해 시험평가 서비스 개발
 - ④ 급속 전기차 충전기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시험평가 서비스 개발
 - ⑤ 전기구동시스템 효율등급 시험인증서비스 개발
 - ⑥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로드맵
- '21.03 :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구축지원 사업 착수
- '21.4.8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시험인증 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2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제품안전관리원(민간위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출연/전담기관), 시험인증기관(출연/수행기관)
- 사업 수혜자 : 적합성평가기관 및 사업자, 일반 국민(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출연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1,250백만원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시험인증산업 현황파악 및 기초인력 양성	출연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320백만원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출연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3,725백만원	7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3) '22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 ('21) 0백만원 → ('22 요구) 670백만원 → ('22 정부안) 300백만원, 순증

- (요구)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21.04.08)에 따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운영 확대에 각종 용역 필요성 증대, 적합성평가기관·사업자* 및 발행성적서의 발행 건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 요청

* (조사대상) '22년 조사대상, 4700여개 적합성평가기관 및 사업자

** (발행성적서) 연간 약 790만 건 이상의 성적서 발행

- (산출) ('22 정부안)

조사센터인건비 : 150백만원 = 35백만원(인건비)×10명×42.8%

조사센터출장비 : 4.5백만원 = 18회×0.05백만원(출장비)×5명

외부전문가 평가비 : 62.5백만원 = 3건×0.288백만원(인건비)×2명×3일×12개월

* '20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 특급기술자(기타;시험인증분야) 1인1일 기준 288,326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21년 1월1일부터 적용)

기관운영비 : 83백만원

②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 ('21) 0백만원 → ('22 요구) 1,895백만원 → ('22 정부안) 1,250백만원, 순증

- (요구) 미래 유망분야의 혁신제품 조기 상용화 및 산업파급력이 큰 시험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시험 인증서비스 기반 마련(시험절차서, 치공구(지그) 등) 및 지원과제 확대 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 요청

- (산출) ('22 정부안)

과제수행비 : 1,250백만원 = 7개(선정과제 수)×178백만원(지원금액)

* 일부 과제 다년도(1년→2년) 시범운영을 통해 과제수행 및 시험서비스 보급 프로세스 개선 추진

③ 시험인증산업 현황파악 및 기초인력 양성

: ('21) 0백만원 → ('22 요구) 362백만원 → ('22 정부안) 320백만원, 순증

- (요구) 시험인증산업 현황파악 및 기초인력 양성 과정의 품질 제고 등을 감안하여 지원 요청

- (산출) ('22 정부안)

기초인력 양성 및 현황파악 : 320백만원 = 1건×100백만원 + 50명×4.4백만원

④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구축

: ('21) 0백만원 → ('22 요구) 4,000백만원 → ('22 정부안) 3,725백만원, 순증

- (요구) 꾸준한 수요대비 항바이러스 관련 국내인증은 부재한 점, 국제 민간인증체계 수립을 통해 국내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시험인증서비스시장을 개척·선점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 요청

- (산출) ('22 정부안)

국제 민간인증체계 구축 : 315백만원 = 1건×315백만원

개별품목 인증기준 마련 : 420백만원 = 3품목×140백만원

바이러스 특성 평가시스템 구축 : 2,520백만원 = 2건×1,800백만원×70%

* ① 부유 바이러스 시험을 위한 설비·장비 등 : 1,800백만원

② 바이러스 생존률 시험을 위한 설비·장비 등 : 1,800백만원

개별품목 시험인증 평가시스템 구축 : 420백만원 = 3품목×200백만원×70%

기획평가관리비 : 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OLAS 인증 시험절차서· 시험성적서 발행 (단위 : 건)	목표	-	-	-	-	7	당해연도 선정과제 수 7개	시험절차서 및 기술로드맵 제작, 시험성적서 발행 건수	시험절차서 및 성적서 발행 집계 (수행기관)
	실적	-	-	-	-				
	달성도	-	-	-	-				
유망시험서비스 교육·세미나 개최 (단위 : 건)	목표	-	-	-	-	7	당해연도 선정과제 수 7개	신규 개발 유망시험서비스 관련 산업계 대상 교육·세미나 개최 횟수	개발 시험서비스 별 교육·세미나 개최회수 집계 (수행기관)
	실적	-	-	-	-				
	달성도	-	-	-	-				
시험인증 기관 채용 인원 (단위 : 명)	목표	-	-	-	-	15	최근 직업계고 취업률 (27.7%→13.85명) 고려하여 목표산정	시험인증 기초인력 채용연계 인원수	교육수료자에 대한 채용확인서 (수행기관, 채용기관)
	실적	-	-	-	-				
	달성도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2018	
2019	
2020	
2021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부정성적서 근절 및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의 조사업무 확대
 - 적합성평가관리법의 시행('21.4.) 및 제도 정착과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홍보 등으로 부정성적서 근절에 기여
 - 신고를 통한 조사뿐만 아니라 제품군 계획 조사 등을 통해 조사범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적합성평가 신뢰성 제고
- 미래 유망분야 혁신제품의 조기 상용화, 시장 창출 지원
 - 선정된 과제의 수행방안 개선을 통해 파급력이 큰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혁신제품 조기 상용화 및 시장 창출 지원

- * 일부 과제 다년도(2년차) 수행을 통해 유망 시험서비스 발굴 품질 제고
 (1차년도) 시험절차서 제정 및 KOLAS 인정신청, 선정분야 시장 및 표준현황 등 작성
 (2차년도) KOLAS 인정 획득 및 공인 시험인정서 발급, 산업계 전파를 통한 서비스 보급

- 항바이러스 인증체계 수립으로 국민안전 확보 및 수출기업 지원
 - (소비자) 항바이러스 인증마크를 통해 신뢰성 있는 K-방역 생활용품 구별이 가능하고 항바이러스 제품의 오남용 방지
 - (기업) K-방역 생활용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을 지원
 - (시험인증기관) 세계시장에서 항바이러스 시험인증서비스 시장 선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작성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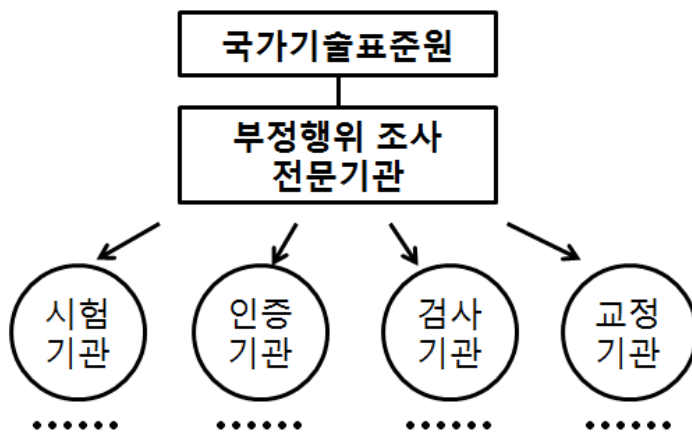
□ 민간위탁 사업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 업무처리 절차 및 주요 이행내용

업무절차	절차별 주요 이행내용
신고접수	신고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및 조사기관의 접수처 마련
↓	
조사계획 마련·보고	조사이행여부 검토 및 이행 시 조사반 구성·조사방법 등 계획마련
↓	
계획서 검토	계획의 타당성 검토
↓	
조사 이행	자료 요구 및 사업장 조사 - 부정행위 관련 시험인증 자료조사 - 시험인증기준 분석 - 부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	
결과서 작성·보고	조사이행 과정, 조사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안) 보고서 작성
↓	
보고서 검토	조사과정과 조치안(처벌·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자문위원회 개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조치 안에 대한 타당성 자문
↓	
조사결과 확정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
↓	
처벌·공표	처분 주체별로 처벌조치 이행 및 처분내용 공표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모식도



□ 출연금 사업

- 유망 시험서비스 개발
- 시험인증산업 현황파악 및 기초인력 양성
-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추진 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국가기술표준원	· 필요사업 수요조사, 사업기획, 당해연도 및 중기계획 등
사업계획 공고	전담기관	· 일간지, 전담기관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과제명 등 공고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우편/직접접수
평가, 심의	전담기관	· 심의위원회 심의 ·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선정 및 발표	전담기관	·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지원과제 최종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국가기술표준원, 전담기관	· 협약전 사전검토 · 전담기관과 수행기관 간 체결
수행 및 사업관리	전담기관, 수행기관	· 사업성과 평가 등
최종보고 및 정산 등	전담기관, 수행기관	· 사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21~'25		-	5,59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통해 허위인증 및 부정성적서 등을 근절하여 적합성평가 신뢰성 제고 추진
- 4차산업의 도래로 인한 신제품 인증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미래 유망분야 시험인증 서비스 선제적 발굴 및 기초인력 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
-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설계를 통한 시험·평가시스템 구축으로, 항바이러스 제품·성능에 대한 인증체계 고도화(실증체계 마련) 및 안정화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적합성평가관리법’을 기반으로 시험인증기관, 적합성평가사업자의 부정·부실 성적서 발행을 방지하여 신뢰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안전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예산지원 필요
-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21.04.08)에 따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의 업무확대로 각종 용역 필요성 증대, 적합성평가기관·사업자* 및 발행성적서의 발행 건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증액이 필요
 - * (조사대상) ‘22년 조사대상, 4700여개 적합성평가기관 및 사업자
 - ** (발행성적서) 연간 약 790만 건 이상의 성적서 발행(‘19년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 없음

1) 결산표 : 해당 없음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2019												
2020												
202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2019										
2020										
2021.12월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2019	
2020	
2021	

☐ 2021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 2021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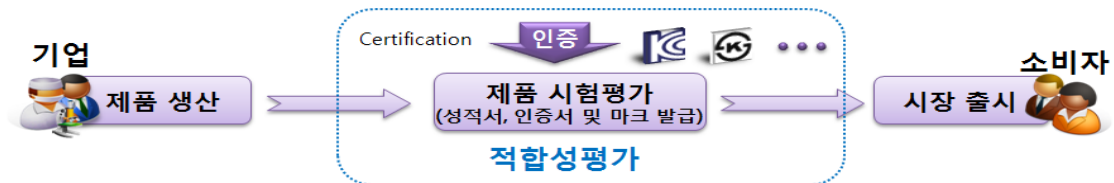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예비비 배정 사유(날짜)
합 계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적합성평가의 정의 및 종류

□ 적합성평가의 정의

-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인증,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
- ① 제품출시를 위한 성능검증, ② 국민안전, 환경 등 정부정책 이행, ③ R&D 성공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



- 신뢰성이 핵심요소로, 부정·부실시험 등이 있을 경우 ① 소비자 피해 발생, ② 성능 및 안전 미확보, ③ 시험·인증 자체의 공신력 상실 우려

□ 적합성평가의 종류

- 적합성평가에는 시험·검사·교정·인증 등이 있으며, 적합성평가 기관은 교정기관·인증기관·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을 말함



참고 2

「적합성평가관리법」 주요 내용

①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제고

- 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 위반 시 처벌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성적서 등을 공표하여 유통을 차단
 -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시험인증 관련 자료제출 및 조사 권한 명시

② 국제 공인기관 관리 강화

- 인정취소, 정지 등 징벌적 행정처분사항을 법에 명시하고, 과징금 제도 도입
 - 인정정지에 해당하나, 시험기관 이용자의 업무불편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 * 다만, 해당 기관이 지적받은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

③ 시험인증산업 역량강화 지원

- 신제품 시험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시험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지원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내용 >

- (1장) 총칙(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장) 적합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업무, 성적서 발급, 부정행위 조사)
- (3장) 인정기구의 설치 및 공인기관(인정기구, 정기검사, 인정취소, 과징금)
- (4장) 적합성평가 업무 역량강화 지원(실태조사, 인력양성, 국제협력, 기술 개발의 추진, 시설·장비 고도화)
- (5장) 보칙(자료요구 및 검사, 청문, 권한 위임·위탁)
- (6장) 벌칙(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참고 3

시험인증산업 현황

- (시장 규모) 국내시장은 약 13.8조원(세계시장 243조의 5.5%) 규모로, 연평균 증가율 10.2%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 중
 - 이 중, 서비스시장은 국내시장의 약 51%(7조)로 연평균 14.6%의 고성장률을 보이며, 기업수는 4,675개로 연평균 12.6%로 꾸준히 증가

[국내 시험·인증 시장규모]

(단위: 억 원)

구분	2014	2015	2016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국내시장 규모	94,693	101,845	113,040	122,030	138,331	10.2
서비스 시장	40,782	44,160	53,087	63,957	70,139	14.6
인하우스 시장	53,911	57,685	59,953	58,073	68,192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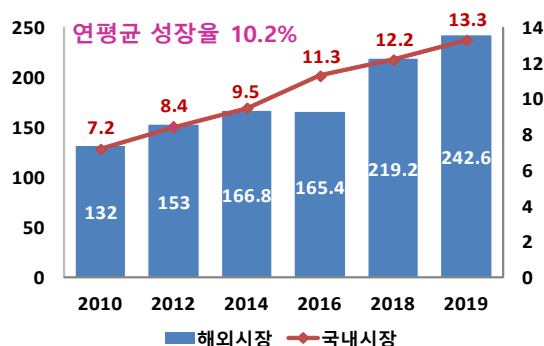
[시험·인증산업 종사자 추이]

(단위: 개,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기관수(A)	2,971	3,660	3,422	3,928	4,675	12.6
종사자수(B)	49,761	64,380	67,869	81,768	90,427	16.4
기관별 종사자 수(B/A)	16.7	17.6	19.8	20.8	19.3	3.9

< 참고 : 국내 시험인증시장 현황 >

<국내·세계시장 규모(단위: 조원)>



< 국내 시험인증서비스시장 구조 >

구분	서비스시장(억원)/ 전체시장대비(%)	기업수 (단위: 개)	평균매출 (억원)
2014	40,782 / 43.1	2,971	13.7
2016	53,087 / 47.0	3,422	15.5
2018	63,957 / 52.4	3,928	16.3
2019	70,138 / 52.7	4,675	15.0

<출처> 시험인증산업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2020

참고 4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참고자료

□ 추진 배경

- 부정성적서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제품·서비스의 성능·안전 미확보, 성적서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이 발생
- 부정성적서 확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기관의 부정성적서 유통 차단 제도 필요

< 참고 : 부정·부실행위 사례 >

- ◇ 증간소음 왜 심한가 했더니...인증등급 96% 부실 ('19.5.3., 동아일보 등)
 - 감사원 조사결과 시공업체 A는 공인 받지 않은 기관에서 발급한 '허위성적서'를 제출, 시공업체 B는 품질 시험성적서 위조했으나 인정기관이 성능인정서 발급
- ◇ 원전 납품 발전차 성적 조작해 66억 챙겼다. ('20.12.30., 조선일보)
 - C사는 한수원이 발주한 비상용발전차 4대의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관리법은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의 부정성적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음

법 제5조(성적서 발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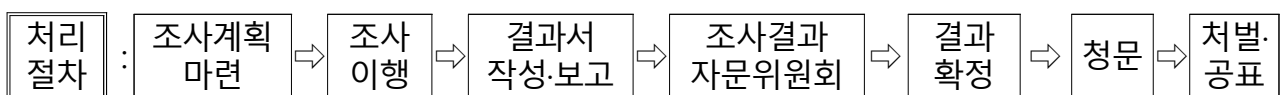
- ③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2.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법 제6조(부정행위 조사 등)

- ⑤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하여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성적서가 유통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동 법령 제6조제3항을 근거로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부정행위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 수행

<부정행위 조사업무 절차>



참고 5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참고자료

공인성적서 발행을 통해 혁신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의 조기 산업화를 지원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움으로써 디지털 뉴딜 탄소중립 등 혁신 산업 생태계 마중물 역할 수행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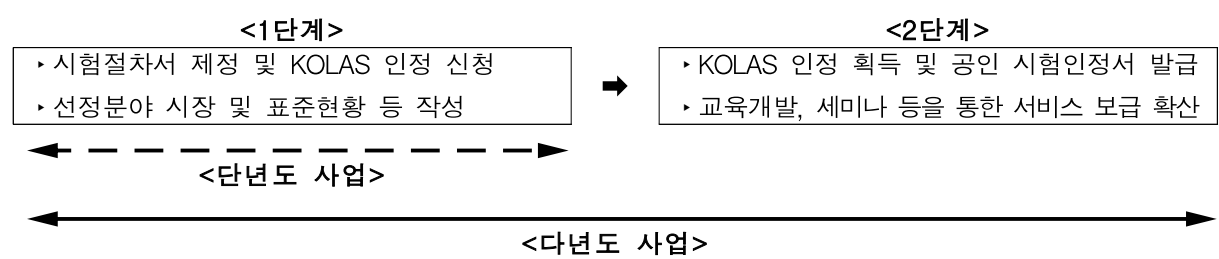
- (목적)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시험·인증서비스* 제공(공인성적서발행)을 통해 신뢰성·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의 조기 산업화 및 시장 창출 지원
- (주요내용) 분야발굴 → 공인성적서 발급서비스개시 → 산업현장 보급·확산*
- * (사업성과) 「실내 유입 (초)미세먼지 차단망(건물 창호에 설치) 성능평가」 개발을 통해 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새로운 시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과 더불어 관련 시장 창출에 기여('14~'20년간 총 20개 시험서비스 개발)

□ 개선 필요 사항

- (지원 과제 수) '21년은 8건 선정(84건 접수)으로 10.5:1의 경쟁률 기록
- (과제당 지원 금액) 과급력이 큰 시험서비스 개발보다는 기존 시험서비스의 확장에 그치는 등 한계 노출
- (짧은 사업기간) 1년 내, 공인성적서 발급 및 산업현장 보급을 위한 교육·세미나 개최 필요

□ 사업 개편 방안

- 과제 수와 과제당 지원금액 확대를 통해 기술수요과제에 대응하고, 산업 과급력이 큰 혁신 제품에 대한 시험서비스개발 지원
- 사업기간 개편(1년→2년(다년도 과제 산출법 준용))을 통해 공인기관인정 취득 후 산업계 전파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참고 6

「시험인증산업 현황파악 및 기초인력 양성」 참고자료

□ 사업목적

-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기초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력, 시장 규모 등 시험인증산업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의 기초통계로 활용

□ 사업내용

< 시험인증 인력 확보 >

- (인력지원)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결과, 시험인증기관에서는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로 '인력양성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원함

< 시험인증산업과 관련한 정부 역할(중복응답) >

표본수	인력양성지원	시설 장비 고도화/개발지원	관련 법적근거 마련	선진 시험기법 개발 및 이전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3,928개	58.6%	41.6%	24.9%	15.7%	3.4%

- (교육강화) 마이스터·특성화고교 2~3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이론 및 기초 교육, 전문교육기관 의뢰교육, 시험·검사 실습교육 등 실시

- 시험교정 운영실무, 측정불확도 추정 교육, 시험인증기업 방문, 입문교육, 수요기관의 채용설명회 또는 조직문화 강좌 등으로 교육과정 구성

* 동 사업은 '14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6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생 중 290명 시험인증분야 유관기관 취업 연계

< 시험인증 산업 현황파악 >

- (산업통계) 국내 시험인증산업 분야 유일한 정부 통계로서 시험 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 조사 필요

- (품질제고) 통계품질 제고(신뢰도 90%→95%)하기 위해 표본 수 증대 필요

* (현재) 조사 모집단 39,000개중 1,600여개 조사
(개선) 2,100개로 모집단 확대 추진 계획

□ 사업목적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활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신뢰성 있는 방역제품 및 이에 대한 인증 수요가 지속적으로 대두
 - 그러나, 국내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인증은 부재
 - * 현재 출시되고 있는 손소독제, 항균마스크, 항균필름 → 섬유제품, 생활가전용품 및 벽지·페인트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촉사용되는 제품군으로 점차 확대 예상
- 국제 민간인증체계구축 및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국민 안전확보, 국내 수출기업 지원

□ 주요 내용

- 항바이러스 생활용품 성능·안전성 시험평가 인증체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요청
 - * ❶ 인증체계 구축, ❷ 시험인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 ❸ 기획평가관리비
 - (인증체계 구축) 시험기관 인증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표준 기반의 항바이러스 생활용품 인증제도를 수립하고 대상 품목범위 및 인증기준 마련
 -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부유 바이러스 투과효율 시험평가, 바이러스 생존율 시험평가 등 품목별* 특화된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인프라 마련
 - * 소독액, 마스크, 항균필름 3품목에 대한 항바이러스 특성 평가 및 인증시스템 마련

□ 기대효과

- 바이러스 전파·확산으로부터 ❶국민안전을 확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❷수출기업과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경쟁력 제고
 - (소비자) 항바이러스 인증마크를 통해 신뢰성 있는 K-방역 생활용품 구별이 가능하고 항바이러스 제품의 오남용 방지
 - (기업) K-방역 생활용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을 지원
 - (시험인증기관) 세계시장에서 항바이러스 시험인증서비스 시장 선점

사 업 명
(11)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R&D)(3731-31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18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	신재혁	라정인	-
		043-870-5500	043-870-5502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규제 샌드박스융합 신제품인증기술개발	4,267	6,348	6,348	6,513	6,513	165	2.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산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260	4,260	4,260 [4,260]	-	-	6,348	6,348	6,348	6,348 [4,463]	-	-	6,513
· 규제 샌드박스기술 기준개발	2,175	2,175	2,175 [2,175]	-	-	3,625	3,625	3,625	3,625 [3,625]	-	-	3,625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 개선연구지원	1,998	1,998	1,998 [1,998]	-	-	2,520	2,520	2,520	2,520 [2,520]	-	-	2,888
· 기획평가관리비	87	87	87 [87]	-	-	203	203	203	203 [203]	-	-	-
○ 비목별 분류(합계)	4,260	4,260	4,260 [4,260]	-	-	6,348	6,348	6,348	6,348 [6,348]	-	-	6,513
· 연구개발활동비 (360-05)	4,173	4,173	4,173 [4,173]	-	-	6,145	6,145	6,145	6,145 [6,348]	-	-	6,513
· 기획평가관리비 (360-06)	87	87	87 [87]	-	-	203	203	203	203 [203]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260	4,260	4,260 [4,260]	-	-	6,348	6,348	6,348	6,348 [6,345]	-	-	6,513
· 규제 샌드박스기술 기준개발	2,175	2,175	2,175 [2,175]	-	-	3,625	3,625	3,625	3,625 [3,625]	-	-	3,625
-연구개발활동비 (360-05)	2,175	2,175	2,175 [2,175]	-	-	3,625	3,625	3,625	3,625 [3,625]	-	-	3,625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 개선연구지원	1,998	1,998	1,998 [1,998]	-	-	2,520	2,520	2,520	2,520 [2,520]	-	-	2,888
-연구개발활동비 (360-05)	1,998	1,998	1,998 [1,998]	-	-	2,520	2,520	2,520	2,520 [2,520]	-	-	2,888
· 기획평가관리비	87	87	87 [87]	-	-	203	203	203	203 [203]	-	-	-
-기획평가관리비 (360-06)	87	87	87 [87]	-	-	203	203	203	203 [203]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개발 및 제품개선 연구 지원을 통해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신시장 창출 및 활성화를 도모
- (규제샌드박스기술기준개발)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와 적합성인증제도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인증기준 개발 및 기업의 제품 성능·안전성 제품개선연구 지원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 개선연구지원) 적합성인증제도 신청품목 대상 인증기준개발,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규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연구지원 및 신규 개발기준의 제도화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융합촉진법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 산업융합촉진법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② 추진경위

- ('11.4) 산업융합촉진법 공포
- ('11.10)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제도 시행)
- ('11.12)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
- ('12.8) 제1차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제 4-1-2)
- ('17.7)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국정-34, 복합·혁신-2)
- ('18.1)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확정(VIP 주제)
- ('18.3) 규제혁신 5법 국회 발의(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 ('18.10) 산업융합촉진법 개정(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 ('18.12)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역점추진과제 2-3-2)
- ('19.4)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수립(정책과제 2)
- ('19.4) 규제샌드박스 100일 성과점검 및 개선방안
- ('20.01)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 ('20.11) 규제샌드박스 성과보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년 ~ '24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및 관련 산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 개발/적합 성인증기준 개발 및 융 합 신 제품 개선연구지 원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등	6,513	수행기관 유형별 달리 적용	<p>○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 사업)</p> <p>○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32호, 2020.12.30.)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p> <p>①장관은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요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 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민간 부담금은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②장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업과 공고시 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table><tr><th rowspan="2">수행기관 유형</th><th colspan="2">과제 유형</th></tr><tr><th>원천기술형</th><th>혁신제품형</th></tr><tr><td>대기업</td><td>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td><td>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td></tr><tr><td>중견기업</td><td>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td><td>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td></tr><tr><td>중소기업</td><td>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td><td>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td></tr><tr><td>그 외</td><td>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td><td>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td></tr></table>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3) '22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개발
 - (' 21) 3,625 → (' 22) 3,625백만원
 - 규제샌드박스 허가 품목을 대상으로 관련 기준 제·개정을 위한 기술기준 개발
 - (산출) 25개 과제 × 145백만원 = 3,625백만원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개선연구지원
 - (' 21예산) 2,520 → (' 22) 2,888백만원(368)
 - 적합성인증 인증기준개발,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중소·중견기업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연구지원 및 신규 개발기준의 타당성 검증
 - (산출) 1식 x 2,888백만원 = 2,888백만원
 - ┌ (적합성인증기준 개발 지원) 15개 과제x80백만원=1,200백만원
 - └ (융합신제품 개선 연구 지원) 26개 과제x60백만원=1,560백만원
 - └ (개발기준의 타당성검증) 1개 과제x128백만원=128백만원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348	연구개발활동비(360-05) : 6,145천원 ○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개발(3,625백만원) · 25개×145백만원 = 3,625백만원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개선연구지원(2520백만원) · (적합성인증기준 개발 지원) 15개x80백만원=1,200백만원 · (융합신제품 개선 연구 지원) 20개x60백만원=1,200백만원 · (개발기준의 타당성검증) 1개x120백만원=120백만원 기획평가관리비(360-06) : 203백만원	6,513	연구개발활동비(360-05) : 6,513천원 ○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개발(3,625백만원) · 25개×145백만원 = 3,625백만원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개선연구지원(2888백만원) · (적합성인증기준 개발 지원) 15개x80백만원=1,200백만원 · (융합신제품 개선 연구 지원) 26개x60백만원=1,560백만원 · (개발기준의 타당성검증) 1개x128백만원=12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융합신제품 제품개선 지원성과 (단위:건)	목표	-	-	12	11	14	융합신제품의 성능·안전성	제품개선 지원 건수 x 55%	제품개선 대상 제품의 기술기준 및 인증기준 달성을 측정
	실적	-	-	12	-	-	문제로 발생하는 사업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달성도	-	-	100	-	-	산출 근거로 설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개발타당성 검증 과제 발굴 및 지원 ○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기술기준(안) 개발 등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 개발 신규과제 발굴 및 지원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개발타당성 검증 과제 발굴 및 지원 ○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기술기준(안) 개발 등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 개발 신규과제 발굴 및 지원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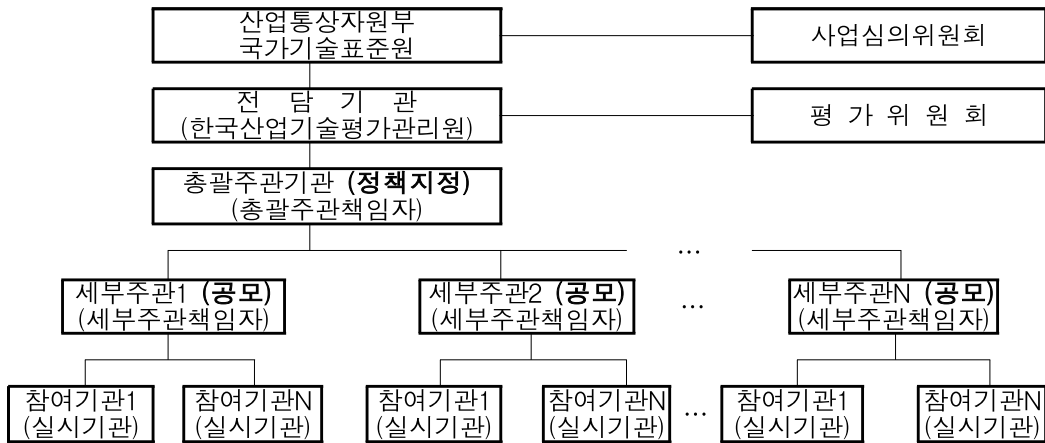
-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의 기술·인증기준 개발 및 제품 개선 지원을 통한 기업의 융합신제품 개발 환경 조성 및 국가 산업 융합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융합신제품에 적합한 기술·인증기준의 신속한 마련을 통해 기업의 인증 취득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법·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시장 출시 및 수출 진입장벽 완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공모형)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4,260	4,473	4,049	4,009	3,929	
'21~'25		6,145	6,193	7,782	9,137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제도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인증기준 개발 및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업의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 연구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규제 샌드박스와 적합성인증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인증기준 연구개발 및 제품개선 연구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규제 샌드박스) 일정기간 규제면제 후,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수 → 기준 정비를 하기 위한 기술기준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
 - (적합성인증) 전문가협의체에서 인증기준을 신속히 의결할 수 있으나, 인증기준 연구개발 자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	-	-	-	-	-	-	-	-	-	-	-
2019	-	-	-	-	-	-	-	-	-	-	-	-
2020	4,260	4,260	4,260	-	-	-	4,260	4,260	100	100	-	-
2021	6,348	6,348	6,348	-	-	-	6,348	6,348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	-	-	-	-	-	-	-	-	-
2019	-	-	-	-	-	-	-	-	-	-
2020	4,260	4,260	4,260	4,260	-	-	4,260	-	-	100
2021.12월	6,348	6,348	6,348	6,348	-	-	6,348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
2019	-
2020	- 특이사항 없음
2021	- 특이사항 없음

☐ 2021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1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붙임] 참조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0 ~ 2024	총사업비	-
주관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라정인 사무관(☎ 043-870-5502)		

□ 사업내용(지원내용)

-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개발 및 제품 개선 연구 지원을 통해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신시장 창출 및 활성화를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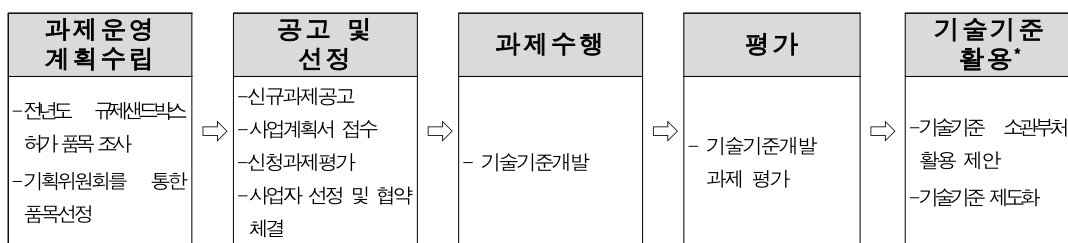
□ 22년 내역 : 6,513백만원

- ①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과 적합성인증제도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인증기준 개발 및 기업의 제품 성능·안전성 제품개선연구 지원 등에 6,513백만원 요구

-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 개발) 규제샌드박스 승인 품목을 대상으로 기준 제·개정을 위한 기술기준 개발 : 3,625백만원(25과제×145백만원)

- (기술기준 개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임시허가) 허가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기간 중 제도개선 기반 마련을 위해 기술기준 개발

- 지원대상 : 규제샌드박스 허가 품목 기술기준개발이 가능한 산·학·연
- 기간/규모 : 1년 이내 / 200백만원 이내
- 추진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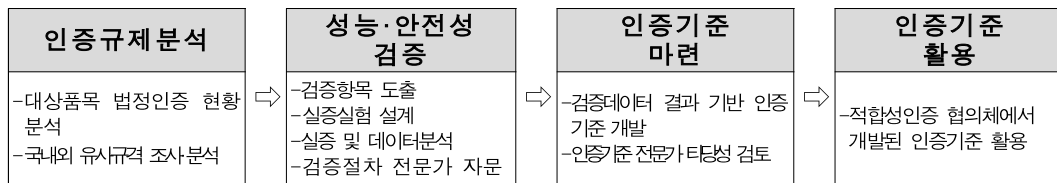


② 적합성인증기준개발 및 융합신제품개선연구지원 : ①적합성인증제도 신청 품목 대상 인증기준개발, ②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규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중소기업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연구지원 및 ③개발기준의 타당성 검토 : 2,888백만원(1식x2,888백만원)

- * 적합성인증 신청품목 인증기준 개발·검증(15과제x80백만원=1,200백만원)
- *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 연구(26과제x60백만원=1,560백만원)
- * 개발기준의 타당성 검토(1과제x128백만원=128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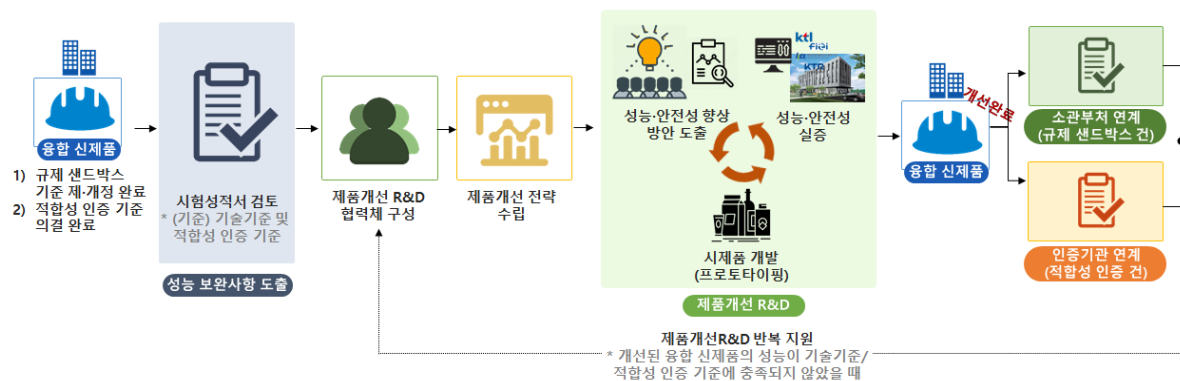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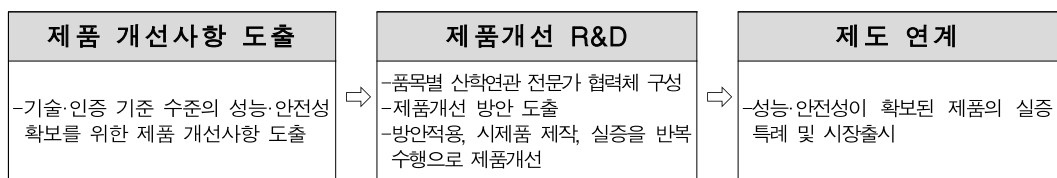
○ (적합성인증기준 개발)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신청 품목을 대상으로 ‘협의체’에서 의결 가능한 인증기준 및 시험·검사 방법을 검증·개발 연구

- 지원대상 : 적합성인증 신청 품목
- 기간/규모 : 6개월 이내 / 100백만원 이내
- 추진프로세스



○ (제품개선 연구) 새롭게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제도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대상 품목의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 연구

- 지원대상 : 규제샌드박스 허가품목 및 적합성인증 신청 품목
- 기간/규모 : 6개월 이내 / 80백만원 이내
- 추진프로세스



< 제품개선 연구 프로세스(안) >

○ (개발기준의 타당성검토) 연구개발을 통해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안)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품목 관련 근거 법령정비에 활용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사 업 명
(12) 신산업단체표준화촉진(3731-31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1	표준정책국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19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신산업단체표준화촉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산업표준혁신과	오유천 043-870-5380	조영삼 043-870-5386	도혜준 043-870-547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신산업단체표준화 촉진	-	817	817	735	735	△82	△1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817	817	817	790 [790]	-	27	735
· 단체표준 분쟁조정 지원						200	200	169	142 [142]	-	27	100
· 단체표준 인증 신뢰성 제고						488	488	518	517.6 [517.6]	-	0.4	510
· 단체표준 활용 촉진						129	129	130	130 [130]	-	-	125
○ 비목별 분류(합계)						817	817	817	790 [790]	-	27	735
· 국내여비(220-01)						0.4	0.4	0.4	-	-	0.4	-
· 일반연구비(260-01)						816.6	816.6	816.6	790 [790]	-	26.6	73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17	817	817	790 [790]	-	27	735
· 단체표준 분쟁조정 지원						200	200	169	142 [142]	-	27	100
-일반연구비(260-01)						200	200	169	142 [142]	-	27	100
· 단체표준 인증 신뢰성 제고						488	488	518	517.6 [517.6]	-	0.4	510
-국내여비(220-01)						0.4	0.4	0.4	-	-	0.4	-
-일반연구비(260-01)						487.6	487.6	517.6	517.6 [517.6]	-	-	510
· 단체표준 활용 촉진						129	129	130	130 [130]	-	-	125
-일반연구비(260-01)						129	129	130	130 [130]	-	-	1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① (단체표준 분쟁조정 지원) 표준 제·개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간 의견 충돌 및 국가표준(KS)과의 중복인증 등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분쟁 조정·협의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민간기업·단체의 원활한 표준 제·개정을 촉진

* 단체표준 제정요건 : 이해관계자 합의, 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미중복

② (단체표준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 (시판품조사) 제조·유통되는 인증제품의 상시적인 성능·품질 관리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제조공장, 제품 등을 불시에 조사·점검하고 후속 조치함으로써 불법·불량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 및 소비자 안전 확보

* 전체 인증제품 9,062개 중 300건(3.3%) 조사

- (인증표시 통합) '98년부터 단체(55개, '21.7월) 별로 개별 운용되고 있는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단일화하기 위한 통합 디자인 개발 및 보급 확산

* (사례) KC 인증마크 : 5개 부처 13개 법정 인증마크를 하나의 디자인인 KC마크로 통합('09.7월)

③ (단체표준 활용 촉진 지원)

- (표준 전수조사) 현재의 단체표준이 KS 표준 서식과 작성방법(KS-A-0001)에 부합되게 제정·활용하고 있는지를 전수 조사·점검하여 부적합 표준 도출 및 개선 추진

* 매년 조사대상: 전체 단체표준 약3,700건 중 3년 주기 적부 확인 대상 표준 1,200건 내외(전체의 1/3씩)

- (제도 개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신산업·융복합 분야 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 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단체표준·인증 제도 개선 용역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2 (단체표준 촉진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협동조합 등 민간단체는 특정 전문분야의 성능·절차·기술 등에 대해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 업무를 수행
- 단체표준 분쟁 조정, 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 등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한 제도의 신뢰성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어 '21년 신규 시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 ~ 계속
- 사업규모 : '21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단체표준 관련 협동조합·협단체 및 인증기업,
인증제품 수요자(일반 국민 소비자 및 공공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2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단체표준 분쟁조정 지원 : (2021) 200 → (2022요구) 100백만원, △50%

- (요구) 표준 제개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간 의견 충돌 등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가 회의, 컨설팅, 분쟁조정·협의 지원
- (산출)

① 분쟁조정·협의 지원 : ('21) 200 → ('22) 100백만원 (△100백만원, △50%)

- * ('22) 분쟁조정·협의 지원 20개 x 5백만원
('21) 분쟁조정·협의 지원 20개 x 5백만원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침개발 및 단체표준·인증심사기준 일관성 검토 등 100백만원

② 단체표준 인증 신뢰성 제고 : (2021) 488 → (2022요구) 510백만원, +4.5%

- (요구) 시판품조사 확대 및 인증표시 통합 개선 등을 통해 단체표준 인증 신뢰성 제고
- (산출)

① 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21) 300 → ('22) 450백만원 (150백만원, 50%)

- * ('22) 시판품조사 건당 평균 150만원 x 300건 ('20년말 기준 인증제품 9,062건 대비 3.3%)
('21) 시판품조사 건당 평균 150만원 x 200건

② 인증표시 통합 개선 : ('21) 180 → ('22) 50백만원 (△130백만원, △72.2%)

* ('22) 인증표시 디자인 개선안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개선 추진 50백만원
 ('21) 인증표시 디자인 개선안 및 단체별 맞춤형 디자인 개발 지원 140백만원 +
 업체 선호도 및 적용에 따른 애로사항 조사 40백만원(4,000개사x1만원)

㉔ 인증심사원 교육 : ('21) 8 → ('22) 10백만원 (2백만원, 25%)

* ('22) 20명 X 5회 X 10만원
 ('21) 20명 X 4회 X 10만원

③ 단체표준 활용 촉진 : (2021) 129 → (2022요구) 125백만원, △3.1%

- (요구) 단체표준이 KS 서식·작성방법(KS-A-0001)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개선하며,
 신산업·융복합 분야 표준 제정·인증 업무 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용역

- (산출)

㉕ 단체표준 열람시스템 개선 : ('21) 50 → ('22) 50백만

* ('22) 단체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있는 단체표준의 구성요소·형식 점검·개선(1,200건) 50백만
 원
 ('21) : 단체표준 1,151건 점검 및 개선 50백만원

㉖ 제도개선 연구용역 : ('21) 79 → ('22) 75백만 (△4백만원, △5.1%)

* ('22) 연구용역 37.5백만원 x 2건
 * ('21) 연구용역 39.5백만원 x 2건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단체표준 시판품 조사 건수 (단위: 건)	목표	-	-	-	-	300	신설 지표로 '22년 시판품조사 예상 건수 300건(건당 평균 150만원)을 목표치로 설정	Σ단체표준 시판품 조사 건수	시판품조사 실시 건수 직접 집계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
2019	-
2020	-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표준 분쟁조정 지원 : 분쟁조정·협의 지원(5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침개발 및 단체표준·인증심사기준 일관성 검토(57종), 분쟁조정위 운영지침 개발(1건) - 단체표준 인증 신뢰성 제고 : 단체표준 시판품 조사(224건), 인증표시 통합 개선(1건), 인증심사원 교육(105명) - 단체표준 활용 촉진 : 단체표준 구성요소·형식 점검·개선 (298건), 제도개선 연구 (분쟁조정 심의 가이드북 개발, 신산업 단체표준 품목 발굴)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민간 주도형 표준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분야 단체표준의 국제표준 선도 기반 구축
- 단체표준 인증제도 신뢰성 제고 및 활성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단체표준 인증제품 품질향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피해** 예방

* 단체표준인증 제품은 건축 분야 등 공공조달

** 불량제품 유통으로 건축물 안정성 저해 등 소비자 피해 우려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신산업단체표준화촉진사업
↓		
② 사업자 선정	조달청· 국가기술표준원	조달 입찰 공고,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③ 사업 수행	수행기관	단체표준 분쟁조정 지원 시판품조사, 인증표시 도표 개선 등
↓		
④ 수행결과 점검	국가기술표준원	수행 결과(성과) 점검 및 사업비 정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	1,146	1,296	1,446	1,596	
'21~'25		817	858	901	946	99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산업부는 신산업단체표준화촉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산중위, '21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단체표준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산업표준화법 규정 신설 ('21.6.15 법 공포·시행)
 - * 제27조의2(단체표준 촉진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추진방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민간 신산업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신뢰성 높은 표준화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 (추진계획) 단체표준 인증제품 시판품조사 건수 연차별 확대
 - * ('21) 200건 → ('22) 300건 → ('25) 500건 내외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	-	-	-	-	-	-	-	-	-	-	-
2019	-	-	-	-	-	-	-	-	-	-	-	-
2020	-	-	-	-	-	-	-	-	-	-	-	-
2021	817	-	817	-	-	-	817	790	96.7	96.7	-	2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
2019	-
2020	-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동 사업의 조달 공고·입찰 과정에서 조달청 자체 삭감액(27백만원) 발생

☐ 2021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1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단체표준 제도 개요

- ◇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민간(협동조합·비영리법인)**이 제정·운영
 - **(정의)** 민간단체가 공공의 안전, 소비자 보호, 구성원의 편의를 위해 특정분야의 기호·용어·성능·절차·기술 등에 대해 제정
 - * ('21.10월) (표준) 144개 단체, 3,782종 (인증) 55개 단체, 266종 (4,515개 기업, 9,649건 인증)
(우수 인증) 16개 단체, 83종 (621개 기업, 1,146건 인증)
 - **(절차)** 표준안 개발 → 자체심의.확정 → 단체표준(안) 등록신청 → 예고 (30일) 및 의견수렴 → 단체표준안 심의.확정 → 표준협회 등록
 - * 요건 :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 **(혜택)** 우수 단체표준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 지원체계 : **국표원**(총괄), **표준협회**(표준 등록 등), **중기중앙회**(지원사무국 운영)

(2) 부처 내 사업 계획 첨부(필수 제출)

'21년 신산업단체표준화촉진사업 집행계획

□ 배경

- 단체표준 제도의 신뢰성 확보, 인증제품의 품질 향상 등을 지원하여 단체표준 활성화 기반 구축
- 신산업 등 관련 단체표준 제정 시 발생하는 분쟁 해소·조정을 지원하여 원활한 표준제정 환경 조성

* '21년 신규 8.1억원, 일반연구비

□ 주요내용

- ① 단체표준 분쟁조정 및 중복인증 해소 지원(2.0억원)
 - 단체표준 제개정 시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KS 또는 기존 단체표준과의 중복성 검토 지원을 위한 분쟁조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단체표준과 인증심사기준의 일관성 검토를 통해 중복인증 등 해소
- ② 불량 제품 차단으로 소비자 보호 및 인증제품·제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시판품조사(3.0억원)
- ③ 단체표준 인증표시 디자인 개선안 개발, 기업 선호도 및 인증표시 변경에 따른 애로사항 등 조사(1.8억원)
- ④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 신뢰성 향상을 위한 단체표준 별 구성요소 점검·개선(0.5억원)
- ⑤ 제도 개선 연구 및 인증심사원 전문교육 등(0.87억원)

□ 향후계획

- 연구용역심의위(3월) → 조달공고(3월~) → 과제선정·사업시행(4월~12월)

<div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사 업 명</div>
<div>(13)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3731-320)</div>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20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책과	한상미	-	박종훈 연구사
		043-870-5410	-	043-870-541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융복합신기술제품 안전기술지원	-	5,826	5,826	6,690	6,690	864	14.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						2022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5,826	5,826	5,826	5,826 (5,826)	-	-	6,690
· 제품안전기준및평 가기법개발	-	-	-	-	-	4,146	4,146	4,146	4,146 (4,146)	-	-	4,190
· 제품안전성향상기 반조성	-	-	-	-	-	1,500	1,500	1,500	1,500 (1,500)	-	-	2,500
· 기획평가관리비	-	-	-	-	-	180	180	180	180 (180)	-	-	-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5,826	5,826	5,826	5,826 (5,826)	-	-	6,690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	-	-	-	-	5,646	5,646	5,646	5,646 (5,646)	-	-	6,690
· 기 획 평 가 관 리 비 (360-06)	-	-	-	-	-	180	180	180	180 (180)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의 안전사고 및 제품 위해로부터, 국민 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제품 안전기준 개발 및 제품 안전성 강화
-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융·복합 신제품,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 및 소비자 특성, 사용환경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향상기법 개발
- (제품안전성향상 기반조성) 비관리 및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평가 기반조성, 위해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개발, 제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8.12월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10. 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10.2.4), 시행('11.2.5)
- '11. 1월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병합
- '11. 3월 : 제1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3.21)
- '14. 2월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2.27)
- '14. 6월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14.6.3), 시행('15.6.4)
- '16. 1월 :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재기획
- '17.12월 : 제3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12.1.)
- '18. 1월 : 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으로 재기획
- '20. 7월 : 제4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7.17)
- '20.12월 : 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 종료
- '21. 4월 :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사업으로 재기획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25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및 관련 산업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 기관 등	4,190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 조성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 기관 등	2,500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3) '22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21) 4,146백만원 → ('22) 4,190백만원, 44백만원 증액

- (요구) 제4차 산업혁명 도래, 융·복합 신기술 제품 출시에 따른 제품 안전기준 개발, 안전취약계층 등 소비자 특성 및 사용환경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향상기법 개발
- (산출) 21개 과제 x 200백만원 x 12/12개월 = 4,190백만원

○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146 백만원	(20개 과제수 x 207백만원 x 12/12개월)	4,190 백만원	21개 과제수 x 200백만원 x 12/12개월

②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 ('21) 1,500백만원 → ('22) 2,500백만원, 1,000백만원 증액

- (요구) 비관리 및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에 대한 위해도 평가 기반조성, 위해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개발, 제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
- (산출) (5개 과제 x 300백만원 x 12/12개월 = 1,500백만원) + (4개 과제 x 340백만원 x 9/12개월 = 1,000백만원)

○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00 백만원	5개 과제수 x 400백만원 x 9/12개월	2,500 백만원	5개 과제수 x 300백만원 x 12/12개월 4개 과제수 x 340백만원 x 9/12개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성과지표 수립중)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
2019	-
2020	-
2021	<p>①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4,146백만원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복합신제품 안전기준 제개정을 위한 위해관리 및 위해성 평가 방법 개발' 등 15개 품목지정 과제 수행 (3,146백만원) -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Track Lighting System의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등 5개 자유공모 과제 수행 (1,000백만원) <p>②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1,500백만원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사체계 기반조성' 등 5개 지정 공모 과제 수행 (1,500백만원)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품안전 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융복합신기술 제품 및 비관리 제품 등 외부환경 및 소비자 요구에 따라 출현하는 제품의 안전기준(안) 및 평가기법 등 총 20여건 개발 가능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 제품사고조사체계 기반, 실시간 제품안전관리 기반 및 제품위해도 평가센터 플랫폼 기반조성 등 5개 과제를 통하여 국민 생활안전 관리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제품 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등 내역 사업 동일 집행

사업계획 수립·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기술성·사업성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지원과제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시행기관
사업수행·관리	전담기관, 수행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진도점검 및 보고(중간평가)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최종점검·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	5,826	6,277	7,142	8,937	
'21~'25		5,826	5,690	6,231	6,542	6,86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방향

- 제4차 산업혁명 도래, 융·복합 신기술 제품 출시 증가 등 제품 위해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비관리 제품 및 사고 다발·사고 우려 제품의 안전성 시험·평가 기반 및 위해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축소

○ 세부 추진계획

- 제품 안전성 강화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현 시장 상황 및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선정·진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동 사업은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제품안전 연구 등에 대한 출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품의 융·복합화, 신기술 제품 출시 등 국민의 제품 위해에 대한 노출이 증가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14) 스마트계량측정 기술기반조성(3731-32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23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스마트계량측정기술기반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적합성정책국	계량측정제도과	임완빈	최용규 연구사	
		043-870-5510	043-870-551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스마트계량측정 기술기반조성사업	-	2,961	2,961	2,890	2,890	△71	△2.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961	2,961	2,961	2,961 [2,961]	-	-	2,890
·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	-	-	-	-	2,305	2,305	2,305	2,305 [2,305]	-	-	2,320
·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	-	-	-	-	562	562	562	562 [562]	-	-	570
· 기획평가관리비	-	-	-	-	-	94	94	94	94 [94]	-	-	-
○ 비목별 분류(합계)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	-	-	-	-	2,867	2,867	2,867	2,867 [2,867]	-	-	2,890
· 기획평가관리비 (360-06)	-	-	-	-	-	94	94	94	94 [94]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	-	-	-	-	2,305	2,305	2,305	2,305 [2,305]	-	-	2,320
-연구개발활동비 (360-05)	-	-	-	-	-	2,305	2,305	2,305	2,305 [2,305]	-	-	2,320
·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	-	-	-	-	562	562	562	562 [562]	-	-	570
-연구개발활동비 (360-05)	-	-	-	-	-	562	562	562	562 [562]	-	-	570
· 기획평가관리비	-	-	-	-	-	94	94	94	94 [94]	-	-	-
-기획평가관리비 (360-06)	-	-	-	-	-	94	94	94	94 [94]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기존 재래식계량기 기반 요금 부과 중심의 계량제도를 개선하여 네트워크 기반 비대면 검침 스마트 계량기 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4차 산업혁명 데이터기반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용 측정기술 및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한 국내 계량측정산업 경쟁력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57조(계량산업의 육성 지원)
-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목적),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조(목적), 제3조(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제6조(혁신 계획 등의 추진체계),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② 추진경위

- '12.2월 : '법정계량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 · 추진
- '15.1월 : 계량법 전부개정을 통한 '계량산업 육성' 지원근거 마련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제5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 '16.12월 : '18년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 내역사업 일몰
- '18.1월 : 안전인증역량강화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재기획
- '20.12월 : 안전인증역량강화 세부사업 종료
- '20.4월 : 스마트계량측정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재기획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 ~ '25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및 관련 산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 기관 등	2,320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 기관 등	570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3) '22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본 사업은 **명확한 법적근거에 기초**하여 국민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및 제57조(계량산업의 육성 지원)
- **(국정과제 37번)**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에 부합
 -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및 친환경 에너지(전기차, 수소차 등)를 정확하게 계량·측정하고, 상거래에 활용하기 위하여 스마트 계량기에 대한 개발 지원이 필요
 - 또한, 실시간 계량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는 미래에 대비하여야 함
- **(정부R&D 투자방향)** '21년 10대 중점투자방향 중 ⑤신산업의 혁신성장 가속화, ⑧ 국민의 안전한 삶 지원 강화, ⑩국민건강 및 생활 편의 증진 분야와의 부합
 - 5G 등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 계량기 개발 및 실시간 빅데이터 측정·처리·활용 기술개발 지원 통해 국내 계량산업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필요
 - 대면 검침에서 비대면 검침으로의 전환 위한 네트워크 기반 가스·전력·수도 원격 검침 스마트 계량기 및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삶 및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
- **(산업기술혁신계획)**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9.03)」의 100대 핵심기술의 성공적인 확보를 위한 계량측정 기술 협력 지원 필요
 - 투자전략에 따른 100대 도출 핵심기술 중 '전기차 배터리 충전',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스마트 장비·시스템' 등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계량·측정 시스템의 연계·협력 지원 필요

○ 내역사업별 지원필요성 및 산출근거

-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 ('21) 2,305 → ('22요구) 2,320백만원, +0.6%
- **(요구)** '21년 신규로 시작한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 계량기(전력량계, 수도미터, 가스미터, 전기차 충전기, 계량기 원격 검침 등)에 대한 신규 과제 계속 지원으로 2,320백만원 필요, '21년 대비 +0.6% 증액 요구
 - * (산업부) '19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원격검침(AMI)설치 및 스마트미터링 표준화) 발표
 - (국토부) '18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

· **(산출)** 2,320백만원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계속과제	12개	193백만원	12/12	2,320백만원

* '21년 신규 12개 과제(협약 2년) 계속 지원 필요

-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 ('21) 562 → ('22요구) 570백만원, +1.4%
- **(요구)** '21년 신규로 시작한 스마트 공장 자동저울·로드셀 개발, 비접촉식 온도 측정시스템 개발 등 신규 과제 계속 지원으로 570백만원 필요, '21년 대비 +1.4% 증액 요구

· **(산출)** 570백만원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계속과제	3개	190백만원	12/12	570백만원

* '21년 신규 3개 과제(협약 2년) 계속 지원 필요

4) 사업효과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본 사업은 '21년 신규 사업으로 성과 지표를 마련 중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등록특허 SMART (단위: 점)	목표	-	-	-	신규	3.79	계량·측정 기술 고도화 사업의 등록특허 SMART 지수('16~'18) 평균값 3.79를 기준으로 목표치 설정	과제수행을 통해 발생한 등록특허의 SMART 분석결과 평균값	진도실적보고서, 최종보고서, 특허 평가분석시스템 등
	실적	-	-	-	신규	-			
	달성도	-	-	-	신규	-			
시제품 제작 (단위: %)	목표	-	-	-	신규	80	선행사업(차세대 계량 측정 기술 기반조성사업)의 시제품 제작 성과를 기준으로 80%로 목표치 설정	(시제품 제작 과제 수/기술개발 지원 과제 수) × 100	진도실적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실적	-	-	-	신규	-			
	달성도	-	-	-	신규	-			

* '21년 신규 지원과제의 기간이 2년으로 '21년 종료과제가 부재하여 '21년 목표치 제외

※ 산업부 자체점검 의견을 반영한 (現)과기부 제출본이며, 과기부 요청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 있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본 사업은 '21년 신규 사업으로, QR코드 기반의 법정계량기 이력 정보 시스템 개발 등 15개의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스마트계량 기술고도화) 에너지 효율과 직결되는 전력, 가스, 열, 수도(온수) 등 전국 법정계량기 디지털화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 및 스마트시티 구현에 기여
- (불법계량기 조작방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정계량기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 (신산업 근간 마련) 측정기술 개발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기반산업 등 신산업 육성의 근간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계획 수립·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기술성·사업성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지원과제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시행기관
사업수행·관리	전담기관,수행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진도점검 및 보고(중간평가)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최종점검·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사업계획 수립·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기술성·사업성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지원과제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시행기관
사업수행·관리	전담기관, 수행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진도점검 및 보고(중간평가)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최종점검·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	2,961	5,387	6,130	7,670	
'21~'25		2,961	3,405	3,915	4,502	5,17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계량기 기술개발, 산업용 측정설비 및 부품 기술 국산화 등을 통해 국내 계량측정산업 경쟁력 확보 ○ 세부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계량정보를 이용한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활성화, 스마트 홈(HEMS)등 대국민 서비스 확대 - 계량기 소프트웨어의 무결성, 보안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통신프로토콜 표준화 및 법정 계량 관련 기술기준 등 신규 제도 개발 - 데이터 기반 산업의 핵심기기(측정설비, 네트워크장비) 및 부품(센서) 기술개발(국산화)
--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계량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계량산업을 육성 지원토록 법적근거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전기·가스 등 법정계량기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SOC로 국민편익 제고 및 계량기의 디지털화를 통한 에너지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57조(계량산업의 육성 지원) * 법정계량기의 상거래 규모는 약 640조('15년 기준)으로 추산되는데, 1% 오차 발생시 6.4조원의 국민 손실을 초래함에 따라 계량기 내구성 및 신뢰성 제고 및 비대면 검침으로 국민편의 제고 위한 지원 필요
--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2019												
2020												
2021	2,961	2,961	2,961	-	-	-	2,961	2,961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2019										
2020										
2021.12월	2,961	2,961	2,961	2,961	-	2,961	2,961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
2019	-
2020	-
2021	- 특이사항 없음

☐ 2021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1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붙임] 참조

□ 사업 개요

- (목표) 스마트 법정계량의 네트워크 기반 및 산업용 측정기·부품의 기술 국산화 등을 통한 국내 계량측정산업 경쟁력 확보(계량법 57조, 계량산업육성지원)
- (기간/예산) '21년 신규사업으로 5년('21~'25) / '21년 29.61억
- (내용)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
 - ① 스마트미터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 계량기 개발, 내구성·신뢰성 평가 기술, 검·교정 방법 개발, 계량 SW의 무결성·보안·상호운용성 등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 ② 산업 측정기술 및 요소부품 연구개발
 - 측정 및 요소부품 기술개발, 측정데이터 추적성 확보, 유효성 검증기술 개발 및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보급

□ 증액 필요성

- 2차 심의 결과(2,890백만원)는 '21년 2.5대 1의 과제 수요에도 불구하고, '21년 신규 과제(15개, '22년 종료)에 대한 계속 지원 예산으로, '22년 신규 과제 추진에 애로
- 수요자의 높은 요구사항에 대한 법정계량기의 기술개발* 및 스마트미터화**를 위한 기업의 요구는 확대되고 있으나 지원에 한계
 - * 전기차충전기의 충전시간 단축 및 무선충전 요구 등 수요의 다변화 등
 - ** 스마트미터링 핵심기술(통신네트워크, 데이터관리 등) 및 전자봉인 등에 대한 연구 등
- 아울러, 대량 보급계획*에 따른 수소차 충전기에 대한 계량 기술** 개발 및 평가를 위한 기반구축 지원은 미비
 - * (산업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발표('21.2.), 전기차('25년 113만대, '30년 300만대), 전기차충전기('25년 50만기 ↑), 수소차('25년 20만대, '30년 85만대), 수소차 충전기('25년 450기))
 - ** 現, 보급중인 수소차 충전기는 수입부품의 조립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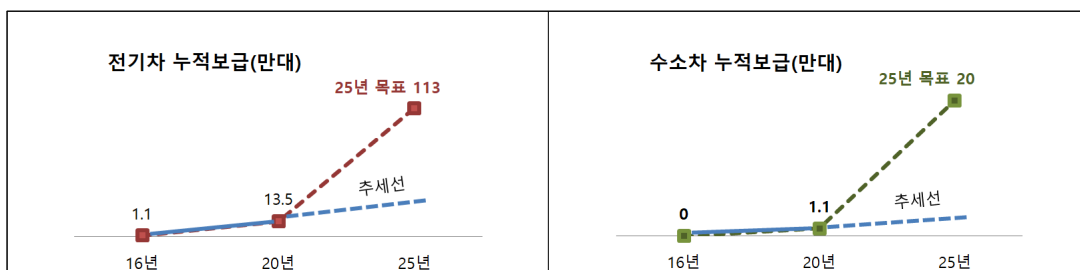
참고 1 전기·수소차 충전기 법정계량 기술 개발 지원 필요성

□ 전기·수소차 보급 현황 및 계획

- 「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 산업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수립·시행(4차 ‘21.2~’25)

	‘20년	‘25년	‘30년
친환경차	82만대	283만대	785만대
전기차	13.5만대	113만대	300만대
수소차	1.1만대	20만대	85만대
하이브리드	67.4만대	150만대	400만대
전체차량 중 비중	3%	11%	30%

<친환경차 누적보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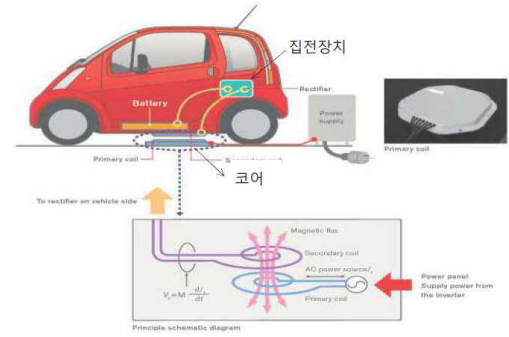


<보급속도 퀀텀점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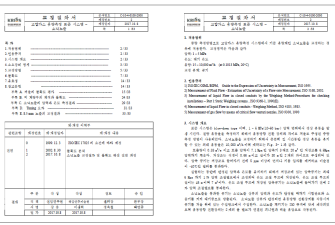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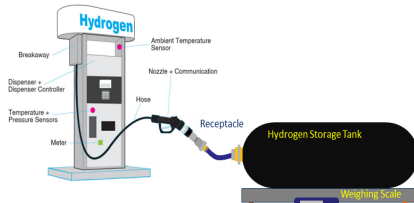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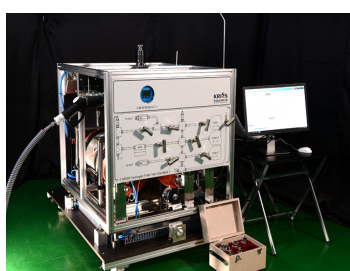
- 전기·수소차 보급 계획(퀀텀점프)에 따라 충전인프라 적재·적소 배치로 상시적 생활 충전환경 조성
 -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 이상 구축 지원(‘25년 50만기↑), 20분 충전으로 300 km 주행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 본격 보급(‘21년 123기)
 - (수소차 충전기) 전국 어디서든 30분내 충전소에 도달 가능하도록 구축(‘25년 450기)

□ 전기차 충전기 개발 필요 기술

내용	필요성	참고사항(예)
전기차 충전기 현장 검정 평가시스템 개발	충전기는 7년마다 재검정(수리 검정 포함)이 필요, 급속 충전기에 대한 검정 시스템 부재로 신속·정확한 검정이 가능한 현장 검정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 필요	<p><(예) 현장 검정 평가시스템></p>

<p>전기차 무선충전 기술 개발 및 기술기준 제정</p>	<p>전기차 무선충전기에 대한 계량 형식승인 기술기준은 부재한 상황으로 국내 일부 제조사에서 개발 중이나, 형식승인 및 검증을 위한 인프라 부재로 연구 개발 연구 필요</p>	 <p><(예)전기자동차 무선충전 방식의 개요도></p>
---------------------------------	---	---

□ 수소차 충전기 개발 필요 기술

추진 내용	필요성	참고사항(예)
<p>수소충전유량 교정 절차 확립 연구</p>	<p>교정에 필요한 수소충전소 현장에서의 수소충전기의 수소충전유량 표준교정 절차서 개발 필요</p> <p>* KRISS 국가 수소유량 현장표준시스템을 이용한 수소충전소내 수소충전유량 현장실증 연구수행</p>	  <p><현장 수소차충전기 현장실증연구(예: 프랑스) & KRISS 표준교정절차서(예)></p>
<p>국가 수소유량표준시스템의 소급성에 대한 국제 동등성 확보 방안 연구</p>	<p>수소충전소 현장에서의 비교 교정실험을 통해 확보된 수소유량표준시스템의 측정 소급성을 유럽 등 국가별 순환 비교를 통한 유효성 평가로 상호 동등성 검증</p>	   <p><국가 수소유량 현장교정시스템과 충전기 법정계량장치의 충전소 현장 비교교정 수행></p>

참고 2

생활 법정계량기 스마트미터링 지원 필요성

□ 생활에너지 거래의 스마트화

- (스마트미터) 실시간으로 측정된 계량값(계량데이터)의 외부 송수신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계량기* 출현

* 법정계량기 13종 중 세대용계량기 5종(전력량계, 가스미터, 수도미터, 온수미터, 적산열량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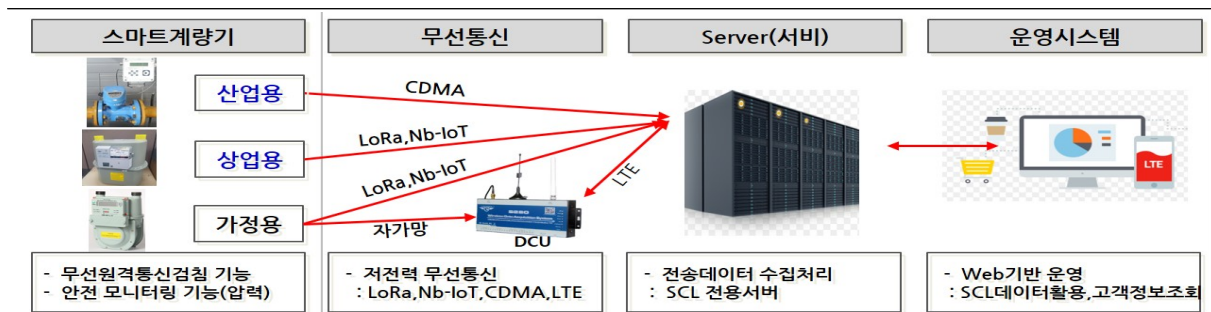
- 계량기가 네트워크에 융합된 형태로서, 외부·원격에서의 계량값 열람 및 계량기 HW/SW 관리 가능,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구분	(1세대) 기계식	(2세대) 전자식	(3세대)스마트미터
제품형태	단품기기	단품기기	서비스 플랫폼
계량값 표시방법	아날로그	디지털	디지털
계량값 확인수단	계량기 부착 지시부	계량기 부착 지시부 + 원격 보조 장치	다양한 형태의 분산 장치
실시간성	X	△	O
통신흐름	X	단방향	양방향
통합검침	X	X	O

- 지시값 수동검침의 전통계량 방식 탈피, 원격·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 확인 및 과금으로 거래 신뢰도 향상
- 에너지 빅데이터 생성의 출발점으로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 에너지 소비, 사업자 인프라 관리 최적화 등 다양한 서비스 창출 매개

□ 지원필요성

-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효율과 직결되는 전력, 가스, 열, 수도(온수) 등 5종 법정계량기의 스마트미터화(AMI)*를 위한 4대 핵심분야(정보보안, 통신네트워크, 플랫폼, 데이터관리) 지원 필요



사 업 명
(15) 지능형 스마트랩 구축(3731-32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27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지능형 스마트랩 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시험인증정책과	박형민	김종윤 연구관	김효중 연구사
		043-870-5480	043-870-5487	043-870-548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지능형 스마트랩 구축	-	-	-	-	200	2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산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200
· 지능형 스마트랩 구축 타당성 조사	-	-	-	-	-	-	-	-	-	-	-	2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200
· 정책연구비(260-02)	-	-	-	-	-	-	-	-	-	-	-	2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200
· 지능형 스마트랩 구축 타당성 조사	-	-	-	-	-	-	-	-	-	-	-	200
-정책연구비(260-02)	-	-	-	-	-	-	-	-	-	-	-	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능형 스마트랩 구축 타당성 조사) 4차산업에 대응하는 차세대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 정책연구 수행을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적합성평가관리법>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추진경위 - 융복합·디지털·AI 등 4차산업 제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차세대 시험인증 분석 및 발급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랩 구축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 ~ '26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시험인증기관, 피시험자(사업체)

3) '22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지능형 스마트랩 구축 타당성 조사

: ('21 예산) 0 → ('22 예산) 200백만원, 순증

- 차세대 시험인증인프라(지능형 스마트랩) 구축 사업 타당성 조사 등 정책연구를 위한 비용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2018	
2019	
2020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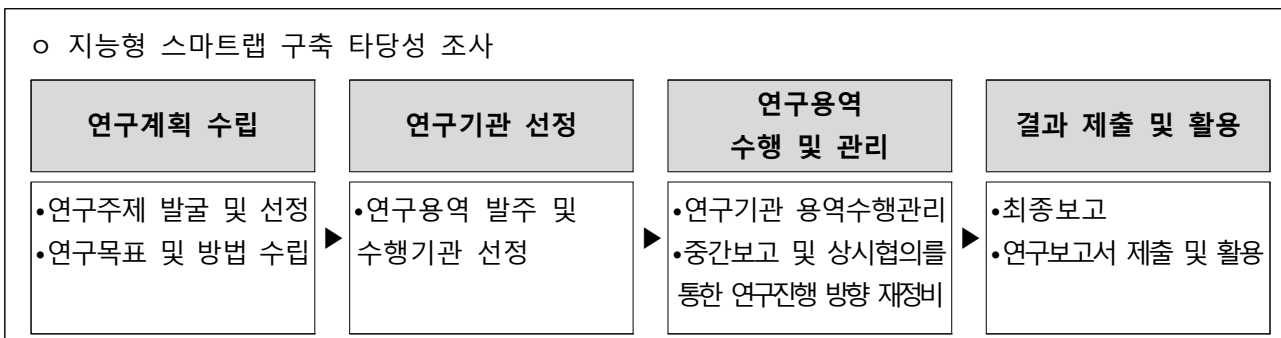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전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스마트랩 구축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보완, 추진 여부 등 검토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21~'25			2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스마트랩 구축 타당성 조사 결과 토대로 사업 추진여부 및 검토·보완 수행
- 4차산업에 대응하는 차세대 시험인증 인프라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경쟁력·신뢰성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1) 결산표 : 해당없음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2019												
2020												
202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2019										
2020										
2021.12월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2019	
2020	
2021	

☐ 2021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 2021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예비비 배정 사유(날짜)
합 계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지능형 스마트랩 구축」 사업설명자료

□ 사업개요

- (목적) 융복합화, 디지털화, AI화 등 4차산업 제품에 대응하는 시험 인증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소규모 기업·기관 공간 제공, 차세대 시험인증서 분석·발급시스템 구축 등

□ 주요 내용

- (소규모 기업·기관 지원) 개방형 시험인증업무 플랫폼 및 가상연구실* 구축을 통해 부적합 설계 오류, 시험 데이터 오류 등을 최소화
 - * 메타버스(Metaverse) 기술로 가상공간에서 설계 검토 및 비대면 업무(공장 심사 등) 수행
- (차세대 시험·분석 시스템) Big Data* 수집·활용 시스템, VR TM**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시험인증서비스 및 품질관리 기술 제공
 - * 시험인증 RAW 데이터를 시험항목 및 부품별로 분류·보관하여 기업의 신제품 개발 지원
 - ** TM(Test Method, 시험방법)은 어려운 기술문서로 만들어져 있어 활용도가 낮으므로 이해 및 관리가 편리한 3차원 도식화 필요
- (차세대 성적서 발급시스템) 시험설비와 성적서 발급 자동 연계 시스템 구축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성적서 발급

□ 기대 효과

- (빠른 신제품 출시) 시험·성적 자동화 설비와 개방형 시험인증업무 플랫폼 구축으로 시험 성적서를 신속하게 제공
- (개발 비용 절감) 시험·성적 Big Data 및 가상연구실을 활용하여 설계 오류 사전 방지로 제품 설계 과정의 실패 비용 절감
- (성적서 위변조 방지) 블록체인 기반의 성적서 자동화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 성적서의 근본적 유통 차단

사 업 명						
(16)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37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1	국가기술표준원	0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3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시장관리과	고재강	김석	-
		043-870-5420	043-870-5423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제품시장감시 역량강화	6,870	7,171	7,171	8,180	7,091	△ 80	△ 1.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산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6,872	6,872	6,870 [6,870]	0	2	7,171	7,171	7,171	7,171 [7,171]	0	0	7,091
·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3,006	3,006	3,006 [3,006]	0	0	3,466	3,466	3,466	3,466 [3,466]	0	0	3,466
· 불법·불량제품단속 및리콜제품이행점검	1,283	1,283	1,283 [1,283]	0	0	1,576	1,576	1,576	1,576 [1,576]	0	0	2,126
·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등	380	380	378 [378]	0	2	380	380	380	380 [380]	0	0	380
·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구축 및 확산	120	120	120 [120]	0	0	340	340	340	340 [340]	0	0	340
· 안전기준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	1,453	1,453	1,453 [1,453]	0	0	779	779	779	779 [779]	0	0	779
· 위해도평가	630	630	630 [630]	0	0	630	630	630	630 [630]	0	0	0
○ 비목별 분류(합계)	6,872	6,872	6,870 [6,870]	0	2	7,171	7,171	7,171	7171 [7,171]	0	0	7,091
· 시험연구비(210-13)	2,982	2,982	2,982 [2,982]	0	0	3,444	3,444	3,444	3,444 [3,444]	0	0	3,444
· 일반용역비(210-14)	380	380	378 [378]	0	2	380	380	380	380 [380]	0	0	380
· 사업추진비(240-01)	24	24	24 [24]	0	0	22	22	22	22 [22]	0	0	22
· 민간경상보조(320-01)	3,486	3,486	3,486 [3,486]	0	0	3,325	3,325	3,325	3,325 [3,325]	0	0	3,24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872	6,872	6,870 [6,870]	0	2	7,171	7,171	7,171	7,171 [7,171]	0	0	7,091
·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3,006	3,006	3,006 [3,006]	0	0	3,466	3,466	3,466	3,466 [3,466]	0	0	3,466
-시험연구비(210-13)	2,982	2,982	2,982 [2,982]	0	0	3,444	3,444	3,444	3,444 [3,444]	0	0	3,444
-사업추진비(240-01)	24	24	24 [24]	0	0	22	22	22	22 [22]	0	0	22

· 불법·불량제품단속 및리콜제품이행점검	1,283	1,283	1,283 [1,283]	0	0	1,576	1,576	1,576	1,576 [1,576]	0	0	2,126
-민간경상보조(320-01)	1,283	1,283	1,283 [1,283]	0	0	1,576	1,576	1,576	1,576 [1,576]	0	0	2,126
·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등	380	380	378 [378]	0	2	380	380	380	380 [380]	0	0	380
-일반용역비(210-14)	380	380	378 [378]	0	2	380	380	380	380 [380]	0	0	380
·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구축 및 확산	120	120	120 [120]	0	0	340	340	340	340 [340]	0	0	340
-민간경상보조(320-01)	120	120	120 [120]	0	0	340	340	340	340 [340]	0	0	340
· 안전기준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	1,453	1,453	1,453 [1,453]	0	0	779	779	779	779 [779]	0	0	779
-민간경상보조(320-01)	1,453	1,453	1,453 [1,453]	0	0	779	779	779	779 [779]	0	0	779
· 위해도평가	630	630	630 [630]	0	0	630	630	630	630 [630]	0	0	0
-민간경상보조(320-01)	630	630	630 [630]	0	0	630	630	630	630 [630]	0	0	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안전성조사) 시중 유통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시험·검사하여,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리콜처분, 개선조치 권고 등 행정조치
- (불법·불량제품단속 및 리콜이행점검)
 - ① 불법·불량제품단속 : 국민신문고,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접수된 KC미인증, 도용 등 각종 불법·불량제품 신고건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형사고발, 과태료 등 행정조치 및 시정권고
 - ② 리콜이행점검 :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조치된 제품 사업자의 본사, 물류창고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리콜이행실적(수리, 교환, 환불 등)을 진도점검(업체당 3~5회)하고,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에게는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조치
- (제품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소비자 안전감시원(약 200명)을 활용,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 대해 리콜제품, 불법의심제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연중 상시 모니터링 실시(적발된 제품을 행정조치 요청)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09년 시스템을 구축, 환경부, 식약처 등과 연계하여 공동 운영 중으로, 각 부처별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된 위해제품(리콜제품) 정보를 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 동 시스템과 연계된 전국 17만개 유통매장에서 실시간 유통차단
- (안전기준준수대상 감시체계구축) 전안법 개정('18.7)에 따라 사전규제가 완화된 사후관리만 가능한 23개 품목에 대해, 시장현황조사, 안전기준 준수율 조사를 거쳐 부적합제품 사업자 대상 재발방지 제도·홍보 등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 제9조(안전성조사 등)
 -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제19조(제품안전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5조(안전인증 등)
 -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제10조(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등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제6조(안전성조사)
 - 제9조(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 제10조(어린이제품 수거등의 명령)
 - 제17조(안전인증 등)
 -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 제25조(공급자적합성 확인 등)

② 추진경위

- '03. 5월 대통령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 어린이 안전사고 경감 지시
- '04. 4월 감사원은 공산품안전관리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지적
- '04. 6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5.12.23. 공포)
- '06. 1월 공산품안전망구축사업(세부사업) 시작
- '06.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
- '06.12월 공산품안전관리종합 5개년계획 수립
- '08. 5월 대통령 대국민담화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도 모든 조치강구”
- '08. 9월 대통령 “성인용보다 어린이용을 빨리 조치하여 유통을 중단해야함”
- '09. 1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09.1.1.)
- '09.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 '10.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산 본 사업 추진
- '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2.5.)
- '11. 3월 제1차 제품안전종합 3개년계획 수립
- '14. 1월 제2차 제품안전종합 3개년계획 수립
- '16. 5월 제1차 어린이안전종합 기본계획 수립
- '16.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 '17. 2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 '17.12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기준준수대상 신설)
- '18. 3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 '19. 12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리콜이행점검, 보완명령 등 규정 신설)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지속지원)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대한상공회의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불법·불량제품 단속및 리콜 이행점검	보조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2,126백만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4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보조	대한상공 회의소	340백만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19조 등 (제품안전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안전기준준수 대상 감시체계구축	보조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779백만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4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3) '22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 ('21) 3,466 → ('22요구) 3,466백만원, 전년동일

-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부적합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등의 행정조치
- 산출내역(시험연구비 : 210-13)
 - 시료구입비 : 732백만원(6,100건×0.12백만원)
 - 시험수수료 : 2,623백만원(6,100건×0.43백만원)
 - 일반수용비 : 67백만원
 - 국내여비 : 22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22백만원

②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21) 1,576 → ('22요구) 2,126백만원, 550백만원 증액

- 국민신문고, 사이버 불법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조사(KC미인증, KC도용 등) 및 리콜제품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
- (요구) 불법제품 현장처리율 향상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11명: 불법단속 9명, 리콜점검 2명) 요구
- 산출내역(민간경상보조 : 320-01)
 - 현장단속 및 점검인력 인건비
: ('21) 1,350백만원(30명×45백만원) → ('22) 1,845백만원(41명×45백만원)

- 출장비
: ('21) 75백만원(50회×30명×0.05백만원) → ('22) 130백만원(63회×41명×0.05백만원)
- 차량유지비 : 106백만원(10대×0.66백만원×12개월+10대×25,000km/年×108원/Km)
- 일반운영비 : 45백만원

③ 제품안전모니터링 감시단 구성·운영 등 : ('21) 380 → ('22요구) 380백만원, 전년동일

- 소비자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안전감시원(안전모니터링 요원)을 선정하여 불법·불량제품 및 리콜제품의 시중유통여부 감시·차단
- 산출내역(일반용역비 : 210-14)
 - 제품안전감시원 관리 : 120백만원(6개 분야×20백만원)
 - 제품안전감시원 수당 : 260백만원(186명×20일×0.07백만원)

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 ('21) 340 → ('22요구) 340백만원, 전년동일

-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한 제품(리콜제품)으로 확인되는 즉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전국 유통매장에 제품바코드, 모델명 등을 통보하여 판매차단
- 산출내역(민간경상보조 : 320-01)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 200백만원
 - 시스템 기능 고도화 : 61백만원
 - 중소유통매장용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 69백만원
 - 시스템확산 용역관리, 간담회 등 사업운영비 : 10백만원

⑤ 안전기준준수대상감시체계 구축 : ('21) 779 → ('22요구) 779백만원, 전년동일

- 전안법 개정('18.7.1)에 따라 신설되어 사전인증의무 등이 전혀 없는 관리제도(안전기준준수대상)에 대한 시장감시체계 구축
- 산출내역(민간경상보조 : 320-01)
 - 인건비 : 200백만원(4명×50백만원)
 - 출장비 : 32백만원(4명×0.05백만원×160회)
 - 시료구입비 : 100백만원(1,000개×0.1백만원)
 - 시험수수료 : 347백만원(1,000개×0.35백만원)
 - 안전기준준수 가이드북 제작 및 홍보 : 1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안전성 조사대상 제품수(건)	목표	'21 신설			5,390	5,570	최근 3개년 안전성 조사대상 제품수 대비 5% 상향	최근 3개년 평균치 × 1.05	안전성조사 결과 보고서(내부자료)
	실적				-	-			
	달성도				-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용점포수(개)	목표	95,000	102,000	175,000	185,000	195,000	중소유통매장 보급 추진에 따른 증가세 둔화 고려	Σ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설치 점포	내부자료 (운용매장으로부 터 확인)
	실적	100,932	173,723	180,891	-	-			
	달성도	106.2	170.3	100.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p>①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4,873개 제품에 대해 조사 실시 <p>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제품안전협회 '불법불량제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3,820개 업체를 조사하였고, 그 중 1,483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 형사고발(421), 지자체 통보(372), 판매금지요청(637), 인증기관통보 등(23) <p>③ 제품안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등 3개 분야에 124,617건 모니터링 실시 -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제품 모니터링 인력을 확대('17년 90명 → '18년 120명) <p>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100,932개 매장에 시스템 설치 * 시스템 설치매장 수 : '17년(92,048개) → '18년(100,932개)
2019	<p>①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5,246개 제품에 대해 조사 실시 -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등 445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p>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불법불량제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6,549개 업체를 조사하였고, 그 중 3,145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 형사고발(599), 지자체 통보(647), 판매금지요청(1,850), 인증기관통보 등(49) <p>③ 제품안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등 3개 분야에 114,035건 모니터링 실시 - KC마크 누락 등 불법이 의심되는 6,474개 제품에 대해 자율시정권고 등 실시

	<p>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173,723개 매장에 시스템 설치 - 안전성조사 결과 적발된 445개 제품을 실시간 원천 차단조치 * 시스템 설치매장 수 : '18년(100,932개) → '19년(173,723개) <p>⑤ 안전기준 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준수 22개 품목 시장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현황) 22개 품목 제조·수입업체 수 : 15.6만개 · (영세율)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조·수입업체의 영세율은 약 90% - 22개 품목 1,285개 제품 안전실태조사 실시 - 사업자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제작·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이스북 조회수 40만회, 카카오토티리 조회수 10만회 이상 - 전국 사업자 대상 제도설명회 개최 - 소비자, 제조·수입업자, 판매·유통업자 1,161명 대상 제도인식도 조사 <p>⑥ 위해도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플러그, 발열조끼 등 비관리품목 11개 품목 253개 제품에 대해 물리·화학적 위해도 평가 실시 → 2개 품목(발열조끼, 휴대용 암밴드)에서 안전관리 필요성 및 안전기준 마련 필요) - 전국 소비자 2,500명 대상 이용실태조사 실시
2020	<p>①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5,292개 제품에 대해 조사 실시 -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등 327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p>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신문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직접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9,016개 업체를 조사하여, 5,090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 실시 * 형사고발(356), 지자체 통보(239), 판매금지요청(4,493), 인증기관통보 등(2) <p>③ 제품안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등 3개 분야에 147,628건 모니터링 실시 - 불법이 의심제품 12,081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등 실시 <p>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180,891개 매장에 시스템 설치 - 안전성조사 결과 적발된 327개 제품을 실시간 원천 차단조치 * 시스템 설치매장 수 : '19년(173,723개) → '20년(180,891개) <p>⑤ 안전기준 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준수 23개 품목 시장현황분석 - 9개 품목 1,507개 제품 안전실태조사 실시 - 사업자 홍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2만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역사(동대문역 등)를 중심으로 제도 홍보영상 송출('20.11.~12월) <p>⑥ 위해도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열안대, 어린이안전문 등 비관리품목 11개 품목 280개 제품에 대해 물리·화학적 위해도 평가 실시 → 6개 품목(온열안대, 어린이 안전문 등)에서 안전관리 필요성 및 안전기준 마련 필요) - 전국 소비자 3,000명 대상 이용실태조사 실시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4차례에 걸쳐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2,992개 제품에 대해 조사 실시 · 신학기용품(1차), 실내 및 여가활동(2차), 중점관리품목(3차), 여름용품(4차) - (행정조치)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84개 제품 리콜조치 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의심제품 신고건에 대해 8,404개 업체를 조사하고 4,985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 형사고발(395), 지자체 통보(235), 판매금지요청(4,352), 인증기관통보 등(3) ③ 제품안전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등 3개 분야에 대해 불법의심제품 5,887건 적발 - 온라인 리콜제품 감시 전담요원제 운영 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184,832개 매장에 시스템 설치 * 시스템 설치매장 수 : '20년(180,891개) → '21상(184,832개) ⑤ 안전기준 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준수대상 안전실태조사 : 280개 제품 안전실태조사 실시 - 부적합 사업자 후속점검 및 제도 : 53개 업체 - 안전기준준수대상 사업자 제도 홍보 : 297개 업체, 4개 협단체 ⑥ 위해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3개 품목 위해도평가 실시 중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안전성조사를 통해 위해제품을 적발하고, 유통을 차단하여 소비자피해 예방

-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안전성조사 실시

* 15년부터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분기별로 집중 반복조사

-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지속 시행

-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즉시 안전성조사를 수행하여 소비자의 위해우려 조기 불식

○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

-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리콜이행점검의 실효성 제고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지속적인 확산을 통해 위해상품 확인 즉시 제품바코드,

인증번호 등을 등록하여 시중유통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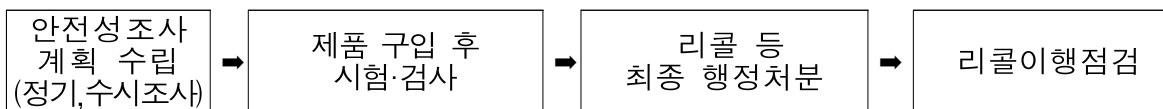
- **제품안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위해 우려제품에 대한 **유통시장 감시 강화**
 - 사전규제가 전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18.7.1 신설)에 대한 감시 강화
 - 소비자단체, 온라인쇼핑몰 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리콜제품 유통 차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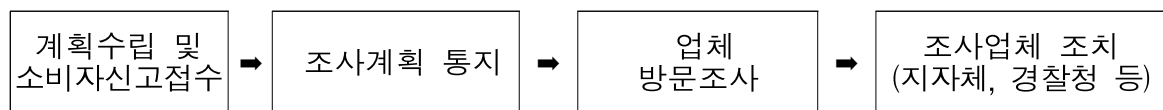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①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등)



- (계획 수립) 연간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조사품목, 조사시기 등)
- (시험·검사) 무작위로 선정된 시판품을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적합 여부 조사
- (행정처분)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
 - 최초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및 재시험 등 신청 기회 부여 후 최종 행정처분
- (이행점검) 리콜이행 점검 후 후속조치 실시(고발, 보완명령 등)

② 불법·불량제품 단속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 등)



- (신고접수) 국민신문고, 제품안전관리원 직접신고 등을 통해 민원 접수
- (계획통지) 조상대상업체에 조사계획 통지
 - 필요에 따라, 통지없이 불시 방문조사
- (방문조사) 신고건에 대해 실제 불법·불량제품 여부 확인
 - 확인서 및 증빙서류 확보
- (조사업체 조치) 불법제품 확인 시 고발 및 행정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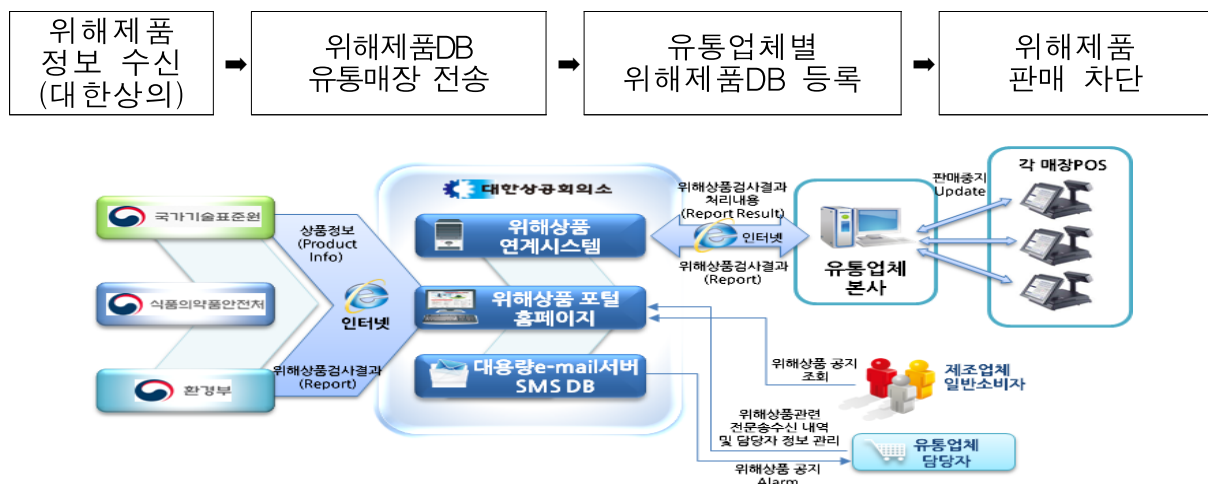
③ 안전모니터링 구성 운영 등 (제품안전기본법 제19조 등)

구 분	운영주체	기능 및 역할
주 관	국가기술표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감시 정책·지침 마련 • 분야별 모니터링 운영주체 선정 등
운 영	모니터링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운영(제품안전감시원 포함) • 제품안전감시원 교육·관리 등
시장감시	모니터링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 유통제품의 위해정보 수집·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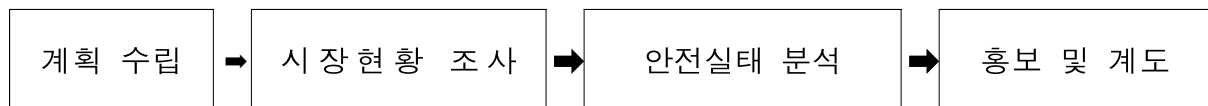
* 제품안전관리가 취약한 문방구, 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KC 마크 미부착, 표시사항 위반 제품 등을 집중 단속

- (체계) 위촉된 제품안전감시원이 전국 오프라인 판매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품시장 감시 실시
- (모니터링대상) 불법제품(KC마크 미부착, 표시사항 미비 등) 및 리콜제품
 - 불법제품은 제품안전관리원에 통보·확인 후 형사고발 조치/시·도 알림
 - 리콜제품은 리콜이행점검팀에 인계하여, 조사 실시 후 보완명령 등 실시

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⑤ 안전기준준수대상감시체계 구축



- (계획수립) 안전기준준수대상 23개 품목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 (시장현황조사) 품목별 제품 유통현황, 사업체 현황 등 시장현황 파악
- (안전실태분석) 품목별 업체규모별 안전기준 준수율, 부적합 부위 등 실태분석
- (홍보 및 계도) 취약원인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후 계도 실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6,872	7,216	7,816	8,416	9,116	
'21~'25		7,171	7,816	8,511	9,251	9,98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p>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사업(예산 1.2억원)의 보조금 분할교부 원칙 준수 필요('19.8, 상임위) ○ 어린이제품 리콜조치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19.11, 국정감사) <p>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p>3) 자체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p>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p>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직후부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분할 교부 원칙 준수('19.8~, 계속) ○ 정부의 리콜보완명령, 재점검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20.6. 시행)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p>-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사후 안전성조사 및 리콜이행점검 등 시장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제품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p> <p>* (해외동향) 美, 日, EU 등은 안전기준(기술기준) 등 사전규제는 최소화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활용하는 사후규제 확대 추세</p> <p>- 리콜조치에 대한 철저한 리콜이행점검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리콜 제품을 사업자가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유도</p>

-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통해 형사고발,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로 불법·불량제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여 소비자를 보호
- 제품안전감시원을 통해 KC마크 미부착, KC허위표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을 단속하여 불법제품 및 리콜제품의 시중유통을 방지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을 통해 위해상품으로 판정시 제품의 바코드, 인증번호 등을 통해 시중유통제품 차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p>재정사업 자율평가 (‘2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 / 80 ○ (결과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분야는 제조, 유통, 판매, 소비 전 과정을 통해 사전적, 사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객관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정부가 예산을 부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추가 제품안전모니터링활동 등을 통해 예산집행률을 제고 하는 동시에 시장감시를 강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p>보조사업 연장평가 (‘19.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의견 및 점수) 정상추진 / 92.2 ○ (결과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규제완화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시중 유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후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사후관리의 핵심은 부적합제품을 리콜하고 불법제품을 단속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시장으로부터 퇴출하여 국민의 안전생활을 보장하는 것임

12) 부처 건의사항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사업의 ‘22년 정부예산안은 ‘21년 대비 80백만원(1.1%) 감액편성
- KC미인증제품 사고 빈발, 정부 관리소홀에 대한 외부지적, 리콜제품 회수율 저조 등에 대한 국민·언론 등의 우려가 반복되고 있어,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적기 해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

< 참 고 사 항 >

- ▶ (사고발생)
 - 전동킥보드류 : 최근 4년 화재 사고 총 36건 중 KC미인증 제품이 34건
- ▶ (언론보도)
 - KC미인증 불법마사지기 유통('18.11.)
 -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업체 미인증제품 사용('19.5.)
 -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조 리콜 명령('20.12.)
 - 납 초과검출 유모차 등 리콜 명령('21.5.)
- ▶ (소비자원)
 - 어린이제품 핑거페인트류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원인물질 검출 보도('17.10)
- ▶ (국회)
 - ('18.10, 김성한 의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액체괴물(완구) 제품이 리콜조치 이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 가능. 엄정한 조치 요구
 - ('18.10, 이철규 의원) 리콜조치된 아동용품의 회수율을 제고 필요
 - ('18.10, 백재현 의원)
 - 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게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요망
 - ② 리콜 명령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하여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
 - ('19.11, 이훈, 송갑석 의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사후관리 인력 확충 시급

-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수행하던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보다 엄정한 수행을 위해 한국 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18.9.21,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하였으며,
-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리콜이행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위해제품 유통이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단속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
- * 불법제품 적발(건) : ('19) 3,145 → ('20) 5,090, 리콜이행점검(건) : ('19) 579 → ('20) 975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4,025	-	4,025	-	-	-	4,025	3,991	99.2	99.2	-	34
2019	5,884	-	5,884	-	-	-	5,884	5,858	99.6	99.6	-	26
2020	6,872	-	6,872	-	-	-	6,872	6,870	99.9	99.9	-	2
2021	7,171	-	7,171	-	-	-	7,171	4,468	62.3	62.3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876	876	876	876	0	876	876	0	0	100
2019	2,498	2,498	2,498	2,498	0	2,498	2,498	0	0	100
2020	3,486	3,486	3,486	3,486	0	3,486	3,486	0	0	100
2021. 12월	3,325	3,325	3,325	3,325	0	3,325	3,325	0	0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 특이사항 없음
2019	- 특이사항 없음
2020	- 특이사항 없음
2021	- 특이사항 없음

☐ 2021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1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17) 안전제도기반조성(37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4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안전제도기반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책과	한상미	-	박종훈 연구사
		043-870-5410	-	043-870-541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안전제도기반조성	1,753	1,579	1,579	1,579	1,549	△30	△1.9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						2022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794	1,794	1,753 (1,753)	-	41	1,579	1,579	1,579	1,513 (1,513)	-	66	1,549
·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700	700	691 (691)	-	9	600	600	600	593 (593)	-	7	600
·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1,002	1,002	972 (972)	-	30	887	887	887	830 (830)	-	57	857
· 제품안전정책·정보 안내시스템 운영	92	92	90 (90)	-	2	92	92	92	90 (90)	-	2	92
○ 비목별 분류(합계)	1,794	1,794	1,753 (1,753)	-	41	1,579	1,579	1,579	1,513 (1,513)	-	66	1,549
· 일반수용비(210-01)	367	395	395 (395)	-	-	295	295	295	295 (295)	-	-	295
· 임차료(210-07)	41	8	8 (8)	-	-	41	41	41	21 (21)	-	20	41
· 재료비(210-11)	30	35	35 (35)	-	-	30	30	30	21 (21)	-	9	38
· 관리용역비(210-15)	92	92	90 (90)	-	2	92	92	92	90 (90)	-	2	92
· 국내여비(220-01)	22	29	29 (29)	-	-	21	21	26	26 (26)	-	-	20
· 국외업무여비 (220-02)	37	30	0 (0)	-	30	33	33	28	0 (0)	-	28	31
· 사업추진비(240-01)	19	19	19 (19)	-	-	17	17	17	17 (17)	-	-	16
· 일반연구비(260-01)	700	700	691 (691)	-	9	600	600	600	593 (593)	-	7	600
· 민간경상보조 (320-01)	486	486	486 (486)	-	-	450	450	450	450 (450)	-	-	4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융·복합 신기술 제품의 출시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리콜, 사업자 사고조사 등 관련 제품안전정책 및 안전제도 개선

○ (제품안전 보급 확산 및 국제협력)

- 제품안전 교육·홍보 : 제품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 대응을 위한 소비자·기업에 대한 홍보·교육(보조사업)
- 제품안전문화 확산 및 국제협력 :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품안전 국제기구(OECD, ISO, CPSC 등)와의 교류·협력 채널 구축, 국민이 제품안전정책 수립·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등 운영

○ (제품안전정책·정보안내시스템 운영) 제품사고, 리콜, 안전인증 등 제품안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포털(SafetyKorea.kr)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품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국민의 권리)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 및 소비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유통 또는 사용과정에서 제품안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그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2. 안전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3.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보급
4.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5. 수입·유통 제품의 안전성조사
6.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7.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통계작성·관리
8. 제품사고조사분석 및 위해도평가
9. 기업 및 단계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10.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② 추진경위

- '04. 6월 :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전부 개정(12.23)
- '06.12월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12.23)
- '07.12월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 개정(12.21)
- '10. 1월 : 전기용품 제조자시험결과 인정제도 시행
- '10. 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10.2.4), 시행 ('11.2.5)
- '11. 3월 : 제1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3.21)
- '12. 5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5.23)
- '14. 2월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2.27)
- '14. 6월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14.6.3), 시행('15.6.4)
- '15. 1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1.28)
- '15. 5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5.18)
- '16. 1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정(1.27)
- '16. 3월 :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공고
- '17. 3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3.21)
- '17.12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12.12)
- '17.12월 : 제3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12.1)
- '18. 3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3.20)
- '19.12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12.10)
- '20. 7월 : 제4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7.17)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보조	한국제품 안전 관리원	416	100% 이내	제품안전기본법제21조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3) '22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①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21) 600백만원 → ('22) 600백만원, 현액 유지
 - (요구)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IoT,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출시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액 유지 요구
 - (산출) 50백만원(연구용역 평균단가) × 14종(1년 필요수요 과제)
 - * 과제개수 증가 : ('21년) 12종 → ('22) 14종
- 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 ('21) 887백만원 → ('22) 857백만원, 30백만원 감액
 - (요구) 지속 상승하고 있는 제품 시료 구입비를 반영, 현액 유지요구
 - (산출①) 제품안전 교육·홍보(민간보조) : ('21) 450백만원 → ('22) 416백만원, 34백만원 감액
 - * 제품안전 중요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자료 제작·홍보 : 201백만원
 - * 제조·유통업체, 소비자 대상의 리콜제도 등 맞춤형 제품안전 교육 : 88백만원
(교육내용 : 리콜제도 매뉴얼, 품목별 안전기준, 불법·불량제품 식별요령 및 신고방법 등)
 - * 제품안전 연구개발, 안전사고 감소·예방에 기여한 유공자(단체) 포상 : 36백만원
(제품안전의 날 포상: 총45점 (훈장1, 포장1, 대표2, 국표2, 장표24, 원표15))
 - * 소비자, 기업, 지자체 등 안전 참여·협력을 위한 포럼 및 협의체 운영 : 71백만원
 - * 정보관리 운영 및 지원 : 20백만원
 - (산출②) 제품안전 문화확산 및 국제기구 협력 등 : ('21) 437백만 → ('22) 441백만원, 4백만원 증액
 - * 제품안전 관련 회의개최, 자료제작, 국제협력, 재료비(시료구입비) 등
 - * (단위: 백만원) 수용비 295, 임차료 41, 재료비 38, 여비 51, 사업추진비 16
- ③ 대국민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시스템 운영 : ('21) 92백만원 → ('22) 92백만원, 현액 유지
 - (산출) 제품안전 정책·정보제공 시스템(SafetyKorea.kr) 유지보수 : 9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제품안전포털 일평균 접속건수 (단위:건)	목표	22,000	24,000	35,700	35,700	45,000	최근3년간평균 접속건수와 외부환경변화 반영	제품안전포털 일평균방문건수 =년 방문건수/365	제품안전포털 통계확인 (SafetyKorea.kr)
	실적	35,397	34,592	33,729	62,022	-			
	달성도	161%	144%	94.5%	174%	-			
제품안전관련 교육자 수 (단위:명)	목표	1,400	1,450	1,500	1,600	2,800	최근3년 평균과 전년 교육자수 반영	제품안전관련 교육 수강인원 합계	교육주관 기관확인 및 온라인교육 접속자수 확인
	실적	1,430	1,654	3,385	3,350	-			
	달성도	102%	114%	226%	25%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p>①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유통업체, 소비자 등 제품안전교육 : 1,430명 실시 ○ “2018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유공자 및 단체 포상 실시(약 400명 참석)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TV 광고(11월), 온라인 광고(5월), 지상좌담회 개최(5월) - 카드뉴스(12월), 제품안전사고사례 영상제작배포 등 정책홍보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혁신포럼 제도분과 및 기술분과위원회 수시운영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위원회 및 통합분과위원회(6월) - 제품안전혁신포럼 총회 개최(11월) ○ 국제협력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 심포지엄 참석 (2월, 11월) - 제14, 15차 OECD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정례회의(4월, 11월) <p>②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리콜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20여개 과제를 통해 관련 제도 정비 <p>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포털 집중홍보에 따른 접속자수 대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접속자 수 : '16년) 20,374명 → '17) 25,463명 → '18) 35,397명 <p>④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시험인프라 구축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및 부산시에 시험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범운영
------	--

	* 226개 업체 대상 5,365건 시험
2019	<p>①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4차 제품안전종합계획(안) 마련” 등 18개 과제를 통해 법제도 및 제품안전기준 정비 <p>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혁신포럼(6월): 정부, 시험기관, 기업 및 소비자 등 120명 참여, ‘변화하는 제품안전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의 주제 논의 - 글로벌제품안전혁신포럼(11월) : OECD, EU, 영국, 일본, 호주 등 국내외 정부 및 기업 담당자 130명 참석, ‘4차 산업혁명 시대 제품안전 및 위해도평가 방법’ 등을 논의 및 공유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광고(8~12월), 온라인 광고(6월) - 카드뉴스(12월), 제품안전사고사례 영상제작배포 등 정책홍보 ○ 제품안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기업 및 유통업체 방문교육 10회 실시(764명 참여) - 소상공인 및 리콜업체 제도이행력제고 집합 교육 5회 실시(374명 참여) - 소비자단체 협업을 통한 일반소비자 교육(516명) ○ “2019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1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분야 유공자 포상 등 본행사 및 안전우수제품 전시회, 제품안전 공모전, 제품안전관리 세미나 등 부대행사 운영(총 400여명 참석) ○ 지자체 협력관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실무자 대상 직무교육 2회 실시(87명 참석) - 제품안전가이드 및 법령집 등 제작·배포 ○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소비자안전보건기구 심포지엄 및 회의 참석(2월) - OECD제품안전작업반 회의 참석(4월,10월): 제품안전 정책 가이드라인 개정 등 논의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양자협력(9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협력방안 논의, 전기전자분야 제품안전정보 교환 및 공동세미나 개최 - 양자회의(11월) : 글로벌제품안전혁신포럼 계기 EU, 영국, 일본, 호주와 제품안전 협력방안 논의

	<p>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정보 30,889건, 안전성조사정보 4,027건, 사고조사정보 72건 등 총 34,988건의 정보 등록 - 일평균접속자수 : ('17) 25,463명 → ('18) 35,398명 → ('19) 34,592 <p>④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시험인프라 구축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험소(경기) 인프라 확대 및 경기 인천, 전북 익산 등 2개소 신규 구축 * 시험실적 : ('18년) 226개 업체 5,365건 → ('19년) 216개 업체 7,784건
2020	<p>①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있는 안전관리 추진, 기술·환경변화 대응 및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3개년 계획, '20~'22) - 리콜이행점검 상세규정 마련 등을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 제품사고추이, 기업부담완화 등 대외적 요건을 고려한 품목별 안전기준 조정(ESS안전관리를 위한 PCS KC 인증, 야외용 운동기구 관리품목 지정 등 시행규칙 개정3회) -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안전 보호 강화를 위한 운용요령 개정(KC인증 비대면 현장평가 심사방식 도입 등 총6회) - 선제적 제품안전기준 정비(LED마스크, 배터리 안전기준 등 총 32건) <p>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1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제품안전혁신포럼: 미ASTM, ISO COPOLCO, OECD, EU집행부 등 국내외 정부 및 국제기구 제품안전 권위자를 초청, '코로나19시대 온라인 제품의 안전 확보' 주제로 포럼 진행.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ZOOM 및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506명 접속 - 포럼 운영위원회 및 제도·기술분과위원회 운영(운영2회, 제도3회, 기술3회)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유튜브 채널(/Kats_safetykorea) 신설, 19개 콘텐츠 업로드 - 트럭용 타이어 리콜명령, 위니아담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 등 제품 안전관련 카드뉴스(70회), 영상(19회), 온라인 이벤트(5회) 진행 - 제품안전 인식개선을 위한 OECD 캠페인에 참여, 유명 유튜버(JJ튜브) 섭외하여 “안전한 온라인 판매 완구 구매” 유튜브 홍보(12.17.~) - 어린이 제품 캠페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13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림장 앱(키즈노트) 광고 진행 -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제품안전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진행, 홍보효과를 위해 ‘광화문1번지’ 활용하여 일반인 심사 진행(10월) - 「2020 대학생 제품안전 홍보단」(10.12.~12.18., 100명)을 운영, 제품안전 콘텐츠 확산 및 청년층의 제품안전 관심 제고 * 네이버 블로그 707개, 인스타그램 228개, 페이스북 19개, 유튜브 10개 등

	<p>총 964개 제품안전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장관상 1명 등 총 15명 시상</p> <p>○ 제품안전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총 40회 3,385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상공인의 제품안전 역량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5회(164명) * 품목별 안전기준 등 유통업체 임직원 교육 13회(쿠팡, 다이소 등 695명) * 소비자단체를 통한 소비자 교육 13회(1,695명), 자체 소비자 교육 3회(154명) * 해외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관리 영상, 사업자 교육용 리콜이행 매뉴얼, 공산품 표시사항 가이드, 제품사고조사이야기 등 8종 제작·배포 등 <p>○ “2020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11.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옥외광고, 일간지 보도자료 등 적극적 포상홍보 및 안내를 통한 포상신청 접수 확대(‘19년 61건 → ‘20년 87건, 훈장1·포장1 등 총 50점 포상) - 제품안전분야 유공자 포상 등 본행사 및 어린이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제품안전관리 세미나 등 부대행사 운영(코로나로 참석자 100명 제한) <p>○ 지자체 협력관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대면교육이 어려워져 “불법제품 행정조치 실무 가이드” 제작·배포로 전환(243개 지자체 담당자에 배포) <p>○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PHSO(국제소비자안전보건기구) 심포지엄 및 회의 참석(2월, 11월) - OECD 제품안전작업반 회의 참석(3월·11월, 온라인) : 제품안전 정책 수립 권고 최종안 승인, 글로벌 제품안전 인식개선 캠페인 확정 등 - ISO 소비자정책위 투표(4월·8월·9월·10월, 온라인): 소비자 사고 조사, 신규 PC 설립, 청소년 캠프 위험 관리 등 - TBT위원회(8월9월) : 한-베트남, 한-중 TBT위원회에 참여, 한국의 제품안전관리제도 소개 <p>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정보 27,401건, 안전성조사정보 4,513건, 사고조사정보 54건 등 총 31,969건의 정보 제공 - 일평균접속자수 : (‘18) 35,398명 → (‘19) 34,592 → (‘20) 33,729
2021	<p>①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콜이행력제고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운영요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단축(2개월→1개월) 및 반복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제품안전기본법」 운용요령 개정(‘21.5.6.) - 전기용품(전기레인지, LED램프 등) 32개 품목 안전기준에 대한 국제 기준 부합화 - 안전성취약, 민원제기 전기용품 14개 품목(누전차단기, 전기찜질기 등)에

	<p>대한 안전기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환경변화에 따른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품목 18건에 대한 안전기준 제·개정 - 안전관리 대상제외 및 규제 완화 등 합리화를 통한 사업자 지원과 제품안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신생기업 및 혁신제품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제품안전 빅데이터 구축 로드맵 개발, 비관리제품 분류 가이드라인 개발 등 학술연구용역 과제를 통한 안전제도 기반 조성 <p>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노출위험 및 영향력이 높은 청소년 대상 5개교 700여명 교육 - 전기용품,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등 품목별 안전기준 관련한 소상공인, 유통업자, 기업체 대상 13회 900여명 교육 - 소비자단체 연계한 소비자 교육 14회 1,800여명 교육(노약자 대상 3회 110명 포함) - 리콜이행매뉴얼북, 표시사항 가이드북 등 제품안전 관련 가이드북 등 교육자료 게시(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 - 제품안전 관리제도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 ○ “2021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 11.23.(화) / COEX 컨퍼런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최소인원 130여명 참석, 자체 제품안전정보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 제품안전관리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훈포장 등 정부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포상 : '20년 87건 → '21년 98건 / '20년 42점 → '21년 98점 ** 접수독려홍보활동 : 지상파라디오 광고, 공공기관 접수요청 등 - 어린이제품 관심제고와 참여유도를 위한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장관상 등 시상 - 제품안전 관련 온라인콘텐츠 홍보활동을 위한 대학생 홍보단 우수단원 장관상 등 시상 - 제품 안전성조사 및 검증을 위한 민간 자문위원(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 위촉장 수여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정기안전성 조사 및 해외리콜 정보 카드뉴스 등 제품안전 정보 및 정책관련 카드뉴스 제작·SNS 게시 40여건 - 제품안전 관련 법령, 정책 등 온라인콘텐츠 개발 및 대학생의 제품안전 관심과 참여를 위해 대학생 홍보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4월) → 구성·발대식(5월) → 운영(6~11월) → 해단식·시상(15점, 11월) ** 제품안전 온라인콘텐츠 1,050여건 제작 및 SNS게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350여건, 8~9월) → 전문가심사(9~10월) → 국민심사(광화문1번가, 10월) → 시상(30점, 11월, 제품안전의 날) ** SafetyKorea 계간지 소개('21년 겨울호) 및 전국 어린이 안전체험관 순회 전시 -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가정 내 리콜제품 확인 및 제품안전관리제도, '21.12.) <p>○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관련 국제기구(OECD, ISO 등)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품 안전 기술기준의 제·개정 동향 파악을 위해 개최 - 일시/장소 : 11.23.(화) / COEX 컨퍼런스룸 - 주제 : IoT, AI 등 융복합 제품의 안전관리 대응 및 향후 운영방향 - 진행방식 : 해외연사(Zoom 접속), 참가자(실시간 유튜브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정보센터 유튜브 중계(www.youtube.com/kats_safetykorea) <p>○ 국제협력 활동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회의) OECD WPCPS 등 소비자제품안전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제품안전 협력을 강화하고 공조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 참석(2월, 6월), OECD WPCPS(제품안전작업반) 회의 참석(4월), ISO COPOLCO(소비자정책위) 참석(5월), 국제소비자컨퍼런스(6월) - (양자회의)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 회의(5월), 한-중 FTA TBT 위원회 개최 등 양자회의를 통해 제품안전분야 협력 방안 논의 - OECD('21.11), 글로벌제품안전포럼('21.11) 등 제품안전 관련 회의에 참석·개최를 통해 국제기구와 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시행 중('21.5~) - 최신 국제표준 동향을 파악하여 안전기준 개정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EC 일치화 등을 위한 안전관리대상 품목 33건 개정, 62건 폐지(~'21.12.) - 유아용 섬유제품 한-EU FTA TBT 협의*('21.07., 비대면) 및 전기용품 KC인증 관련 주한프랑스상의 업무협력**('2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시험인증 현황 등 관련 현황 공유 ** 우리측 안전관리제도 소개 및 IECEE CB Scheme 등의 정보 제공 <p>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SafetyKorea.kr)」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기업의 제품안전정보 수집 및 안전정보 활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1일 평균 접속건수 : ('19년) 34,592건 → ('20년) 33,729건 → ('21년) 52,071건 ** 기업의 제품안전정보(OPEN API) 활용건수 : ('19년) 13.6만건 → ('20년) 20.7만건 → ('21년) 24.6만건 - 콜센터(1600-1384)를 통한 사고·불법제품 신고접수와 인증·리콜상담 1,039건 실시 및 제품안전정보망 고도화를 위한 유지·관리
--	---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품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 시장환경의 변화(제품의 융복합화, 다양한 신기술 제품 출시 등)에 따른 신속한 제품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제품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안전 확보

○ 제품안전문화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확대

- 제품안전관리제도의 교육·홍보를 통한 기업의 제품안전관리 제도 참여를 유도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

○ 제품안전정보시스템(SafetyKorea.kr)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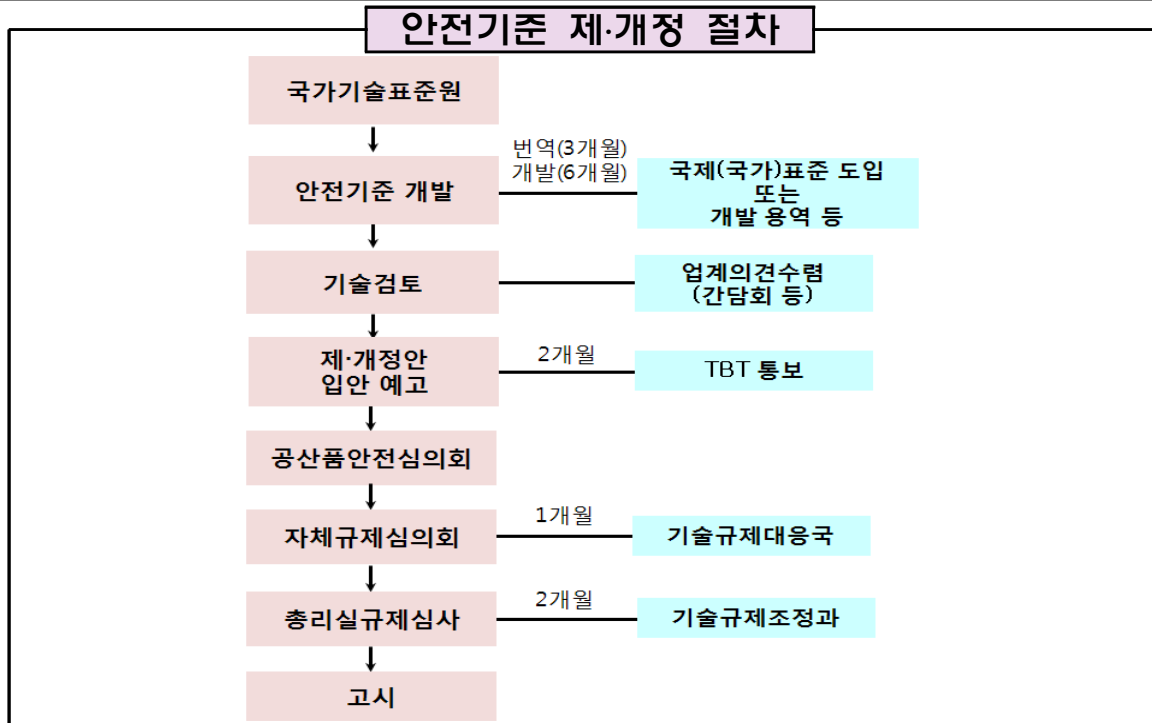
- 제품안전 관련 정보제공을 통한 안전정보의 신속한 확산으로 국민의 제품사고 예방 및 소비자·생산자의 제품 안전의식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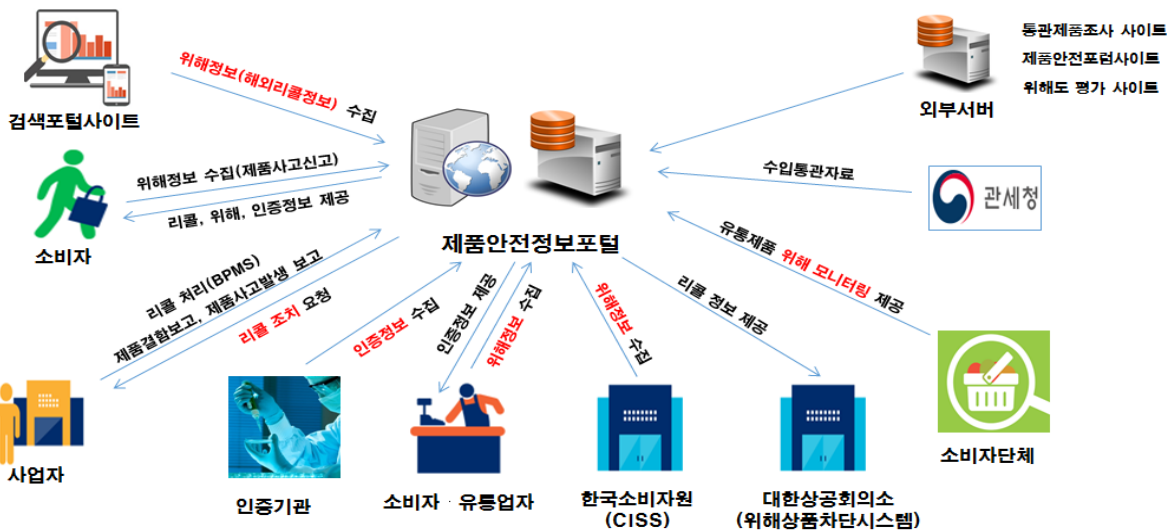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제품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 제품안전정보시스템(SafetyKorea.kr) 운영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1,794	1,579	1,653	1,620	1,604	
'21~'25		1,579	1,671	1,685	1,700	1,71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제품시험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공동 시험장비 조속히 구축 필요('18년 산중위 예산)
-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제품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19년 산중위 예산)
- 성과지표가 '제품안전포털 방문자수' 단일항목이라 사업목적 달성 여부 확인 어려움. 성과를 종합적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마련 필요('18년 예결위 결산)
-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공통시험 장비를 구축하는 것과 시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비교 검토 필요('18년 예정처 예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18년 예정처 예산
 -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2년간('18, '19) 추진 후 종료됨
 - 영세소상공인 인증비용지원사업 추진('20)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소비자 제품안전 규제수준을 하향 조정하여 영세소상공인의 시험의뢰 감소로 경영부담 경감
- '18년 예결위 결산
 -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20), '21년도 성과계획 수정 예정(포털 접속 인원 수를 제품안전 법령 제·개정 건수, 제품안전교육 수료자 수, 제품안전 정보 제공 건수로 변경)
- '18년·'19년 산중위 예산
 -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2년간('18, '19) 추진 후 종료됨
 - 경기도의 경우, 전국대비 비중이 편직 57.9%, 염색 54.1%로 높아,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
 - 서울은 지자체 협의가 지연되어 미지원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제품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 시장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사고 유발 등 제품위해가 염려되는 제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제품 등 안전관리가 시급한 제품들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적시 개발

○ 제품안전문화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확대

- SNS 홍보, 찾아가는 교육 등 적극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생산·유통업체 및 소비자들의 안전의식 고취하고 불안정한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
- IoT,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안전관리를 먼저 시행했던 선진국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21.04)

○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80.0점)

○ (결과 요약)

- (사업적정성) 제품안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대한상공회의소,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 및 단체가 체계적 역할 분담
- (집행률) 최근 3년간 평균집행률 99.4%, 추가 제품안전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해 예산집행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장감시를 강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목표달성도) 안전성조사 부적합률, 통관단계 수입제품 적발률 등은 제품안전정책수립 및 추진시 참조해야 할 지표이나 그 자체가 성과목표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구분	지표명	3년 실적	성과 목표	목표 적극성 (A)	실적 (B)	달성 률 (C)	가중치 (삭감) (D)	지표 점수 (A×C×D)
1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하향지표)	15.0	15.0	30.0	13.1	1.00	0.4	12.0
2	제품안전포털 정보이용자수(명)	318173	357000	35.0	33729.0	0.94	0.3	9.9
3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적발률(%)(하향지표)	25.1	26.0	32.5	22.1	1.00	0.3	9.8
총계(Σ지표점수)								31.7

- (사업성과 우수성) 제품안전포털 방문건수(일평균)는 제품안전에 대한 사업자/국민의 인식/ 민감도를 보여주는 유의미한 지표인바, 방문건수 감소 추세가 다른 기관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p>접근 때문인지 여부,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간접접근을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추진사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은 사업성과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p> <p>- (제도개선) 제품안전포탈정보 이용건수에 있어서 전년도 외부평가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코로나로 사업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을 알 수 있었음</p>						
<p>보조사업 연장평가 (‘19.03)</p>	<p>○ (최종의견 및 점수) 감축(81.2점)</p> <p>○ (결과 요약) 일부 내역사업 효과 불명확, 성과지표 개선 필요</p> <p>- (조치) 보조사업 평가지표 변경* 및 예산감축**</p> <p>* 사업별 목표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수정</p> <table border="1"> <tr> <td>제품안전혁신포럼</td><td>‘제품안전 Idea제안 건수’를 ‘제품안전 정책반영 건수’로 변경, (‘19) 2건</td></tr> <tr> <td>제품안전의 날</td><td>‘일간지 등 보도건 수’를 ‘중소기업 종사자 포상 참여율 및 수상률’로 변경, (‘19) 참여율 37.7%, 수상률 37.8%</td></tr> <tr> <td>지자체 협력관계구축</td><td>교육참여 인원’을 ‘지자체 업무 협조율(행정조치 의뢰 건에 대한 회신 건수)’로 변경, (‘19) 66.6%</td></tr> </table> <p>** 보조사업 예산감축: (‘18년) 510백만원 → (‘19년) 490백만원 (△20, △3.9%)</p>	제품안전혁신포럼	‘제품안전 Idea제안 건수’를 ‘제품안전 정책반영 건수’로 변경, (‘19) 2건	제품안전의 날	‘일간지 등 보도건 수’를 ‘중소기업 종사자 포상 참여율 및 수상률’로 변경, (‘19) 참여율 37.7%, 수상률 37.8%	지자체 협력관계구축	교육참여 인원’을 ‘지자체 업무 협조율(행정조치 의뢰 건에 대한 회신 건수)’로 변경, (‘19) 66.6%
제품안전혁신포럼	‘제품안전 Idea제안 건수’를 ‘제품안전 정책반영 건수’로 변경, (‘19) 2건						
제품안전의 날	‘일간지 등 보도건 수’를 ‘중소기업 종사자 포상 참여율 및 수상률’로 변경, (‘19) 참여율 37.7%, 수상률 37.8%						
지자체 협력관계구축	교육참여 인원’을 ‘지자체 업무 협조율(행정조치 의뢰 건에 대한 회신 건수)’로 변경, (‘19) 66.6%						

12) 부처 건의사항

<p>○ 동 사업은 국민생활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등에 법적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p> <p>○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안전성조사, 리콜 등 강력한 제품안전관리 체계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위해성분 검출, 화재·감전사고 등 위해사례가 발생하고 있기에 국민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동 사업 예산 지원 필요</p> <p>○ 4차혁명의 영향에 따른 기술의 발전 및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안전정책이 필요하고 국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한 제품 안전관리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 동 사업 추진</p> <p>○ 또한, 제품의 다변화와 제품 기대수명 단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의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고, 기업·소비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등 대국민 제품안전정책과 정보에 대한 교육과 홍보·안내를 위한 예산 지원 필요</p>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3,684	-	3,684	-	-	-	3,684	3,647	99.0	99.0	-	37
2019	3,538	-	3,538	-	-	-	3,538	3,521	99.5	99.5	-	17
2020	1,794	-	1,794	-	±41	-	1,794	1,753	97.7	97.7	-	41
2021	1,579	-	1,579	-	±66	-	1,579	1,513	95.8	95.8	-	6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510	510	510	510	-	510	510	-	-	100
2019	490	490	490	490	-	490	490	-	-	100
2020	486	486	486	486	-	486	486	-	-	100
2021	450	450	450	450	-	450	45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없음 - 37백만원 불용 (1.0%) * 집행잔액 (일반연구비 13백만원, 관리용역비 12백만원, 운영비 등 12백만원)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없음 - 17백만원 불용 (0.5%) * 집행잔액 (일반연구비 13백만원, 관리용역비 2백만원, 운영비 등 2백만원)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없음 - 41 백만원 불용 (2.3%) *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회의 온라인 전환에 따른 국외여비 미집행(30백만원),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11백만원)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없음 - 66백만원 불용(4.2%) *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여비 28백만원 및 대면회의 제한에 따른 임차료 20백만원 미집행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7백만원) 기타 재료비 9백만원 미집행

☐ 2021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1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18) 제품사고조사및수입제품안전관리(3732 - 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0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6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	이위로	오승교	
		043-870-5430	043-870-5434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813	862	862	1,374	1,244	382	44.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820	820	813 [813]	-	7	862	862	862	841 [841]	-	21	1,244
· 사고조사제도이행	171	171	170 [170]	-	1	198	198	198	197.3 [197.3]	-	0.7	578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 분석·보급	224	224	218 [218]	-	6	218	218	218	211.2 [211.2]	-	6.8	220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425	425	425 [425]	-	-	446	446	446	432.5 [432.5]	-	13.5	446
○ 비목별 분류(합계)	820	820	813 [813]	-	-	862	862	862	841 [841]	-	21	1,244
· 일반수용비(210-01)	29	29	29 [29]	-	-	29.6	29.6	29.6	29.6 [29.6]	-	-	29.6
· 시험연구비(210-13)	57	57	57 [57]	-	-	65	65	65	65 [65]	-	-	95
·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 사업추진비(240-01)	4	4	4 [4]	-	-	3.4	3.4	3.4	3.4 [3.4]	-	-	5.4
· 일반연구비(260-01)	114	114	113 [113]	-	1	133	133	133	132.3 [132.3]	-	0.7	483
· 민간위탁사업비(320-02)	616	616	610 [610]	-	6	631	631	631	610.7 [610.7]	-	20.3	63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기·생활·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사고조사**(사고조사 결과 결함발견 시 리콜 등 후속조치), 소비자 **위해정보·수집·분석·보급** 및 **통관단계에서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을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제품사고조사 제도 이행)** 제품사고·결함신고제품에 대한 사고조사를 실시하여 결함제품에 대해 리콜 등 행정조치를 하고, 사고다발 제품 등 안전취약제품에 대한 심층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안전기준 보완 등의 전주기적 제품안전관리 수행
 - *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제품사고조사를 통해 결함확인 시 제10조, 11조에 따른 제품 수거 등의 행정조치 추진
 - *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을 통해 최근 3년 연평균 70여 건의 제품사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연평균 약 2만여 건의 제품사고 관련 위해정보가 수집되고 있음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제품인증정보, 리콜정보, 사고·위해정보 등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분석하여 국민(소비자, 기업, 관련단체 등)에게 보급**을 통해 소비자 안전과 기업의 안전품질경쟁력 제고
 - * (정보원) 안전인증기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
 - ** (위해정보 보급)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 제품안전매거진(SAFETY KOREA) 연 4회 발간, “제품사고이야기 WHY” 연 1회 발간 등
- **(통관단계 수입제품안전관리)** 국표원-관세청간 정부3.0협업으로 통관단계에서 전기·생활·어린이제품에 대한 선별·조사를 통해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여 해외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 *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세청과의 수입제품관리 협업과제 상정·확정 (‘14.8.21) → ’14.9월 시범사업 시작으로 국표원-관세청 간 협업으로 통관단계 수입제품안전관리 실시
 - * ’20년 국표원-관세청 간 협업검사를 통해 5,495건의 수입제품을 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1,215건(386만점)에 대해 국내반입 사전 차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제15조”에 근거한 사고조사 이행
-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한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이행

② 추진경위

- ‘14.2.26 “제2차 제품안전종합계획” 발표, ‘14. 3.5 “제품안전정보센터” 개소
- ‘14.8.21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관세청과의 수입제품관리 협업과제 상정·확정
- ‘14.9.15 “수입제품 안전관리” 시범사업 실시 (인천본부세관 협업사무소 설치)
- ‘15.3.25 “수입제품 안전관리” 본사업 실시 (4개 세관 확대 : 인천본부, 인천공항, 부산, 평택)
- ‘15.5.18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제9조의3 신설: 수입제품 안전성조사 근거마련)
- ‘15.9.23 “행자부-관세청-국표원-환경부-식약처간 정부3.0 협업검사체계” 협약식
- ‘16.1.27 “4개 세관 협업사무소” 상시운영(평택세관 파견 인원 고정배치)
- ‘17. 1월 “세관협업사무소 파견인원” 증원(4→5명)
- ‘19. 7월 “세관협업사무소 파견인원” 증원(5→6명, 인천본부, 인천공항, 인천신항, 부산, 평택)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2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제품사고조사 제도 이행 (578백만원)

- 사고접수 제품 결함여부 조사 등 : 95백만원

1) 시험비 : 47.5백만원=95건*40만원(시험수수료) + 95건*10만원(재료비)

2) 출장비 : 19백만원=95건*2명*10만원

3) 조사자 등 수당 : 28.5백만원 = 95건*2명*15만원

* 조사범위 :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및 전기제품을 포함하여 타부처에서 관리하지 않는 모든 생활 가정용품

- 사고다발제품 등에 대한 원인분석·평가 이행(정기조사) : 483백만원

1) 사고다발 제품, 안전취약 제품 등에 대한 평가·분석 : 48.3백만원 * 10개 품목

< '21년도 : 198백만원 >

- 사고접수 제품 결함여부 조사 등 : 65백만원

1) 시험비 : 35백만원=70건*40만원(시험수수료) + 70건*10만원(재료비)

2) 출장비 : 20백만원=100건*2명*10만원

3) 조사자 등 수당 : 10백만원 = 17건*4명*15만원

- 사고다발제품 등에 대한 원인분석·평가 이행(정기조사) : 133백만원

1) 사고다발 제품, 안전취약 제품 등에 대한 평가·분석 : 44.3백만원 * 3개 제품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220백만원)

- 정보수집 및 사고상담 콜센터(☎1600-1384) 운영·홍보비 : 83백만원

1) 콜센터운영 : 48백만원 = 4백만원*12월

2)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 35백만원

▪ 사고조사건의 홍보 등 : 29.6백만원 = 7.4백만원*4건

▪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등을 위한 업무협약 : 5.4백만원 = 21.7만원*25회

- 사고정보, 리콜정보, 위해정보, 제품안전제도 등 제품안전정보 보급 : 68백만원

* 각종 제품안전 분석 정보를 소비자단체, 지자체, 연구소, 기업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급(약 1,300부 배포)하여 소비자 제품안전강화와 기업의 안전품질경쟁력 제고를 유도

1) 계간SafetyKorea발간·보급 : 68백만=17백만*4회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전파 : 69백만원

* 해외 리콜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해당 제품 국내 유통업체에게 정보 제공을 통해 자발적 리콜 등의 조치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주의·환기하는 서비스

1) 제품안전 경보서비스 : 69백만원 = 69백만*1건

< '21년도 : 218백만원 >

- 정보수집 및 사고상담 콜센터(**☎1600-1384**) 운영·홍보비 : 81백만원
 - 1) 콜센터운영 : 48백만원 = 4백만*12월
 - 2)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 33백만원
 - 사고조사건의 홍보 등 : 29.6백만원 = 7.4백만원*4건
 -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등을 위한 업무협의 : 3.4백만원 = 20만원*17회
- 리콜정보, 위해정보, 제품안전제도 등 제품안전정보 보급 : 68백만원
 - 1) 계간SafetyKorea발간·보급 : 68백만=17백만*4회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전파 : 69백만원
 - 1) 제품안전 경보서비스 : 69백만원 = 69백만*1건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446백만원)**

- 인증대상 제품 인증 여부 실물확인 및 안전성조사(제품시험) 수행 : 446백만원
 - 1) 시험·평가비 : 143백만원=286건*40만원(시험수수료) + 286건*10만원(운송비)
 - 2) 인건비 : 272백만원=17.2만원*22일*12개월*6명
 - 3) 통관단계 협업조사시스템 운영 : 31백만원=31백만원*1건

< '21년도 : 446백만원 >

- 인증대상 제품 인증 여부 실물확인 및 안전성조사(제품시험) 수행 : 446백만원
 - 1) 시험·평가비 : 143백만원=286건*40만원(시험수수료) + 286건*10만원(운송비)
 - 2) 인건비 : 272백만원=17.2만원*22일*12개월*6명
 - 3) 통관단계 협업조사시스템 운영 : 31백만원=31백만원*1건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22년 성과지표 변경(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적발율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 건수)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적발율 (단위: %) (하향지표)	목표	-	32	26	24	-	-	관세청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서 실시한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적발율 = 적발건수/선별 조사 건수 × 100	안전성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	25.1	22.1	-	-			
	달성도	-	121.5	115	-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 건수 (단위: 건)	목표	-	-	-	-	4700	최근 3년 (18~'20) 안전성 조사 건수의 평균	관세청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서 실시한 수입제품의 선별조사 건수	안전성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p>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조사 83건 접수, 리콜(3건), 불법조사의뢰(11건) 등 20건 조치 - 정기 제품사고조사 연구과제 수행(2건) <p>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역 SRT 맞이방 제품안전정보센터 홍보(11.14~12.13) - 글로벌 제품안전매거진 (계간SafetyKorea) 발간 (4회) - “제품사고이야기 WHY” (사고조사 사례집)발간 발간 (1회) <p>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846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951건 적발(적발률 24.7%)
2019	<p>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조사 74건 접수, 리콜(2건), 불법조사의뢰(10건) 등 16건 조치 - 정기 제품사고조사 연구과제 수행(2건) <p>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2호선 전동차 내부 제품안전정보센터 홍보(11.13~12.12) - 글로벌 제품안전매거진 (계간SafetyKorea) 발간 (4회) - “제품사고이야기 WHY” (사고조사 사례집) 발간 (1회) <p>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759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1,193건 적발(25.1%)
2020	<p>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조사 54건 접수, 불법조사의뢰(12건) 등 17건 조치 - 정기 제품사고조사 연구과제(2건) 수행 <p>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2호선(교대역, 신도림역, 건대입구역 등) 내 제품안전정보센터 홍보(10.26.~11.25.) - 글로벌 제품안전매거진 (계간SafetyKorea) 발간 (4회) - “제품사고이야기 WHY” (사고조사 사례집) 발간 (1회) <p>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495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1,215건 적발(22.1%)
2021	<p>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사고조사 80건 진행, 불법조사의뢰(13건) 등 50건 조치(“21.12월) - 정기 제품사고조사 연구과제(1건) 및 「제품사고조사 운영 개선 방안」 연구과제 등 총 3건 수행 <p>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콜센터 라디오 홍보(11.1~11.30) - 글로벌 제품안전매거진 (계간SafetyKorea) 발간 (4회) - “제품사고이야기 WHY” (사고조사 사례집) 발간 (1회) <p>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12월까지 누계 실적 : 총 6,431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1,545건 적발(24%)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사고 다발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기업 및 소비자에 제공함으로써 동일사고 재발을 방지(제품사고조사: 90건 이상)
- 각종 사고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안전기준 및 표준 등에 반영토록 추진하여 제품안전제도의 효율성 제고 기대(행정조치: 3건 이상)
-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적발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강화 및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선별·조사 : 4,700건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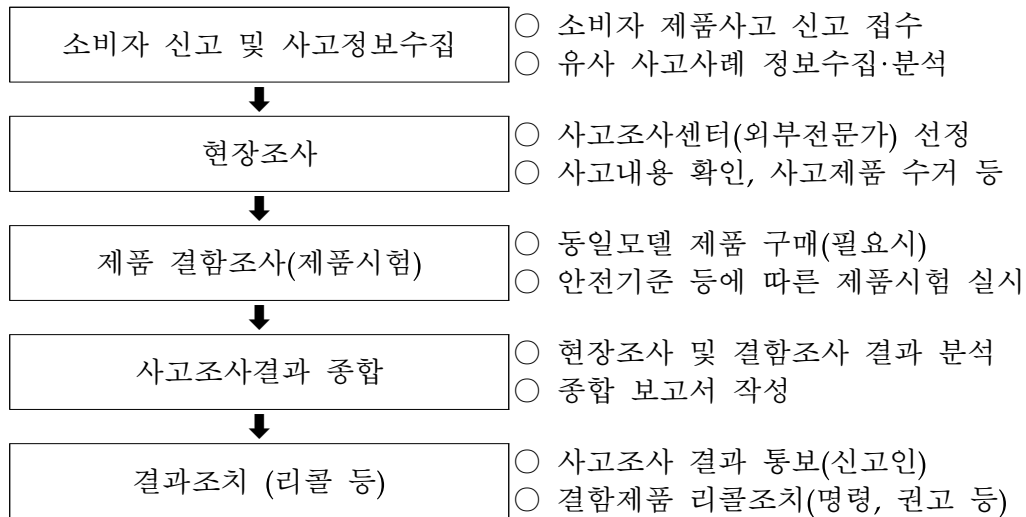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제품사고조사) 국가기술표준원이 사고정보 수집·관리·보급 및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업무를 이행하고, 제품사고조사센터(11개 지정) 및 시험인증기관은 제품결함여부 평가 (제품시험) 업무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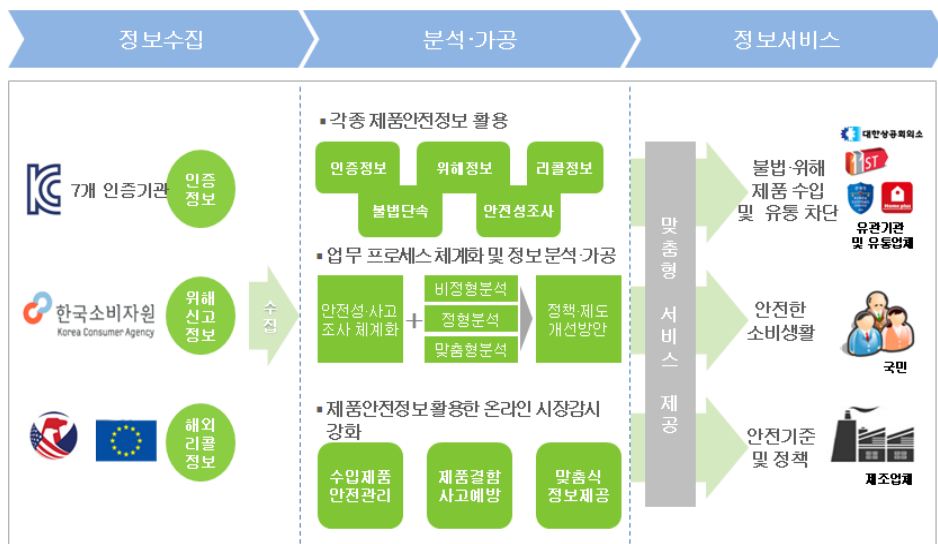
<사고조사 및 리콜조치 이행체계도>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분석하여 소비자, 기업 등에 보급

* 인증정보, 소비자위해정보, 안전성조사결과정보 등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업무 흐름도 >

- (수입제품안전관리)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를 관세청 “수입제품 선별검사시스템(C/S)”에 입력하여 검사대상 수입사업자를 선별하고,
 - 선별된 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폐기 조치 또는 국표원에서 리콜조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820	861	1,165	1,238	1,287	
'21~'25		862	1,034	1,836	2,152	2,37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국회 지적(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19.01)

- (지적) 연례적인 시험연구비 부족으로 세목간 조정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할 것 (예결위 이용주 위원, '18년 결산시 제도개선 사항)

* ('18년) 일반수용비(210-01) 4백만원, 관리용역비(210-15) 8백만원 등 12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로 조정·집행 : 72백만원(예산 60백만원+세목 조정 12백만원)

- (조치) 세목간 조정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급한 제품사고조사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으나, 향후 이러한 세목 조정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목표) 제품안전 정보수집을 기반으로 사고조사제도를 이행(사고조사 후 결함제품 리콜) 하고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 반입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관리제도 이행

- (제품사고 조사제도이행) 제품사고 및 위해제품 조사를 통해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 등 행정조치

- (소비자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한 제품 위해 정보·인증정보 수집·분석 및 보급 체계 구축, 통합 제품안전정보망 운영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관세청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차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단위사업
재정사업
자율평가
(21.4.)

-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 80

- (결과 요약)

- 제품안전 분야는 제조, 유통, 판매, 소비 전 과정을 통해 사전적, 사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객관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정부가 예산을 부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12) 부처 건의사항

- (제품사고조사 제도 이행) 국내에서 매년 2만 건 이상의 제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융·복합 제품의 경우 사고 원인 분석에 많은 시험 비용**이 소요되어 연례적으로 예산 과소 편성***, 향후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함

* 한국소비자원 제품사고 관련 신고(건) : ('18) 21,921 → ('19) 23,367 → ('20) 19,945

** '16년 갤럭시노트7(70백만원), '17년 아웃라스트 섬유제품(90백만원), '19년 ESS(1,350백만원), '20년 애플워치 SE 등(73백만원)

*** 예산(백만원) : ('18) 220 → ('19) 180 → ('20) 171 → ('21) 198

- (소비자 피해정보 수집·분석·제공) 사고정보, 해외리콜, 인증정보 등 피해정보를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제공*(실시간 반응형 온라인 웹진)하여 선제적인 국민 안전 확보가 필요하나 매년 감소 추세로 예산 편성**, 향후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함

*포털 일평균 접속건수: ('18) 35,395 → ('19) 34,592 → ('20) 33,729 → ('21.7월 末) 60,855

**예산(백만원) : ('18) 254 → ('19) 236 → ('20) 224 → ('21) 218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수입제품 증가*에 대응하여 불량·불법 제품 적기 차단, 통관 前 안전성 조사의 회피 수단인 우회 통관 방지를 위한 세관 파견 인력 증원이 필요하나 연례적으로 예산 과소 편성**, 향후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함

* 협업조사(건) : ('18) 3,846 → ('19) 4,759 → ('20) 5,495 → ('21.7월 末) 3,983

** 예산(백만원) : ('18) 426 → ('19) 447 → ('20) 425 → ('21) 446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900	-	900	-	±12	-	900	885	98.3	98.3	-	15
2019	863	-	863	-	-	-	863	852	98.7	98.7	-	11
2020	820	-	820	-	-	-	820	813	99.1	99.1	-	7
2021	862	-	862	-	-	-	862	841	97.6	97.6	-	21

☐ 출연·보조사업 등 실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사유(±12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부족으로 인해 관리용역비(210-15), 일반수용비(210-01)에서 세목간 조정 (일반수용비: 3.5백만원, 관리용역비: 8.15백만원 → 시험연구비: 11.65백만원,)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잔액(조달공고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 등, 일반연구비 9백만원, 일반수용비 5백만원, 관리용역비 1백만원)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 : 해당사항 없음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잔액(조달공고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 등, 일반연구비 2백만원, 관리용역비 9백만원)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조정 : 해당사항 없음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잔액(조달공고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 등, 민간위탁사업비 6백만원), 일반연구비 1백만원
2021	-

☐ 2021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1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9)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3732-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기술표준원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0	산업·중소기 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7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박용민 043-870-5450		박선영 연구사 043-870-5459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생태계조성	990	1,070	1,070	1,070	1,070	0	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990	990	990 [990]	-	-	1,070	-	1,070	1,070 [1,064]	-	6	1,070
· 어린이제품 안전확 보 역량강화	490	490	490 [490]	-	-	570	-	570	570 [570]	-	-	570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440	440	440 [440]	-	-	520	-	520	520 [520]	-	-	520
- 어린이제품 제조기 업 지원	50	50	50 [50]	-	-	50	-	50	50 [50]	-	-	50
· 어린이제품 안전교 육 기반조성	230	230	230 [230]	-	-	230	-	230	230 [224]	-	6	230
- 안전교육교재 등 콘텐츠 개발	160	160	160 [159]	-	-	160	-	160	160 [154]	-	-	160
-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70	70	70 [70]	-	-	70	-	70	70 [0]	-	-	70
· 어린이제품 안전교 육 프로그램 운영	270	270	270 [270]	-	-	270	-	270	270 [270]	-	-	270
- 안전교육 연구학교	100	100	100 [100]	-	-	100	-	100	100 [100]	-	-	100
- 찾아가는 안전교육	70	70	70 [70]	-	-	70	-	70	70 [70]	-	-	70
- 어린이제품 안전체 험관	100	100	100 [100]	-	-	100	-	100	100 [100]	-	-	100
○ 비목별 분류(합계)	990	990	990 [990]	-	-	1,070	-	1,070	1,070 [1,064]	-	-	1,070
· 일반수용비(210-01)	50	50	50 [50]	-	-	50	-	50	50 [50]	-	-	50
· 임차료(210-07)	30	30	30 [30]	-	-	30	-	30	30 [30]	-	-	30
· 일반연구비(260-01)	140	140	140 [140]	-	-	140	-	140	140 [134]	-	6	140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750	750	750 [750]	-	-	830	-	830	830 [830]	-	-	830
· 자산취득비(430-01)	20	20	20 [20]	-	-	20	-	20	20 [20]	-	-	2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90	990	990 [989]	-	-	1,070	-	1,070	1,070 [1,064]	-	-	1,070
· 어린이제품안전확 보 역량강화	490	490	490 [490]	-	-	570	-	570	570 [570]	-	-	570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490	490	490 [490]	-	-	570	-	570	570 [570]	-	-	570
· 어린이제품안전교 육기반조성	230	230	230 [230]	-	-	230	-	230	230 [224]	-	-	230
-일반수용비(210-01)	40	40	40 [40]	-	-	40	-	40	40 [40]	-	-	40

-임차료(210-07)	30	30	30 [30]	-	-	30	-	30	30 [30]	-	-	30
-일반연구비(260-01)	140	140	140 [140]	-	-	140	-	140	140 [134]	-	6	140
-자산취득비(430-01)	20	20	20 [20]	-	-	20	-	20	20 [20]	-	-	20
· 어린이제품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270	270	270 [270]	-	-	270	-	270	270 [270]	-	-	270
-일반수용비(210-01)	10	10	10 [10]	-	-	10	-	10	10 [10]	-	-	10
-민간경상보조(320-01)	260	260	260 [260]	-	-	260	-	260	260 [260]	-	-	2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조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 사전 예방 및 건강 증진 도모

-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민원, 리콜 다수 발생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성을 검증·분석하여 제품안전정보 구축/보급 및 안전기준 개선방안 도출
- 어린이제품 제조기업 지원: 안전한 어린이제품 보급을 위한 영세 제조/수입업자 대상 시험인증 상담, 시험비용 일부 지원 등 역량강화 지원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기반조성)

- 안전교육교재 등 콘텐츠 개발: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사용하는 어린이용 안전교육 교재, 안전체험관용 콘텐츠 개발
-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강사 대상 전문성 함양을 위해 제품안전 관리제도, 교육컨텐츠 활용법, 교수법 등을 교육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안전교육 선도학교: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을 안전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학교별 안전교육 프로그램(기획, 개발, 운영 등)을 지원
- 찾아가는 안전교육: 선도학교 외 지방학교 중심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중인 체험관 내 제품안전분야 체험관 구축 등을 지원

* 접근성 및 타 안전체험 연계를 위해 지자체 소속 안전체험관 내 제품안전분야 체험관 구축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관련 국정과제: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 실천과제: 57-5. 공산품 생산·유통·사용 전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② 법령상 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조, 제5조, 제27조, 제31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조사·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제25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추진경위

- '14.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15. 6월 시행)
- '16. 3월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공고
- '19. 12월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공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어린이 및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보조	한국제품안전 관리원	570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	한국제품안전 관리원	260	100	

3) '22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내역

: (2021) 570 백만원 → (2022요구) 570 백만원, 전년동

- (요구)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 수요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으며 및 코로나19 등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21년 대비 금액 동일 금액 요구
- (산출)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 13개품목(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 대상 품목 수) × 40백만원(품목당 평균비용) = 520 백만원
- (산출)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지원: 10개사(지원대상 기업 수) × 5백만원(기업당 지원금액) = 50백만원
* ('21년) 지원기업수 10개사 → ('22요구) 지원기업수 10개사

○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70,000	<p>○ 민간경상보조(320-01) : 570,000천원</p> <p>가.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 분석 (52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개품목(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 대상 품목 수) × 40백만원 (품목당 평균비용) = 520백만원 <p>나.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지원(5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지원: 10개사(지원대상 기업 수) × 5백만원(기업당 지원금액) = 50백만원 	570,000	<p>○ 민간경상보조(320-01) : 570,000천원</p> <p>가.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 분석 (52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개품목(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 대상 품목 수) × 40백만원 (품목당 평균비용) = 520백만원 <p>나.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지원(5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지원: 10개사(지원대상 기업 수) × 5백만원(기업당 지원금액) = 50백만원

② 어린이제품안전교육기반조성 내역

: (2021) 230 백만원 → (2022요구) 230 백만원, 전년동

- (요구) 지속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과 찾아가는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을 위해, '21년 대비 동일 금액 유지 요구
- (산출) 교재개발 : 4건(교재개발 건수) × 40백만원(건당 교재 개발비) = 160 백만원
- (산출)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100명(전문가 양성 인원) × 0.7백만원(1인당 양성 비용) = 70백만원

'20년 예산		'21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30,000	<p>○ 연구용역비(260-01) : 140,000천원</p> <p>가. 어린이제품안전교육 교재 등 콘텐츠 개발 등 4건 (140,000천원)</p> <p>· 수행사 용역 : 4건×35,000,000원=140,000천원</p> <p>○ 일반수용비(210-01) : 40,000천원</p> <p>가. 안전교육 교재 인쇄 및 확산 (20,000천원)</p> <p>· 안전교육 교재 인쇄 및 확산: 4건×5,000,000원=20,000천원</p> <p>나. 안전교육과정 물품 구입(20,000천원)</p> <p>·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경비 : 3과정×6,666,666원=20,000천원</p> <p>○ 임차료(210-07) : 30,000천원</p> <p>가. 안전교육 전문가 등 교육을 회의장 임대 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분산 개최) (30,000천원)</p> <p>·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3일×10개소×1,000,000원=30,000천원</p> <p>○ 자산취득비(430-01) : 20,000천원</p> <p>가.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운영 기자재 구입(2,000천원)</p> <p>·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운영 교육 등을 위한 전자기기 교재 등 : 3과정×6,666,666원=2,000천원</p>	230,000	<p>○ 연구용역비(260-01) : 140,000천원</p> <p>가. 어린이제품안전교육 교재 등 콘텐츠 개발 등 4건 (140,000천원)</p> <p>· 수행사 용역 : 4건×35,000,000원=140,000천원</p> <p>○ 일반수용비(210-01) : 40,000천원</p> <p>가. 안전교육 교재 인쇄 및 확산 (20,000천원)</p> <p>· 안전교육 교재 인쇄 및 확산: 4건×5,000,000원=20,000천원</p> <p>나. 안전교육과정 물품 구입(20,000천원)</p> <p>·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경비 : 3과정×6,666,666원=20,000천원</p> <p>○ 임차료(210-07) : 30,000천원</p> <p>가. 안전교육 전문가 등 교육을 회의장 임대 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분산 개최) (30,000천원)</p> <p>·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3일×10개소×1,000,000원=30,000천원</p> <p>○ 자산취득비(430-01) : 20,000천원</p> <p>가.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운영 기자재 구입(2,000천원)</p> <p>·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운영 교육 등을 위한 전자기기 교재 등 : 3과정×6,666,666원=2,000천원</p>

③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역

: (2021) 270 백만원 → (2022요구) 27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운영 선도 학교 확대와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 확대 필요 전년대비 동일 금액 요구
- (산출) 안전교육 연구학교 : 10개교(지원대상 학교 수) × 10백만원(학교 당 지원액수) = 100백만원
- (산출) 찾아가는 안전교육 : 20개교(전국) × 3.5백만원(1개교 당 지원 액수) = 70백만원
- (산출) 어린이제품안전체험관 : 1개소(체험관 지원 수) × 100백만원(체험관 1개소 당 구축 비용) = 100백만원

○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0,000	<p>○ 민간경상보조(320-01) : 260,000천원</p> <p>가. 안전교육 연구학교 (100,000천원)</p> <p>· 안전교육연구학교 : 10개교×1,000,000원=100,000천원</p> <p>나. 찾아가는 안전교육 (60,000천원)</p> <p>· 찾아가는 안전교육 : 20개교×3,000,000원=60,000천원</p> <p>다. 어린이제품안전체험관 (100,000천원)</p> <p>· 어린이제품안전체험관</p>	270,000	<p>○ 민간경상보조(320-01) : 260,000천원</p> <p>가. 안전교육 연구학교 (100,000천원)</p> <p>· 안전교육연구학교 : 10개교×1,000,000원=100,000천원</p> <p>나. 찾아가는 안전교육 (60,000천원)</p> <p>· 찾아가는 안전교육 : 20개교×3,000,000원=60,000천원</p> <p>다. 어린이제품안전체험관 (100,000천원)</p> <p>· 어린이제품안전체험관</p>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2개소×50,000,000원=100,000천원		: 2개소×50,000,000원=10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0,000천원
	가. 찾아가는 안전교육 물품 구입 (10,000천원)		가. 찾아가는 안전교육 물품 구입 (10,000천원)
	· 찾아가는 안전교육 물품 구입 : 20개교×500,000원=10,000천원		· 찾아가는 안전교육 물품 구입 : 20개교×500,000원=1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참가자(단위: 명)	목표	3,000	4,000	4,500	5,000	5,500	매년 성과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조정 해왔으며, 국민관심도 등을 고려, 전년 목표의 약 10%를 높인 최대 목표치 설정	Σ 연간 교육이수 인력	연구학교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참여자 명단
	실적	3,786	4,965	5,619	-	-			
	달성도	126.1	124.1	124.9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용품, 보행기 등 11개 품목의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성 검증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검토(안) 도출 -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18개 중소기업 - 미취학 어린이 및 초등학교 중·저학년용 맞춤형 교재 개발: 2건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총 210명 수료 - 12개 유치원·초등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정규 커리큘럼으로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2,130명 수료 - 30개 유치원·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1,653명 수료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재난안전 등)」과 연계하여 어린이제품안전체험 시설 구축 : ①부천 119안전센터체험관, ②진천 종합안전교육체험관 등 2개소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가구 등에 대한 VOC 시험방법(챔버법),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가이드라인 개발(안) 등 시험 연구 및 검증·분석 - 초등학교 어린이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교구 구매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어린이제품 25개 중소기업 컨설팅 및 시험비 지원, 안전산업박람회 참여(9월) - 학년별 난이도를 고려한 카드·보드형 교재개발 및 구축된 체험관에 전시할 VR 및 와이드스크린 영상 제작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 총 210명 수료 - 15개(유치원7, 초등학교8) 「선도학교」지정을 통해, 학생·교사 대상 어린이제품

	<p>안전교육 실시 : 어린이 2,982명 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개(어린이집6, 유치원 10, 초등학교 24)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실시 : 어린이 1,983명 수료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과 연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체험 시설 구축 :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1개소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학용품, 어린이용 안경테 등 10개 품목 및 유해원소 함유량 확인방법 개발 등 검증·분석 진행 중 - (제조기업 지원)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비 지원사업 진행 중 - (안전교육교재 등 콘텐츠 개발) 국내·외 어린이 안전 교육 관련 콘텐츠 조사·분석을 통해 교보재 등 어린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 자료 개발 - (교육 전문가 육성)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강사 대상 온라인 교육 예정 - (어린이제품 선도학교) 17개(유치원 8개, 초등학교 9개) 지정, 하반기 교육 추진 예정 -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45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하반기 교육 추진예정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울산안전체험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구축 진행 중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학용품, 어린이용 안경테 등 13개 품목 및 유해원소 함유량 확인방법 개발 등 검증·분석 진행 중 - (제조기업 지원)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비 지원사업 진행 중 - (안전교육교재 등 콘텐츠 개발) 국내·외 어린이 안전 교육 관련 콘텐츠 조사·분석을 통해 교보재 등 어린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 자료 개발 - (교육 전문가 육성)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강사 대상 온라인 교육 예정 - (어린이제품 선도학교) 20개(유치원 10개, 초등학교 10개) 지정, 하반기 교육 추진 예정 -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50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하반기 교육 추진예정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강원안전체험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구축 진행 중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어린이제품 사업자 불법불량제품 단속 위반율 감소: ('18) 40.2% → ('22) 33.0%
-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부적합률 감소: ('18) 8.5% → ('22) 6.8%
-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율 15% 감소: ('18) 5,994건 → ('22) 4,800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990	1,040	1,200	1,200	1,200	
'21~'25		1,070	1,200	1,200	1,200	1,2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예결위 전체회의, '19.11.4)

○ (지적) 대상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 (조치) 미반영

(상임위 소위원회, '20.11.3)

○ 대상사업 안전체험관 증액(3억) 필요 언급('20년 상임위)

- 내역사업인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중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은 권역별, 소외지역 등 고려 설치 필요

→ (조치) 21년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사업에서 일부(대상 지역 선정) 반영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효과적인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
 - (전략 1)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전략 2)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 (전략 3)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전략 4)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제품안전기업이 어린이제품안전 인증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안전 중소기업에 인증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
 - 어린이제품안전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 교재의 내용과 질의 지속적인 개선
 - 어린이제품안전교육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어린이들의 제품안전에 대한 인지를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 선도학교, 찾아가는 안전교육의 전국에서 다양한 학교의 참여 유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0년 재정사업자율평가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단위사업: 보통

12) 부처 건의사항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 강화 >

- 신·융복합 제품이 지속 출시되고 있고,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 예산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
 - 현재 유럽, 미국 등 해외 기준 조사 수준으로 하던 사업에 대해 실제 유해성 분석·연구를 위한 예산 반영 필요
- * 20년 유해성검증 대상 어린이제품 10개 품목 → 21년 유해성검증 대상 어린이제품 13개 품목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시행('15.6.4.)으로 만 13세이하 모든 어린이제품을 관리품목을 확대함에 따라 안전성 검증강화 필요

< 어린이제품 제조기업 지원 강화 >

- 어린이제품 소상공인의 지원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기업만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
 - 어린이제품 제조업체 중 20인 미만 종사자 업체가 90%이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강화 필요
- * 21년 1차 신청기업수 : 257 개사, 하반기 2차 추가 공고 예정

➡ 어린이제품의 근본적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제조기업 컨설팅 및 지원을 통한 기업의 역량 강화로 제품의 안전 품질 향상이 필요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확대 >

-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이슈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어린이 안전사고예방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은 미흡한 상태
 - 어린이제품 올바른 사용·구매법, 안전인식 제고를 위해 제품안전교육 선도학교 추가 지정 필요('20년 17개교, 3,563명 → '21년 : 20개교 4,000명)

➡ 어린이, 학부모 및 교사 등 어린이안전사고 현장 소비자 중심의 안전의식 제고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필수적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990	990	-	-	-	-	990	990	100	100	-	-
2019	990	990	-	-	-	-	990	989	99.9	99.9	-	1
2020	990	990	-	-	-	-	990	990	100	100	-	-
2021	1,070	1,070	-	-	-	-	1,070	1,064	99.4	99.4	-	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750	750	750	750	-	750	750	-	-	100
2019	750	750	750	750	-	750	750	-	-	100
2020	750	750	750	750		750	750	-	-	100
2021. 12월기준	830	830	830	830		830	83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요약

□ 배경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15.6.시행) 제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위해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19.12.공고)’을 수립시행

□ 현황 및 필요성

- (현황) 어린이법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대상을 만 13세 이하 모든 어린이제품으로 확대하고 불법 위해제품 유통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
 - * 통관단계 및 유통시장 안전성조사,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등
- (필요성) 어린이는 유해물질에 취약하고 제품위험 대처능력이 부족하므로 성인 대상 생활용품과 차별화된 안전관리 필요

□ 추진전략

-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 확립”이라는 추진목표 실현을 위해 4대 추진전략 및 15대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 추진

목표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 확립		
추진전략	전략		15대 추진과제
	I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①안전관리 제도개선, ②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③위해도평가센터 설립, ④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II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	⑤수입 위해제품 유통차단, ⑥불법·불량제품 유통감시 강화, ⑦안전인증기관의 책임성 강화, ⑧유통단계 안전관리 합리화
	III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⑨맞춤형 컨설팅 및 정보제공 강화, ⑩시험·검사 비용 절감 지원, ⑪안전친화기업 활성화
	IV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⑫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⑬체험형 어린이교육 시설 확충, ⑭안전교육 전문성 강화, ⑮대국민 소통 강화

사 업 명
(20) 어린이제품 안전성 평가역량 강화사업 (3732-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1	국가기술표준원	0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8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어린이제품 안전성 평가역량 강화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박용민 043-870-5450	김진상 043-870-5455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어린이제품안전성 평가역량강화사업	-	-	-	1,150	1,150	1,15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1,150
· 어린이제품시험 인프라구축	-	-	-	-	-	-	-	-	-	-	-	1,15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1,150
· 사업출연금(350-02)	-	-	-	-	-	-	-	-	-	-	-	1,145
· 연구개발기획 평가 관리비(360-06)	-	-	-	-	-	-	-	-	-	-	-	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1,150
· 어린이제품시험 인프라구축	-	-	-	-	-	-	-	-	-	-	-	1,150
-사업출연금(350-02)	-	-	-	-	-	-	-	-	-	-	-	1,145
-연구개발기획 평가 관리비(360-06)	-	-	-	-	-	-	-	-	-	-	-	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어린이제품시험 인프라구축)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의 국제기준 (UN/ECE) 강화('13.07.) 및 6세 미만 어린이 카시트 착용 의무화*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 개발 및 시험평가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 '18년 “도로교통법(경찰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국토부)“ 개정

기존(UN/ECE/R44)	강화(UN/ECE/R129)	비고
체중(kg)에 따른 분류	키(cm)에 따른 분류	분류 체계 변경
9kg(약9개월) 부터 앞보기 가능	15개월까지 뒤보기 의무	목·머리 보호 강화
전방/후방 충돌시험	전방/후방/측면 충돌시험	측면 보호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5.0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 '16.02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1차 기본계획 수립
- '19.11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2차 기본계획 수립
- '20.07월 감사원은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지적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68억(국고 43억, 민간 현물투자 25억)
- 사업기간 : '22~'24
- 사업규모 :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시험평가장비 1기 구축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안전인증기관 (공모 예정)
- 사업 수혜자 :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및 어린이제품 제조·수입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어린이제품 시험인프라 구축	출연	안전인증 기관대상 공모 00공단	1,145	99.5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3) '22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어린이제품 시험인프라 구축 : 1,150백만원 (순증)
 - 충돌용 레일 X 1ea : 1,145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5백만원
 - * 부지(300평), 시험동 건축(건축비, 전기, 소방 등), 항온항습 장비, 소모품 등은 안전인증기관이
현물 투자(약 25억)
- 테스트 벤치, 유압시스템, 충격흡수시스템(응급브레이크포함), 측면충돌장비,
센서류, 조명시스템, 속도 및 상해데이터 취득장치, 영상데이터취득장치, 충돌용
더미 등은 2~3차년도에 걸쳐 구축 예정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어린이제품 시험평가 장비구축 (단위: 여부)	목표	'22년 신설				100%	시험평가장비 1기 구축	계획대비 장비구축 진도율	장비 계약, 시공 일정 등
	실적					-			
	달성도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신규사업)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제기준의 측면충돌 시험방법 도입을 통한 어린이 안전확보

* 차량사고 중 측면충돌 사고비율('15년, 39% → '19년 48%)은 지속적으로 증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측면충돌 (건수)	65,498	73,397	73,857	76,234	83,508
차량사고 (건수)	169,471	162,009	160,065	161,999	173,328
측면충돌 비율	39%	45%	46%	47%	48%

<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 우리기업이 해외 수출을 위해 해외 시험검사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약 1,500만원/건)의
약 10% 이상 절감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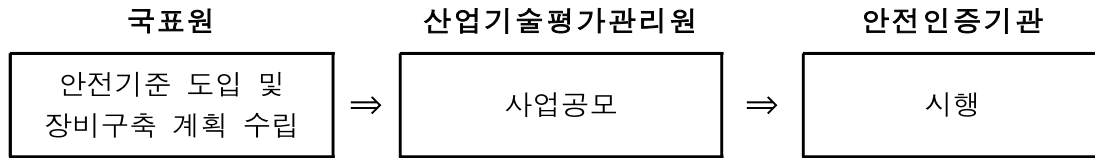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출연사업(국고 43억(총 3년), 안전인증기관 현물투자 25억)

* 안전인증기관 대상으로 해당사업 공모 후 시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	-	-	-	-	
'21~'25		-	1,150	2,450	7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감사원 지적)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의 시험조건 검토 등 국내 안전기준 강화 요구(산업 인증제도 운영실태 감사, 20.11.)

- (조치사항) 국제기준 반영 등을 통한 안전기준 개정 및 시험장비 구축 추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위해도가 높은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의 국제기준 도입 및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평가장비구축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 시험평가장비 구축 및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
 - * (1차년도) 시험동 건축(전기, 소방 항온항습 장비 등), 기초공사, 충돌용 레일 등 일부 장비 구축
 - * (2차년도) 조명시스템, 영상데이터시스템 등 장비구축 및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
 - * (3차년도) 장비구축 완료, 안전기준 개정고시 및 적용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신규사업)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신규사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안전기준 개정)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의 측면충돌 시험방법 도입 등 강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한 국내 안전기준 개정 추진

* 강화된 국제기준(UN/ECE/R44 → R129, '13.07.~)이 적용 유예 중에 있으나, 향후 2~3년 내에 전면 전환예정

UN/ECE/R44(기존)	UN/ECE/R129(강화)	비고
체중(kg)에 따른 분류	키(cm)에 따른 분류	분류 체계 변경
9kg(약9개월) 부터 앞보기 가능	15개월까지 뒤보기 의무	목·머리 보호 강화
전방/후방 충돌시험	전방/후방/측면 충돌시험	측면 보호 강화

- 차량사고 중 측면충돌 사고비율('15년, 39% → '19년 48%)이 증가하고 있어, 국제기준의 측면충돌 시험방법 도입을 통한 시험·평가 필요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측면충돌 (건수)	65,498	73,397	73,857	76,234	83,508
차량사고 (건수)	169,471	162,009	160,065	161,999	173,328
측면충돌 비율	39%	45%	46%	47%	48%

<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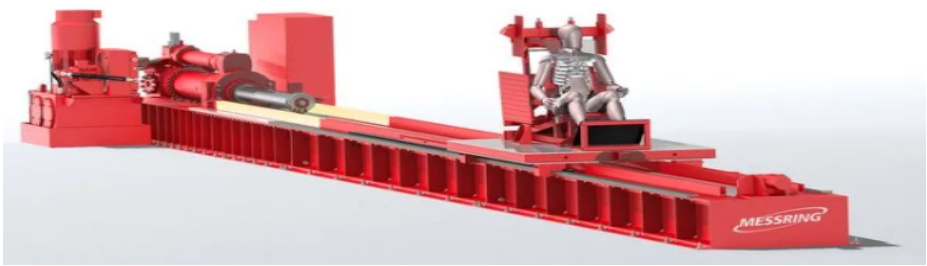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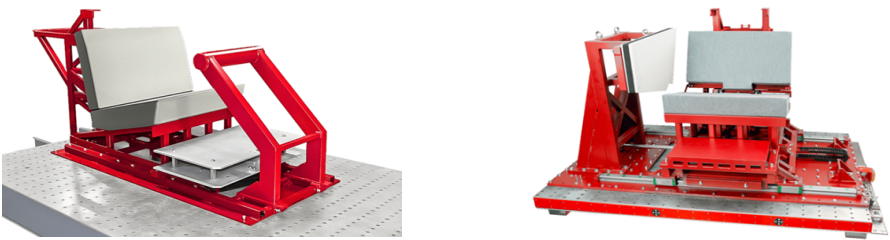
- (장비구축) 강화된 국제기준 적용을 위해 측면충돌 시험시스템, 상해데이터, 영상데이터 취득시스템 등 주요 시험평가 장비구축 추진

* 부지(약 300평), 시험동 건축(건축비, 전기, 소방 등), 항온항습 장비, 소모품 등은 안전인증기관이 현물 투자(약 25억)

< 장비 비교 >

구분	기존장비(R44)	신규장비(R129)	비고
충돌방식	공압식	유압식	
레일방식	1개	2개	측면충돌용
속도제어	절대속도	상대속도	측면충돌용
테스트벤치	-	측면충돌 벤치	측면충돌용
더미	P더미	Q더미	센서3개 → 센서30개

- 장비구성

모의충돌 시험 시스템	 <p>충돌용 기초 레일, 유압 탱크, 가속 피스톤, 브레이크</p>
	 <p>테스트 벤치</p>
조명 시스템	

<p>속도 및 상해 데이터 취득장치</p>	<div data-bbox="386 224 1075 416" data-label="Image"> </div> <p>데이터 취득장치</p> <div data-bbox="1086 219 1383 416" data-label="Image"> </div> <p>소프트웨어</p>
<p>영상 데이터 취득장치</p>	<div data-bbox="470 506 970 645" data-label="Image"> </div> <p>고속카메라 및 지지대</p> <div data-bbox="1037 490 1337 654" data-label="Image"> </div> <p>소프트웨어</p>
<p>Q-더미</p>	<div data-bbox="400 734 793 1025"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820 748 1106 1025"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1134 728 1369 1025" data-label="Image"> </div>

사 업 명
(21) 제품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3732-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10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제품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책과	한상미	-	안재욱 연구사
		043-870-5410	-	043-870-541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제품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	-	-	2,000	860	860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					2022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860
·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위해성평가	-	-	-	-	-	-	-	-	-	-	-	850
· 위해제품 소비자안내 제도 및 운영	-	-	-	-	-	-	-	-	-	-	-	1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860
·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10
·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8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 생활안전 보호를 위해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생하는 기존 관리제품과 급증하는 신기술 제품이나 비관리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여 선제적 안전관리 시스템 필요
- (위해정보를 바탕으로한 제품 위해성평가) 국내·외 위해사례 조사, 제품시험을 통한 위해요인 확인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위해수준과 안전관리 여부 확정
- (위해제품 소비자 안내 제도 및 운영)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리콜, 소비자 안전주의보 안내 및 제도 콘텐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② 추진경위

- '10. 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공포
- '11. 2월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 '11. 3월 : 제1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4. 2월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5. 6월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 '17.11월 : 제3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20. 7월 : 제4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21. 1월 : 제품 위해성 평가센터 운영 사업 기획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26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및 관련 산업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3) '22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①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 평가 : ('21) - → ('22) 850백만원, 신규 사업
 - (요구) 국내·외 제품 위해사례 등 실태조사, 제품 시험을 통한 위해요인 확인 및 위해 심각도를 바탕으로한 전문가 자문위의 위해수준 결정을 통한 위해성 평가
 - (산출) 850백만원 = 10개과제 x 85백만원 x 12/12개월
- ② 위해제품 소비자 안내·제도 및 운영 : ('21) - → ('22) 10백만원, 신규 사업
 - (요구) 위해성 평가결과 리콜제품,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고가 빈발하여 안전한 제품사용이 요구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내 콘텐츠 개발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제도
 - (산출) 10백만원 = (안내·제도 콘텐츠 개발 및 매체이용비) 10백만원

4) 사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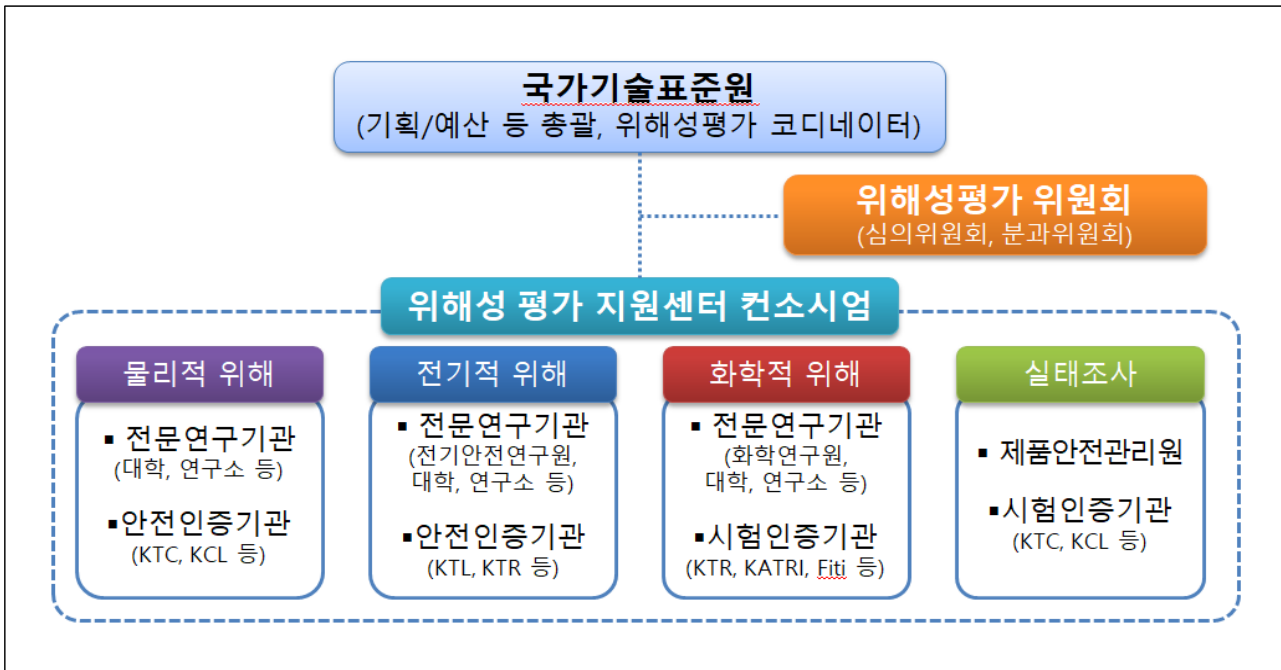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품위해성 평가
 - 국내·외 제품 위해사례 등 실태조사, 위해 심각도파악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위해수준 결정 및 위해도 평가
 - 소비자 안내·제도
 - 위해성 평가결과에 따른 제품 안내 콘텐츠 개발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제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	-	-	-	-	
'21~'25		-	2,000	2,400	2,400	2,4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방향

- 식약처, 소방청 등 타부처 간 사고·위해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공유하여 위해요인 DB 구축에 대한 실태조사
- 전문가, 전담기관, 시험기관 등을 활용하여 위해 가능성 제품 선정과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 등 제품 위해성평가
- 각 위해분야별 평가를 위한 기관 지정 및 운영

○ 세부 추진계획

- 제품 위해성 평가 실태조사 및 위해수준결정, 위해성 평가를 위한 각 기관 및 전문가를 활용한 컨소시엄을 통한 제품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동 사업은 국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안전성조사)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와 국정과제 57-5. 공산품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등장과 비관리제품의 증가 등 국민의 제품 위해에 대한 노출이 심해지고 있어 선제적 제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을 위한 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사업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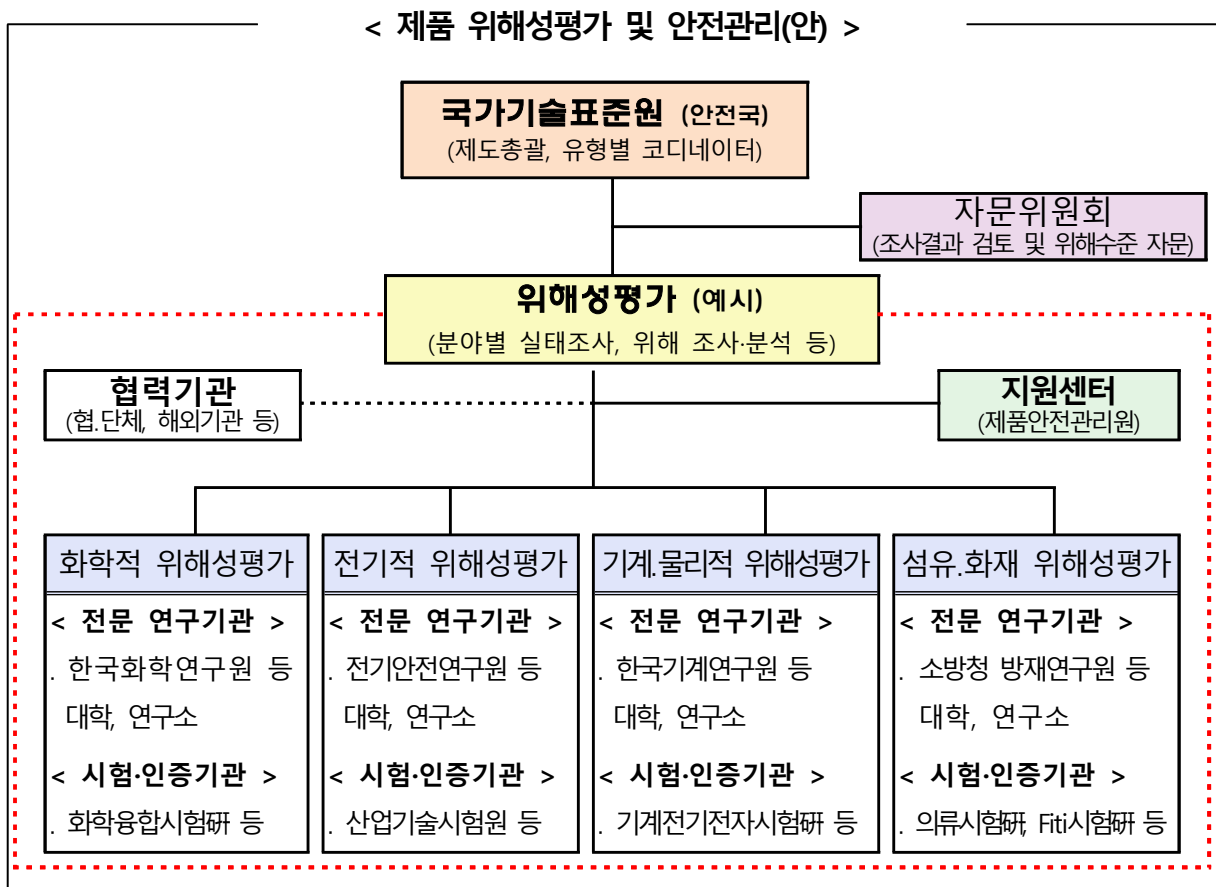
라. 기타 추가자료

□ 추진배경

- 융복합·신기술 발전과 소비생활 트렌드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소비자 위해사고도 지속 발생
 - * 제품위해사례는 연간 2만여건(소비자원), 최근 3년간 제품화재는 2,269건(국표원)
 - ※ (사례) 코로나19로 A사는 마스크용 나노필터를 개발하였으나, 미세물질로 인한 흡입독성 우려
- 美, EU 등은 한정된 자원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방대한 제품을 감시하기 위해 위해성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중
 - * (美) 위해성평가관리(Risk Assessment Mangement), (EU) 위해성평가지침(Risk Assessment Guidline)

□ 사업내용

- 국내·외 위해사례 조사, 제품시험을 통한 위해요인 확인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제품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여부 확정



-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리콜, 소비자 안전주의보 및 계도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사업효과

- 융복합·신기술제품 출시, 비관리제품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해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 업 명						
(22)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37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1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정책과	전민영	석경철	
		043-870-5521	043-870-5529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4,792	6,970	6,970	7,474	7,474	504	7.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942	4,942	4,795 [4,795]		147	6,970	6,970	6,970	6,760 [6,760]		210	7,474
· 해외기술규제 조사 분석 및 대응지원	3,510	3,510	3,486 [3,486]		24	4,426	4,426	4,426	4,420		5	4,801
· WTO/FTA TBT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314	314	208 [208]		106	314	314	314	178.3 [178.3]		135	308
· FTA TBT 협상 및 이행강화	230	230	220 [220]		10	230	230	230	230 [230]		-	230
· FTA TBT 종합지원 (중국, 신남방국)	888	888	881 [881]		7	1,400	1,400	1,400	1,400 [1,400]		-	1,535
· 한-아세안 표준 협력 및 기반조성	-	-	-	-	-	600	600	600	530 [530]		70	600

○ 비목별 분류(합계)	4,942	4,942	4,795 [4,795]		147	6,970	6,970	6,970	6,760 [6,760]		210	7,474
· 일반수용비(210-01)	155	155	121 [121]		34	197	197	197	180 [180]		17	197
· 임차료(210-07)	50	50	48 [48]		2	50	50	50	50 [50]		-	50
· 일반용역비(210-14)	-	-	-		-	260	260	260	260 [260]		-	405
· 국 외 업 무 여 비 (220-02)	132	132	28 [28]		104	118.8	118.8	118.8	0		118	113
· 사업추진비(240-01)	12	12	12 [12]		-	12.8	12.8	12.8	12.8 [12.8]		0	12
· 일반연구비(260-01)	4,593	4,593	4,586 [4,586]		7	3,535.4	3,535.4	3,535.4	3,460 [3,460]		75	1,810
· 사업출연금(350-02)	-	-	-		-	2,796	2,796	2,796	2,796 [2,796]		0	4,887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942	4,942	4,795 [4,795]		147	6,970	6,970	6,970	6,760		210	7,474
· 해외 기술 규제 조사 분석 및 대응지원	3,510	3,510	3,486 [3,486]		24	4,426	4,426	4,426	4,420		5	4,801
- 일반연구비(260-01)	3,505.5	3,505.5	3,481.5 [3,481.5]		24	1,625.5	1,625.5	1,625.5	1,619.5		5	0
- 사업출연금(350-02)	-	-	-		-	2,796	2,796	2,796	2,796 [2,796]		-	4,797
- 사업추진비(240-01)	4	4	4		-	4.5	4.5	4.5	4.5 [4.5]		-	4
· WTO/FTA TBT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314	314	208 [208]		106	314	314	314	178.3 [178.3]		135	308
- 국외업무여비(220-02)	132	132	28 [28]		104	118.8	118.8	118.8	0		118	113
- 임차료(210-07)	50	50	48 [48]		2	50	50	50	50 [50]		-	50
- 일반수용비(210-01)	124	124	124 [124]		0	137	137	137	120 [120]		17	137
- 사업추진비(240-01)	8	8	8 [8]		0	8.3	8.3	8.3	8.3 [8.3]		-	8
· FTA TBT 협상 및 이행강화	230	230	220 [220]		10	230	230	230	230 [230]		-	230
- 일반연구비(260-01)	230	230	220 [220]		10	230	230	230	230 [230]		-	230
· FTA TBT 종합지원 (중국, 신남방국)	888	888	881 [881]		7	1,400	1,400	1,400	1,400 [1,400]		-	1,535
- 일반연구비(260-01)	674	674	667 [667]		7	1,080	1,080	1,080	1,080 [1,080]		-	980
- 일반용역비(210-14)	184	184	184 [184]		0	260	260	260	260 [260]		-	405
- 일반수용비(210-14)	30	30	30 [30]		0	60	60	60	60 [60]		-	60
- 사업출연금(350-02)	-	-	-		-	-	-	-	-		-	90
· 한-아세안 표준협력 및 기반조성	-	-	-		-	600	600	600	530 [530]		70	600
- 일반연구비(260-01)	-	-	-			600	600	600	530 [530]		70	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현황)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무역기술장벽(TBT*)이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며, 이에 WTO 통보 규제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음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WTO TBT 사무국 통보규제 : ('17) 2,585건→('18) 3,065건→('19) 3,337건→('20) 3,354건→('21)4,000건(예상)
△ 21년 통보문 3,500건 + 미통보문 500건 예상

- 외국의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①규제정보를 수집·분석(기초/심층)·전파하고, ②WTO/FTA TBT등 협상(양자/다자, 현지방문 협상)을 통해 기술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③TBT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
- 중국뿐만 아니라 신남방주요국(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국가들에 대한 표준 분석 및 컨설팅, TBT 교육등수행
- (내역사업 ① 해외 기술규제 조사, 분석 및 대응지원) WTO 통보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우리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통보문 입수 및 분석(기초분석 및 심층분석)을 통해 관련 규제내용을 수출기업에 전파
 - 규제대상의 범위, 제개정 주요내용, 국가간 규제내용 과도성 비교,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 산업계 의견수렴(정부/TBT종합지원센터/업계/시험분석기관/업종별 협단체, 무역유관기관등)
- (내역사업 ② WTO/FTA TBT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양자협상, 다자협상 및 타국 공조를 위한 전문가 협의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
 - WTO TBT 위원회(3,6,11월)에 참석, **다자협상**을 실시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FTA TBT 위원회(예: 한-중국, 한-콜롬비아), 현지 규제당국 직접방문 등 **양자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 애로 현안을 적기 해소
- (내역사업 ③ FTA TBT 협상·이행 강화) 상대국의 규제현황, 법, 제도 및 기술규정 등을 분석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용

- 분석된 협상 당사국의 규제정보를 사용하여 협상시 우리 국익에 최대 반영
- * 협상 전후시 상대국의 각종 기술규제 법령, 제도 등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만 우리의 TBT 협상/이행시 국가이익을 반영할 수 있음

- (내역사업 ④ FTA TBT 종합지원) (對 중국 및 新남방국가 수출 지원 확대)

- 최근 중국의 환경규제, 제품성능 규제 등 기술규제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베트남, 인니, 인도 등 新남방국가 수출 비중이 증가(우리 전체수출액의 40%이상)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기술규제 및 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표준분석, 컨설팅 및 TBT 교육, 설명회** 등 정보제공 필요

- (내역사업 ⑤ 한-아세안 표준협력 및 기반조성) 국내 표준을 아세안 지역에 확산하고 동 지역 국가들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도모하여 상이한 표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무역 기술장벽을 사전 해소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협력사업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제1항] 정부는 산업표준, 정보·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 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표준을 제정한 때에는 제정한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 ① 정부는 국가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적합성평가 절차와 달라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이하 “무역기술장벽”이라 한다)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국가표준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2. 제7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

9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9의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9의4.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및 홍보

○ [WTO/TBT 협정('95) 제10.1조]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및 다른 회원국 국내의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문의에 응답할 수 있고 아래에 관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의처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이하 생략)

○ 발효된 FTA 양자협정에서 규정(현재 15개*)

* 한-칠레 FTA, 한-페루 FTA, 한-콜롬비아, 한-미 FTA, 한-싱가포르 FTA, 한-EU FTA 등

- (예시) 한-미 FTA 협정('07) 제9.6조(투명성) 3항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그 제안을 통보할 때에, 이와 동시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미합중국 질의처, 또는 이 장의 부속서 9-가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6.6 FTA/TBT 협상 및 TBT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규제대응과 신설

○ '07.4 OECD 보고서 관련 국무조정실에 TBT 중앙사무국 운영 계획보고

○ '08.9 TBT 중앙사무국 개설 후 무역기술장벽(TBT)을 전담 대응중

○ '13.12 WTO/FTA-TBT 협상·이행 및 TBT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규제대응국 신설

○ '15.5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既타결 FTA 국내보완대책」 중 한-중 FTA 종합 지원사업 추진

○ '17. 5. 대선 10대 공약[주변 4국(중·일·러 등)과의 협력외교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통상외교 역량 강화(국익우선 협력외교 2, 3)]

○ '17.8 국정과제 34-6, 미래시장진출을 위한 국가표준·인증 혁신
(무역기술장벽대응 지원 및 기술규제 개혁 선진화 체계 구축)

○ '18.6 범부처 협의회 구성·운영근거 및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국가표준기본법)

○ '19.1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설립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8년)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방식, 출연방식(일부 내역사업에 한정)
- 사업시행주체 : 국표원, (참여기관) TBT종합지원센터(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시험분석
기관 KTR, KTC, KTL, KCL, 업종별협단체 KEA, KSCIA, KOSA 등
- 사업 수혜자 : 국내 수출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출연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외기술 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지원	출연	TBT종합 지원센터 (한국시험 인증산업 협회)	4,887 백만원	미정	<p>○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제1항</p> <p>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 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 연할 수 있다.</p> <p>2. 제7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p> <p>9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 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p> <p>9의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역 기술장벽 관련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p> <p>9의4.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역 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조사·연구· 개발 및 홍보</p>

3) '22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지원 사업 (7,474백만원)

* ('21년) 6,970백만원 → ('22년) **7,474백만원 (+504백만원)**

(1)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 지원** : (2021)4,426 → (2022 확정) **4,801백만원, +375백만원**

- **WTO TBT 통보문(미통보문)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 : **4,026백만원(+330백만원)**

[350-02 사업출연금]

* ('21년) 심층분석 일반연구비 900백 + 사업출연금 2,796백만원(기초분석전액 296백만원+심층분석 2,500백만원) = 3,696백만원 → ('22 확정) **4,026백만원(+330백만원)**

△ 기초 분석비와 심층 분석비 전액을 '사업출연금'으로 비목 전환

• WTO TBT 통보문(미통보문) 기초분석 : **326백만원(+30백만원)**

* ('21년) 3,700건 × 0.08백만원 = 296백만원 → ('22 확정) 4,075건 × 0.08백만원 = **326백만원(+30백만원)**

• WTO TBT 심층분석(통보문+미통보문+해외기술규제 최종안) : **3,700백만원(+300백만)**

*('21년) 680건 × 5백만원 = 3,400백만원 → ('22 확정) 740건 × 5백만원 = **3,700백만원(+300백)**

- **신 산업, 신기술 기술규제 분석** : **순증 250백만원**[350-02 사업출연금]

• 규제 모니터링, 기술동향 및 표준 분석 : 순증 150백만원

* ('22 확정) 30건 × 5백만원 = 150백만원

• TBT 메가트랜드 보고서 발간 : 순증 100백만원

* ('22 확정) 20건 × 5백만원 = 100백만원

- **지역연합(체)의 기술규정 및 표준분석** : **순증 110백만원** [350-02사업출연금]

• 기술규정 및 표준의 모니터링/분석 : 순증 110백만원

* ('22 확정) 11건 × 10백만원 = 110백만원

△ GSO의료기기, 기계류 장치 등, 메르코수르 전기전자, 공산품, 건설기계등, 유라시아 경제연합 자동차, 화학안전 등

- **TBT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 : **411백만원** (△314.5백만원) [350-02 사업출연금]

* ('21년) 일반연구비 [260-01] 725.5백만원→ ('22 확정) 411백만원 [350-02 사업출연금]

△ '22년부터 기존 일반연구비를 사업출연금[350-02]으로 전환

• **해외기술규제 조사 및 전파** : 385백만원 (△315백만원)

* ('21년) 10개국×20개 품목×3.5백만=700백→ ('22 확정)10개국×11개품목×3.5백만원=385백만

※ 아래 품목에 대해, 현재 시행되는 인증제도·기술 기준 등 규제정보 제공 (품목선정) 규제빈도, 수출규모, 4차 산업 제품, Covid 19 품목 등을 고려, 선정 (국가선정) 중소·중견기업차원에서 기술기준 및 인증제도 등 기술규제 정보접근성 (언어 측면등)이 어려운 국가이면서 수출규모가 높은 국가(브라질, 태국, 사우디 등)

• 개도국 규제대응 현지 거점 체계구축 : 26백만원(+0.5백만원)

* ('21년) 1건 × 25.5백만원 = 25.5백만원 → ('22 확정) 1건 × 26백만원 = **26백만원** (+0.5백만원)

-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 대응회의체 운영 : **4백만원**(△ 0.5백만원) [240-01 사업추진비]

* ('21년) 10명 × 25천원 × 18회 = 4.5백만원 → ('22 확정) 10명 × 25천원 × 16회 = **4백만원**

(2) **WTO/FTA TBT 협상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 (2021) 314 → (2022확정) **308백만원**, △6백만원

- **WTO/FTA TBT 협상 및 애로 협상 여비** : 113백만원(△5.8백만) [210-02 국외여비]

* ('21년) 18건 × 2명 × 3.15백만원=118.8 → ('22 확정) 18건 × 2명 × 3.139백만원 = 113백만

- **국제회의, 간담회, 포럼 등 회의장 임차** : 50백만원[210-07 임차료], 전년동

* ('21년) 5회 × 10백만원 = 50백만원 → ('22 확정) 5회 × 10백만원 = 50백만원

- **TBT 대응 전문가 회의비 등** : 28백만원(△5백만원) [210-01 일반수용비]

* ('21년) 33회 × 1백만원 = 33백만원 → ('22 확정) 28회 × 1백만원 = 28백만원

- **TBT 대응 관련 외국 법률 자문** : 40백만원 [210-01 일반수용비], 전년동일

* ('21년) 4건 × 10백만원 = 40백만원 → ('22 확정) 4건 × 10백만원 = 40백만원

-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인쇄 및 홍보물제작** : 45백만, +5백만 [210-01 일반수용비]

* ('21년) 4건×10백만원 = 40백만원 → ('22 확정) 4.5건 × 10백만원 = 45백만원

- **통역 및 번역 등** : 24백만원 [210-01 일반수용비], 전년동일

* ('21년) 1건 × 24백만원 = 24백만원 → ('22 확정) 1건 × 24백만원 = 24백만원

- **무역기술장벽 국제협력 대응회의체 운영**: 8백만원(△0.3백만) [240-01사업추진비]

* ('21년) 8건×1.4백만원 = 8.3백만원 → ('22 확정) 8건 × 1백만원 = 8백만원

(3) **FTA TBT 협상 및 이행 강화** : (2021) 230 → (2022 확정) **230백만원**, +0백만 [260-01 일반연구비]

- **FTA TBT 제도분석** : 80백만원

* ('21년) 2건 × 40백만원 = 80백만원 → ('22 확정) 2건 × 40백만원 = 80백만원

- **FTA TBT 기술규정 분석** : 80백만원

* ('21년) 2건 × 40백만원 = 80백만원 → ('22 확정) 2건 × 40백만원 = 80백만원

- **FTA TBT MRA 연구** : 70백만원

* ('21년) 2건 × 35백만원 = 70백만원 → ('22 확정) 2건 × 35백만원 = 70백만원

(4) **FTA 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 주요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
(2021) 1,400백만원 → (2022 확정) 1,535백만원, +135백만원

- **기술표준 분석: 980백만원** [260-01 일반연구비] +175백만원

* ('21년) 161종 × 5백만원=805백만원 → ('22 확정) 186종 × 5백만원 = 930백만원 + 표준
분석 규제맵 제작 : 10건 × 5백만원(50백만원) = 980백만원

△ 중국 표준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카, 기능성생활가전제품등 111종, 베트남 표준
LED등기구 등 25종, 인니 표준 디스플레이 가전(에어컨/냉장고등) 25종, 인도표준
가전(에어컨/TV) 등 25종

- **FTA TBT 종합지원 포털 운영 : 90백만원** [350-02 사업출연금], +10백만원

* ('21년) 일반연구비 1식 × 80백만원 → ('22 확정) 1식 × 90백만원 (사업출연금 90백만원)

△ '21년 80백만원 [260-01 일반 연구비]를 '22년부터 '사업출연금'으로 전환

- **FTA TBT 애로 해소 지원 : 195백만원(△50백만원)** [210-14 일반용역비],

* ('21년) 245백만원, 컨설팅 65건 × 3백=195백만 + 표준분석 규제맵 제작 10건×5백=50백만
(22 확정) 맞춤형 컨설팅 65건×3백 = 195백만원, * 표준분석 규제맵 제작은 기술표준분석
내내역사업으로 이동

△ '21년 일반 연구비목에서 '22년에 [210-14 일반용역비]로 비목 전환

- **기술표준 교육 및 홍보 : 150백만원(+0백만원)**

* ('21년) 150백만원 → ('22 확정) 150백만원

• 기술표준 교육 : 60백만원 [210-14 일반용역비]

* ('21년) 교육 12건 × 5백만원 = 60백만원 → ('22 확정) 교육 12건 × 5백만원 = 60백만원

• 교육용 교재 및 팸플렛 인쇄 : 60백만원(+0백만원)[210-01 일반수용비]

* ('21년) 6건 × 10백만원= 60백만원 → ('22 확정) 6건 × 10백만원 = 60백만원

• SNS 온라인 광고 : 30백만원(+0백만원) [210-14 일반용역비]

* ('21년) 키워드광고 2건 × 15백만원= 30백만원 → ('22 확정) 2건 × 15백만원 = 30백만원

△ '21년 일반 연구비목에서 '22년에 [210-14 일반용역비]로 비목 전환

- **현지 대응체제 구축·운영 : 120백만원(+0백만원)** [210-14 일반용역비]

* ('21년) 120백만원 → ('22 확정) 120백만원 (+0백만원)

• 애로 접수 및 대응 현지 상담실 운영 : 80백만원(+0백만원)

* ('21년) 현지 애로 접수/대응 창구 운영 80백만원(중국 30백, 베트남 25백, 인니 25백) →
(22 확정) 중국 20백만원, 베트남 20백만원, 인도네시아 20백만원, 인도 20백만)

• 현지 설명회(간담회) 개최 : 40백만원(+0백만원)

* ('21년) 2회 × 20백만원 = 40백만원 → ('22 확정) 2회 × 20백만원 = 40백만원

(5) **한-아세안 표준협력 및 기반조성** : (21) 600 → (22 확정) 600백만원, +0백만원

- 국내 표준의 아세안 확산, 동 지역의 국제표준 부합화로 무역기술장벽 사전해소를 위한 표준협력 방안 연구

- **건설자재 표준협력** : 250백만원, +0백만원 [260-01 일반연구비]

· 아세안 국가 건설자재 표준분석 :

* ('21년) 10개국 × 15백만원 = 150백만원 → ('22년 확정) 10개국 × 15백만원 = 150백만원

· 아세안 건설자재 기술규정·행정규제 등 현황 분석

* ('21년) 84개 × 1백만원 = 84백만원 → ('22년 확정) 84개 × 1백만원 = 84백만원

· 현지 세미나/전문가 회의 개최

* ('21년) 2회 × 8백만원 = 16백만원 → ('22년 확정) 2회 × 8백만원 = 16백만원

- **지능형 교통체계 표준협력** : 250백만원, +0백만원 [260-01 일반연구비]

· 아세안의 지능형 교통체계에 관한 既마스터플랜 심층분석 : 30백만원

* ('21년) 3건(싱가폴, 태국, 말련) × 10백만원 = 30백만원 → ('22년 확정) 3건 × 10백만원 = 30백만원

· 아세안 국가 교통현황 및 제도 분석

* ('21년) 10개국 × 2백만원 = 20백만원 → ('22년 확정) 10개국 × 2백만원 = 20백만원

· 아세안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방안 연구 : 180백만원

* ('21년) 2건 × 90백만원 = 180백만원 → ('22년 확정) 2건 × 90백만원 = 180백만원

△ 지능형 교통체계 서비스의 구현, 호환성 확보등을 위한 국가차원의 밑그림

· 현지 세미나/전문가 회의 개최 : 16백만원

* ('21년) 2회 × 8백만원 = 16백만원 → ('22년 확정) 2회 × 8백만원 = 16백만원

· 전문가 자문비 : 4백만원

* ('21년) 2회 × 2백만원 = 4백만원 → ('22년 확정) 2회 × 2백만원 = 4백만원

- **신규협력과제 발굴 및 협력전략 수립**: 100백만원, +0백[260-01 일반연구비]

* ('21년) 3개 과제 × 33.3백만원 = 100백만원 → ('22년 확정) 3개 과제 × 33.3백만원 = 100백만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p>○ 일반연구비(260-01) : 3,535.4백만원</p> <p>1.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 지원 (1,625.5백만원)</p> <p>가. TBT 통보문/미통보문 심층분석</p> <p>- 통보문 심층분석 180건*5백만원=900백만원</p> <p>나. 해외기술규제 조사 및 전파</p> <p>10개국×20개품목×3.5백만원=700백만원</p> <p>다. 개도국 규제대응 현지거점 체계구축</p> <p>1*25,500천원=25,500천원(25.5백만원)</p> <p>2. FTA/TBT 협상 및 이행 강화 230백만원</p> <p>가. FTA/TBT 제도분석</p> <p>2*40,000천원=80,000천원</p> <p>나. FTA/TBT 기술규정 분석</p> <p>2*40,000천원=80,000천원</p> <p>다. FTA/TBT MRA 연구</p> <p>2*35,000천원=70,000천원</p> <p>3. FTA/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국가)</p> <p>가. 기술표준분석</p> <p>161종*5,000천원=805,000천원</p> <p>나. 중국 FTA/TBT 애로해소 지원</p> <p>65*3,000천원+10*5,000천원=245,000천원</p> <p>다. 기술표준 교육 및 홍보</p> <p>- 키워드 광고 3*14,200천원=42,600천원</p> <p>4. 한-아세안 표준협력 및 기반조성: 600백만원</p> <p>가. 건설자재 표준협력</p> <p>- 아세안 국가 건설자재 표준분석</p> <p>10개국*15,000천원=150,000천원</p> <p>- 아세안 건설자재 기술규정·행정규제 등 현황 분석</p> <p>84개*1,000천원=84,000천원</p> <p>- 현지 세미나/전문가 회의</p> <p>2회*8,000천원=16,000천원</p> <p>나. 지능형 교통체계 표준협력</p> <p>- 아세안 지능형 교통체계에 관한 既마스터플랜 심층분석</p> <p>3건*10,000천원=30,000천원</p> <p>- 아세안 국가 교통현황 및 제도분석</p> <p>10개국*2,000천원=20,000천원</p> <p>- 아세안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방안 연구</p> <p>2건*90,000천원=180,000천원</p> <p>- 현지 세미나/전문가 회의 개최</p> <p>2회*8,000천원=16,000천원</p> <p>- 전문가 자문비</p> <p>2회*2,000천원= 4,000천원</p> <p>다. 신규협력과제 발굴 및 협력전략 수립</p> <p>3개과제*33,300천원=100,000천원(100백만원)</p> <p>○ 일반응역비(210-14) : 260,000천원(260백만원)</p> <p>1. FTA/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국가)</p> <p>가. FTA/TBT 종합지원포털 운영</p> <p>1식*80,000천원=80,000천원</p> <p>나. 기술표준 교육</p> <p>12건*5,000천원=60,000천원</p> <p>다. 현지대응체제 구축/운영: 120,000천원</p> <p>- 애로접수 및 대응 현지 상담실 운영</p> <p>30,000천원+25,000천원+25,000천원=80,000천원</p> <p>- 현지 설명회(간담회) 개최</p> <p>2건*20,000천원=40,000천원</p>		<p>○ 일반연구비(260-01) : 1,810백만원</p> <p>1. 해당사항 없음</p> <p>2. FTA/TBT 협상 및 이행 강화 230백만원</p> <p>가. FTA/TBT 제도분석</p> <p>2*40,000천원=80,000천원</p> <p>나. FTA/TBT 기술규정 분석</p> <p>2*40,000천원=80,000천원</p> <p>다. FTA/TBT MRA 연구</p> <p>2*35,000천원=70,000천원</p> <p>3. FTA/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국가) 980백만원</p> <p>가. 기술표준분석 980백만원</p> <p>표준 186종*5,000천원=930백만원+ 표준분석규제맵제작 10건*5,000천원=50,000천원(50백만원)</p> <p>4. 한-아세안 표준협력 및 기반조성 : 600백만원</p> <p>가. 건설자재 표준협력</p> <p>- 아세안 국가 건설자재 표준분석</p> <p>10개국*15,000천원=150,000천원</p> <p>- 아세안 건설자재 기술규정·행정규제 등 현황 분석</p> <p>84개*1,000천원=84,000천원</p> <p>- 현지 세미나/전문가 회의</p> <p>2회*8,000천원=16,000천원</p> <p>나. 지능형 교통체계 표준협력</p> <p>- 아세안 지능형 교통체계에 관한 既마스터플랜 심층분석</p> <p>3건*10,000천원=30,000천원</p> <p>- 아세안 국가 교통현황 및 제도분석</p> <p>10개국*2,000천원=20,000천원</p> <p>- 아세안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방안 연구</p> <p>2건*90,000천원=180,000천원</p> <p>- 현지 세미나/전문가 회의 개최</p> <p>2회*8,000천원=16,000천원</p> <p>- 전문가 자문비</p> <p>2회*2,000천원= 4,000천원</p> <p>다. 신규협력과제 발굴 및 협력전략 수립</p> <p>3개과제*33,300천원=100,000천원(100백만원)</p> <p>○ 일반응역비(210-14) : 405,000천원(405백만원)</p> <p>1. FTA/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국가)</p> <p>가. FTA/TBT 애로 해소 지원</p> <p>컨설팅 65건*3,000천원=195,000천원</p> <p>나. 기술표준 교육</p> <p>12건*5,000천원=60,000천원</p> <p>다. SNS 온라인 광고</p> <p>2건*15,000천원=30,000천원</p> <p>라. 현지대응체제 구축/운영 : 120,000천원(120백만원)</p> <p>- 애로접수 및 대응 현지 상담실 운영</p> <p>20,000천원*4개국=80,000천원</p> <p>- 현지 설명회(간담회) 개최</p> <p>2건*20,000천원=40,000천원</p>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p>○ 일반수용비(210-01) : 197,000천원(197백만원)</p> <p>1. WTO/FTA TBT 협상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BT 대응 전문가 회의비 등 33회*10,000천원=33,000천원(33백만원)· TBT 대응관련 외국법률 자문 4건*10,000천원=40,000천원· 무역기술장벽보고서 인쇄 및 홍보물 제작 4건*10,000천원=40,000천원· 통역 및 번역 등 1건*24,000천원=24,000천원 <p>2. FTA 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용 교재 및 팸플렛 인쇄 6건*10,000천원=60,000천원 <p>○ 임차료(210-07) : 50,000천원(5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회의, 간담회, 포럼 등 회의장 임차 5회*10,000천원=50,000천원 <p>○ 국외업무여비(220-02) : 118,800천원</p> <p>18건*2명*3,150천원=118,800천원</p> <p>○ 사업추진비(240-01) : 12,800천원</p> <p>가.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 대응회의체 운영 10명*25천원*18회=4,500천원</p> <p>나. 무역기술장벽 국제협력 대응회의체 운영 8건*1,400천원=8,300천원</p> <p>○ 사업출연금(350-02) : 2,796백만원</p> <p>1.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지원</p> <p>가. WTO TBT 통보문 기초분석 3,700건*80천원=296,000천원(296백만원)</p> <p>나. WTO TBT 심층분석(통보문+미통보문+해외기술규제 최종안) 500건*500,000천원=2,500,000천원(2,500백만원)</p> <p>다. 해당사항 없음</p> <p>라. 해당사항 없음</p>			<p>○ 일반수용비(210-01) : 197,000천원(197백만원)</p> <p>1. WTO/FTA TBT 협상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BT 대응 전문가 회의비 등 28회*10,000천원=28,000천원(28백만원)· TBT 대응관련 외국법률 자문 : 4건*10,000천원=40,000천원· 무역기술장벽보고서 인쇄 및 홍보물 제작 4.5건*10,000천원=45,000천원· 통역 및 번역 등 1건*24,000천원=24,000천원 <p>2. FTA 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용 교재 및 팸플렛 인쇄 6건*10,000천원=60,000천원 <p>○ 임차료(210-07) : 50,000천원(5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회의, 간담회, 포럼 등 회의장 임차 5회*10,000천원=50,000천원 <p>○ 국외업무여비(220-02) : 113,000천원</p> <p>18건*2명*3,139천원=113,000천원</p> <p>○ 사업추진비(240-01): 12,000천원</p> <p>가.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 대응회의체 운영 10명*25천원*16회=4,000천원</p> <p>나. 무역기술장벽 국제협력 대응회의체 운영 8건*1,000천원=8,000천원</p> <p>○ 사업출연금(350-02) : 4,887백만원</p> <p>1.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지원</p> <p>가. WTO TBT 통보문 기초분석 4,075건*80천원=326백만원</p> <p>나. WTO TBT 심층분석(통보문+미통보문+해외기술규제 최종안) 740건*500,000천원=3,700백만원</p> <p>다. 신산업, 신기술 기술규제 분석 (순증) 25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 모니터링, 기술동향 및 표준 분석 30건*5,000천원=150백만원- TBT 메가트렌드 보고서 발간 20건*5,000천원=100백만원 <p>라. 지역연합(체)의 기술규정 및 표준 분석 (순증) 11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규정 및 표준의 모니터링/분석 11건*10,000천원=110백만원 <p>마. TBT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기술규제 조사 및 전파 10개국*11개 품목*3.5백만원=385백만원- 개도국 규제대응 현지 거점 체계구축 1건*26백만원=26백만원 <p>2. FTA 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TBT 종합지원 포털운영 90백만원 1식*90,000천원=9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무 역 기 술 장 벽 (TBT) 대응 외국 과의 협상 건수 (단위: 건수)	목표	95	105	107	130	140	• 코 로 나 19 로 인해 WTO TBT위 협상등 곤 란 하 나 , TBT 애로 해소 서면협상에 적극적으로 임 하여,협상건수 목표치를 최근 3년 평균(118 건)대비 19% 증가한 140건 으로 설정	무 역 기 술 장 벽 (TBT) 관련 외국과 의 협상 건수 = ∑ (서면대응 건수 + WTO TBT 다자대 응건수 + FTA TBT 양자대응 건수 + 해당국 방문 협상 건수)	국가기술 표준원 내부자료
	실적	104	120	131	-	-			
	달성도	109.5	114.3	122.4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년

① 불합리한 해외 기술규제의 발굴·대응

- (TBT 통보문 조사) WTO TBT 통보문 3,065건을 조사·번역하여 해당 업계에 전파하고, 적용대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 (미통보 TBT 발굴·대응) 해외규제 모니터링 및 애로조사를 통해, WTO에 통보되지 않는 숨은 해외 기술규제 510건 발굴·대응
 - * 규제당국 홈페이지 감시(139건), 국내 외 온라인 규제정보포털(203건), 시험인증기관 웹사이트 감시(104건), 국표원-기업 네트워크 해외법인(26건) 등
- (심층분석) WTO 통보문과 미통보 규제 3,565건(3,065+510) 중 아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제 550건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

② 해외규제상대국과 다자·양자 협상을 통한 애로해소 (104건 협상 49건 해소)

- (WTO TBT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WTO TBT 총회(3,6,11월)를 계기로 다자·양자 협상을 통하여 기술규제 애로 해소
 - * △브라질 TV 안전·에너지효율 규제 등 35건(3월),
△인도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규제 등 29건(6월),
△중국 사이버보안 인증 규제 등 30건(11월)
- (규제당국 방문협약) TBT 애로관련 케냐, 이집트 등의 규제담당부서를 현지 방문하여 규제 완화 협상을 실시
 - * △케냐 에너지 성능 라벨규제 (5월), △이집트 가정용 전기기기 에너지효율규제1건
- (규제당국자 초청협약 등) 규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8개국 규제당국자를 초청하거나 서면협약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해소
 - * △GSO(UAE 등 6개국) 4건(5월), 인도 2건(9월) 인도네시아 1건(10월) 초청

③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 (현장방문 컨설팅)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험인증전문가가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580회)하여 224건의 컨설팅*을 실시
 - * △ 중기청 설명회(55건), TBT컨소시엄 접수(90건), 전담창구(38건), 기타(41건)
△ △ TBT 기술자문(62건), 해외인증 취득 지원(43건)
- (중소/중견기업 지원) TBT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TBT 설명회*(62회)개최, TBT 홍보관** 운영 및 상담 실시(2회 161건)
 - * ① 업종별 협·단체 연계 설명회(70회) ② 해외 TBT대응 설명회(4회, 中/상해, 심천, 베/호치민, 하노이)
 - ** 서울국제자동차정밀기기전(21건 상담/18.9월), KES 한국전자전(140건/18.10월)

④ TBT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대응체계 개선

- (TBT대응 지원센터) TBT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 설치 추진('18.5월 국표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 법안상정)
- 해외 기술규제조사·분석, 수출기업 애로해소 컨설팅 등 통합적 TBT 대응·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구심체 역할담당

<p>2018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BT 민관협의회) TBT 관련 주요 부처, 전문기관, 업계가 공동 참여하여 TBT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이슈에 다수부처가 관련되거나 범정부적 정보공유 및 대응공조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집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하여 과기정통부, 국토부 등 7개 부처와 규제 대응 협의('18.7월) * 무역기술장벽 협의회 관련 국가표준기본법(26조의2) 개정('18.6월) ○ (기업간담회) 수출기업과 긴밀한 의사 소통망을 구축하여 외국 현지의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업관계자 등과 정기적 현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반기 대기업/중소기업 핫라인 간담회 추진(4회) ○ (TBT 정책포럼) 학계/연구기관/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BT 정책포럼'을 운영하여 TBT 정책자문, 여론수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정부조직·표준화법 변화와 표준활동에 대한 우리의 참여 방안' 등 총5회 운영 ○ (TBT 인력양성) TB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강좌(서울·연세대학원, 숭실대 3학점) 개설, 특강* 및 대학(원)생/일반인 대상 논문대회 실시(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회, 한양대학교, 외국어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15회 추진 <p>⑤ 중국發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한·중 TBT종합지원 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집중관리 대상 소비재에 대한 중국 강제표준 분석(108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표준 요약본 108종을 통해 제품별 中표준 자료집 15건, 중국 TBT 가이드북 3건 개발 ○ 中 주요 규제기관(CNCA, CQC 등) 모니터링을 통한, 중국 기술규제 대응 보고서 작성*(18건) 및 수출기업 애로 해소**(4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TBT 뉴스레터 10건, 中기술규제 심층보고서 및 동향보고서 작성·배포 (18건) ** 일반상담(전화·이메일 정보 제공)과 심층상담(해당 시험인증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애로 해소 추진(43건) ○ 中현지 TBT지원사무소 운영, 현지 우리기업 대상 규제설명회·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 TBT지원사무소 운영 및 상시 애로발굴 (현지 설명회, 간담회 각 2회 개최) ○ 중국 기술규제 분석 정보 제공 및 TBT 상시 애로 접수 등을 위해 모바일 시스템 구축('1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웹 구축 및 콘텐츠 정비와 보강으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 ○ 中 TBT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교육 17회, 설명회 10회) <p>⑥ FTA 既체결 주요 수출국과 전략적 FTA TBT 이행 협력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상호인정) 정부간 협력 채널(TBT위원회, 적합성소위)을 활용하여 양국간 상호인정(MRA) 활성화 추진('18.11월) ○ (한·EU) 한·EU 규제대화체 회의를 통해 전기전자분야 기술규제 정보를 교환하고, 에코디자인 등 EU측 기술규제 완화 추진('18.11월)
--------------	--

2019년

① 불합리한 해외 기술규제의 발굴·분석/대응

- (기초 조사) WTO TBT 통보문(3,337건)을 조사·번역하여 해당 업계에 전파하고, 적용 대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
- (미통보 TBT 발굴·대응) 해외규제기관 및 규제 전문사이트 모니터링등을 통해, WTO 사무국에 통보되지 않는 숨은 해외 기술규제 550건 발굴·대응
- (심층분석) WTO에 통보된 규제와 미통보된 규제 3,887건(3,337+550) 중 아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규제 720건에 대해 심층분석 수행

② 해외규제 상대국과의 TBT 다자·양자 협상 및 전략적 이행을 통한 수출 애로해소

- (WTO TBT 위원회) 정기회의(3,6,11월)를 계기로 다자·양자 협상을통해 기술규제 애로 해소 (120건 협상, 50건 해소)
 - * △ EU 전자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규제 등 8개국 15건(3월),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등 7개국 12건(6월), △브라질 유해물질제한(RoHS) 규제 등 7개국 15건(11월)
- (규제당국 방문협약) TBT의 애로해소와 전략적 협력 관계 조성을 위해, GSO(4월) 및 에콰도르(12월) 등의 규제담당부서 방문
- 거대 경제권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FTA TBT 협상 추진
 - (한-MERCOSUR) 중남미(페루/콜롬비아)국가와의 既체결 FTA 협정을 기반으로 국제표준 부합화, 규제 투명성 제고 등 협상 추진
 - (한-영국) 한-영 FTA 정식 서명('19.8.22)을 완료하였으며, 영국 EU 탈퇴 시점에 FTA가 자동 발효토록 조치하고, 브렉시트 후 시험·인증 애로 발생에 대비한 공동 성명서('19.8.13)마련
 - (한-인니) 한-아세안 FTA 대비 추가자유화, 新남방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인도네시아와의 CEPA협상을 추진했고, TBT 관련문안을 상품 챗터에 포함하여 최종 타결('19.11)
 - (한-이스라엘)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향후 日, 中 등 경쟁국 대비 이스라엘 시장의 선점 효과를 기대, 11조 36개 항목으로 구성된 포괄적 TBT 협정문안 최종 타결('19.8)
- FTA 既체결 주요 수출국과의 전략적 FTA TBT이행 협력 확대
 - (한-EU) FTA TBT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전기/전자 분야 기업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양국간 무선분야의 적합성 평가 상호 인정확대를 주제로 하는 한-EU 공동 워크숍 개최('19.9.)
 - (한·중 FTA TBT 위원회) 한-중은 제3차 FTA TBT 위원회를 개최('19.9)하고, TBT 현안* 논의 및 소비자 제품안전관리 협력방안을 논의
 - * 전기차 GB 표준 및 의료기기 규제 등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제4차 FTA TBT 쟁 개회('19.11)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표준협력(한→미), 화학물질 관리체계/자원 재활용(미→한) 등 안전협약 - (한·베트남) 제 3차 FTA TBT 위원회('19.10)를 통해, 베트남의 에너지 효율 인증제도 등 규제정보 교환 및 시험인증 분야의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 - (한·아세안) 新남방국과 TBT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 제2차 TBT 대화체 개최('19.11)하여, 표준·규제분야 협력* 및 향후 운영방안 등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지능형 교통시스템(亞 요청), 건축자재·4차 산업혁명 표준화 협력(韓 제안) <p>③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컨설팅) 중소기업 방문(740여회)하여 기본 TBT교육 정책소개와 애로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애로사항은 심층상담(286건)을 실시 ○ 중소기업의 TBT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TBT 교육(17회), 설명회(28건) 실시 ○ (1381 콜센터 운영) '19년 수출기업의 해외기술규제 문의사항 (1,420건)에 대해 상담하고, 필요시 현장상담 등 세부사업으로 연계 <p>④ 한·중 FTA TBT종합지원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 대상 소비재에 대한 중국 강제표준 분석(9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표준 요약본 90종 및 中 규제맵 자료집 24건 제작, 中 품목별 가이드북 4건 개발 ○ 규제기관 모니터링(78건)을 통한 기술규제 대응 보고서 작성·배포(18건)* 및 수출기업 애로 컨설팅** 실시(6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감독관리총국, 해관총국 등 규제기관 모니터링(78건), 中기술규제 심층보고서 및 동향보고서 작성·배포 (18건), 中 기술규제 정보 월간 뉴스레터배포 (10건) ** 애로에 대해 일반상담(전화·이메일 정보 제공)과 심층상담을 통해 애로 해소(60건) ○ TBT 지원사무소 운영을 통한 현지 우리기업 설명회·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 TBT지원사무소 운영 및 상시 애로발굴 (현지 설명회 1회, 간담회 각 2회 개최) ○ (중국 맞춤형 교육, 설명회) 중국 기술규제 최신동향 및 주요 시험인증 절차, 품목 규제 등 맞춤형 교육(17회) 및 설명회(28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전기차 및 2차 전지 GB 신규제정 관련 기업 설명회('19.6월), 국내 완구기업 기업 설명회('19.9월)등 실시 <p>⑤ 해외 기술규제대응 역량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TBT 대응 컨소시엄(상시활동)과 정책연구회(4회)를 구성·운영하고, WTO TBT 대응 관련부처와 협의(5회이상)하는 상시채널 마련 ○ (인력양성) 대학강좌(서울·연세대학원, 명지대 3학점)와 학부특강(우석대, 연세대) 개설, 전공교재(1종) 개발 및 학생논문대회를 실시(11월)하여 TBT 인력저변 확대 ○ (인식제고) TBT대응 성공사례와 민간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활동 사항을 공유하여, TBT 대응 필요성 공감대 확산
-------	--

2020년	<p>□ 2020년도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사업 주요 성과</p> <p>① 불합리한 해외 기술규제의 발굴·분석/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조사) WTO TBT 통보문(3,354건)을 조사·번역하여 해당 업계에 전파하고, 적용 대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 ○ (미통보 TBT 발굴·대응) 해외규제기관 및 규제 전문사이트 모니터링등을 통해, WTO 사무국에 통보되지 않는 숨은 해외 기술규제 570건 발굴·대응 ○ (심층분석) WTO에 통보된 규제와 미통보된 규제 3,924건(3,354+570) 중 아국에 영향 미치는 주요 규제 730건에 대해 심층분석 수행 <p>② 해외규제 상대국과의 TBT 다자·양자 협상 등을 통한 수출 애로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TBT 위원회) 정기회의(연3회)를 계기로 다자·양자 협상을 통해 기술규제 애로 해소 (131건 협상, 53건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규제 대응을 통해, 8.5억불 규모의 TV 수출장벽해소 ○ 거대 경제권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FTA TBT 협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MERCOSUR) 우리측의 對美 TBT 애로*해소 가능 조항 도입 추진 중으로 現 4개 조항 (총 15개 中, 진행률 25%) 부분합의(제5차 협상, '20.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인증관련 정보취득 어려움 → 투명성 강화, △국제 시험성적서 불수용으로 인한 비용 및 시간 소요 증가 → IECEE-CB 스킵 도입 등 - (한·캄보디아) 국제표준 부합화 및 투명성 강화 등 우리측 핵심이익을 반영하여 상품협정문 內 TBT 조항* 합의 완료(회기간 협상, '20.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TBT 협정 확인, 국제 표준 부합화, 투명성, 국경조치, 연락책 - (디지털 통상) TBT 관련 조항 협상에 대응하고 디지털 통상 규범 內 표준 등 관점 반영한 문(안)**을 제안하고 협상 실시 (제4차 협상, '20.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20.6월 개시, 총 4회 개최), WTO 전자상거래 협상('20년 전체회의 총 6회 개최, 소그룹 회의도 진행 중) ** ①디지털경제에서 표준의 중요성 인정, ② 디지털경제 관련 표준제정 일반원칙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일관성, 효과성·관련성), ③ 협력 등 - (한·베트남) 제4차 FTA TBT위를 개최('20.8월)하여 베트남 에너지효율 인증제도, 양국 제품안전정책 등 규제정보 교환 및 제품안전, TBT 관련 민·관 협력방안 논의 ○ FTA 既체결 주요 수출국과의 전략적 FTA TBT이행 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양국은 FTA TBT 이행 과정에서 이슈가 된 유아용 섬유제품 관련 회의 개최(8.21., 10.27.) 및 전기용품 관련 한-EU 전기전자규제대화체개최(11.19.)를 통해 양국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협력
-------	---

2020년	<p>③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컨설팅)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요청한 수출 중소기업에 업종별 협단체(전기전자/정밀화학/건설기계/소프트웨어등)를 통해 기초 컨설팅(410회)을 실시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시험/인증 분야의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심층컨설팅을 실시(270회) ○ 중소기업의 TBT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TBT 설명회(36회) 실시 <p>④ 한·중 FTA TBT 종합지원 내역사업 주요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정부의 WTO 통보·미통보 기술규제(5개 분류: 정책, 법규, 시험·인증제도, 강제표준, 품질검사)에 대한 적시대응을 위해 주요 규제 기관(15개소)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관리국(CAC), 국무원 등 5개 기관은 주간 모니터링, 표준화연구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 기관은 월간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을 통하여 신규정보를 발굴(74건)*하고, 분석 보고서 발간** * CCC 인증방식(SDoC) 조정 및 품목조정 (5G 단말기 추가)등 ** 신규 규제정보 발굴 및 게시판 업로드 74건, 심층분석 20건, 월간 뉴스 - (한·중 FTA TBT 위원회) 한-중은 제4차 FTA TBT 위원회를 개최(‘20.9)하고, TBT 현안* 논의 및 소비자 제품안전관리 협력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GB 표준, 의료기기 규제, 한약재 관리 등 - (한·중 적합성평가소위) 한-중은 제17차 소위원회를 개최(‘20.11월)하고, 양국 상호 인정 협의* 및 인증 관련 수출 애로사항 논의
-------	---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수출기업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 통보문(미통보문포함)내용에 대한 신속한 입수*, 전파** 및 이해도 제고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대응력 향상

* △ '21년 해외기술규제 입수 4,000여건 예상 (통보문 3,500건/미통보문 500여건)

△ WTO TBT 사무국에 통보되는 기술규제 : ('17) 2,585건 → ('18) 3,065건 → ('19) 3,337건 → ('20) 3,354건

** 해외기술규제 분석 보고서 제공, KnowTBT 포털(온라인 실시간) 등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 기업·업종별 협단체·유관기관간 TBT 대응 소통*강화

* TBT 설명회(36회), 업종별 기업간담회(4회), 품목별/규제유형별 협의회(55회)

○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 발굴 및 해소

- WTO TBT 정례회의(3, 6, 9월 연3회) 및 FTA 공동위등 채널을 통한 협의
- 필요시 해외기술규제 당국과의 직접협상 실시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TBT 대응역량 지원

- TBT 기초상담(410회),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330여건/연)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TBT 대응역량을 지원하며, 他기관(중소기업부)의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과도 연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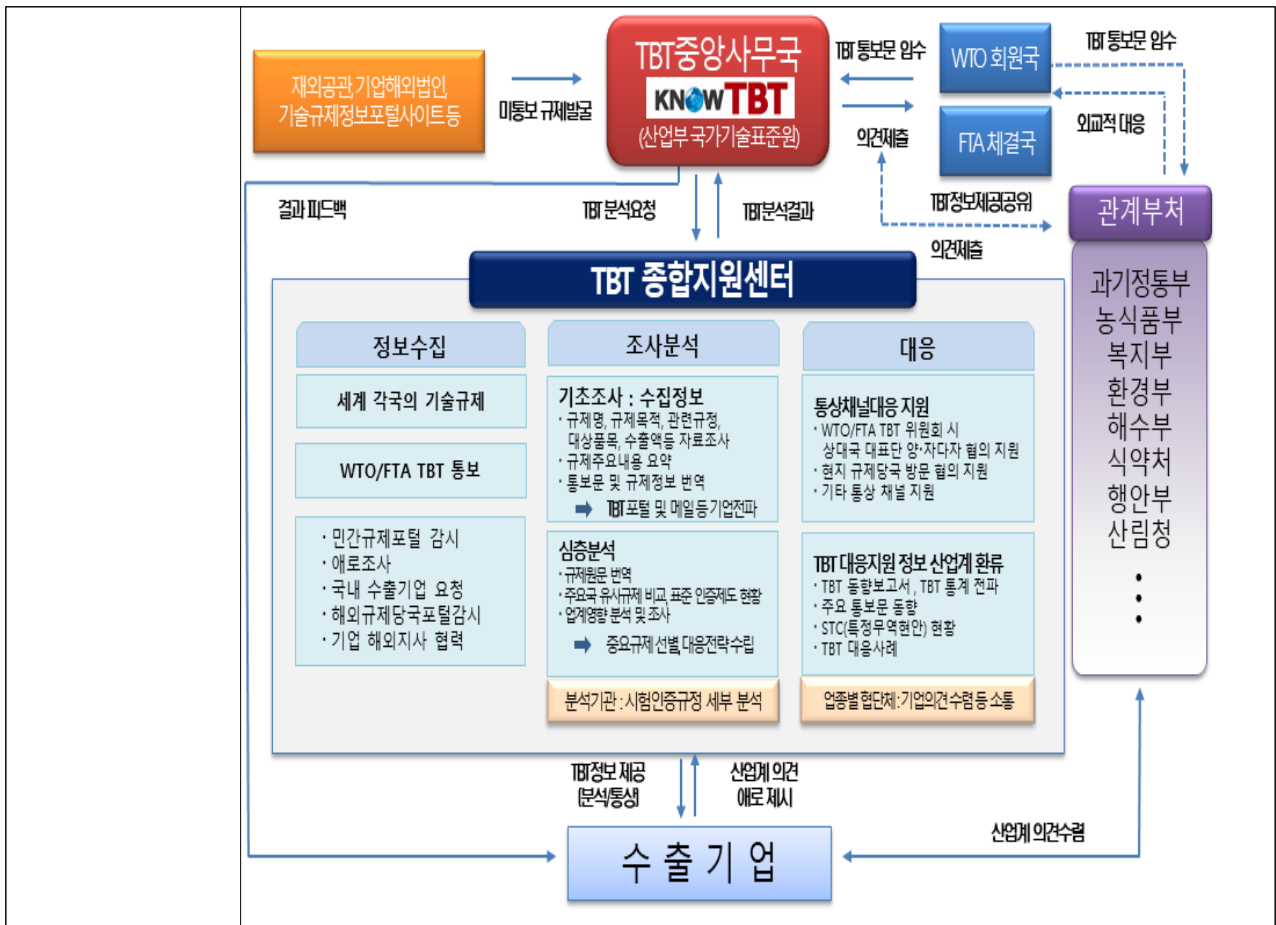
○ 표준의 동질성 확보를 통한 우리 시험인증기관의 아세안 진출 기반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추진절차	<p>①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지원(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부(국표원) → TBT종합지원센터(사업출연금) → 업종별 협단체 및 시험분석기관 - TBT종합지원센터(시험인증산업협회): WTO/TBT 통보문 분석을 근간으로 정례적·상시적 WTO/TBT 대응업무등 수행 <p>※ TBT 종합지원센터 주요 업무(기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TBT 통보문 입수, 기초분석, 심층분석, 대응방안 수립 · WTO/TBT 미통보문 입수, 기초분석, 심층분석, 대응방안 수립 · 규제 분석서 작성, 통보문 산업계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발굴 (기업 간담회, 품목/규제유형별 협의회) · 연간 정례(3회) WTO/TBT 위원회 대응, 양자회의(수시) 협상 지원 등(특정무역현안 발굴, 현안에 대한 산업계대응방안마련) · TBT통계, 주요 통보문동향, TBT대응사례 등 정기 리포트 제공 · 기술규제종합포털(KnowTBT) 운영('22년 이후~) </div> <p>② WTO/FTA TBT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FTA TBT 협상 및 이행강화, FTA TBT 종합지원(중국, 신남방국), 한-아세안 표준협력 및 기반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표원 직접수행 : 국외여비, 연구용역, 수용비 등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right: 10px; flex: 1;">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 기술표준원</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flex: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채널의 외교적 TBT 협상 총괄 · WTO/TBT 위원회 협상(연 3회) · FTA/TBT 위원회 협상(수시) · 양자 애로 협상(수시) · FTA TBT 종합지원(중국, 신남방국)사업 일반연구용역 및 일반용역 발주 · 한-아세안 표준협력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발주 </div> </div>
--------	---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4,942	6,970	6,970	6,970	6,970	
'21~'25		6,970	7,667	8,370	9,207	10,12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1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19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2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최근 3년(18~20年)간 외국의 기술규제가 증가하고 있어서, 해외 기술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정보 분석(기초/심층) 후, 업계에 전파(온/오프라인)하여 애로를 사전 해소 내지 완화**
 - * WTO 통보증가 : ('17) 2,585건 → ('18) 3,065건 → ('19) 3,337건 → ('20) 3,354건 → ('21) 4,000건(예상)(미통보 포함)
- 증가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통보문 기초분석 및 의견수렴, 국내업체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제동향분석, 국내제품 수출현황 분석, 기업대응 및 협상전략 마련 등을 위해 **규제 심층분석(최종안 심층분석도 실시) 확대 실시**
- 신산업, 신기술분야의 규제도입전 표준동향 분석 및 지역연합체의 기술규정 분석 **확대 실시**
- 중소·중견 기업은 TBT 인력·정보력 부족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TBT 애로기업을 찾아가는 시험/인증분야 전문가의 **맞춤형 현장컨설팅 실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17년, '18년) : 우수

12) 부처 건의사항

-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에 장애가 되는 해외 기술규제(제/개정)내용을 입안 초기단계부터 조사·입수·분석하여, 관련 업계에 그 분석(기초/심층)내용을 전파(온/오프라인)하고,
 - WTO 다자협상(연3회, 3월/6월/11월), 양자 협상(필요시 현지규제당국 방문 협상)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사전에 제거(또는 완화)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수출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임
 - 외국의 기술규제를 분석(기초/심층)하여 업계에 전파하고, 금년 21년부터는 TBT종합지원센터(시험인증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시험분석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음
 - 이후 동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건의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4,100	-	4,100		3,432		4,100	4,087	99.7	99.7		13
2019	4,288	-	4,288				4,288	4,257	99.3	99.3		31
2020	4,942	-	4,942				4,942	4,792	97.0	97.0		150
2021	6,970	-	6,970				6,970	6,760	97.0	97.0		210

☐ 출연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기관,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2018	-	-	-	-	-	-	-	-	-	-
2019	-	-	-	-	-	-	-	-	-	-
2020	-	-	-	-	-	-	-	-	-	-
2021.12월	6,970	6,970		2,796	-	2,796	2,796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사항 없음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추정 편성 사유: 해당사항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불용 13백만원 : 집행잔액(조달낙찰차액)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사항 없음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추정 편성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2019년 불용 31백만원 : 집행잔액(조달낙찰차액)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사항 없음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추정 편성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코로나 19로 인하여 국외여비 다수 불용, 132백만원중 28백만 집행, 또한 국외협상 준비회의 미개최에 따른 회의 자문비, 인쇄비등 수용비 일부 불용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사항 없음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추정 편성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코로나 19로 인해 국외업무여비는 전액 불용 예상

☐ 2021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1.2.1.)						
전용 (‘21.2.3.)						
조정 (‘21.2.5.)						
이체 (‘21.2.9.)						

☐ 2021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20년 TBT 대응 애로해소규제 및 수출기대효과

- 해외 기술규제는 WTO 체제 출범 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
 - '18년부터 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TBT)은 3천 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동남아, 중남미 등)의 기술규제 비중이 85% 상회
 - * WTO TBT 통보문(미통보포함) : ('10) 1,874건→('20)3,354건→('21) 4,000건(추정)
 -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로 제기한 145건의 기술규제를 시행한 EU, 인도 등과 양자/다자 협상을 통해 56건을 해소
 - * 기술규제 : 정부가 환경, 안전 등을 위해 제품·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기준 또는 시험·검사·인증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 * 협의/해소 : ('18) 112건/49건 → ('19) 120건/50건 → ('20) 131건/50건 → ('21) 145건/56건

해외 기술규제 대응사례 및 기대효과

- ▶ (수출시장 개척)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의 화학물질 및 안전유리 인증심사가 지연되어 신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시행유예를 통해 **약 6,020억원의 인도 수출시장 확보**
- ▶ (수출중단 해소) 터키의 촉박한 전기전자제품 에코디자인 규제 시행으로 수출중단 위기였으나, 통관심사 등 유연한 사후관리를 적용하기로 하여 **7,000억원의 수출 가능**
- ▶ (수출비용 절감) 베트남이 정보통신기술제품 리튬배터리 규제에 과도한 성능기준을 포함하여 인증부담이 있었으나,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제외하기로 하여 **약 20억원의 시험·인증 비용 절감**

참고 2 중국, 新남방국(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표준분석

1. 중국 및 新남방 주요국가(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기술표준분석

- 중국 기술표준(GB)분석 확대 및 베트남, 인니, 인도의 신남방지역 수출확대 및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 품목의 기술표준 분석 필요

- (1) 중국표준(GB)분석 : 전기차배터리, 빅데이터 신산업표준분야 및 수출 유망소비재

예시)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되는 강제규제: 안전, 순환수명, 호환성, 재활용, 성능

제 품	분야	적용 국가표준
전기차 배터리	안전	GB 38031
	순환수명	GB/T 31484-2015
	호환성	GB/T 34013-2017
	재활용	GB/T 34014
	성능	GB/T 31486-2015, GB/T 31467.1-2015, GB/T 31467.2-2015

(2) 베트남 표준(TCVN)분석 : 주방가전, 페인트 등 생활소비재 표준

(3) 인도네시아 표준(SNI)분석 : 전기온수기, 무선통신 기기 등 표준

(4) 인도(ISI) 분석: 가전, 배터리, 온수기 등 표준

국가(표준명)	22년 주요 표준분석 품목
중국(GB)	<p>(유망소비재) 치약, 만능요리기, 기능성 생활 가전제품*</p> <p>* 에어프라이어, 전기오븐, 살균소독기 등 분석(코로나 19로 인한 재택 및 홈코노미 제품 성장추세 참고: 2021 KOTRA 권역별 진출전략 중국편)</p> <p>(신산업) 전기차 배터리, 신에너지차량* 안전 및 성능표준, 빅데이터 인터페이스 기본요건, 빅데이터 컴퓨팅 시스템 통용 요건, 저장공간 및 프로세싱 시스템 기능 시험 요구사항 등</p> <p>*신에너지차: 신형 동력시스템으로 완전히 또는 주로 신재생 에너지로 구동하는 자동차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순수전기자동차, 연료전지(수소) 자동차 등</p>
베트남 (QCVN, TCVN)	<p>(강제규제) 노트북, 헤어드라이기, 믹서, 전기스토브, 에어컨</p> <p>(강제규제 신규추가* 품목) 페인트, 형광등, LED조명기구 등</p> <p>* 산업통상부(MOIT)는 '20.7.31 램프, 페인트 유해물질 관리방안 발표</p>
인도 네시아 (SNI)	<p>(강제규제) 주방용 전동기기, 액체가열기, 에어컨, 냉장고 등</p> <p>(신규규제 신규추가* 품목) 대형 TV, 액티브 스피커, DVD플레이어 등</p> <p>* 인도네시아 표준화기관(BNS)은 오디오/비디오 기기의 SNI안전규격 신규추가 규제를 발효('19.6.26부터~), 기존 전자파 분야에 안전분야의 시험을 추가로 수행하여, SNI인증을 획득해야 수출이 가능</p>
인도 (ISI)	<p>(강제규제) 에어컨, 배터리, 온수기, TV 등</p> <p>강제인증제도형식(SCHEME)별 대상조사 등</p>

참고 2-1 한·중 FTA TBT 종합지원 ‘표준분석’ 실적

□ 최근 5년 ('16~'20) 중국 강제 표준분석 실적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중국표준분석	434종	128종	108종	94종	130종	894종
중국규제가이드북	1권	1권	3권	5권	5권	15권

* '16년도의 경우 사업착수로, 표준의 내용분석이 아닌 한-중국간 표준 일치 정도 비교

□ '20년 중국 표준분석 주요 실적

'20년 사업 주요 성과		
중국 기술규제·표준 분석	분석 대상표준(GB) 및 비교표준(KC등), 중국 규제 조사	130건
	품목별 중국 기술표준규제맵	86건
	중국 수출·인증 가이드북	5건

- 코로나19 이슈, 중국의 기술규제 강화, CCC 대상 신규편입 對중국 수출과정 중 애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군, 신산업 제품군을 우선적으로 선정
-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의 130종 표준을 분석, 기술표준 규제맵을 제작(86종) 기술규제포털(KnowTBT)에 제공하고, 주요 주제별 가이드북 제작/배포(5종)

['20년도 분석대상 제품]

제품군명	세부 제품명
IoT 기반 新산업제품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 VR 기기, 스마트 전구 등 홈 IoT 기기
가전 및 생활용품	가스기기, 티슈, 기저귀, 생리대, 살균제 등
코로나 19위생용품	마스크, 소독제, 방호복
에너지효율 중국국가표준 제·개정 대상제품	실내 에어컨, 비데, LED 조명기구, 공기청정기 등
CCC 방폭인증 대상제품	방폭 모터, 방폭 펌프, 방폭 배전장치, 방폭 스위치 등

[표준분석 결과물 예시]

가이드북	기술표준규제맵
	

참고 3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동향 조사·분석 필요성

□ 신산업·신기술 규제 대내외 배경 및 필요성(시급성)

- 현재 WTO TBT 조사·분석·대응내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기술규제 도입 前인 신기술·신시장 규제 동향 감시체계 분야를 추가하여 규제도입 전·후로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필요
- (규제환경변화)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통상환경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디지털전환, 친환경 강화 등 새로운 경제 질서에 따른 신기술규제가 도입되고 있음
- (대내외배경) 4차 산업혁명 등 소비생산 전반의 빠른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신산업분야 중심으로 기술규제가 복잡·정교화 추세임
 - * 신산업 : 미래차, 배터리, 드론, 로봇, 그린에너지, 5G융합, 바이오헬스, K방역 등
 - 특히, 미·EU는 AI, 그린딜, 디지털통상 등 글로벌 파급효과가 높은 신기술규제 제정을 선도하여, 향후 보다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발표 예상
 - * (미) 'AI 이니셔티브'(19.2월), (EU) '유럽 그린딜'(19.12월) 등 주요 정책 발표로 신규제 도입 예상
 - EU는 '24년까지 산업, 기술 분야에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밝힘
 - * 기후목표 상향, 경제적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순환경제, 스마트 모빌리티, 무독성환경 등에 대해 기술규제 강화 예정
 - △ ①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관련 기술규정 발표(21.3월), ②자율주행차 차선자동유지시스템 기술규정 발표(21), ③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성능 규제 개정(21.6월), ④탄소중립 및 순환제품을 위한 시장 조성 이니셔티브 발표(20)
 - 미국*은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5G 등 신기술 기술규제를 강화하기로 밝히고, 기업·무역·통상·기술·안보를 연계한 산업정책을 추진 중
 - * ①드론 원격 식별장치 탑재 의무화(21), ②인공지능 관련 기술규제 준비(21.4월), ③로봇 안정성과 제조 및 품질 관리 규제 발표(21)
 - 우리 정부는 4차 산업혁명,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육성전략을 지속 제시하나, 해외 신산업·신기술 규제 대응을 위한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며, 국내 산업계는 중점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해외 기술규제 분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원함
 - * 552개 수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EU 에너지·기후·환경분야 규제'(53.3%) '신규제 이슈'(46.9%)를 원함 ('20.11월, 해외기술규제 대응지원사업 설문, 복수응답)

□ (규제동향 조사·분석 필요성) 現 신산업·신기술 규제정보의 입수·조사·분석·전파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가 부재함으로 인해 이를 보완하는 체계 필요

○ (필요성)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미국·EU를 비롯해서 주요 수출국의 글로벌 신기술규제 이슈에 대한 선제적, 종합적 대응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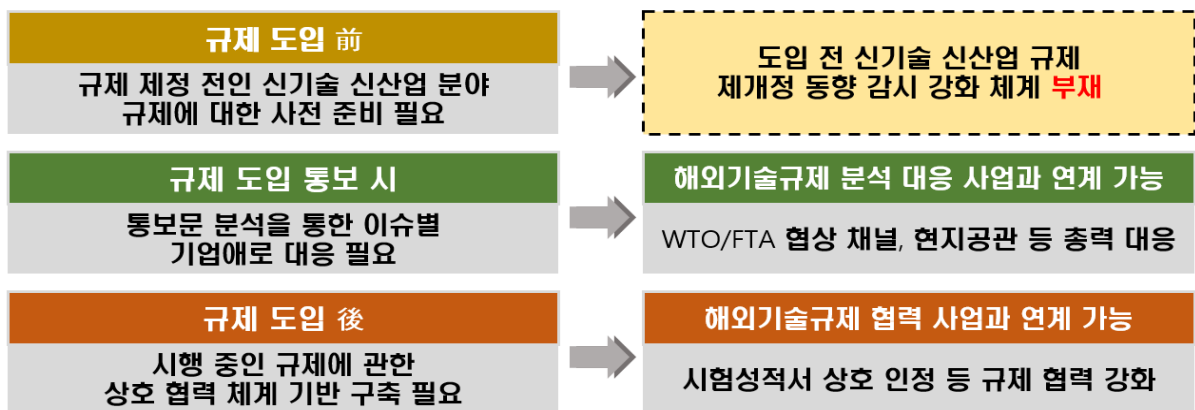
- 미·EU는 AI, 그린딜, 디지털통상 등 글로벌 파급효과가 높은 신기술 규제 제정을 선도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시급

* (美) 'AI 이니셔티브'(19.2월), (EU) '유럽 그린딜'(19.12월) 등 주요 정책 발표로 신규제 도입 예상

- 향후 기술 규제 흐름을 선도할 新시장·신기술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 입수 및 신속한 정보 전파 필요

○ 중·장기적인 대응준비가 필수적인 신산업·신기술 규제에 관한 정보를 입수·조사·분석·전파하는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제품 기획·설계 단계 시부터 도입 규제 세부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존재



○ 표준 동향 등을 포함한 제품중심의 종합적인 수출 전략 제공

- 신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표준 동향을 기업에 제공해 향후 도입될 규제 방향 및 제품 개발 시 고려할 사항을 예측 가능토록 지원

※ 메가트랜드 보고서 발간 및 전파내용

1. 개요	주요 내용
1. 개요 및 배경	이슈 주제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며, 발전 배경, 정의와 분류에 대해 기술하고, 주요 점유 국가, 국내·외 산업구조 및 현황, 국내 기업 현황에 대해 기술
2. 시장 동향	신산업·신기술 관련 제품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시장 선도 기업(핵심플레이어) 동향, 핵심 기술, 기술개발 동향, 주요 기관의 기술역량, 핵심 기술의 R&D 현황 등 현재 산업계의 기술수준 조사
3. 표준화 동향	주제별 국제표준 작업반(Working group) 현황, 해당 작업반의 표준 개발 진행·예정 현황, 규제당국의 표준 개발 의뢰 정보 등을 토대로 적용이 예상되는 기존·신규 표준의 내용(시험방법, 타 표준과의 연계 등) 기술
4. 규제 동향	주요 국가별 신기술 규제 수준 및 경향 비교를 통해 미리 대비가 필요한 기술적 사항 반영 등 수출을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 정보에 대해 기술
5. 결론	신기술 관련 기술, 표준, 규제의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고, 국내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향후 역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시사점 기술

※ 신산업·신기술 규제로 인한 우리기업의 TBT 애로

○ 유럽연합 환경규제 관련 TBT 애로 사례

- EU로의 주요 수출품목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우리업체의 TBT 애로사항이 주를 이루며,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규제의 소비자 정보제공에 관련 요구사항, 유해화학물질 제한 적용 대상 강화 등으로 인한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

No.	구분	우리기업의 對EU 환경규제 관련 애로사항
1.	소비자 제공 정보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배터리 지침 개정안(EU Battery Directive Amend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요구사항, 라벨링 요구사항, 폐배터리 회수율 변경 및 탄소발자국 이행 관련 요구사항 추가 ▶ (애로사항) 배터리 제조사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써 개정안 부속서 6 Part A, 5항에 따른 시장출시일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므로 정보제공 주체가 모호
2.	소비자 제공 정보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링 규제(Delegated Regulation (EU) 2019/2013, energy labelling of electronic displa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21.4월부터 EU 수출 디스플레이(TV, 모니터 등)는 소비 전력기준 및 정보제공요건을 만족하고, 제품·포장에 라벨을 부착 ▶ (애로사항) 하드카피(서류) 방식 제품정보 제공 의무화 및 과도한 표기요건 등으로 수출 준비에 애로를 호소
3.	적용 대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REACH (EU)2018/2005 개정안 (EU REACH 규제((EC) No 1907/2006) 부속서17을 개정하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규정의 부속서 제3항에 따라, 제조자는 완제품의 플라스틱 물질에 포함된 프탈레이트(DEHP, DBP, BBP, DIBP) 농도가 0.1% 미만을 적용하는 대상 변경 ▶ (애로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용(agricultural use)이거나, 야외(open-air)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되나, 트랙터의 경우 부착기에 따라 농업용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용 대상 명확화 필요

참고 4 지역연합(체)의 기술규정 및 표준분석 필요(시급)성

□ 대내외 배경: 지역연합(체)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들에 대한 기술 규제 조사·분석 강화 필요성 제기

○ **(대외배경)** 남미(메르코수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중동(표준화기구; GSO) 등 신흥국의 지역경제화 및 단일 강제규제 도입·강화 추세

- 지역연합체(별)로 단일 강제인증제도 (중동 걸프협력회의-GCC, 유라시아 경제연합-EAC, 유럽연합-CE) 도입 및 공통기술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

***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가입국 증가 예상

○ **(대내배경)** 기술 규제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상기 지역연합체 규제 당국자 접촉 및 규제정보 입수가 쉽지 않아, 지역연합(체)의 기술규제 대응체계가 부족한 상황

- 국내 산업계는 중점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해외 기술규제 분야로 '신흥시장국 대상 기술규제'(36.4%) 및 '지역연합(체) 규제'(34.6%) 대응을 필요

* 552개 수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20.11월,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사업 자체 설문)

□ 지역연합(체)의 주요 규제 내용

○ 브라질 주축의 메르코수르*는 '22년부터 4개국의 공통 기술규정/표준 도입 확대 예정으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각국마다 강제인증 시행예정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

** 메르코수르 수출 특징: 약 66억 달러규모('19년) / 자동차 부품, 반도체가 약 99%

○ 유라시아연합 5개국은 공통기술규정 제·개정을 통하여 신규 인증 품목이 증가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가입국 증가 예상

** 對유라시아연합 수출 특징: 약 80억불규모('19년), 한국 상품의 인지도 및 삼성, 현대 등 한국 대기업 이미지 상승 중으로 지속적 수출 증가 예상 (주요수출품목: 승용차 및 관련 부품, 타이어, 기계보일러, 전자제품 등)

- 사우디 등 중동 7개국은 2025년 전후로 화장품, 기계류, 유해물질제한 (RoHS), 건축자재, 전자파적합성 등 18개* 분야에서 단일인증인 GSO 인증을 강제화할 예정

* GSO(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회원국 :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사우디 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예멘(걸프 7개국)

** 중동 7개국 수출 특징: 약 36억불 규모('19년), 전기전자 및 기계 품목이 각각 수출량의 36% 차지('19년)

(특징) 지역연합(체)은 기존 국가별로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를 한 개의 단일제도로 통합하며, 강제인증 규제대상 품목을 확대하거나 친환경분야 선진국 규제를 도입

- 1) '21년부터 메르코수르 기술규정 초안이 제정 중이며,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 쉐산업분야로 확대 예정
- 2) 유라시아경제연합 약 50여개의 기술규정이 제·개정 중이며, 저전압장비, 에너지 효율, 유해물질제한 제도 등이 '22년 도입 및 추가 개정 예정
- 3) GSO 기술규정 초안(단순압력용기 등 6건)이 현재 검토 중이며 '25년까지 18개의 인증제도 도입예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전기전자 안전인증은 '22년도 상반기에 13개 품목에서 전기·전자 전체 품목으로 인증대상 확대 예정

□ (신규반영 필요성) 지역연합(체)의 강제규제가 확산되고 있으나 수출기업은 이들 연합국의 규제 정보 획득이 어려워 강제규제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및 대응 필요

* 중동은 권위적이고 보수적 성격으로 인하여 통관 및 인증취득이 까다로우며 또한 언어(아랍어)로 인해 정보취득이 어려워, 수출기업의 애로가 큼

** 중남미는 폐쇄적 인증시장과 언어(스페인어) 및 정보접근의 한계 애로

*** 유라시아(러시아 등)는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투명성 부족 및 기술규정, 표준, 인증 취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수출기업의 애로가 많음

※ 메르코수르·유라시아·GSO 경제연합(체)의 강제규정 (총76개) 및 표준현황(총 30,288종)

- (1) 메르코수르 : 기술규정 25개, 표준 1,028종, 주요강제인증: INMETRO 인증 등
- (2) 유라시아 경제연합 : 기술규정 48개, 표준 7,000종, 주요강제인증: EAC 인증 등
- (3) GSO : 기술규정 3개, 표준 22,260종, 주요강제인증: GCC인증

참고 5 국내 FTA TBT 추진 현황 ('21.11월 현재)

단계	FTA	이행관련 주요현안
발효된 FTA (17개)	- 한-칠레('04.4 발효)	o 칠레 전기전자제품 인증절차 개선요청
	- 한-싱가포르('06.3 발효)	o 한-싱 MRA관련 안전인증기관 지정갱신
	- 한-EFTA('06.9 발효)	o 전자파 상호인정 관련 논의
	- 한-ASEAN('09.5 발효)	o 제3차 TBT대화체 회의
	- 한-인도(CEPA, '10.1 발효)	o 제2차 TBT/SPS 공동작업반 - 유아아동섬유 MRA 등
	- 한-EU('11.7 발효)	o 전기전자 국장급 규제대화체(매년) - 무선기기분야협력, 안전인증품목 축소 등
	- 한-페루('11.8 발효)	o 전기제품 안전인증제도 구축지원
	- 한-미('12.3 발효)	o 한-미 FTA TBT분과 위원회(매년) - 화평법, 화관법 애로등
	- 한-터키('13.5 발효)	o 전기전자 MRA 타당성 검토
	- 한-호주('14.12 발효)	o 규제협력방안 논의
	- 한-캐나다('15.1 발효)	o 자동차, 목재 등 기술규제 정보교환
	- 한-중('15.12 발효)	o 배터리, 화장품 관련 애로논의
	- 한-뉴질랜드('15.12 발효)	o 의료기기분야협력, 전기전자제품 정보 통신장비, 전자파 상호인정가능성논의
	- 한-베트남('15.12 발효)	o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애로논의
	- 한-콜롬비아('16.7 발효)	o 콜 에너지효율라벨링 규정 애로
	- 한-중미 ('19.10.1 발효)	o 규제 투명성 강화
	- 한-영국 ('21.1.1 발효)	o 영국 UKCA 인증관련 논의
타결된 FTA (4개)	- 한-이스라엘('21.5 서명)	o TBT 위원회(발효 1년내 회합)
	- 한-인니 ('20.12 서명)	o 상품 챗터내 TBT관련 1개 조 반영
	- RCEP('20.11 서명)	o 아세안, 인도 등 FTA/TBT 협정 개선 효과
	- 한-캄보디아('21.2)	o 투명성 및 기술규정 등 국제표준 부합화 * TBT는 상품 챗터내 1개조 6항으로 반영
협상진행 FTA (7개)	- 한-중-일('13.3~'19.11, 16차)	o 3국 TBT협력체계 구축 등
	- 한-에콰도르('16.1~'11, 5차)	o 규제 투명성 강화, 특정분야 협력 강화 등
	- 한-메르코수르('18.9~'21.8 제7차)	o 적합성평가 분야 상호협력, 규제투명성 강화 등
	- 한-말련('19.7~'9, 제3차)	o WTO/TBT 협정 확인, TBT 분야 협력 등 * TBT는 상품 챗터내 1개조 2항으로 반영
	- 한-필리핀	o WTO TBT 권리·의무 확인 * TBT는 상품 챗터내 1개 조 반영
	- 한-러시아('19.6~'20.6)	o TBT 해당사항 없음
	- 한-우즈베크 ('21.04, 제1차)	o 양국간 TBT 협정문 초안 논의
재개·개시 여건조성 (3개)	한-PA(태평양 동맹), 한-EAEU, 한-GCC	

참고 6 중국 상해 TBT대응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현지대응

□ '21년도 추진 주요내용

- 중국 상해 TBT 대응지원센터 운영 및 현지 간담회·설명회 개최
- (주요내용) 中기술규제 정보의 신속 파악 및 현지진출기업의 애로 대응지원 협력체계 구축·운영
 - 상시 기업애로 접수·지원 및 中정부간 협력채널 구축·운영

구분	내용	비고
기업애로지원	- 상시 접수지원·대응 : 10건	- 현지 기업 대상 정기 애로 수요조사 실시 예정('21.6월~)
현지 정기 협의회 개최·운영	- 간담회: 1회(7월) - 설명회: 1회(10월, 화상형식)	- ('20) COVID-19로 한-중 양국 온-오프라인 영상 행사로 대체 운영 - 동영상 방문자수는 864명, 조회수는 1,158건('20.11.24 기준) - KOTRA 상하이무역관과 협업 개최('18~)
홍보	- 2회(7월, 11월)	- KOTRA홈페이지 활용한 현지 기업 대상 소식지 발송
협력채널 운영	- 中정부간 협의회 개최(1회) - 네트워크관리카드(25건)	- 공업정보화부 구축계획 - 규제, 시험 관련 정부, 민간 등

□ '22년도 추진 주요내용

- 현지 TBT지원센터의 기업지원역량 제고 및 中정부간 협력채널 구축 확대

구분	내용	비고
기업애로지원	- 상시 접수지원·대응 : 15건	- 현지 기업 대상 정기 애로 수요조사 실시 예정('22.6월, 9월)
현지 정기 협의회 개최·운영	- 간담회: 2회(7월, 11월) - 설명회: 1회(10월, 화상형식)	- COVID-19 상황에 따라 회의형식 변경(영상/대면) - 최신 발표 규제, 정책 관련 中전문가 초청 개최
홍보	- 3회(7월, 9월, 11월)	- KOTRA홈페이지 활용한 현지 기업 대상 소식지 발송
협력채널 운영	- 中정부간 협의회 개최(1회, 11월) - 네트워크관리카드(25건)	- 공업정보화부(지속대응), 환경부 구축계획 - 2차 기업간담회 개최시 병행 예정 - 규제, 시험 관련 정부, 민간 등

참고 7

한-아세안 표준협력 및 기반조성 사업 개요

- (필요성) 국내 기업의 아세안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국내 표준의 아세안 확산, 한-아세안 표준 공동연구 등 전략적 표준협력 필요

* '19년 인구 약 6억 5천만명(세계 3위), 평균연령 30세, GDP 2조 3천억 달러(세계 6위)

- 아세안은 국가 표준이 부재하고 일본 표준(JIS)이 일부 선점된 상황으로 주요국들도 對아세안 표준협력을 경쟁적으로 강화*

* (독일) 아세안 품질 인프라 강화 사업 / (EU) 아세안 지역 통합 지원 프로그램 등

□ 22년도 사업 추진계획

- (협력과제 발굴) 아세안 수요조사를 통해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동 분야에서 아세안 산업동향등 분석을 통한 신규과제 기획
- 아세안측 표준화 수요 분야*와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 수요 분야 매칭을 통해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 * 아세안측 주요 관심 분야 : 스마트제조, 스마트에너지,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4차 산업 혁명 분야
- 동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 표준현황, 산업 동향 심층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수출판로 개척에 효과적인 협력과제를 기획

< 한-아세안 표준 협력 추진 계획 >

협력대상	협력 분야('21~'22)	→	향후 협력 분야 확장('23~)	
	아세안		아세안 (4차산업분야)	회원국별 및 회원국 군별 (기간산업, 시험인증분야)
협력 분야	 건설자재	 표준화 공동연구 센터 설립('22.)	 스마트제조	 기계·소재
	 ITS (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에너지	 법정 계량 등

사 업 명
(23)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3736-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2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조정과	정민화	김영대	
		043-870-5550	043-870-5549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술규제개혁 혁신진화체 계구축	1,122	1,127		1,314	1,148	21	1.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계 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127	1,122 (1,122)		5	1,127		1,127	791.5 (791.5)			1,148
· 기술규제영향평가		572	570 (570)		2	572		572	400 (400)			572
·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171	170 (170)		1	171		171	122 (122)			171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384	382 (382)		2	384		384	269.5 (269.5)			405
○ 비목별 분류(합계)		1,127	1,122 (1,122)		5	1,127		1,127	791.5 (791.5)			1,148
· 일반수용비(210-01)		31.7	31.7 (31.7)			33.1		33.1	29.6 (29.6)		-	33.1
· 임차료(210-07)		10	10 (10)			10		10	5 (5)		-	10
· 국내여비(220-01)		5	2.5 (2.5)		2.5	4.7		4.7	4.7 (4.7)			4.7
· 사업추진비(240-01)		10.3	10.3 (10.3)			9.2		9.2	9.2 (9.2)			9.2
· 일반연구비(260-01)		1,070	1,067.5 (1,067.5)		2.5	1,070		1,070	743 (743)		9	1,09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27	1,122 (1,122)		5	1,127		1,127	791.5 (791.5))			1,127
· 기술규제영향평가		572	570 (570)		2	572		572	400 (400)			572
-일반수용비(210-01)		4	4 (4)			4		4	4 (4)			4
-사업추진비(240-01)		4	4 (4)			4		4	4 (4)			4
-일반연구비(260-01)		564	562 (562)		2	562		562	392 (392)			564
· 중소·중견기업 애로		171	170		1	171		171	122			171

기술규제 발굴		(170)				(122)		
-일반수용비(210-01)	27.7	27.7 (27.7)		29.1		25.6 (20.1)		29.1
-임차료(210-07))	10	10 (10)		10		5 (5)		10
-국내여비(220-01))	4	2 (2)	1	3.7		3.7 (3.7)		3.7
-사업추진비(240-01)	3.3	3.3 (3.3)		2.2		2.2 (2.2)		2.2
-일반연구비(260-01)	126	127 (127)		126		85.5 (85.5)		126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384	382 (382)	2	384		269.5 (269.5)		384
-국내여비(220-01))	1	0.5 (0.5)	0.5	1		1 (1)		1
-사업추진비(240-01)	3	3 (3)		3		3 (3)		3
-일반연구비(260-01)	380	378.5 (378.5)	1.5	380		265.5 (265.5)	9	4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내 기술규제 신설·강화 사전방지, 기업 애로 발굴 해소,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를 통한 기술규제 사후관리 실시 등 주기적 기술규제 관리 추진
 - *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과 국가기술표준원(기술규제개혁작업단)이 기술규제 분야 개혁 추진
- (기술규제영향평가) 정부입법 신설·강화 법령 중 기술규제(기술기준, 시험, 인증 등)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최선의 대안 제시
- (중소중견 기업애로 기술규제 발굴) 기술규제정책포럼,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불합리한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발굴·개선하여 기업부담 완화
-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검토·의견제시, '19년 본격 시작된 24개 부·처·청 인증제도(적합성평가)에 대한 준치 필요성 등 실효성 검토*
 - * 3년 주기, ('19년) 58개 제도, ('20년) 64개 제도, ('21년) 64개 제도
 - ** 2주기('22년~'24년) 예정 : 약243개 제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p>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30호, '18.12.24.)</p> <p>제2조(설치 등) 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개혁작업단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p>② 각 작업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p> <p>③ 각 작업단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p> <p>제3조(기능) 각 작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와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2. 기술규제개혁작업단: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3.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규제관련 민원처리, 소관 분야 규제개혁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2.12.12.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신설
- '12.12.13. 국무총리실, 국무총리훈령 개정
- '13. 1. 1.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 '13. 2. 국정과제 '137.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합리화'에 '137-5. 기술 규제영향평가 등을 통한 기술인증제 합리화' 포함
- '13. 4.15.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국무총리훈령 제601호로 개정
- '18. 3. 국정과제 '34-6.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표준·인증 혁신'에 포함
- '18.6.12.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조항을 신설한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 '18.12.24. 국무총리훈령 제730호로 개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국민(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2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① 기술규제영향평가

: ('21) 572백만원 → ('22요구) 572 백만원, 전년 동

- (요구) 정부입법 신설·강화 법령 중 기술규제(기술기준, 시험, 인증 등)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최선의 대안 제시를 위해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간사기관 운영비 4백만원
사업추진비 4백만원
기술규제 영향평가 전문가 분석 564백만원

②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 ('21) 171백만원 → ('22요구) 171백만원, 전년 동

- (요구)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운영비 6백만원
기술규제위원회·전문분과위원회 회의비 및 자문비 23.1백만원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워크샵, 기술규제위원회 개최 등 10백만원
국내여비 3.7백만원
사업추진비 2.2백만원
기술규제 기업애로 전문가 분석 126백만원

③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 ('21) 384백만원 → ('22요구) 405백만원, 21백만원 증액

- (요구)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 2주기 대비 검토 대상 인증제도 확대를 반영해 21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사업추진비 3백만원
국내여비 1백만원
의원입법 인증제도 전문가 분석 115백만원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전문가 분석 286백만원

○ 2020년도 및 2021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년 예산		'21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27,000	○ 일반수용비(210-01) : 33,100천원	1,148,000	○ 일반수용비(210-01) : 33,100천원
	가. 간사기관운영비 (4,000천원)		가. 간사기관운영비 (4,000천원)
	나.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운영비(6,000천원)		나.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운영비(6,000천원)
	다. 기술규제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 회의비 및 자문비(23,100천원) · 150,000원x16명x10회 = 23,100천원		다. 기술규제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 회의비 및 자문비(23,100천원) · 150,000원x16명x10회 = 23,100천원
	○ 임차료(210-07) : 10,000천원		○ 임차료(210-07) : 10,000천원
	가.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워크샵, 기술규제위원회 개최 (10,000천원) ·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8일x1,250,000원=10,000천원		가.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워크샵, 기술규제위원회 개최 (10,000천원) ·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8일x1,250,000원=1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7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700천원
	가. 전문문과 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 등 참석(3,700천원) · 93회x40,000원=3,700천원		가. 전문문과 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 등 참석(3,700천원) · 93회x40,000원=3,700천원

'20년 예산		'21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p>○ 사업추진비(240-01) : 9,200천원</p> <p>가. 전문분과 위원 면담, 기업 애로 간담회 개최 등(9,2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찬, 만찬비 등 : 12개월x30명x25,500원=9,200천원 <p>○ 일반연구비(260-01) : 1,091,000천원</p> <p>가. 기술규제영향평가 전문가 분석(572,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0건x1,820천원=564,000천원 * 1건당 ('19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368천원 x 4일) + 자료구입비 350천원 = 1,820천원 <p>나. 기술규제 기업애로 전문가 분석(126,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5건x1,100천원=126,000천원 * 1건당 ('19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368천원 x 3일) = 1,100천원 <p>다. 의원입법 인증제도 전문가 분석(115,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6건x1,080천원=115,000천원 * 1건당 ('19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368천원 x 2일) + 자료구입비 350천원 = 1,080천원 <p>라.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265,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건x4,420천원=265,000천원 * 1건당 ('19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368천원 x 12일) = 4,420천원 		<p>○ 사업추진비(240-01) : 9,200천원</p> <p>가. 전문분과 위원 면담, 기업 애로 간담회 개최 등(9,2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찬, 만찬비 등 : 12개월x30명x25,500원=9,200천원 <p>○ 일반연구비(260-01) : 1,091,000천원</p> <p>가. 기술규제영향평가 전문가 분석(564,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0건x1,820천원=564,000천원 * 1건당 ('20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383천원 x 4일) + 자료구입비 288천원 = 1,820천원 <p>나. 기술규제 기업애로 전문가 분석(126,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0건x1,150천원=126,000천원 * 1건당 ('20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383천원 x 3일) = 1,100천원 <p>다. 의원입법 인증제도 전문가 분석(115,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6건x1,080천원=115,000천원 * 1건당 ('20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383천원 x 2일) + 자료구입비 314천원 = 1,080천원 <p>라.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286,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81건x3,530천원=286,000천원 * 1건당 ('20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383천원 x 9.2일) = 3,530천원 **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2주기('22~24) 총 검토 건수는 243개 제도로 '22년 검토 대상 제도는 81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술규제 영향평가 의견 반영률 (단위: %)	목표	69	70	71	72		최근 4개년 실적치의 평균(68.5%)보다 105% 상향 조정	기술규제철회.개선 권고율(%) = (Σ 각 부처 의견 수용 건수/Σ기술규제 영향평가 검토의견 제시 건수)×100	국가기술표준원 내부자료 (국무조정실)
	실적	69	72	72.1	-	-			
	달성도	100	103	101.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규제 영향평가 : 273건 검토(조정 의견 제시 53건 → 반영 37건)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171건(검토 의견 제시 10건)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105건·56건) → 개선(20건)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규제 영향평가 : 287건 검토(조정 의견 제시 43건 → 반영 31건)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134건(검토 의견 제시 4건) -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19년 신규) : 58개(개선 21개, 폐지 7개, 존속 30개)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105건·58건) → 개선(15건)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규제 영향평가 : 382건 검토(조정 의견 제시 79건 → 반영 57건)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197건(검토 의견 제시 19건) -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 64개(통·폐합 7개, 개선 20개, 존속 37개)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126건·89건) → 개선(36건)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규제 영향평가 : 187건 검토(조정 의견 제시 66건 → 진행중)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105건(검토 의견 제시 7건) -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 64개 검토중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 : 추진중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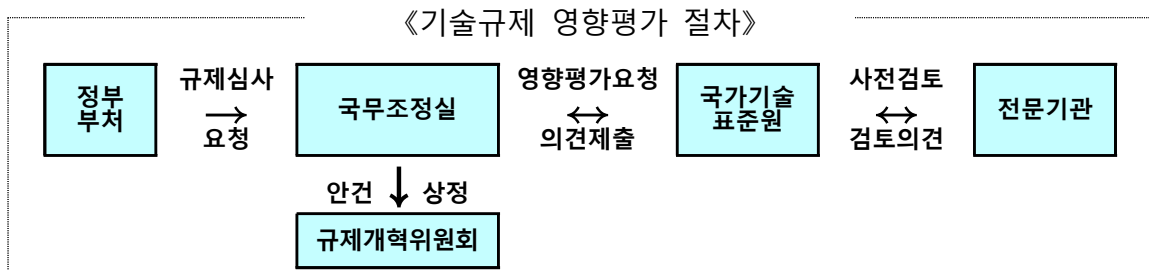
- **(기술규제영향평가)** 정부입법 신설·강화 법령 중 기술규제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우리기업 부담완화
- **(중소중견 기업애로 기술규제 발굴)** 기업현장에서 불합리·과도하다고 느끼는 기술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한 애로해소 및 기업환경 개선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범부처 인증제도에 대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당위성, 완성도, 적절성 측면 분석 검토를 통한 기술규제 사후관리 및 의원입법 인증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제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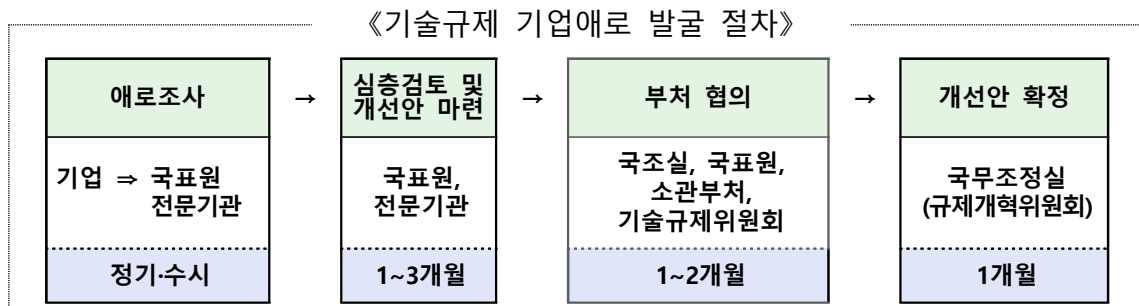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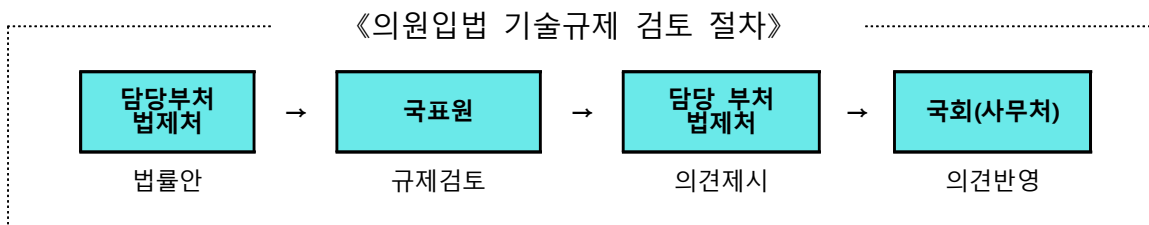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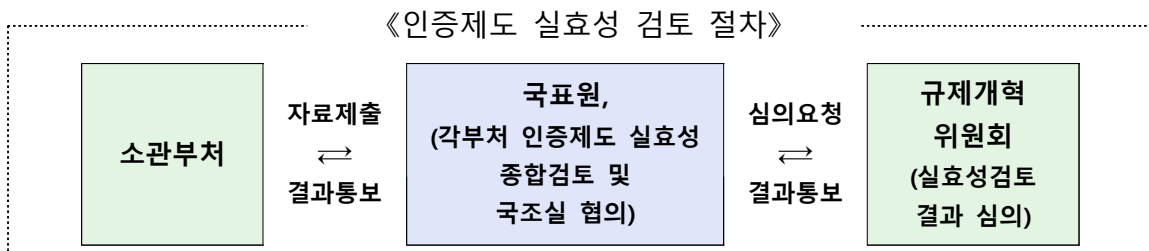
① 기술규제영향평가



②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



③ 미통보 규제 발굴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1,127	1,127	1,278	1,380	1,490	
'21~'25		1,127	1,183	1,380	1,49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세부 내역사업인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효성평가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평가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명확히 파악하는 등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19회계연도 예산 산중위 검토보고서)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19년부터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대상 판단기준(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매뉴얼)을 만들어 쏘부처(45개 부·처·청 등)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검토대상 판단기준, 제도 시행 취지 등에 대하여 부처를 대상으로 국무조정실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18.12.13)하는 등 실효성 검토 대상 기준 안내 및 발굴 요청
 -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검토대상 연도를 조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보고를 통해 최종 검토대상을 확정*(제431회 규개위, '19.4.26) 하는 등 철저한 준비 후 추진 중
- * 검토대상 제도에 대한 검토연도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유사제도는 동일년도 검토, 시행 초기 제도는 '21년에 배정하는 등 배정기준을 만들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 및 검토연도 확정('19년 58개, '20년 및 '21년 각 64개 제도, 총 186개)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기술규제 신설·강화 사전 방지

- 全 부처의 법령 등 제·개정 시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해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의견제시

○ 기술규제 사후 정비 및 개선

-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타당성·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업계 의견 수렴,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
- 대표적 기술규제인 법정인증제도에 대해 매 3년 주기로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 통합, 폐지 등 제도 정비

○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사전 방지하고 사후 제도정비·개선 등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기술규제위원회·전문분과위원회 운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18	1,063		1,063	-	-	-	1,172	1,158	98.8	98.8
2019	1,210		1,210	-	-	-	1,063	1,048	98.6	98.6
2020	1,127		1,127	-	-	-	1,127	1,122	99.5	99.5
2021	1,127		1,127	-	-	-	1,127	684	60.7	60.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19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20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21	-

☐ 2021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사 업 명						
(24)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3736-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4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협력과	박재형	유용재	-
		043-870-5560	043-870-5562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A)	(B-A)/A
IT기반기술표준 정보화체계구축	956	895	895	2,850	2,850	1,955	218.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 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예 상액	불용예 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959	959	956	-	3	895	895	895	888	-	7	2,850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80	480	478	-	2	480	480	480	475	-	5	480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85	185	184	-	1	185	185	185	183	-	2	185
· 전산장비 및 SW구매	294	294	294	-	-	230	230	230	230	-	-	230
· 자·행·표·인·증·플·랫폼·구·축	-	-	-	-	-	-	-	-	-	-	-	1,955
○ 비목별 분류(합계)	959	959	956	-	3	895	895	895	888	-	7	2,850
· 관리용역비(210-15)	665	665	662	-	3	665	665	665	658	-	7	665
· 일반용역비(260-01)	-	-	-	-	-	-	-	-	-	-	-	1,575
· 자산취득비(430-01)	294	294	294	-	-	230	230	230	230	-	-	6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59	959	956	-	3	895	895	895	888	-	7	2,850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80	480	478	-	2	480	480	480	475	-	5	480
- 관리용역비(210-15)	480	480	478	-	2	480	480	480	475	-	5	480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85	185	184	-	1	185	185	185	183	-	2	185
- 관리용역비(210-15)	185	185	184	-	1	185	185	185	183	-	2	185
· 전산장비 및 SW구매	294	294	294	-	-	230	230	230	230	-	-	230
- 자산취득비(430-01)	294	294	294	-	-	230	230	230	230	-	-	230
· 자·행·표·인·증·플·랫폼·구·축	-	-	-	-	-	-	-	-	-	-	-	1,955
-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1,575
-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3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범부처 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구축(‘14~’16)된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e-나라표준인증, <https://standard.go.kr>)의 안정적인 운영서비스 지원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업무포털·홈페이지 등 5개 시스템)에 대한 기능개선·유지보수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대국민 정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직원들의 행정·정책업무 수행 지원

- (전산장비 및 SW 구매)

국가기술표준원 업무포털 및 홈페이지 구현을 위한 PC 백신 라이선스 비용, 비표준 플러그인 제거, 윈도우 10 OS 도입 등 HW 및 SW 최신화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

국가별·제도별·품목별로 ❶국내·외 표준인증 데이터 확충, ❷지능상담·검색서비스 제공, ❸기술규제 혁신 협업환경 조성을 통해 현장 중심 맞춤형 통합 정보 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② 추진경위

- ‘07.12월 : IT 기반의 국가표준 정보화 전략(‘08~’12) 수립
- ‘09.2월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부처별 실행계획(‘09~’12)에 반영
- ‘12.7월 :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VIP 보고(국경위)

- * 국가표준·인증 선진화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필요성 공감 및 조속히 구축 지시
- '13.5월 : 국정과제 '정부3.0'(행자부 주관)의 세부 사업과제로 반영
- '14.3월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VIP 지시 및 후속조치 이행
- *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것은 의견제시 가능토록 실시간 정보 제공할 것
- '14.5월 :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 도입방안 보고 시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조기구축 요구
- '14.6월 : 총리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보고 시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중요성 언급
- '15.11월 : 총리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인증제도 혁신방안)
- '21. 7월 : 국정현안점검회의 보고(기업활력제고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혁신방안)
- * 현장중심의 지능형 기술규제 정보서비스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및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2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❶ 범부처 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21) 480 → ('22요구) 480백만원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e-나라표준인증 포털) 관제 및 통합 DB 운영관리 지원
 - 산출 : 426백만원(개발비5,530백만원×요율7.7%)+54백만원(상용SW797백만원×요율6.9%)
- ❷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21) 185 → ('22요구) 185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전문업무포털(5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지원
 - 산출 : 시스템 및 인프라 유지보수인건비 185백만원(3명×12개월×5.14개월)
- ❸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구매 : ('21) 230 → ('22요구) 23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서버·PC 등 보안관리 SW 라이선스 비용 및 노후장비 구매
 - 산출 : (PC백신500개×0.028백만원)+(윈도우서버 백신30개×0.3백만원)+
(리눅스서버백신5개×1백만원)+(보안SW라이선스 500개×0.034백만원)+
(SSL인증 5개×3.4백만원)+(한글200개×0.095백만원+MSword200개×0.25백만원)+
(망관리시스템1대×48백만원+네트워크스위치75개×0.68백만원)
- ❹ 지능형표준인증 플랫폼 구축 : ('21) 0 → ('22요구) 1,955백만원
 - 지능형 데이터 기반 구축 및 포털 시스템 개발, SW·HW 도입 비용
 - 산출 : 표준인증데이터담구축(32.78MM×4.12백만원) + 지능형 품목분류체계 표준화(8.1MM×16백만원) +
지능형포털시스템 개발(841.7FP×0.487백만원) + 인공지능 표준인증 상담감사시스템 구축(11.86MM×16백만원) +
챗봇솔루션SW1종(275백만원) + 이슈동향 자동수집분류알림시스템 구축(318.3FP×0.641백만원) + 중복표준인증검증
시스템 구축(11.29MM×16백만원) + 표준인증데이터 분석예측시스템 구축(140.5FP×0.648백만원) + ETL솔루션SW1종(55백만원)
+ 공통인프라구축DB서버1종(50백만원) + 위탁관리비(9.3MM×25.17백만원)

○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1년 예산				'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95	○ 관리용역비(210-15) : 665백만원			895	○ 관리용역비(210-15) : 665백만원		
	가.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80백만원				가.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80백만원		
	· 유지보수 인건비 : 426백만원(개발비5,530백만원×요율7.7%) + 54백만원(상용SW797백만원×요율6.9%)				· 유지보수 인건비 : 426백만원(개발비5,530백만원×요율7.7%) + 54백만원(상용SW797백만원×요율6.9%)		
	나.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85백만원				나.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85백만원		
· 유지보수 인건비 185백만원(3명×12개월×5.14개월)			· 유지보수 인건비 185백만원(3명×12개월×5.14개월)				
○ 자산취득비(430-01) : 230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1,575백만원				
			가.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개발 1,57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8~'2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2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이용건수 (단위: 만건)	목표	444	488	544	639	668	최근 3년간 목표치의 평균 증가율을 감안하여 설정	연간 포털검색 이용건수 (로그기록 기준)	e-나라표준인증 로그분석을 통한 데이터 수집 합산
	실적	573	594	619	-	-			
	달성도	129.1	121.7	113.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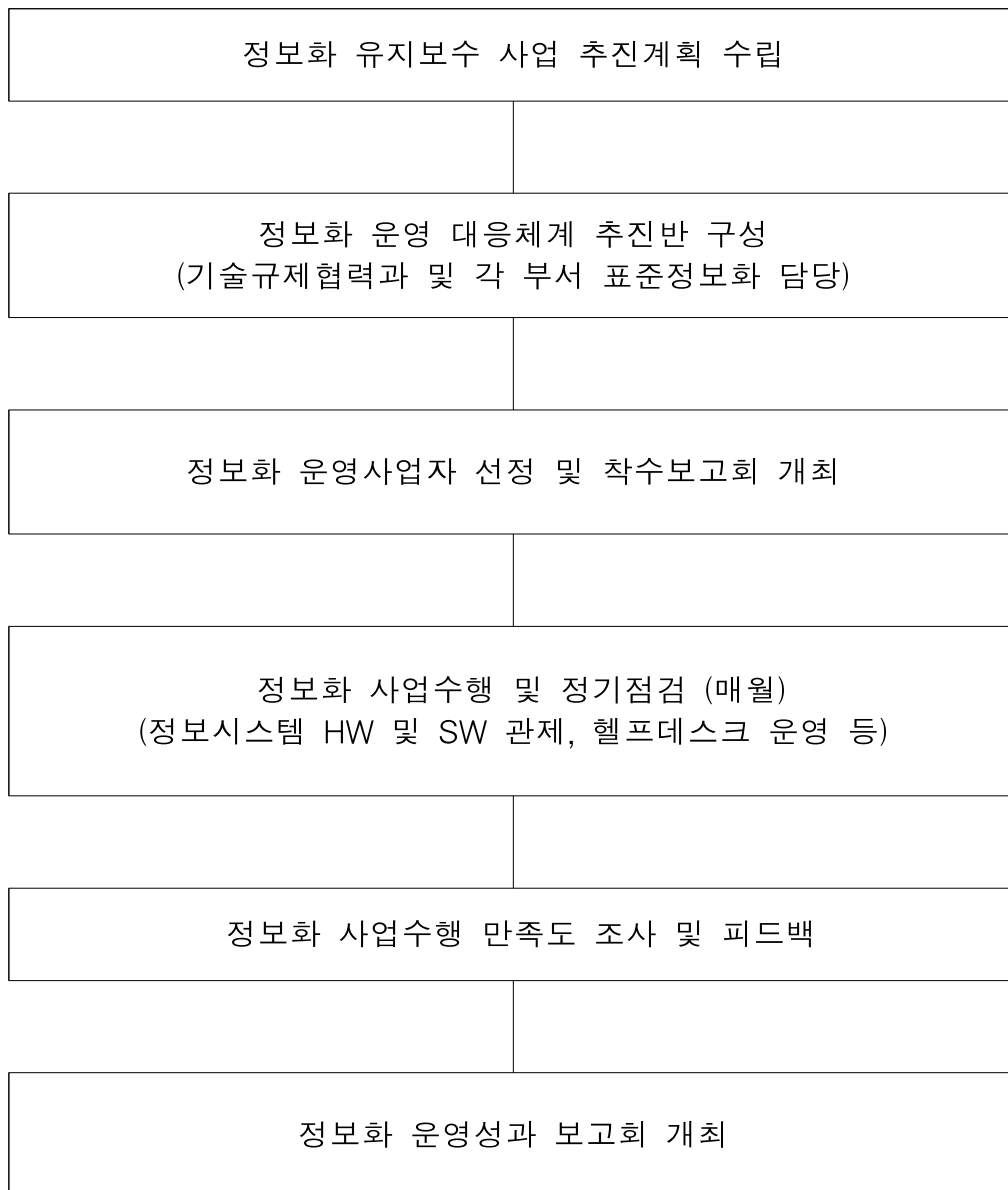
2018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e-나라표준인증 포털 연간 500만건 이상 접속)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홈페이지 개편('18.6)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2019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e-나라표준인증 포털 연간 594만건 접속), 특허청과 업무협약 체결(표준용어DB연계)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2020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e-나라표준인증 포털 접속자수 연간 2억페이지뷰 달성(17년 부터 누적 접속자수)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2021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국립국어원과 표준용어 10만건 연계 추진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기획 및 추진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보안업무 강화

③ 향후('22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표준인증 DB 확대 구축 및 지능형 시스템으로 디지털 전환하여 표준인증 플랫폼 이용자수가 **연간 1,000만건 이상 상회(로그기록 기준) 추진**
- 기업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 국내외 표준인증 데이터 확충, 정보 접근성·신속성 확대를 위해 지능형 상담·검색 시스템 구축 등 현장중심 맞춤형 지능 정보서비스 제공

-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정보화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및 운영관리 수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956	895	884	867	859	
'21~'25		895	3,000	3,500	4,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지적 및 조치사항 없음
- '20년 언론보도(e-나라표준인증 포털 1억페이지뷰 돌파 등)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 시스템 ⇨ 지능형 기술규제 통합 플랫폼 확대 구축
 - 국내 표준인증 정보수요 충족, 해외 표준인증 정보수요 확대를 위해 신규 DB 구축
 - 정형 데이터 수집 체계에서, 정형+비정형 데이터 수집 등 빅데이터 체제 구축
 - 부처간 표준인증 정보공유 및 활용확산을 위한 협업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확산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지능형 서비스 도입 및 비대면 서비스 확산
 - * 실시간 표준인증 상담수요 충족을 위해 인공지능 상담서비스(챗봇) 구축 추진
 - *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및 수출 진흥을 위한 국내외 인증 맵 서비스 지원
 -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제공

* 22년 ~ 24년 3개년간 “지능형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부 예산안 반영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수요자 중심 기능개선으로
원내 행정·정책업무 지원 및 맞춤형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연중)
 - * 표준·제품안전·해외기술규제·시험인증 정책 및 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 추진

* 정부 클라우드 전환계획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센터로 전산실 이전 등 고려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019년 통합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
- 2020년 통합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우수
- 2021년 통합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627	-	627	-	-	-	627	620	98.9	98.9	-	7
2019	710	-	710	-	-	-	710	707	99.6	99.6	-	3
2020	959	-	959	-	-	-	959	956	99.6	99.6	-	3
2021	895	-	895	-	-	-	895	888	99.2	99.2	-	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019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020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021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라. 기타 추가자료

- 별첨 참조

참고 1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시스템(e-나라표준인증) 개요

□ 사업목적 및 추진경과

- 정부에 산재되어 있는 표준·인증 등 기술규제 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처간 협업으로 중복규제 해소

* 정부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에 대한 통합정보 관리체계 구축으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중복해소 필요성 강조(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애로과제, '14.3.20.)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범부처 차원의 종합 정보관리 및 부처간 협업을 위한 「국가표준 인증 통합정보시스템(사업명)」 구축

《 e-나라표준인증 포털 구축 현황 》

- ◆ **(‘14년, 1차)** 통합 DB 구축* 및 대국민 포털(e-나라표준인증) 서비스 개시

* KS 표준(2만여종, 8개부처), 기술기준(20개 부처 2천여종), 인증제도(22개 부처, 200여개)

- ◆ **(‘15년, 2차)** 범부처 표준개발 업무를 지원하는 협업정보시스템 구축

- ① 범부처 KS 업무처리시스템 : KS 표준업무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정보처리 시스템
- ② 중복검증 시스템 : 통합 DB를 통해 표준·기술기준간 중복여부를 비교검색하는 시스템

- ◆ **(‘16년, 3차)** 통합 DB 확충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 국내 단체표준(4천여종, 136개 협회·단체) 및 포털 모바일 웹 지원서비스 제공

□ 추진성과

- 정부 표준인증 통합 포털(e-나라표준인증) 이용자수는 시스템 구축 완료('17.1~)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누적 2억페이지뷰 돌파)

* 이용건수 : ('17) 4,072만건 → ('18) 4,519만건 → ('19) 4,582만건 → ('20) 6,955만건

- 홍보 확대 등 대외 인지도 개선 활동 강화

- 유튜브 영상 제작·배포 청년세대 뉴미어 활동 및 품질개선 강화

* 포털 만족도(온라인 설문조사, '20.9-10월, 리커드 5점척도) : ('19) 82.9점 → ('20) 83.8점

- 정부·공공 포털과 연계 확대로 스마트 행정기반 조성

* 방위사업청 국방규격 정보시스템과 국가표준(KS) 데이터 정보연계 구축('18.3)

* 국가기술표준원-특허청과 포털 표준용어 10만건 공유 연계 업무협약 체결('19.6)

《 e나라표준인증 포털 메인 홈페이지 》

①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① 통합검색**

인기검색 | 허리보통대 9096 KSAISO80000 KS D 3752 SM35C 단위
KSAISO31 원격의료 KSC3703

② 조건검색

분야별 정보검색

인증제도 국가표준
기술기준 인증지원
TBT정보문

해외규격 인증 검색

☑ 해외규격 인증(지역) 바로가기 >>
☑ 해외규격 인증(품목) 바로가기 >>

③ KS 인증 지원서비스

KS인증기관조회 KS인증업체확인 표준제정·개정신청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 표준용어사전

④ 단체표준 검색 ⑤ KS 용어검색

⑥ 표준·인증 정책 정보

정책동향	더보기 +	보도자료	행사안내	공지사항	더보기 +
· [산업통상자원부]초고강도 건설용 강재 국제표준화...	2020-01-07	· 인증지능 빅데이터 국제표준 한국이 이끈다			2020-01-07
· [산업통상자원부]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	2020-01-07	· 과기정통부, 신기술(5G,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2020-01-07
· [소방청]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업무절차...	2020-01-07	·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및 사료제조업 규제 개선			2020-01-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 빅데이터 국제표준...	2020-01-07	· 농산물 통 거래, 인증 등 지원을 위한 검정기관 지...			2020-01-07
· [산업통상자원부]인공지능(AI) 국제표준화, '...	2020-01-07	· 대한민국 수소경제 제2호 국제표준 논의 착수			2020-01-07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민국 수소경제 제2호 국제표...	2020-01-07	· 인공지능(AI) 국제표준화, '데이터 생태계'까지 ...			2020-01-07
· [산업통상자원부]글로벌 10개 자동차사, 서울에서...	2020-01-06	· 한중 상호인정 협력 강화해 수출기업 인증 부담 줄인...			2020-01-07
· [산업통상자원부]현대식 오픈 냉난방, 단열 분야...	2020-01-06	· 국표원, GSO 기술규제 상호협력 강화로 기술규제 ...			2020-01-07

⑦ 유관 웹사이트

KNOW TBT 해외기술규제 애로해소
1381 인증 표준 콜센터
국민신문고
All 4 You 경제다방사

- ① 통합검색 서비스 :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표준, 기술기준, 인증제도, TBT 정보제공
- ② 조건검색 서비스 : 기간별, 부처별, 분야별 조건을 이용한 분야별 상세검색 정보제공
- ③ KS 인증 서비스 : 품목별 KS 인증기관 검색, 품목별 KS 인증업체 검색
- ④ 단체표준 서비스 : 137개 중소기업 협회·단체의 단체표준 정보제공
- ⑤ KS 용어 서비스 : KS 표준 포함된 10만여종의 기술용어 정의(의미) 제공
- ⑥ 정책정보 서비스 : 범정부 표준·인증 정책 관련 동향 정보 제공
- ⑦ 유관 웹사이트 : 민원 웹사이트 연계(국민신문고, 1381 표준인증 상담 콜센터 등)

참고 2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현황 및 운영성과

구분	정보시스템 명칭	주요 업무기능	시스템 운영관리 장소
홈페이지 업무포털 (대국민용)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kats.go.kr)	국가기술표준원 소개, 공지사항, 각종 행사, 기술동향 정보 및 분야별 주요업무 게재	국가 기술 표준 원내 (충북 음성)
	무역기술장벽(TBT) 정보시스템 (www.knowtbt.kr)	TBT 중앙사무국 소개, WTO 무역기술장벽, TBT 통보문, 국내·외 기술규제정보 제공 * 200여개국 TBT 통보문 원문제공	
	인정통합정보시스템 (www.knab.go.kr)	- 시험·검사·교정기관 업무처리 지원 시스템 - 제품인정기관 업무처리 지원 시스템 - 인정평가사 관리시스템 및 통계관리 시스템 - 인정기관 검색정보 포털 서비스	
	인체치수측정(Size Korea) 정보시스템 (sizekorea.kats.go.kr)	- 연간 한국인 평균 인체치수 데이터 제공 - 표준인체 측정방법, 인체치수 활용 전자 가이드 제공(기업지원용)	
	제품안전 포털 (www.safetykorea.kr)	- 제품안전 인증, 제품 리콜정보, 제품안전 정책동향, 제품안전기준 정보 종합 제공	
국표원 업무 지원 시스템 (공무원용)	국가기술표준원 업무지원시스템	- 국가기술표준원 업무 관련 자료 공유 및 업무처리지원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공지·공고사항 연계 및 업무 게시판 운영 등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업무포털(www.kats.go.kr)

- 국가기술표준원 핵심정책 포토뉴스, 카드뉴스 제작·보급, 각종사업 고시·공고 등 대국민 정책홍보·정보제공 수단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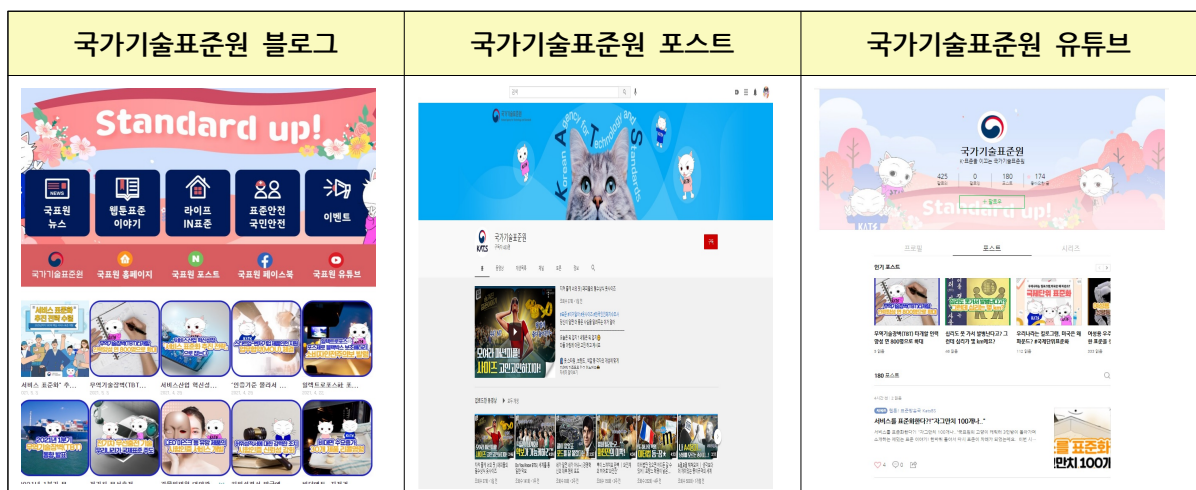
* 홈페이지 접속자 현황 : ('19) 395만건 → ('20) 408만건 → ('21.1분기) 82만건

< 카드뉴스 제작·보급 >



- 디지털 아카이브(블로그, 유튜브, 포스트 등) 신설 등 국민과 소통을 위한 접촉 면적 대폭 확대

* 국가기술표준원 정책 뉴스를 알기 쉽고 찾기 쉽게 콘텐츠 제작·보급



○ 무역기술장벽 포털(www.knowtbt.kr)

- WTO 무역기술장벽 통보문(200여개국) 정보, 중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GB 표준·인증 분석 정보 제공

*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 ('19) 3,347건 → ('20) 3,782건 → ('21.1분기) 760건

○ 인체치수 포털(sizekorea.kr)

- 제8차 인체치수 조사 실시 및 인체 측정 DB 구축 추진

- * 성인 20세-69세 남녀 총 6,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측정 항목을 종전 332개에서 365개(직접측정항목 73개, 3차원 측정항목 292개)로 확대

< 인체치수 DB 활용 사례 >

사례	제품	내용
자동차		운전자의 시선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화면위치를 선정하고, 최적의 조작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핸드 리치 존(Hand Reach Zone)을 고려하여 스위치 설계
세탁기		주부들의 허리와 무릎의 충격을 완화하여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높이 설계

○ 인정통합 포털(www.knab.go.kr)

- 온라인 국제 공인기관(시험·교정·검사·의학분야) 인정평가 수행 및 평가사 자격심사·교육훈련 지원

- * 새로운 국제공인기관 관리체계(ISO 국제표준 17011) 기준에 맞춰 시스템 개편
- ** 국제공인기관 통합 정보 제공(시험기관: 258, 교정기관: 615, 검사기관: 70)

○ 제품안전정보 포털(www.safetykorea.kr)

- 소비자 리콜 정보, 제품 위해성 평가 정보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 안전 정보 DB 구축 및 검색 서비스 제공

- * 포털 접속현황 : ('18 1,222만건 → ('19 1,262만건 → ('20 1,234만건 → ('20.1분기) 879만건

참고 3

‘22년 보안장비 도입현황 및 세부내역

□ 배경 및 필요성

- 디브레인 예산 편성·결산 시 사무용소프트웨어 기본사양이 상향(한글2007⇒한글2014)됨에 따라 전직원 대상으로 SW업그레이드 필요
- 노후한 보안장비가 단종되어 신속한 A/S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안 취약점 상존(네트워크 스위치)
- 인터넷서비스망 및 업무전산망 사이의 정보통신망 연계 장비가 방화벽만 설치되어 있으며, 국정원 인증제품인 망연계 솔루션이 도입되지 않아 보안취약점이 상존하여 신규 구매가 필요

□ 요구내역(단위 : 백만원)

구분	품 명	장비규격	도입연도	교체사유	단위	수량	단가	가격
교체	사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한글2007	‘07	예산 작업 시 기본사양 상향(한글2007→한글2014)	조	200	0.095	19
교체	사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MS오피스(2007)	‘07	MS office 2019 최신판 도입	조	200	0.25	50
교체	네트워크 스위치	업무망·인터넷망 액세스 스위치	‘06	내구연한 경과(6년)	개	75	0.68	51
신규	보안소프트웨어	망연계솔루션	신규	보안기능 강화	조	1	48	48
	합계							168

※ 사무용 소프트웨어 [한글2020(23702122), MS오피스2019(23547539)], 네트워크스위치(23218726), 네트워크 스위치(23329893), 보안소프트웨어(23979299) ()는 조달물품번호

참고 4

지능형 표준인증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사업추진계획 요약)

◆ 사업추진 목적

- 기업의 시장진출에 필요한 국내·해외 산재된 표준·인증 데이터담 구축 및 현장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지능화 서비스 구현

◆ (총리 지시사항) 경제 협·단체의 다수 애로건의 과제로 인증 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인증개선 대책」 마련 지시('20.6)

※ '20.10 인증제도 개선방안 수립 - 지능형 표준·인증 서비스 제공 추진과제 마련

- ① (국무조정실 기업애로과제, '19.4) 해외규격·인증 정보서비스 제공 요구
- ②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19.7) 신남방 국가의 품목별 인증정보 부족 건의
- ③ (중소기업중앙회, '20.6) 중소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부족 호소
- ④ (정부 온라인수출기업 간담회, '20.11) 국가별 인증가이드라인 마련 요청

◆ (국정현안점검회의 상정, '21.6예정) 기술규제 성과점검 및 혁신대책(안) 추진과제

◆ 사업추진 내용(요약)

- ① (지능형 데이터기반 구축) 국가별·제도별·품목별 필요한 표준·인증 데이터 수집·저장·가공·분석·활용 서비스 체계 구축

- * 해외인증 획득 데이터담 구축(해외인증사례 2만건 → 해외인증 데이터 100만건+α)
- *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해 키워드 검색에서 품목 검색 기반으로 표준·인증 데이터 체계구축(HS 코드, 인증품목 코드, 조달물품 코드, 유사동의어 품목 코드)

- ② (현장체감 지능정보 구현) 수집된 국내외 표준·인증 데이터 학습을 통해 전문가 수준의 필요 정보 추천 검색, 질의, 응답 시스템 구축

- * 상담사례(국민신문고+표준인증콜센터 30만건) 및 통합DB 머신러닝 → 인공지능상담체계 구축
- * 사용자 검색 패턴 인지 학습 → 유사 검색어 및 연관 자료 추천 서비스 제공
- * 표준인증기관(200여개)·SNS·포털로 부터 이슈동향정보 자동수집분석알림 시스템 구축

- ③ (지능형 협업관리 시스템) 부처의 효율적 표준·인증 데이터 정보·수집·분석 및 중복검증을 위한 지능형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 * 적용범위+인용규격+시험항목+원문구성 학습 → 중복 표준인증 검증모델 구현
- * 표준인증 데이터 분석·예측 시스템 구축 → 규제동향 파악 및 대응 정책수립 지원

참고 5

지능형 표준·인증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추진 계획)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표준·인증 정보 접근 등 디지털 격차가 기업경쟁력 약화 요인

- (국내)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제품별 표준·인증 정보 확보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
 - * 중소기업 41.7%는 인증정보(품목별 인증대상 여부, 인증 절차, 시험 표준 등) 획득이 어렵다고 인식('20년 중소기업 인증 실태조사, 중기중앙회)
- (해외) 수출 기업도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품목별 기술요건 및 국가별 인증정보 제공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

< 수출 경제 협회·단체를 통한 표준인증 정보 지원 건의 사항 >

-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애로 건의, '19.4) 해외 시장 진출 등 수출시 필요한 해외 인증 획득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공 요청
- ②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무역협회 건의 '19.7) 신남방 지역 진출 및 제품 수출을 위해 국가별·제품별 종합적인 인증제도 정보 확보가 어려움

◆ 급증하는 표준·인증 정보 수요에 혁신적 디지털 전환 필요

- (기업) 비대면 정보 수요가 증가*하는 등 폭넓은 기업 정보 수요 충족 및 애로 해소를 위해 온라인 디지털 기반 확대 시급
 - * 1381 표준인증 콜센터 상담문의 현황 : ('14) 19,752건 → ('19) 87,130건(4.4배 증가↑)
- (정부) 정부도 국가별·품목별 새롭게 확장하는 표준·인증 제도에 대한 신속한 데이터 입수를 통해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필요
 - * 표준인증 등 기술규제 도입 통보현황(WTO) : ('00) 633 → ('10) 1,869 → ('19) 3337건

◆ 디지털 혁신 플랫폼(AI 도입 등) 구축을 통해 기업간 표준·인증 정보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장진출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

◆ 현장은 표준·인증 전문가 수준으로 체감 가능한 정보지원 요구

□ 중소기업은 ▲ 수출국가별·제도별 정보제공, ▲ 인증 단계별 맞춤정보 지원, ▲ 과도한 규제해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애로 건의

① 공급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

- 정부 제도별로 맞춤형 표준·인증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인력 및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외부 컨설팅에 의존

< 현장애로·건의사례 >

-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인증에 대한 정보도 없어 외부 컨설팅을 받게 되고 비용도 2배 이상으로 부담스럽다('20 중소기업 인증취득 실태조사)
- » (시사점)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에 대한 분산된 국내외 표준인증 정보를 통합하고 新시장 진입기회를 찾도록 디지털 전환(시 도입 등)을 통해 정보접근성 혁신 필요

② 복잡한 인증 절차에 업무부담 가중

- 국가별·품목별로 다수 인증 획득을 요구하고 있고 평가 표준도 다양하기 때문에 절차별 정보에 대한 밀착 지원 요구

< 현장애로·건의사례 >

- ◎ 제품 수출시 국가·품목별 인증, 획득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어 절차 진행에 애로가 크다.('20 온라인 수출기업 FTA 활용간담회)
- » (시사점) 수출인증 절차별 핵심정보(인증품목 여부, 해당 인증기준 시험인증기관 현황 등)를 기업이 이해하기 쉽게 디지털화하여 시간과 비용 부담 대폭 절감 추진

③ 선제적인 표준·인증 규제 해소 요구

- 국제수준 보다 과도하거나 중복되는 표준·인증제도·절차에 대해 신속한 데이터 입수·분석에 근거한 합리적 해소 노력 필요

< 현장애로·건의사례 >

- ◎ (국내) 기술규제영향평가, 인증제도 실효성평가 등 사전·사후관리 제도적 기반은 갖추었으나 데이터 수집·분석에 상당한 시간 소요
- ◎ (해외) 국가별 숨은 표준·인증 규제에 대한 정보파악 등 사전인지 어려움
- » (시사점) 데이터에 기반한 협업 플랫폼 구축으로 규제행정 환경을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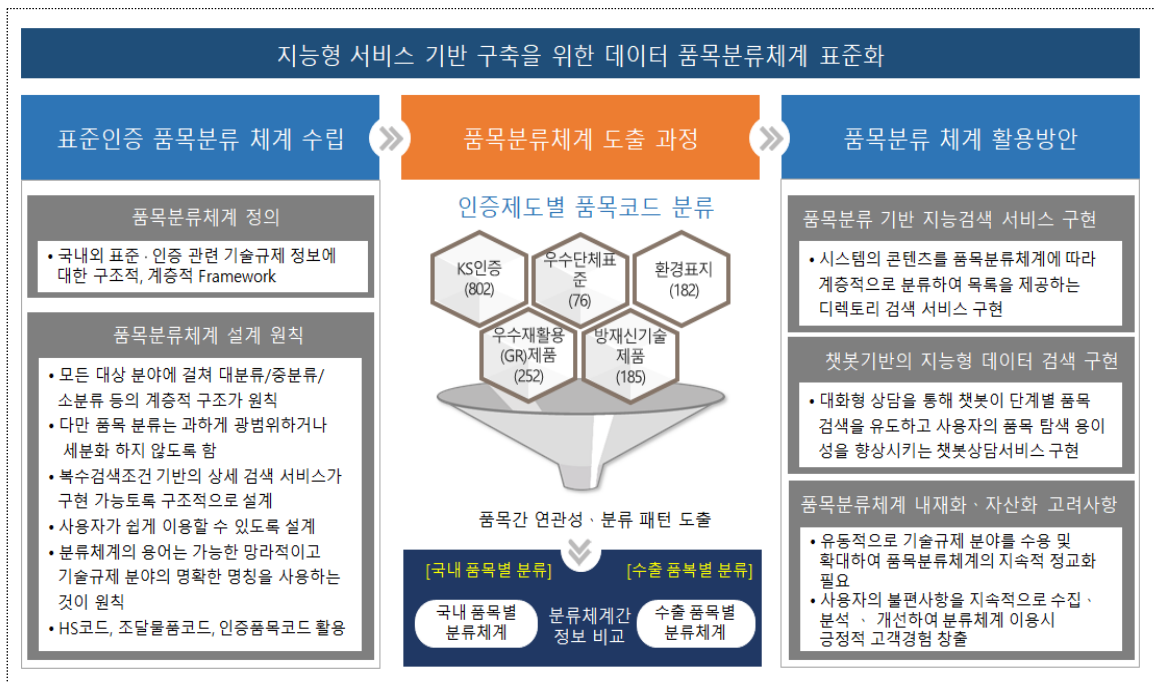
2 추진내용(과제별 세부 소요산출 내역 및 22년 구축내용 별첨)

- (지능형 데이터기반 구축) 국가별·제도별·품목별 필요한 표준·인증 데이터 수집·저장·가공·분석·활용 서비스 체계 구축

과제① 인증 획득 데이터담 구축(해외인증사례 2만건 → 해외인증 데이터 100만건+α 등)



과제②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해 키워드 검색에서 품목 검색 기반으로 표준·인증 데이터 분류체계 표준화(HS 코드, 인증품목 코드, 조달물품 코드, 유사동의 품목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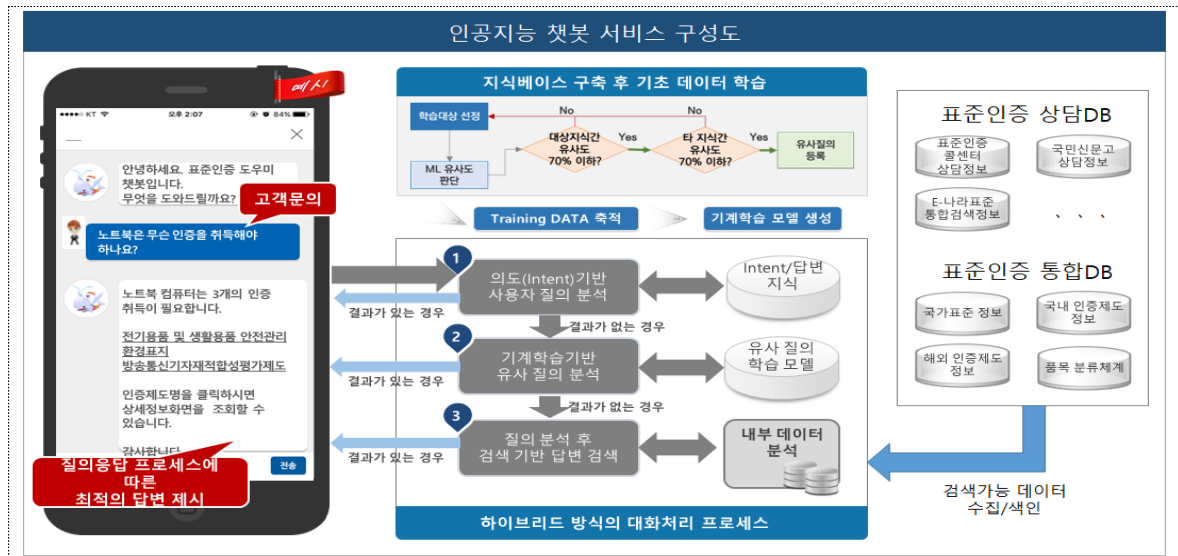
과제③ 지능형 검색·상담 서비스 제공 및 표준인증 정보연계 분석·기반 서비스를 위한 통합 포털 시스템 개발(⇒ 지능형 플랫폼 연계·분석·활용 플랫폼)

- (현장체감 지능정보 구현) 수집된 국내외 표준·인증 데이터 학습을 통해 전문가 수준의 필요 정보 추천 검색, 질의, 응답 시스템 구축

과제④-1 상담사례(국민신문고 표준인증콜센터 30만건) 및 통합DB 머신러닝 → 인공지능상담체계 구축

과제④-2 사용자 검색 패턴 인지 학습 → 유사 검색어 및 연관 자료 추천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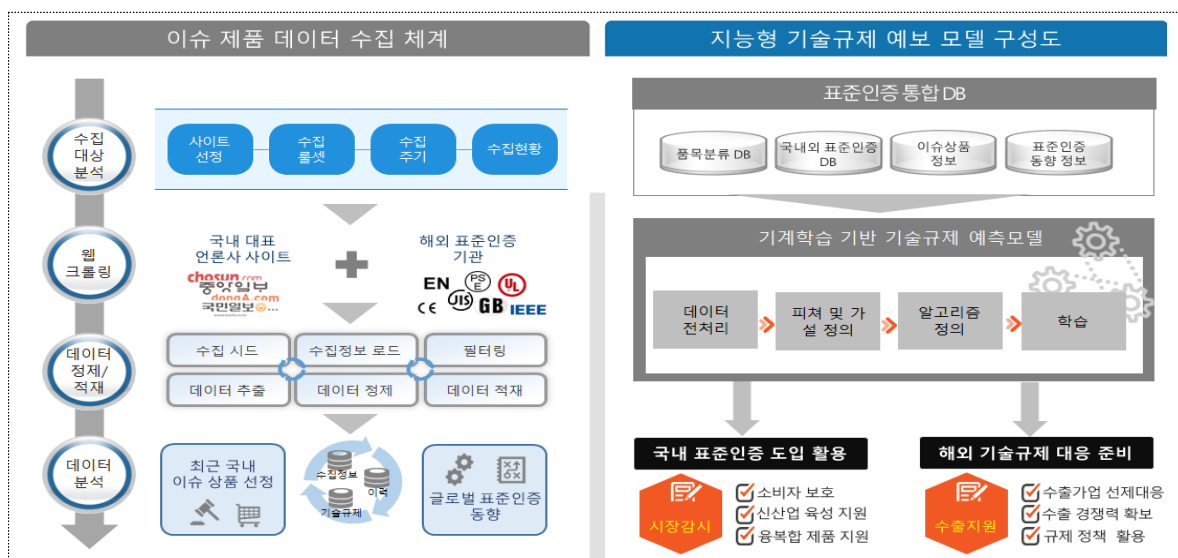
과제⑤ 표준인증기관(200여개) SNS포털로 부터 이슈동향정보 자동수집분석알림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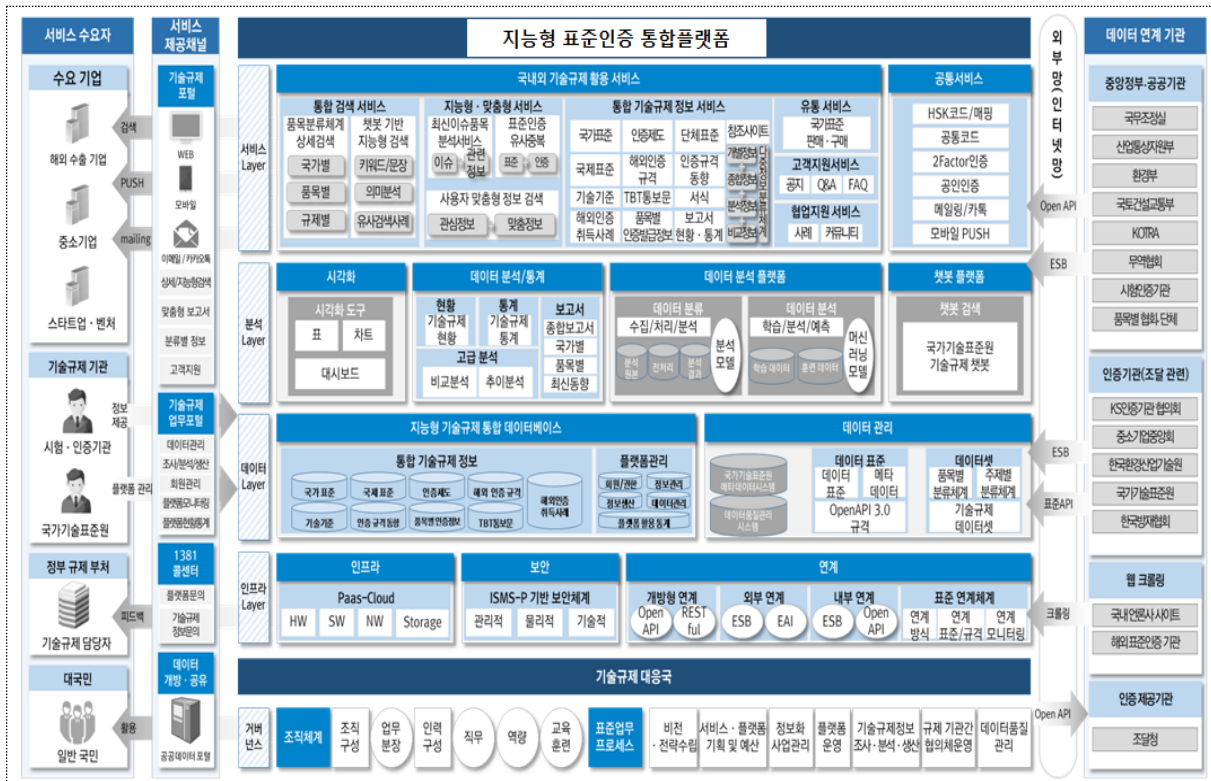
- (지능형 협업관리 시스템) 부처의 효율적 표준·인증 데이터 정보·수집·분석 및 중복검증을 위한 지능형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과제⑥ 적용범위+인용규격+시험항목+원문구성 학습 → 중복 표준인증 검증모델 구현

과제⑦ 표준인증 데이터 분석예측 시스템 구축 → 규제동향 파악 및 대응 정책수립 지원



3 목표시스템 및 소요예산 산정(22~24년)



< 연도 별 추진내용 및 소요예산(세부내역 별첨, '20년 ISP 참조) >

연도	추진 내용	소요예산 (단위: 백만 원)
'22년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기반 구축 - 품목별 데이터 표준화체계 구축, 표준인증 및 상담 DB 구축(1차) - 챗봇 시스템 구축, 지능형 공통 인프라 구축	2,097
'23년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고도화 - 빅데이터 정확도·정교화 향상, 표준인증 및 상담 DB 구축(2차) - 챗봇 시스템 고도화, 표준인증 맵 서비스 구축(1차)	2,696
'24년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연계·공유 확장 - 모바일 시스템 구축, 챗봇시스템 안정화, 표준인증 및 상담 DB 구축(3차) - 표준인증 맵서비스 고도화(2차), 표준인증 협업 및 연계공유 강화	3,196
합계		7,989

4 기대효과

-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외 표준인증 통합 서비스 지원 창구로 기업의 시장 개척 및 新시장 진출에 기여
- 방대한 표준인증 빅데이터 구축과 분석·활용을 통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품질경쟁력 제고 및 신기술 혁신 유도
- 국가별·품목별 기술규제 빅데이터 예측분석으로 선제적 기술장벽 해소 수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부 기술규제 도입 촉진 및 유사중복 제도 도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정부 효율성 제고
- 기술규제 빅데이터 통합서비스 제공에 따른 시험인증·거래비용 감소로 연간 200억원 수준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추정

< 경제적 효과 산출 산식 방법 >

① 표준인증 정보 획득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연간)

- 산출산식 : 연간접속건수 × 정보획득단축시간 × 분당인건비 = 82.2억원
- * 연간접속건수 : 연간 이용자수(로그기준)의 30% 추정치('19년 이용건수 600만건)
- * 정보획득단축시간 : 15분('13년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ISP 참조)
- * 분당 인건비(원/분) : 253.6원('19년 임금근로자 분당 인건비, 통계청 참조)

② 기술규제 애로해소 및 민원 서비스 개선 비용절감(연간)

- 산출산식 : 연간 민원처리건수 × 민원처리 단축시간 × 일당인건비 = 109억원
- * 연간 민원처리건수 : 9,986건(연간 처리건수의 30% 추정치)
- * 민원처리 단축시간 : 9일, * 일당인건비 : 121,730원(1381 표준인증 콜센터 민원처리 현황 및 통계청 참조)

③ 표준인증 정보수집·분석 비용절감(연간)

- 산출산식 : 작성월수 × 통계표 처리건수 × 통계표 작성단축기간 × 일당인건비 = 8.9억원
- * 통계표 처리건수 41건, * 통계표 작성단축기간 9일, * 일당 인건비 : 302,857원
- (* 통계청 및 국가기술표준원 업무현황 참조)

시행 전	시행 후
○ 표준인증 정보부재로 기업경쟁력 약화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보지원
○ 국가별·품목별 인증획득 시간·비용 과다	○ 지능형 서비스로 인증획득 시간·비용 절감
○ 글로벌 수준에 미흡한 정부 기술규제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규제 도입
○ 유사중복 표준인증 도입 등 행정 비효율성	○ 유사중복 표준인증 사전예방 및 해소

사 업 명
(25)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71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 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301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국가기술표준원정책수립운영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김석무	김상걸	정호민
		043-870-5320	043-870-5328	043-870-553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기술표준원기 관운영	1,644	1,592	1,592	1,628	1,628	36	2.2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644	1,644	1,595	-	49	1,592	1,592	1,592	1,358	-	234	1,628
· 상용임금	442	442	410	-	33	777	777	777	654	-	123	790
· 운영비	919	919	913		6	599	599	599	496	-	103	604
· 업무추진비	9	9	9	-	-	8	8	8	8	-	0	8
· 보전금	2	2	2	-	-	2	2	2	2	-	0	2
· 민간이전	251	251	240	-	11	205	205	205	197	-	8	223
· 자산취득비	21	21	21	-	-	1	1	1	1	-	0	1
○ 비목별 분류(합계)	1,644	1,644	1,595	-	49	1,592	1,592	1,592	1,358	-	234	1,628
· 상용임금(110-03)	442	442	410	-	33	777	777	777	654	-	123	790
· 임차료(210-07)	432	432	432	-	-	455	455	455	362	-	93	450
· 유류비(210-08)	15	15	13	-	2	15	15	15	6	-	9	1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22	122	119	-	3	118	118	118	118	-	0	129
· 복리후생비(210-12)	6	6	6	-	-	11	11	11	11	-	0	11
· 관리용역비(210-15)	344	344	344	-	-	-	-	-	-	-	-	-
· 업무추진비(240-02)	9	9	9	-	-	8	8	8	8	-	0	8
· 포상금 등(310-03)	2	2	2	-	-	2	2	2	2	-	0	2
· 민간경상보조(320-01)	67	67	57	-	10	56	56	63	63	-	0	70
· 고용보험금(320-09)	184	184	184	-	-	149	149	142	134	-	8	153
· 자산취득비(430-01)	21	21	21	-	-	1	1	1	1	-	0	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2) 사업개요

3) '22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상용임금(790백만원)

시설관리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12월×22명×2,944천원)(2021년)

→ 시설관리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12월×22명×2,994천원)(2022년)

○ 임차료(450백만원)

통근버스 5대 운영(5대×200일×455천원)(2021년)

→ 통근버스 5대 운영(5대×200일×450천원)(2022년)

○ 차량유류비(14백만원)

평균연간유류비(2.5백만원×6대)(2021년)

→ 평균연간유류비(2.33백만원×6대)(2022년)

○ 시설장비유지비(129백만원)

건물유지비(41백만원), 기계·통신·전기 및 환경 시설유지비(77백만원)(2021년)

→ 건물유지비(64.7백만원), 기계·통신·전기 및 환경 시설유지비(64.7백만원)(2022년)

○ 복리후생비(11백만원)

시설관리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복리후생비(22명×0.477백만원)(2021년)

→ 시설관리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복리후생비(22명×0.477백만원)(2022년)

○ 관서업무추진비(8백만원)

시설안전평가회의등(8백만원)(2021년) → 시설안전평가회의등(8백만원)(2022년)

○ 포상금 등(2백만원)

포상금 등(2백만원)(2021년) → 포상금 등(2백만원)(2022년)

○ 민간경상보조(70백만원)

충북혁신도시 공동 보육시설 운영비(5,600천원×10명)(2021년)

→ 충북혁신도시 공동 보육시설 운영비(7,000천원×10명)(2022년)

○ 고용부담금(153백만원)

시설관리직 고용부담금(12월×22명×0.56백만원)(2021년)

→ 시설관리직 고용부담금(12월×22명×0.58백만원)(2022년)

○ 자산취득비(1백만원)

물품 구입(1백만원×1식)(2021년) → 물품 구입(1백만원×1식)(2022년)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	'21	'22	'23	'24	'25
'20~'24	1,644	1,592	1,764	1,802	1,822	
'21~'25		1,592	1,624	1,665	1,706	1,75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매년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으로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을 지출
- 매년 시설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1,576		1,576	-	-	-	1,576	1,533	97	97	-	43
2019	1,644		1,644	-	-	-	1,644	1,611	98	98	-	33
2020	1,644		1,644	-	66	-	1,644	1,595	97	97	-	49
2021	1,592		1,592	-	-	-	1,592	1,358	85	85	-	234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 해당사항 없음
2019	- 해당사항 없음
2020	- 해당사항 없음
2021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26) 기술표준정책(7134-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302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국가기술표준원정책수립운영	기술표준정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시험인증정책과	박형민	임호남	
		043-870-5480	043-870-548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술표준정책	717	711	711	723	723	12	1.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0					2021('21.12월말)						2022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724	724	717	0	7	711	711	711	676	0	35	723
· 전문관 고용	580	580	573	0	7	594	594	594	559	0	35	604
· 국가품질경영문화 확산	140	140	140	0	0	113	113	113	113	0	0	115
· 포상금 운영	4	4	4	0	0	4	4	4	4	0	0	4
○ 비목별 분류(합계)	724	724	717	0	7	711	711	711	676	0	35	723
· 상용임금(110-03)	481	481	475	0	6	491	491	491	461	0	30	499
· 일반수용비(210-01)	50	50	50	0	0	60	60	60	60	0	0	61
· 복리후생비(210-11)	8	8	8	0	0	9	9	9	9	0	0	9
· 일반용역비(210-14)	90	90	90	0	0	53	53	53	53	0	0	54
· 포상금(310-03)	4	4	4	0	0	4	4	4	4	0	0	4
· 고용부담금(320-09)	91	91	90	0	1	94	94	94	89	0	5	9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24	724	717	0	7	711	711	711	676	0	35	723
· 전문관 고용	580	580	573	0	7	594	594	594	559	0	35	604
-상용임금(110-03)	481	481	475	0	6	491	491	491	461	0	30	499
-복리후생비(210-11)	8	8	8	0	0	9	9	9	9	0	0	9
-고용부담금(320-09)	91	91	90	0	1	94	94	94	89	0	5	96
· 국가품질경영문화 확산	140	140	140	0	0	113	113	113	113	0	0	115
-일반수용비(210-01)	50	50	50	0	0	60	60	60	60	0	0	61
-일반용역비(210-14)	90	90	90	0	0	53	53	53	53	0	0	54
· 포상금(310-03)	4	4	4	0	0	4	4	4	4	0	0	4
-포상금(310-03)	4	4	4	0	0	4	4	4	4	0	0	4

※ 동 사업은 직접 수행 사업으로 집행액과 실집행액이 동일함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문관 고용) 국가기술표준원(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채용된 전문관(16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국가기술표준원 업무 능률 향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 (국가품질경영문화 확산) 제조업 및 서비스업 품질경영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위한 심사비와 포상물 제작비로써 품질경영 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품질 경쟁력 강화에 기여
- (포상금) 국가기술표준원 우수 과에 대한 포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

- ①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정부는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또는 서비스품질개선 등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 및 개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조의4

- ①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 다음 각 목의 상
 - 가. 국가품질대상 나. 국가품질경영상 다. 국가품질혁신상
 2. 품질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개인: 국가품질명장 및 품질경영유공자
 3. 품질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집단: 우수품질분임조상(금상, 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여 포상한다)

-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상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상(副賞) 및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포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또는 소집단의 임직원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품질경영 관련 내용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강의로 지원
 - 2.품질경영에 관한 국내외 연수 경비의 지원(수상자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속한 소집단인 경우와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추진경위

- 국가표준화체계 운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 2000.1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2006.5.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2012.7.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수립(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VIP보고)
 - 2016.4.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2019.6.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수립」(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국가품질경영대회 : 1975년 10월 ‘제1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대회’로 시작

< 최근 3년간 정부포상 수여 규모 >

종 류	'20년	'19년	'18년
훈장	3	3	3
포장	3	2	2
대통령 표창	18	20	20
국무총리 표창	13	11	11
소계	37	36	36

- 역대 주요 참석인사

- 1975. 제1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대회(김종필 국무총리)
- 1992. 제18회 전국품질경영대회(노태우 대통령)
- 1994. 제20회 전국품질경영대회(김영삼 대통령)
- 2019.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이낙연 국무총리)
- 2020.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정세균 국무총리)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2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전문관 고용 : (2021) 594 → (2022요구) 604백만원, +1.7%

- (요구) 인건비 특성상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21년 대비 +1.7%
- (산출) 상용임금 499백만원(16명×260만원×12개월)+복리후생비 9백만원(16명×54만원) +고용부담금 96백만원(16명×602만원)

(2) 국가품질경영 문화 확산 : (2021) 113 → (2022요구) 115백만원, 1.8%

- (요구) 품질경영에 기여한 우수 기업·유공자 포상을 위한 심사비와 포상물 제작비 지원 목적이며, '21년 대비 +1.8%
- (산출) 심사수당 61백만원(30만원×5개분야×2일×20명)+포상물 제작비 54백만원

(3) 포상금 운영 : (2021) 4 → (2022요구) 4백만원, 전년도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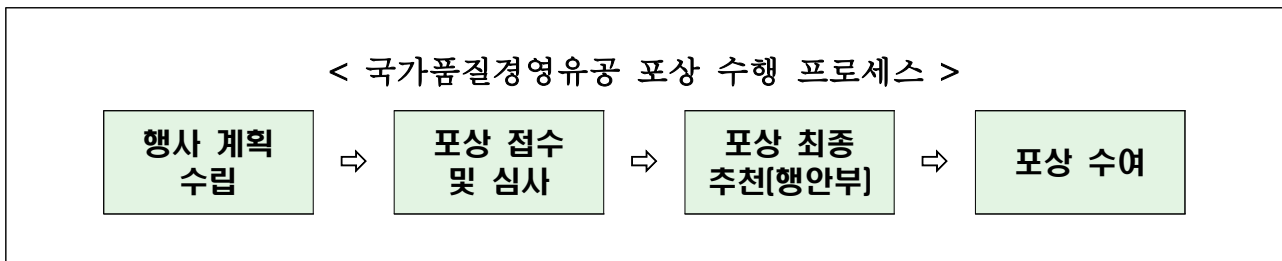
- (요구) 국가기술표준원 우수 과에 대한 포상 목적이며, 전년도와 동일
- (산출) 4백만원(4과×100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8	1,523	0	1,523	0	52	0	1,575	1,538	101.0	97.7	0	37
2019	1,473	0	1,473	0	100	0	1,573	1,566	106.3	99.6	0	7
2020	724	0	724	0	0	0	724	717	99.0	99.0	0	7
2021	711	0	711	0	0	0	711	676	95.1	95.1	0	35

※ ‘국제부담금’ 비목이 2020년부터 철강세라믹과 소관 ‘국제부담금(1932-304)’ 사업으로 이관됨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18년~2021년 결산사항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통보액 증가로 인한 국제기구 국제부담금 부족분을 납부하기 위해 국가 기술표준원 기본경비(7118-251)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국제부담금으로 52백만원 전용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휴직에 따른 인건비 불용, 포상금 잔액 등 37백만원 불용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통보액 증가로 인한 국제기구 국제부담금 부족분을 납부하기 위해 국가 기술표준원 기본경비(7118-251) 공공요금 및 제세(80백만원), 자산취득비(20백만원)을 국제부담금으로 100백만원 전용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포상금 집행잔액, 국제부담금 집행잔액 등 7백만원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전문관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7백만원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전문관(2명)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35백만원

☐ 2021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1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